

연구보고 2016-11

#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6-11

#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김 명 아

#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Legal Experts in 2016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Kim, Myoung-Ah

2016.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
-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지속될 때, 적시·적합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정확한 법의식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춘 법전문가와 수범자로서의 일반국민이 가진 법의식 간에 간극이 좁아질수록 가치중립성이 확보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
- 즉,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좌표 설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법의 제정·집행·적용·해석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 법전문가들이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거나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법 분야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과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우리 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법전문가)나 2015년의 결과(일반국민)보다 더 낮게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 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나 2015년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법전문가의 2/3 이상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의 경우에 비하여 적극적인 교환 요청 의지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법치주의 실현과 법제발전 방향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평가에 대하여서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서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종사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고,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11.3%에 그치고 있음
-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음
-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는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음
- 2015년의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법전문가들은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62.7%)로 나와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대부분 (98.8%)이 찬성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꼽았으며,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하여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과정생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31.9%, 25.0%)하고 있음
-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찬성한다 (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음
-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 12.8%가 각각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내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논란이 예상됨



-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간 찬반여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산출과 그 결과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분야에서는 52.98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53.58점으로 집계되어 국민법의식 지수(52.88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차원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사회구성원(정부, 지자체, 법원, 기업, 국민)의 준법 수준에 대한 지표도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나와 향후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2016년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곧 ‘법의 지배’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이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전문가 법의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 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분석된 자료들을 통하여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틀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여건 상의 한계가 있으며, 법제와 관련된 모든 설문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설문항목 설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Ⅲ. 기대효과

- 법 제정·적용·집행·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결과 분석과 국민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제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법전문가, 법과 현실의 괴리, 법치주의, 준법 수준, 법적용의 공정성, 국민의 권리, 법적 책임 강화,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biggest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among law, moral, and practice is peremptory normative that leads public consensus. In this regards, the law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social changes encounters with discrepancy with reality.
- Since the legal consciousness can appears mixed with the sense of moral, practice, and value judge and also the consciousness is form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members of society, the consciousness can seem differently by epoch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Therefore, these flows and changes need to be measured.
- Only with the constant efforts with consideration on the social change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right of the people can be protected in a suitable and timely manner. Moreover, constant efforts to improve related law are required for realization of the true constitutionalism.
- Meanwhile, more accurate measurement on the legal consciousness and more objective and meaningful analysis on the result can be achieved when the gap narrows down between law experts' and the public's as addressees on the consciousness. In addition, value-neutrality and exact outcomes can be secured with the closed disjunction on the consciousness.

- In other words, the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law-experts whom are individuals that possess influence over the jurial life of citizens, as well as whom are general addressees of the constitution themselves, will serve as a milestone to finding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rue rule of law.
- Thu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desirable legal development direction to implement the rule of law by drawing specific necessary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enforcement,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 **II. Main Contents**

- Investigation results regarding legal sentiment and jurial life of the law experts
  - Rate of the law experts who are feeling fair and democratic on the law tends to be higher than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on the private law.
  - High response rate indicates that ‘including related laws in a mandatory subject’ and ‘strengthening legal education for the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improvements of law education.
  - Regarding assessment on a level of law-abiding of our society, the result of 2009(the legal experts) has lower level than the result of 2015(the general public). Whereas, regarding self-diagnoses on the compliance, the result of 2009 and 2015 have a similar level.

- For a question asking whether you have willingness for concrete action to improve irrational laws, more than 2/3 of the legal experts answered 'Yes'. In addition, the professionals state their positive willing as law specialists to behave specific action to improve the law.
  - Furthermore, regarding a question asking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when you purchase defective goods, the law experts have more assertive volitions for changing the blemished goods and for using related system than the general public.
- Direction for realization of rule of law and for development of legislative system
- Regarding a performance estimation for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in Korea, it has high score in order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judicial branch, and administration. However, the respondents gave much higher points to the organization or the field where they are included in.
  - The respondents generally gave low pints on the degree of fulfillment regarding protection rights of the people, economic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rule of law for safety management. Particularly, the safety management sector got only 11.3%.
  - 68.3% of the law experts concurred with a constitutional reform. And for a question asking an area the revision needed, man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on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 Requirements t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flect public opinion on a legislation process, a system of a public hearing and

hearing pointed out as the same result in 2009 from the law experts. In addition, a little bit more respondents disagreed to a question asking whether there exist many statutory instruments that are against the upper-level laws.

- Meantime, in order to tackle conflicts between the upper-level laws and statutory instrument,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control power toward statutory instru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ewing authority by a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for examination on statutory instrument in the administration, and encouraging 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tatutory instrument are all should be improved.
-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law experts agreed with correcting or enhanc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ct(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Development Proposals and Awareness Improvements of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rule on a motion to abolish laws criminalizing adultery in 2015, the Alimony Valuation Standard posed against the guilty spouse and the affiliated individual was selected as the biggest impediment for civil lawsuit resolutions.
  - “Studies on Korean Legal Consciousness 2015” narrated that the general public leaned pro-statutory punishment on prostitution (58.9%) whereas legal experts tended to be against criminalizing the sex workers(54.0%).

- In a question that surveyed “legal necessities to enhance working environment” tailored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non-regular employment laws, implementation of legal framework on minimum wage,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hat order, displayed the most frequent response ratio; while many showed their concerns of the accountability(integrity) issues of juries in the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In a question that survey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majority(62.7%) responded that gender inequality still lingered in the society.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2009 survey results on legal experts(40.3%) and 2015 survey results on the general public(43.5%). The ratio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main caus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the patriarchal society, once again took the biggest proportion of the pie.
- Preemptive child abuse signs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was filed the most responses as the legal framework that has to be revamped to tackle child abuses, while public education facility expansion was given the most responses in regards to the proper operation of child education and child nursing facilities.
- Legal experts almost unanimously(98.8%) agreed with stricter Corporate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simple majority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Punitive Damage Legal Framework.
- Moreover, the most popular response to tackle “proper countermeasures for mass disasters” was imposing stricter legal responsibility on the concerned party(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same pattern

of imposing stricter legal responsibility on the concerned party(public/private polluters) was the result of the survey.

- Man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specific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AI must be transparent to the public. In a survey questio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he majority responded the necessity to repolish the legislation regard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ramework on legal bases and prep-legisl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ontingency.
- In the question that surveyed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effects from structural change brought forth by the liber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the respondents replied improving judicare quality, cracking down the corruption in the judicial branch, and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legal experts as the fields of improvement in that order.
- As one of the of aspects of the law school policy that has to be improved, administration authenticity topped the list with 37.0% of the total response, however, current professors and students of law schools responded that the matriculation ratio has to be expanded, 31.9% and 25.0% respectively.
- In a question that surveyed “capital punishment”, more than simple majority agreed to it. Regarding the issue of “declining life prolongation treatments”, many have expressed agreement.(2009 law experts: 77.6%, 2015 general public: 75.9%, 2016 law experts: 86.8%)



- The Abortion Law remains controversial as 50.9% and 12.8% of legal experts respectively have leaned pro-choice and supported the idea to expand abortion laws under medical/sociotechnical/legal bases.
- In a question that surveyed “legalizing same-sex marriage”, a stalemate between legal experts was observed, however, legal experts agreeing to provide benefits equal to that of the common-law marriages outnumbered their counterparts.(58.0% / 41.9%)

Research Results of Jurist Legal Consciousness Index

- The final score for Jurist Legal Consciousness Index was at 52.98. This number is line with the Public Legal Consciousness Index 2015 weighting method which shows slight divergence(53.58) from the public index.(52.88)
-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analysis in respective dimensions displayed that decentralized and equitable law enforcement/legislative agency is the top-priority necessities for improvement.
- Moreover, the law-abidance level of the members of society (government, local autonomous entities, court, corporation, citizen) was relatively low and needs improvement.

- The Jurist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2016, under the premise that constitutionalism is defined as a state wher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constitute law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researched the change of Korean law experts’ legal consciousnes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public’s consciousness through scientific analysis.

- This quantitative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address and provide vital pillars for future law legislation and enforcement.
-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outside factors such as social issues or government policies may pose as an altering variable. Additional limitations exist in survey questionnaires as it cannot cover every legislation related question within the survey.

### **III. Expectations**

- Building accurate study groundworks for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law experts by carrying out a time sequential result analysis with the change of epoch and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 Utilizing as basic materials for desirable improvements and developments to establish laws needed and enforc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of our society.

➤ Key Words: law experts, discrepancy between law and reality, rule of law, compliance level, due process of law, right of the people, reinforcement of legal liability, index of legal consciousness of law experts

# 목 차

요약문 .....	3
Abstract .....	11
제 1 장 서 론 .....	2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5
1. 연구의 필요성 .....	25
2. 연구의 목적 .....	2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8
1. 연구의 범위 .....	28
2. 연구의 방법 .....	32
제 3 절 정량조사 표본설계 · 설문항목 선정 .....	38
1. 연구의 특징 .....	38
2. 표본설계와 설문항목 개발 .....	52
3. 실사 진행 결과 .....	75
4. 검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77
제 4 절 정성조사 표본설계 · 설문항목 선정 .....	79
1. 정성조사의 필요성 .....	79
2. 정성조사 범위 및 단계 .....	80
3. 정성조사 표본 설계 및 구성 .....	81
4. 정성조사 진행 과정 .....	83
5.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84

제 5 절 연구의 한계 .....	89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	89
2. 조사의 한계와 주요 사건 .....	89
제 2 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	119
제 1 절 개 관 .....	119
제 2 절 법에 대한 정서와 법교육 현황 .....	121
1. 법에 대한 느낌 .....	121
2.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	126
제 3 절 법전문가의 법생활 .....	130
1. 사회의 준법 수준 .....	130
2. 준법수준 자가진단 .....	136
3. 악법에 대한 인식 .....	141
4. 법 개선 의지 및 실천 .....	144
5. 법생활과 권리의식 .....	148
6. 법률 용어에 대한 인식 .....	150
7. 법적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54
제 3 장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 .....	159
제 1 절 개 관 .....	159
제 2 절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	161
1.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법치주의 실현 .....	161
2.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166
제 3 절 헌법 개정 .....	171
1. 헌법 개정에 대한 태도 .....	171
2.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 .....	174

제 4 절 입법 과정 개선 .....	179
1. 입법과정의 국민의견 반영 .....	179
2. 행정입법의 개선 .....	182
3.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 .....	188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	193
제 1 절 개 관 .....	193
제 2 절 국민의 권리 보호 .....	196
1. 간통죄 폐지 .....	196
2. 성매매 종사자 처벌 .....	199
3. 근로환경 개선 .....	203
4. 국민참여재판제도 .....	207
5. 양성 평등 .....	211
제 3 절 사회 복지 .....	218
1. 아동학대 문제 .....	218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	222
제 4 절 안전 관리 .....	224
1. 기업의 법적 책임 .....	224
2.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 .....	229
3.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 .....	233
4. 통일을 위한 준비 .....	236
제 5 절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양성 .....	239
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 .....	239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 .....	240

제 6 절 생명권과 법질서 .....	244
1. 사형 집행 .....	244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248
3. 인공임신중절 .....	251
제 7 절 기타 법제 .....	256
1. 환경오염 .....	256
2. 동성혼 .....	259
제 5 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	269
제 1 절 지표 개발의 의의와 과정 .....	269
1.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배경 및 의의 .....	269
2.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개발 절차 .....	270
제 2 절 전문가 가중치 산정 .....	272
1. 법전문가 법의식 중요도 산출 결과 .....	273
2.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산출 방법 .....	278
제 3 절 전문가 지표 결과 분석 .....	278
1. 전체 법의식 지표 .....	278
2. 법에 대한 관심 .....	282
3. 법에 대한 인식/정서 .....	293
4. 법에 대한 준수 .....	311
5.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324
6. 법의 실효성 보장 .....	338
7. 법의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350
8. 법의식에 대한 판단 .....	362

제 6 장 결 론 .....	377
참 고 문 헌 .....	385
<b>【부록 I】</b> 교차집계표 .....	397
<b>【부록 II】</b> 최종설문지 .....	503
<b>【부록 III】</b>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52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 조사연구는 1994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1996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 2008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 2015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부정기적이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법의식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역사와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도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도 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적인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변화의 큰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이처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법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다양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수행하기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온 법의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

1) 법치주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도 본 연구자는 영미의 “Rule of Law”나 법에 따른 통치라는 의미의 “法治”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및 설문항목 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여년 간 수행해 온 법의식 연구와도 같은 목표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법의식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가치중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법의식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입법·행정·사법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수범자의 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좌표 설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률의 특성상 여론이나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법해석과 법적용을 위하여서는 법의 수용자인 일반국민의 법의식뿐만 아니라 입법·법적용·법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체계적·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전제로 각 설문간 연관관계 분석, 설문간 교차 검증이 가능한 문항설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 1,000명에 대하여 1996년 이래 채택하여 온 전통적인 분야별 설문조사 방식과 함께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법인식을 수치화한 법의식 지표 산출 방식도 도입하여 발전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법전문가의 법인식에 대해서도 6개 차원에 대하여서는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차원별 설문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추가로 개발된 1개 차원에 대하여서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판단을 더하여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FGI 그룹별 정성조사 방식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채택하면서도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 인터뷰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정성조사 수준과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sup>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친화적 법제도를 수립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과 법의 지배에 따른 법의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수범자로서의 일반 국민이 가지는 법의식과 함께 법의 제정·적용·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전문가, 즉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법제·법무 관련 부처 담당자, 각 부처의 법무·입법 담당자, 기타 법률종사자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본 연구는 법제정·법적용·법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 즉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법제·법무 관련 부처 담당자, 각 부처의 법무·입법 담당자, 기타 법률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 방향 및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히 법전문가들의 법에 대한

2) 법분야에 있어서의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Mike Mcconville · Wing Hong Chui 편저, 『Research Methods for Law』,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pp.1-229에 잘 설명되어 있음.

느낌이나 정서·생활태도를 판단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전의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의 시계열적 비교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문항목들을 개발하였다. 이는 향후 법의 제정·집행·적용·해석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법전문가의 정서·법생활 관련 설문뿐만 아니라 분야별·대상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나 법제 발전 방향에 관한 설문, 그리고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으로 구성하고, 법전문가 법의식 측정에 필요한 법의식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수치화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향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에 따른 표본 설계 및 설문 항목 개발과정 등에 대하여서는 이 장 제3절에서 다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아직까지 조사대상인 법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법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조작적 정의로 규정하였다.

국어사전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다.<sup>3)</sup>

3)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사전·국어지식 - 사전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10.20. 최종검색)

본 연구에서 법전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적용하여 법전문가의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법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sup>4)</sup>에서의 법과 관련된 직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법 관련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 ·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의회의원 · 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1 국회의원 11102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201 정부행정 관리자	12010 정부행정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11 대학 교수	25111 인문계열 교수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12 변호사	26120 변호사		
	2613 법무사 및 집행관	26131 법무사 26132 집행관		
	2614 변리사	26140 변리사		
	27 경영 · 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1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27111 노무사
			2712 회계사	27120 회계사
			2713 세무사	27130 세무사
2714 관세사			27140 관세사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 ·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11 경찰관	41112 일반 경찰관

4) 통계청 홈페이지 - 홈 - 새소식 - 공지사항 - 전체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 - 첨부파일(07-0702 표준직업분류 총설(고시).hwp)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51624](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51624), 2016.06.30. 최종 검색)

또한, 법전문가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서는 위에서와 같은 법전문가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법전문가 관련 직종을 참고하여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즉, 법전문가의 정의와 유형별 대상을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과 주제별 가설에 따라 분류하고, 표본을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정의를 광의의 개념으로 현재의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예비 법전문가까지 포함하여 두 집단의 의식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예비 법전문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학원생, 법학과 박사과정생 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법전문가의 분류는 2009년 법전문가 범의식 조사연구와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09년의 유형별 표본집단을 유사한 수준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유형별 분류는 크게 입법, 사법, 행정, 학계를 모두 포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민간 분야(변호사 및 법률서비스자격자)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 입법 내지 규칙제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가직은 5급, 지방직은 7급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어사전의 정의와 같이 법 분야에 종사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광의의 개념으로 법전문가를 포함하였다. 즉, 2009년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사대상을 표본설계상 추가하여 세분류를 하였다.

입법 분야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 지방직 7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견주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입법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및 입법 관련 보좌업무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계 분야에는 광의의 법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해 법제나 법 관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과 일부 대학교의 관련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하였다. 2009년에는 예비 법전문가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 법전문가를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수년째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도 예비 법전문가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법 분야에서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외에도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을 포함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전문가의 역할이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 등과 같이 법률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밀착형 법전문가들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대상 정의 논의 과정

입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법전문가로 볼 수 있음(2차 전문가 회의) → 지방의회 의원 포함 결정(5차 전문가 회의)</li> </ul>
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전문성, 입법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은 5급, 지방직은 7급 이상으로 한정 해야 함(4차 전문가 회의) → 국가직 5급, 지방직 7급 이상으로 결정(4차 전문가 회의)</li> </ul>
사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사, 검사는 포함(1차 전문가 회의)</li> <li>· 법원공무원 : 연구 대상 포함 결정(6차 전문가 회의)</li> </ul>
학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 법학 교수 포함(1차 전문가 회의) →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구분(10차 전문가 회의)</li> <li>· 법 관련 연구원 : 본 연구 대상 포함 결정(5차 전문가 회의)</li> </ul>

법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사법 분야로 포함(2차 전문가 회의) → 민간(변호사를 사법분야에서 별도 분류(4차 전문가 회의))</li> <li>· 변호사 외 법률 전문가 :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도 본 연구 대상에 포함(10차 전문가 회의)</li> </ul>
예비 법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과정생 포함(1차 전문가 회의)</li> <li>· 로스쿨생 포함 결정(5차 전문가 회의)</li> </ul>

[표 3] 법전문가의 정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법을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1. 범 위 현재의 법전문가와 예비 법전문가의 법의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예비 법전문가까지 포함
	2. 분 야 - 입법 :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사법 : 판사, 검사, 법원공무원 - 행정 : 국가직 5급, 지방직 7급 이상 - 학계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과 교수, 법 관련 연구원 - 법률 전문가 : 변호사, 변호사 이외 법률 전문가 - 예비 법전문가 : 로스쿨생, 박사과정생

## 2. 연구의 방법

### (1) 연구 방법

1990년대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이나 법전문가들의 법의식 연구를 통하여 법의식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 온 바 있다. 특히, 동 연구들은 법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법의식을 추상적·일방적인 추론을 통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사연구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며, 실태조사에

서는 조사방법론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의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각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 분석 시에 유사 조사 결과나 연구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정확성과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한편, 법전문가들에 대한 법의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온 결과들을 사회학, 법학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행정분석 등 조사결과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을 병행한다. 그리고, 설문문항 개발 과정 및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 사회학, 통계학, 경영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 i) 수십여개의 선택식 설문항목을 통하여 법의식을 측정하도록 설계한 정량조사와 ii) 각 설문항목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심층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성조사 및 iii)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룹별 심층면담 형식의 정성조사 등 본 연구수행에 적용한 조사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2) 조사 방법

### 1) 조사 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태조사 방법은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함께 채택하였다. 이는 법전문가의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함께 분석하기 위함이다.



정량적 자료의 수집 방법은 면대면, 전화, 온라인, 우편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응답 방식은 응답자 기입(자계식), 조사원 기입(타계식) 등이 가능하다. 정성조사는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집단면접 방식인 FGI(Focus Group Interview)<sup>5)</sup>와 개별면접 방식인 IDI(In Depth Interview)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본 연구의 정량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에 속한 설문대상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대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 면접(Face to Face)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sup>7)</sup> 다만, 고도의 업무 집중도를 요하는 법전문가 응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원 기입 방식보다 응답자 기입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 기입 방식,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송부 후 응답자 기입 방식, 면대면 설문지 배포 후 응답자 기입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정성조사에서는 정성조사의 목적과 법전문가 집단 특성에 따라 방식을 차별화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정성조사는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정량조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량조사 설문문항 개발 시에 설정하였던 다양한 가설에

---

5) 표적집단면접법(標的集團面接法; Focus Group Interview)이라고도 하는 FGI 조사방법은 “목적에 따라 모여진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분석 방법. 표적시장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6~12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 기법으로, 토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정성적(qualitative) 조사방법이다. 조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문제 핵심을 심층적 혹은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 2016.10.12. 최종검색))

6) 하지철, 『마케팅조사 실무노트 I』, 이담출판사, 2010, pp.136-137.

7) 한근식, 『조사연구방법론』, 경문사, 2000, p.39.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정량조사 실시 기간에 병행적으로 진행하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정성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정성조사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정량조사와 병행하는 정성조사의 경우에는 정량조사의 설문 항목과 연관된 문항을 개발하여 법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IDI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며, 결과 해석을 위한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FGI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FGI는 다수의 대상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을 하게 하면서 청취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집단질문지법과 유사하지만, 이것은 응답자 개개인이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모인 전체 대상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면접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접법은 개인적 문제 보다 집단 전체와 관련된 주제나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다.<sup>8)</sup> IDI는 주로 개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1시간 내외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이다.<sup>9)</sup>

[표 4] 본 연구의 조사 방법 형태

구 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얻고자 하는 자료 형태	정량적 자료	정성적 자료
자료수집 방법	면 접	집단면접(FGI), 개별면접(IDI)
응답 방식	조사원 기입과 응답자 기입 방식 병행	- 정량조사와 동시 수행 : 개별면접(IDI), 1대1 의견 교환 - 정량조사 완료후 수행 : 집단면접(FGI), 다수 의견 교환

8) 배규한·이태림·이기재,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고려정보산업, 2000, p.47.

9) 하지철, 앞의 책(마케팅조사 실무노트 I), pp.140-141.

한편, 면접조사 방식의 정량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집중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종이설문지 방식(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면접(Face To Face) 조사는 일반적으로 종이 설문지 방식인 PAPI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로 진행되는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조사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API 방법을 적용한 바 있으나, 본 조사연구의 경우 각 설문이나 응답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응답자의 평소 업무량을 고려하여, 응답자인 법전문가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종이 설문지 방식인 PAPI 방식을 채택하였다.<sup>10)</sup> 특히, 종이 설문지의 경우 조사원 설명 방식 후 기입방식보다 법전문가가 설문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설문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크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PAPI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처리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Survey Craft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Survey Craft 프로그램에서는 로직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자료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법전문가가 아닌 조사원이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조사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경우 설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조사

---

10) CAPI는 종이 설문지를 프로그램화하여 구축한 것으로 한 화면에 2~3개 정도 문항만 보여 줄 수 있어 응답 시간이 길어지며, 설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수행 업체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구축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조사원 별도 교육 및 숙련 기간이 필요하여 비용 및 시간이 증가된다는 점에도 부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조사기법을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CAPI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최효미, 이상호, 성재민, 김기만, 배기준, 『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 -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방법』, 한국노동연구원, 2012, pp.47-51.).

원에게는 조사원지침서를, 응답자에게는 응답요령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조사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표 5] 본 조사에서의 면접 조사 방법

구 분	PAPI	CAPI
장 점	휴대성이 좋음 설문흐름 파악 용이 응답자에게 익숙한 방식	자료처리 시간 단축 데이터 안정성
↓		
조사 대상 특성 고려 : 법전문가의 직업적 특성 상 설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전문가들에게 시간을 주고 응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b>조사 대상을 고려하여 PAPI 방식 적용</b>		
보완 방안 : Survey Craft를 통한 자료 입력, 조사원 지침서 및 응답 요령서 제공		

## 2) 면접 조사 방법별 비교

### ①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조사원이 종이 질문지를 읽고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조사 방식으로 휴대성이 좋으며 CAPI 방법보다 응답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설문 흐름 파악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조사원에 의한 로직 에러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료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또한 조사 중간 잠정치 산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PAPI로 진행 시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Survey Craf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입력을 실시한다. Survey Craft는 프로그래밍에 논리적 오류가 입력될 경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중지되어 에러 경고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한 점검이 가능해지므로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②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원이 컴퓨터에서 질문지를 읽고 컴퓨터에 응답 내용을 입력하는 조사 방식으로 PAPI 방법에 비해 자료처리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데이터의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휴대성이 좋지 않으며, 구축 및 관리 시간이 길다. 또한 비용 부담과 응답자의 부담 또는 거부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본 확인을 통한 입력오류 확인 불가하며, 별도의 조사원 교육 및 숙련 시간 필요하다.

최효미 외 3인(2012)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CAPI 도입 시 품질의 효과에 대해 연구에서도 스킵에러는 감소시키지만, 응답률과 응답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응답이 번거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CAPI가 응답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sup>11)</sup>

## 제 3 절 정량조사 표본설계 · 설문항목 선정

### 1. 연구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법전문가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1회 이상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법전문가의 분류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법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되 2009년 조사 대상 비율을 감안하여 반영함으로써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11) 최효미, 성재민, 이상호, 배기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CAPI 이행효과: 실험 설계 및 차수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제13권 3호, 2012.11., pp.105-136.

조사 항목에서는 법전문가의 법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시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전문가의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신규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법의식 지표 항목을 포함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항목 개발 과정에서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 연구나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대하여 보완을 시도한 다양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전문가의 법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과 2015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설문 항목들을 선정하고, 조사결과의 원인 분석이 어려웠던 항목들을 선별하여 하위 항목을 개발함으로써 각 설문의 구체적인 결과분석과 법제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설문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거나 법률용어가 아닌 경우 또는 보기가 부정확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 상황과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목적에 맞게 조정하였다.

둘째, 최근 사회 문제(아동학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시설, 기업의 법적 책임, 인공지능, 대형 재난 등)를 검토하여 법전문가의 시각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법전문가들의 인식과 경험에 기인한 법의식을 바탕으로 선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발전방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었던 헌법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의 기능수행에 대한 법전문가의 인식과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고, 상세항목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문항 설계 방식을 통하여 문항간 연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설문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행의 방향성과 개선방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수 산출을 위해 2015년 개발되었던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 간 법의식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법전문가 시각으로써의 법의식 관련 판단 지표를 추가하여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조사 대상 및 조사 설문항목은 법학, 통계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총 11차례에 걸친 자문단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 전문가회의 참가 자문단 구성 현황 >

전공 분야	인원 구성
법 학	교수 · 연구원 · 변호사 등 40여명
통계학	1명
사회학	1명

회차별 상세 전문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1차 전문가 회의 (2016년 2월 3일)

사업 방향
2016년 사업의 방향성 검토
조사 대상
법전문가를 분야별, 성별, 지역별로 분류하는 표본 수 확정 필요
설문 항목
비교가치가 높은 시계열 분석 대상 항목 검토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비교 분석 대상 항목 검토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 적합한 설문 항목 - 인식과 행위 판단 설문 항목 개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의 설문지 참조 → 영미식 사례별 행위판단 항목 검토 - 연구 활용도 측면에서 입법지원 기능이 있는 가설과 설문 항목 개발 - 지표 개발의 필요성 → 법전문가의 특성상 지표 구성은 부정적 의견



[표 7] 2차 전문가 회의 (2016년 3월 9일)

**조사 대상**

논의된 조사 대상

- 입 법 :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의회
- 사 법 : 판사, 검사, 변호사
- 행 정 : 국가직, 지방직
- 학 계 :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법 관련)
- 민 간(기타) : 기업 법무팀, 법무사

법전문가의 경력도 고려 필요

- 1,000 표본을 직업, 경력 등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결과의 통계적 의미가 없음

법전문가의 명확한 범위 필요

예비 법전문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유보

**설문 항목**

설문 항목 구성

- section 1 :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과 시계열 비교
- section 2 :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과 비교
- section 3 : 새로운 설문 구성

section별 설문 항목 규모 검토

- section별 총 문항 수에서 1/3씩 배분 검토
- section1, 2의 심층분석을 위한 하위 항목 개발 필요성

[표 8] 3차 전문가 회의 (2016년 3월 23일)

조사 대상
조사 방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량조사 : 1,000 표본</li><li>- 정성조사 : 50~100 표본 예정</li><li>- 표본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 유형, 성별, 업무 기간(검토 필요)</li></ul>
모집단 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확하고 구체적인 모집단 입수는 한계가 있을 것</li></ul>
1,000명 표본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려사항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표본설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임</li></ul>
설문 항목
전문가별로 작성한 설문항목(안)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09년 시계열 비교 : 문1, 문4, 문4-1, 문6, 문6-1, 문7, 문7-1, 문8, 문13, 문16, 문25, 문26, 문28, 문28-1, 문30</li><li>- 2015년 일반국민 비교 : 문1, 문4, 문4-1, 문5, 문5-1, 문10, 문11, 문12-1, 문14, 문18, 문15, 문16, 문17, 문19, 문20, 문23, 문25, 문28, 문29</li><li>- 시의성 없는 문항 제외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면책조건부 진술 등</li><li>- 신규 문항 검토 : 근로 관련 문항, 테러방지법, 청년실업, 동성혼, 난민관리 등</li></ul>

[표 9] 4차 전문가 회의 (2016년 4월 6일)

조사 대상
<p>세부 조사 대상의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를 원칙, 기초의회 일부 포함</li><li>- 변호사의 범위 검토(국선, 개업변호사 등)</li><li>- 행정 분야 : 법무 관련 담당자 한정 검토, 법에 대한 전문성 검토(기존 5급 이상)</li></ul> <p>조사 대상의 지역적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전문가 특성상 지역적 구분 필요성 검토</li><li>- 행정 분야 이외에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결과는 한계</li></ul>
설문 항목
<p>시계열 및 일반국민 비교 항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교 항목별 하위 항목 : 문항별 응답 이유 항목 개발</li></ul> <p>문항 순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관이 있는 항목 순으로 재배열</li></ul> <p>사회적으로 민감한 항목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 등</li></ul> <p>최근 이슈 추가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공지능 관련 법, 가슴기 살균제 등</li></ul> <p>인식/행위판단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전문가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할 때 사례 문항은 부정적</li></ul>

[표 10] 5차 전문가 회의 (2016년 4월 27일)

**조사 대상**

세부 조사 대상의 명확화

-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를 원칙, 기초의회 일부 포함
- 변호사는 국선은 사법 분야, 민간(법무법인/개인/기업 법무팀)은 별도 분류
- 행정 분야 : 법무부, 법제처, 부처별 법무담당관실과 이외 공무원(국가직 5급, 지방직 7급 이상)
- 학계 : 대학 교수, 법 관련 연구원(국책 연구원, 대학 연구소 등)
- 예비법전문가 : 로스쿨과정생, 박사과정생

조사 대상의 지역적 구분

- 전체 지역별 결과, 분야 x 지역별 결과는 산출 가능
- 세부 직업 x 지역별 결과는 산출 불가능

**설문 항목**

시의성 없는 항목 제외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군가산점제도 등

신규 항목 개발

- 법치주의 평가 및 실현 정도, 법과 현실의 일치 정도, 교통 신호 사례, 가족여행 환불 사례, 기업의 법적 책임, 인공지능, 대형 재난, 통일 준비, 아동학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무료 변론, 인권 침해, 김영란법, 로비스트 합법화, 정치 기부금, 전자금융 보안,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문항 순서 조정

- 입법과정 국민 참여 보장, 헌법 개정은 별도 분류

[표 11] 6차 전문가 회의 (2016년 5월 18일)

조사 대상
세부 표본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 법 : 130명(국회공무원 50, 국회의원 50, 지방의회 30)</li><li>- 행 정 : 200명(국가직, 지방직 각 100)</li><li>- 사 법 : 220명(판사 50, 검사 50, 국선변호사 90, 법원공무원 30)</li><li>- 학 계 : 200명(교수, 법 관련 연구원)</li><li>- 민 간 : 100명(법무법인/개인 사무소/기업 법무팀)</li><li>- 예비 법전문가 : 150명(로스쿨, 사법연수원, 박사과정 각 50)</li></ul>
조사 방법
정량조사 방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전문가 업무 특성상 PAPI 방법이 효과 (일반국민 법의식에서는 CAPI 적용)</li></ul> 정성조사 방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층적 결과 해석이라면 50명까지는 필요 없음. 20명 내외 수준이 적절 (의견 분산 등 고려)</li></ul>
설문 항목
문항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치주의 실현 정도 문항 통합</li></ul> 문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제도의 완벽성, 부문별 법준수 정도</li></ul> 문항 삭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통신호 사례, 가족여행 환불 사례, 기업의 법적 책임, 인공지능, 대형 재난, 통일 준비,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무료 변론, 인권 침해, 로비스트 합법화, 정치 기부금, 전자금융 보안,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li></ul> 문항 추가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악법도 법에 대한 인식, 헌법개정</li></ul> 법전문가의 지표 개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와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li></ul>

[표 12] 7차 전문가 회의 (2016년 5월 25일)

**설문 항목**

문구 수정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문구 통일(공정성, 형평성 등)
- 법치주의 실현정도(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분리)
-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학연, 지연, 혈연으로 수정)
- 흐름에 따른 보기 내용 순서 재배치

문항 삭제

- 교통신호 사례, 가족여행 환불 사례,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사라질 직종, 판결), 근로자의 무료 변론, 인권 침해, 산업 구조조정

문항 추가 및 보완

- 환경오염 유발 기업 규제 문항 추가
- 헌법개정 문항은 영역별로 세분화  
(헌법총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별 하위 영역 구성)

법전문가의 지표 개발 검토

-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 선정
-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 pool 검토  
→ 총 14개 지표 중 5개 지표 선정

[표 13] 8차 전문가 회의 (2016년 6월 1일)

**정성 조사**

정성조사 방안

-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15명) 정성조사 진행
- 정량조사 후 FGI(3개그룹, 15명) 정성조사 추가 진행

진행,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조사 50명

**설문 항목**

문항 조정

- 법치주의 실현정도(일자리 창출은 다른 항목과 수준이 맞지 않아 삭제)
-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과가 없다는 이유에 대한 보기 내용 문구 조정  
(낮은 전환 비율 → 낮은 전환률 등)
- 인공지능 관련 도입되어야 할 사항 보기 내용(절차 규제에 대한 의미 명확화)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향 방향(국가의 개입 범위 → 국가의 배상 책임 확대)
- 통일 준비, 아동학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문항의 보기 내용 문구 조정 등

문항 추가

-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 개선 의향 문항 추가

법전문가의 지표 개발 검토

-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 5개 내용에 '법전문가로서 볼 때' 추가

[표 14] 9차 전문가 회의 (2016년 6월 8일)

조사 대상
변호사 자격증 등 법 관련 자격증 여부에 따른 결과도 유의미 할 것 - 자격증 소지 여부 항목 추가
정성 조사
정성조사 방안 - 정성조사는 정량조사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 → 정성조사에 대한 방식은 추후 재검토
설문 항목
문항 순서 조정 - 법치주의 부문을 법전문가의 법생활 부문 뒤로 이동
문항 삭제 - 법과 현실의 일치 정도
문항 조정 - 법치주의 실현 정도(안전한 사회 → 안전 관리) - 법률시장 개방의 효과 유무 문항 추가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향 방향, 아동학대, 환경오염, 간통죄, 헌법개정 문항 보기 내용 조정
법전문가의 지표 개발 검토 -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 5개 내용에 ‘법전문가로서 볼 때’ 문구 삭제



[표 15] 10차 전문가 회의 (2016년 6월 15일)

조사 대상
변호사 : 국선과 민간으로 분류 불필요 - 변호사로 통합하여 별도 분류(법원/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법률사무소, 기업 법무팀 구분없이 변호사로 하고, 변호사 외의 법률관련 자격 소지자를 민간분야로 포함)
학계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대학 교수, 법 관련 연구원입법 130명, 행정 200명, 사법 150명, 학계 200명, 민간 170명, 예비 법전문가 150명으로 조정

정성 조사
정성조사 방안 - 정성조사 시 조사할 항목 선정 검토 필요 → 2009년 정성조사 항목, 개발 과정 중 삭제 항목 등을 검토

설문 항목
문항 순서 조정 - 현행 법제 부문과 사회문제와 법의식 부문 통합 - 연관 항목 순으로 문항 재배치
척도 문항 - 시계열 분석 용이를 위하여 4점 척도 원칙 (새로 개발된 항목인 법치주의 부문, 지표 부문은 5점)
문항 통합 -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한 문항으로 통합 - 간통죄 하위 항목을 상위 문항과 통합
문항 조정 - 불량품 : 소비자 고발센터 문구 조정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 인공지능 : 규제 의견 → 육성과 규제 문항으로 변경 - 법률시장 : 효과 여부 문항 → 개방에 대한 대비 정도를 묻는 문항 - 헌법 개정 필요 사항 : 2순위까지 묻고, 응답 내용의 상세 개정 내용을 묻는 것 추가 - 비정규직보호법은 근로환경 개선 문항으로 변경
문항 신규 개발 - 생명(낙태), 동성혼, 입법과정 관련 문항 개발 필요
문항 삭제 - 분쟁해결 방법, 김영란법, 규제완화
법전문가의 지표 개발 검토 -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 5개 내용에 '법전문가로서 볼 때' 문구 삭제

[표 16] 11차 전문가 회의 (2016년 6월 22일)

조사 대상
변호사 :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구분 추가
예비법전문가 중 사법연수원생 제외(기관차원 협조 불능)에 따른 표본설계 변경
- 입법 150명, 행정 210명, 사법 90명, 학계 210명, 민간 220명, 예비 법전문가 120명으로 조정

정성 조사
정성조사 방안
- 정성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
→ 정량조사 문항 중 추가 설문 작성 후 논의

설문 항목
생명/낙태 관련 문항 검토
- 사형 집행,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여부 문항 결정
- 낙태 허용 범위 문항 결정
입법 관련 문항
- 민주성/효율성/절차적 정당성/체계성/위헌성 차원에서 문항 개발
문항 순서 조정
- 입법 관련 문항은 법제 발전방향 부문으로 조정
- 법제 발전방향 부문은 법치주의 부문 다음으로 순서 조정
문항 조정
- 헌법 개정 사항 :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 추가
- 동성혼 : 주택공급정책, 의료보험 등 일부 복지제도로 수정
- 생명 : 사형 집행,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인공임신중절(낙태)로 수정

## 2. 표본설계와 설문항목 개발

### (1) 표본설계

####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표본설계 시 2009년 조사대상을 기본으로, 법전문가 기준 및 2009년 조사 결과 비교 등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재분류 및 재구성하였다. 분야별로는 2009년 입법, 행정, 사법, 학계 총 4개 분야에서 2016년에는 입법, 행정, 사법, 학계, 민간, 예비 법전문가 등 총 6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11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에서 다양한 법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집단을 정확히 분류하고 현재의 법전문가와 예비 법전문가의 의식 차이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법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법원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하였다. 또한 학계 분야에는 법과 관련된 연구원도 포함하였다.

둘째, 민간분야 법전문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변호사는 기존 사법 분야에서 별도 분류하고 특히, 민간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에서 변호사와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자격자로 분류하고, 자격증 종류를 적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학계 분야에서는 교수의 의식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법학 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을 구분하였다.

셋째, 현재 법전문가와 예비 법전문가의 의식 차이 비교를 위해 학계의 박사과정생을 별도 분류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시행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생도 포함하였다.

[표 17] 조사대상 분류 비교

2009년 분류		2016년 분류		전문가 의견
구분	직업	구분	직업	
입 법	국회공무원	입 법	국회공무원	<b>1. 다양한 법전문가 포함 필요</b> - 법원공무원 포함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다룸) - 지방의회 포함 (지방의 조례를 제정)  <b>2. 정확한 분류 필요</b> - 변호사는 기존 사법 분야에서 별도 분류 - 학계 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대학 교수, 법 관련 연구원으로 구분 - 법과 밀착되어 있는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서비스자격자 포함  <b>3. 예비 법전문가 의식 비교</b> - 기존 학계 분야의 박사과정생을 별도 분류 - 2009년 이후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 (로스쿨생) 신규 포함
	국회의원		국회의원	
행 정	국가(5급 이상)		지방의회(광역)	
	지방(7급 이상)	행정	국가(5급 이상)	
사 법	판사	사 법	지방(7급 이상)	
	검사		판사	
	변호사		검사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학 계	교수(법대)	학 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사과정생		법과대학 교수	
			법 관련 연구원	
		민 간	변호사	
			변호사 외 전문자격증 소지자	
		예비 법 전문가	로스쿨생 박사과정생	

## 2) 표본배분

제시한 ‘법전문가’의 모집단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상위 집단 간 결과 비교가 의미 있을 것이라 여겨지므로, 가능한 분야별로 유사한 크기로 할당하였다. 또한 상위 집단별로 비교분석을 염두에 두고 배분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상위집단 표본 규모에서 인원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을 진행하였다. 세 가지의 표본 배분 원칙은 아래와 같다.

[표 18] 표본 배분 원칙

표본 배분 원칙	내 용
변화된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대표성 확보	수집 가능한 모집단 현황 자료를 통해 규모가 큰 직업(공무원, 민간법전문가 등)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2009년 연구에서보다 크게 할당
해당 집단별 안정적 통계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확보	직업별 최소 분석단위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별 최소 30개 이상 표본 배분
변화된 환경 및 조사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표본 배분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중요 표본이지만, 실제 모집단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적으며 응답자 접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 표본만을 할당하는 등 조사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할당

## 3) 조사대상 분류 및 표본할당

2009년 연구에 포함되었던 9개의 직업(국회공무원, 국회의원, 국가/지방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박사과정)은 그대로 유지하여 별도 산출을 통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전문가 집단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을 사법 분야로 추가 구분하였다. 기존 사법 분야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생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를 별도로 분류

하고 법원 공무원(5급 이상)을 포함하였다. 변호사는 기존의 사법에서 별도 분류하여 민간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고, 법무사 등의 법률서비스자격자(생활밀착형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법전문가) 역시 민간 분야로 분류하였다. 변호사 외의 법률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 법전문가에는 법무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sup>12)</sup>.

그리고 현재의 법전문가와 예비 법전문가 간의 인식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예비 법전문가 분류를 추가하였다. 예비 법전문가 분류에는 로스쿨생, 박사과정생이 포함되었다. 입법 분야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추가되었으며 학계 분야에는 법 관련 연구원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법전문가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가 산출되며, 다양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결과도 수집 가능하다. 분야별로 보면 입법 150명, 행정 210명, 사법 90명, 학계 210명, 민간 220명, 예비 법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및 직업별 세부 표본 할당은 다음과 같다.

[표 19] 각 분야별 및 직업별 세부 표본 할당

구분	직업	모집단(명)	'16년 표본수(명)
계		-	1,000
입법 (150)	국회공무원 (입법조사처)	140	50
	국회의원 및 보좌관	300	50
	지방의회(광역)	789	50
행정 (210)	국가(5급이상)	20,778	105
	지방(7급이상)	189,084	105

12) 6,623명(법무사) / 1,838명(관세사) / 18,504명(회계사) / 4,394명(노무사) / 11,762명(세무사) / 8,176(3,402)(특허청 등록 변리사(변호사 제외한 변리사 수))

제1장 서론

구분	직업	모집단(명)	'16년 표본수(명)
계		-	1,000
사법 (90)	판사	2,894	30
	검사	2,032	30
	법원공무원	-	30
학계 (21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0
	법과대학 교수		70
	법 관련 연구원		70
민간 (220)	변호사	24,777(변호사)	110
	전문자격증 소지 법전문가(법무사 등)	46,523(전문자격증 소지자)	110
예비법 전문가 (120)	로스쿨생	6,273	60
	박사과정생	-	60

본 연구의 표본 설계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 유의적 표집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법전문가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어 조작적 정의를 통해 법의 제정/집행/판단/연구/적용과 관련된 직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특성상 본 조사에서는 확률 표집이 아닌 비확률 표집을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조사 대상인 지방 공무원의 모집단 수(189,084명,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가 다른 집단(예, 국회의원 300명, 판사 2,894명 등)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확률 표집을 적용할 경우 일부 집단의 표본 배분 자체에 한계가 있다.

유의적 표집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전체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세부 직업별 법의식 차이도 비교하기 위해 동일 분야 내 직업별 표본 할당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sup>13)</sup>

13) 유의적 표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Earl R. Babbie. 고성호 외 10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제11판』, 2007, pp.255-258 참조.

(2) 조사 항목

1) 조사 항목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의 조사 항목 개발을 위한 절차는 선행 연구 비교 검토를 통한 문항 선정, 법전문가 특성을 반영한 신규 항목 개발을 거쳐 문항을 구성하였다.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 항목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0]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 항목 개발 과정



2) 선행 및 관련 연구 검토

국내 법의식 관련 연구는 최근 조금씩 시도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많은 부분이 특정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법의식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인 법의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법의식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법의식 및 법감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08년, 2015년 법의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법전문가를 대상으로는 2009년 진행한 바 있으며, 2016년도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법의식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 법의식 관련 주요 연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1] 법의식 관련 조사 목록

구 분	조사명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사항	조사 방법	본 연구 적용
1	2015년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2015)	한국 법제 연구원	일반국민 3,000명	사회변동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 현행 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변화	면접 조사	일반 국민 비교 문항 선정
2	최근 부패방지 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2015)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일반국민 1,515명 이해관계자 641명 법률전문가 224명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예시 문항, 주요 쟁점에 대한 문항	면접 조사	문항 구조 적용
3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2)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성인 1,800명	법이미지, 법제정 절차, 법의 기능, 법준수, 법집행 등	면접 조사	-
4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2012)	법률 소비자 연맹	일반국민 1,100명	사법제도개혁, 법인식, 법생활 및 법지식, 현행 법제 등	면접 조사	-

제 3 절 정량조사 표본설계 · 설문항목 선정

구 분	조사명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사항	조사 방법	본 연구 적용
5	법전문가 법의식조사 (2009)	한국 법제 연구원	법전문가 1,000명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법인식과 정서, 법생활, 법정립 및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 법령에 대한 견해 등	면접 조사	시계열 비교 문항 선정
6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2008)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성인 1,200명	법의 기능, 법준수, 법집행 등	면접 조사	-
7	국민법의식 조사 (2008)	한국 법제 연구원	일반국민 3,000명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법인식과 정서, 법생활,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 등	면접 조사	-
8	법의식에 대한 일반국민과 청소년 의식 조사 (2007)	법무부	성인/청소년 각 1,000명	법인식, 법의 필요성, 법의공정성, 준법 의식, 생활 속의 법률지식, 현재 법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국민형사재판참여 제도에 대한 의견 등	개별 면접 (성인) 집단 면접 (청소년)	-
9	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2005)	법무부	성인/청소년 각 1,000명	법인식 및 평가, 법의 필요성, 법의 공정성, 준법의식, 생활법률, 법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등	전화 조사 (성인) 집단 면접 (청소년)	-
10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국민의식 조사 (1997)	국정 홍보처	성인 1,000명	준법의식, 고발의식 등	전화 조사	-

구분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방법	본 연구 적용
11	국민 법의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996)	국정홍보처	성인 1,000명	법의 필요성, 준법의식 등	전화조사	-
12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1996)	한국법제연구원	법전문가 800명	법 인식과 정서, 법생활, 법정립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면접조사	-
13	국민법의식 조사 (1994)	한국법제연구원	일반국민 1,200명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생활, 법정립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면접조사	-
14	국민법의식 조사 (1991)	한국법제연구원	일반국민 1,200명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생활, 법정립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면접조사	-

위와 같은 관련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 적용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09년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행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법전문가 1,008명을 대상으로 총 34문항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의식조사를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이 분야의 조사에만 치중하여

왔으며,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법전문가의 법의식 간의 간격이 클수록 그 사회의 법제도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1996년 조사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검토·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조사 상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크게는 입법, 사법, 행정, 학계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입법 분야는 국회의원,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법 분야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생을 포함하였으며 행정 분야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계 분야는 법학대학 교수, 박사과정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설문분야는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전문가의 법생활, 법전문가의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로 구성되었다.

설문분야와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시계열적 비교를 중심으로 두어 1996년 조사의 설문문항과 비교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적·경제적·법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법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1991년, 1994년, 2008년 조사의 설문분야와 문항의 필요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의 조사 항목 중 현 법전문가의 특성 및 수준,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 비교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법전문가의 수준이나 현 상황에 맞도록 문항을 조정하고, 설문의 의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지표항목에서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첫째, 법에 대한 느낌이나 악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항목이나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그 이유,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와 법준수 자가

진단에 관한 설문은 법전문가의 법인식이나 법생활 태도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시계열 비교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준법수준과 사회적인 존경 간의 관계에 대한 설문항목은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평가하여 지표 항목 중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방식을 조정하였다. 또한,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설문항목 내지 각 부처의 법 준수 정도나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항목은 법의 형평성 및 기관별 준법 수준,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판단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도 이미 일부항목은 지표항목으로 조정하여 변경한 바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련 설문항목을 지표항목으로 개발한 바 있다.

셋째, 관련 핵심 개념은 유사하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최근 현황에 따른 설문으로 변경해야 하는 설문항목 즉, 법교육 개선사항 관련 설문 항목이나 헌법 개정, 국민참여재판제도,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설문 항목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설문방식 및 설문의 보기항목을 조정하였다.

[표 22] 본 연구 적용 내용

조사 분야	조사항목		본 연구 적용 검토 결과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에 대한 느낌		○ 시계열 비교 선정
	악법에 대한 인식		○ 시계열 비교 선정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 지표 항목으로 문항 조정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의견	⇒	▷ 지표 항목으로 문항 조정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그 이유		○ 시계열 비교 선정
법생활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계약서 숙지 정도	⇒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조사 분야	조사항목		본 연구 적용 검토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정도		○ 시계열 비교 선정
	법교육 중점 부문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와 비준수 이유		○ 시계열 비교 선정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 시계열 비교 선정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 유형		시의성 고려 제외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시의성 고려 제외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시의성 고려 제외
	각 부처 법준수 진단	⇒	▷ 지표 항목 이동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지표 항목 이동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시계열 비교 선정
	사이버모욕죄		시의성 고려 제외
	인터넷실명제		시의성 고려 제외
	안락사 허용		○ 시계열 비교 선정
	이중국적 허용		시의성 고려 제외
	면책조건부진술제도		시의성 고려 제외
	영장항고제	⇒	시의성 고려 제외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		시의성 고려 제외
	헌법 개정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법관 평가제		시의성 고려 제외
	법률시장 개방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조정문항들의 경우에는 2009년의 문항을 현 상황에 맞도록 재조정 하였다. 대표적인 문항 재조정의 예로, 2009년에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물었던 설문문항을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문으로 조정한 문항 등이 있다.

[표 23] 문항 조정 예시

2009년 조사 항목	본 연구에서 조정 내용
<p>2007년 한미 FTA 협상안 타결로 인한 대한민국 법률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p> <p>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p>	<p>2007년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시장이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방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2.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3.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4. 변호사 수입료 등 법률 서비스 이용료 경쟁력 강화 5. 해외 법제 및 관련 정책 숙지 6. 기타</p>

⇒

②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 총 56문항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조사’는 특정 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법의식 및 법감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 도입한 국민법의식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개선과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만 19세 이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4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개정된 연령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8년 국민 법의식조사의 설문항목을 비교하여 2015년 시점에서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없는 문항은 삭제하는 한편, 국민법의식지표 문항 개발에 따라 기존의 설문항목들을 축소하고 지표 문항으로 활용 가능한 설문항목들은 대폭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재구성한 바 있다.

이번 법전문가의 법의식 연구에서는 2015년 수행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의 설문항목 중 일반국민과 법전문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8개 문항은 내용 및 형식을 조정하였고, 선정문항 이외의 설문항목들은 법전문가의 특성 및 수준, 시의성,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제외하였다.

[표 24] 본 연구 적용 내용

조사 분야	조사항목		본 연구 적용 검토 결과
법에 대한 가치관/ 인식 및 법생활	법에 대한 느낌		○ 일반국민 비교 선정
	법률정보 인지경로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계약서 숙지 정도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와 비준수 이유	⇒	○ 일반국민 비교 선정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 일반국민 비교 선정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반응		△ 보기 내용 조정
	노사관계법 준수도 및 비준수 집단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사회적 약자 불리한 대우와 이유		법전문가 수준 고려 제외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그 이유	⇒	○ 일반국민 비교 선정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		시의성 고려 제외
	로스쿨제도에 대한 의견 및 성과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안락사 허용에 대한 의견	⇒	○ 일반국민 비교 선정



조사 분야	조사항목		본 연구 적용 검토 결과
법 관련 최근 이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		시의성 고려 제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김영란법 도입 성과에 대한 의견		시의성 고려 제외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과에 대한 의견	△	현 상황에 맞게 조정

문항 조정의 주요 내용은 2015년의 문항을 현 상황에 맞도록, 법전문가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점을 묻는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표 25] 문항 조정 예시

2015년 조사 항목	본 연구에서 조정 내용
<p>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OO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성과가 있다 2. 성과가 있는 편이다 3. 별로 성과가 없다 4. 전혀 성과가 없다</p>	<p>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p> <p>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 2.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3. 로스쿨 학비 체계 개선 4. 합격률 상향 조정 5. 교육의 질 제고 6. 기타</p>

### ③ Rule of Law Index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Rule of Law Index를 활용하여 6개 차원으로 구성된 국민법의식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 지표에 기반한 내용에 더하여, 법전문가 특성을 반영할만한 지표 문항을 추가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즉, 이러한 법의식 지표는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식 조사와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식 조사 각각에서 ‘국민법의식 지표’와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를 수치화하여, 정기적이고 시계열적인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Rule of Law Index의 조사결과 자체보다 문항의 구성 요소를 모델로 삼아 국내 실정과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Rule of Law Index는 8개 차원(factor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차원은 총 44개의 지표로 세분화되어 있다. Rule of Law Index도 매년 차원 구성 및 지표 항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World Justice Project는 ‘Rule of Law Index(법치주의 지수)’는 2015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의 지표개발 과정에서 이미 선행연구 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 ④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는 2015년에 일반국민 1,500명, 법률전문가 224명, 교육계 504명, 언론계 137명을 대상으로 총 68문항을 사용하여 실시된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들을 연구하였다. 특히 현행 뇌물죄 처벌 규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뇌물과 부정처사 간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요건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 시행 이전에 동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적용상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법리논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함께 이 법을 둘러싼 일반국민들의 의식, 법률전문가들의 의식, 그리고 이 법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인 교육계 종사자들과 언론인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적 관행 및 부정부패 문제에 관한 의견, 그리고 상황 예시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청탁금지법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원안에는 있었지만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 문항과 행위 판단 문항의 연관 분석을 위해 사례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일반국민은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응답한 반면 판사 및 검사의 경우, 해당 질문에 자신이 응답할 경우, 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거절이 많았다고 한다.<sup>14)</sup>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개발 단계에서는 해당 연구에서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사례 문항보다는 인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법의식이나 법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을 연관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법전문가가 법전문가로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행위요소를 가미한 설문을 개발

---

14) 황지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p.88.

한 바 있다. 즉, 문5) “귀하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의 연관분석이 가능하도록 문6) “귀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문6)에 대하여, ‘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위설문으로 유도함으로써 문6-1) “그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에 대한 법전문가로서의 판단과 행위의지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표항목에서도 2015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의 6개 차원 지표설문항목 외에도 법전문가로서의 법의식에 대한 판단을 묻는 1개 차원을 추가하여 5개 세부항목을 설문한 바 있다. 즉, 문63)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문64)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 문65)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문66)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문67)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라는 설문을 추가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법전문가로서의 인식과 법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법지식에 기초한 판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항별 설문항목의 경우에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이슈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방식과 보기항목을 선정하여 각 사안별로 법전문가로서의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 26]은 이슈별 설문항목에 적용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방식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표 26] 이슈별 설문문항 구조 적용 예시

■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인 식	사 례 문 항
우리나라 부패 수준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시내 모국립대학병원 입원 순서를 기다릴 경우 3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조모씨라는 사람은 이 병원 원무과의 허모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어머니를 곧바로 입원시켰다. 귀하께서는 위 예시에서 병원 원무과 허모씨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 적용

인 식	사 회 문 제 문 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	· 귀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3) 조사 항목 조정

이번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는 2009년 이후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법의식 및 법감정 등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비교 및 일반국민 법의식과 비교를 위해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와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검토하여 시계열 문항을 선정하고, 시계열 결과를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하위 항목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시각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법제 발전을 위한 개선점 도출을 위해 입법과정에 대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학, 사회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11회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들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본 연구의 특징 - 앞의 1~11차 전문가회의 내용 참조).

국내에서 실시된 법의식 실태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 진행되었으며,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1996년, 2009년 진행되었다. 일반국민조사와 법전문가 조사는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조사 결과의 시계열 분석 및 일반국민과 전문가 진단 간의 차이 등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본 항목은 시계열 분석을 고려해서 구성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09년 법전문가 조사 및 2015년 일반국민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은 기존 항목을 유지하며, 최근 사회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 및 보완하였다.

[표 27] 조사항목 구성 시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시계열 유지	기존 조사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큰 수정 없이 항목 유지
개선/보완	응답자 수준 고려/이해도 제고, 설문적합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 시의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보완 현 상황에 맞는 신규 항목 개발

위의 고려사항을 통해 이전 연구에서의 조사항목 중 시계열 유지 문항을 선정하고, 시의성이 없는 항목은 삭제 및 보완하였다(본 연구의 선행 및 관련 연구 검토 참조).

그리고 11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치면서 법전문가의 수준 및 특성, 시의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하였지만 삭제하였다. 개발 과정 중 삭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8] 설문 개발 과정 중 제외 항목

법전문가 수준 및 특성 고려	시의성, 민감성 고려
1. 분쟁 해결 기관별 신뢰도 2. 교통신호 준수에 대한 사례 3. 인공지능 관련 세부 항목 (사라질 직종, 판결 주체 등) 4. 청년실업, 근로자의 무료 변론 5. 정치 기부금, 로비스트 합법화 6. 전자금융 보안	1. 권력/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 정도 2. 부문별 법 준수 정도 3. 군가산점제도, 사형제 폐지 4.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 5. 산업구조조정, 규제 완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는 법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11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항 및 항목을 보완하였으며, 논리적 흐름 및 오류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구성된 설문지를 예비조사 형식으로도 전문가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예비조사는 생략하였다.

#### 4) 최종 조사 항목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순서는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분야, 법전문가의 법생활, 법제 발전방향, 사회문제와 법의식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순서는 응답자의 이해도 및 논리적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즉, 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먼저 응답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후 구체적인 법제 발전방향 분야와 사회문제와 법의식 분야를 다음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한 인식과 법생활에서는 법에 대한 느낌과 초·중·고등학교 법교육, 우리사회의 법준수 진단과 비준수 이유, 법준수 자가 진단과 비준수 이유, 악법에 대한 인식,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 개선 의향 및 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법제 발전방향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사항,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의 개선 사항 및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문제와 법의식에서는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정도 항목과 연관 분석할 수 있도록 문항 순서를 구성하였다. 즉,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간통 행위의 민사법적 해결 시 개선 사항, 근로 환경, 국민참여 재판제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로 구성하였으며,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 인공지능, 대형 재난, 통일 관련 문항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사항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선사항 내지 환경오염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혼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 동성혼에 대한 사실혼 유사의 혜택 설문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명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형 집행이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설문을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29] 조사 항목 구성

분 야	구 분	2009년 법 전문가	2015년 일반 국민	2016년 신규/변경 항목
법전문가의 법생활	법에 대한 느낌	○	○	-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와 개선 사항	○	-	하위 항목 추가
	우리사회의 법준수 진단과 비준수 이유	○	○	-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	○	-
	악법에 대한 인식	○	-	-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 개선 의향 및 행동 방안	-	-	○



제1장 서론

분 야	구 분	2009년 법 전문가	2015년 일반 국민	2016년 신규/변경 항목
	불량품 구매 시 대처 반응	-	-	○ (보기 내용 개선)
	법이 쉽게 쓰여 있지 않은 이유	-	-	○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	-	-	○
법제 발전방향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능력	-	-	○
	사회 각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	○
	헌법 개정	-	-	○ (문항 형식 개선)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	○	-	○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	-	-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의견	-	-	○
사회문제와 법의식	간통 행위의 민사법 해결을 위한 개선 사항	-	-	○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의견	-	○	-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	-	○
	국민참여재판제도 보완 방안	-	-	○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그 이유	○	○	○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	-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을 위한 법제도	-	-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	-	○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방안	-	-	○
	대형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법제도 방안	-	-	○

분 야	구 분	2009년 법 전문가	2015년 일반 국민	2016년 신규/변경 항목
사회문제와 법의식	통일 준비를 위한 법제도 방안	-	-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 방안	-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	-	-	○
	환경오염 개선 방안	-	-	○
	동성혼에 대한 의견	-	-	○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	○	-
	낙태 허용 범위	-	-	○
법의식 지표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	○	-
	차원2. 법에 대한 인식/정서	-	○	-
	차원3. 법에 대한 준수	-	○	-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	-
	차원5. 법의 실효성 보장	-	○	-
	차원6. 법 제정/집행기관 독립 · 공정성	-	○	-
	차원7. 법의식에 대한 판단	-	-	○
합 계		8개	6개 (6개차원)	27개

### 3. 실사 진행 결과

본 연구를 위해 표본설계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9월 3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주)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진행 결과 총 1,012명의 법전문가가 조사 완료되었으며, 직업별 완료율을 보면 표본 할당 대비 95 ~ 110% 수준으로 표본 할당 분포와 유사하게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30] 실사 결과

분 야	직 업	표본 할당 (A)(명)	조사 완료 (B)(명)	완료율 (B/A)(%)
합 계		1,000	1,012	101.2
입 법	국회 공무원	50	50	100.0
	국회의원	50	50	100.0
	지방의회 의원	50	51	102.0
	소 계	150	151	100.7
사 법	관사	30	30	100.0
	검사	30	30	100.0
	법원공무원	30	30	100.0
	소 계	90	90	100.0
행 정	국가직	105	112	106.7
	지방직	105	100	95.2
	소 계	210	212	101.0
학 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0	69	98.6
	법학과 교수	70	70	100.0
	법 관련 연구원	70	69	98.6
	소 계	210	208	99.0
민 간	변호사	110	11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변호사 제외)	110	121	110.0
	소 계	220	231	105.0
예비 법전문가	박사과정생	60	60	100.0
	로스쿨생	60	60	100.0
	소 계	120	120	100.0

## 4. 검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1)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응답 내용에 대해 직업별 조사 완료 수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9월 13일까지 응답 내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 내용은 실제 조사 여부, 응답 내용 일치도 등이다. 그 결과 모든 직업에서 실제 조사를 응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응답 내용에 대해서도 재검증한 결과 모두 응답 내용이 일관되었다.

[표 31] 검증 결과

직업	조사 완료 수	검증 수	실제 조사 여부	응답 내용 일치도
국회 공무원	50	15	100.0	100.0
국회의원	50	15	10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5	100.0	100.0
판사	30	9	100.0	100.0
검사	30	9	100.0	100.0
법원공무원	30	9	100.0	100.0
국가직	112	34	100.0	100.0
지방직	100	30	100.0	1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9	21	100.0	100.0
법학과 교수	70	21	100.0	100.0
법 관련 연구원	69	21	100.0	100.0
변호사	110	33	10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변호사 제외)	121	36	100.0	100.0
박사과정생	60	18	100.0	100.0
로스쿨생	60	18	100.0	100.0

## (2) 신뢰도 분석 결과

지표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응답 내용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KMO 값이 0.5 이상(0.8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값)이면 항목의 타당성을 갖게 된다.<sup>15)</sup> 또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동일한 측정을 위하여 항목 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내적인 일관성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보장되며, 1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sup>16)</sup>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동일 차원 내 지표 항목 모두 0.5 이상(0.523 ~ 0.887)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상호 연관이 있는 차원의 지표 항목인 ‘법에 대한 준수’ 차원과 ‘법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차원의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한 요인 분석 결과는 KMO 값이 0.838로 상당히 높은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은 0.811, ‘법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차원은 0.87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15) 정우석·손일권, 『과학적 조사방법론』, 두양사, 2010, p.441.

16) 강병서·조철호, 『연구조사방법론』, 무역경영사, 2006, p.75.

[표 3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지표 항목	성분(차원)	
	법에 대한 준수	법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문43)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0.887	0.175
문4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0.868	0.133
문45)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0.645	0.256
문46)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0.596	0.391
문47)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0.523	0.274
문59)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0.149	0.799
문60)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0.274	0.785
문61)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0.348	0.800
문62)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0.244	0.849
신뢰도 분석	0.811	0.873

KMO = 0.838, Bartlett's test 결과  $\chi^2 = 4,769.372$  (df = 36 Sig. = 0.000)

## 제 4 절 정성조사 표본설계 · 설문항목 선정

### 1. 정성조사의 필요성

정량조사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계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정성조사는 개인 또는 그룹별로 본인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문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의 경우에 양적 연구를 통해 집단의 대체적인 인식의 경향과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인식에

이르게 되는 배경 또는 이유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량조사에 활용한 설문항목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1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매우 정교하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설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정량조사 자체가 가진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응답자가 오랜 시간 고민하여 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설문에서 주어진 보기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응답자 모두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의 제정부터 적용·집행·해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전문가의 전반적인 법의식 내용과 경향,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내기 위하여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모두 수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성조사를 통하여 정량조사에서 설문하기 어려운 현상적 문제의 원인이나 정량조사 설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연관분석 대상 설문 간의 의미,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시각과 견해 등에 대하여 질문과 응답, 관찰 등을 통하여 도출해내고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질적 연구는 법전문가들의 경험, 맥락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진행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적인 해석을 위주로 진행된 바 있다.

## 2. 정성조사 범위 및 단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성조사 설문항목을 정량조사 설문항목이나 정량조사 결과와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지 않고 정량조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정성조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의 내용과 범위를 목적과 조사 수행 순서에 따라 다음의 두 단계로 설정하였다. 즉, i) **정량조사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정량조사의 설문이 의도하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거나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문은 개별면접(IDI) 방식의 심층면접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ii) **정량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전문가 그룹별로 관련 설문항목 결과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의견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룹면담(FGI)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3. 정성조사 표본 설계 및 구성

본 연구에서 개별 심층면접과 FGI를 모두 수행한 이유는 각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FGI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와 적정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개별 심층면접에서는 개인별 경향이 강해 의견의 방향을 적정 수준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최대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설문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심층적인 의견을 외부적인 영향 없이 취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정성조사는 정량조사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량조사에서 설계한 법전문가의 분야별 할당을 토대로 하였다. 즉, 정량조사 기간동안 정량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개별 심층면접의 경우, 법전문가 정성조사 개인면담 표본은 정량조사의 샘플링에서 구분된 14개의 영역에서 1명(국가직 공무원은 2명)씩을 할당하여 총 15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을 개발한 FGI 방식의 정성조사에 대하여서는 법전문가 중에서도 법적용과 법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판사와 변호사, 법학연구자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14개 영역에서 1명씩을 할당하여 3개 그룹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 직군별로 FGI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FGI의 특성상 다양한 직군으로 그룹을 구성할 경우에 의견 교환에서 상호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심층적인 의견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3개의 FGI 그룹은 진행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인원인 5명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정성조사 소요시간은 집중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심층면접 60분 내외, FGI 90분 내외로 진행하고 최대 1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33] [표 34]는 개별인터뷰와 FGI 표본설계에 따른 인터뷰 응답자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33] 개별 인터뷰 응답자 현황

구분	직업	성별	나이	학력	학부전공	경력	근무지
1	국회공무원	남	41	법학박사	법학	6년	서울시
2	국회의원보좌관	남	46	박사수료	법학	7년	서울시
3	판사	남	50	대졸	법학	19년	경기도
4	검사	남	50	대졸	법학	18년	경기도
5	국가공무원	남	50	대졸	법학	24년	서울시
6	국가공무원	남	45	박사수료	법학	11년	세종시
7	지방공무원	남	50	대졸	법학	22년	제주도
8	로스쿨교수	남	46	법학박사	법학	15년	서울시
9	법과대학교수	남	40	법학박사	법학	8년	서울시
10	법관련연구원	남	36	법학박사	법학	5년	안산시
11	변호사	남	47	대졸	공학	16년	서울시
12	변호사	여	33	로스쿨	법학	4년	서울시
13	노무사	남	43	대졸	법학	18년	서울시
14	법대박사과정	남	40	박사과정	조세	-	성남시
15	로스쿨재학생	남	28	로스쿨재학	법학	-	경기도

[표 34] FGI 응답자 현황

그 룹	인터뷰어	성 별	나 이	경 력	법교육배경
법관	GJ1	남	50	23년	사법연수원
	GJ2	남	49	20년	사법연수원
	GJ3	남	40	10년	사법연수원
	GJ4	여	40	11년	사법연수원
	GJ5	남	42	10년	사법연수원
변호사	GL1	남	46	5년	사법연수원
	GL2	여	42	7년	사법연수원
	GL3	여	33	4년	로스쿨
	GL4	남	45	4년	로스쿨
	GL5	여	43	7년	사법연수원
연구자	GS1	여	39	8년	박사학위
	GS2	남	43	5년	박사학위
	GS3	남	46	16년	박사학위
	GS4	여	38	5년	박사학위
	GS5	남	52	18년	박사학위

#### 4. 정성조사 진행 과정

본 연구의 정성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1 단계 : 정량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개별인터뷰를 위한 질문지 초안구성
- 2 단계 : 정량조사 결과의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를 기초로 FGI 질문지 구성
- 3 단계 : 정량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별인터뷰 질문지 수정
- 4 단계 : 개별인터뷰 실시
- 5 단계 : 3개 그룹에 대한 FGI 실시
- 6 단계 : 조사결과의 분석

## 5.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1) 개별 심층면접 질문지

개별 심층면접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면접 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 항목, 둘째, 면접 질문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개별 심층면접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기초조사 >

- 1) 개별인터뷰 번호
- 2) 직업 :
- 3) 성별 :
- 4) 나이 :
- 5) 학력 :
- 6) 학부전공 :
- 7) (법조)경력 :
- 8) 전관여부 :
- 9) 개업형태 :
- 10) 개업지/근무지 :
- 11) 전문분야/전공분야 :

1. (문1) 귀하가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10개만 말해 주십시오. (말하는 순서에 따라 10개의 단어를 적을 것)
  - 1-1. (문5)(문54~58) 귀하는 어떠한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 (문37~41)(문48~53)(문54~58)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2. (문3)(문42) 귀하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운 택시기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 2-1. (문4) 귀하는 규정을 준수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도 법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2. (문3)(문4)(문33~36)(문37~42)(문47)(문63~67) 귀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 (문3)(문4)(문43~47)(문63~67) 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 (문9)(문40)(문59~62) 귀하는 스스로 겪은 일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일 중에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4. (문10)(문43~47) 우리나라에서 법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각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1 (문11)(문18)(문23)(문25)(문27)(문39)(문48~53)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 복지, 안전관리 분야의 법제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각각 응답을 받기 바람)
  - 4-2 (문23)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고에 대해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는 검찰과 법원과 같은 사법당국이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문12)(문37~38) 수년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제기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1. 법전문가와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2.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나 방향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문13~15) 귀하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갖추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아래의 예시는 질문의 이해도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인터뷰대상자에게 이를 나열하지 말 것.)

예 시	국회의원의 자질향상 및 법전문가의 국회진출
	국회의원비서관 및 입법조사처 등 보좌기구의 강화
	청원제도, 입법예고제도, 공청회제도, 청문회제도, 회의공개제도의 개선
	입법·사법·행정기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심사권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7. (문16)(문17)(문30) 최근에 간통죄는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성풍속에 대하여 법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7-1. (문30) 동성혼 인정 요구 문제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이나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8. (문19) 귀하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의 배심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등)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9. (문24) 다른 나라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귀하는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범위와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문28) 최근에 논란이 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자유로이 말씀해 주세요.

## (2) FGI 질문지

FGI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문1. 법전문가의 절반 이상(57.6%)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3).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는 긍정 의견이 30% 내외로 부정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은 절반 정도(52.8%)가 ‘잘 지킨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3~45). 귀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문2. 설문에 응답한 법전문가의 97.0%는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결과인 42.3%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법전문가의 49.0%는 ‘법적용의 차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0). 그 원인으로서는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8.6%)가 가장 많았습니다(정량조사 문9). 한편, 국회, 법원, 정부, 수사기관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른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4% 이상이었습니다(문 59~62). 법전문가들이 법의 차별 없는 적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한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추가질문 > 또한 흥미로운 것은 법 관련 종사경력이 길면 길수록 차별적인 법적용의 이유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1~5년 39.6% ⇒ 21년 이상 35.2%)이라 응답하는 비율이 종사경력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정량조사 문9).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법전문가들은 입법부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9.2%로 응답하여 행정부(29.0%)와 사법부(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이렇게 응답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질문 >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의견은 입법부 12.7%(100점 환산 39.13점), 행정부 23.8%(100점 환산 48.10점), 사법부 36.1%(100점 환산 52.97점)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귀하는 이러한 결과가 귀하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5.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비율(10~20%대)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30% 이상)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귀하는 이렇게 응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질문 > 또한 흥미로운 응답 결과로는, 안전 관리는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3.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다른 분야에 비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6.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와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20.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 18). 그런데 응답자의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라 보았는데 비해 40대 이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이 우선 과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7.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62.7%)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남성의 53.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85.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0). 성별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응답자의 남녀의 성비는 3:1 정도였습니다.

< 추가질문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25.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16.1%)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7.4%)은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량조사 문20-1). 이는 법전문가들이 여성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전문가들이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로 법제도 보다는 법제도 아닌 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이 여성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은 아니라 본다고 이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8.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25, 문29). 또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98.8%가 동의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3). 이와 같이 관련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9.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28.0%가 ‘남북교류 법제 정비’를, 26.8%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과제 정비’가 꼽혔습니다(정량조사 문26). 남북교류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같은 정치적 과제가 통일에 관한 법제도나 법제시스템 준비에 관한 과제보다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10. 법전문가들은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정량조사 문37),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정량조사 문38), ‘대한민국 법이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 정도’(정량조사 문39)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법의 작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는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제 5 절 연구의 한계

###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유형이 소속이나 직무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직무 유형별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별 특성 외에도 개인이 가지는 이념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태도나 의식을 보일 수 있으나,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측정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설문항목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별 조사결과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별 교차분석 도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볼 때, 법전문가는 법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 지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일정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의식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이 조사결과나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2. 조사의 한계와 주요 사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들의 인식이나 판단은 법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법전문가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가치판단과 인식을 기반으로 법의식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개인별 성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집단별 특성이나 개인별 성향 외에도 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내외의 주요한 사건들 또한 이러한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사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특정 사건들의 경우 정책이나 법제도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논의 시간과 관련 법규 제·개정 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아래의 [표 35]와 [표 36]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로서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설문항목 개발과정에서 참고한 사항의 경우에는 따로 항목 표기를 하였다. 또한, [표 37]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5] 2015년 주요 사건과 문항개발 시 반영사항<sup>17)</sup>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월	비정규직 처우 (열정페이)	·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 <sup>18)</sup> · 유명디자이너가 월 10만원(건설), 30만원(인턴)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기사화되며 이슈화 됨. <sup>19)</sup>	문18) 근로환경 개선
	IS 테러 단체 가입 (테러방지법)	· 이슬람권에서의 테러가 갈수록 빈발하고 잔혹해지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가입한 사실이 보도되며 이슈화 됨. <sup>20)</sup>	문25) 안전한 사회

17) 이 표의 짙은 글씨 부분은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pp.42-51에 정리된 사건명 및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 및 기술한 것임.

18) 머니투데이 2015.2.11. 기사 “이기권 장관 “‘열정페이’ 문제, 해소해나갈 것”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21111467693312>)

19) 조선닷컴 2015.1.9. “이상봉, 청년 착취 甲 불명예… ‘열정페이’ 월급 보니 ‘충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138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1385.html))

20) 세계일보 2015.2.25.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확인, 김군은 왜 IS를 택했나”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월		· 테러가 더 이상 먼나라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됨. <sup>21)</sup>	
	어린이집 폭행과 보육시설 CCTV 설치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하던 중, 보육교사가 밥을 남긴 어린이를 폭행하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는 등의 장면이 CCTV로 공개되자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sup>22)</sup> · 이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되었으나, 4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질 예정임. <sup>23)</sup>	문21) 아동학대  문22)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한국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 <sup>24)</sup>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25개 업체에게 배출권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 배출량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함. 이후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음. <sup>25)</sup>	문29) 환경오염 개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4/20150224005820.html?OutUrl=naver>)  
 21) 아시아투데이 2015.3.18. “IS 김군, 김기종… 테러방지법 논의 ‘활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18010011120>)  
 22) 서울경제 2015.1.13. “인천 어린이집 폭행, 네 살 배기 아이 음식 뱉어내자 뒤통수 후려갈겨… “이번이 처음 아냐” 경찰수사 중”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1322470693760.htm>)  
 23) YTN 2015.4.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심의... 이견 여전”  
 ([http://www.ytn.co.kr/\\_ln/0101\\_201504020737370989](http://www.ytn.co.kr/_ln/0101_201504020737370989))  
 24) 이투데이 2015.1.14. “온실가스 배출 1·2위 中·美 안하는데 1%대 韓 총대… 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ew.php?idxno=1055321>)  
 25) 머니투데이 2015.1.15. “탄소배출권 할당기업 절반 ‘이의제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516540456254&outlink=1>)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됨.<sup>26)</sup></li> <li>·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함.<sup>27)</sup></li> <li>·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sup>28)</sup></li> </ul>	-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 만점이 50점인 세계지리 과목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3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대입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임.<sup>29)</sup></li> <li>· 1차로 100명이 1인당 1천500만~6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함.<sup>30)</sup></li> </ul>	-

26) 한국일보 2015.1.22.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  
(<http://www.hankookilbo.com/v/7b2926d891cd4f2896f17ca4146168d4>)

27) 아시아경제 2015.1.22. “‘징역9년 확정’ 이석기 “이 나라 사법정의는 죽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215123925333>)

28) 로이슈 2015.1.22.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내란음모는 무죄”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1>)

29) 2015.1.19. “아시아투데이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100명, 정부상대 손배소송”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19010010236>)

30) 2015.1.19. “연합뉴스 수능 출제오류 첫 손배소송 제기... 피해자 100명 참여(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9/0200000000AKR20150119064451051.HTML?input=1179m>)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2월	연말정산 대란(증세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 개정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다수의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함.<sup>31)</sup></li> <li>· 2015년 1월부터 인상된 담배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사실상 증세에 대한 국민의 조세 저항이 거세짐.<sup>32)</sup></li> </ul>	-
	간통죄 위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간통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 총 4번의 합헌 결정 후 내려진 위헌 결정.<sup>33)</sup></li> <li>· 재판상 이혼, 손해배상, 자녀 양육, 면접교섭권 제한과 배제 등의 결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문제와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 2)에 대한 제도개선책 등의 논의 필요.<sup>34)</sup></li> </ul>	문16) 간통죄 폐지
	현대중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2009년부터 3년까지의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2013년 ‘고정성’을 내세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이후 노사는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쌍방 합의함.<sup>35)</sup></li> </ul>	문18) 근로환경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적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sup>36)</sup></li> </ul>	-

31) 비즈니스워치 2015.2.11. “세금 민란, 국민을 너무 쉽게 봤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3067>)

32) 노컷뉴스 2015.1.21. “비겁한 ‘편법 증세’에 분노한 민심”

(<http://www.nocutnews.co.kr/news/4357363>)

33) 법률신문 2015.2.26.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356>)34) 대한변협신문 2015.3.16. “[최신판례]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2009헌바17 외 (병합)”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3>)

35) 동아일보 2015.2.13. ““현대중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손들어줘”

(<http://news.donga.com/3/all/20150213/69631500/1>)

36) 연합뉴스 2015.2.9.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2보)”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3월	관피아 방지법 (공직자윤리 법 개정안 시행령 3월 31일 공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가 합성된 단어로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피아와 같은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비판하는 뜻임.<sup>37)</sup></li> <li>· 고위 공직자 등이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sup>38)</sup></li> </ul>	문10) 법치주의 실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sup>39)</sup></li> <li>· 공직자의 배우자에 의한 우회적 금품 수수도 금지. 연좌제 논란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sup>40)</sup></li> </ul>	문10) 법치주의 실현
2015년 4월	세월호 1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4월 16일 연안여객선 세월호 침몰. 30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참사가 됨.<sup>41)</sup></li> <li>· 사고 후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가개조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sup>42)</sup></li> </ul>	문25) 안전관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9/0200000000AKR20150209135351004.HTML?input=1179m>)

- 37) 아시아투데이 2014.11.11. “모바일리안시대.. SNS타고 번진 시사풍자어 열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7010004280>)
- 38) 이데일리 2015.1.9. “관피아가 떠난 자리, ‘O피아’가 채웠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177526609236080&DCD=A00503&OutLnkChk=Y>)
- 39) 서울신문 2015.3.27.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27004016>)
- 40) 뉴시스 2015.1.29. “권익위, 김영란법 위헌·과잉입법 논란에 정면대응”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5696&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5696&cID=10301&pID=10300))
- 41) 경기신문 2014.12.30. “안전불감증 만연 잇단 참사에 속수무책... ‘안전’ 최대 화두”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64>)
- 42) KBS TV 2014.4.29. “박 대통령 “국민께 죄송...” 국가안전처 신설”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4월		·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87%가 ‘우리 사회의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sup>43)</sup>	
	성매매 처벌법 위헌 심판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처벌법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가짐. <sup>44)</sup> · ‘미아리의 포청천’으로 불리던 김강자 전 중앙경찰서장이 이 법의 위헌을 주장해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생계형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입장임. <sup>45)</sup>	문17) 성매매처벌법
	무상급식 유상 전환	·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함. 따라서 도 내에 있는 전체 학생 44만 7천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됨. 이후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됨. <sup>46)</sup> · 5월, 산청군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의무로 지원하는 조례를 경남 기초의회 최초로 만들었음. <sup>47)</sup>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54810&ref=A](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54810&ref=A))

43) 한국일보 2015.4.6. “우리 사회 안전 나아지지 않았다. 87%”  
(<http://www.hankookilbo.com/v/c2853973db2f4c64aa066ac0c36a6697>)

44) JTBC 2015.4.9. “위헌? 합헌? ‘성매매법’ 어떻게 봐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875/NB10843875.html>)

45) 연합뉴스 2015.4.9. “‘미아리포청천’ 김강자 “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189600004.HTML?input=1195m>)

46) 연합뉴스 2015.4.1. “경남 학교 무상급식 유상 전환… 21만 8천여명 대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035800052.HTML?input=1179m>)

47) 오마이뉴스 2015.5.27.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 경남 기초의회 첫 통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2343&CMPT\\_CD=P00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2343&CMPT_CD=P0001))

제 1 장 서 론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파문	·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높았던 기업의 백수오 제품 원료에 가짜 백수오(이우엽피소)가 혼입되었다고 발표되었음. <sup>48)</sup> · 이에 따라 ‘가짜 백수오’가 들어간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sup>49)</sup>	문23) 기업의 법적 책임
2015년 5월	성완중 게이트와 후폭풍	· 경남기업 성완중 사장이 자원의교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자살하였고, 다수의 여권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등을 건넸다는 최후 인터뷰와 메모를 남겨 정치권에 “성완중 게이트”를 물고 옴. <sup>50)</sup>	-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 동료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음. <sup>51)</sup>	-
	론스타 5조원대 국가 소송 개시	·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국가 소송을 제기하여 워싱턴에서 소송이 개시됨. <sup>52)</sup> 해당 소송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고조됨. <sup>53)</sup>	-

48) 머니투데이 2015.4.30. “내츄럴엔도텍, 집단 사기극? ‘가짜’ 혼입 정말 몰랐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3013405384088&outlink=1>)

49) 머니위크 2015.6.24.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법정행... 4억 손해배상 소송”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62409488067507&outlink=1>)

50) 신동아 2015.5.26. “成·이완구·반기문·親盧 ‘충청 커넥션’ 의혹 추적”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5/04/16/201504160500007/201504160500007\\_1.html](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5/04/16/201504160500007/201504160500007_1.html))

51) 국제신문 2015.5.14. “서울 예비군 훈련장서 총기 난사... 가해자 포함 2명 사망·3명 부상”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514.22006195019>)

52) 연합뉴스 2015.5.16. “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5/0200000000AKR20150515207100071.HTML?input=1195m>)

53) JTBC TV 2015.5.14. “론스타, 5조원대 소송 본격화... 정부는 ‘밀실 진행’, 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8779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87794))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이후 4번째의 대규모 개정 작업이 진행됨.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것임. <sup>54)</sup>	-
	제일모직-삼 성물산 합병 결의	· 삼성이 경영승계를 위한 실질적 지분 관계 정리에 나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의결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 시켰음. <sup>55)</sup> ·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비율에 의문을 제기하고 <sup>56)</sup>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음. <sup>57)</sup>	-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 2015년 7월 3일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184명 가운데 109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발생하지 않아 33명을 유지. <sup>58)</sup>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현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	문25) 안전관리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 거부권 행사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여부가 여의도 정가를 혼란에 빠져들게 함.	-

54) 헤럴드경제 2015.5.29.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수령액 10.5%↓·기여금 28.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9000029&md=20150529074036\\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9000029&md=20150529074036_BL))

55) 매일경제 2015.5.27.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 삼성 경영 정점에 선 이재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4182>)

56) 경향비즈 2015.6.19. “삼성물산 - 엘리엇, 합병 놓고 ‘법정 대결’… 내달 1일 결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6191711551&code=920501&med=khan](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6191711551&code=920501&med=khan))

57) EBN 2015.7.1. “‘재판결과 실망’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안 막겠다””

(<http://www.ebn.co.kr/news/view/771377>)

58) 질병관리본부 2015.7.3. “9시 기준 발표자료” (<http://www.cdc.go.kr/CDC/main.jsp>)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6월	SOFA 개정 논란과 주요 쟁점	· 오산 주한미군 기지 내로 배달된 탄저균 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 요구가 높아짐. <sup>59)</sup> 특히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9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sup>60)</sup> 정부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하기로 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sup>61)</sup>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관련 논란	·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은산분리 규제는 일부 완화하고,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자격요건을 설립함.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sup>62)</sup>	-
2015년 7월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통과	·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따라서 워싱턴 D.C.를 비롯한 36개 주에서만 허용된 동성결혼의 범위가 미국 전역으로 넓어짐. <sup>63)</sup> · 한국에서는 7월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sup>64)</sup> 동성결혼 반대 시위와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상임. <sup>65)</sup>	문3) 동성결혼

59) 일요서울 2015.6.15. “‘탄저균 배달사고’ 생물 무기 개발 목적 가능성 제기”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87>)

60) 헤럴드경제 2015.7.13. “탄저균 배달사고 ‘한·미 합동실무단’ 구성… SOFA 개정 가능성은 미지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3000402&md=20150713103839\\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3000402&md=20150713103839_BL))

61) 연합뉴스 2015.7.15. “한미, SOFA 운영절차 개선키로… ‘탄저균 배달사고’ 논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5/0200000000AKR20150715141200043.HTML?input=1179m>)

62) 세계일보 2015.6.18. “인터넷전문은행 요건, 지분 50% 예외 인정·최소자본금 500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18/20150618002578.html?OutUrl=daum>)

63) 연합뉴스 2015.6.27.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역사적 결정… 미 전역서 허용 (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00600071.HTML?input=1179m>)

64) 경남도민일보 2015.7.24. “동성혼 합법화 소송, 아시아 최초 ‘무지개’뜨까”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5777>)

65) 국민일보 2015.7.22.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반대 시위·탄원 이어져… 김조광수씨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함.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음. <sup>66)</sup>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논란	· 이탈리아 감시 프로그램 판매 업체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위키리스크에 의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이 밝혀짐. 국정원은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카카오톡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함. <sup>67)</sup>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침예하게 대답하고 있는 상황임. <sup>68)</sup>	-
2015년 8월	롯데그룹 승계 구도 갈등	·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이 리더자리에 올랐음. 형제인 신동주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사외이사 선임’과 ‘지배구조 관련’한 주총 안건에서 신동빈 측이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됨. <sup>69)</sup> · 신동빈 회장은 일본계열 회사의 지분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연내에 400개 이상의 고리가 얽혀있는 순환출자를 80%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힘. <sup>70)</sup>	-

소송 둘러싸고 시민단체 법원 앞 시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9857&code=23111111&cp=du>)

66) THE300 2015.7.2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9부능선 넘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2413317628453>)

67) 중앙일보 2015.7.15. “국정원, 2012년 총선 두 달 전 해킹 프로그램 수입 정황”

(<http://news.joins.com/article/18233095>)

68) 블루투데이 2015.7.31. “[전문] 행변 “국정원 해킹 야당 의혹, 3대 반박논변을 제시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9274>)

69) 이데일리 2015.8.17. “한일 롯데, 신격호 시대 저물고 신동빈 시대 본격 개막”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801126609468304&DCD=A00302&OutLnkChk=Y>)

70) 매일경제 2015.8.11.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연내 80% 해소”(종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70518>)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8월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 크게 경제활력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세부 항목 마련됨. 개인자산관리계획의 도입과 청년고용증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sup>71)</sup>	-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 중산층의 주거 혁신을 위해 마련한 뉴스테이 3법이 제정· 공포됨.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뉴스테이 3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말함. <sup>72)</sup>	-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 지난 8월, 4개월여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됨. <sup>73)</sup>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노사정 합의가 체결됨. 이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 노동개혁안이 유보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sup>74)</sup>	문17) 근로환경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사교과서 국정화 입장을 발표함. 집필진을 구성한 후 1년동안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게 됨.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임. <sup>75)</sup>	-

71) BBS 2015.8.6.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872>)

72) KNS서울뉴스 2015.8.31. “‘뉴스테이 3법’, 공포… 오는 12월 29일 본격 시행”

([http://www.knsseoulnews.com/sub\\_read.html?uid=21816](http://www.knsseoulnews.com/sub_read.html?uid=21816))

73) 연합뉴스 2015.8.27.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 “최선 다해 대타협 이룰 것”(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7/0200000000AKR20150827164352004.HTML?input=1179m>)

74) 연합뉴스 2015.9.13.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대타협 합의(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59451004.HTML?input=1179m>)

75) 매일경제 2015.10.13.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국정교과서 반대 대학생들 목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9월	유럽 난민 대란과 주요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난민 위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 12만명을 GDP, 실업률, 인구 등으로 분배하여 분할 수용하기로 함.<sup>76)</sup></li> <li>· 한국은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음. 난민 신청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sup>77)</sup> 그러나 난민신청자 혹은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sup>78)</sup></li> </ul>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바겐은 디젤승용차 테스트 상황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함. 미국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명령을 받았고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sup>79)</sup></li> <li>· 국내 차종들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시검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러나 한국은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임.<sup>80)</sup></li> </ul>	문23) 기업의 법적 책임

소리 높여” (<http://star.mbn.co.kr/view.php?no=974589&year=2015&refer=portal>)

76) 뉴시스 2015.9.12. “[국제 핫이슈]유럽 난민 사태, 12만명 쿼터제로 ‘진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1\\_0010283198&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1_0010283198&cID=10101&pID=10100))

77) 인천뉴스 2015.9.7. “한국 난민법 시행2년 권리 보장 미흡”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74>)

78) 아시아투데이 2015.11.23. “IS 테러 공포 확산, 한국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 분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22010012662>)

79) 서울 파이낸스 2015.9.24. “‘클린 디젤’의 기만… 폭스바겐 사태 어디로?”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93>)

80) 대구신문 2015.9.22. “한국도 폭스바겐 환경보전법 검사키로” (<http://www.idaegu.co.kr/news.php?code=ec06&mode=view&num=176125>)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0월	이태원 살인사건 첫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인 ‘이태원 살인 사건’의 재판이 열렸음. 유력한 용의자인 패터슨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가 16년만에 강제 송환됨.<sup>81)</sup></li> <li>· 2016년 1월, 검찰은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함.<sup>82)</sup></li> </ul>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부가 602일만에 열렸음. 12시간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면회라는 비판이 제기됨.<sup>83)</sup></li> <li>·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처음으로 통일비용 관련 법안을 들고 나왔고,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바꾸는 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함. 현재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인식과 재정운용에서 견해차가 생기면서 국회 논의는 더디게 이어지고 있음.<sup>84)</sup></li> </ul>	문26) 통일 준비
	‘갯맘’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밥을 주던 이른바 ‘갯맘’으로, 유기동물과 공동체생활 등과 관련된 논의가 확산됨. 가해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어려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혹은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를 진행중임.<sup>85)</sup></li> </ul>	-

81) 머니투데이 2015.10.8.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8년만에 ‘살인죄’ 법정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00720233267564&outlink=1>)

82) 뉴시스 2016.1.29. “[이태원 살인사건][1보] 法, “패터슨이 진범”... 징역 20년 선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9\\_0013867303&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9_0013867303&cID=10201&pID=10200))

83) 국민일보 2015.10.23. “눈물만 흘리다 작별... 상봉보다 ‘면회’에 가까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1028&code=11121400&cp=du>)

84) THE300 2015.10.23. “통일 준비는?... 낮잠자는 통일기금 관련 법안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2101367647087>)

85) CNB저널 2015.10.29. “[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갯맘 사건’과 14세 미만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1월	파리 IS 연쇄 테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총기난사와 자살폭탄 공격 등의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다쳤음<sup>86)</sup></li> <li>· 프랑스의 IS 파리 테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음.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을 두고 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중임.<sup>87)</sup></li> </ul>	문15) 국회법 개정
	北 인권 결의안 유엔위원회 압도적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됨. 주요 내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sup>88)</sup></li> <li>· 12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sup>89)</sup></li> </ul>	문26) 통일 준비
	한일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양 정상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했음.<sup>90)</sup></li> <li>· 여론은 ‘조기 타결’이나 ‘가속화’보다 제대로 된 사과에 따른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임.<sup>91)</sup></li> </ul>	-

형사미성년자”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7040>)

86) 스포츠한국 2015.11.15. “프랑스 파리 IS 최악의 테러, 최소 사망 129명 · 부상 352명 공식발표”

(<http://sports.hankooki.com/lpage/sisa/201511/sp20151115094348137060.htm>)

87) 뉴시스 2015.11.30. ““테러방지법 불필요” vs “국민안전에 필수”... 찬반 양론 ‘고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136&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136&cID=10201&pID=10200))

88) JTBC 2015.11.20. ““ICC 회부 · 책임자 처벌’ 북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7796](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7796))

89) 매일경제 2015.12.18. “북 인권 결의안 오늘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702850](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702850))

90) 매일경제 2015.11.3. “위안부 조기 타결 가속화 합의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전환점 염두에 두고...””

(<http://star.mbn.co.kr/view.php?no=1047368&year=2015&refer=portal>)

91) 국민일보 2015.11.2. ““위안부 문제 간단치 않다” 한 · 일 정상회담 가속화 발언에 네티즌 우려”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1월	한·중 FTA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한국과 중국과의 FTA비준동의안이 30일 통과됨. 정부는 한중 FTA 발효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입장을 밝힘. <sup>92)</sup> 12월 20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뉴질랜드 FTA가 공식 발효되었음. <sup>93)</sup>	-
2015년 12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함. 쟁트리피케이션이 현실화되며 흥대에 위치하고있던 상가들이 밀려나게 됨. <sup>94)</sup> ·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sup>95)</sup> 광역자치단체도 대책마련을 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sup>96)</sup>	-
	사법고시 존치 논란 확산	· 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sup>97)</sup>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과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참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sup>98)99)</sup>	문28) 법학전문 대학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21943&code=61111111&cp=du>)

92) 연합뉴스 2015.11.30.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연내 발효될듯(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30/0200000000AKR20151130165751001.HTML?input=1179m>)

93) 연합뉴스 2015.12.9. “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 13억 시장 ‘활짝’(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9/0200000000AKR20151209172400003.HTML?input=1179m>)

94) 옵티클리 2015.11.30. “치솟는 임대료… “어찌 하오리까?”” (<http://opticweekly.com/news/view.php?idx=7751>)

95) 국민일보 2015.12.22. “전국 첫 상가 임대차인 자율 상생협약… 성동구 ‘쟁트리피케이션’ 방지 목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7525&code=11131400&cp=du>)

96) 뉴스와이어 2015.11.23. “서울시, 대학로·해방촌 등 6개 지역 ‘쟁트리피케이션’ 막는다”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51123112708111>)

97) 중앙일보 2015.12.3.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 국민 71.6% 폐지 동의 안해” (<http://news.joins.com/article/19182767>)

98) 아시아경제 2015.12.4. “사법고시 존치에 로스쿨 학생들 줄줄이 집단 자퇴… 서울대 이어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0409022102865>)

99) 쿠키뉴스 2015.12.7. “삭발한 사법고시 준비생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38673&code=41121111&cp=du>)

일 시	사 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2월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 가계빚이 증가하고 FOMC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sup>100)</sup>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용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16년 2월은 수도권, 5월은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됨. <sup>101)</sup>	-
	‘청년수당’ 둘러싼 정부-지자체 법적공방	·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를,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청년배당에 대해 ‘불수용’결정을 받았음. <sup>102)</sup> ·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2016년 1월, 청년수당을 지급함. <sup>103)</sup>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 사법연수원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됨. 대법원은 당사자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 <sup>104)</sup>	-

100) 세계일보 2015.12.8. “이쪽 막으면 저쪽 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빚 가속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8/20151208003619.html?OutUrl=daum>)

101) 뉴시스 2015.12.14. “[종합]가계 신규 대출 한층 까다로워진다... 분할상환·가산금리·DSR 적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551&cID=10401&pID=104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551&cID=10401&pID=10400))

102) 연합뉴스 2015.12.24. “‘서울·성남시 청년수당’ 정부-지자체 법적다툼 비화(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4/0200000000AKR20151224051451017.HTML?input=1179m>)

103) 경향신문 2016.1.20. “성남시, 청년배당 첫날 5223명 수령 ‘뜨거운 호응’ “경제적 도움 떠나 사기진작 큰 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02242225&code=62010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02242225&code=620109))

104) 연합뉴스 2015.12.24. “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4/0200000000AKR20151224121100004.HTML?input=1179m>)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5년 12월	소라넷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라넷’ 폐쇄 작업에 돌입함. ‘소라넷’은 음란물 유포의 진원지인 인터넷 사이트임.<sup>105)</sup></li> <li>· 소라넷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 인터넷상에서 유해환경을 근절시킬 대책마련이 시급함.<sup>106)</sup></li> </ul>	-
	선거구 획정안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새로운 입법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안 논란이 일게됨.<sup>107)</sup>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례대표의 축소 방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였음. 내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존 등록이 무효로 되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도 불가능해짐.<sup>108)</su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sup>109)</sup></li> </ul>	-

105) 경향신문 2015.12.30. “경찰, ‘소라넷’ 해체 돌입…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093106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0931061&code=940202))

106) MBN 2015.11.26. “음란사이트 서버는 대부분 미국에… 제2, 제3의 소라넷 넘쳐난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668326](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668326))

107) 헤럴드경제 2015.12.30. “‘선거구획정안’ 손놓은 與野, 1월 1일 0시 ‘입법비상사태’ 임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30000092>)

108) 연합뉴스 2015.12.4. “선거구획정에 ‘비례 전쟁’… 여야, 축소 방식 놓고 충돌(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4/0200000000AKR20151204078951001.HTML?input=1179m>)

109) 헤럴드경제 2015.12.30. “‘선거구획정안’ 손놓은 與野, 1월 1일 0시 ‘입법비상사태’ 임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30000092>)

[표 36] 2016년 1월~6월의 주요 사건과 문항 개발 시 반영 사항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1월	대통령 노동 5대 법안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노동 4법 처리를 촉구함.<sup>110)</sup></li> <li>· 20대 총선 이후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sup>111)</sup></li> </ul>	문18) 근로환경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함.<sup>112)</sup></li> <li>·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기획재정부에서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일부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며 반발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임.<sup>113)</sup></li> </ul>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지정된 시도에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겨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sup>114)</sup></li> </ul>	문22)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

110) 동아일보 2016.01.14. “박근혜 대통령 “안보 - 경제 동시 위기... 국민이 나서달라””  
(<http://news.donga.com/3/all/20160114/75890623/1>)

111) 서울경제 2016.04.13.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사실상 실패... 기간제·파견법 등 개정 난항 예고” (<http://www.sedaily.com/NewsView/1KV0U44UWW>)

112) SBS뉴스 2016.01.18. “공공기관 체질 개선... 성과 연봉제 확대 시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88164&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88164&plink=ORI&cooper=NAVER))

113) 아시아뉴스통신 2016.06.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1027160&thread=10r02>)

114) 연합뉴스 2016.01.05. ““보육대란’ 코앞... 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누가 지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5/0200000000AKR20160105096851004.HTM?input=1195m>)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1월		·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이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됨.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sup>115)</sup>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 인천에서 부모에 의해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 정부는 2015년 12월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 사건 이후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대책’을 추진 중이었으며, 장기 결석학생을 전수조사 하던 중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사례를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함. 현행법상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신고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련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함. <sup>116)</sup>	문21) 아동 학대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원샷법)	·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 기업 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법안임. <sup>117)</sup> ·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대상 등이 모호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음. <sup>118)</sup>	-

115) SBS뉴스 2016.01.17. “누리과정에서 시작한 ‘보육대란’ 정말 오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501&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501&plink=ORI&cooper=NAVER))  
116) 중앙일보 2016.01.15.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해 보관하고 있던 30대 부부 긴급 체포” (<http://news.joins.com/article/19421085>)  
117) news1뉴스 2016.02.04. “드디어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 7개월만에”  
(<http://news1.kr/articles/?2566213>)  
118) 전기신문 2016.06.08. “원샷법 시행 눈앞, 실효성 놓고 시각 엇갈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65259812134577010>)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sup>119)</sup></li> <li>·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사회 위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하여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sup>120)</sup></li> </ul>	문26) 통일 준비
	야당의 필리버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함.<sup>121)</sup></li> <li>· 9일 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수정안은 부결됐고, 여당이 수정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됨.<sup>122)</sup></li> </ul>	문15) 국회법 개정
2016년 3월	이세돌 알파고 바둑 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이루어짐. 인간이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첨단 인공지능의 진일보를 확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 이 대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sup>123)</sup></li> <li>· 대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미래를 대비하여 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입법규제의 논의 등이 필요함.<sup>124)</sup></li> </ul>	문24)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

119) 연합뉴스 2016.02.10.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北핵·미사일 첫 독자제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0/0200000000AKR20160210064052014.HTM?input=1195m>)

120) 연합뉴스 2016.02.19. “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오바마 서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007152071.HTM?input=1195m>)

121) 아시아투데이 2016.02.23. “더민주, 테러방지법 맞서 ‘필리버스터’ 맞대응”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23010014544>)

122) OBS뉴스 2016.03.02. “필리버스터 종료… 테러방지법 등 표결”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117>)

123) 서울신문 2016.03.08. “치열한 ‘세기의 대결’ 진짜 승리자는 구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9004018>)

124) 한국일보 2016.03.16. “위대한 경연이 끝나고... 우린 다시 존재를 묻는다”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3월	평택 실종 아동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의 한 아동이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야산에 암매장되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 초등학교 입학식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자 학교 측에서 신고함.<sup>125)</sup></li> <li>· 숨진 피해자는 3년 전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왔고 지역아동센터 상담사들에게 발견 되었지만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부모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아동 학대 특례법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라도 감지하고 차단해야 하는 사회 안전망의 결함에 대해 대책이 논의되어야함.<sup>126)</sup></li> </ul>	문21) 아동 학대
	벨기에 브뤼셀 동시다발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진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폭탄테러가 발생함.<sup>127)</sup></li> <li>·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지 약 4개월만에 연쇄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양 국을 잇는 이른바 테러 커넥션이 드러남.<sup>128)</sup></li> </ul>	문25) 안전 관리
	성매매 특별법 합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sup>129)</sup></li> </ul>	문17) 성매매 처벌법

(<http://www.hankookilbo.com/v/d36cbd89578848ff82807d7a157908a5>)

125) 경향신문 2016.03.12. “‘평택 실종아동’ 계모, 친부 치밀한 범행 은폐 모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2144357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21443571&code=940202))

126) SBS뉴스 2016.03.12. “3년 전 학대 알고도 ‘사회 안전망’ 없어 못 구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3739&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3739&plink=ORI&cooper=NAVER))

127) 매일경제 2016.03.22. “공항·지하철 소프트타깃 노린 파리테러 판박이”

(<http://news.mk.co.kr/newsRead.php?no=214759&year=2016>)

128) 뉴시스 2016.03.24. “프랑스·벨기에는 왜 ‘유럽 테러 커넥션’의 중심이 됐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4\\_0013978773&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4_0013978773&cID=10101&pID=10100))

129) 연합뉴스 2016.03.31. “현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115952004.HTML?input=1195m>)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임. <sup>130)</sup>	
2016년 4월	20대 총선	·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매겨짐. 이에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짐. <sup>131)</sup> · 특정 지역의 손해가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법안의 경우 총선 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총선 이후 해당 지역 의원이 교체되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비춰짐. 반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법안도 있음. <sup>132)</sup>	-
	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 고시생이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9시간 가까이 머물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함. 피의자는 한 달에 걸쳐 정부청사를 휘젓고 다녔지만 단 한 번의 체지도 받지 않아 정부청사 내 보안 시스템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 <sup>133)</sup>	-

130) 부산일보 2016.06.19.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619000056>)

131) news1뉴스 2016.04.14. “16년만의 ‘완전한’ 여소야대... 민심 ‘정권 심판론’ 선택”  
(<http://news1.kr/articles/?2633883>)

132) 조선비즈 2016.05.03. “총선 결과에 희비 엇갈리는 법안들... 여야, 판세 바뀌며 법안 입장도 변경”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3/2016050300974.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3/2016050300974.html))

133) 동아일보 2016.04.07. “사무실 門에 보란듯이 비밀번호... 도어록 허무하게 열렸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7/77444194/1>)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지원기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함.<sup>134)</sup></li> <li>·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신중하게 따지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정황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이미 일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장삿속만 챙기는 일부 업체들의 상흔뿐 아니라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미비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짐.<sup>135)</sup></li> </ul>	문23) 기업의 법적 책임
2016년 5월	토막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남.<sup>136)</sup></li> <li>·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에 의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지만, 피의자의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가 SNS 등에서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sup>137)</sup></li> </ul>	-

134) 연합뉴스 2016.04.21.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과… 피해자단체 “그런 사과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130752030.HTML?input=1195m>)

135) 연합뉴스 2016.05.16. ““옥시, 유해성 알고 판매’, 4년전 공정위 조사서 드러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46551002.HTML?input=1195m>)

136) 서울신문 2016.05.07.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얼굴 실명 공개… “알 권리” vs “인권보호”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7500092>)

137) 연합뉴스 2016.05.09. “경찰, 토막살인범 얼굴공개 논란에 “매뉴얼 만들 것””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9/0200000000AKR20160509104800004.HTML?input=1195m>)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5월	병역특례 폐지 논란	· 국방부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을 밝힘. 경력 단절 등 연구 환경과 인력 모집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됨. <sup>138)</sup>	-
	2호선 스크린도어 수리직원 사망사고	·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서다 진입하던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sup>139)</sup> · 2008년 서울메트로는 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여 인력은 줄어 들고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안전업무 외주화 등 ‘효율화의 과정’이 정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sup>140)</sup>	문18) 근로 환경
	상시 청문회법과 거부권 행사	·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짐. 정부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안전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나 다수결에 의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 것이 행정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반면 야권에선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재의결 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 2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함. <sup>141)</sup>	-

138) 세계일보 2016.05.17. “병역특례 폐지 논란… ‘자원 부족’ VS ‘연구개발 약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7/20160517001949.html?OutUrl=naver>)

139) 한겨레 2016.05.31. “스크린도어 고장 연 1만여건 ‘월 140만원 청년’ 돌려막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6204.html>)

140) 주간경향 2016.06.14. “‘위험의 외주화’ 그 치명적인 유혹”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6071833011&pt=nv>)

141) 충청일보 2016.05.29.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선 법리 공방 벌어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16>)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6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sup>142)</sup></li> <li>· 교육부는 외딴 곳에 있는 학교 관사 주변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여성이 가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임. 또한 CCTV 등이 예방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외면 받아온 환경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함.<sup>143)</sup></li> </ul>	-
	미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무장 괴한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최소 50명이 숨지고 53명 이상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함. 최악의 총기 참사가 벌어진 올랜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총기난사에 이어 UCLA 총격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참사가 터지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테러 대처’와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sup>144)</sup></li> </ul>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함.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를 떠받친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EU는 창설 23년 만에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 기로에 놓였으며,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오자 파운드화 가치가 31년 내 최저로 떨어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미침.<sup>145)</sup></li> </ul>	-

142) 경인일보 2016.06.09.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609010002902>)

143) SBS뉴스 2016.06.07. “오지근무 여교사만 3천 명… CCTV가 해결책?”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3756&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3756&plink=ORI&cooper=NAVER))

144) 중앙일보 2016.06.13. “미 최악 총기난사 100여 명 사상… 플로리다주 올랜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47605](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47605))

145) 세계일보 2016.06.24. “브렉시트 현실화… 세계 정치·경제 대격변의 서막”

일시	사건	주요 내용	문항 개발 관련성
2016년 6월	IS 국내 테러 위협	<p>·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주한 미공군 기지와 대한민국 국민에 테러를 가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sup>146)</sup></p>	<p>문15) 국회선진화법 개정</p> <p>문25) 안전 관리</p>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24/20160624003073.html?OutUrl=naver>)  
 146) 국민일보 2016.06.20. “‘한국 = 십자군 동맹국’ 규정했던 IS, ‘구체적 타깃’ 첫 경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8648&code=11141100&cp=nv>)

[표 37] 2016년 7월~9월의 주요 사건

일시	사건	주요 내용
2016년 7월	한미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함.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주변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sup>147)</sup></li> <li>·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로 결정했으나, 지역주민 중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 만에 성주군 초전면의 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함.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부지 매입 비용, 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sup>148)</sup></li> </ul>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검사장이 각종 뇌물·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사상 첫 구속됨. 검사장의 관련 의혹만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은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해 모두 재판에 넘김. 검찰은 그와 관련하여 “검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는 없었다”는 결론도 함께 내려 비위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도 드러남. 개인 비위 행위로 선을 그어 검찰 조직에 면죄부를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외부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sup>149)</sup></li> </ul>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니스 트럭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 공휴일인 14일 밤,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덮쳐 최소 7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테러 공격을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는 등 이번 테러에 대해 세계 정상들은 즉각 비난과 애도의 목소리를 쏟아내었으며 강력 규탄함.<sup>150)</sup></li> </ul>

147) 한국경제 2016.07.08. “중국 외교부 강렬한 불만·단호한 반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942461](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942461))

148) 뉴시스 2016.09.30.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결론났지만 해결과제 산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30\\_0014420934&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30_0014420934&cID=10301&pID=10300))

149) 뉴스1 2016.07.30. ““기소된 전·현직 검사장, 부당한 사건 처리는 없었다”는 검찰”

(<http://news1.kr/articles/?2734120>)

150) 연합뉴스 2016.07.15. “佛대혁명기념일 니스 트럭테러로 77명 사망… 파리테러

일시	사건	주요 내용
2016년 7월	2016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가 대기업 밀어주기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주로 신산업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올해 말 중단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함.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정도 상향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적용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sup>151)</sup>
2016년 8월	서울시와 복지부간 청년수당 갈등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조치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기로 함. 서울시는 만 19~29살 청년 약 3000명에게 1차 활동보조금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복지부는 같은 날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킨 바 있음. <sup>152)</sup>
	4세 아이 버스 내 방치 사고	·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세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일어남. 사고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아이는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sup>153)</sup>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실행하기로 확정함. 한시적 누진제 경감방안에 따르면 kWh당 요금이 부과되는 4단계 구간이 올 여름에 확대될 방침임. 그러나 구간별 누진제 한도만 늘었을 뿐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바뀌지 않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옴. <sup>154)</sup>

후 최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5/0200000000AKR20160715018354009.HTML?input=1195m>)

151) 매일노동뉴스 2016.07.29. “박근혜 정부 4년차도 ‘부자감세’ 기조 유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40>)

152) 한국경제 2016.08.19.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불’”

(<http://hei.hankyung.com/hub01/201608196262I>)

153) 이데일리 2016.08.02. “통학버스 내 유치원생 방치, ‘업무상과실치상’ 영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001206612743384&DCD=A00703&OutLnkChk=Y>)

154) 조선일보 2016.08.12. “누진제 한시적 완화, 하루 8시간 에어컨 틀면 3만6000원

일시	사건	주요 내용
2016년 8월	콜레라·뇌염 등 각종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초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지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한데 이어 국내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콜레라 감염환자가 15년 만에 다시 발생함. 이례 없이 지속된 폭염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며 뇌염, 유행성 눈병 등 각종 감염병이 일시에 터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보건당국은 접촉자와 주변환경 조사 등을 마쳤지만 특별한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바닷물과 해산물이 콜레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바닷물 조사를 강화할 방침임. 155)</li> </ul>
2016년 9월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부장판사가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함. 법원 일각에서는 판사 개인의 일탈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법원장 스스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에서는 강도 높은 어조로 판사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함.156)</li> </ul>
	경북 경주시 5.8 규모 지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남남서쪽 8km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 부상자 8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신고는 253건으로 집계됨.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대응과 안전처 홈페이지도 지진 발생 당시에 접속이 불가하여 논란이 됨.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사례가 빈발하여 비난 여론이 일어남.157)</li> </ul>

할인... “3만원 줄이자고 항의한줄 아냐” 네티즌 분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2/201608120186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2/2016081201868.html))

155) 중도일보 2016.08.29. “회귀 감염병 확산 잇따라, 감염병 공포”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8292696](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8292696))

156) 동아일보 2016.09.07. “양승태 대법원장 “부정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게 영광” 역대 3번째 고개 숙여”

(<http://news.donga.com/3/all/20160907/80174210/1>)

157) 쿠키뉴스 2016.09.13.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4982>)

## 제 2 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 제 1 절 개 관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인식도 함께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8개 문항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특히,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2015년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와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설문항목들을 다수 구성한 바 있다.

먼저,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와 개선 사항, 우리사회의 준법수준 진단 및 자가진단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악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2009년의 결과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응답결과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i)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법 분야(판사, 검사, 법원공무원)에서 58.9%, ii) 우리사회의 준법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 또한 사법 분야가 56.7%, iii)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응답도 73.3%로 각각 36% 미만(평균 34.4%), 45.3% 미만(평균 42.3%), 60.4% 미만(평균 59.6%)의 응답 수준을 보이는 다른 분야 법전문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성별로 보면,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0대 이하에서 높았으며 (20대 33.5%, 30대 34.1%), 50대 이상은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50대 30.5%, 60세 이상 33.3%)로 응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우리사회의 준법수준 진단 및 자가진단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불량품 구매시 대처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함께 구성한 바 있다. 특히, 2015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법률 용어나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59.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7%)보다 많았고,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는 응답(3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8.4%)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전문가의 인식을 추가하여 그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우선, 우리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51.2%)나 2015년의 결과(49.5%) 보다 더 낮게(42.3%)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99.0%)나 2015년의 결과(91.7%)와 유사한 수준(97%)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75.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관련부처에 제안 및 건의(33.3%)하거나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28.1%) 또는 인터넷/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 게재(18.1%)라고 답하여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량품 구매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i) 2015년 일반국민들의 응답은 끝까지 따져서 바뀌온다(41.4%), ii)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41.2%), iii)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11.9%), iv) 손해배상을 받아낸다(3.8%) 순이었으나, 2016년의 법전문가들의 응답은 i)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78.9%), ii)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8.7%), iii)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8.2%), iv) 손해배상을 청구한다(1.7%) 순서로 대처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 제 2 절 법에 대한 정서와 법교육 현황

### 1. 법에 대한 느낌

#### (1) 종합 분석

칼 맑스(Marx, L.)는 법률을 포함한 상부구조는 경제적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고,<sup>158)</sup> 국가와 국가 운영의 골간인 법체계를 장악하는 세력은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법률과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고 한 바 있다.<sup>159)</sup> 즉, 현실적으로 법은 그 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기 마련이고, 법 제정에서는 소외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득권층이나 법의 제정/적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법이 공평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법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사이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법전문가의 학력, 소득, 업무상의 권한, 권력 등에서 모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전문가 중에서도 입법기준을 정하고,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공무원·판사·검사·변호사 등은 법에 훨씬 우호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는 「2015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에서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공평하다’는 14.2%)인데 반하여,<sup>160)</sup> 2016년의 본 연구에서는 공평하다고 비율이 34.4%(‘불공평하다’ 12.3%)로서 상반

158) Marx and Engels(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Die Deutsche Ideologie(The German Ideology))』(1846년), 1988, p.73.

159) Marx and Engels(권혁 역),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8년), 2010, p.37.

160)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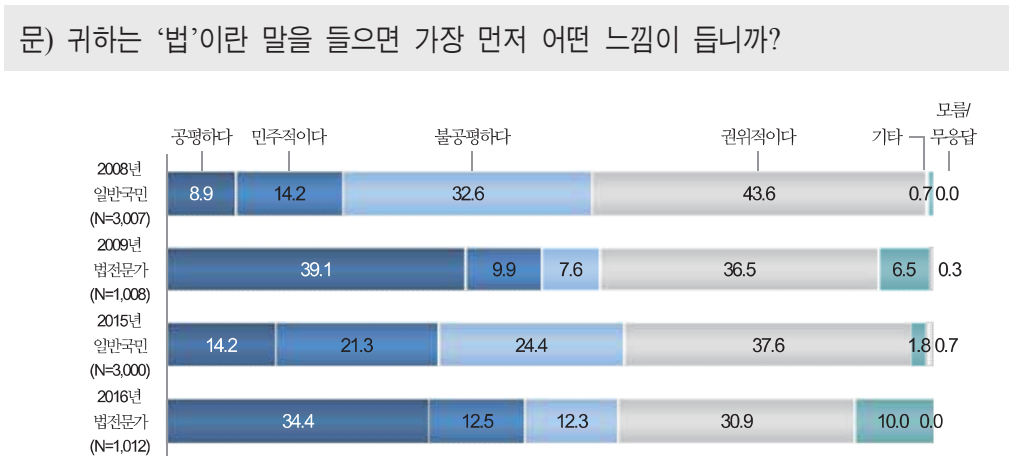
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더라도 법전문가는 ‘공평하다’의 응답 비율(2009년 39.1%, 2016년 34.4%)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국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2008년 8.9%, 2015년 14.2%)을 보여 의견 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법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회질서’(28.4%), ‘공평함’(18.8%), ‘민주적 이미지’(18.5%)로 답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sup>161)</sup> ‘권위적’(19.4%)이며, ‘불공평’(13.9%)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3.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견주어 볼 수 있다.<sup>162)</sup>

한편 법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권위’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법의 중요성과 엄정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권위적’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권위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낌 내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림 1] 법에 대한 느낌

(단위 : %)



161)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65.

162)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22, p.110.

## (2) 특성별 분석

‘법’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서는 남성과 여성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이나 3순위와 4순위를 각각 합한 응답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공평하다’(37.1%), ‘권위적이다’(28.5%), ‘불공평하다’(13.2%), ‘민주적이다’(12.1%)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성은 ‘권위적이다’(37.1%), ‘공평하다’(27.6%), ‘민주적이다’(13.3%), ‘불공평하다’(9.8%)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분야별로 볼 때, 입법 분야는 ‘권위적이다’라는 비율이 40.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44.0%)과 국회공무원(50.0%)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법 분야에서는 58.9%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70.0%)와 검사(60.0%)가 ‘공평하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분야에서 ‘공평하다’라는 응답(사법 분야 58.9%, 법전문가 평균은 34.4%)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적이다’라는 응답(사법 분야 18.9%, 법전문가 평균은 12.5%)도 사법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전문가 중에서도 사법 분야의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법전문가들에 비해 법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 분야의 법전문가 특히, 판사·검사 직군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을 적용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된다. 물론,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입법 분야 내지 행정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게 되며, 각 사안에서 그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한 일련의 절차로 나타나게 된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개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송 과정은 본인의 인생이 좌우되는 큰 사건이 된다.

따라서, 검사·판사가 구형 내지 판결의 결정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 더욱 문제가 될 것이며, 판사 내지 검사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표 38] 특성별 법에 대한 느낌

구 분		사례수	공평하다	민주적이다	불공평하다	권위적이다	기타	계
전 체		(1,012)	34.4	12.5	12.3	30.9	10.0	100.0
성 별	남 자	(726)	37.1	12.1	13.2	28.5	9.1	100.0
	여 자	(286)	27.6	13.3	9.8	37.1	12.2	100.0
분 야 별	입 법	(151)	18.5	16.6	16.6	40.4	7.9	100.0
	행 정	(212)	34.9	8.5	8.0	39.6	9.0	100.0
	사 법	(90)	58.9	18.9	3.3	12.2	6.7	100.0
	학 계	(208)	34.1	8.2	15.4	29.8	12.5	100.0
	민 간	(231)	35.5	13.9	15.6	24.2	10.8	100.0
	예비법전문가	(120)	33.3	14.2	9.2	32.5	10.8	100.0
직 업 별	국회의원	(50)	14.0	22.0	12.0	44.0	8.0	100.0
	국회공무원	(50)	14.0	8.0	16.0	50.0	12.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7.5	19.6	21.6	27.5	3.9	100.0
	국가 공무원	(112)	38.4	6.3	6.3	37.5	11.6	100.0
	지방 공무원	(100)	31.0	11.0	10.0	42.0	6.0	100.0
	판 사	(30)	70.0	13.3	0.0	3.3	13.3	100.0
	검 사	(30)	60.0	23.3	0.0	16.7	0.0	100.0
	법원 공무원	(30)	46.7	20.0	10.0	16.7	6.7	100.0
	로스쿨 교수	(69)	39.1	5.8	14.5	30.4	10.1	100.0
	법학과 교수	(70)	38.6	12.9	15.7	24.3	8.6	100.0
	연구원	(69)	24.6	5.8	15.9	34.8	18.8	100.0
	변호사	(110)	40.9	10.9	9.1	22.7	16.4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30.6	16.5	21.5	25.6	5.8	100.0
	로스쿨과정생	(60)	41.7	11.7	8.3	26.7	11.7	100.0
박사과정생	(60)	25.0	16.7	10.0	38.3	10.0	100.0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개인면담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1. 귀하가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10개만 말해 주십시오.

법전문가들은 아래의 [표 39]에서와 같이, ‘정의’, ‘질서’, ‘자유’, ‘평등’, ‘조정’ 등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들 외에도 ‘억압’, ‘어려움’, ‘괴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들을 함께 떠올리고 있다. 즉, 법치주의, 법의 지배에 따른 법의 특성이 주는 느낌과 함께 현실에서의 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는 느낌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서 평가한다면, 일반국민이나 법전문가들이 가지는 ‘법’에 대한 느낌을 인식 그 자체로 평가하기 보다는 향후 ‘법’의 제정·집행·적용·해석·판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 ‘법’이 주는 느낌에 대한 개별인터뷰 응답결과

<b>입 법</b>	국회 공무원	강제, 정치, 규제, 억압, 진흥, 자율, 국가, 사회, 질서, 법치
	국회의원보좌관	국회, 국회의원, 갈등, 조정, 사회적 합의, 개정, 제정, 보좌관, 로비, 로펌
<b>사 법</b>	판사	정의, 사명감, 밥벌이, 사회, 인간, 복잡함, 고민, 동료애, 합의, 판단
	검사	답답함, 불가피함, 차선책, 다툼의 산물, 아쉬움, 룰, 부족함, 필요함, 복잡함, 최소한의 도덕

제 2 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행 정	국가직	근거, 정당성, 복잡함, 상식, 국회, 시험, 행정, 시행령, 행정규칙, 밥 규제, 지원, 단속, 도구, 준수, 위반, 일상, 예산, 민원, 업무
	지방직	검사, 법원, 권리, 형벌, 벌금, 징계, 사회, 도덕, 정의, 판사
학 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 자유, 평등, 형평, 악법, 형벌, 손해배상, 피해자, 공권력, 기본권
	법학과 교수	규칙, 강제성, 규율, 사회 변동, 엘리트, 교육, 문화, 경직성, 계몽, 도덕, 정치
	법 관련 연구원	헌법, 행정법, 환경법, 대통령, 규제, 위험, 자유, 평등, 시민, 노동자
민 간	변호사 (사법연수원출신)	권력,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밥벌이, 억압, 정의, 인권, 대법원, 대통령
	변호사 (로스쿨출신)	재판, 법원, 판사, 검사, 범죄자, 권력, 정치, 이권, 지배 수단, 희망
	법률서비스 자격자	어려움, 한자, 전관 비리, 질서, 헌법, 국가, 자본주의, 노동법, 변호사
예비 법전문가	박사과정생	공평, 충돌, 세금, 국제, 인문학, 정치, 법조인, 입법기관, 사법기관, 솔로몬
	로스쿨생	의, 공평, 협력, 고민, 합의, 괴리, 적응, 암기, 사회, 갈등

## 2.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 (1) 종합 분석

국내에서 법교육과 관련하여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학교 법교육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으로 정하여 초·중·고 및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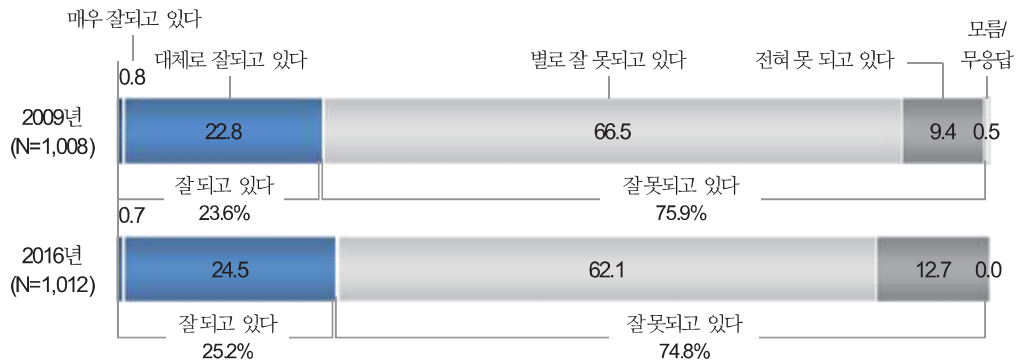
의 법교육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적용범위는 청소년·일반인에 대한 법 관련 일체의 교육과 법교육 관련 단체·평생교육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잘 되고 있다’(매우 잘되고 있다 + 대체로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 ‘잘 못되고 있다’(전혀 못되고 있다 + 별로 잘 못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8%로 나타났다.

[그림 2]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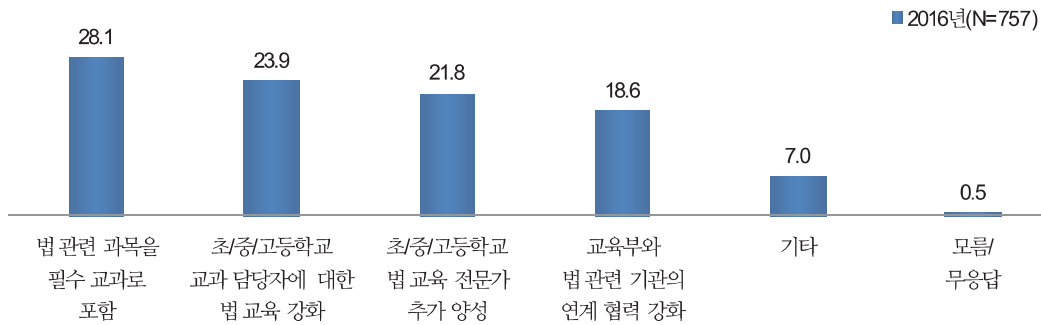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도 23.6%로 낮게 나온 바 있다. 따라서,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하위항목을 법교육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설문한 바 있다.

[그림 3]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

(단위 : %)

문) 그럼, 법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교육이 ‘잘 못되고 있다’고 응답한 법전문가(757명) 중,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28.1%) 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법교육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라는 독립된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으로 성립되면서 고교 공통필수 교과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2009년에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과목과 합쳐져 ‘법과 정치’과목으로 축소된 바 있다.<sup>163)</sup> 이 때문에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고등

163) 김자영, “교과의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7권1호, 한국법 교육학회, 2012, p.38-39.

학교에서는 기초적인 법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sup>164)</sup>

한편, 교과 담당자인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에 대하여서는 「법교육 지원법」 제8조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더욱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사회과목 중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로 법교육을 들고 있으나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법교육이며, 가르치기에도 가장 부담스럽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165)</sup> 또한, 법 과목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모두 과거의 법교육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법 과목 교사양성체계가 없으며, 학교 현장에도 법교육을 전공한 전문 교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66)</sup>

향후 법 관련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전공 교사 양성을 위해 대한변협 또는 법무부와 법제처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sup>167)</sup> 또한, 중고등학교 전공 교사 추가 양성 및 확충을 위하여 법 전공자의 교사 인증제도 및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64) 한유경, 『고등학교 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25-133.

165) 장중환, 『사회과 법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65.

166) 한유경, 『고등학교 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25-133.

167) 한유경, 『고등학교 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25-133.



(2) 특성별 분석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19~29세 33.0%, 30대 34.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50대 이상은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50대 30.5%, 60세 이상 33.3%)에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특성별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법 교육 전문가 추가 양성	교육부와 법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 체	(757)	28.1	23.9	21.8	18.6	7.0	0.5	100.0	
연령별	19~29세	(109)	33.0	19.3	22.9	21.1	2.8	0.9	100.0
	30대	(226)	34.1	18.6	23.0	18.1	5.8	0.4	100.0
	40대	(214)	25.2	24.8	23.4	16.8	9.3	0.5	100.0
	50대	(151)	21.9	30.5	18.5	20.5	7.9	0.7	100.0
	60세 이상	(57)	22.8	33.3	17.5	17.5	8.8	0.0	100.0

제 3 절 법전문가의 법생활

1. 사회의 준법 수준

(1) 종합 분석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는 의견은 42.3%(매우 잘 지켜진다 0.8% + 잘 지켜지는 편이다 41.5%)로 적지는 않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57.6% :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1.4%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6.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준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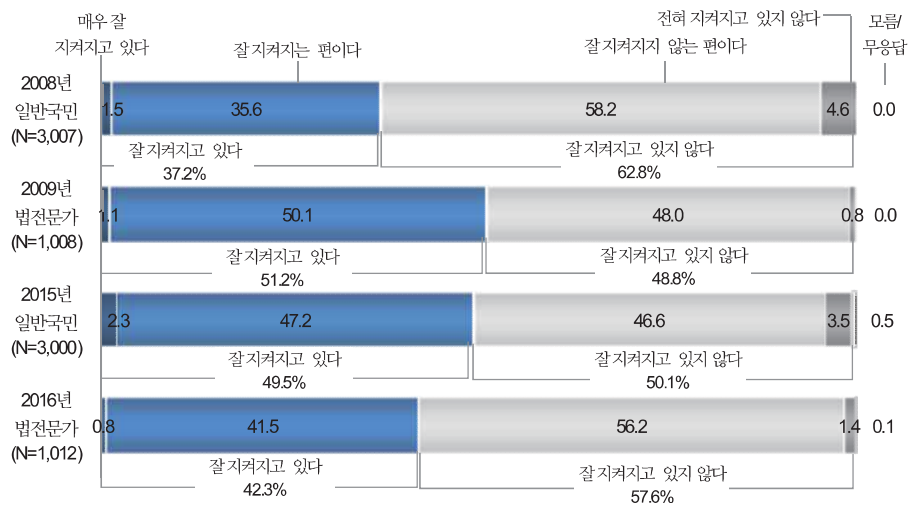
법전문가의 ‘잘 지켜지고 있다’(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잘 지켜지는 편이다)는 비율(42.3%)은 2015년 일반국민(49.5%)의 응답 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지표 항목인 주체별 법준수 정도에 대해 법전문가, 일반 국민 모두 법원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기업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지표 항목인 ‘법을 잘 지킨다’에 대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비율 : 정부(2016년 법 전문가 33.8%, 2015년 일반국민 25.9%), 지자체(2016년 법전문가 28.7%, 2015년 일반국민 23.7%), 법원(2016년 법전문가 52.8%, 2015년 일반국민 40.9%), 기업(2016년 법전문가 6.3%, 2015년 일반국민 16.2%), 사회 구성원(2016년 법전문가 17.6%, 2015년 일반국민 39.9%)).

[그림 4] 법 준수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특기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법 분야(판사+검사+법원공무원)만 유일하게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는 의견(56.7%)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4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분야 법전문가들이 다른 분야 법전문가보다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느낌’ 설문항목에서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보다 유사한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 특성별 법 준수 정도

구 분	사례 수	①+②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잘 지켜 지고 있다	② 잘 지켜 지는 편이다	③ 잘 지켜 지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지켜 지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8	41.5	42.3	56.2	1.4	57.6	0.1	100.0	
분야 별	입법	(151)	2.0	38.4	40.4	58.3	0.7	58.9	0.7	100.0
	행정	(212)	0.5	45.3	45.8	54.2	0.0	54.2	0.0	100.0
	사법	(90)	2.2	54.4	56.7	43.3	0.0	43.3	0.0	100.0
	학계	(208)	0.5	35.6	36.1	62.0	1.9	63.9	0.0	100.0
	민간	(231)	0.4	38.5	39.0	59.3	1.7	61.0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0.0	45.0	45.0	50.8	4.2	55.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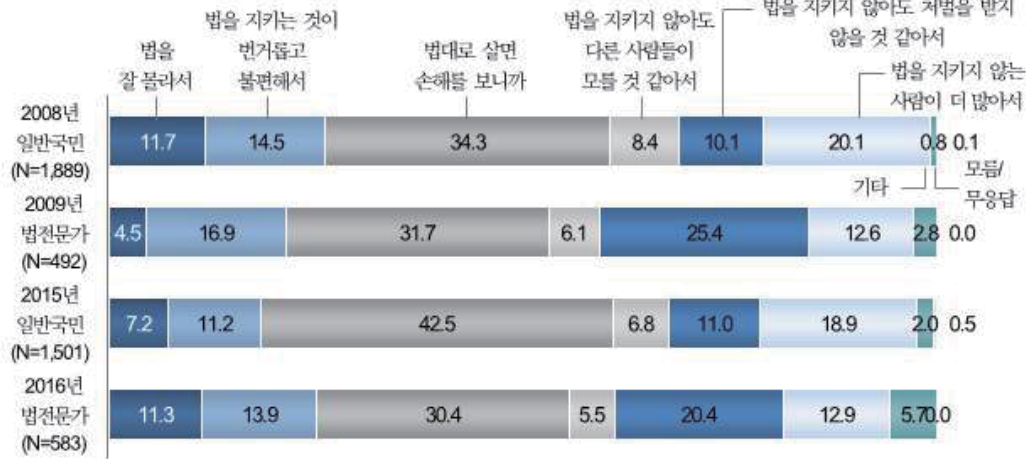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들(N=583)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30.4%)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법전문가(31.7%), 2008년 및 2015년 일반국민(각각 34.3%, 42.5%) 결과 모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법 비준수 이유

(단위 : %)

문)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민간 분야(변호사 + 법률서비스자격자)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7.7%)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2] 특성별 법 비준수 이유

구분	사례수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기타	계	
전체	(583)	11.3	13.9	30.4	5.5	20.4	12.9	5.7	100.0	
분야별	입법	(89)	9.0	18.0	28.1	7.9	12.4	19.1	5.6	100.0
	행정	(115)	12.2	10.4	38.3	1.7	21.7	7.8	7.8	100.0
	사법	(39)	2.6	20.5	35.9	7.7	25.6	5.1	2.6	100.0
	학계	(133)	8.3	12.0	34.6	4.5	23.3	9.8	7.5	100.0
	민간	(141)	17.7	14.2	17.7	5.7	20.6	19.1	5.0	100.0
	예비법전문가	(66)	10.6	13.6	34.8	9.1	19.7	10.6	1.5	100.0

###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바 있다.

문3. 귀하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운 택시기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동 설문은 타인의 준법 수준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지켜야 할 ‘법’이나 ‘규정’의 보호가치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물음으로서 ‘타인의 법 준수’ 평가에 대한 정량조사에서의 수치상의 결과를 좀 더 다각도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타인의 법 준수’라는 측면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권리와 교통법규와 같이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무엇을 우선적 가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법전문가 대부분은 생명의 가치를 법규에 대해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법규로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반하는 것이 지키는 것에 비해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위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에서 살펴볼 ‘불합리한 법에 대한 개선 의지’, ‘바람직한 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법’이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상식에 맞는 법’ 등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결과로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법익균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설문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법전문가가 그렇다는 응답을 한 결과와 유사한 판단에서 나온 응답으로 보인다.

2)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1. 법전문가의 절반 이상(57.6%)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3).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는 긍정 의견이 30% 내외로 부정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은 절반 정도(52.8%)가 ‘잘 지킨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3~45). 귀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법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에 대해 절반 이상(57.6%)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 한 배경을 물은 정성조사에서는 업무상 법을 위반한 경우를 자주 접하는 직업적 특성이나 언론의 보도에 따른 영향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법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i) 내가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는 일반적인 사회의식이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와 ii) 실정법 외에도 ‘법’의 범위를 넓게 평가(훈령이나 고시 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견해가 함께 제시되었다.
- 한편, 우리사회의 준법 수준이나 분야별 준법수준에 관한 법의식 지표 설문항목(정량조사 문43~45)을 연계한 설문에 대하여, 정부나 지자체 또는 법원의 경우, 내부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

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법준수 평가가 61.40점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기대보다 더 낮은 수치라는 평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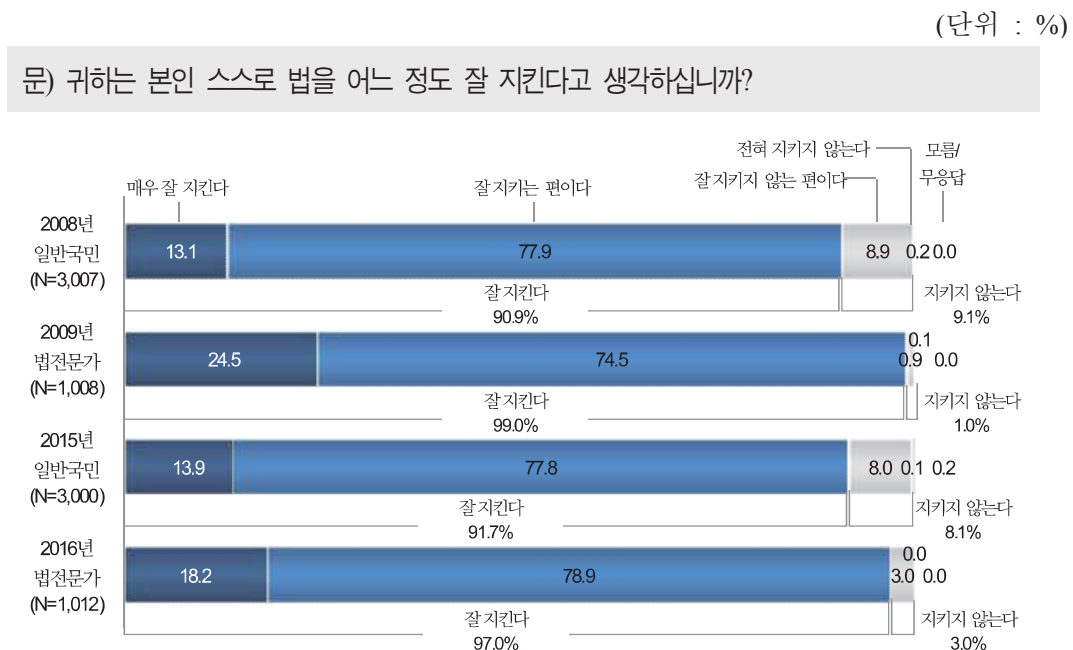
## 2. 준법수준 자가진단

### (1) 종합 분석

법전문가의 법 준수 자가 진단에 대해 응답자 본인들은 대부분(97.0% : 매우 잘 지킨다 18.2% + 잘 지키는 편이다 78.9%)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법전문가(99.0%), 2008년 및 2015년 일반국민(각 90.9%, 91.7%) 조사에서도 모두 90% 이상이 ‘잘 지킨다’(매우 잘 지킨다 + 잘 지키는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본인이 법을 ‘잘 지킨다’(매우 잘 지킨다 + 잘 지키는 편이다)는 비율(97.0%)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잘 지켜지는 편이다)는 비율(42.3%)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6] 법준수 자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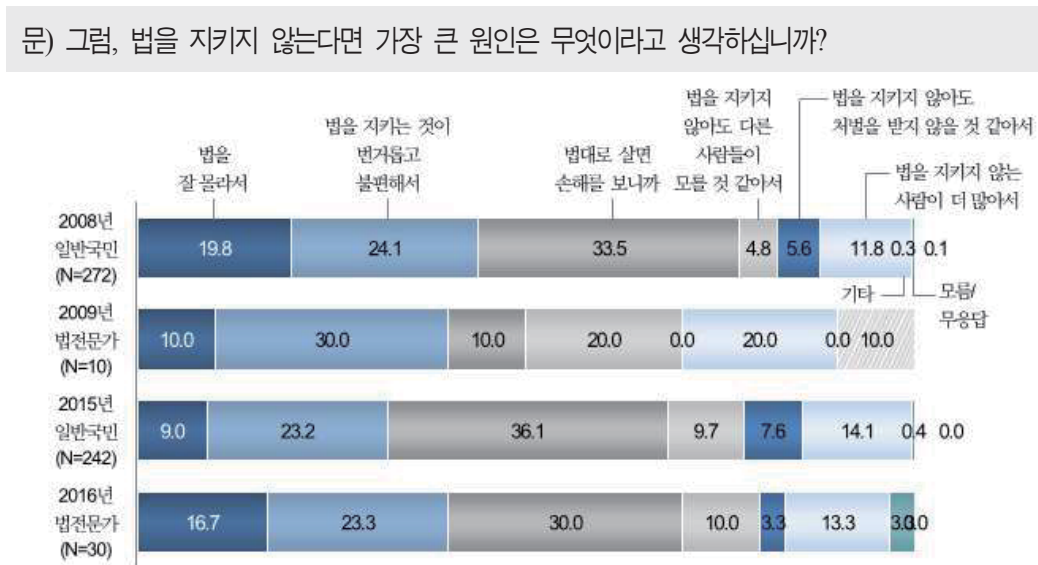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수의 응답자들(N=30)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30.0%)를 응답하였다. 해당 응답자의 사례수가 극히 적은 중 가장 높은 빈도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것과 같은 이유였다.

이는 2008년 및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경향은 비슷하였으나, 2009년 법전문가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의 비율이 30.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본 문항에 대한 법전문가의 응답자 수가 극히 적어 경향성을 분석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7]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단위 : %)



(2) 특성별 분석

특성별로 살펴보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22.7%)보다 여성(50.0%)이, 19~29세(83.3%)의 연령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항목의 응답 사례수가 극히 적어 데모 변수별 응답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43] 특성별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구 분		사례수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기타	계
전 체		(30)	16.7	23.3	30.0	10.0	3.3	13.3	3.3	100.0
성 별	남자	(22)	22.7	22.7	22.7	9.1	4.5	18.2	0.0	100.0
	여자	(8)	0.0	25.0	50.0	12.5	0.0	0.0	12.5	100.0
연 령 별	19~29세	(6)	0.0	0.0	83.3	16.7	0.0	0.0	0.0	100.0
	30대	(9)	44.4	11.1	22.2	0.0	0.0	22.2	0.0	100.0
	40대	(7)	0.0	42.9	0.0	14.3	14.3	28.6	0.0	100.0
	50대	(4)	0.0	75.0	25.0	0.0	0.0	0.0	0.0	100.0
	60세 이상	(4)	25.0	0.0	25.0	25.0	0.0	0.0	25.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2-1.과 2-2., 2-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2-1. 귀하는 규정을 준수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도 법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귀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부담이 되더라도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개인인터뷰에 응답한 법전문가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령 법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규정 준수를 하고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의 설문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준수와 생명 가치를 대비한 것과 달리 이념적으로 법 자체가 가치지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준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 또는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경우(생명의 가치 등)가 아니라면 우선 법 준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 있다. 즉, 준수되지 못하는 법은 그 자체로서 법의 기능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킬 때 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정량조사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것과 다만, 불합리한 법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i)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ii) 준수 가능성이 있는 법이어야 하고, iii)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법이어야 하는 한편, iv)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정한 법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아래에서 살펴 볼 ‘바람직한 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i) 개인의 이익관계를 기준으로 위반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적을 때, ii) 상식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생각될 때, iii) 공정·공평하지 않은 법이라고 판단될 때, iv) 법 준수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규제일 때 등으로 응답하여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법이나 악법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2. 설문에 응답한 법전문가의 97.0%는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결과인 42.3%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전문가의 97%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했으나 법전문가의 42.3%만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 대해 응답자가 법전문가라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는 법을 적용하는 주체의 편향된 시각 또는 우월적인 시선이 전제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법 준수는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 평가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법의 적용 국면을 다르게 이해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 전반적으로는 법전문가 자신의 준법정도의 평가와 일반국민의 준법정도의 평가에서의 법이 다른 관념이라는 견해로, 97%의 응답자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이는 직무상 관련법을 생각한 것이고 그 외의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의 하나로서 법을 준수할 때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사소한 규정 위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법전문가 97%가 자신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법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의견이 27~28%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전문가들이 직무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 즉, 법전문가들은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그 업무에 관한 순조로운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반려, 지체

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준법정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3%)의 배경으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응답(30%)과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응답(23%)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있어 법 위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이 엄격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준수시 그에 따르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3. 악법에 대한 인식

#### (1) 종합 분석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일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숨졌다는 내용을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이 사례를 준법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고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권고하였다.<sup>168)</sup>

법전문가에게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59.6%)이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일반국민(‘찬성한다’ 63.2%, ‘반대한다’ 36.8%)과 큰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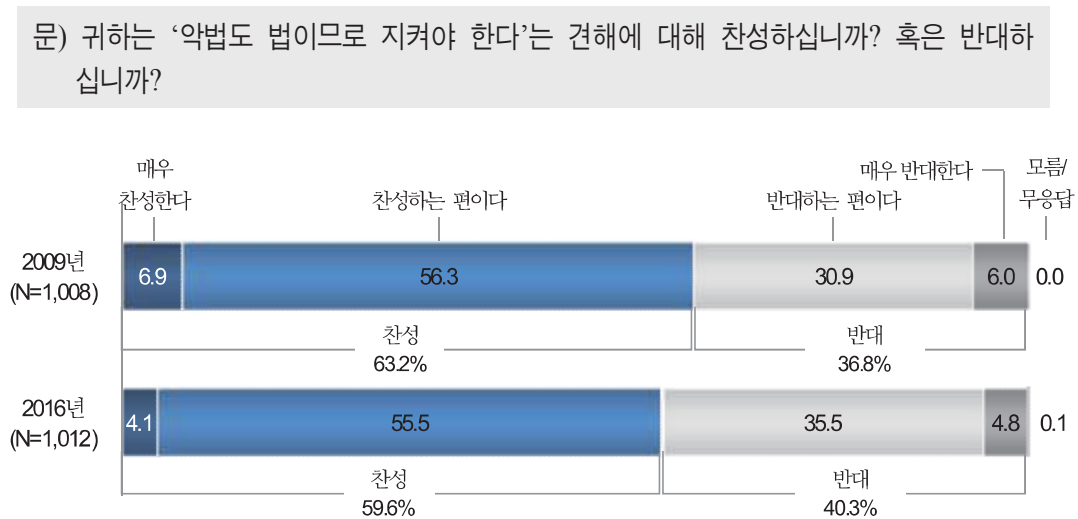
그리고 본 문항과 유사한 지표 항목인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2016년 법전문가 71.7%, 2015년 일반국민 68.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68) 법률신문 2004.10.26. “초·중·고 사회교과서 사법제도 설명 오류 많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572>)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서 법준수와 관련하여 ‘비록 어떤 법규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법규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하는가’의 문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0.5%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sup>169)</sup> 제정된 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sup>170)</sup> 전반적으로 악법이라도,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sup>171)</sup>

[그림 8]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169)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23, p.79, p.111.

170)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23, p.79, p.111.

171) 신의기 외 1명,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권 4호, 2012, p.79-81.

## (2) 특성별 분석

분야 특성별로 보면, 사법 분야(73.3%)에서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특성별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견해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찬성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전 체	(1,012)	4.1	55.5	59.6	35.5	4.8	40.3	0.1	100.0	
분야 별	입법	(151)	5.3	51.7	57.0	38.4	4.6	43.0	0.0	100.0
	행정	(212)	3.8	56.6	60.4	36.3	3.3	39.6	0.0	100.0
	사법	(90)	3.3	70.0	73.3	25.6	1.1	26.7	0.0	100.0
	학계	(208)	3.4	52.4	55.8	35.6	8.7	44.2	0.0	100.0
	민간	(231)	3.9	56.3	60.2	36.4	3.0	39.4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5.0	51.7	56.7	35.8	7.5	43.3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1-1.과 문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 1-1. 귀하는 어떠한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선, 악법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즉, i)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훼손된 법, ii)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 iii) 법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법이 악법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법이나 구성원의 합의 없이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 ii)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권다툼에서 생겨나는 법,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법, 지나친 부담을 주는 과도한 법, iii)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법,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의 기능만 있는 법, 일상생활과 관련없이 사문화된 법 등을 들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법에 대한 의견과도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즉, i)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법, ii)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 iii)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준수가능성이 있고 사회 갈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 iv)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등을 바람직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앞의 종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특히, 사법분야에서는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 전문가들은 ‘질서’로서의 법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불합리한 법에 대한 개선의지’ 설문항목에 대하여서는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여 우리 사회에서 악법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법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개선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4. 법 개선 의지 및 실천

##### (1) 종합 분석

75.7%에 달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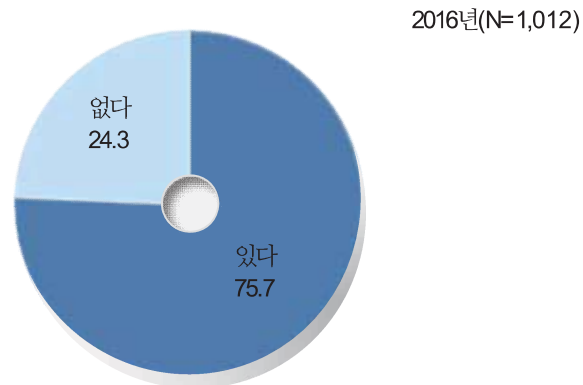
이를 앞 질문의 응답결과 즉,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59.6%)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40.3%)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결해 보았다.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불합리한 악법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언제까지나 참고 지켜야만 한다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악법도 법은 법이니 일단은 지키고 추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9]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의향

(단위 : %)

문) 귀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2) 특성별 분석

### 1) 성별, 연령별 특성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합리한 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여성(68.5%)보다 남성(78.5%)이 많았고, 40~50대 (40대 77.9%, 50대 8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특성별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의향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 체		(1,012)	75.7	24.3	100.0
성 별	남자	(726)	78.5	21.5	100.0
	여자	(286)	68.5	31.5	100.0
연 령 별	19~29세	(145)	73.8	26.2	100.0
	30대	(306)	71.9	28.1	100.0
	40대	(280)	77.9	22.1	100.0
	50대	(203)	81.3	18.7	100.0
	60세 이상	(78)	71.8	28.2	100.0

불합리한 법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관련 부처에 제안 및 건의’(33.3%),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28.1%),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 게재’(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처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법 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관련 부처에 제안·건의한다는 것은 관련 부처가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 줄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관련 부처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즉,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 혹은 대중에게 호소하는 행동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부처에 제안·건의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응답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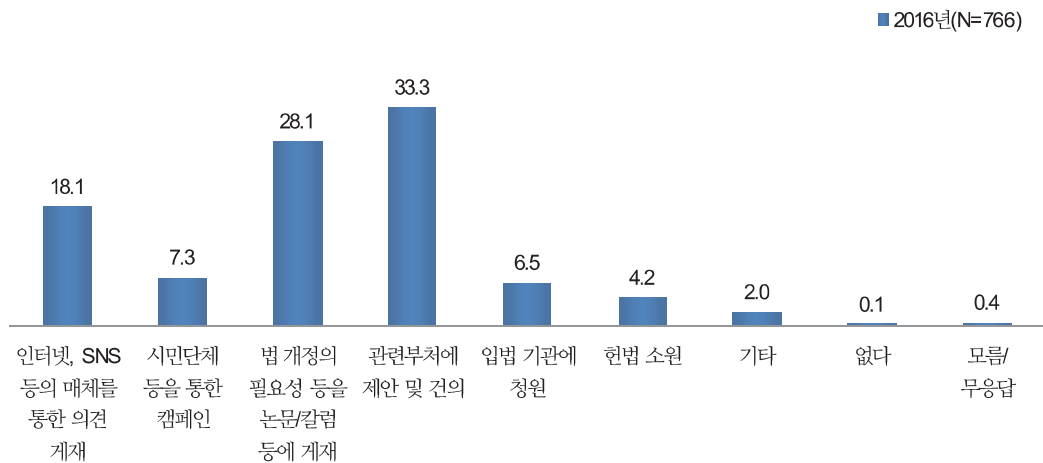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라면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생각한 불합리한 법들은 처음부터 시행령 등에 관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관련부처 제안은<sup>172)</sup> 일반 국민에게 개선의견을 접수받으면 법률/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을 담당 소관부처와 협의 후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반영여부를 확정하여 관련 법령의 재개정 및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절차이다.<sup>173)</sup>

[그림 10]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단위 : %)

문) 그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



## 2) 종사 분야별 특성

불합리한 법에 대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 분야에서 ‘관련 부처에 제안 및 건의’한다는 비율이 61.9%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17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자치부는 국민참여정책을 운영 중임. 주요 국민참여 정책은 1.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 : [idea.epeople.go.kr](http://idea.epeople.go.kr)) 2. 생활공감정책 추진(생활공감 국민행복 : [happylife.go.kr](http://happylife.go.kr)) 3.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추진 4.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창조정부조직실 - 국민참여정책 (<http://www.moi.go.kr/firt/sub/a06/b02/ideaEpeople/screen.do>) 2016.10.31. 최종검색))

173)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i.go.kr/firt/sub/a06/b02/ideaEpeople/screen.do>) 2016.10.31. 최종검색)

나타났으며, 학계 분야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한다는 비율이 6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 특성별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구분	사례 수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 게재	시민 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	관련 부처에 제안 및 건의	입법 기관에 청원	헌법 소원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766)	18.1	7.3	28.1	33.3	6.5	4.2	2.0	0.1	0.4	100.0	
분야별	입법	(134)	16.4	9.7	16.4	36.6	15.7	0.7	2.2	0.0	2.2	100.0
	행정	(139)	24.5	4.3	3.6	61.9	4.3	0.0	1.4	0.0	0.0	100.0
	사법	(56)	7.1	1.8	32.1	41.1	7.1	3.6	7.1	0.0	0.0	100.0
	학계	(188)	9.6	6.4	62.8	16.0	2.1	2.1	1.1	0.0	0.0	100.0
	민간	(152)	27.6	5.3	17.8	30.9	7.2	9.2	1.3	0.7	0.0	100.0
	예비법전문가	(97)	19.6	16.5	25.8	20.6	4.1	11.3	2.1	0.0	0.0	100.0

## 5. 법생활과 권리의식

### (1) 종합 분석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을 샀을 경우 대응 반응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7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8.2%)와 좀 더 적극적인 대응(피해구제 신청 8.7%, 손해배상 청구 1.7%)을 하겠다는 것은 소수 의견들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이 법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7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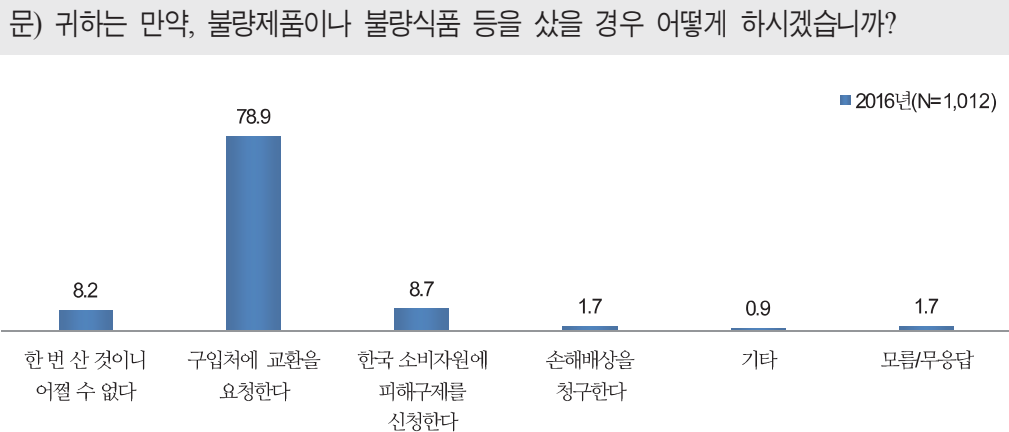
174) 다만, 2015년의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는 의견(‘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은 41.4%로 법전문가의 78.9%보다 현저히 낮은 응답을 보인 한편,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응답이 41.2%로서 상당히 높게 나온 바 있다(현대호·김명아,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신청 및 의뢰를 받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법 제36조(시험·검사의 의뢰)에 규정된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합의권고를 하게 된다. 이에 수락하였을 시 합의서 작성에 의해 합의가 되어 종료가 되지만 거부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게 된다.<sup>175)</sup>

다만, 설문 항목에 불량제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하고, 불량식품의 경우에도 그냥 구입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난 이후 탈이 난 경우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양화하게 되면 응답분포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문은 향후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조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11] 불량품 구매 시 대처 반응

(단위 :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101). 이처럼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 인식 구조 변화』, 나남출판, 2006.6., pp.36-37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 법문화와 인식에 대한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국민들의 관점은 ‘분쟁’과 ‘정의’의 실현에 대하여서는 이를 수용하는 법문화로서의 인식기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75)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절차안내  
([http://www.kca.go.kr/wpge/m\\_26/ref1110.do](http://www.kca.go.kr/wpge/m_26/ref1110.do) 2016.10.31. 최종검색)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72% 이상)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는 응답 비율은 19 ~ 29세(1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 특성별 불량품 구매 시 대처 반응

구 분	사례수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 한다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12)	8.2	78.9	8.7	1.7	0.9	1.7	100.0
연령 별	19~29세	(145)	10.3	72.4	13.1	0.7	2.1	100.0
	30대	(306)	7.8	80.1	9.2	2.6	0.3	100.0
	40대	(280)	7.9	79.6	7.1	1.8	1.1	100.0
	50대	(203)	6.9	80.3	7.4	1.0	1.0	100.0
	60세 이상	(78)	10.3	79.5	7.7	1.3	0.0	100.0

6. 법률 용어에 대한 인식

(1) 종합 분석

한자문화권의 영향과 일본법계의 수용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이 많았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법률 용어의 이해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수 년 동안 국민들이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왔다. 즉, ‘법령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이 그것이며, 현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에도 중점을 두면서 진행되고 있다.<sup>176)</sup>

2014년부터는 법제처에 접수되는 제정법령, 전부개정법령을 알기 쉽게 검토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다시 수립하였으며, 법령 내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77)</sup>

이번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에서는 법률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생긴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쉬운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한 입법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49.0%)이라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한 응답자들은 보기에서 제시하는 다른 이유(가령,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든가,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 어렵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보다는 관련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용어가 어려워지게 되는 다른 원인(가령, 법의 권위 확보, 법조문의 의미 명확성 확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신할 쉬운 용어가 없거나 부족 등)을 선택한 응답자(51.0%)들의 합산 비율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의견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다. 즉, 응답자의 약 절반 가까이(49%)가 입법 관련자들의 인식이나 의지로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 정도(51%)는 쉬운 용어로 바꾸기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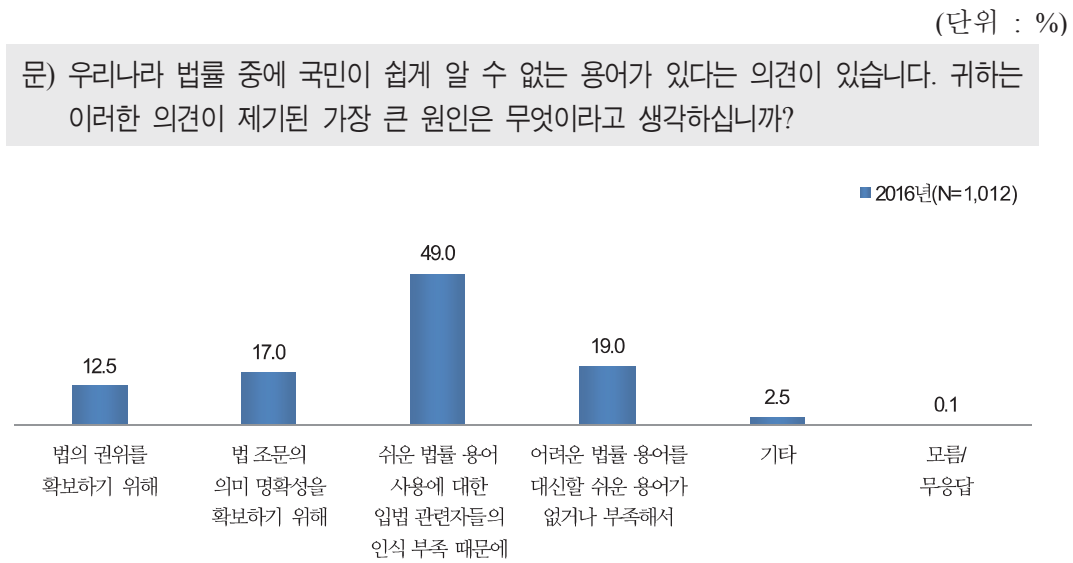
17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2015, p.10.

177)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2015, p.11.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법전문가들로서의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설문항목으로 평가된다.

한편, 역설적으로 지표항목 문37)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비율이 64.1%로서, 2015년 일반국민에서도 59.8%로 ‘그렇다’(2016년 법전문가 7.2%, 2015년 일반국민 16.7%)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국민들이 법률용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법전문가들도 잘 인식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그림 12]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인식의 원인



## (2) 특성별 분석

직업별로 살펴봤을 때,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신할 쉬운 용어가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검사(53.3%)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특성별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인식의 원인

구 분	사례수	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 조문의 의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쉬운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한 입법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신할 쉬운 용어가 없거나 부족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 체	(1,012)	12.5	17.0	49.0	19.0	2.5	0.1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4.0	14.0	56.0	12.0	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6.0	8.0	54.0	18.0	4.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1.6	11.8	56.9	9.8	0.0	0.0	100.0
	국가 공무원	(112)	14.3	13.4	50.0	19.6	2.7	0.0	100.0
	지방 공무원	(100)	12.0	15.0	63.0	8.0	2.0	0.0	100.0
	판사	(30)	0.0	26.7	36.7	33.3	3.3	0.0	100.0
	검사	(30)	0.0	23.3	20.0	53.3	0.0	3.3	100.0
	법원 공무원	(30)	3.3	30.0	43.3	23.3	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7.2	15.9	42.0	31.9	2.9	0.0	100.0
	법학과 교수	(70)	11.4	18.6	47.1	20.0	2.9	0.0	100.0
	연구원	(69)	8.7	14.5	63.8	10.1	2.9	0.0	100.0
	변호사	(110)	5.5	21.8	50.0	19.1	3.6	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19.8	17.4	44.6	17.4	0.8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16.7	18.3	33.3	25.0	6.7	0.0	100.0
	박사과정생	(60)	20.0	18.3	46.7	15.0	0.0	0.0	100.0



## 7. 법 적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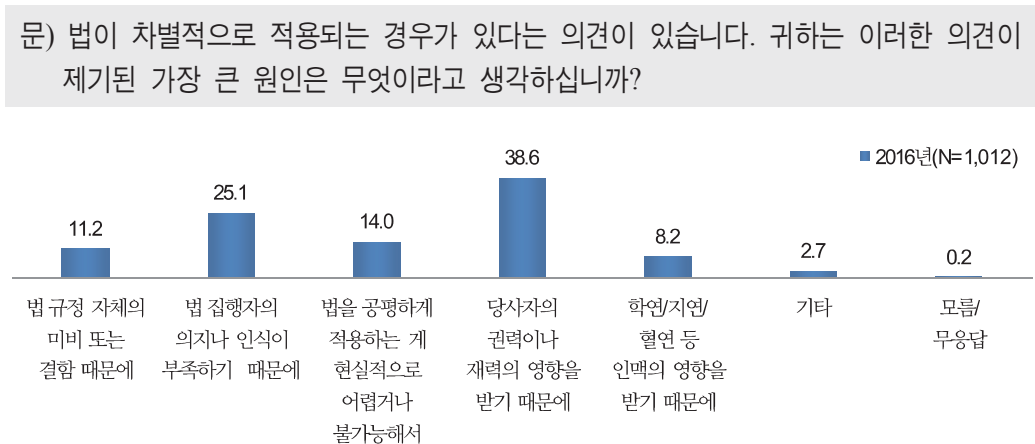
### (1) 종합 분석

2015년의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지표설문항목 중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9.0%, 그렇다는 의견이 28.4%(보통 32.5%)로 나타난 바 있었다.<sup>178)</sup> 이에 반하여, 2016년 법전문가의 49.0%는 2016년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의 지표설문항목 문40)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그렇다 18.1%, 보통 32.8%)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견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최대 다수인 38.6%는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3]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의 원인

(단위 : %)



178) 법의 공정성이나 법앞의 평등에 대하여서는 양건, 『법앞에 불평등한가? 왜? - 법철학·법사회학 산책』, 법문사, 2015.8., pp.2-125에서는 법이 강자의 편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면서, 불평등한 법현실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론적인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은 2009년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7%(동의하지 않는다 29.3%)로 조사된 것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법원/정부/수사기관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른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4% 이상이었다(문 59~62).

##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24% 이상)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사법 분야의 경우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때문에’(21.1%), ‘법 집행자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20.0%)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판사나 검사 그리고 로스쿨교수들의 경우엔 의견이 달랐다. 판사들의 경우에는 ‘법규정 자체의 결함’(30.0%)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검사들의 경우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36.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로스쿨교수들의 경우엔 ‘법집행자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44.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판사들의 경우엔, 권력·재력 때문에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의견은 16.7%로 다른 모든 집단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9] 특성별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 된다는 인식의 원인

구 분	사례수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때문에	법 집행자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12)	11.2	25.1	14.0	38.6	8.2	2.7	0.2	100.0	
분야별	입법	(151)	9.9	27.8	7.3	48.3	4.6	2.0	0.0	100.0
	행정	(212)	6.1	21.7	19.8	42.0	9.0	1.4	0.0	100.0
	사법	(90)	21.1	20.0	16.7	24.4	6.7	10.0	1.1	100.0
	학계	(208)	8.2	34.6	9.6	34.6	11.1	1.9	0.0	100.0
	민간	(231)	15.6	22.5	14.3	36.8	8.2	2.2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0.8	20.0	17.5	41.7	7.5	2.5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2.0	20.0	2.0	54.0	8.0	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0.0	36.0	8.0	42.0	2.0	2.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7.8	27.5	11.8	49.0	3.9	0.0	0.0	100.0
	국가 공무원	(112)	8.9	25.9	18.8	37.5	8.0	0.9	0.0	100.0
	지방 공무원	(100)	3.0	17.0	21.0	47.0	10.0	2.0	0.0	100.0
	관사	(30)	30.0	20.0	10.0	16.7	3.3	20.0	0.0	100.0
	검사	(30)	13.3	16.7	36.7	23.3	3.3	3.3	3.3	100.0
	법원 공무원	(30)	20.0	23.3	3.3	33.3	13.3	6.7	0.0	100.0
	로스쿨 교수	(69)	2.9	44.9	10.1	29.0	11.6	1.4	0.0	100.0
	법학과 교수	(70)	8.6	31.4	12.9	31.4	14.3	1.4	0.0	100.0
	연구원	(69)	13.0	27.5	5.8	43.5	7.2	2.9	0.0	100.0
	변호사	(110)	17.3	21.8	17.3	30.9	7.3	4.5	0.9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14.0	23.1	11.6	42.1	9.1	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13.3	20.0	20.0	33.3	8.3	5.0	0.0	100.0
박사과정생	(60)	8.3	20.0	15.0	50.0	6.7	0.0	0.0	100.0	

(3) 정성조사 결과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 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3. 법전문가의 49.0%는 ‘법적용의 차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0). 그 원인으로는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38.6%)가 가장 많았습니다(정량조사 문9). 한편, 국회, 법원, 정부, 수사기관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른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4% 이상이었습니다(문59~62). 법전문가들이 법의 차별 없는 적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한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또한 흥미로운 것은 법 관련 종사경력이 길면 길수록 차별적인 법적용의 이유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1~5년 39.6% ⇒ 21년 이상 35.2%)이라 응답하는 비율이 종사경력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정량조사 문9).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전문가의 49%가 법적용의 차별이 있다고 한 것의 배경에는 정실주의, 언론보도의 영향, 밀실주의 행정을 꼽았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적용에 있어 외부의 영향을 보다 더 받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이 두 기관은 비교적 언론노출이 많고 그에 따른 언론에서 보도된 부정적 이미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법원이 다른 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비해서 외부의 재력이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 보았다.

- 실제 법적용시에는 작게는 변호사의 조력 여부부터 크게는 권력 또는 재력에 의해 법적용결과에 있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49%라는 결과가 적은 수치라는 의견도 있었다.
- 양형 부분에서는 변호인의 지식으로 기술적으로 형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외부의 영향으로 법 적용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응답이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서는 경력이 짧을수록 언론의 보도 등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경력이 많아지면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이유라는 견해도 있었다.

## 제 3 장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

### 제 1 절 개 관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에 대해 법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13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사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기관·분야별 법치주의, 헌법 개정, 입법과정 개선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특히,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입법·사법·행정·학계·민간·예비법전문가로 분류된 분야별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정도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법부(36.1%)의 수행 정도를 입법부(12.7%)나 행정부(23.8%)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i) 입법 분야는 입법부(28.5%)를, ii) 사법 분야는 사법부(71.1%)를, iii) 행정 분야는 행정부(45.8%)를 더 높게 평가하는 등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경제 발전·사회 복지·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고, 안전 관리의 경우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사법 분야에서 대부분의 항목(국민의 권리보호 43.3%, 사회 복지 28.9%, 안전 관리 20.0%)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는 모든 분야에서 찬성한다(60% 이상)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입법 분야의 찬성 의견은 86.1%로 가장 높았다. 세부 직업별로는 검사에서만 반대한다는 의견(56.7%)이 다소 높았다. 한편,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45.9%)가 가장 높았으며, 청원 제도(20.5%), 회의공개 제도(20.2%)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53.1%)는 의견이 그렇다(46.8%)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법전문가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행정(70.8%)과 사법(67.8%)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았다.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70.7%),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80.6%),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76.4%),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81.4%)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57.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법전문가의 직업별 특성으로 볼 때, 지방의회 의원(72.5%)과 법원 공무원(73.3%)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 제 2 절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 1.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법치주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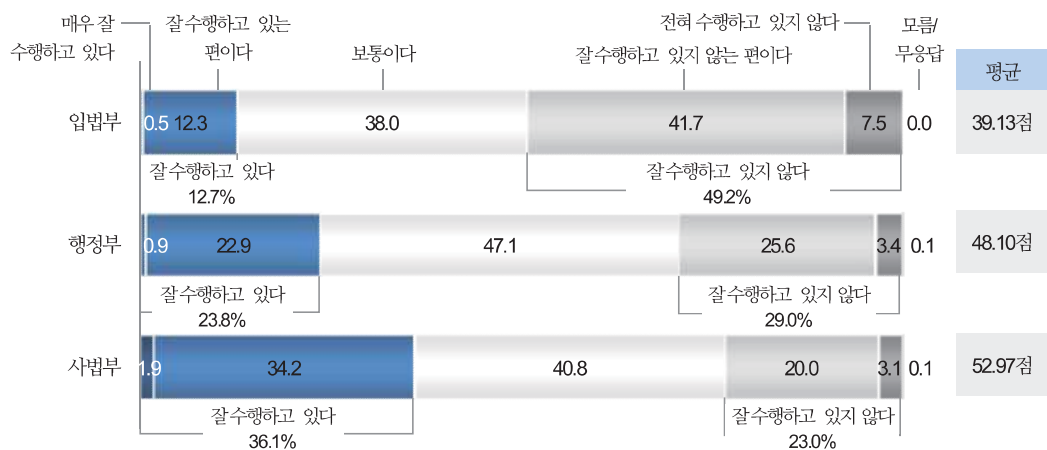
#### (1) 종합 분석

응답자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수준에서 입법·행정·사법 중 사법부의 기능 수행정도가 가장 높다고(100점 환산시 52.97점, 응답 비율 : ‘잘 수행하고 있다’ 36.1%, ‘보통이다’ 40.8%,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 23.0%)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부(48.10점, 응답 비율 : ‘잘 수행하고 있다’ 23.8%, ‘보통이다’ 47.1%,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 29.0%), 입법부(39.13점, 응답 비율 : ‘잘 수행하고 있다’ 12.7%, ‘보통이다’ 38.0%,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 49.2%) 순이었다.

[그림 14]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 수행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입법 분야의 입법부 28.5%, 행정 분야의 행정부 45.8%, 사법 분야의 사법부 71.1%)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부의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해 입법(21.2%)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행정 분야 54.2%, 사법 분야 48.9%, 학계 분야 53.4%, 민간 분야 56.7%, 예비 법전문가 54.2%)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입법부에 속한 사람들은 입법부에 후한 점수를,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행정부에 후한 점수를, 사법부에 속한 사람들은 사법부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분야의 집단은 사법 영역이었고, 그 다음이 행정, 입법 순이었다. 다만, 입법·행정·사법 분야 이외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법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행정, 입법 순이었다.

[표 50]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정도 - 입법부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 하고 있다	잘 수행 하고 있는 편이다	잘 수행 하고 있다	보통 이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5	12.3	12.7	38.0	41.7	7.5	49.2	0.0	100.0	39.13	
분야 별	입법	(151)	1.3	27.2	28.5	50.3	20.5	0.7	21.2	0.0	100.0	51.99
	행정	(212)	0.5	9.4	9.9	35.8	44.3	9.9	54.2	0.0	100.0	36.56
	사법	(90)	0.0	11.1	11.1	40.0	42.2	6.7	48.9	0.0	100.0	38.89
	학계	(208)	0.0	8.7	8.7	38.0	44.7	8.7	53.4	0.0	100.0	36.66
	민간	(231)	0.4	9.5	10.0	33.3	48.9	7.8	56.7	0.0	100.0	36.47
	예비법전문가	(120)	0.8	10.8	11.7	34.2	44.2	10.0	54.2	0.0	100.0	37.08

[표 51]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정도 - 행정부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 하고 있다	잘 수행 하고 있는 편이다	잘 수행 하고 있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9	22.9	23.8	47.1	25.6	3.4	29.0	0.1	100.0	48.10	
분야 별	입법	(151)	0.7	18.5	19.2	56.3	21.9	2.6	24.5	0.0	100.0	48.18
	행정	(212)	2.8	42.9	45.8	42.9	10.4	0.9	11.3	0.0	100.0	59.08
	사법	(90)	0.0	34.4	34.4	50.0	14.4	1.1	15.6	0.0	100.0	54.44
	학계	(208)	0.5	11.1	11.5	48.1	38.0	2.4	40.4	0.0	100.0	42.31
	민간	(231)	0.0	16.0	16.0	42.9	35.1	5.6	40.7	0.4	100.0	42.39
	예비법전문가	(120)	0.8	18.3	19.2	47.5	25.8	7.5	33.3	0.0	100.0	44.79

[표 52]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정도 - 사법부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 하고 있다	잘 수행 하고 있는 편이다	잘 수행 하고 있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잘 수행 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1.9	34.2	36.1	40.8	20.0	3.1	23.0	0.1	100.0	52.97	
분야 별	입법	(151)	1.3	19.9	21.2	53.6	22.5	2.6	25.2	0.0	100.0	48.68
	행정	(212)	1.4	32.1	33.5	40.1	22.6	3.8	26.4	0.0	100.0	51.18
	사법	(90)	6.7	64.4	71.1	23.3	5.6	0.0	5.6	0.0	100.0	68.06
	학계	(208)	1.0	32.2	33.2	44.7	19.7	2.4	22.1	0.0	100.0	52.40
	민간	(231)	1.3	33.3	34.6	42.0	18.2	4.8	22.9	0.4	100.0	52.07
	예비법전문가	(120)	2.5	38.3	40.8	30.0	26.7	2.5	29.2	0.0	100.0	52.92

###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4.에 대하여 다음과 답한 바 있다.

문4. 우리나라에서 법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각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각 측면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서 응답한 법전문가들은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법 자체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법 자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꼭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제정의 측면에서는 정당성, 즉 특정한 집단(기득권)의 이해관계만 반영된다는 의견, 집행과 적용에서도 차별적이라는 의견, 제정, 집행, 적용에서 특정한 집단에 유리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 결국 법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법 준수에 대한 동기화도 약화되어 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치주의 실현에 부정적 요인이 제도나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데, 대중은 일부 안 좋은 사례를 위주로 부각되는 언론 보도에 노출되기 싫기 때문에 부정적 느낌이 강해져 일부 사회적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기능 수행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입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수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 적용, 준수의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4.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법전문가들은 입법부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9.2%로 응답하여 행정부(29.0%)와 사법부(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이렇게 응답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의견은 입법부 12.7%(100점 환산 39.13점), 행정부 23.8%(100점 환산 48.10점), 사법부 36.1%(100점 환산 52.97점)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귀하는 이러한 결과가 귀하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수행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입법부(49.2%)가 가장 높게 나온 배경에 대하여서는 i) 입법부의 정쟁, 계파갈등, 법안처리 지연 등과 같은 갈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고, ii) 입법부가 정치적 영향이 작용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ii) 또한,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 반면에 법치주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적게 나타난 사법부(23.0%)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i) 일반 국민 중 실제로 재판에 관여해보지 않은 비율이 더 높고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닫힌 조직이며, ii)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치주의와 가깝다고 생각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지킬 것이라는 일반국민의 추상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 소수의견으로 법치주의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의 배경은 법전문가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매우 실무적인 업무의 경우는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2.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1)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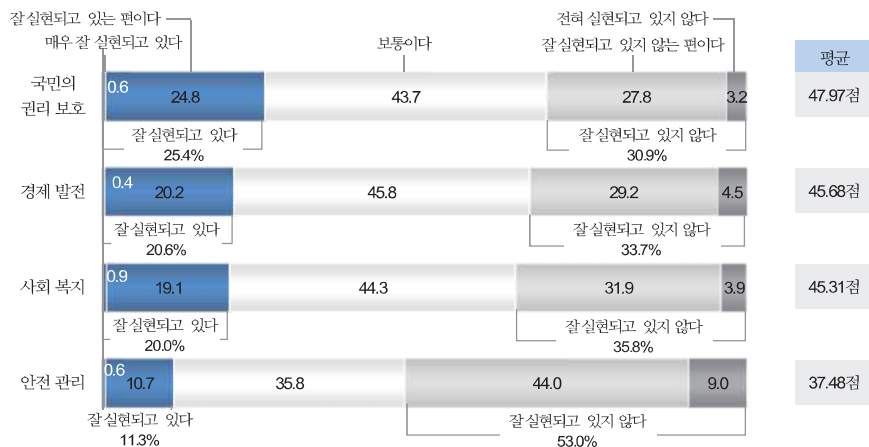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로 잘 실현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안전 관리 모두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는 비율(30% 이상)이 ‘잘 실현되고 있다’(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는 비율(25.4%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53.0%)는 비율은 ‘잘 실현되고 있다’(11.3%)는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불만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15] 법치주의 실현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사법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의 권리 보호(43.3%), 사회 복지(28.9%), 안전 관리(20.0%)의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사회 복지에 대해서는 행정 분야(26.4%)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53]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국민의 권리 보호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 되고 있다	보통 이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6	24.8	25.4	43.7	27.8	3.2	30.9	100.0	47.97	
분야별	입법	(151)	1.3	21.9	23.2	39.7	32.5	4.6	37.1	100.0	45.70
	행정	(212)	0.5	28.8	29.2	48.1	20.8	1.9	22.6	100.0	51.30
	사법	(90)	2.2	41.1	43.3	38.9	17.8	0.0	17.8	100.0	56.94
	학계	(208)	0.0	20.2	20.2	48.1	28.8	2.9	31.7	100.0	46.39
	민간	(231)	0.4	20.8	21.2	43.3	33.8	1.7	35.5	100.0	46.10
	예비법전문가	(120)	0.0	25.0	25.0	37.5	28.3	9.2	37.5	100.0	44.58

[표 54]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경제 발전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 되고 있다	보통 이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4	20.2	20.6	45.8	29.2	4.5	33.7	100.0	45.68	
분야별	입법	(151)	0.7	20.5	21.2	42.4	29.8	6.6	36.4	100.0	44.70
	행정	(212)	0.5	22.6	23.1	50.5	24.1	2.4	26.4	100.0	48.70
	사법	(90)	1.1	21.1	22.2	55.6	22.2	0.0	22.2	100.0	50.28
	학계	(208)	0.0	15.9	15.9	48.1	33.2	2.9	36.1	100.0	44.23
	민간	(231)	0.4	20.3	20.8	40.7	33.8	4.8	38.5	100.0	44.48
	예비법전문가	(120)	0.0	21.7	21.7	40.0	26.7	11.7	38.3	100.0	42.92

[표 55]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사회 복지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9	19.1	20.0	44.3	31.9	3.9	35.8	100.0	45.31	
분야 별	입법	(151)	2.6	14.6	17.2	46.4	32.5	4.0	36.4	100.0	44.87
	행정	(212)	0.0	26.4	26.4	50.0	21.2	2.4	23.6	100.0	50.12
	사법	(90)	1.1	27.8	28.9	45.6	25.6	0.0	25.6	100.0	51.11
	학계	(208)	1.0	15.9	16.8	42.3	36.5	4.3	40.9	100.0	43.15
	민간	(231)	0.4	18.6	19.0	43.3	33.3	4.3	37.7	100.0	44.37
	예비법전문가	(120)	0.8	11.7	12.5	35.8	44.2	7.5	51.7	100.0	38.54

[표 56] 특성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안전 관리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계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 되고 있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6	10.7	11.3	35.8	44.0	9.0	53.0	100.0	37.48	
분야 별	입법	(151)	0.7	7.3	7.9	34.4	48.3	9.3	57.6	100.0	35.43
	행정	(212)	0.5	14.6	15.1	47.6	31.6	5.7	37.3	100.0	43.16
	사법	(90)	2.2	17.8	20.0	41.1	38.9	0.0	38.9	100.0	45.83
	학계	(208)	0.5	4.8	5.3	27.9	55.3	11.5	66.8	100.0	31.85
	민간	(231)	0.4	12.1	12.6	34.2	45.0	8.2	53.2	100.0	37.88
	예비법전문가	(120)	0.0	10.0	10.0	29.2	42.5	18.3	60.8	100.0	32.71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바 있다.

4-1.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의 법제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제의 4분야(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는 독립적인 분야이면서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서 국민의 권리보호, 사회복지, 안전관리와 경제발전 간의 상호 영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법목적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기업을 판단의 주체로 놓고 볼 때, 권리보호·사회복지·안전관리의 강조와 강는 결국 기업의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체별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4분야 간의 관계 설정 또한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치주의의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판단한다면 국민의 권리보호는 법의 가장 근본 이념이 되는 ‘정의’와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sup>179)</sup>

2)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바 있다.

179) 이러한 IDI 정성조사 결과는 정량조사 문23)에서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에 대한 응답이 높게 조사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5.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비율(10~20%대)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30% 이상)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귀하는 이렇게 응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또한 흥미로운 응답 결과로는, 안전 관리는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3.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다른 분야에 비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비율(10~20%대)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30% 이상)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 법전문가들은 일반국민들보다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근간이 법치주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 각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서 안전관리 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에 대해 이슈화된 사건들이 근래에 다수 발생하였고 또한 언론에서 이 분야에 대한 부족함을 보도함으로써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안전관리 분야는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기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의 법치주의화가 가장 미흡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 제 3 절 헌법 개정

### 1. 헌법 개정에 대한 태도

#### (1) 종합 분석

이번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8.3%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헌법 개정에 대한 법전문가 다수의 찬성의견은 헌법 개정에 관한 일반인들의 찬성의견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일반국민 결과 :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46%, 필요하지 않다 34%).<sup>180)</sup>

법전문가들 중에는 헌법의 개정보다는 현행 헌법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하여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헌법의 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87체제’<sup>181)</sup>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5년 단임 조항의 변경, 정부형태의 부분적 변경과 기본권 조항의 개선 등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sup>182)</sup>

1987년의 헌법 개정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서 헌법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긴 하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수차례 헌법 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법학 분야와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도 다양한 내용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어 왔다. 이번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 개발과정에서도 이러한 그동안의 개정 논의를 기초로 설문과 보기 등을 마련한 바 있다.

18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데일리오피니언」 제216호, 2016.06.23.

181) 경향신문 2016.04.06. 기사 “뜻밖의 여소야대 출현, ‘87년 체제’ 지각변동의 시작일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61547001&code=9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61547001&code=9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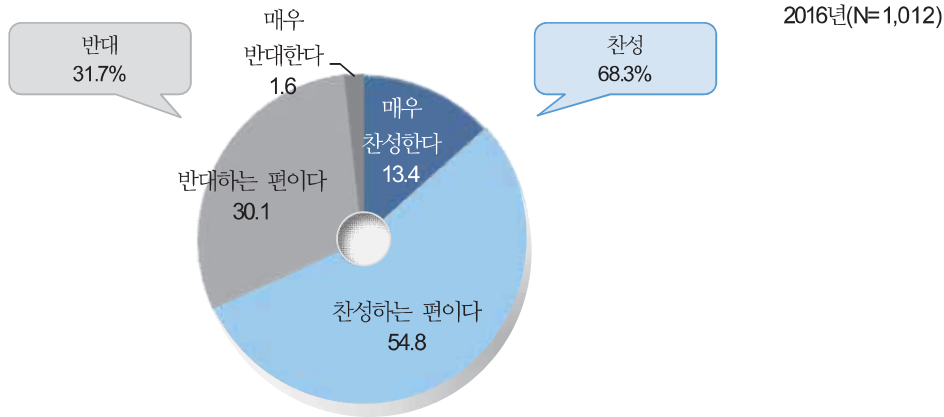
182) 홍완식, 본 연구(“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 서면 자문의견 반영.

한편, 개헌 관련 절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헌법 제128조에서 제130조의 조문은 헌법 개정에 관한 상세한 입법적 근거로 부족하며, 공청회 개최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개헌 관련 규정은 절차적 하자나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sup>183)</sup>

[그림 16]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2) 특성별 분석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특히 입법 분야는 86.1%로 높게 나타났다.

헌법 개정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난 유일한 직업은 검사이며, 검사의 경우 헌법개정 찬성자는 43.3%, 반대자는 56.7%로 나타났다. 다만,

183) 아시아경제 2016.10.25. 기사 “일반법 보다는 못한 헌법 개정 절차... ‘여론수렴·법률심사 규정조차 없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511310376611> 2016.10.31. 최종검색)

이 경우에도 압도적인 반대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이며, 반대가 약간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표 57] 특성별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계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③+④	
전 체	(1,012)	13.4	54.8	68.3	30.1	1.6	31.7	100.0	
분야별	입법	(151)	19.9	66.2	86.1	13.9	0.0	13.9	100.0
	행정	(212)	14.6	53.8	68.4	30.2	1.4	31.6	100.0
	사법	(90)	3.3	63.3	66.7	31.1	2.2	33.3	100.0
	학계	(208)	13.9	49.0	63.0	33.2	3.8	37.0	100.0
	민간	(231)	12.6	52.8	65.4	33.8	0.9	34.6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1.7	50.0	61.7	37.5	0.8	38.3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26.0	62.0	88.0	12.0	0.0	12.0	100.0
	국회공무원	(50)	12.0	62.0	74.0	26.0	0.0	26.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1.6	74.5	96.1	3.9	0.0	3.9	100.0
	국가 공무원	(112)	15.2	51.8	67.0	31.3	1.8	33.0	100.0
	지방 공무원	(100)	14.0	56.0	70.0	29.0	1.0	30.0	100.0
	판사	(30)	3.3	76.7	80.0	20.0	0.0	20.0	100.0
	검사	(30)	0.0	43.3	43.3	50.0	6.7	56.7	100.0
	법원 공무원	(30)	6.7	70.0	76.7	23.3	0.0	23.3	100.0
	로스쿨 교수	(69)	13.0	42.0	55.1	37.7	7.2	44.9	100.0
	법학과 교수	(70)	20.0	51.4	71.4	28.6	0.0	28.6	100.0
	연구원	(69)	8.7	53.6	62.3	33.3	4.3	37.7	100.0
	변호사	(110)	14.5	55.5	70.0	30.0	0.0	3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10.7	50.4	61.2	37.2	1.7	38.8	100.0
	로스쿨과정생	(60)	6.7	53.3	60.0	38.3	1.7	40.0	100.0
박사과정생	(60)	16.7	46.7	63.3	36.7	0.0	36.7	100.0	

## 2.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

### (1) 종합 분석

헌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꼽은 것은 ‘대통령 단임제’(52.1%)였다(1순위 기준). 이는 다른 보기 내용(기본권 20.3%, 정부형태 12.2%, 경제민주화 8.2%)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쳤을 경우로 살펴보더라도 응답자의 67.1%가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sup>184)</sup>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고 있는 상황<sup>185)</sup>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현대적 기본권의 반영, 정부형태의 변경, 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권한 조정, 통일관련 조항의 정비, 경제헌법의 수정 등의 다양한 개헌 이슈를 기초로 하여 설문외 보기를 제시하였으나, ‘대통령 단임제’(52.1%, 1순위 기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허용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헌정운영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개정하는 것은 1987년 제9차 개헌의 결과이며, 건국 이래 지금까지의 9차례 개헌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8년 제정 헌법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 개헌(1952년)은 대통령·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국회도 양원제 형태였다. ‘사*

184) 아시아투데이 2016.01.31.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헌법 포함 제도적 노력할 것’”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31010020066>)

185) 홍완식, 본 연구 서면자문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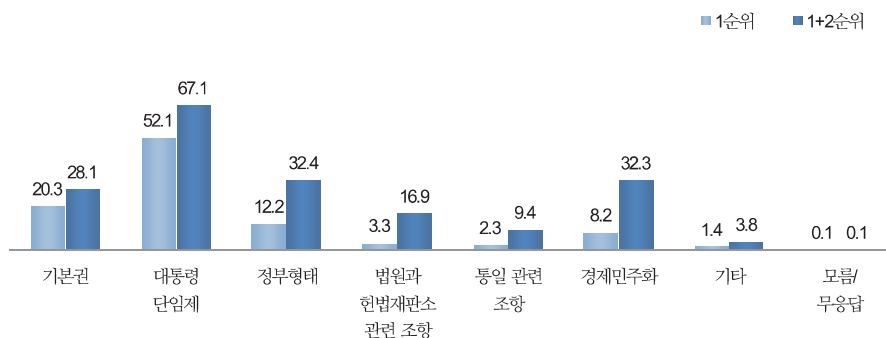
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2차 개헌(1954년)은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앴다. 4·19혁명 후 이뤄진 3차 개헌(1960년)은 의원내각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제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개정이 이뤄졌다. 대통령 중심제의 독재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다. 같은 해 이뤄진 4차 개헌은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부칙이 개정됐다. 5차 개헌(1962년)은 기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복귀시키고 국회도 단원제로 바꾸었다. 또 1969년 이뤄진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유신 개헌'이라 불리는 7차 개헌(1972년)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아예 폐지시키고 간접적으로 뽑도록 했다. 8차 개헌(1980년)은 대통령 7년 단임이 담겼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인 1987년에 이뤄진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헌법재판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sup>186)</sup>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순위 응답 비율은 '경제 민주화'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형태'(22.5%), '대통령 단임제'(16.7%),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15.1%) 등의 순이었다.

[그림 17]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단위 : %)

문) 다음 중 어느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86) 매일경제 2016.10.24. “지금까지 9차례 개헌… 1987년 5년 단임제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41960&year=2016>)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대통령 단임제’(63% 이상)에 대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은 사법 분야(2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2순위 기준).

1순위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대통령 단임제’가 38%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들이 크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나 정부형태 관련 규정의 개정보다는 두 헌법기관 관련 조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8] 특성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1+2순위 기준)

구 분	사례수	기본권	대통령 단임제	정부 형태	법원과 헌법 재판소 관련 조항	통일 관련 조항	경제 민주화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691)	28.1	67.1	32.4	16.9	9.4	32.3	3.8	0.1	
분야별	입법	(130)	30.8	66.2	37.7	13.1	9.2	33.8	3.1	0.0
	행정	(145)	25.5	67.6	32.4	12.4	9.7	30.3	6.2	0.7
	사법	(60)	20.0	80.0	28.3	25.0	6.7	25.0	1.7	0.0
	학계	(131)	25.2	63.4	33.6	19.8	9.2	34.4	5.3	0.0
	민간	(151)	29.1	64.9	27.2	18.5	13.2	35.8	2.0	0.0
	예비법전문가	(74)	37.8	68.9	35.1	17.6	4.1	28.4	2.7	0.0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5와 문5-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5. 수년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1. 법전문가와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2.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개헌에 대해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우선은 대통령제, 즉 통치구조에 대한 변화라는 의견이 있다. “통치구조, 즉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문제”, “5년 단임제의 문제” 등의 의견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것은 기본권의 문제, 즉 기본권의 확대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기본권 규정들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 “기본권 부분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목록을 구체화하여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등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것은 시대에 따른 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와 같은 의견이다. “국가적으로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원칙이 없는 것 같고 헌법을 개정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개헌논의를 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헌법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승자독식이라는 프레임에 따라서 자원배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왜곡이 엄청난 불합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견은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원인이 현재가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어쩌면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조의 틀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심리적 상태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통치구조에 대한 이슈, 즉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이슈 역시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나는 개헌 논의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바꾸는 것을 동네 뒷산 가듯이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음”, “우리나라가 헌법을 너무 자주 바꿔왔기 때문에 헌법 바꾸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음” 등의 의견에서 최근의 개헌 논의 자체가 진지함과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보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개헌 논의가 국민들의 의지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한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개헌에 관심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함”, “지금 개헌 논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는 것”, “현재의 집단이 권력 배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현재의 개헌 논의의 원인이라고 생각” 등과 같은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개헌 논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홍보하고,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법전문가와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하여서는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구조, 통치구조, 이익관계 등에 대한 입장이 주를 이룰 것이고, 법전문가는 기본권 확대, 구조적 모순, 제도의 정당성, 이론적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본 연구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각 직종별로 모두 대통령단임제와 정부형태를 개헌 필요사항으로 들고 있어서 법전문가와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절 입법 과정 개선

### 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견 반영

#### (1) 종합 분석

입법과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공청회 제도 및 청문회 제도’의 개선(45.9%)이었다. 이는 다른 의견들(청원제도 20.5%, 회의공개제도 20.2%)보다 월등히 많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案件) 또는 전문지식(專門知識)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국회법 제64조). 한편,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규율하고 있다.

청문회는 국회법 제61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 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④ 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sup>187)</sup>

187) 김태운, “입법부와 규제개혁 -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규제연구』 제23권 특집호, 2014, p.80.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와 비교해보면,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5%p 감소(2009년 56.4% ⇒ 2016년 45.9%) 하였으며, ‘청원제도’(2009년 13.3% ⇒ 2016년 20.5%), ‘회의공개제도’(2009년 16.9% ⇒ 2016년 20.2%)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알권리의 강화와 참여민주주의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입법과정에 관해 국민들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188)</sup>

그리고, 그간 청원제도나 입법예고제도, 공청회·청문회제도, 회의공개제도 등이 제도화되고 개선되어 왔지만 이들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의 실효성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89)</sup>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원리는 국민들의 주권적 의사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과정 개선을 위하여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혹은 입법 개선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sup>190)191)</sup>

---

188) 홍완식,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디지털법제정보 자료관 - 법제자료 - 정책연구자료 - 요약문, 2013 (<http://lib.moleg.go.kr/lawData/rsc/65116?pageIndex=3> 2016.10.12. 최종검색)

189) 국회뉴스 2016.02.09. “입법청원에 눈 가리고 귀 막은 19대 국회”,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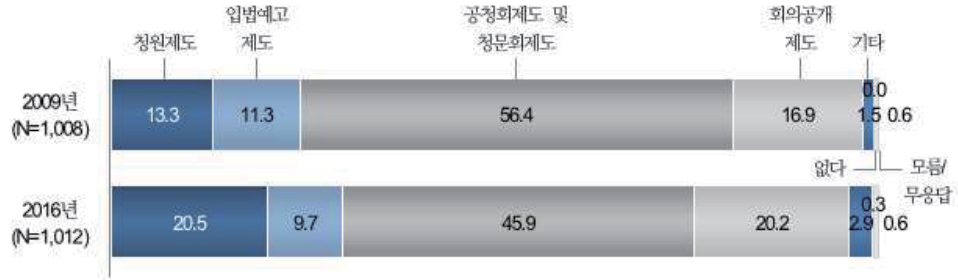
190)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 규제 장벽 높아져요!”, 국무총리실 정책뉴스,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http://pmoblog.tistory.com/1123> 2016.10.12. 최종검색)

191) 법제처, “이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법제처 이달의 시론, 법제처 공식블로그 (<http://moleg.tistory.com/2773> 2016.10.12. 최종검색)

[그림 18]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

문) 귀하는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분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37% 이상)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청원제도’는 입법 (27.2%)과 예비 법전문가(23.3%), 행정(21.2%)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특성별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분	사례수	청원제도	입법예고제도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회의공개제도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12)	20.5	9.7	45.9	20.2	2.9	0.3	0.6	100.0	
분야별	입법	(151)	27.2	8.6	45.7	12.6	4.0	0.0	2.0	100.0
	행정	(212)	21.2	11.3	42.9	21.7	1.9	0.9	0.0	100.0
	사법	(90)	11.1	15.6	58.9	12.2	1.1	0.0	1.1	100.0
	학계	(208)	18.3	9.1	45.2	24.0	2.9	0.0	0.5	100.0
	민간	(231)	19.5	7.8	48.9	19.9	3.0	0.4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23.3	8.3	37.5	26.7	4.2	0.0	0.0	100.0

## 2. 행정입법의 개선

### (1) 종합 분석

법령의 단계구조에 따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제도<sup>192)</sup><sup>193)</sup>를 두고 있다.

권력분립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따라 행정입법권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는 46.8%로 나타나 적지 않은 법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좀 더 다수인 나머지 53.1%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은 행정입법의 통제 측면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정립한 다섯 가지 기준<sup>194)</sup> 중 ‘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와 중복된다고 한다.<sup>195)</sup> 즉, ‘행정입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192)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 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193) 일반 법원이나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이며, 현행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령용어사례집』, 2016.1, 484면 인용).

194) ①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여부, ② 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③ 하위법령으로의 포괄적 재위임 여부, ④ 법률의 제정에 따른 대통령령 등의 정비여부, ⑤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기준, 2000.11,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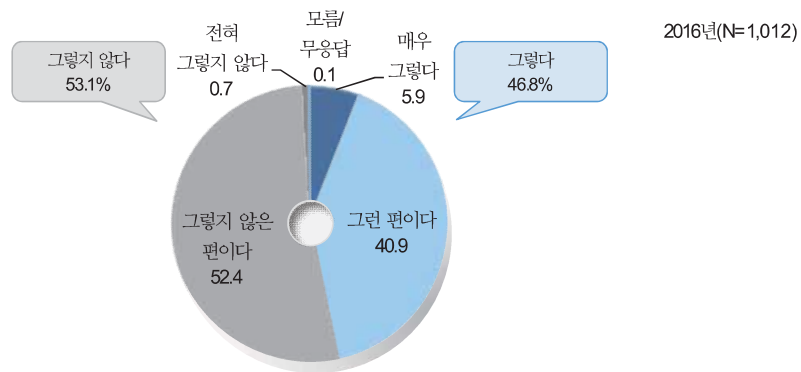
195) 김대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제5호, 유럽헌법학회, 2009, p.275.

여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up>196)</sup> 상위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에 해당하는 예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1999. 5. 21 시행)에 대한 검토의견<sup>197)</sup> 등이 있다.<sup>198)</sup><sup>199)</sup>

[그림 19]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

(단위 : %)

문) 귀하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96) 김대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제5호, 유럽헌법학회, 2009, p.275.

197)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행정입법 분석사례』, 1999.10, p.219-220.

198) 김대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제5호, 유럽헌법학회, 2009, pp.263~291.

199)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운용의 원칙)

①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은행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및 투자조합 등에서의 용자 및 출자

4.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 (2) 특성별 분석

### 1)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가에 대한 설문

분야별로는 행정(70.8%)과 사법(67.8%) 분야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비율이 높았다.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제도화한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sup>200)</sup>의 취지는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 분야 법전문가의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법 규정의 절차적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200)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표 60] 특성별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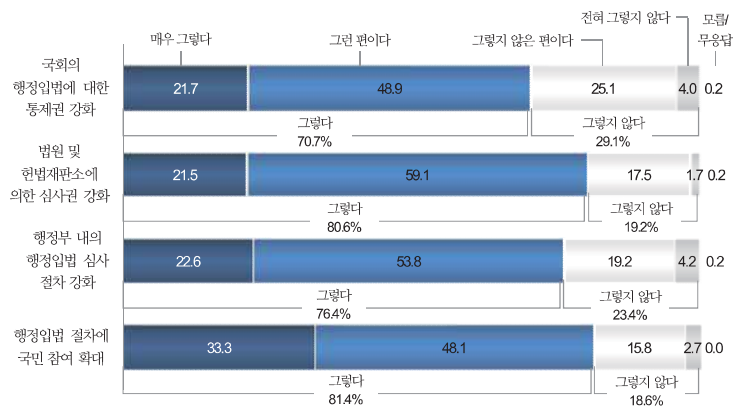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 체	(1,012)	5.9	40.9	46.8	52.4	0.7	53.1	0.1	100.0	
분야 별	입법	(151)	11.9	42.4	54.3	45.7	0.0	45.7	0.0	100.0
	행정	(212)	1.9	27.4	29.2	68.4	2.4	70.8	0.0	100.0
	사법	(90)	2.2	28.9	31.1	67.8	0.0	67.8	1.1	100.0
	학계	(208)	8.2	54.8	63.0	37.0	0.0	37.0	0.0	100.0
	민간	(231)	6.5	42.9	49.4	50.2	0.4	50.6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3.3	44.2	47.5	51.7	0.8	52.5	0.0	100.0

상위법과 행정입법간 충돌이 많다는 응답자(N=474) 중에서 그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사항들 중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는 81.4%가 지지하였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는 80.6%가,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는 76.4%가 지지하였으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는 70.7%가 지지하였다. 즉, 국민 참여 확대가 가장 지지받는 개선책이었다.

[그림 20]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단위 : %)

문) 그럼,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2) 상위법과 행정입법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전반적으로 네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61% 이상)이 높은 가운데, 행정 분야의 경우 ‘통제권 강화’(50.0%), ‘심사권 강화’(38.7%), ‘국민 참여 확대’(29.0%)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는 분야별 응답 분포가 큰 차이 없었다.

[표 61] 특성별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구 분	사례수	①+②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474)	21.7	48.9	70.7	25.1	4.0	29.1	0.2	100.0	
분야 별	입법	(82)	39.0	52.4	91.5	7.3	1.2	8.5	0.0	100.0
	행정	(62)	14.5	35.5	50.0	45.2	4.8	50.0	0.0	100.0
	사법	(28)	0.0	67.9	67.9	28.6	3.6	32.1	0.0	100.0
	학계	(131)	25.2	48.1	73.3	23.7	3.1	26.7	0.0	100.0
	민간	(114)	18.4	49.1	67.5	25.4	6.1	31.6	0.9	100.0
	예비법전문가	(57)	14.0	50.9	64.9	29.8	5.3	35.1	0.0	100.0

[표 62] 특성별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①+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전 체	(474)	21.5	59.1	80.6	17.5	1.7	19.2	0.2	100.0	
분 야 별	입법	(82)	23.2	56.1	79.3	17.1	3.7	20.7	0.0	100.0
	행정	(62)	14.5	46.8	61.3	33.9	4.8	38.7	0.0	100.0
	사법	(28)	21.4	60.7	82.1	17.9	0.0	17.9	0.0	100.0
	학계	(131)	29.8	57.3	87.0	11.5	1.5	13.0	0.0	100.0
	민간	(114)	16.7	68.4	85.1	14.0	0.0	14.0	0.9	100.0
	예비법전문가	(57)	17.5	61.4	78.9	21.1	0.0	21.1	0.0	100.0

[표 63] 특성별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①+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전 체	(474)	22.6	53.8	76.4	19.2	4.2	23.4	0.2	100.0	
분 야 별	입법	(82)	15.9	56.1	72.0	24.4	3.7	28.0	0.0	100.0
	행정	(62)	19.4	54.8	74.2	21.0	4.8	25.8	0.0	100.0
	사법	(28)	17.9	60.7	78.6	21.4	0.0	21.4	0.0	100.0
	학계	(131)	30.5	48.9	79.4	17.6	3.1	20.6	0.0	100.0
	민간	(114)	21.9	52.6	74.6	17.5	7.0	24.6	0.9	100.0
	예비법전문가	(57)	21.1	59.6	80.7	15.8	3.5	19.3	0.0	100.0

[표 64] 특성별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구 분	사례수	①+②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474)	33.3	48.1	81.4	15.8	2.7	18.6	0.0	100.0	
분야 별	입법	(82)	35.4	52.4	87.8	12.2	0.0	12.2	0.0	100.0
	행정	(62)	22.6	48.4	71.0	22.6	6.5	29.0	0.0	100.0
	사법	(28)	14.3	67.9	82.1	14.3	3.6	17.9	0.0	100.0
	학계	(131)	36.6	46.6	83.2	13.7	3.1	16.8	0.0	100.0
	민간	(114)	35.1	44.7	79.8	17.5	2.6	20.2	0.0	100.0
	예비법전문가	(57)	40.4	42.1	82.5	15.8	1.8	17.5	0.0	100.0

### 3.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

#### (1) 종합 분석

뉴스 등 매체에 등장하는 ‘국회선진화법’은 그 정식 범명은 「국회법」이다. 즉, ‘동물국회’<sup>201)</sup>라고 불린 제18대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단상점거 등 국회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을 속칭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2015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개정이유에서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201) 한겨레 2016.10.11. 기사 “김승처럼 몸싸움하던 ‘동물국회’ 사라졌지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5170.html> 2016.10.12. 최종검색)

하고, 예산안 등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등을 금지함으로써 국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202)</sup>

위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법에서는 다수당을 위한 제도로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안건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의안자동상정제도,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마련하였고, 소수당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의 강화, 무제한 토론제도(Filibuster), 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마련하였다.<sup>203)</sup>

이러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중에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가중다수결 조항이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다고 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다.<sup>204)</sup>

국회선진화법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에 대한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57.2%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4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보완에 대한 찬성의견은 이후의 국회법 개정에 있어 폭력행위는 방지하되 의사진행의 효율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205)</sup>

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연혁 - 국회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http:// www.law.go.kr/lsInfoP.do?lsiSeq=125702&ancYd=20120525&ancNo=11453&efYd=2014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702&ancYd=20120525&ancNo=11453&efYd=2014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6.10.12. 최종검색)

20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연혁 - 국회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http:// www.law.go.kr/lsInfoP.do?lsiSeq=125702&ancYd=20120525&ancNo=11453&efYd=2014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702&ancYd=20120525&ancNo=11453&efYd=2014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6.10.12.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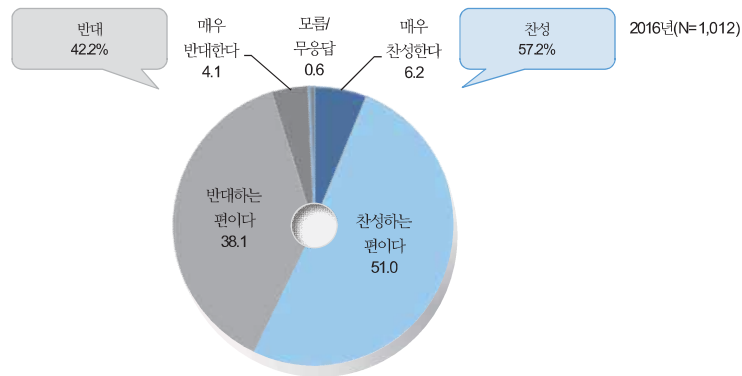
204) DioDeo 2016.05.25. 기사 “현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http://www.diodeo.com/news/view/1614451>); 뉴시스 2016.05.26. 기사 “현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09721&cID=10201&p\\_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09721&cID=10201&p_ID=10200))

205) 홍완식, 본 연구(‘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서면 자문의견 반영.

[그림 21]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 2012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국회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직업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법원 공무원(73.3%)과 지방의회 의원(7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특성별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계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③+④			
전체	(1,012)	6.2	51.0	57.2	38.1	4.1	42.2	0.6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0.0	56.0	66.0	30.0	4.0	3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0	34.0	38.0	52.0	10.0	62.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13.7	58.8	72.5	21.6	3.9	25.5	2.0	100.0
	국가 공무원	(112)	8.9	45.5	54.5	43.8	1.8	45.5	0.0	100.0
	지방 공무원	(100)	6.0	60.0	66.0	25.0	7.0	32.0	2.0	100.0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판사	(30)	3.3	56.7	60.0	40.0	0.0	40.0	0.0	100.0
검사	(30)	0.0	53.3	53.3	46.7	0.0	46.7	0.0	100.0
법원 공무원	(30)	6.7	66.7	73.3	26.7	0.0	26.7	0.0	100.0
로스쿨 교수	(69)	8.7	52.2	60.9	31.9	7.2	39.1	0.0	100.0
법학과 교수	(70)	4.3	48.6	52.9	42.9	4.3	47.1	0.0	100.0
연구원	(69)	7.2	40.6	47.8	47.8	4.3	52.2	0.0	100.0
변호사	(110)	2.7	47.3	50.0	44.5	4.5	49.1	0.9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7.4	55.4	62.8	36.4	0.0	36.4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5.0	53.3	58.3	35.0	5.0	40.0	1.7	100.0
박사과정생	(60)	1.7	46.7	48.3	45.0	6.7	51.7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6. 귀하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갖추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법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i) 국회 내 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 ii)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 iii) 다양한 의견의 수렴 등을 들고 있다. 상세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내 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입처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 “충분한 법전문가의 입법보조가 필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전문화되어야 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 내의 지원 인

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의견으로서, “국회의원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국회의원 자질 향상”, “실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그 자체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전문성, 능력, 의지, 열정 등과 같은 자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셋째, 실질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상시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여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함”,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함” 등의 응답이 많았다. 현재 공청회 등과 같이 법 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이 제출되기 전부터 민간실무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지만, 실제 해당 주제와 내용에 대해 민간의 실무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민간실무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생활을 반영하면서도 공정성이 확보되며 준수가능성도 높은 법이 ‘바람직한 법’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바람직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으며,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와 비판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바람직한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이러한 법전문가들의 인식이 일정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 제 1 절 개 관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 문제와 현행 법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항(간통죄 폐지, 근로환경 개선, 아동 학대, 기업의 법적 책임 등)을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2009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와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와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항(성매매 종사자 처벌,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 부문에서는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5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2016년 3월 31일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법전문가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아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가 가장 많았으며,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20.8%)도 다른 사항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42.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62.7%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보다 더 높은 응답 비



을로 아직까지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28.9%)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전문가의 44.5%가 국공립 교육 시설 확대를 응답하였다.

안전 관리 부문에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대부분(98.8%)이 찬성하였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법전문가의 64.8%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응답하였다. 이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응답한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응답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33.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해결책보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28.0%)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26.8%)를 1순위로 많이 응답하였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35.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법조계의 비리

나 부패 척결(27.8%)과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26.9%)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법전문가의 직업별 특성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가 높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9%)와 과정생(25.0%)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해 다른 직업과는 차이를 보였다.

생명권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59.2%)는 의견이 많았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에 대해 여전히 찬성한다(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가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찬성(48.7%)과 반대(51.3%) 의견이 대립되었다. 법전문가의 특성별로 보면 i) 성별에서는 여성(59.1%)이 남성(44.6%)보다, ii)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34.6% → 19~29세 65.5%)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았다.

## 제 2 절 국민의 권리 보호

### 1. 간통죄 폐지

#### (1) 종합 분석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해당 위헌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06)</sup>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sup>207)</sup>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sup>208)</sup>

206) 헌재 2015.2.26. 2009헌바17 등, 판례집 27-1상, 20 [위헌]

20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헌바17 2015.02.26 결정문 중 발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B0%9417\)](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B0%9417)))

208)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헌바17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중,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로만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나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의 불리한 적용 문제, 간통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아직 판례나 법적 기준이 부족한 편이다.

유책주의란 배우자의 일방이 동거·부양·협조, 정조준수 등의 혼인의무를 위반하는 유책의 사유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입법주의로서 혼인파탄을 자초하여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스스로 이혼원인을 만들어 고의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도리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도의상 허용될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 약자인 여성의 보호를 위한 축출이혼의 예방적 차원에서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sup>209)</sup>

파탄주의란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혼원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유책이어도 혼인공동체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혼인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객관적 혼인파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허용된다.<sup>210)</sup>

본 연구의 조사에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가장 시급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묻은 설문에서 가장 선호된 것은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51.7%)이었다. 이는 다른 의견들(제한적 파탄

209) 대법원, 2013므568 이혼 (원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3.1.11. 선고 2012르754 판결). 대법원([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

210) 김기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圓光法學』 Vol.26 No.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p.99-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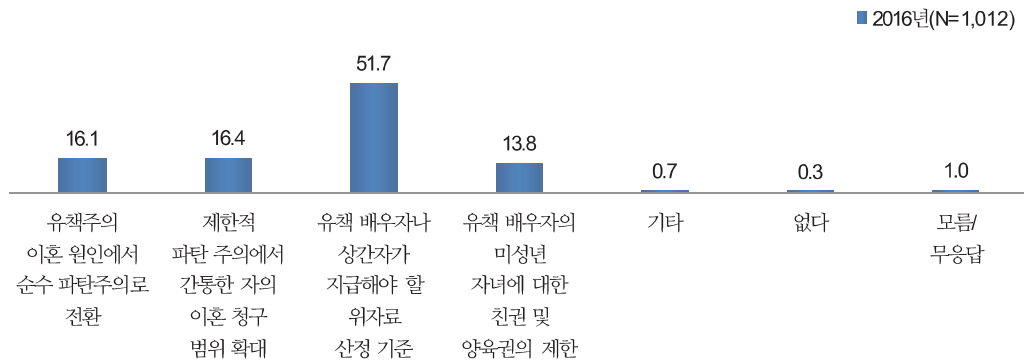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주의에서 간통한 자의 이혼청구 범위 확대 16.4%, 유책주의 이혼원인에서 순수 파탄주의로 전환 16.1%, 유책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제한 13.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간통 행위의 민사적 해결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법제도

(단위 : %)

문)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간통 행위를 민사법으로 해결한다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의 응답에 대해 남성(49.2%)보다 여성(58.0%)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19~29세 55.2%, 30대 59.8%, 40대 5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특성별 간통 행위의 민사적 해결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법제도

구 분	사례수	유책주의 이혼 원인에서 순수 파탄주의로 전환	제한적 파탄 주의에서 간통한 자의 이혼 청구 범위 확대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	유책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제한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 체	(1,012)	16.1	16.4	51.7	13.8	0.7	0.3	1.0	100.0	
성 별	남자	(726)	17.6	17.2	49.2	13.9	0.7	0.4	1.0	100.0
	여자	(286)	12.2	14.3	58.0	13.6	0.7	0.0	1.0	100.0
연 령 별	19~29세	(145)	14.5	17.9	55.2	12.4	0.0	0.0	0.0	100.0
	30대	(306)	12.4	14.1	59.8	12.7	0.7	0.0	0.3	100.0
	40대	(280)	16.4	13.9	53.9	11.8	1.4	0.4	2.1	100.0
	50대	(203)	23.6	17.2	37.4	19.7	0.0	0.5	1.5	100.0
	60세 이상	(78)	12.8	29.5	42.3	12.8	1.3	1.3	0.0	100.0

## 2. 성매매 종사자 처벌

### (1) 종합 분석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매매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에 유입된 자들에 대하여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 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 개념<sup>211)</sup>을 도입하여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성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sup>212)</sup>(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성매매종사자 처벌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5.9%(매우 찬성 7.5% + 찬성하는 편 38.4%)로 결코 적지는 않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54.0%(매우 반대 7.3% + 반대하는 편 46.6%)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일반국민 결과(38.4%)와 비교해

---

211)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 6 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12)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6.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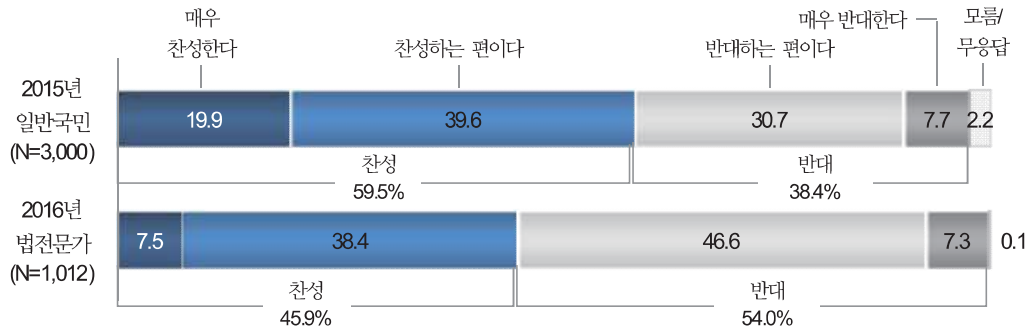
보면 반대 의견이 15.6%p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래에서는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남녀 구성비와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구성비는 일반국민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5:5 수준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 완료 표본의 남녀 성비는 7:3 정도이다. 2015년 일반국민 남녀의 찬성 비율은 각각 52.4%, 66.5%였으며, 2016년 법전문가 남녀의 찬성 비율은 각각 40.9%, 58.7%였다. 즉, 법전문가의 남녀 모두 일반국민보다는 찬성 비율이 낮아 법전문가의 남녀 구성비가 일반국민과 같다고 해도 전체 법전문가의 찬성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전문가의 찬성 비율이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법전문가들의 직무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한 의견은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은 찬성이 40.9%(그 중 매우 찬성은 5.6%), 반대가 59.0%(매우 반대 8.3%) 인데 비해, 여성은 찬성이 58.7%(그 중 매우 찬성은 12.2%), 반대가



41.3%(매우 반대 4.9%)이다. 요컨대 여성은 찬성이 더 많고 남성은 반대가 더 많으며, 그러한 성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부터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7] 특성별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찬성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			
전 체	(1,012)	7.5	38.4	45.9	46.6	7.3	54.0	0.1	100.0	
성 별	남자	(726)	5.6	35.3	40.9	50.7	8.3	59.0	0.1	100.0
	여자	(286)	12.2	46.5	58.7	36.4	4.9	41.3	0.0	100.0
연 령 별	19~29세	(145)	11.7	40.7	52.4	37.9	9.7	47.6	0.0	100.0
	30대	(306)	8.2	39.2	47.4	45.4	7.2	52.6	0.0	100.0
	40대	(280)	4.6	36.1	40.7	50.7	8.6	59.3	0.0	100.0
	50대	(203)	6.4	39.9	46.3	47.8	5.4	53.2	0.5	100.0
	60세 이상	(78)	10.3	35.9	46.2	50.0	3.8	53.8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7. 최근에 간통죄는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성풍속에 대하여 법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성(性) 관련 사항은 사적 영역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풍속에 대한 법적 개입을 최소화

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이 보호법익이 강한 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나 강제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성폭속에서 인권적 접근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이나 현행의 성매매특별법이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지는 의문”, “강제성이 없는 상호 합의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간통죄는 위헌판결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훨씬 더 큰 감정적/정서적 피해를 주기도 함” 등의 상이한 의견들도 나타났다.

성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 변하는 부분과 잘 변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사적 영역과 공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판단과 태도에서 보수적인 관점이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간통죄에 대하여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성폭속에 대한 법적 개입의 정도와 수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상식에 맞는 법 제·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예상된다.

### 3. 근로환경 개선

#### (1) 종합 분석

이번 조사의 설문결과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가 26.7%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꼽혔다. 그 다음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이 24.3%,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가 20.8% 등의 순이었다. 최저 임금 문제도 상당한 정도

로 비정규직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결국 이 시대 근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임을 보여주는 응답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일명, 비정규직보호법<sup>213)</sup>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sup>214)</sup>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또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기업 측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 고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가 그 핵심이라 할 것이다.<sup>215)</sup>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서 26.7%의 법전문가가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를 들고 있어서 향후 관련 법률의 문제점 분석과 근로 현장에서의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액이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등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12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바 있다.<sup>216)</sup>

---

213)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3개 법률은 법제처에서 정한 공식적인 약칭은 아니며,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개선 사항을 담은 3개 법률에 대한 통칭이다.

214) DAUM 백과 - 비정규직보호법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0b3438n10> 2016.10.31. 최종검색)

215) 조규식 외 1명,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법과 정책연구』 14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pp.1403-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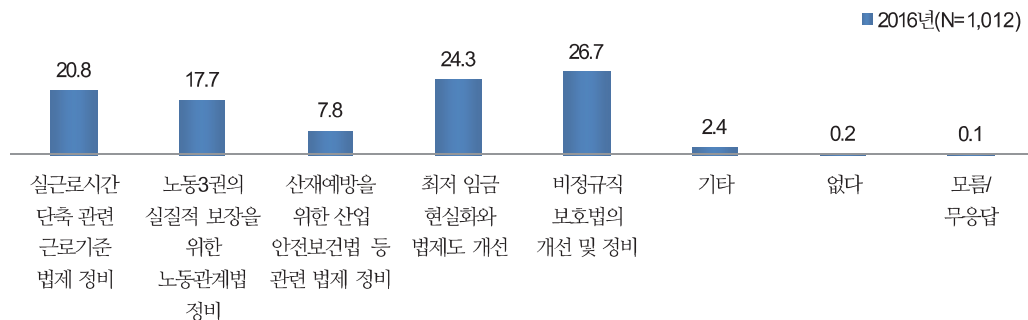
2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24]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

(단위 : %)

문) 귀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특성별 분석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의 경우 사법 분야(31.1%)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null&mode=view&state=A&bbs\\_cd=105&idx=1476251237066&seq=1476251237066](https://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null&mode=view&state=A&bbs_cd=105&idx=1476251237066&seq=1476251237066) 2016.10.31. 최종검색)

[표 68] 특성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

구분	사례수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12)	20.8	17.7	7.8	24.3	26.7	2.4	0.2	0.1	100.0	
분야별	입법	(151)	17.2	18.5	7.9	22.5	29.8	3.3	0.0	0.7	100.0
	행정	(212)	24.5	20.8	8.5	24.5	20.3	0.9	0.5	0.0	100.0
	사법	(90)	31.1	16.7	8.9	14.4	27.8	1.1	0.0	0.0	100.0
	학계	(208)	10.6	19.7	5.8	28.8	32.2	2.9	0.0	0.0	100.0
	민간	(231)	23.8	14.3	8.7	23.4	26.0	3.5	0.4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23.3	15.0	7.5	27.5	25.0	1.7	0.0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 학자그룹, 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 FGI 설문지 문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6.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와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20.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8). 그런데 응답자의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라 보았는데 비해 40대 이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이 우선 과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FGI방식 정성조사에서는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와 ‘최저 임

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20.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라 본 것에 비하여 40대 이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을 우선 과제로 한 것에 대해 세대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즉, FGI방식 정성조사에서 법전문가들은 “30대 이하는 ‘여가 있는 삶’과 ‘안락함’을 중요시하고 40대 이상은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세대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젊은 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제 환경에서 자랐고 그만큼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관심이 높으나, 40대 이상의 세대는 현재 직장에 대한 지속성에 관심이 많고 비정규직을 사회구조적인 분배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근로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대라는 점이 응답을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4. 국민참여재판제도

##### (1) 종합 분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 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로서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절차이다.<sup>217)</sup>

217)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형사 - 국민참여재판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2016.10.31. 최종검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서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sup>218)</sup>

현행 법률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한 범죄, 강도 및 강간에 치상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와 같은 형이 중한 중죄와 뇌물죄 등 일정범위의 부패범죄와 같이 참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죄, 합의부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죄로 그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고,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과 상이한 경우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상반된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sup>219)</sup>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응답자의 42.7%가 그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개선’이 21.5%, ‘국민참여 대상 사건 확대’가 17.5% 등의 순이었다.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라는 응답은 재판은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맡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한 의견들일 수 있

---

218)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형사 - 국민참여재판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2016.10.3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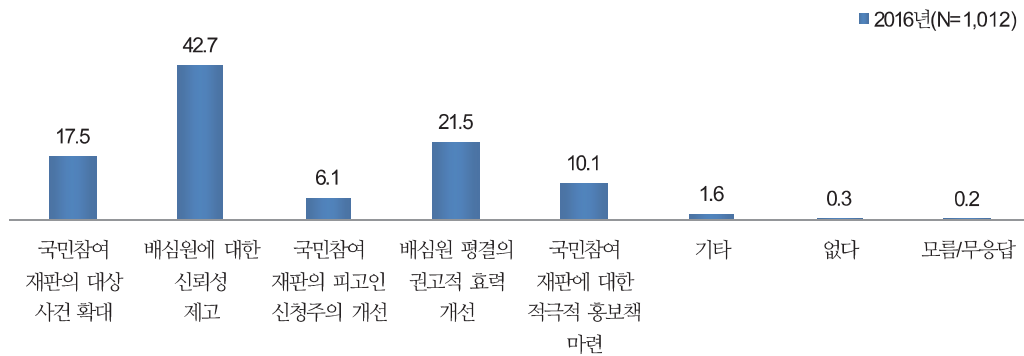
219)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法學研究』 第36輯, 2009, 한국법학회, pp.401-422.

다. 이에 비해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개선’이나 ‘국민참여 대상 사건 확대’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배심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의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약간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림 2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

(단위 : %)

문)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특성별 분석

배심원에 대한 신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는 직업은 검사였다. 검사의 60.0%(전체 평균보다 20% 가량 더 높은 정도)가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라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배심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은 예비 법전문가를 제외하면 연구원(30.4%), 법학과 교수(35.7%), 로스쿨 교수(36.2%), 변호사(37.3%) 등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다.



[표 69] 특성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구분	사례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확대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 신청주의 개선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개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12)	17.5	42.7	6.1	21.5	10.1	1.6	0.3	0.2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20.0	44.0	6.0	18.0	10.0	0.0	0.0	2.0	100.0
	국회공무원	(50)	22.0	46.0	4.0	14.0	12.0	2.0	0.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3.5	45.1	7.8	7.8	15.7	0.0	0.0	0.0	100.0
	국가 공무원	(112)	12.5	58.0	5.4	15.2	6.3	0.0	1.8	0.9	100.0
	지방 공무원	(100)	18.0	45.0	6.0	19.0	10.0	2.0	0.0	0.0	100.0
	판사	(30)	3.3	46.7	26.7	3.3	16.7	3.3	0.0	0.0	100.0
	검사	(30)	0.0	60.0	6.7	23.3	3.3	6.7	0.0	0.0	100.0
	법원 공무원	(30)	16.7	46.7	6.7	16.7	10.0	3.3	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17.4	36.2	5.8	27.5	8.7	4.3	0.0	0.0	100.0
	법학과 교수	(70)	21.4	35.7	8.6	21.4	12.9	0.0	0.0	0.0	100.0
	연구원	(69)	18.8	30.4	4.3	33.3	11.6	1.4	0.0	0.0	100.0
	변호사	(110)	16.4	37.3	5.5	31.8	9.1	0.0	0.0	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23.1	43.0	2.5	20.7	9.9	0.0	0.8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16.7	40.0	0.0	28.3	11.7	3.3	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16.7	33.3	11.7	25.0	8.3	5.0	0.0	0.0	100.0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8. 귀하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의 배심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등)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IDI방식 정성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i)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ii) 배심원의 의견이 현행 권고적 수준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증거법제의 개선”, “배심원에 대한 교육”, “배심원 구성에서 전문성 고려”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신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현행 유지 의견도 있었다.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법적 판단이 걱정스러움”,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판결은 아직 판사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판결을 배심원이 하는 것에는 반대” 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 5. 양성 평등

### (1) 종합 분석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 규정에는 평등에 관한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2조 제4항과 제36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여성 보호 및 모성으로서

의 여성 보호를 위하여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1987년의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이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한 조항에 규정되어 왔으나,<sup>220)</sup>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서로 다른 기반 위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조항으로 묶어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헌법은 분리 규정하여 제32조 제4항에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둔 것이다.<sup>221)</sup> 특히, 제36조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과 모성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양성평등 규정이나 모성 또는 근로자로서의 여성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뉴스 기사에서나 생활 속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들을 흔히 접하게 되며, 그 원인도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문화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sup>222)</sup>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는 의견은 62.7%, ‘그렇지 않다’(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는 의견은 37.3%로 여성 차

220) 개정 전 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제30조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21) 석인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Vol.16 No.3,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研究所, 2012, pp.1-30.

222) 시사저널, “[2015 사업보고서 건설업종 분석] ② 여성, 연봉·근속연수 등 남성에게 절대 불리”, 2016년 4월 11일자 기사 (<http://v.media.daum.net/v/20160411110050934> 2016.10.31. 최종검색); 1boon, “직장에서 여성들은 정말 차별받고 있을까? - 2015년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결과 유리천장 지수”, 2016년 9월 13일자 기사 (<http://1boon.aka.com/jobsN/57d673316a8e510001ff8f0c> 2016.10.3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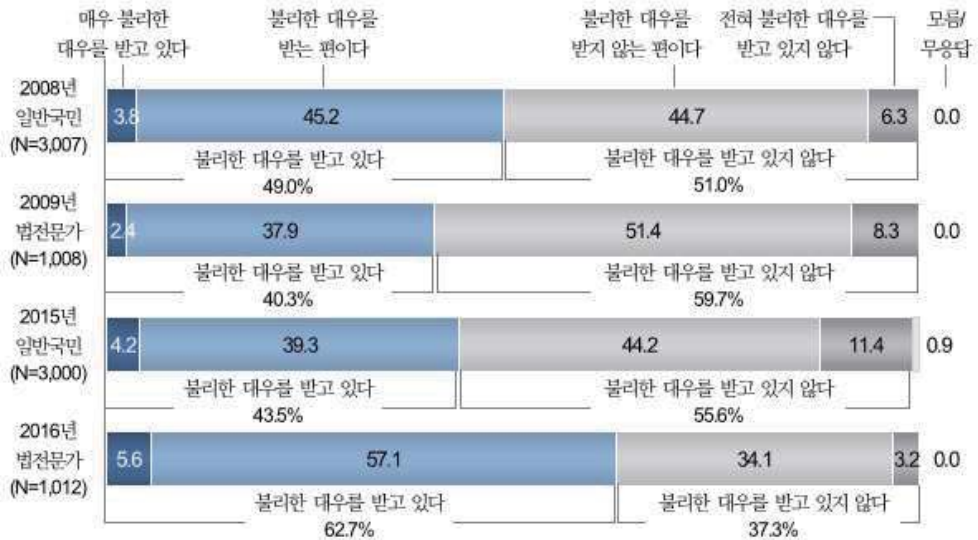
별을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원인에 대하여서도 남녀 모두(남성은 40.0%, 여성은 46.9%)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보수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양성 평등의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의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율이 2009년 법전문가(40.3%) 및 2015년 일반국민(43.5%)에 비해 월등히 높은 62.7%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sup>223)</sup> 양성 평등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림 26]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23) 본 조사결과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FGI방식 정성조사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2) 특성별 분석

이 질문에 대한 성별 응답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85.7%가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53.7%가 ‘그렇다’(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53.7%)을 제시한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하였으나, 여성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야별로는 학계(77.4%)와 예비 법전문가(73.3%)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0] 특성별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5.6	57.1	62.7	34.1	3.2	37.3	100.0	
성 별	남자	(726)	3.4	50.3	53.7	42.1	4.1	46.3	100.0
	여자	(286)	11.2	74.5	85.7	13.6	0.7	14.3	100.0
분 야 별	입법	(151)	6.6	58.3	64.9	33.1	2.0	35.1	100.0
	행정	(212)	4.7	43.4	48.1	48.1	3.8	51.9	100.0
	사법	(90)	2.2	50.0	52.2	44.4	3.3	47.8	100.0
	학계	(208)	6.3	71.2	77.4	21.2	1.4	22.6	100.0
	민간	(231)	4.8	55.4	60.2	35.1	4.8	39.8	100.0
	예비법전문가	(120)	9.2	64.2	73.3	23.3	3.3	26.7	100.0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법전문가들만(N=635)으로 대상으로 할 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

된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로 42.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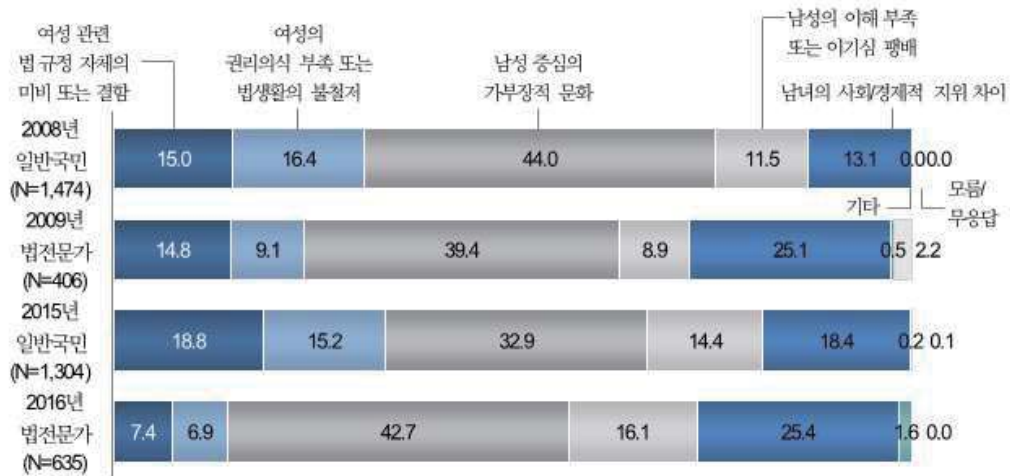
2009년 법전문가(39.4%), 2015년 일반국민(32.9%) 모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여성 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의 응답 비율은 법전문가(2009년, 2016년)와 일반국민(2008년, 2015년) 모두 20% 미만이었다. 이는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법과 관련된 이유보다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2008년 일반국민 44.0%, 2009년 법전문가 39.4%, 2015년 일반국민 32.9%, 2016년 법전문가 42.7%)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림 27]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단위 : %)

문) 그림,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녀 모두(남성은 40.0%, 여성은 46.9%)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가운데,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29.0%)이 여성(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세 이상(2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특성별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구 분		사례수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적 문화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	기타	계
전 체		(635)	7.4	6.9	42.7	16.1	25.4	1.6	100.0
성 별	남자	(390)	7.4	6.7	40.0	15.1	29.0	1.8	100.0
	여자	(245)	7.3	7.3	46.9	17.6	19.6	1.2	100.0
연 령 별	19~29세	(97)	6.2	11.3	44.3	13.4	22.7	2.1	100.0
	30대	(201)	7.5	5.5	40.8	16.4	26.9	3.0	100.0
	40대	(167)	6.0	6.6	47.9	15.6	24.0	0.0	100.0
	50대	(124)	8.9	5.6	41.1	16.1	26.6	1.6	100.0
	60세 이상	(46)	10.9	8.7	32.6	21.7	26.1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 학자그룹, 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 FGI 설문지 문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7.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62.7%)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남성의 53.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85.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0). 성별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응답자의 남녀의 성비는 3:1 정도였습니다.

<추가질문>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25.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16.1%)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7.4%)은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량조사 문20-1). 이는 법전문가들이 여성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전문가들이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로 법제도 보다는 법제도 아닌 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이 여성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은 아니라 본다고 이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62.7%)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배경에 대하여 법전문가라는 집단의 특성을 지적하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각도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반성적 의식으로 인하여 불평등에 대해 더욱 자각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많이 아는 만큼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판단도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또한 여성이(85.7%)가 남성(53.7%)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것에 대하여 여성 법전문가들의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를 들었다. 여성 법조인의 경우 법조계에서 평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나 법조계의 현실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42.7%),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25.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16.1%) 등의 순이었는데, 특히,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7.4%)은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로 법제도보다는 법제도 아닌



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 i) 제도보다는 의식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느끼는 상대적 차별감을 들었다. 따라서 선진적인 법의 제정보다는 선진적인 법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와 법이라는 건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 제 3 절 사회 복지

#### 1. 아동학대 문제

##### (1) 종합 분석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에 대해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28.9%),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2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20.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후 처벌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sup>224)</sup>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224)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소개되면서 관련 법제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즉,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도화선이 되어 아동학대 관련에서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국회에서 새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례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2015년 7월 24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225)</sup>

또한 2016년 9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sup>226)</sup>

그러나,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전국 247곳의 지자체 중 49곳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의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시군구지역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sup>227)</sup> 또한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91개소 중 49개소 53.8%만이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7조 2항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228)</sup>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sup>229)</sup>

---

225) 연합뉴스 2016.09.28. 기사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79000004.HTML?input=1195m> 2016.10.31. 최종검색)

226) 연합뉴스 2016.09.28. 기사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79000004.HTML?input=1195m> 2016.10.31. 최종검색)

227) 쿠키뉴스 2016.10.24. 기사 “아동학대 대책 입법 사항인 상담전문요원 배치 미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3296> 2016.10.3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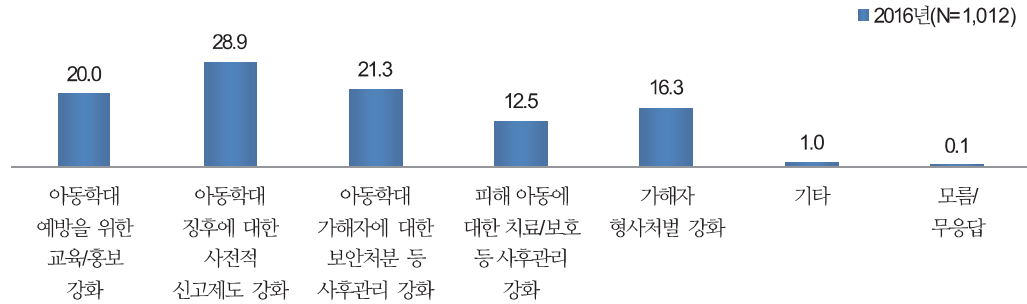
228) 쿠키뉴스 2016.10.24. 기사 “아동학대 대책 입법 사항인 상담전문요원 배치 미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3296> 2016.10.31. 최종검색)

229) 비트허브 2016.10.23. 기사 “빅데이터 활용해 사각지대 아동 발견한다”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9> 2016.10.31. 최종검색)

[그림 28]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단위 : %)

문) 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사법 분야(3.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2] 특성별 개선 법제

구분	사례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안 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가해자 형사 처벌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12)	20.0	28.9	21.3	12.5	16.3	1.0	0.1	100.0	
분야별	입법	(151)	24.5	23.8	21.2	6.6	22.5	1.3	0.0	100.0
	행정	(212)	22.2	26.9	19.3	9.9	20.3	1.4	0.0	100.0
	사법	(90)	21.1	25.6	27.8	22.2	3.3	0.0	0.0	100.0
	학계	(208)	22.6	30.8	16.3	13.5	15.4	1.4	0.0	100.0
	민간	(231)	13.9	33.3	24.7	12.1	15.2	0.4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6.7	29.2	22.5	15.8	15.0	0.8	0.0	100.0

##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지원 정책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의견은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로 44.5%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인 ‘교사의 처우개선(18.1%)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영유아 교육기관들을 국공립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시설이 1991년 이전에는 1,919개소가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33,500 여개소로 약 17배 이상이 증설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42.8%를 차지하고 있다.<sup>230)</sup> 고용노동부는 취업부모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를 조사하였는데, 직장보육시설의 제공(45.8%), 보육비의 지원(19.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의 지급(14.0%)순으로 나타나 직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231)</sup>

보육에 대한 관련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에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을 마련하였으며, ‘일과 가족법(가칭)’을 제정하여 출산부터 육아휴직, 자녀양육서비스, 노동시간관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232)</sup> 이외에도

---

230)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2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99.

231)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2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p.8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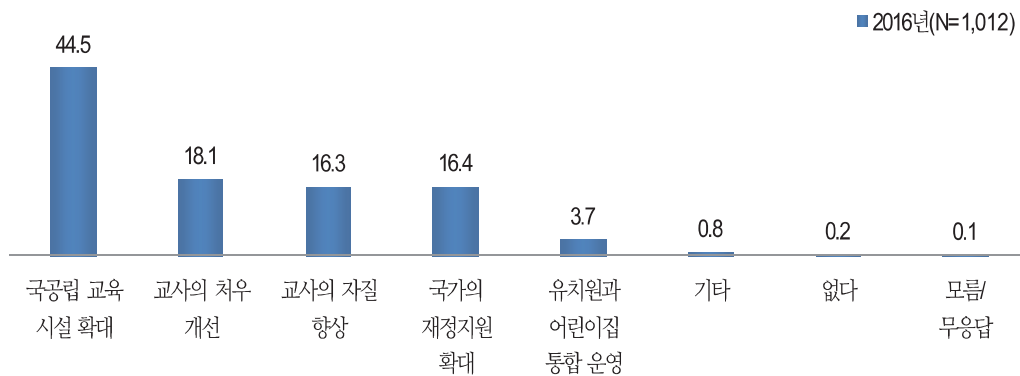
232)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보육재정,

자녀간병휴가제, 유연근무제,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보육정책과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부모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sup>233)</sup>

[그림 29]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

(단위 : %)

문) 귀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2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98.

233)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2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p.85-110.

## 제 4 절 안전 관리

### 1. 기업의 법적 책임

#### (1) 종합 분석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세월호 침몰이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등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98.8%)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62.8%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4년 11월 3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의 도입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업 자체에 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동 법안의 제안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2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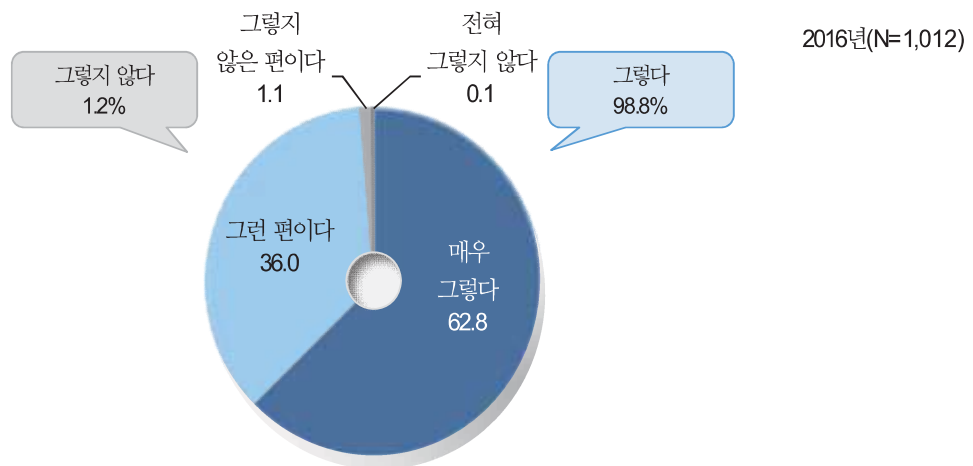
234)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2014, p.207.

아래의 내용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0]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 최근 가슴기 살균제, 밀가루 식품파동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64.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그 다음 응답 순위인 ‘형사처벌 강화’(18.9%)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의견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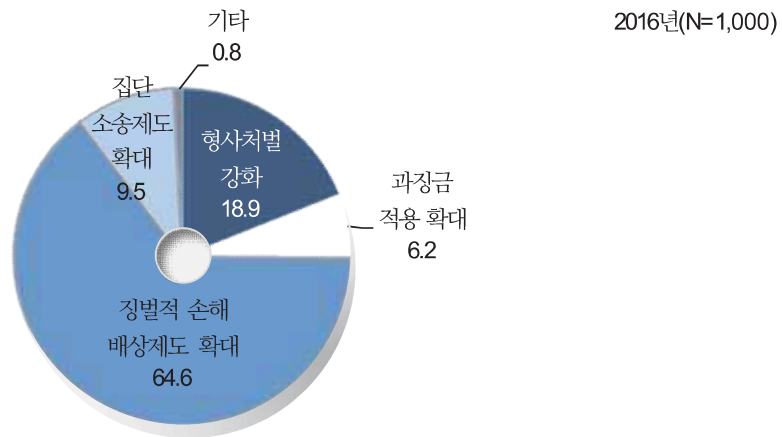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sup>235)236)</sup>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 시행된 증권 집단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림 31]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단위 : %)

문) 그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특성별 분석

특히 판사(83.3%)와 변호사(77.4%) 집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58% 이상)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형사처벌 강화’는 50대 이상(50대 27.9%, 60세 이상 2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5) JTBC 뉴스 2016.05.04. 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에는 왜 없을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7316](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7316) 2016.10.31. 최종검색)

236) 법률신문 2015.04.23. 기사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서는 어떻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59> 2016.10.31. 최종검색)

[표 73] 특성별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구 분	사례수	형사처벌 강화	과징금 적용 확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집단 소송제도 확대	기타	계	
전 체	(1,000)	18.9	6.2	64.6	9.5	0.8	100.0	
연령 별	19~29세	(143)	16.1	14.0	60.1	9.8	0.0	100.0
	30대	(301)	14.6	6.6	69.1	7.6	2.0	100.0
	40대	(280)	15.7	5.0	67.5	11.4	0.4	100.0
	50대	(201)	27.9	2.5	58.7	10.9	0.0	100.0
	60세 이상	(75)	29.3	4.0	60.0	5.3	1.3	100.0
직업 별	국회의원	(49)	24.5	14.3	59.2	2.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4.0	8.0	58.0	18.0	2.0	100.0
	지방의회의원	(50)	42.0	0.0	44.0	14.0	0.0	100.0
	국가 공무원	(111)	18.0	2.7	68.5	9.0	1.8	100.0
	지방 공무원	(98)	28.6	5.1	62.2	4.1	0.0	100.0
	판사	(30)	6.7	0.0	83.3	6.7	3.3	100.0
	검사	(30)	23.3	13.3	60.0	3.3	0.0	100.0
	법원 공무원	(30)	23.3	13.3	53.3	1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18.8	2.9	62.3	15.9	0.0	100.0
	법학과 교수	(70)	7.1	10.0	70.0	11.4	1.4	100.0
	연구원	(69)	11.6	4.3	71.0	11.6	1.4	100.0
	변호사	(106)	10.4	5.7	77.4	6.6	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0)	25.8	5.0	55.8	12.5	0.8	100.0
	로스쿨과정생	(59)	11.9	11.9	72.9	1.7	1.7	100.0
	박사과정생	(59)	16.9	6.8	62.7	13.6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1)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4-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바 있다.

4-2.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고에 대해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는 검찰과 법원과 같은 사법당국이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생래적인 특성상 기업이 지는 책임은 형사제제로서는 벌금형 밖에 없어서 대중적인 인식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본 설문은 이러한 법제도상의 한계와 함께 다른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설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가지는 특성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요소’나 ‘인적 요소’를 꼽는 법전문가들이 상당수에 달했다. 즉, 기업에 대한 제재는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우려가 기업의 형사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경유착 등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인적 요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8.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관리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25, 문29). 또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98.8%가 동의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3). 이와 같이 관련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응답된 것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왔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강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법 위반시에는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하며, 형사처벌에서 나아가 행정처분, 민사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한 법적 책임 강화라는 응답이 일반예방주의 한 형태로서 기업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2.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

### (1) 종합 분석

인공지능이 정보의 인식, 분석, 판단을 담당하는 시대가 도래하여 편리함과 간소함이 일반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걱정은 순기능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한 효율성에 기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기술적 위험성 및 윤리적 위험성, 책임의 귀속, 인간존엄성의 원칙 고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해 나가야만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sup>237)</sup>,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

---

2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2014.7.15.]. 제2조(정의) 1호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법안’도 논의 중이다.<sup>238)</sup>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3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불안정한 인공지능의 상용화 규제’(23.0%), ‘인공지능 문제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20.8%), ‘인공지능의 사용범죄 제한’(15.3%) 등의 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손해배상이나 규제 등)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인간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 외로 하더라도,<sup>239)</sup> 인공지능 소유자, 제작자, 시스템 개발자, 명령 입력자, 조종자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자가 인공지능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sup>240)</sup>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소송, 환경소송 등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완화해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관련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및 1차 책임자를 소유자로 규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sup>241)</sup>

238)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Spring 2016』 제28호, 2016, pp.18-21.

239) 인공지능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거나 형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대한변협신문 2016.06.27. 칼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법조계의 역할”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6> 2016.10.12. 최종검색)

240) 대한변협신문 2016.06.27. 칼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법조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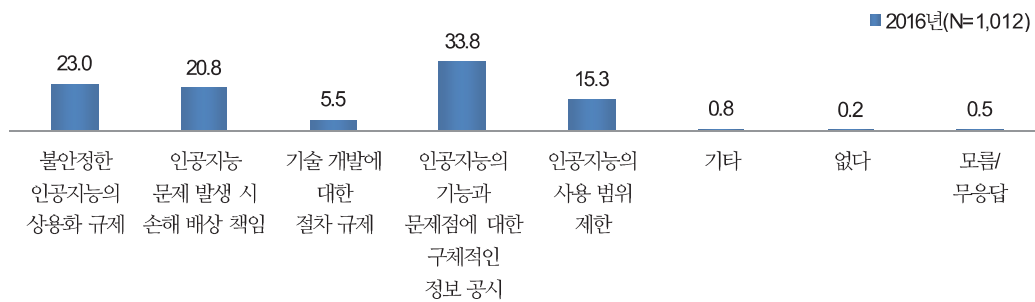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6> 2016.10.12. 최종검색)

241) 대한변협신문, 2016.06.27.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6>)

[그림 32] 인공지능 사용 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단위 : %)

문)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하는 인공지능(알파고/자율주행/로보어드바이저/로봇의사 등)의 산업기술 응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9. 다른 나라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귀하는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아십니까?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범위와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의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 대체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일부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백퍼센트 동의, 오히려 더 공정하고 멋진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함”), 대체로는 대체 가능성에 대

2016.10.12. 최종검색)

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체 가능성은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를 완전 대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가 단순히 사건에 대한 데이터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완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일이 감성을 동원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 부분에서 제한적임”, “인공지능이 판사 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임. 다양한 정서적 활동을 포함한 행위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를 다 대체하기 어려움”, “동일한 결과적 행위라도 사례마다 그 배경, 원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 “법문은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해석과정이 있고 여기서 재량이 포함될 수 있음” 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완전 대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완전 대체 불가능성의 이유에 대해 업무 자체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있어도 윤리적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법 집행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잘 하든 못 하든 법률적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할 것임”, “누구도 컴퓨터가 자기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듯” 등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설혹 기술적 진화로 인해 인공지능이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정서적 차원에서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완전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업무는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것임”, “판례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사안과 관련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겠지만” 등에서처럼 관련 데이터 검색, 정리 나아가서 제안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신속한 재판, 저렴한 소송비용 등”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에 대해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렵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알파고 이후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인공지능이 미래에 인간사회, 구체적으로는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즉 어떤 직업들이 미래에 사라질 것인가 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에 따라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sup>242)</sup> 데이터 처리 능력, 학습 속도 등에서 현재 인류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적 평가라고 할 때,<sup>243)</sup> 법 관련 업무의 대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에게 법과 관련한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대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

#### (1) 종합 분석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242) 한국일보, “AI비서 넘어 AI변호사까지...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일자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a47c67f95aa14ef8add12e967c678f1d> 2016.10.31. 최종검색); 이데일리, “인공지능의 발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16년 8월 25일자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587926612750928&DCD=A00504&OutLnkChk=Y> 2016.10.31. 최종검색) 등

243) 법률신문, “‘인공지능 판사’ 탄생할까... 사법부도 ‘제4차 산업혁명’ 논의 - 대법원, 18일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국제법률심포지엄”, 2016년 10월 11일자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745> 2016.10.31. 최종검색)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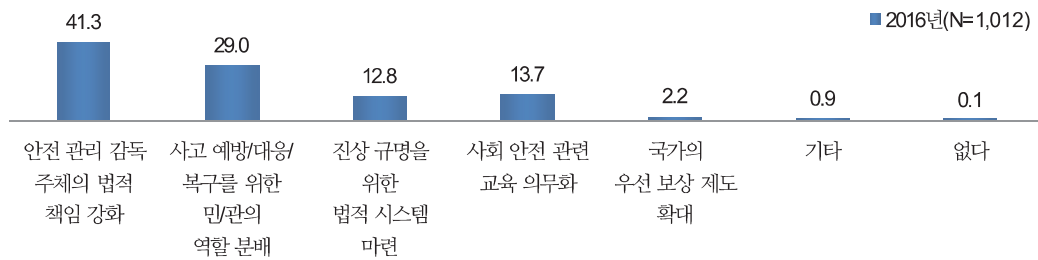
법 른	정의규정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	<p>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li> <li>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li> </ul> </li> </ol>
<p>자연재해 대책법</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li> <li>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li> </ol>
<p>소방기본법</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li> <li>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li> </ol>
<p>민방위 기본법</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li> <li>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li> <li>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li> </ul> </li> </ol>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물은 결과,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관의 역할 분배’(29.0%), ‘사회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13.7%) 등의 순이었다.

[그림 33]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

(단위 : %)

문) 최근 항공기/선박사고, 일본의 지진 등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이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정성조사 결과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학자그룹/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FGI 설문지 문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8.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관리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25, 문29). 또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98.8%가 동의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3). 이와 같이 관련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관리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재난 발생시 처벌 대상인 안전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명확성과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문제 발생시 명확한 책임의 주체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 통일을 위한 준비

##### (1) 종합 분석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28.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법제 정비’(26.8%) 또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중복 응답까지 고려할 경우엔, 응답자의 43.8%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 법제 정비’, 41.3%가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를 응답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둘 사이의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에 대해 협력적인 시각과 적대적인 시각이 거의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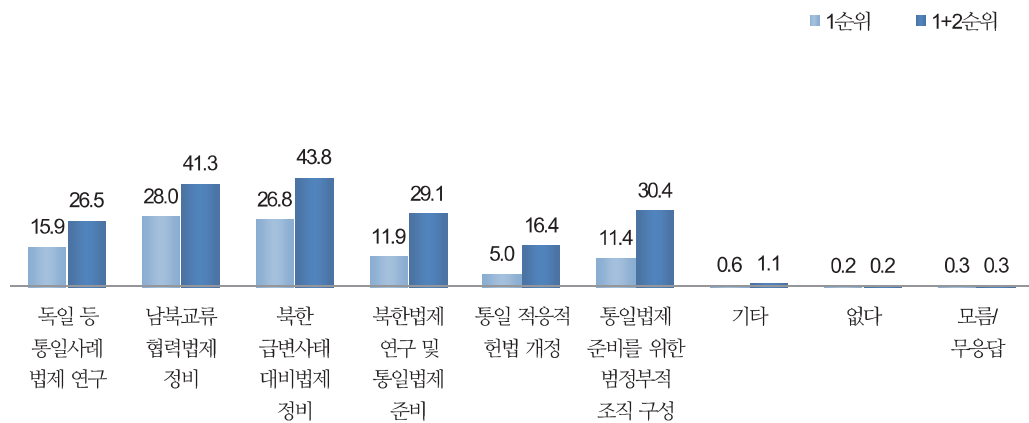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28.0%가 ‘남북교류법제 정비’를, 26.8%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과제 정비’가 꼽힌 것에 대하여, 남북교류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같은 정치적 과제가 통일에 관한 법제도나 법제시스템 준비에 관한 과제보다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법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법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법률체계와 사법조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기준이 필요하다.<sup>244)</sup> 동서독은 통일독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합의의 법적 기초로서 이른바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일통일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통일후에도 통일상황과 동서독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동독에서 이루어진 헌법개혁안의 논의와 헌법개정은 상이한 두 이념과 체제의 결합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할만한 의미있는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sup>245)</sup>

[그림 34] 통일에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

(단위 : %)

문) 통일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44) 장소영,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統一과 法律』 Vol.- No.11,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pp.85-125.

245) 박정원,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統一과 法律』 Vol.- No.1,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p.184.

## (2) 정성조사 결과

1)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 학자그룹, 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 FGI 설문지 문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9.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28.0%가 ‘남북교류법제 정비’를, 26.8%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과제 정비’가 꼽혔습니다(정량조사 문26). 남북교류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같은 정치적 과제가 통일에 관한 법제도나 법제시스템 준비에 관한 과제보다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북교류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같은 정치적 과제가 통일에 관한 법제도나 법제시스템 준비에 관한 과제보다 더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이유에 대하여 i) 남북 협력과 위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안 위주의 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기하였고. ii) 법제도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치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효율적인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또한 법전문가들의 응답결과에 대해 법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다. 법전문가조차도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아닌 정권에 따라 변하는 대북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제 5 절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양성

### 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

#### (1)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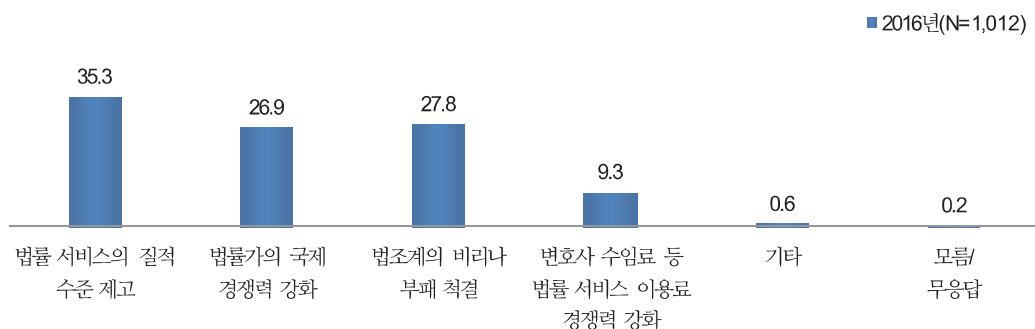
현재 한미FTA에 의하여 1단계 개방은 2012.03 / 2단계 개방은 2014.03 / 3단계 개방은 2017.03에 개방이 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1단계 개방은 2011.07 / 2단계 개방은 2013.07 / 3단계 개방은 2016.07에 개방이 되었다.<sup>246)</sup>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35.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27.8%),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단위 : %)

문) 2007년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시장이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방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6) 이소현, “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 『국제법무』 제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pp.39-60.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사법 분야(4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 특성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구 분	사례수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변호사 수입료 등 법률 서비스 이용료 경쟁력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 체	(1,012)	35.3	26.9	27.8	9.3	0.6	0.2	100.0	
분야별	입법	(151)	39.1	17.9	35.8	6.6	0.0	0.7	100.0
	행정	(212)	35.8	22.6	25.9	15.1	0.5	0.0	100.0
	사법	(90)	43.3	45.6	5.6	5.6	0.0	0.0	100.0
	학계	(208)	33.7	24.5	32.7	8.7	0.5	0.0	100.0
	민간	(231)	34.2	31.2	27.7	5.6	1.3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28.3	27.5	29.2	13.3	0.8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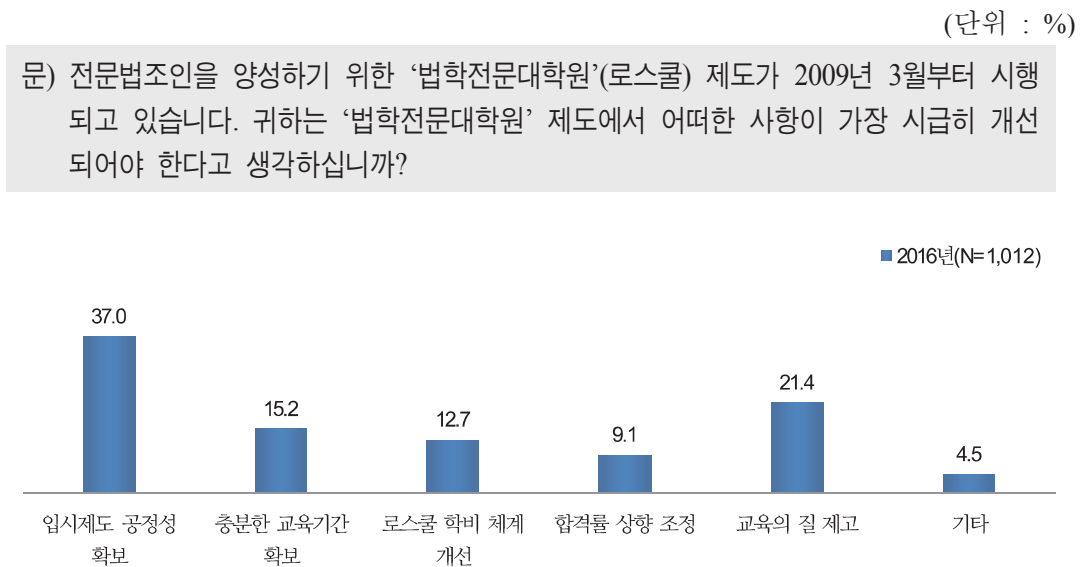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

(1) 종합 분석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2007년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1년에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37.0%가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지목하였다. 그 다음은 ‘교육의 질 제고’(21.4%),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15.2%), ‘로스쿨 학비체계 개선’(12.7%), ‘합격률 상향 조정’(9.1%)의 순이었다.

[그림 36] 로스쿨제도 운영 시 필요 개선 사항



## (2) 특성별 분석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는 행정 분야(5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와 ‘합격률 상향 조정’은 학계(각각 24.5%, 17.3%)와 예비 법전문가(각각 22.5%, 1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몇몇 특정 직업 집단에서는 ‘합격률 상향 조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로 지목되었다. ‘합격률 상향 조정’ 문제는 로스쿨 교수에서 31.9%, 로스쿨과정생에서 25.0%를 차지하였다. 즉,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최대 염원이 합격률 상향 조정임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그 외 나머지 집단에서는 ‘로스쿨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표 75] 특성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 시 필요 개선 사항

구 분	사례수	입시 제도 공정성 확보	충분한 교육 기간 확보	로스쿨 학비 체계 개선	합격을 상향 조정	교육의 질 제고	기타	계	
전 체	(1,012)	37.0	15.2	12.7	9.1	21.4	4.5	100.0	
분야 별	입법	(151)	38.4	7.9	18.5	3.3	29.1	2.6	100.0
	행정	(212)	51.4	10.8	14.6	3.8	16.0	3.3	100.0
	사법	(90)	31.1	14.4	12.2	7.8	31.1	3.3	100.0
	학계	(208)	28.4	24.5	6.7	17.3	16.3	6.7	100.0
	민간	(231)	36.4	12.1	13.9	8.2	24.2	5.2	100.0
	예비법전문가	(120)	30.0	22.5	10.8	14.2	17.5	5.0	100.0
직업 별	국회의원	(50)	34.0	10.0	32.0	0.0	2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2.0	8.0	8.0	4.0	36.0	2.0	100.0
	지방의회의원	(51)	39.2	5.9	15.7	5.9	27.5	5.9	100.0
	국가 공무원	(112)	47.3	6.3	20.5	1.8	18.8	5.4	100.0
	지방 공무원	(100)	56.0	16.0	8.0	6.0	13.0	1.0	100.0
	판사	(30)	36.7	13.3	10.0	0.0	33.3	6.7	100.0
	검사	(30)	13.3	16.7	6.7	20.0	40.0	3.3	100.0
	법원 공무원	(30)	43.3	13.3	20.0	3.3	2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11.6	23.2	4.3	31.9	21.7	7.2	100.0
	법학과 교수	(70)	35.7	25.7	8.6	11.4	12.9	5.7	100.0
	연구원	(69)	37.7	24.6	7.2	8.7	14.5	7.2	100.0
	변호사	(110)	27.3	12.7	12.7	13.6	28.2	5.5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44.6	11.6	14.9	3.3	20.7	5.0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20.0	11.7	25.0	20.0	3.3	100.0
박사과정생	(60)	40.0	25.0	10.0	3.3	15.0	6.7	100.0	

##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10. 최근에 논란이 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자유로이 말씀해 주세요.

본 설문에 대하여 사법시험 존치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법시험 준비에도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나,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금수저의 현대판 음서제’로 표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이 기존 계층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과 달리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공정성 측면에서 사법시험이 더 앞서는 것 같음”, “로스쿨 초기이고 오래된 관행이 있다보니 금수저의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음”, “사법시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존치해야 할 것임. 사법시험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놔두는 게 맞을 듯” 등과 같은 의견이 IDI 인터뷰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사법시험 폐지 의견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평가나 개선필요 사항이 사법시험 존치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점도 로스쿨이 향후 개선점으로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로스쿨이 존재하더라도 로스쿨을 우회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로스

쿨 방향이 맞다고 생각.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도 스스로 없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등의 의견에서는 모두 기회의 평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향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되는 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즉, 첫째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로스쿨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될 것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하여서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도 기회의 평등성을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향후 로스쿨 입학 전형을 다양화·개방화하는 방안이 계속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번째 문제에 대하여서는 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에 대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즉,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제 6 절 생명권과 법질서

### 1. 사형 집행

#### (1) 종합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전하는 죄)<sup>247)</sup>뿐이고 이외에 상대적 법정형 적용 범죄는

---

247) 여적죄에 있어서도 작량감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특별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2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종, 「국가보안법」에 5종, 「군형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강간죄 등 9종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sup>248)</sup>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며,<sup>249)</sup> 최근 20대 국회에서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제도 폐지’법안 대표발의 계획을 예고하고 있다.<sup>250)</sup>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사형집행에 관하여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59.2%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5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에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5.2%로 나온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서는 2015년의 설문과 달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이 아닌,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어서 이번 결과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형집행’에 찬성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

법」에 40종 등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사형(死刑)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959&cid=46625&categoryId=46625> 2016.10.31. 최종검색)).

2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사형(死刑)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959&cid=46625&categoryId=46625> 2016.10.3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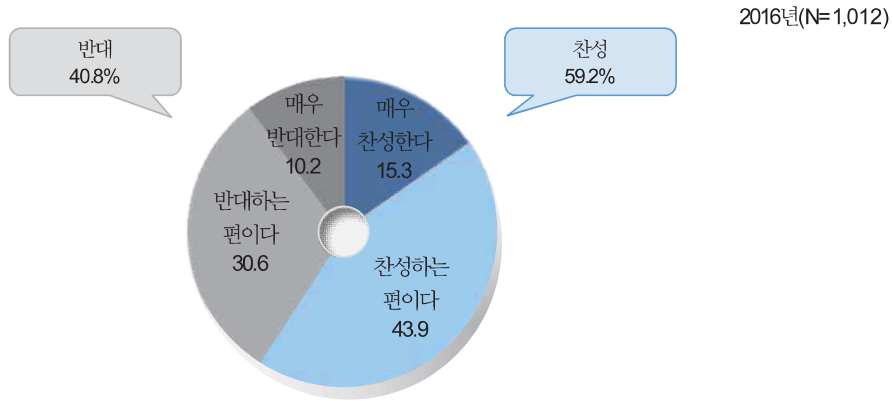
249) 중앙일보 오피니언 2016.10.15. 기사 “사형 폐지 논란과 여론의 벽” (<http://news.joins.com/article/20726920>)

250) 이데일리 2016.10.10. 기사 “‘사형제 폐지’ 화두 던진 김부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99766612811608&DCD=A00602&OutLnkChk=Y>)

[그림 37] 사형 집행 찬반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2) 특성별 분석

지역별로는 전라권(53.2%)과 제주권(56.5%)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모든 분야에서 찬성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학계에 서만 찬성(49.0%)과 반대(51.0%)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그리고 판사의 경우 반대(53.3%)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6] 특성별 사형 집행 찬반 정도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찬성 한다	③	④	③+④ 반대 한다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전 체	(1,012)	15.3	43.9	59.2	30.6	10.2	40.8	100.0	
지 역 별	수도권	(586)	16.0	43.2	59.2	29.0	11.8	40.8	100.0
	중부권	(197)	13.2	47.7	60.9	31.0	8.1	39.1	100.0
	전라권	(79)	15.2	31.6	46.8	45.6	7.6	53.2	100.0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찬성 한다	③	④	③+④ 반대 한다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경상권	(127)	17.3	49.6	66.9	26.8	6.3	33.1	100.0
	제주권	(23)	4.3	39.1	43.5	39.1	17.4	56.5	100.0
분야별	입법	(151)	17.2	42.4	59.6	29.8	10.6	40.4	100.0
	행정	(212)	17.5	43.9	61.3	30.2	8.5	38.7	100.0
	사법	(90)	13.3	53.3	66.7	31.1	2.2	33.3	100.0
	학계	(208)	11.5	37.5	49.0	32.7	18.3	51.0	100.0
	민간	(231)	16.5	44.2	60.6	32.0	7.4	39.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5.0	49.2	64.2	25.8	10.0	35.8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4.0	46.0	60.0	30.0	10.0	40.0	100.0
	국회공무원	(50)	16.0	36.0	52.0	36.0	12.0	48.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1.6	45.1	66.7	23.5	9.8	33.3	100.0
	국가 공무원	(112)	14.3	49.1	63.4	25.9	10.7	36.6	100.0
	지방 공무원	(100)	21.0	38.0	59.0	35.0	6.0	41.0	100.0
	판사	(30)	0.0	46.7	46.7	50.0	3.3	53.3	100.0
	검사	(30)	20.0	56.7	76.7	23.3	0.0	23.3	100.0
	법원 공무원	(30)	20.0	56.7	76.7	20.0	3.3	23.3	100.0
	로스쿨 교수	(69)	10.1	36.2	46.4	34.8	18.8	53.6	100.0
	법학과 교수	(70)	11.4	41.4	52.9	37.1	10.0	47.1	100.0
	연구원	(69)	13.0	34.8	47.8	26.1	26.1	52.2	100.0
	변호사	(110)	8.2	42.7	50.9	37.3	11.8	49.1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24.0	45.5	69.4	27.3	3.3	30.6	100.0
	로스쿨과정생	(60)	10.0	45.0	55.0	30.0	15.0	45.0	100.0
박사과정생	(60)	20.0	53.3	73.3	21.7	5.0	26.7	100.0	

##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sup>251)</sup>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비율은 86.8%로 나타났다. 2009년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2015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대하여서는 각각 77.6%, 75.9%의 찬성의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9년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으로 설문하였고,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안락사(존엄사)’ 허용에 대한 찬반으로 설문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설문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2009년의 ‘안락사’, 2015년의 ‘안락사(존엄사)’가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간의 오차가능성은 있다.

국내에서의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1997년의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sup>252)</sup>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적 지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표 77] 치료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인식조사<sup>253)</sup>

구 분		인 원	비 율
소극적 안락사	동 의	707	69.3
	동의하지않음	281	27.5
	모 름	32	3.1
	합 계	1020	100.0

251)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출처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5212&cid=40942&categoryId=31693> 2016.10.20. 최종검색)

252) 대법원판결 2004.6.24. 2002도995

253)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8, p.179, 표-1 <불치병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인용.

구 분		인 원	비 율
적극적 안락사	동 의	573	56.2
	동의하지않음	398	39.1
	모 름	48	4.7
	합 계	1019	100.0
사전치료거부의 의사표시준중	동 의	721	70.8
	동의하지않음	258	25.3
	모 름	39	3.8
	합 계	1018	100.0

2009년에는 대법원이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함으로써<sup>254)</sup> 그 법제화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가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sup>255)</sup>.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254) 대법원판결 2009.5.21. 2009다17417

255) 박광민·김용선,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成均館法學』 第22卷 第3號,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93-94. 본문내용 재인용; 한국보건의료원, “치료중단 12개 기본원칙 제시”, 보도자료, 2009.

- ① 희생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 ③ 말기상태 판정은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이 수행한다.
- ④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완화의료(호스피스)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 ⑤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 ⑧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중단될 수 있다.
-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에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은 반대한다.



원회는 2012년 11월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하면서 의료현장의 실정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 후에 그 법제화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고<sup>256)</sup>, 2013년 7월에는 희생가능성이 없는 환자 또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sup>257)</sup>. 연명치료의 중단을 법제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허용요건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및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sup>258)</sup>

---

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관련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56) 보건복지부, 2012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 11월 6일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언론동향 자료 ([http://www.nibp.kr/xe/board2\\_3/1517](http://www.nibp.kr/xe/board2_3/1517) 2016.10.12. 최종검색).

○ 2호 안건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①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②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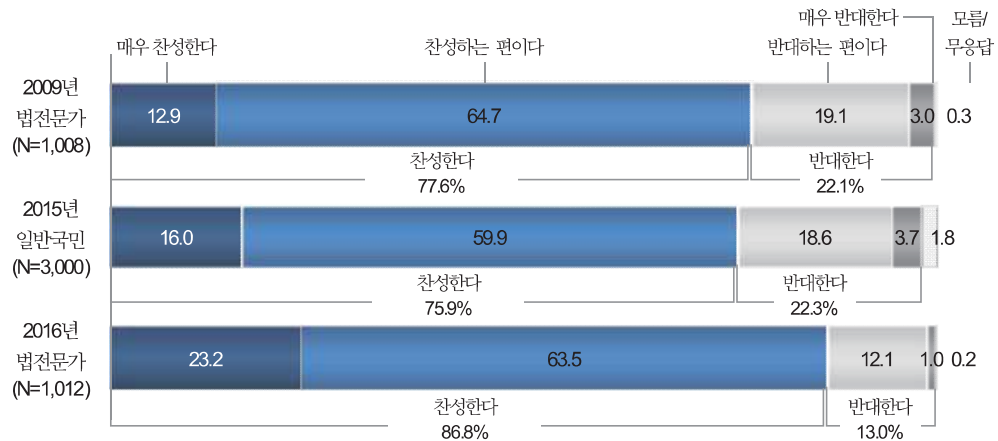
257) 보건복지부, 2016.05.21. 보도자료 “특별위원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 마련”, ([http://www.mohw.go.kr/m/noticeView.jsp?MENU\\_ID=0403&contseq=286612&page=176](http://www.mohw.go.kr/m/noticeView.jsp?MENU_ID=0403&contseq=286612&page=176) 2016.10.12. 최종검색)

258) 김성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6권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pp.138-139.

[그림 38]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찬반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의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3. 인공임신중절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하고, [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32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로 예정하고 있다.<sup>259)</sup> 동 입법예고 별표의 처벌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의 자격정지 1개월보다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비

259) 정부입법지원센터 - 통합입법예고 -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587호 (2016.9.23.) (<http://www.lawmaking.go.kr> 2016.10.20. 최종검색)

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이를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해 처벌까지 해서는 안된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이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sup>260)</sup> 한편, 여성단체 등에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낙태죄 등 현행법은 임신 여성들의 재생산권 즉, 임신 결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형법상 낙태죄는 의료인과 임신중절여성에게만 임신중절의 책임을 떠맡기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점'과 '사임에 일조한 남성을 제외하는 점'에서 낙태죄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권리는 박탈한 채 임신과 중절에 대한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sup>261)</sup>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개정안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12개월로 하되, 불법 낙태수술 사례만 따로 떼어 면허 정지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up>262)</sup>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여 낙태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고<sup>263)</sup>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

260) 현대건강신문 2016.10.17. 기사 "인공임신중절수술 처벌, 사회적 저항에 직면"  
(<http://hnews.kr/news/view.php?no=37800>)

261) news1뉴스 2016.10.15. 기사 "낙태죄 폐지 · 비도덕적 의료행위서 인공임신중절 삭제를" (<http://news1.kr/articles/?2802964>)

262) 서울신문 2016.10.18. 기사 "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낮추기로"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9011018>)

263)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sup>264)</sup>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제한하고 있다.<sup>265)</sup>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속에는 여성의 낙태(인공임신중절)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266)</sup>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264)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265) 오미영,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pp.205-239.

266) 국가기록원 헌법이야기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

[표 78]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sup>267)</sup>

입 장	국 가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호주,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 등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일본, 중화민국,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대한민국, 뉴질랜드, 폴란드, 콜롬비아 등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태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필리핀, 모나코,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
예외없이 불법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1990년에 시행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성 655명중 36%인 236명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낙태 이유로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계획 상의 출산 조절(51.7%), 건강상의 문제(16.9%), 경제형편의 곤란 등이 낙태의 이유로 나타나고, 미혼여성의 경우 임신에 따른 사회적 비난(62.1%) 내지 장래의 지장(31.1%)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sup>268)</sup> 이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낙태만이 「모자보건법」 제14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른 경우에는 모두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라 낙태죄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문제는 위의 해외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모자보건법」상 인공

26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D%83%9C%EB%B2%95>)

268)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法學論叢』 Vol.19 No.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pp.40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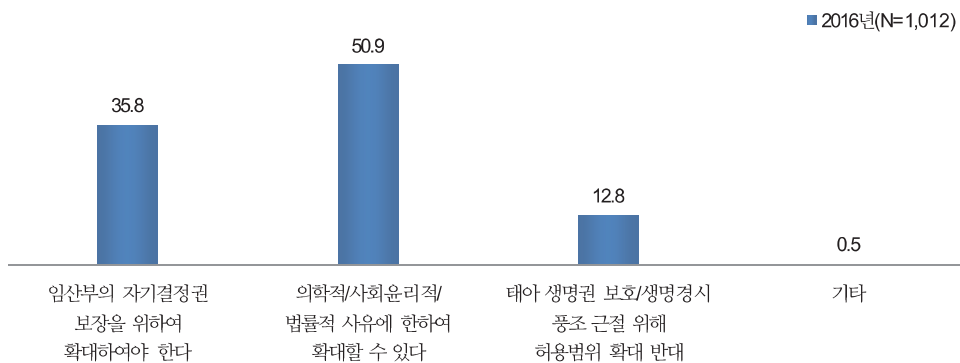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신부의 요청’을 허용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여성들의 낙태죄 성립 비율이 급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의 낙태죄 성립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50.9%로 최대 다수 의견을 차지하였다. 또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5.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태아생명권보호/생명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허용범위 확대 반대’ 의견은 12.8%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윤리적’ 사유나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86.7%의 응답자가 허용범위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법제의 개정 논의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39]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 의견

(단위 : %)

문)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7 절 기타 법제

### 1. 환경오염

#### (1) 종합 분석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sup>269)</sup> 즉,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헌재결 2008.7.31. 2006헌마711)<sup>270)</sup>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 낙동강 폐놀유출사고로부터 1995년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및 2015년 OCI 군산 공장의 실란(실레인) 누출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를 경험해 왔다.<sup>271)</sup> 이와 같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은 물론 자연

269) 박종원, 「환경법의 기본이해」, 녹색법률센터, 2014.12, 28면 ([http://www.google.co.kr/url?url=http://greenlaw.or.kr/wp-content/uploads/2014/12/1441074648\\_wOmSiK.pdf&rcet=j&frm=1&q=&esrc=s&sa=U&ved=0ahUKEwj585Dmu97QAhXDrJQKHewwAK4QFggTMAA&usg=AFQjCNGSe2R6L5QeYA28upl9B1fKF7sQTw](http://www.google.co.kr/url?url=http://greenlaw.or.kr/wp-content/uploads/2014/12/1441074648_wOmSiK.pdf&rcet=j&frm=1&q=&esrc=s&sa=U&ved=0ahUKEwj585Dmu97QAhXDrJQKHewwAK4QFggTMAA&usg=AFQjCNGSe2R6L5QeYA28upl9B1fKF7sQTw) 2016.10.31. 최종검색)

270) 박종원, 위의 자료(「환경법의 기본이해」), 29면.

271) 환경 TV 2016.06.15. 칼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기업-환경-국민’ 상생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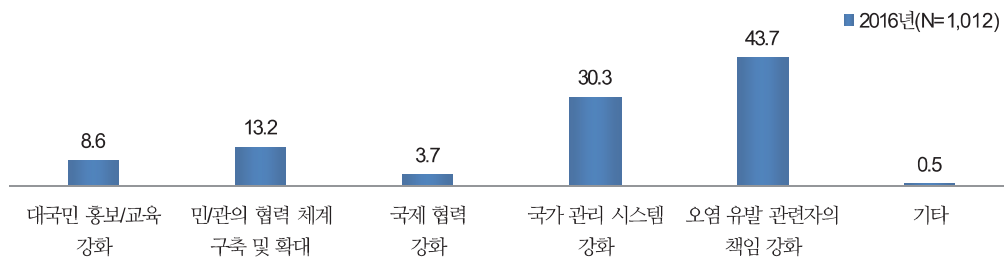
생태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치유한다 하더라도 오염되기 전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치유나 복원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오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272)</sup>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서는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가 43.7%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의 질문인 대형 재난에 대해 시급한 개선 방향에서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과 일정 정도 유사한 경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30.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13.2%) 등의 순이었다.

[그림 40] 환경오염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단위 : %)

문) 귀하는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2478> 2016.10.31. 최종검색)  
 272) 환경 TV 2016.06.15. 칼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기업 - 환경 - 국민’ 상생의 길”,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2478> 2016.10.31. 최종검색)



(2) 특성별 분석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는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37.2% ⇒ 19~29세 46.2%)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는 학계(36.1%) 및 사법(35.6%)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오염유발 관련자 책임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지만, 검사(50.0%), 연구원(40.6%), 법학과 교수(40.0%)의 경우엔 ‘국가관리 시스템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 79] 특성별 사형 집행 찬반 정도

구 분	사례수	대국민 홍보/ 교육 강화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	기타	계	
전 체	(1,012)	8.6	13.2	3.7	30.3	43.7	0.5	100.0	
연령 별	19~29세	(145)	7.6	17.2	4.1	24.1	46.2	0.7	100.0
	30대	(306)	10.1	11.8	5.6	28.1	44.1	0.3	100.0
	40대	(280)	6.1	11.4	3.2	33.9	45.0	0.4	100.0
	50대	(203)	9.4	13.3	1.5	33.5	41.9	0.5	100.0
	60세 이상	(78)	11.5	17.9	2.6	29.5	37.2	1.3	100.0
분야 별	입법	(151)	14.6	15.9	4.0	23.8	41.7	0.0	100.0
	행정	(212)	9.9	11.3	2.4	27.4	48.6	0.5	100.0
	사법	(90)	7.8	16.7	0.0	35.6	40.0	0.0	100.0
	학계	(208)	6.3	12.5	4.3	36.1	39.9	1.0	100.0
	민간	(231)	7.4	12.6	3.5	30.7	45.5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5.8	13.3	7.5	29.2	43.3	0.8	100.0
직 업 별	국회의원	(50)	8.0	18.0	10.0	20.0	4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2.0	14.0	2.0	24.0	48.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3.5	15.7	0.0	27.5	33.3	0.0	100.0

구 분	사례수	대국민 홍보/ 교육 강화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	기타	계
국가 공무원	(112)	9.8	12.5	4.5	20.5	51.8	0.9	100.0
지방 공무원	(100)	10.0	10.0	0.0	35.0	45.0	0.0	100.0
판사	(30)	3.3	23.3	0.0	36.7	36.7	0.0	100.0
검사	(30)	6.7	3.3	0.0	50.0	40.0	0.0	100.0
법원 공무원	(30)	13.3	23.3	0.0	20.0	43.3	0.0	100.0
로스쿨 교수	(69)	2.9	15.9	2.9	27.5	50.7	0.0	100.0
법학과 교수	(70)	8.6	10.0	7.1	40.0	32.9	1.4	100.0
연구원	(69)	7.2	11.6	2.9	40.6	36.2	1.4	100.0
변호사	(110)	6.4	11.8	2.7	29.1	49.1	0.9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8.3	13.2	4.1	32.2	42.1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8.3	11.7	3.3	23.3	51.7	1.7	100.0
박사과정생	(60)	3.3	15.0	11.7	35.0	35.0	0.0	100.0

## 2. 동성혼

### (1) 종합 분석

해외의 경우 2015년 6월 현재 총 17개 국가<sup>273)</sup>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고,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연합 인권 헌장’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캐나다(Human Rights Act 1977)와 호주(Anti-Discrimination Act 1977), 뉴질랜드(Human Rights Act 1993), 독일(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등의 나라에서는 헌법 및 기타 법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sup>274)</sup>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동성 커플에게도

273)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남아공,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등

274) 위키백과 - 동성애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C%9>)

시민결합에 준하는 동거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sup>275)</sup>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제도인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였고<sup>276)</sup>, 현재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sup>277)</sup>

우리 법의 태도를 보면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헌법」은 혼인에 관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제36조제1항)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되거나 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념적으로 혼인은 당연히 다른 성간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성혼은 차치하고 동성커플의 동거 관계에 관한 보호도 특별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sup>278)</sup>

---

5%A0#EB.B2.95.EA.B3.BC\_EC.A0.95.EC.B9.98 2016.10.31. 최종검색)

275) 위키백과 -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EC%9D%98\\_%EB%8F%99%EC%84%B1%EA%B2%B0%ED%98%BC](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EC%9D%98_%EB%8F%99%EC%84%B1%EA%B2%B0%ED%98%BC) 2016.10.31. 최종검색)

276)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로써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되는 제도.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시민동반자관계, 등록된 동반자관계, 가정동반자관계, 생활동반자관계, 중요관계, 상호수혜관계, 성인상호의존관계, 관습법적 혼인, 시민연대계약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함. 제도별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와 의무 또한 그 정도가 국가별로 다름.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F%BC%EA%B2%B0%ED%95%A9> 2016.10.31. 최종검색)

277) 위키백과 - 동성결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EB.8F.99.EC.84.B1.EA.B2.B0.ED.98.BC.EC.9D.98\\_EC.B2.98.EB.B2.8C\\_EB.B0.8F\\_EB.B0.98.EB.8C.80\\_EA.B5.AD.EA.B0.80](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EB.8F.99.EC.84.B1.EA.B2.B0.ED.98.BC.EC.9D.98_EC.B2.98.EB.B2.8C_EB.B0.8F_EB.B0.98.EB.8C.80_EA.B5.AD.EA.B0.80) 2016.10.31. 최종검색)

278)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pp.31-63.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일에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010년, 2013년에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무산되었다.<sup>279)</sup>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에는 인종, 나이, 학력 등과 함께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형의 수용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성적 지향’이 명시되어 있다.<sup>280)</sup> 이는 국가법령으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48.7%로 적지는 않았으나, 51.3%의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났다. 찬성 중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9%인데 비해,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17.8%로 나타났기 때문에, 찬성 의견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찬성이고,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반대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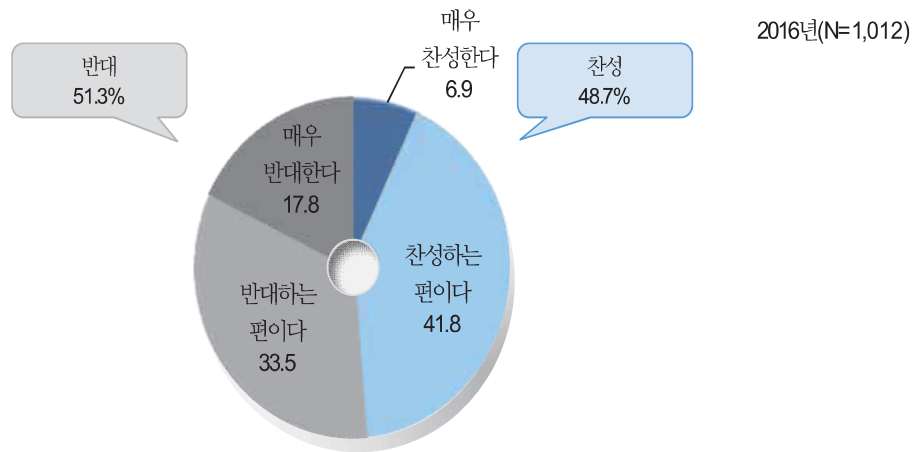
279)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O1T3D0E\\_202R0Q1V0Z\\_2Z4O1V5F5S5S8&ageFrom=20&ageTo=2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O1T3D0E_202R0Q1V0Z_2Z4O1V5F5S5S8&ageFrom=20&ageTo=20) 2016.10.31. 최종검색)

28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그림 41] 특성별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법률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2) 특성별 분석

### 1)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여부

성별로 볼 때는 여성(59.1%)이,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34.6% ⇒ 19~29세 65.5%)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비 법전문가의 찬성률이 7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직업 혹은 분야의 특성이 아니라 예비 법전문가들이 젊은층이라서 연령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계의 경우엔 찬성과 반대 비율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 외 나머지 분야들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국회의원(58.0%)과 국회공무원(56.0%), 연구원(59.4%), 로스쿨과정생(76.7%), 박사과정생(63.3%)의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로스쿨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은 직업 특성이라기보다는 연령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입법 관련자들(국회의원, 국회공무원 등)이나 입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엔 이념적 차원에서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80] 특성별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정도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계	
		① 매우 찬성 한다	② 찬성 하는 편이다	①+② 찬성 한다	③ 반대 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 한다	③+④ 반대 한다		
전 체	(1,012)	6.9	41.8	48.7	33.5	17.8	51.3	100.0	
성 별	남자	(726)	6.2	38.4	44.6	36.8	18.6	55.4	100.0
	여자	(286)	8.7	50.3	59.1	25.2	15.7	40.9	100.0
연 령 별	19~29세	(145)	15.9	49.7	65.5	24.1	10.3	34.5	100.0
	30대	(306)	8.2	46.4	54.6	29.7	15.7	45.4	100.0
	40대	(280)	5.7	41.8	47.5	32.5	20.0	52.5	100.0
	50대	(203)	2.5	32.5	35.0	44.8	20.2	65.0	100.0
	60세 이상	(78)	1.3	33.3	34.6	39.7	25.6	65.4	100.0
분 야 별	입법	(151)	6.6	41.7	48.3	30.5	21.2	51.7	100.0
	행정	(212)	4.2	34.0	38.2	39.6	22.2	61.8	100.0
	사법	(90)	3.3	42.2	45.6	43.3	11.1	54.4	100.0
	학계	(208)	7.7	42.3	50.0	31.7	18.3	50.0	100.0
	민간	(231)	6.9	40.7	47.6	34.2	18.2	52.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3.3	56.7	70.0	20.8	9.2	30.0	100.0
직 업 별	국회의원	(50)	8.0	50.0	58.0	22.0	20.0	42.0	100.0
	국회공무원	(50)	10.0	46.0	56.0	34.0	10.0	44.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0	29.4	31.4	35.3	33.3	68.6	100.0
	국가 공무원	(112)	7.1	33.0	40.2	34.8	25.0	59.8	100.0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찬성 한다	③	④	③+④ 반대 한다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지방 공무원	(100)	1.0	35.0	36.0	45.0	19.0	64.0	100.0
판사	(30)	0.0	50.0	50.0	50.0	0.0	50.0	100.0
검사	(30)	6.7	33.3	40.0	46.7	13.3	60.0	100.0
법원 공무원	(30)	3.3	43.3	46.7	33.3	20.0	53.3	100.0
로스쿨 교수	(69)	7.2	43.5	50.7	37.7	11.6	49.3	100.0
법학과 교수	(70)	1.4	38.6	40.0	37.1	22.9	60.0	100.0
연구원	(69)	14.5	44.9	59.4	20.3	20.3	40.6	100.0
변호사	(110)	10.9	39.1	50.0	32.7	17.3	50.0	100.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3.3	42.1	45.5	35.5	19.0	54.5	100.0
로스쿨과정생	(60)	18.3	58.3	76.7	15.0	8.3	23.3	100.0
박사과정생	(60)	8.3	55.0	63.3	26.7	10.0	3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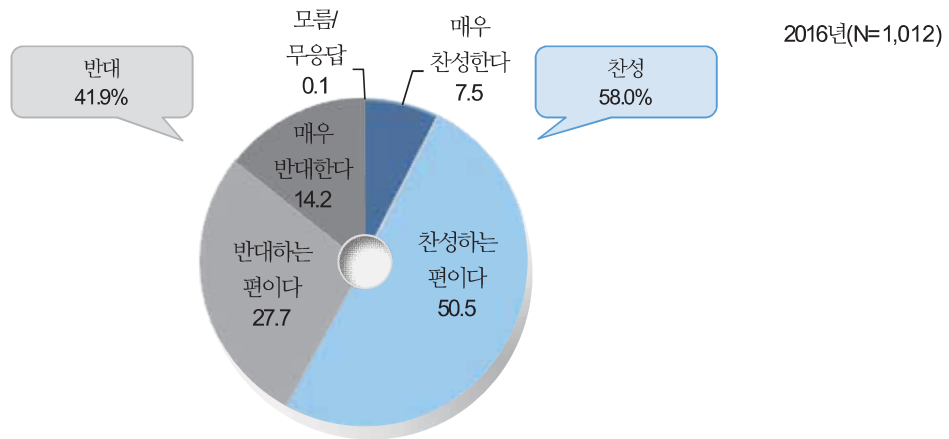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지만, 동성 커플에게 사실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58.0%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41.9%)보다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찬성 중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7.5%인데 비해,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14.2%로 나타났기 때문에, 찬성 의견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찬성이고,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반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의 경우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

[그림 42] 동성 커플에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 인정 찬반 정도

(단위 : %)

문) 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혼 유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2) 동성 커플에 대하여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 인정 찬반 여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는 비율은 여성(68.2%),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50.0% ⇒ 19~19세 68.3%)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행정 분야(찬성 49.5%, 반대 50.5%)와 사법 분야(찬성 50.0%, 반대 50.0%)의 경우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했고, 나머지 모든 분야(입법, 학계, 민간, 예비법전문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뚜렷한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지방의회 의원(62.7%), 지방 공무원(55.0%), 검사(60.0%) 세 개의 직업군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표 81] 특성별 동성 커플에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 인정 찬반 정도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전 체	(1,012)	7.5	50.5	58.0	27.7	14.2	41.9	0.1	100.0	
성 별	남자	(726)	6.3	47.7	54.0	31.3	14.6	45.9	0.1	100.0
	여자	(286)	10.5	57.7	68.2	18.5	13.3	31.8	0.0	100.0
연 령 별	19~29세	(145)	13.8	54.5	68.3	22.1	9.7	31.7	0.0	100.0
	30대	(306)	9.5	54.6	64.1	21.9	13.7	35.6	0.3	100.0
	40대	(280)	5.7	50.4	56.1	30.7	13.2	43.9	0.0	100.0
	50대	(203)	4.4	42.9	47.3	35.5	17.2	52.7	0.0	100.0
	60세 이상	(78)	2.6	47.4	50.0	29.5	20.5	50.0	0.0	100.0
분 야 별	입법	(151)	4.6	54.3	58.9	23.8	17.2	41.1	0.0	100.0
	행정	(212)	6.1	43.4	49.5	32.1	18.4	50.5	0.0	100.0
	사법	(90)	1.1	48.9	50.0	42.2	7.8	50.0	0.0	100.0
	학계	(208)	9.6	51.0	60.6	25.5	13.9	39.4	0.0	100.0
	민간	(231)	7.8	50.6	58.4	26.4	14.7	41.1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4.2	58.3	72.5	20.0	7.5	27.5	0.0	100.0
직 업 별	국회의원	(50)	6.0	64.0	70.0	12.0	18.0	3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8.0	62.0	70.0	24.0	6.0	3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7.3	37.3	35.3	27.5	62.7	0.0	100.0
	국가 공무원	(112)	8.9	44.6	53.6	25.0	21.4	46.4	0.0	100.0
	지방 공무원	(100)	3.0	42.0	45.0	40.0	15.0	55.0	0.0	100.0
	관사	(30)	0.0	53.3	53.3	46.7	0.0	46.7	0.0	100.0
	검사	(30)	3.3	36.7	40.0	53.3	6.7	60.0	0.0	100.0
	법원 공무원	(30)	0.0	56.7	56.7	26.7	16.7	43.3	0.0	100.0
	로스쿨 교수	(69)	10.1	53.6	63.8	29.0	7.2	36.2	0.0	100.0
	법학과 교수	(70)	1.4	51.4	52.9	28.6	18.6	47.1	0.0	100.0
	연구원	(69)	17.4	47.8	65.2	18.8	15.9	34.8	0.0	100.0
	변호사	(110)	12.7	47.3	60.0	26.4	13.6	40.0	0.0	100.0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3.3	53.7	57.0	26.4	15.7	42.1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58.3	78.3	15.0	6.7	21.7	0.0	100.0
박사과정생	(60)	8.3	58.3	66.7	25.0	8.3	33.3	0.0	100.0

### (3) 정성조사 결과

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와 동시에 ID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는 IDI 설문지 문7-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7-1. 동성혼 인정 요구 문제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이나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동 설문은 앞에서 살펴본 간통죄 폐지에 관한 설문이나 성매매종사자 처벌 합헌에 관한 설문이 성풍속에 대한 내용이라면,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차이가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선호와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이나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함. 순수하게 도덕적 영역임.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국가가 그 선택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법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음.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 개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동성혼은 가족 구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논의가 “동성혼 자체를 인정하는 문제”라고 하며 반대 의견도 있었다.

## 제 5 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 제 1 절 지표 개발의 의의와 과정

#### 1.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배경 및 의의

##### (1)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배경

기존에 수행된 일반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의 지표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응답결과 이외에 법에 대한 의식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법의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와 비교할 수 있으면서도 법전문가의 특성에 맞는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법의식 지표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수 산출을 통해 향후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를 법전문가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는 한편 일반국민의 법의식 지수와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의 의의

본 연구의 법의식 지표는 법전문가의 법의식 시각을 지수로 산출하는 것이며,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을 새롭게 개발하여 법전문가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전문가의 전체 법의식 지수 산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와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국민 법의식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3] 법의식지표 산출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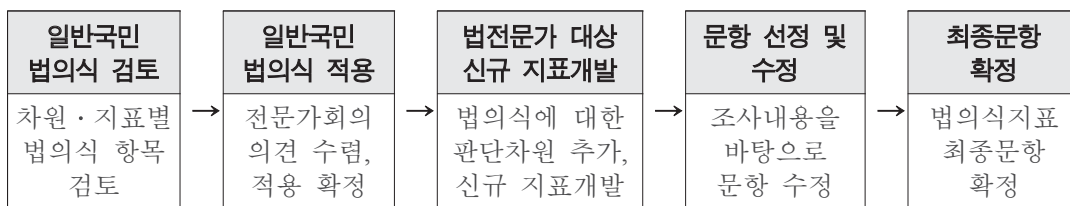


## 2.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개발 절차

본 연구의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해 우선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를 검토하여 적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를 기반으로 개발한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는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판단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신규 지표로 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82]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조사 ‘법의식지표’ 개발 과정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된 지수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다. 평가 차원은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등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와 신규 개발된 법의식에 대한 판단으로 총 7개 차원(35개 지표)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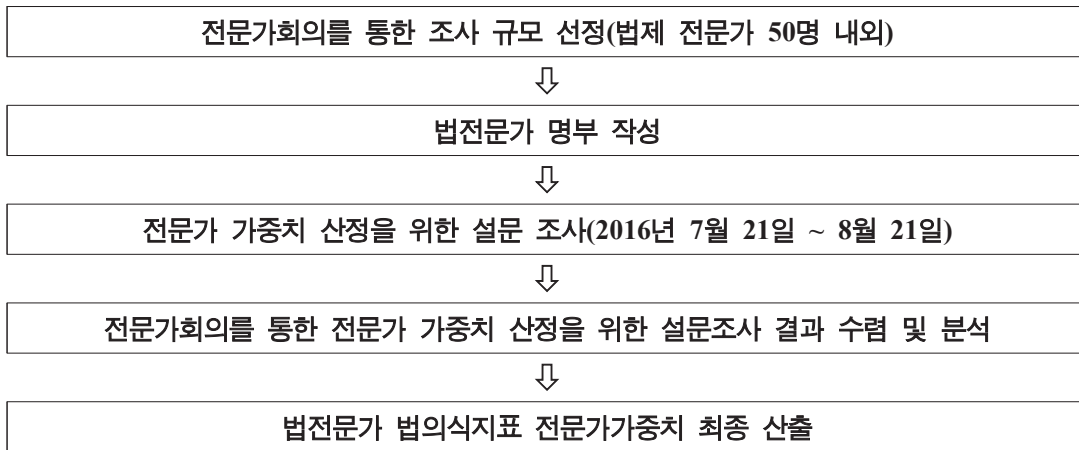
[표 83]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평가 체계

평가 차원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가 항목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정부의 법준수 정도	신체의 자유 보장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국민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이의 제기 및 청원 권리 보장
	분쟁발생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일반국민의 권리 보호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차별없이 적용	기업의 법준수 정도	참정권 보장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평가 차원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법의식에 대한 판단
평가 항목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국회의 공정한 입법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
	이웃 간 분쟁 감소		법원의 공정한 판결	법이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되는 정도
	범죄 감소		정부의 공정한 집행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법준수 정도
	공무원 부패 방지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발전에 기여한 자(기업)의 법적 책임 완화
	정부의 권한 통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

## 제 2 절 전문가 가중치 산정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는 별도의 가중치(중요도) 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차원, 지표별로 적용하여 지수화하여 산출한다. 본 연구의 법전문가 가중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수행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표 84] 전문가 가중치 조사 과정



전문가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 □ 문항구성 예시

(1) 개별 차원의 설문 항목별 중요도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속성별 가중치 작성

문1) “차원1. 법에 대한 관심”은 총 4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법전문가의 법의식 수준을 평가 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 항목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중요도(%)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     )%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     )%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     )%
합     계	100%

(2) 각 차원별 중요도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차원별 가중치 작성 유도  
 문8) 각 차원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귀하는 7개 차원들이 법전문가의 법의식 수준을 평가 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개 차원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중요도(%)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4개 세부항목)	( )%
차원2. 법에 대한 인식/정서 (6개 세부항목)	( )%
차원3. 법에 대한 준수 (5개 세부항목)	( )%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6개 세부항목)	( )%
차원5. 법의 실효성 보장 (5개 세부항목)	( )%
차원6.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4개 세부항목)	( )%
차원7. 법의식에 대한 판단 (5개 세부항목)	( )%
합 계	100%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가중치 설문 항목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1. 법전문가 법의식 중요도 산출 결과

법전문가 법의식지표 가중치 조사 대상은 정량조사 표본 설계 중 예비 법전문가를 제외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조사 결과, 표본 할당과 동일하게 완료하였다.

[표 85] 법전문가 법의식지표 가중치 조사 대상 및 완료율

구 분	이메일 확보 리스트 수	표본 할당 (A)	조사 완료 (B)	완료율 (B/A)(%)
합 계	1,679	50	50	100.0
입 법	331	10	10	100.0
사 법	41	5	5	100.0
행 정	39	5	5	100.0
학 계	1,136	15	15	100.0
민 간	132	15	15	100.0

차원별, 세부항목별 중요도(가중치)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6년 법전문가 특성에 맞는 지수 산출을 위해 2015년 일반국민 지표 항목에 신규 지표 및 차원(법의식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분석 시에는 2016년 새롭게 설계된 지표 항목의 가중치 적용을 통한 법의식 지수 산출뿐만 아니라, 2015년 일반국민과 비교를 위해 2015년의 동일 지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출하였다.

[표 86] 법전문가 법의식지표 중요도(가중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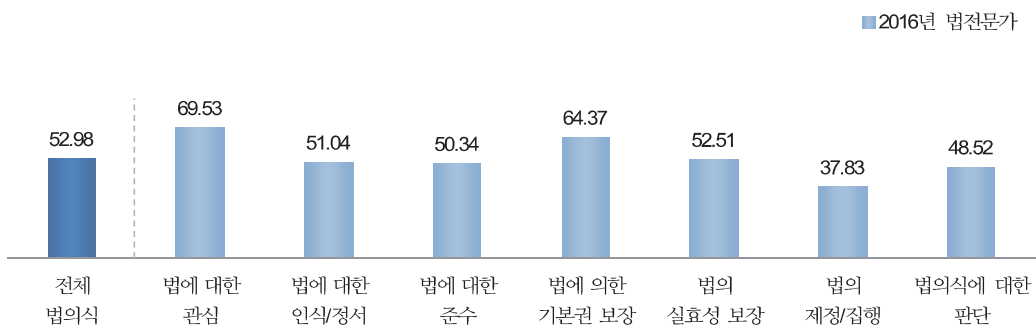
차 원	항 목	2015년 일반국민 중요도	2016년 법전문가 중요도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전 체	14.6%	10.9%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29.3%	29.4%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21.2%	26.7%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23.8%	24.2%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인지	25.7%	19.7%
[차원2] 법에 대한 인식/정서	전 체	15.6%	11.5%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14.1%	14.5%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17.3%	16.6%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16.9%	20.1%
	평등, 차별없이 작용	18.0%	18.9%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20.3%	18.1%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13.4%	11.8%
[차원3] 법에 대한 준수	전 체	19.0%	14.5%
	정부의 법준수 정도	18.7%	20.5%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15.7%	16.7%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25.6%	31.3%
	기업의 법준수 정도	16.6%	13.7%
	국민의 법준수 정도	23.4%	17.9%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전 체	17.3%	19.1%
	신체의 자유 보장	17.6%	19.6%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14.8%	15.4%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16.4%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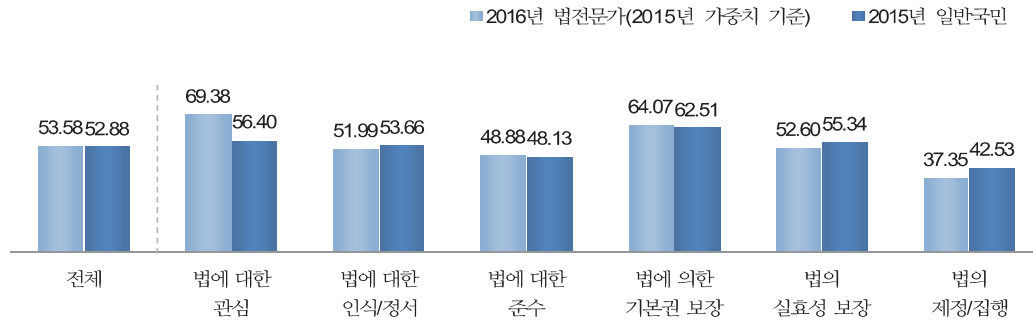
차 원	항 목	2015년 일반국민 중요도	2016년 법전문가 중요도
	참정권 보장	15.0%	16.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19.8%	16.7%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16.4%	16.0%
[차원5] 법의 실효성 보장	전 체	16.1%	14.7%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23.3%	22.0%
	이웃 간 분쟁 감소	16.8%	17.5%
	범죄 감소	22.4%	22.1%
	공무원 부패 방지	18.2%	16.9%
	정부 권한 통제	19.3%	21.5%
[차원6] 법의 제정/집행	전 체	17.4%	18.7%
	국회의 공정한 입법	23.1%	21.3%
	법원의 공정한 판결	27.7%	32.4%
	정부의 공정한 집행	22.4%	22.8%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26.8%	23.5%
[차원7]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 체	-	10.6%
	국민 법의식 수준	-	22.2%
	법의 시의성	-	23.3%
	자발적인 법 준수	-	23.4%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	13.2%
	비준법자 존경	-	17.9%

<분석 예시>

2016년 새롭게 설계한 지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예시이다.



2015년 일반국민과 비교를 위해 동일 지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결과를 제시한 예시이다.



포트폴리오 분석(Portfolio Analysis)은 포트폴리오 맵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의 성과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며, 사분면에 표시된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 맵의 가로축에는 중요도를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지각된 성과를 표시한다. 그리고, 중요도와 성과의 평균값을 각각 실선으로 나타내면 포트폴리오 맵의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게 되어 4개의 사분면이 형성된다.<sup>281)</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중요도와 법의식 지수(지각된 성과) 결과의 2개 속성을 축으로 하여 지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지표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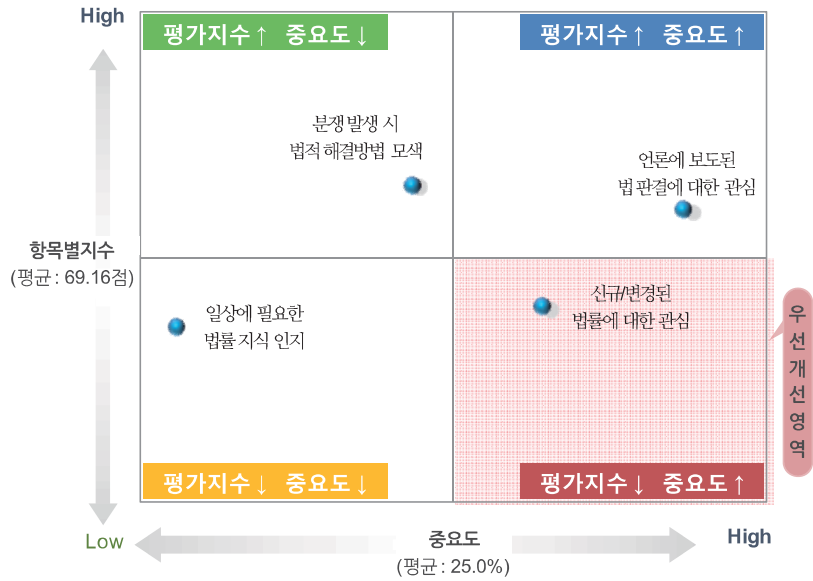
즉, 차원간 중요도와 법의식 지수, 동일 차원 내 지표간 법의식 지수를 평균 중요도와 평균 법의식 지수를 기준으로 법의식 지표 항목 중 우선적인 개선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연구에서도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연구와 동일 중요도를 적용하여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우선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이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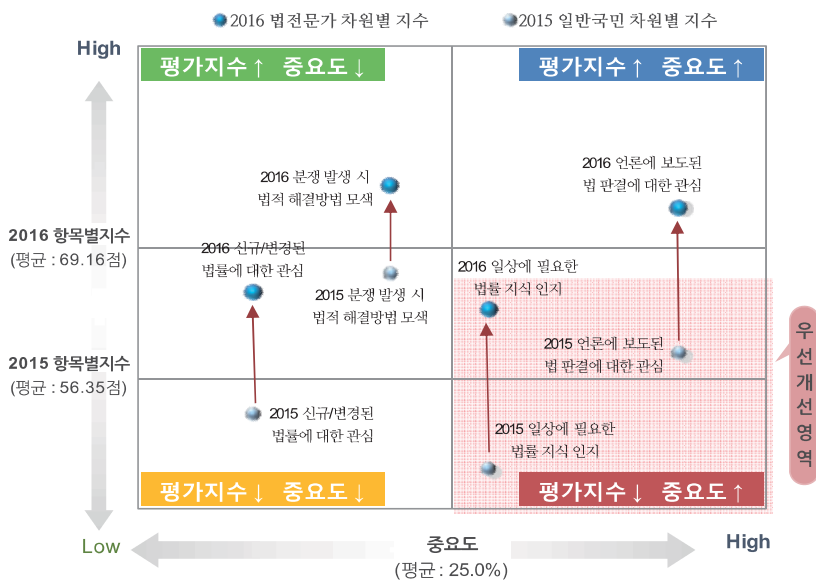
281) 이관수, 200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측정 -가중치 부여와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368면.

<분석 예시>

2016년 법전문가의 지표 항목별 평가 지수와 중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보다 평가지수가 낮고,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 위치한 지표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표이다.



또한, 2015년 일반국민의 중요도를 2016년 법전문가 지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2.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산출 방법

법의식 지수는 차원별 기여도, 평가체계구조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각 차원 내 지표는 해당 결과치를 0~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되며, 지표의 환산 후 지표 및 차원별 법의식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표 87]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산출식

- 차원 a의 법의식 지수 :  $S_a = \sum_{i=1}^j (S_{(a,i)} * w_{(a,i)})$

여기에서 Sa : 차원 a의 법의식 지수  
 S(a,i) : 차원 a내 지표 i의 지수  
 j : 차원 a내 지표 개수  
 w(a,i) : 가중치 = 차원 a내 지표 i의 가중치

- 전체 법의식 지수 :  $S = \sum_{a=1}^k (S_a * w_a)$

여기에서 S : 전체 법의식 지수  
 Sa : 차원 a의 법의식 지수  
 k : 차원 개수  
 wa : 가중치 = 차원 a의 가중치

## 제 3 절 전문가 지표 결과 분석

### 1. 전체 법의식 지표

#### (1)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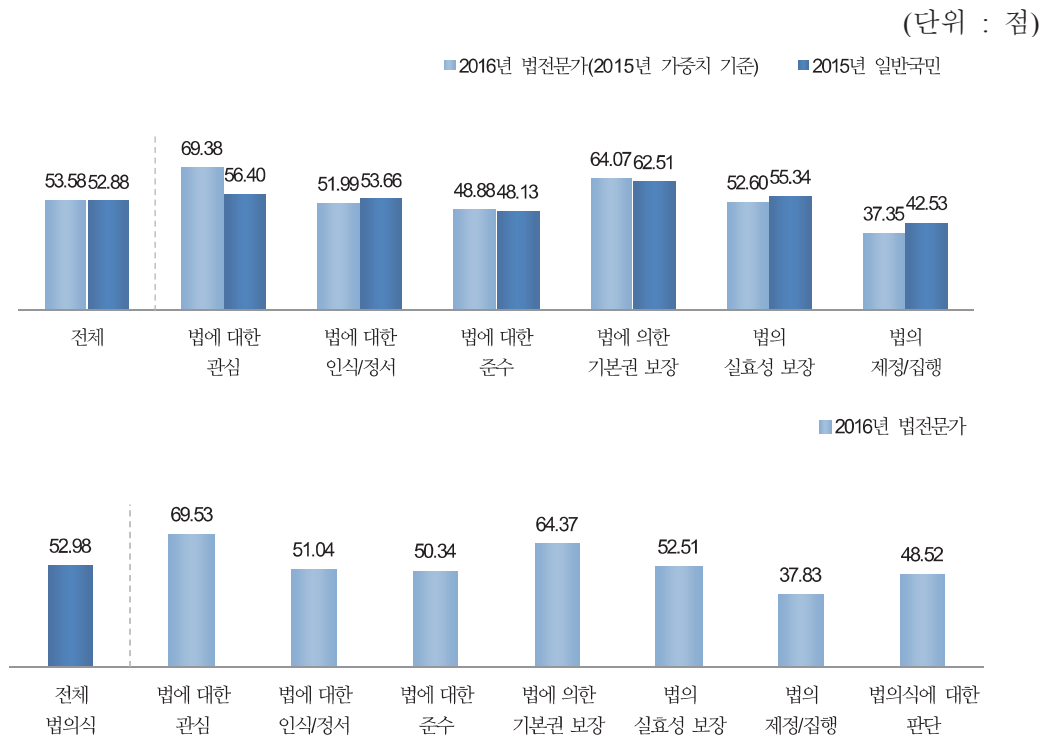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5년 수행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처음으로 국민법의식 지표를 개발한 이래, 2016년 수행된 본 연구

에서도 국민법 의식 지표와의 비교를 위하여 ‘법전문가 법 의식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법전문가 법 의식 지표 역시 2015년 국민법 의식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바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종합분석에서 2015년 개발된 국민법 의식 지표 결과와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결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 조사결과들도 일부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법전문가의 법 의식 지수는 52.98점이며, ‘법에 대한 관심’(69.53점)과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64.37점) 차원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일반국민의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법전문가(53.58점)와 일반국민(52.88점)의 법 의식 지수는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법전문가(69.38점)가 일반국민(56.40점)보다 높았다.

[그림 44] 법 의식 중요도



(2) 특성별 분석

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사법 분야(전체 법의식 62.44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법의식 지수가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88] 특성별 법의식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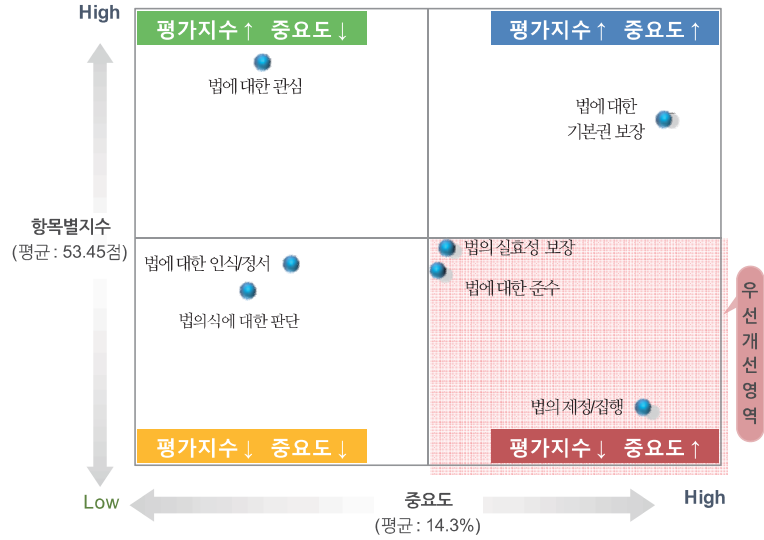
구 분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 체	52.98	69.53	51.04	50.34	64.37	52.51	37.83	48.52	
분야별	입법	50.90	66.36	50.39	47.29	61.18	50.42	37.09	47.03
	행정	54.52	65.69	50.25	54.15	67.65	56.07	38.84	50.02
	사법	62.44	75.86	61.21	61.82	70.78	62.29	53.05	52.62
	학계	52.92	75.39	51.58	48.50	64.30	51.33	35.82	49.16
	민간	50.86	69.29	48.79	47.21	63.15	49.96	34.89	46.38
	예비법전문가	49.96	65.85	49.03	48.06	60.26	48.45	34.72	47.66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차원별 법의식 중요도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지수가 낮은 ‘법의 제정/집행’, ‘법의 실효성 보장’,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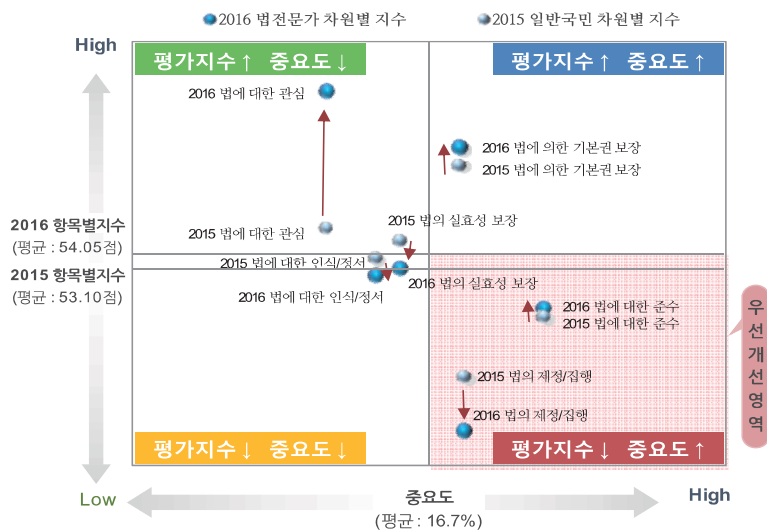
[그림 45] 전체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2) 포트폴리오 분석Ⅱ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차원 별로 보면 ‘법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69.38점)가 2015년 일반국민(56.40점)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46] 전체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 2. 법에 대한 관심

### (1)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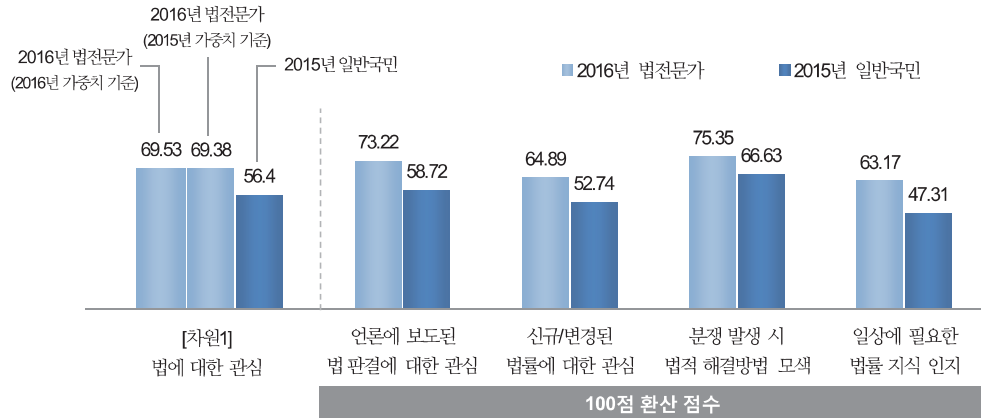
법에 대한 관심도는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을 알아볼 것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의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에 대한 관심’ 차원의 지수는 69.53점이며, 지표 항목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을 알아볼 것이다’가 75.35점(‘그렇다’ 81.7%, ‘보통이다’ 13.9%, ‘그렇지 않다’ 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가 73.22점(‘그렇다’ 77.5%, ‘보통이다’ 17.6%, ‘그렇지 않다’ 4.8%),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가 64.89점(‘그렇다’ 58.1%, ‘보통이다’ 31.4%, ‘그렇지 않다’ 10.4%),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가 63.17점(‘그렇다’ 53.0%, ‘보통이다’ 38.5%, ‘그렇지 않다’ 8.3%)의 순이었다.

2015년 일반국민(56.40점)과 가중치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6년 법전문가가 69.38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 항목들 모두 법전문가가 더 높았다. 이는 법 분야에 지식과 경험치의 차이로 인한 당연한 차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47] 법에 대한 관심



(2) 특성별 분석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에 대해 행정(58.96점, 응답 비율 : ‘그렇다’ 46.2%, ‘보통이다’ 38.2%, ‘그렇지 않다’ 15.6%)과 예비 법전문가(60.00점, 응답 비율 : ‘그렇다’ 48.3%, ‘보통이다’ 38.3%, ‘그렇지 않다’ 13.3%)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89] 특성별 법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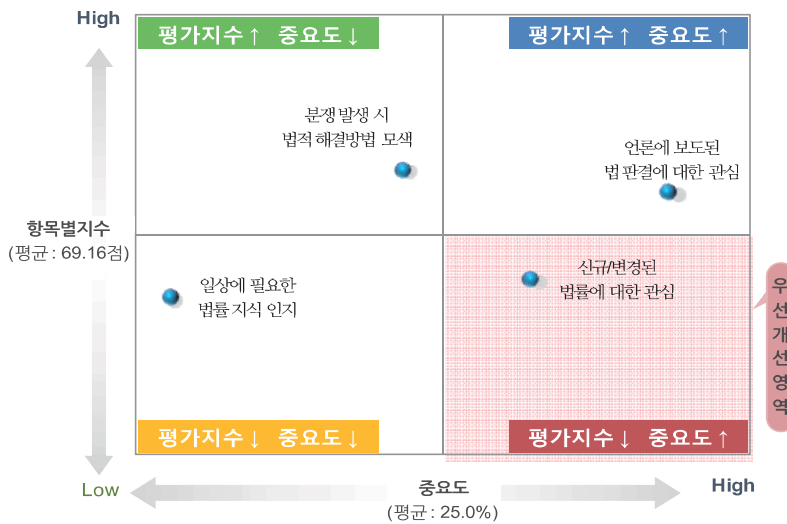
구분	차원1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인지	
전체	69.53	73.22	64.89	75.35	63.17	
분야별	입법	66.36	69.04	64.90	74.34	54.56
	행정	65.69	70.40	58.96	74.29	57.19
	사법	75.86	79.70	70.44	77.50	75.42
	학계	75.39	80.17	72.84	77.04	69.71
	민간	69.29	71.32	63.53	76.19	65.58
	예비법전문가	65.85	70.21	60.00	72.29	59.38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에 대한 관심 차원의 지표 항목별 중요도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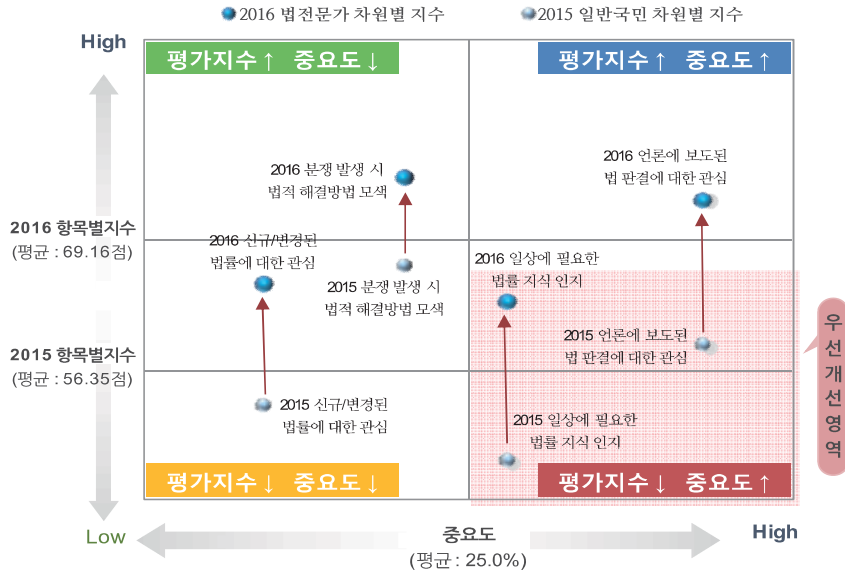
[그림 48] 법에 대한 관심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2) 포트폴리오 분석 II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에 대한 관심 차원의 지표 항목 모두 2015년 일반국민보다 법의식 지수가 높았다.

[그림 49] 법에 대한 관심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4) 세부항목별 분석

①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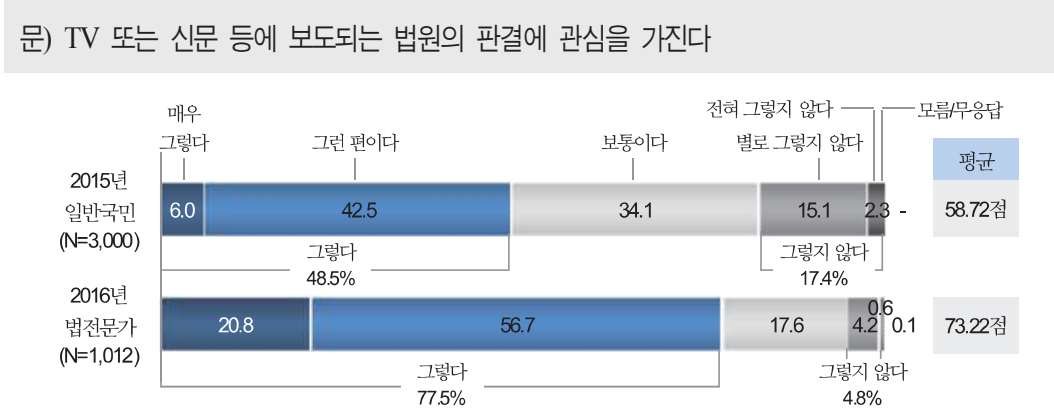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77.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48.5%)보다 29.0%p 더 높았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일반국민(17.4%)보다 낮았다.

100점 환산 점수로 비교해 보면 법전문가는 73.22점으로 2015년 일반국민(58.27점)보다 높아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은 법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0]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단위 : %)



특성별로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에서 6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법(90.0%)과 학계(89.4%)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90] 특성별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012)	0.6	4.2	4.8	17.6	56.7	20.8	77.5	0.1	100.0	73.22	
성별	수도권	(586)	0.3	4.3	4.6	17.2	56.8	21.2	78.0	0.2	100.0	73.59
	중부권	(197)	1.0	5.6	6.6	17.8	60.4	15.2	75.6	0.0	100.0	70.81
	전라권	(79)	0.0	3.8	3.8	20.3	50.6	25.3	75.9	0.0	100.0	74.37
	경상권	(127)	1.6	2.4	3.9	15.0	56.7	24.4	81.1	0.0	100.0	75.00
	제주권	(23)	0.0	4.3	4.3	30.4	43.5	21.7	65.2	0.0	100.0	70.65
분야별	입법	(151)	0.0	6.0	6.0	25.2	55.6	13.2	68.9	0.0	100.0	69.04
	행정	(212)	0.0	5.7	5.7	22.6	56.1	15.6	71.7	0.0	100.0	70.40
	사법	(90)	0.0	2.2	2.2	6.7	60.0	30.0	90.0	1.1	100.0	79.70
	학계	(208)	0.0	2.9	2.9	7.7	55.3	34.1	89.4	0.0	100.0	80.17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민간	(231)	1.7	3.9	5.6	21.6	52.8	19.9	72.7	0.0	100.0	71.32
예비법전문가	(120)	1.7	4.2	5.8	16.7	66.7	10.8	77.5	0.0	100.0	70.21

## ②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절반 이상(58.1%)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그렇지 않다’ : 10.4%).

2015년 ‘국민 법의식조사연구’에서는 일반국민에서는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34.0%(그런 편이다 28.0%+매우 그렇다 6.0%)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25.6%(전혀 그렇지 않다 3.5%+별로 그렇지 않다 22.1%)보다 8.4%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0.5%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34.0%로 법전문가의 관심도(58.1%)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2016년 법전문가는 64.89점, 2015년 일반국민 52.74점으로 법전문가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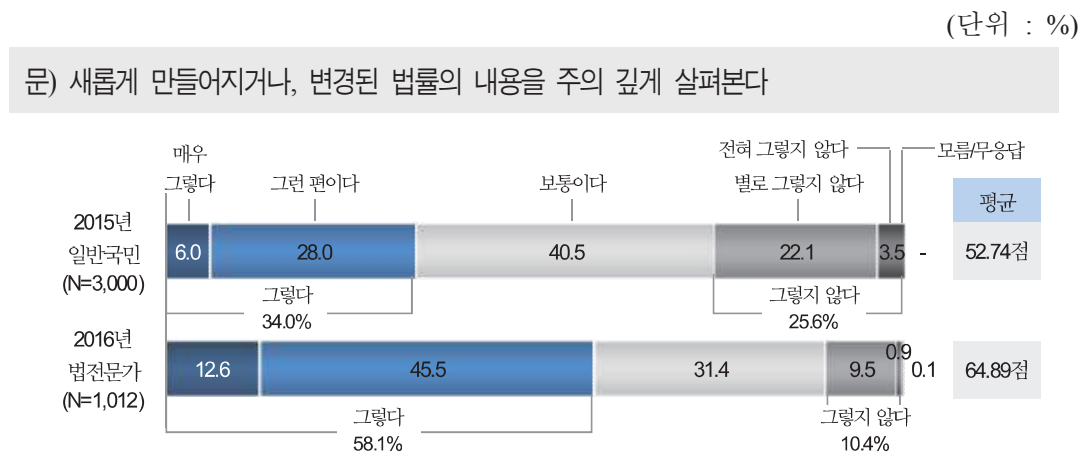
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법 전문가의 경우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은 64.89점으로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인지’ 63.17점으로 가중치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일반국민의 경우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이 52.74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47.31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법전문가의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지수 (73.22점)와 비교하여 볼 때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지수는 64.89 점으로 새로 제정되는 법이나 변경된 법에 대하여서는 법원 판결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알 수 있다.

향후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나 변경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은 행정 분야 종사자(58.9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학계 분야 종사자(72.84점)가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그림 51]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특성별로 보면, 남성(62.4%)이 여성(47.2%)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학계(73.1%)와 사법(66.7%)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 ‘국민 법의식조사연구’에서도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54.69점)가 여자(50.8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54.95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4.15점), 블루칼라(53.51점), 무직/기타(50.72점), 전업주부(50.46점), 학생(50.05점), 농/축/수산업(45.45점) 순으로 나타났다.<sup>282)</sup>

[표 91] 특성별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0.9	9.5	10.4	31.4	45.5	12.6	58.1	0.1	100.0	64.89	
성 별	남자	(586)	1.1	8.5	9.6	27.8	47.8	14.6	62.4	0.1	100.0	66.58
	여자	(197)	0.3	11.9	12.2	40.6	39.5	7.7	47.2	0.0	100.0	60.58
분 야 별	입법	(151)	0.7	9.3	9.9	31.8	46.4	11.9	58.3	0.0	100.0	64.90
	행정	(212)	0.5	15.1	15.6	38.2	40.6	5.7	46.2	0.0	100.0	58.96
	사법	(90)	0.0	3.3	3.3	28.9	48.9	17.8	66.7	1.1	100.0	70.44
	학계	(208)	1.9	2.9	4.8	22.1	48.1	25.0	73.1	0.0	100.0	72.84
	민간	(231)	0.9	11.3	12.1	30.7	47.2	10.0	57.1	0.0	100.0	63.53
	예비법전문가	(120)	0.8	12.5	13.3	38.3	42.5	5.8	48.3	0.0	100.0	60.00

### ③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81.7%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그렇지 않다’ : 4.2%).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항목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법의식 지표 설문 항목에서의 결과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분쟁 유형에 따른 대처방식과 법적 해결방법 모색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분쟁의 법적 해결 항목에 대한 지수가 66.63점이고 응답자 비율

282)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80-181.

이 63.4%였으며, 이는 불량제품 대처 행동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56.7%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분쟁 유형에 따른 법적 해결 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283)</sup> 이는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27번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24.3%, 28번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17.8%가 법적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응답 결과<sup>284)</sup>에 비추어 보아 각각의 분쟁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점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2015년 일반국민에서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63.4%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9.3%)에 비해 높았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7.3%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6년 법전문가에서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라는 비율(81.7%)이 일반국민(63.4%)보다 높아 법전문가가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2016년 법전문가는 75.35점, 2015년 일반국민 66.63점으로 법전문가가 높았다.

World Justice Project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Rule of Law Index』 Factor 7(Civil Justice)에서는 한국의 민사재판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2014년 0.52점과 2015년 0.63점, 2016년 0.70점,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하여서는 2014년 0.93점과 2015년 0.9점 2016년 0.92점으로서 법전문가의 법의식과는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으나, 2015년의 국민법의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sup>285)</sup> 다만,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가 69.90점으로 가장 높고, 학생

283)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82-183.

284)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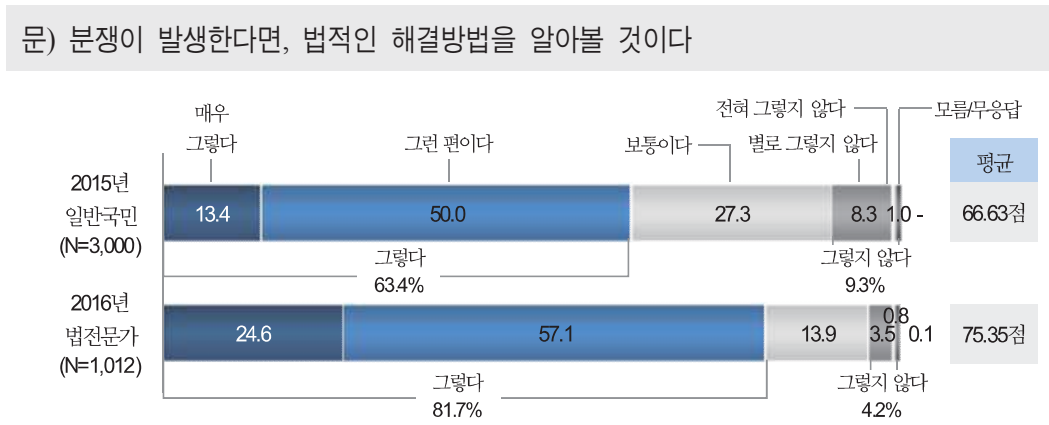
285)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p.26-2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p.30-3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32.



(67.47점), 블루칼라(67.01점), 자영업(66.37점), 무직/기타(63.92점), 전업주부(63.78점), 농/축/수산업(61.79점)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58.68점 → 대재 이상 69.11점), 소득이 많을수록(199만원 이하 60.91점 → 500만원 이상 69.78점)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sup>286)</sup>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법적 해결방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52]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단위 : %)



④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53.0%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8.3%의 응답 비율을 보인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법전문가는 ‘그렇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지만, 2015년 일반국민에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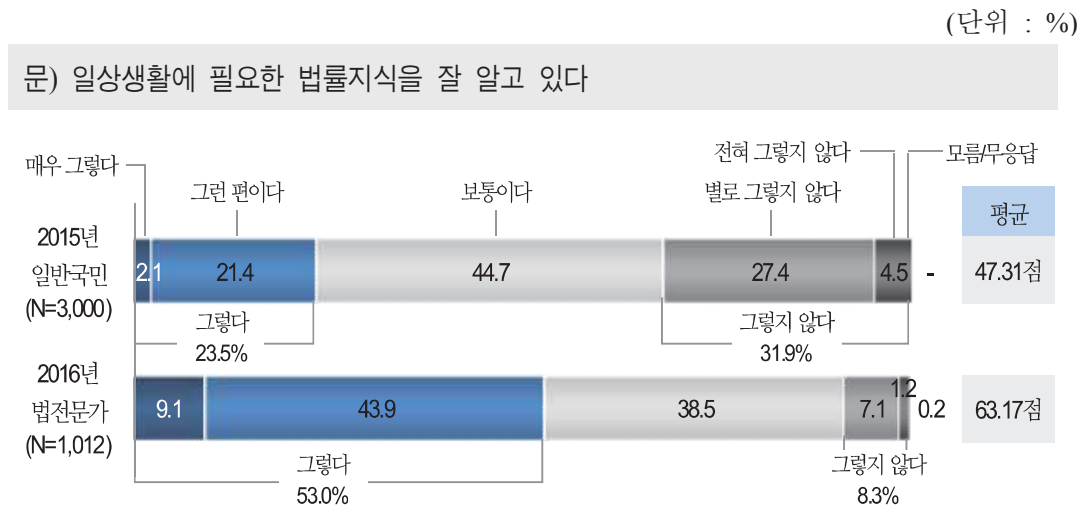
286)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83-184.

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31.9%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23.5%)보다 높았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4.7%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6년 법전문가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53.0%)은 2015년 일반국민(23.5%)보다 29.5%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법을 다루고 있는 법전문가의 특성상 일반국민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2016년 법전문가는 63.17점, 2015년 일반국민 47.31점으로 법전문가가 높았다.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23.5%로, 2008년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안다는 응답 20.5%와 비교하였을 때 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법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3]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성별로는 남성(58.1%)이 여성(39.9%)보다, 분야별로는 사법(85.6%)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예비법전문가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45.0%에 그쳐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표 92] 특성별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1.2	7.1	8.3	38.5	43.9	9.1	53.0	0.2	100.0	63.17	
성 별	남자	(586)	1.1	5.1	6.2	35.4	47.2	10.9	58.1	0.3	100.0	65.46
	여자	(197)	1.4	12.2	13.6	46.5	35.3	4.5	39.9	0.0	100.0	57.34
분 야 별	입법	(151)	2.0	7.3	9.3	62.9	25.2	2.0	27.2	0.7	100.0	54.56
	행정	(212)	1.9	10.4	12.3	49.1	34.4	4.2	38.7	0.0	100.0	57.19
	사법	(90)	0.0	2.2	2.2	11.1	67.8	17.8	85.6	1.1	100.0	75.42
	학계	(208)	1.9	3.4	5.3	25.0	53.4	16.3	69.7	0.0	100.0	69.71
	민간	(231)	0.4	7.8	8.2	32.5	47.6	11.7	59.3	0.0	100.0	65.58
	예비법전문가	(120)	0.0	10.0	10.0	45.0	42.5	2.5	45.0	0.0	100.0	59.38

### 3. 법에 대한 인식/정서

#### (1) 종합 분석

법에 대한 인식/정서 지표는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 있다’,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의 여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의 법의식 지수는 51.04점으로 이는 응답자의 법준수 의지와 신고 의식 점수가 높아서 나온 결과이지 전체 점수가 높아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지표 항목별로 보면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가 74.93점(‘그렇다’ 78.4%, ‘보통이다’ 17.9%, ‘그렇지 않다’ 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가 70.45점(‘그렇다’ 71.7%, ‘보통이다’ 24.3%, ‘그렇지 않다’ 3.9%)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가 50.20점(‘그렇다’ 26.7%, ‘보통이다’ 47.9%, ‘그렇지 않다’ 25.2%),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가 42.09점(‘그렇다’ 15.7%, ‘보통이다’ 41.0%, ‘그렇지 않다’ 43.2%),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가 40.08점(‘그렇다’ 18.1%, ‘보통이다’ 32.8%, ‘그렇지 않다’ 49.0%),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 있다’가 33.09점(‘그렇다’ 7.2%, ‘보통이다’ 28.6%, ‘그렇지 않다’ 64.1%)의 순이었다. 응답주체의 준법의식이거나 신고의식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법의 민주성이나 형평성 등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특히 법은 어렵고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에게 ‘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사회질서(28.44%)’, ‘권위적(19.4%)’ 순이었으며, ‘공평함(18.8%)’과 ‘민주적(18.5%)’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적지는 않았으나, 권위적이고(19.4%), 불공평(13.9%)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3.3%를 차지하여 법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287)</sup>

## (2) 특성별 분석

‘국민의사를 반영한 법제정’(54.08점, 응답비율 : ‘그렇다’ 34.4%, ‘보통이다’ 46.7%, ‘그렇지 않다’ 17.8%), ‘일반국민의 권리보호’(62.22점, 응답비율 : ‘그렇다’ 53.3%, ‘보통이다’ 40.0%, ‘그렇지 않다’ 5.6%), ‘평등, 차별없이 작용’(59.33점, 응답 비율 : ‘그렇다’ 50.0%, ‘보통이다’ 33.3%, ‘그렇지 않다’ 15.6%)의 지표 항목에서 사법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법의식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연령별 차이(50대 이상과 50대 미만 연령층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50대 이상 연령층이 50대 미만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견을 가졌던 것이다. 특히 법의 민주성이나 형평성에 관한 네 개 문항(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일반국민의 권리보호, 평등, 차별없이 작용)에 있어서 그러하다. 하지만 연령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다. ‘일반국민의 권리보호’를 제외한 세 개 문항(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평등, 차별없이 작용)은 젊은층이든 나이든 층이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일반국민의 권리보호’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평균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평가를, 50대 미만이 평균보다 약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87)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pp.65-66.

[표 93] 특성별 법에 대한 인식/정서

구 분	차원2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일반 국민의 권리보호	평등, 차별없이 작용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	
전 체		51.04	33.09	42.09	50.20	40.08	70.45	74.93
연 령 별	19~29세	50.65	30.34	41.90	48.45	42.59	68.79	76.72
	30대	49.94	31.94	40.03	49.02	38.40	70.10	75.16
	40대	49.74	31.88	40.98	49.82	37.95	68.93	73.30
	50대	54.38	37.44	46.80	53.20	42.98	73.77	76.35
	60세 이상	52.09	35.68	42.21	51.61	42.18	71.74	72.76
분 야 별	입법	50.39	32.45	43.21	48.18	38.41	68.54	77.65
	행정	50.25	32.90	42.33	49.29	37.50	70.52	73.70
	사법	61.21	40.37	54.08	62.22	59.33	75.23	76.67
	학계	51.58	34.50	41.59	51.68	39.90	71.63	74.40
	민간	48.79	30.95	38.74	47.40	36.58	70.35	73.70
	예비법전문가	49.03	30.42	38.54	48.13	39.38	67.29	7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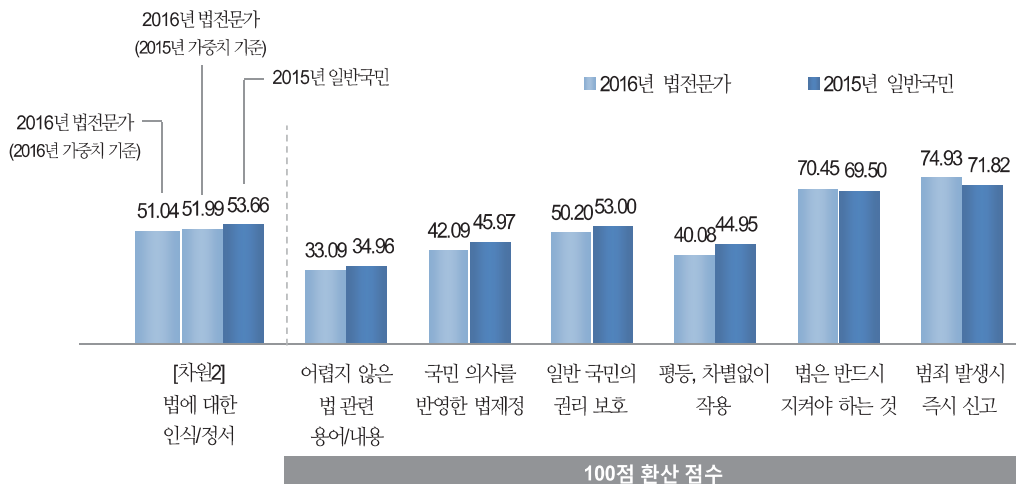
(3) 정성조사 결과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법관그룹, 학자그룹, 변호사그룹을 대상으로 FGI방식을 통하여 진행된 정성조사에서 FGI 설문지 문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문10. 법전문가들은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정량조사 문37),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정량조사 문38), ‘대한민국 법이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 정도’(정량조사 문39)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법의 작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는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법전문가들이 법의 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배경은 i) 법전문가들은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 법이 이상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ii) 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임시방편적인 특별법 위주의 법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전문가조차도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일반국민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응답이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였을 때 “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림 54] 법에 대한 인식/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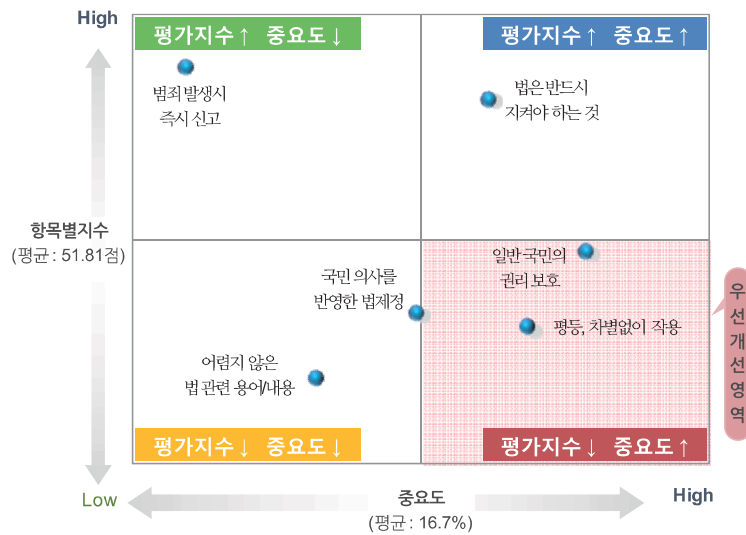


(4)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에서는 ‘일반국민의 권리보호’, ‘평등, 차별없이 작용’의 지표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법에 대한 인식/정서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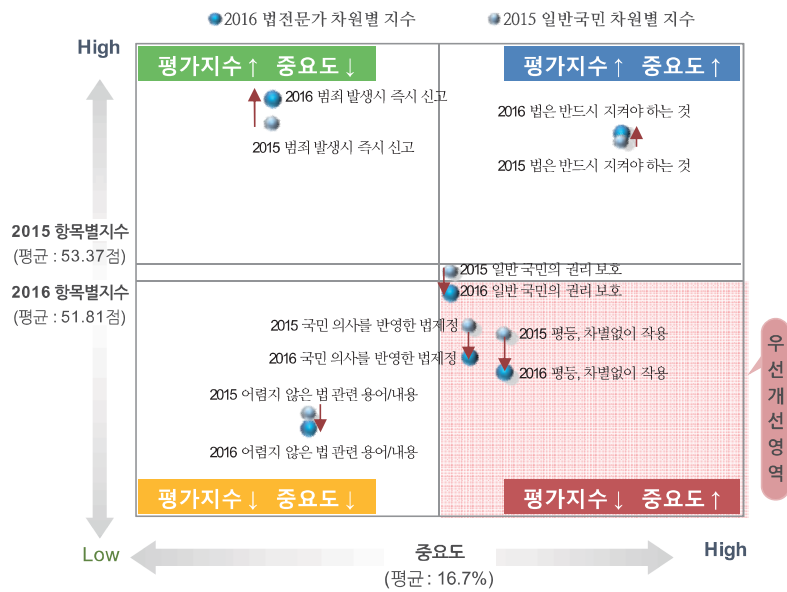
2) 포트폴리오 분석 II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는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2016년 법전문가 74.93점, 2015년 일반국민 71.82점),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2016년 법전문가 70.45점, 2015년 일반국민 69.50점)의 지표 항목을 제외하고 이외 항목에서는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수가 2015년 일반국민보다 낮았다. 특히 ‘평등, 차별없이 작용’(2016년 법전문가 40.08점, 2015년 일반국민 44.95점), ‘국민의사를 반영한 법제정’(2016년 법전문가 42.09점, 2015년 일반국민 45.97점)의 지표 항목은 우선 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일반국민의 법의식 지수와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56] 법에 대한 인식/정서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5) 세부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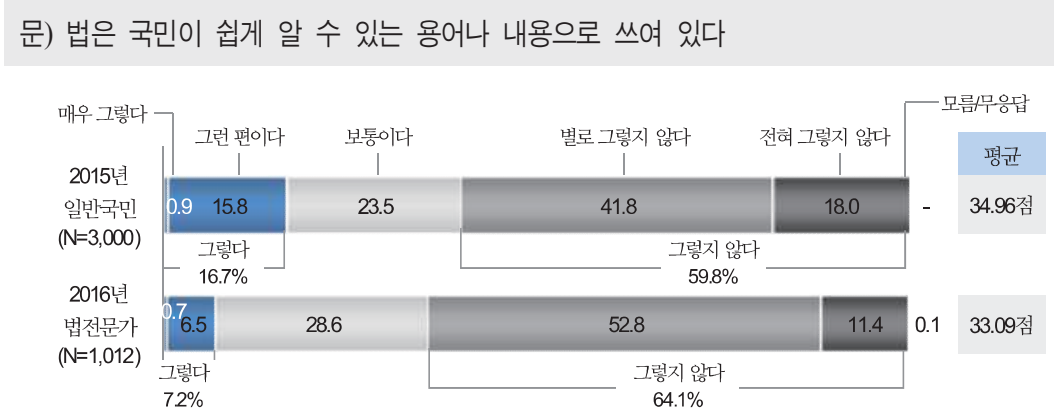
①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법전문가의 비율은 64.1%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7.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법전문가(64.1%)가 일반국민(59.8%)보다 다소 높았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도 법전문가(33.09점)가 일반국민(34.96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7] 어렵지 않는 법 관련 용어/내용

(단위 : %)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여성(71.0%)이 남성(61.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다’는 비율은 남성(30.2%)이 여성(24.5%)보다 높았다.

분야별로는 사법(44.4%) 분야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다른 분야와 큰 차이 없었다(10% 미만).

[표 94] 특성별 어렵지 않는 법 관련 용어/내용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012)	11.4	52.8	64.1	28.6	6.5	0.7	7.2	0.1	100.0	33.09	
성별	남자	(586)	10.2	51.2	61.4	30.2	7.9	0.4	8.3	0.1	100.0	34.24
	여자	(197)	14.3	56.6	71.0	24.5	3.1	1.4	4.5	0.0	100.0	30.16
분야별	입법	(151)	13.2	57.0	70.2	20.5	5.3	4.0	9.3	0.0	100.0	32.45
	행정	(212)	11.3	51.9	63.2	30.7	6.1	0.0	6.1	0.0	100.0	32.90
	사법	(90)	1.1	43.3	44.4	46.7	7.8	0.0	7.8	1.1	100.0	40.37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계	(208)	9.1	51.4	60.6	31.7	7.7	0.0	7.7	0.0	100.0	34.50
민간	(231)	12.6	57.1	69.7	24.2	6.1	0.0	6.1	0.0	100.0	30.95
예비법전문가	(120)	18.3	50.0	68.3	24.2	6.7	0.8	7.5	0.0	100.0	30.42

②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지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43.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그렇다’ 비율 : 15.7%). 한편, ‘보통이다’를 응답한 법전문가는 41.0%이었다.

2015년 일반국민에서도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36.5%)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27.2%)보다 높았지만, 법전문가의 ‘그렇다’는 비율(15.7%)은 일반국민(27.2%)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2016년 법전문가(42.09점)가 2015년 일반국민(45.97점)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2012년 우리나라 현행법의 제정절차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절차의 적법성/사회적 논의의 충분성/국회심의의 충분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88)</sup>

*절차의 적법성/사회적 논의의 충분성/국회심의의 충분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문항 모두에서 70%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20%대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절차의 적법성’(2.92)과 ‘사회적 논의의 충분*

2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20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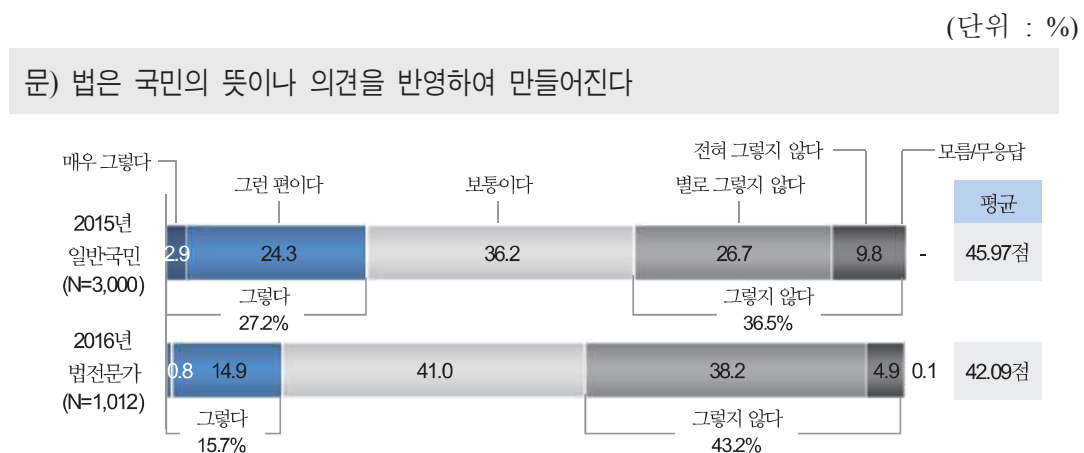
제 5 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성'(2.91)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국회심의를 충분성'(2.8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0.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공청회, 입법예고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에 대해서는 75.0%,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에 대해서는 7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문항에 대하여 24.0%, 25.0%, 27.3%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한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공청회, 입법예고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에 대하여서도 75.0%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이번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나 2015년의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부분 나온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법제정인가? 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설문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8]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특성별로 보면, 사법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34.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사법 분야에서 ‘보통이다’는 비율(46.7%)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95]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012)	4.9	38.2	43.2	41.0	14.9	0.8	15.7	0.1	100.0	42.09	
분야별	입법	(151)	2.6	41.1	43.7	39.7	13.9	2.6	16.6	0.0	100.0	43.21
	행정	(212)	5.7	34.9	40.6	44.3	14.6	0.5	15.1	0.0	100.0	42.33
	사법	(90)	0.0	17.8	17.8	46.7	34.4	0.0	34.4	1.1	100.0	54.08
	학계	(208)	4.3	39.4	43.8	42.3	13.5	0.5	13.9	0.0	100.0	41.59
	민간	(231)	6.1	44.2	50.2	38.5	11.3	0.0	11.3	0.0	100.0	38.74
	예비법전문가	(120)	9.2	42.5	51.7	35.0	11.7	1.7	13.3	0.0	100.0	3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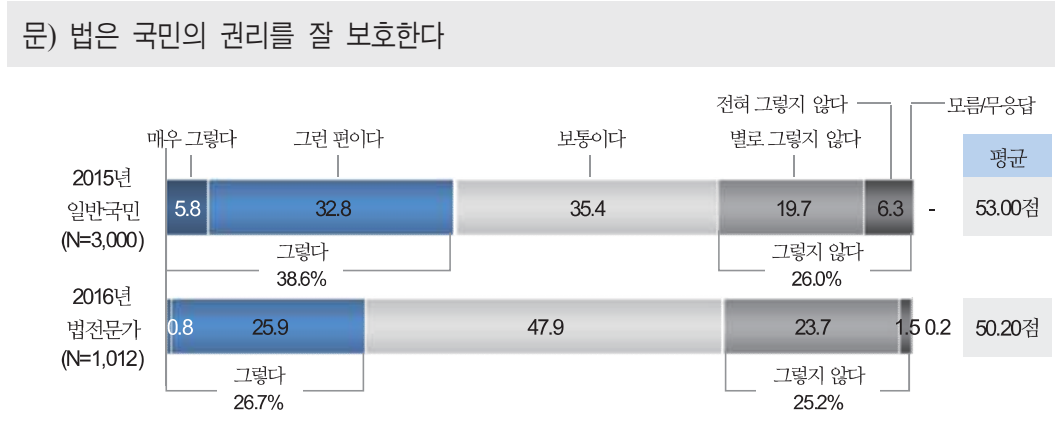
### ③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26.7%, 25.2%로 비슷하였다. 한편, ‘보통이다’는 비율은 47.9%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6년 법전문가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26.7%)이 일반국민(38.6%)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도 법전문가(50.20점)가 일반국민(53.00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9]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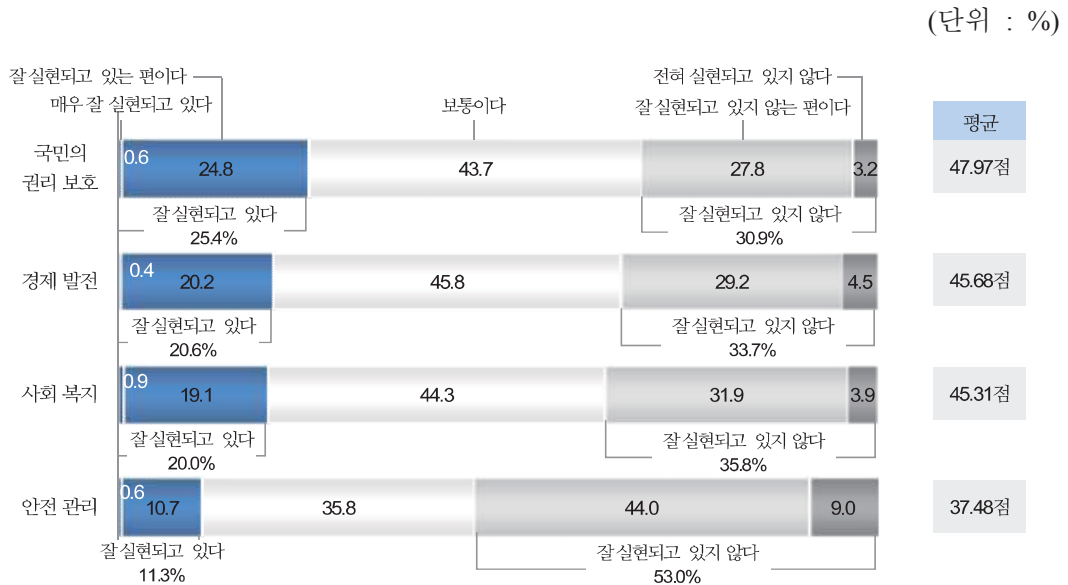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하여 53.0점이 나왔으며,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차원별 지수는 62.51점으로 높게 나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 바 있으며,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도 각각 50.20점, 64.07점으로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는 일반설문 항목과 지표 설문에서의 결과를 대조하기 위하여 일반설문인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한 세부설문 항목(5점 척도)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 바 있다. 그 결과 ‘잘 실현되고 있다’(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와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는 비율이 각각 25.4%, 30.9%, 보통이다가 43.7%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점수로는 가중치 없이 47.97점으로 집계된 바 있어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실현 정도’를 묻는 일반설문에서의 국민의 권리보호는 ‘법에 대한 인식/정서’를 묻는 지표설문에서의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는 설문보다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법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법의 제정·적용·집행·해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 수행 과정 속에서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를 늘 고민하고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 측면에서의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판단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일견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0] 법치주의 실현 정도



이러한 결과는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193면에서 언급하였던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외에 일반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소비자나 투자자로서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세분화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인식과 각 사안별 법제 개선방안

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사회복지, 안전관리, 생명권과 관련된 다양한 일반설문 항목을 개발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설문한 바 있다. 향후에도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각 사안별 법제 개선방안 도출 노력과 함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지속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한편, 특성별로는 사법 분야의 절반 이상(53.3%)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법이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6] 특성별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전 체	(1,012)	1.5	23.7	25.2	47.9	25.9	0.8	26.7	0.2	100.0	50.20	
분야별	입법	(151)	0.7	31.1	31.8	45.7	19.9	2.6	22.5	0.0	100.0	48.18
	행정	(212)	1.4	22.6	24.1	53.3	22.6	0.0	22.6	0.0	100.0	49.29
	사법	(90)	0.0	5.6	5.6	40.0	52.2	1.1	53.3	1.1	100.0	62.22
	학계	(208)	1.0	22.6	23.6	46.2	29.3	1.0	30.3	0.0	100.0	51.68
	민간	(231)	3.0	26.4	29.4	48.9	21.2	0.4	21.6	0.0	100.0	47.40
	예비법전문가	(120)	1.7	26.7	28.3	48.3	22.5	0.0	22.5	0.8	100.0	48.13

④ 평등, 차별 없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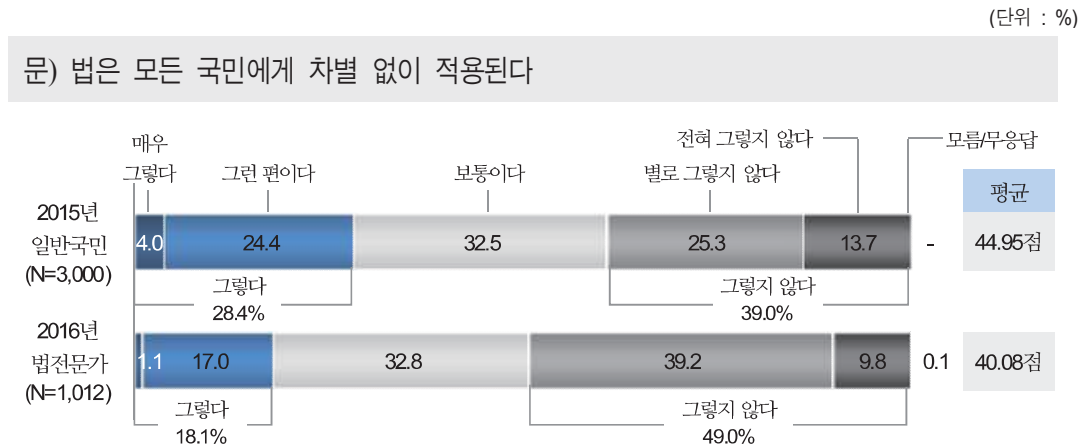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절반 정도(49.0%)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법전문가(49.0%)가 일반국민(39.0%)보다 10.0%p 더 높았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도 법전문가(40.08점)가 일반국민(44.95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된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서는 ‘4.1 평등, 차별없는 적용’과 관련한 한국의 지수를 2014년 0.7점, 2015년 0.65점, 2016년 0.70점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7.2 민사 재판에서의 차별없는 적용’과 관련한 지수는 2014년 0.68점, 2015년 0.71점, 2016년 0.76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8.4 형사재판에서의 차별없는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 0.68점, 2015년 0.64점, 2016년 0.63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의 평균 종합 지수는 2014년 0.77점, 2015년 0.7점, 2016년 0.73점으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289)</sup>

[그림 61] 평등, 차별 없이 적용



289)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119.

사법 분야(15.6%)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의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사법 분야는 절반 정도(50.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97] 특성별 평등, 차별 없이 작용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9.8	39.2	49.0	32.8	17.0	1.1	18.1	0.1	100.0	40.08	
분야 별	입법	(151)	9.3	46.4	55.6	29.1	11.9	3.3	15.2	0.0	100.0	38.41
	행정	(212)	10.8	42.5	53.3	32.5	14.2	0.0	14.2	0.0	100.0	37.50
	사법	(90)	0.0	15.6	15.6	33.3	46.7	3.3	50.0	1.1	100.0	59.33
	학계	(208)	10.6	37.0	47.6	35.6	15.9	1.0	16.8	0.0	100.0	39.90
	민간	(231)	12.6	41.6	54.1	33.3	12.1	0.4	12.6	0.0	100.0	36.58
	예비법전문가	(120)	9.2	41.7	50.8	31.7	17.5	0.0	17.5	0.0	100.0	3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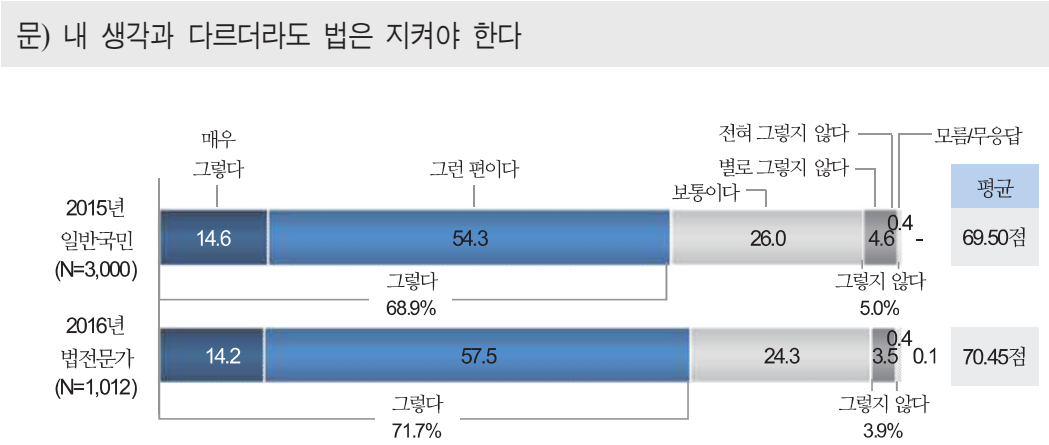
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법전문가의 응답 비율은 71.7%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법전문가(71.7%)와 일반국민(68.9%)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62]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단위 : %)



분야별로 보면, 사법(80.0%) 분야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법 분야 중 판사(93.3%)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표 98] 특성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③	④ 그런 편이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0.4	3.5	3.9	24.3	57.5	14.2	71.7	0.1	100.0	70.45	
분야별	입법	(151)	0.7	5.3	6.0	25.2	57.0	11.9	68.9	0.0	100.0	68.54
	행정	(212)	0.5	3.3	3.8	22.6	60.8	12.7	73.6	0.0	100.0	70.52
	사법	(90)	0.0	1.1	1.1	17.8	58.9	21.1	80.0	1.1	100.0	75.23
	학계	(208)	0.5	3.8	4.3	20.7	58.7	16.3	75.0	0.0	100.0	71.63
	민간	(231)	0.4	3.5	3.9	25.1	56.3	14.7	71.0	0.0	100.0	70.35
	예비법전문가	(120)	0.0	2.5	2.5	35.8	51.7	10.0	61.7	0.0	100.0	67.29

제 5 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직 업 별	국회의원	(50)	2.0	8.0	10.0	28.0	48.0	14.0	62.0	0.0	100.0	66.00
	국회공무원	(50)	0.0	4.0	4.0	26.0	64.0	6.0	70.0	0.0	100.0	68.00
	지방법회 의원	(51)	0.0	3.9	3.9	21.6	58.8	15.7	74.5	0.0	100.0	71.57
	국가 공무원	(112)	0.9	1.8	2.7	21.4	60.7	15.2	75.9	0.0	100.0	71.88
	지방 공무원	(100)	0.0	5.0	5.0	24.0	61.0	10.0	71.0	0.0	100.0	69.00
	판사	(30)	0.0	0.0	0.0	6.7	70.0	23.3	93.3	0.0	100.0	79.17
	검사	(30)	0.0	3.3	3.3	23.3	53.3	20.0	73.3	0.0	100.0	72.50
	법원공무원	(30)	0.0	0.0	0.0	23.3	53.3	20.0	73.3	3.3	100.0	74.02
	로스쿨 교수	(69)	0.0	2.9	2.9	13.0	60.9	23.2	84.1	0.0	100.0	76.09
	법학과 교수	(70)	0.0	5.7	5.7	18.6	60.0	15.7	75.7	0.0	100.0	71.43
	연구원	(69)	1.4	2.9	4.3	30.4	55.1	10.1	65.2	0.0	100.0	67.39
	변호사	(110)	0.0	2.7	2.7	20.9	60.0	16.4	76.4	0.0	100.0	72.50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0.8	4.1	5.0	28.9	52.9	13.2	66.1	0.0	100.0	68.39
	로스쿨과정생	(60)	0.0	1.7	1.7	28.3	58.3	11.7	70.0	0.0	100.0	70.00
박사과정생	(60)	0.0	3.3	3.3	43.3	45.0	8.3	53.3	0.0	100.0	6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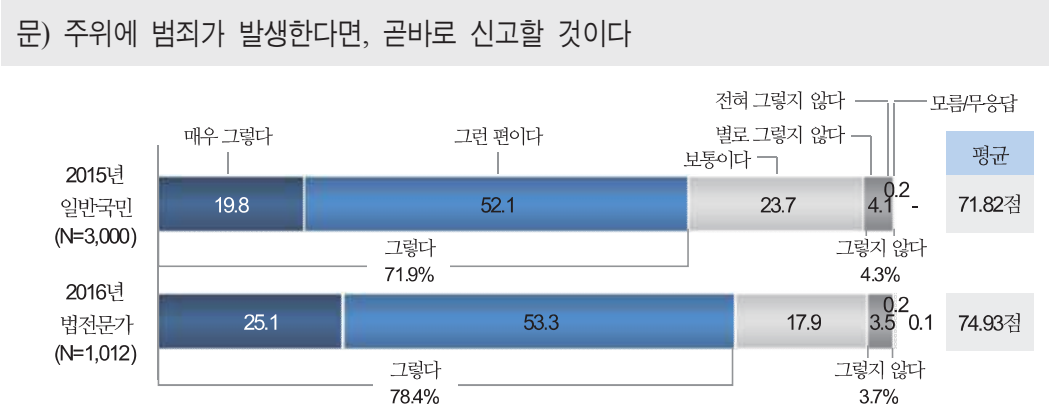
⑥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78.4%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법전문가가 78.4%로 일반국민(71.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서도 2016년 법전문가는 74.93점으로 일반국민(71.82점)보다 높았다.

[그림 63]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단위 : %)



#### 4. 법에 대한 준수

##### (1) 종합 분석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은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의 지수는 50.34점으로 전체 범의식 점수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 항목들에 대한 응답 편차가 꽤 커서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즉, 범의식 지수를 크게 올리는 요인은 법원의 준법성(61.40점, 응답 비율 : ‘그렇다’ 52.8%,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 15.2%)이 가장 높았지만, 낮추는 요인은 기업의 준법성(30.96점, 응답 비율 : ‘그렇다’ 6.3%, ‘보통이다’ 28.7%, ‘그렇지 않다’ 64.9%)으로 기업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다.

지표 항목별로 보면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가 61.40점(‘그렇다’ 52.8%,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 1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가 50.40점(‘그렇다’ 33.8%, ‘보통이다’ 37.4%, ‘그렇지 않다’ 28.8%),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가 49.46점(‘그렇다’ 28.7%, ‘보통이다’ 43.5%, ‘그렇지 않다’ 27.8%),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가 46.32점(‘그렇다’ 17.6%, ‘보통이다’ 52.3%, ‘그렇지 않다’ 30.0%),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가 30.96점(‘그렇다’ 6.3%, ‘보통이다’ 28.7%, ‘그렇지 않다’ 64.9%)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보다 정부기관이 법을 더 잘 지킨다는 평가이며(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정부기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전문가는 공공기관(정부 50.40점, 지자체 49.46점, 법원 61.40점)을 2015년 일반국민(정부 43.17점, 지자체 44.44점, 법원 54.74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정부 : 법전문가(‘그렇다’ 33.8%, ‘보통이다’ 37.4%, ‘그렇지 않다’ 28.8%), 일반국민(‘그렇다’ 25.9%, ‘보통이다’ 32.4%, ‘그렇지 않다’ 41.7%), 지자체 : 법전문가(‘그렇다’ 28.7%, ‘보통이다’ 43.5%, ‘그렇지 않다’ 27.8%), 일반국민(‘그렇다’ 23.7%, ‘보통이다’ 37.0%, ‘그렇지 않다’ 39.3%), 법원 : 법전문가(‘그렇다’ 52.8%,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 15.2%), 일반국민(‘그렇다’ 40.9%, ‘보통이다’ 36.2%, ‘그렇지 않다’ 22.9%)).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3개의 국가기관<sup>290</sup>별로 신뢰정도 조사한 결과, ‘국회’를 제외한 12개 기관 모두 신뢰도 평균점수는 7점 척도 중 4점대(1점~7점)로, 국회는 3점대로 나타났으며, 강대적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는 ‘보호관찰소’(4.46), ‘교도소’(4.45), ‘법원’(4.42)이, 상대적으로 신뢰도 수준이 낮은 기관 3개는 ‘국회’(3.31), ‘지방자치단체’(4.08), ‘경찰’(4.19)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29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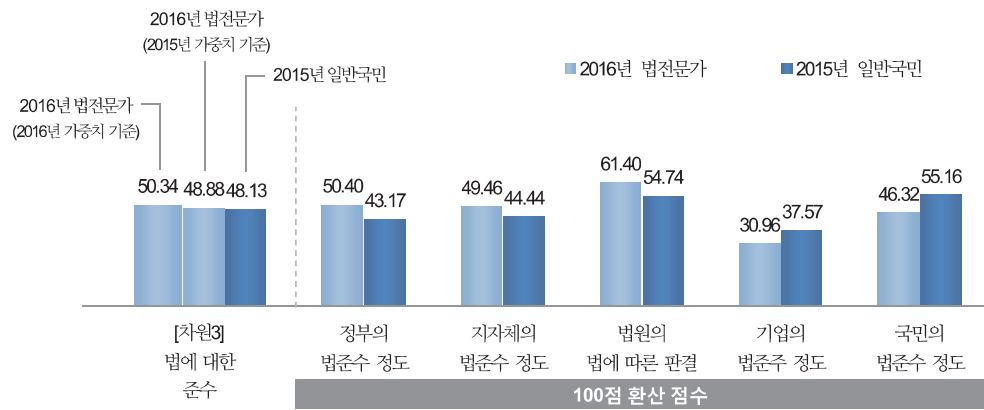
290)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민단체

291)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292)</sup> 2013년 기준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지방자치정부 59.9%, 중앙정부 59.4%, 국회 31.0%, 대법원 73.2%, 청와대 67.4%로 나타났다.

각각의 조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4] 법에 대한 준수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사법 분야의 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으며, 특히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80.68점, 응답 비율 : ‘그렇다’ 82.2%, ‘보통이다’ 14.4%, ‘그렇지 않다’ 2.2%)의 지표 항목에서 차이가 컸다.

연구원, 2012.12, pp.123-124.

292) 주요 기관별 신뢰도 통계표

(단위 : %)

	대법원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국회	청와대
2011	75.7	56.2	56.1	31.0	61.0
2012	69.2	56.0	53.9	26.1	50.5
2013	73.2	59.9	59.4	31.0	67.4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2016.10.06. 검색)

[표 99] 특성별 법에 대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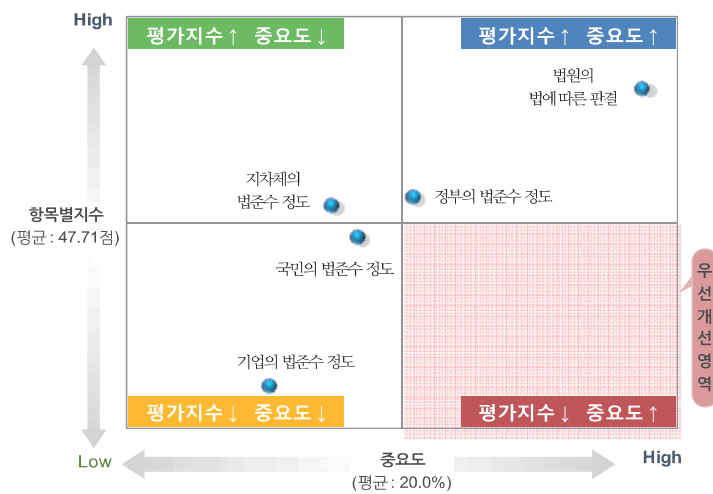
구 분	차원3	정부의 법준수 정도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기업의 법준수 정도	국민의 법준수 정도	
전 체	50.34	50.40	49.46	61.40	30.96	46.32	
분야별	입법	47.29	46.52	49.01	53.97	29.97	47.85
	행정	54.15	60.97	59.67	59.32	33.37	47.76
	사법	61.82	61.67	57.49	80.68	39.23	49.96
	학계	48.50	47.48	45.79	60.22	29.93	45.67
	민간	47.21	44.59	43.29	60.71	29.55	43.51
	예비법전문가	48.06	44.38	44.17	63.33	26.25	45.63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에 대한 준수 차원에서는 ‘국민의 법준수 정도’, ‘기업의 법준수 정도’의 지표 항목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5] 법에 대한 준수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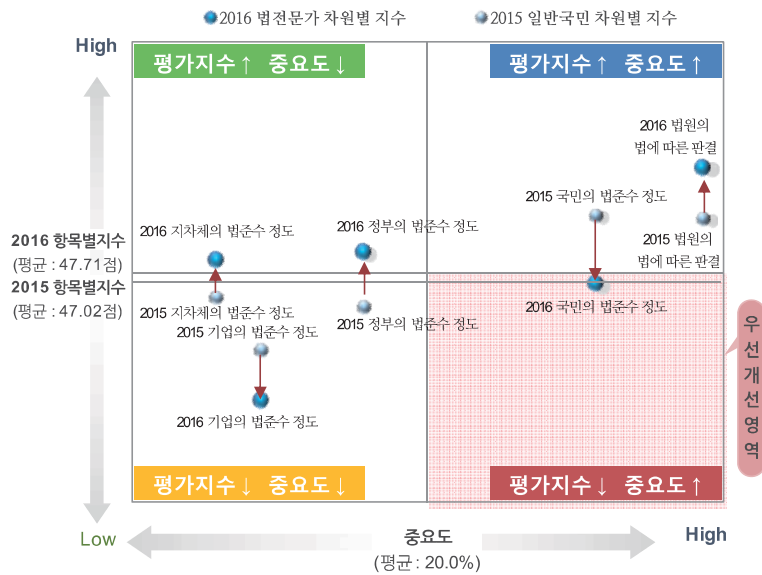




2) 포트폴리오 분석Ⅱ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의 법준수 정도’(2016년 법전문가 46.32점, 2015년 일반국민 55.16점)와 ‘기업의 법준수 정도’(2016년 법전문가 30.96점, 2015년 일반국민 37.57점) 지표 항목에서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림 66] 법에 대한 준수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4) 세부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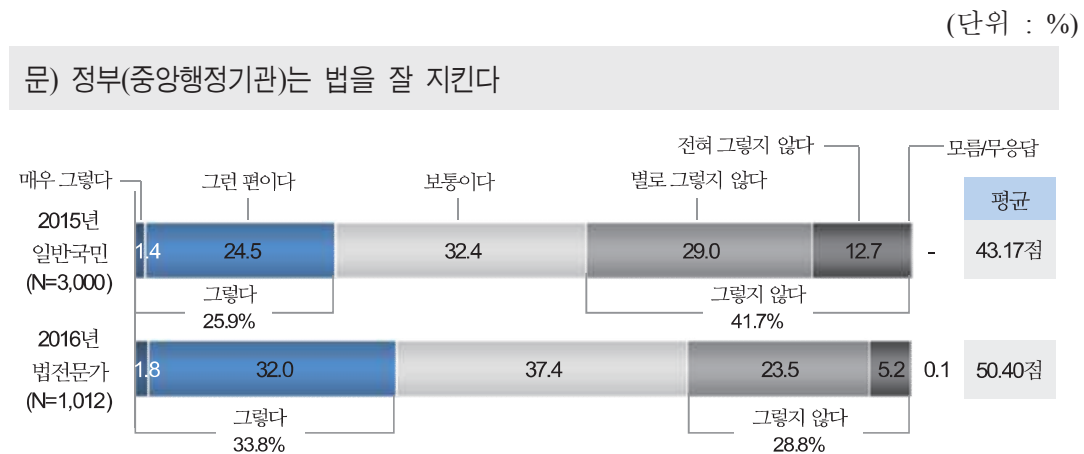
① 정부의 법준수 정도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3.8%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7.4%이었다.

2016년 법전문가의 정부 준법 정도 평가는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그렇다’ 비율이 법전문가(33.8%)가 일반국민(25.9%)보다 높았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도, 법전문가는 50.40점으로 일반국민(43.17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ule of Law Index』Factor 6 (Regulatory Enforcement) ‘6.3 비합리적 지연없이 이행되는가’, ‘6.4 적법절차’에 따라 이행되는가에 대하여서는 2014년 0.84점과 0.72점에서 2015년 0.95점과 0.81점, 2016년 0.91점, 0.81점으로 조사<sup>293)</sup>되었다.

[그림 67] 정부의 법준수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남성(36.1%)이 여성(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행정(55.7%)과 사법(53.3%) 분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준법 정도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각각 12.7%, 8.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93)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119.

[표 100] 특성별 정부의 법준수 정도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5.2	23.5	28.8	37.4	32.0	1.8	33.8	0.1	100.0	50.40	
성 별	남자	(586)	5.1	24.1	29.2	34.6	33.7	2.3	36.1	0.1	100.0	51.03
	여자	(197)	5.6	22.0	27.6	44.4	27.6	0.3	28.0	0.0	100.0	48.78
분 야 별	입법	(151)	5.3	33.8	39.1	31.8	27.8	1.3	29.1	0.0	100.0	46.52
	행정	(212)	2.4	12.7	15.1	29.2	50.0	5.7	55.7	0.0	100.0	60.97
	사법	(90)	0.0	8.9	8.9	36.7	51.1	2.2	53.3	1.1	100.0	61.67
	학계	(208)	4.3	27.4	31.7	43.3	24.0	1.0	25.0	0.0	100.0	47.48
	민간	(231)	8.7	27.3	35.9	41.1	22.9	0.0	22.9	0.0	100.0	44.59
	예비법전문가	(120)	9.2	26.7	35.8	41.7	22.5	0.0	22.5	0.0	100.0	4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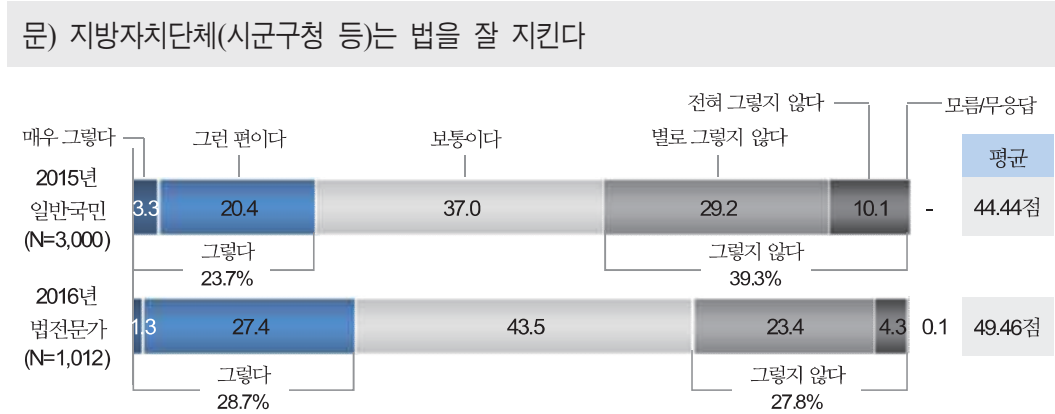
## ②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28.7%, 27.8%로 비슷하였다. 한편, ‘보통이다’는 비율은 43.5%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법전문가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27.8%)이 일반국민(39.3%)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가 49.46점으로 일반국민(44.44점)보다 높았다.

[그림 68]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단위 : %)



정부의 법준수 정도와 같이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에 대해서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각각 50.0%, 41.1%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각각 13.2%, 13.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1] 특성별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전 체	(1,012)	4.3	23.4	27.8	43.5	27.4	1.3	28.7	0.1	100.0	49.46		
분야별	입법	(151)	3.3	27.8	31.1	40.4	26.5	2.0	28.5	0.0	100.0	49.01	
	행정	(212)	1.4	11.8	13.2	36.8	46.7	3.3	50.0	0.0	100.0	59.67	
	사법	(90)	0.0	13.3	13.3	44.4	38.9	2.2	41.1	1.1	100.0	57.49	
	학계	(208)	4.8	27.4	32.2	48.1	19.2	0.5	19.7	0.0	100.0	45.79	
	민간	(231)	7.4	29.4	36.8	45.9	17.3	0.0	17.3	0.0	100.0	43.29	
	예비법전문가	(120)	7.5	27.5	35.0	45.8	19.2	0.0	19.2	0.0	100.0	44.17	

## ③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절반 정도(52.8%)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에서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비율(40.9%)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22.9%)보다 높았다. 긍정적인 의견인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법전문가(52.8%)가 일반국민(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 보아도 법전문가가 61.40점으로 일반국민(54.74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 설문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이 55.3%로서 신뢰하지 않는다(44.7%)는 응답보다 많았으며,<sup>294)</sup> 2012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조사대상 기관 중 대법원 신뢰도가 가장 높게(69.2%) 나온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sup>295)</sup> 2012년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법원의 업무유형을 재판의 진행과 형의 선고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는 73.6%의 조사대상자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법원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96)</sup>

2016년의 『Rule of Law Index』에서도 ‘한국의 민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는 0.81점으로 2014년 0.74점, 2015년

294)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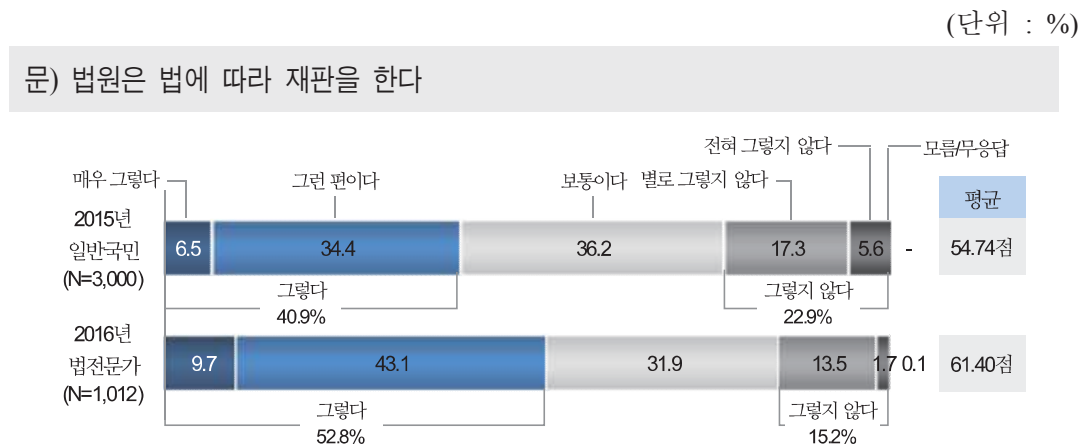
295)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2015.11.16. 검색)

296)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p198.

0.8점과 비교하여 볼 때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지수는 2014년, 2015년은 동일하게 0.76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0.71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sup>297)</sup>

[그림 69]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남성(55.0%)이 여성(47.2%)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법 분야의 82.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다른 분야보다 24.7%p 이상 높았다.

297)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p.26-2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p.30-3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p.32-33.

[표 102] 특성별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1.7	13.5	15.2	31.9	43.1	9.7	52.8	0.1	100.0	61.40	
성 별	남자	(586)	1.4	14.0	15.4	29.5	44.2	10.7	55.0	0.1	100.0	62.24
	여자	(197)	2.4	12.2	14.7	38.1	40.2	7.0	47.2	0.0	100.0	59.27
분 야 별	입법	(151)	2.6	19.9	22.5	42.4	29.1	6.0	35.1	0.0	100.0	53.97
	행정	(212)	1.9	14.6	16.5	31.1	49.1	3.3	52.4	0.0	100.0	59.32
	사법	(90)	0.0	2.2	2.2	14.4	40.0	42.2	82.2	1.1	100.0	80.68
	학계	(208)	1.4	13.0	14.4	36.1	42.3	7.2	49.5	0.0	100.0	60.22
	민간	(231)	1.7	16.0	17.7	28.6	45.0	8.7	53.7	0.0	100.0	60.71
	예비법전문가	(120)	1.7	8.3	10.0	32.5	50.0	7.5	57.5	0.0	100.0	63.33

## ④ 기업의 법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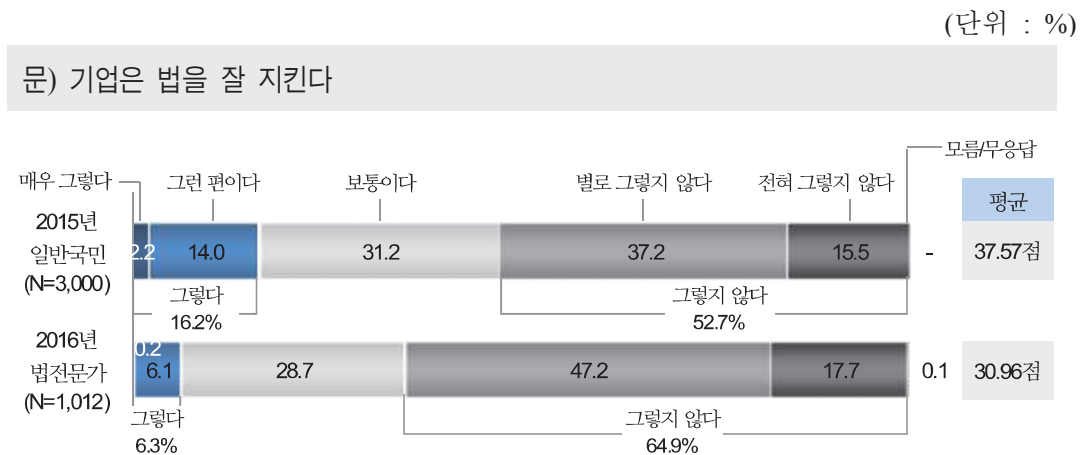
기업은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4.9%인데 반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그쳤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에서도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비율은 52.7%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16.2%)과 큰 차이를 보여 법전문가의 응답 경향과 비슷하였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가 30.96점으로 일반국민(37.57점)보다 기업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낮았다.

이는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언급하였던 부의 편중이나 청년실업 문제라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서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이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이에 대한 기업 내지 관련자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212면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준법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과 적용 요건 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번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는 일반설문을 다양하게 개발한 바 있다. 우선,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찬반 여부와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을 개발한 바 있으며, 법전문가의 98.8%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을 물은데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가 64.6%, 형사처벌화가 18.9%, 집단소송제도 확대가 9.5%, 과징금 적용 확대가 6.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한 설문이나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두 ‘법적 책임 강화’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빠른 속도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0] 기업의 법준수 정도





## ⑤ 국민의 법준수 정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30.0%)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17.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은 52.3%이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에서는 법전문가 결과와는 반대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39.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19.6%)보다 높았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가 46.32점으로 일반국민(55.16점)보다 낮았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의 차원7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대한 판단]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라는 지표설문에 대하여서는 그렇다 24.0%, 그렇지 않다 30.0%(보통이다 45.8%)로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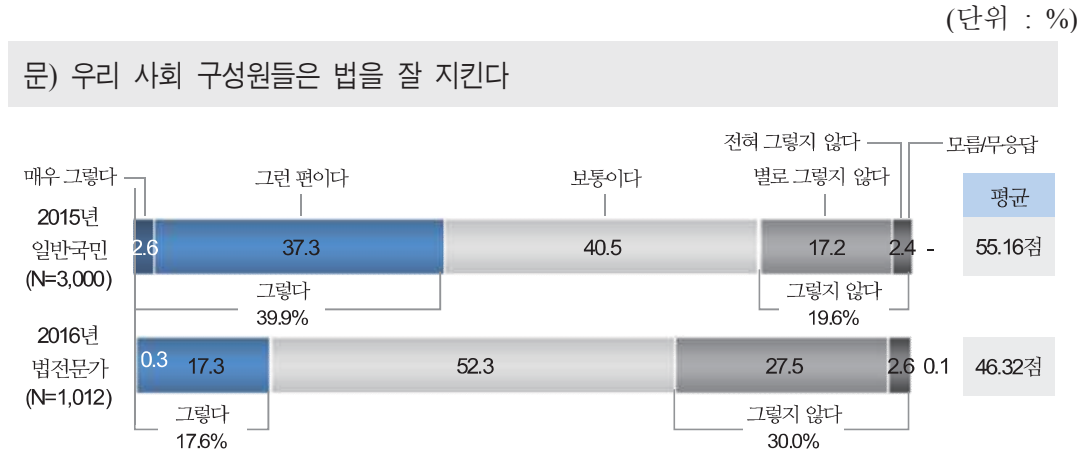
이는 2015 국민법의식 조사나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의 준법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각각 91.7%와 97%로,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각각 49.5%와 42.3%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법전문가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준법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수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준법의식과 준법행동의 ‘이중성’<sup>298)</sup>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298)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15면의 각주 재인용(황승흠,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2(2), 2010.2, 81-86면에서는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하여 본인 스스로의 준법의식은 높다는 등의 생각을 ‘이중성’으로 판단하고 준법의식과 준법행동의 일치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김준석·조진만·엄기홍,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 국민의 법준수 정도



## 5.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1) 종합 분석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은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의 여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전체 평균점수는 64.37점으로 전체 법의식 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항목들 사이의 의견차이(점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 법의식 지수를 밀도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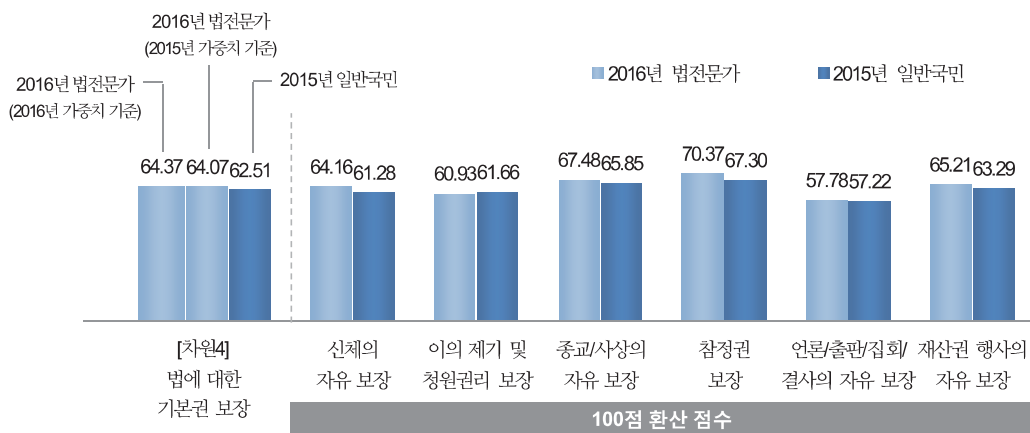
인에 기인하는가?’,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2011.2, 346면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부패인식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부패정도가 실제 부패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타난 하위항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편차는 작은 편이다.

지표 항목별로 보면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가 70.37점(‘그렇다’ 71.9%, ‘보통이다’ 22.4%, ‘그렇지 않다’ 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67.48점(‘그렇다’ 65.9%, ‘보통이다’ 25.2%, ‘그렇지 않다’ 8.4%),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65.21점(‘그렇다’ 60.9%, ‘보통이다’ 30.4%, ‘그렇지 않다’ 8.4%),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64.16점(‘그렇다’ 59.9%, ‘보통이다’ 30.1%, ‘그렇지 않다’ 9.6%),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가 60.93점(‘그렇다’ 51.8%, ‘보통이다’ 34.5%, ‘그렇지 않다’ 13.4%),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57.78점(‘그렇다’ 45.5%, ‘보통이다’ 34.1%, ‘그렇지 않다’ 20.2%)의 순이었다. 법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권리는 잘 보장한다고 판단하지만, 좀 더 심화된 차원의 민주적 권리(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리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일반국민의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지수는 큰 차이 없었다.

[그림 72]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2) 특성별 분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지표 항목에서는 예비 법전문가 (49.17점, 응답 비율 : ‘그렇다’ 28.3%, ‘보통이다’ 39.2%, ‘그렇지 않다’ 32.5%)의 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두드러진 응답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지표 항목의 의견에 있어서는 50대 이상(50대 61.98점(‘그렇다’ 55.2%, ‘보통이다’ 29.1%, ‘그렇지 않다’ 15.3%), 60세 이상 61.64점(‘그렇다’ 48.7%, ‘보통이다’ 37.2%, ‘그렇지 않다’ 12.8%)의 법의식 지수가 높았다.

[표 103] 특성별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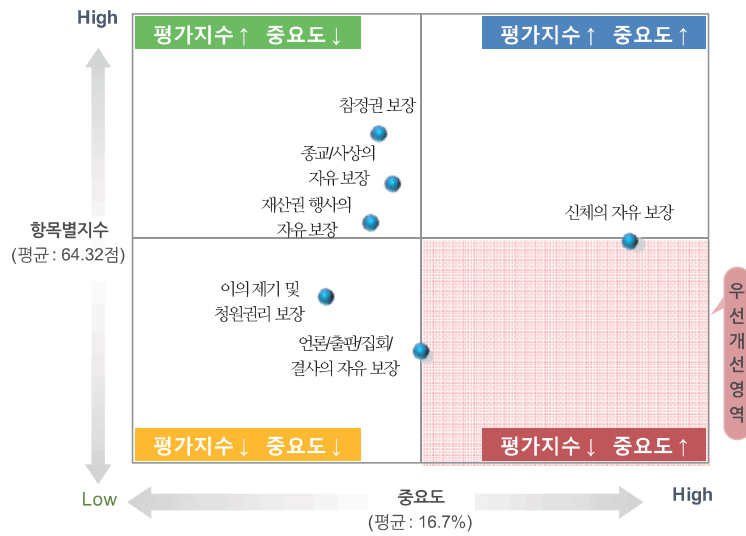
구 분	차원4	신체의 자유 보장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전 체	64.37	64.16	60.93	67.48	70.37	57.78	65.21	
연 령 별	19~29세	62.77	64.31	58.62	66.21	71.03	52.76	63.10
	30대	64.02	64.13	61.11	67.89	69.69	56.21	64.79
	40대	63.69	63.18	61.02	65.33	69.54	57.97	64.88
	50대	66.43	65.59	61.88	69.96	71.04	61.98	67.81
	60세 이상	65.82	63.82	61.68	69.45	73.02	61.64	65.26
분 야 별	입법	61.18	60.52	56.20	64.14	67.85	56.34	61.69
	행정	67.65	66.04	65.33	70.75	73.58	62.38	67.81
	사법	70.78	72.10	69.29	71.86	74.95	66.20	69.61
	학계	64.30	63.72	61.59	67.27	68.61	58.45	65.94
	민간	63.15	63.31	58.33	67.18	70.24	55.09	64.39
	예비법전문가	60.26	61.88	56.67	63.54	67.71	49.17	62.08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신체의 자유 보장’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지표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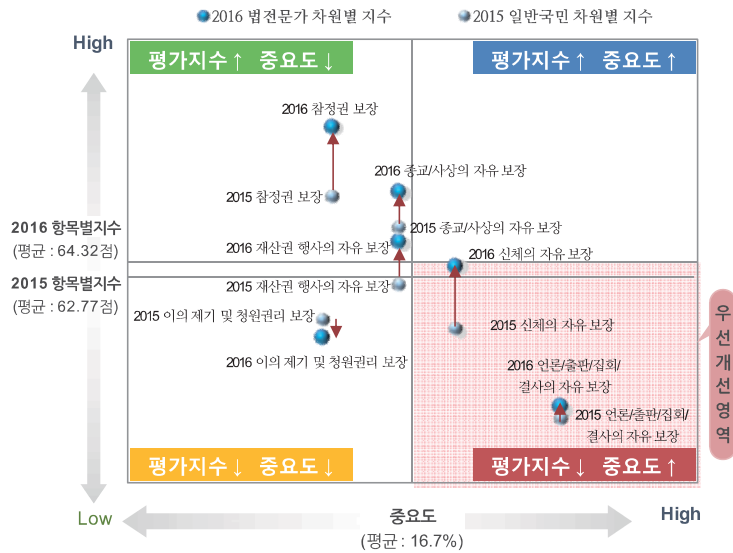
[그림 73]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2) 포트폴리오 분석 II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2016년 법전문가 60.93점, 2015년 일반국민 61.66점) 지표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 항목은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보다 높았다. 특히, ‘신체의 자유 보장’(2016년 법전문가 64.16점, 2015년 일반국민 61.28점), ‘참정권 보장’(2016년 법전문가 70.37점, 2015년 일반국민 67.30점) 지표 항목의 법의식 지수 격차가 컸다.

[그림 7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 (4) 세부항목별 분석

##### ① 신체의 자유 보장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법전문가의 비율은 59.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9.6%)보다 50.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법전문가(59.9%)와 일반국민(57.1%)이 비슷하였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법전문가(9.6%)가 일반국민(13.8%)보다 다소 낮았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는 법전문가(64.16점)가 일반국민(61.28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법의회식 조사연구』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국민법의회식 지수가 61.28점으로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평균인 62.51점보다 더 낮게 나온 바 있으나, 2016년의 법전문가의식 지수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64.16점으로 오히려 국민법의회식지수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조적으로 차원6 [법의 제정/집행]에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법의회식 지수는 41.63점, 법전문가의 법의회식 지수는 34.99점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 눈에 띈다.

특히, 신체의 자유 보장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는데,<sup>299)</sup> 흥미로운 것은 법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직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전문가의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법의회식 지수는 34.99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나 검사직군 및 판사직군에서는 각각 69.17점, 51.67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해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이중성’의 심화 측면일 수도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판사나 검사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느끼게 되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판단은 더욱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심화는 ‘괴리’라는 측면의 부정적인 해석과 ‘이해’라는 측면의 긍정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률 지식의 차이나 권력의 원근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국민에 대하여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일반국민이 느끼는 ‘공정성’과 직무 종사자가 판단하는 ‘공정성’ 사이의 괴리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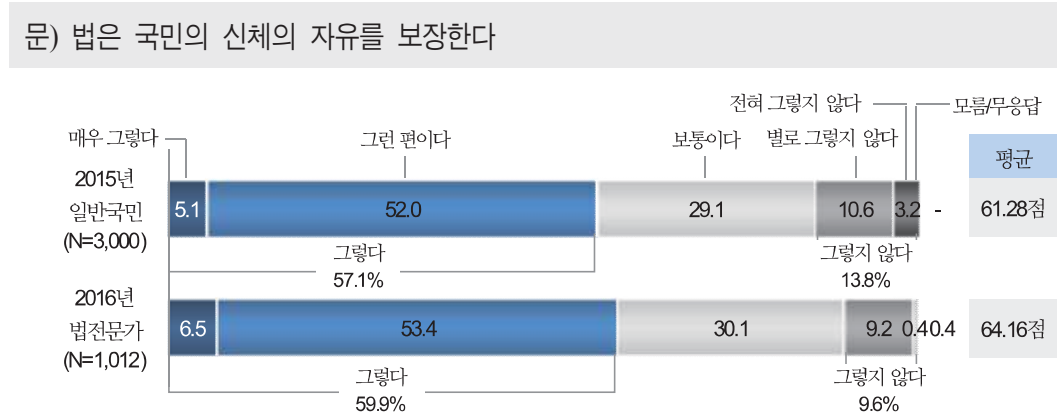
한편, Rule of Law Index의 Factor 8 (Criminal Justice) 8.7의 형사상 적법절차는 2014년 0.77점, 2015년 0.78점이었으나, 2016년 0.73점으로

299)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회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218.

소폭 하락한 것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sup>300)</sup>

[그림 75] 신체의 자유 보장

(단위 : %)



[표 104] 특성별 신체의 자유 보장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④		⑤						
전체	(1,012)	0.4	9.2	9.6	30.1	53.4	6.5	59.9	0.4	100.0	64.16	
분야별	입법	(151)	0.0	17.2	17.2	29.8	45.7	6.6	52.3	0.7	100.0	60.52
	행정	(212)	0.9	6.6	7.5	25.9	60.4	6.1	66.5	0.0	100.0	66.04
	사법	(90)	0.0	1.1	1.1	22.2	62.2	13.3	75.6	1.1	100.0	72.10
	학계	(208)	0.5	9.6	10.1	31.7	49.5	7.7	57.2	1.0	100.0	63.72
	민간	(231)	0.0	8.7	8.7	33.8	53.2	4.3	57.6	0.0	100.0	63.31
	예비법전문가	(120)	0.8	10.0	10.8	34.2	50.8	4.2	55.0	0.0	100.0	61.88

300)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 ②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절반 정도(51.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13.4%)보다 높았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렇다’ 51.9%, ‘그렇지 않다’ 12.6%). 점수로 환산해 보아도 법전문가(60.93점)와 일반국민(61.66점)이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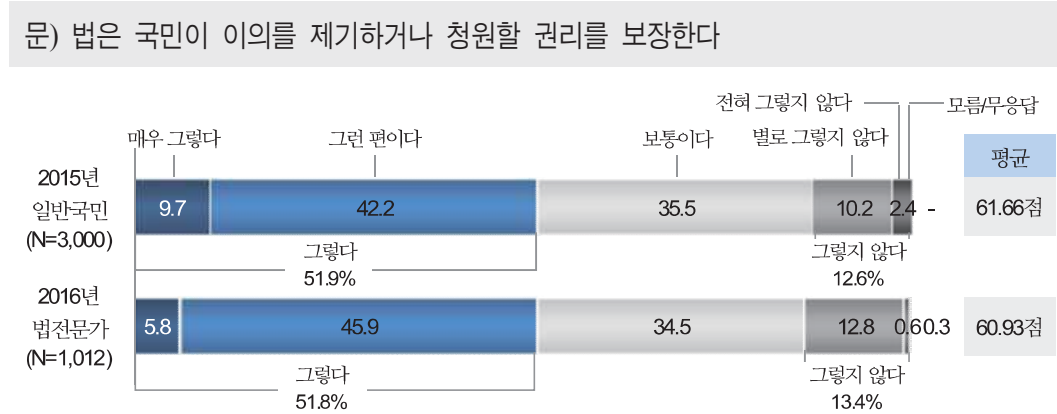
한편,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 일반설문에서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위가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개선(45.9%), 2위가 청원제도(20.5%)로 나타나 여전히 청원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Rule of Law Index』 Factor 3 (Open Government) 3.3에서는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국민참여에 관한 지수가 2014년 0.65점, 2015년 0.7점, 2016년 0.61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법의식이나 법전문가 법의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301)</sup>

30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119.

[그림 76]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단위 : %)



분야별로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사법(66.7%)과 행정(63.7%)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5] 특성별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구분	사례수	①+②			③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전체	(1,012)	0.6	12.8	13.4	34.5	45.9	5.8	51.8	0.3	100.0	60.93	
분야별	입법	(151)	0.7	21.2	21.9	36.4	35.1	6.0	41.1	0.7	100.0	56.20
	행정	(212)	0.9	7.5	8.5	27.8	56.6	7.1	63.7	0.0	100.0	65.33
	사법	(90)	0.0	2.2	2.2	30.0	54.4	12.2	66.7	1.1	100.0	69.29
	학계	(208)	0.5	13.0	13.5	33.2	45.7	7.2	52.9	0.5	100.0	61.59
	민간	(231)	0.0	15.6	15.6	39.0	42.0	3.5	45.5	0.0	100.0	58.33
	예비법전문가	(120)	1.7	14.2	15.8	40.8	42.5	0.8	43.3	0.0	100.0	56.67

## ③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65.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법전문가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65.9%)이 일반국민(60.7%)보다 다소 높았다. 환산된 점수에서도 법전문가가 67.48점으로 일반국민(65.85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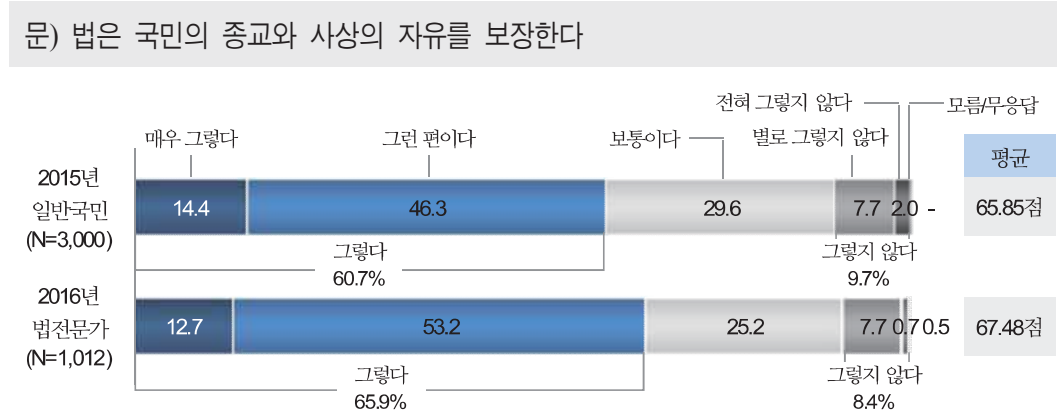
이러한 수치는 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와 국민법의식 지수는 각각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평균인 64.07과 62.51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평균인 53.58과 52.88점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Rule of Law Index』 Factor 4(Fundamental Rights) 4.5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서 2014년에는 0.64점, 2015년에는 0.69점, 2016년에는 0.74점으로 나타나 종교/사상/양심/신념과 관련된 자유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2)</sup>

30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그림 77]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



분야별로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은 입법(57.6%)과 예비법전문가(56.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6] 특성별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①	②	①+②	④	⑤								
전 체	(1,012)	0.7	7.7	8.4	25.2	53.2	12.7	65.9	0.5	100.0	67.48			
분야별	입법	(151)	1.3	11.3	12.6	28.5	45.7	11.9	57.6	1.3	100.0	64.14		
	행정	(212)	0.5	7.1	7.5	17.0	59.9	15.6	75.5	0.0	100.0	70.75		
	사법	(90)	0.0	1.1	1.1	28.9	50.0	18.9	68.9	1.1	100.0	71.86		
	학계	(208)	1.0	7.7	8.7	24.5	54.3	12.0	66.3	0.5	100.0	67.27		
	민간	(231)	0.0	8.2	8.2	25.5	55.0	10.8	65.8	0.4	100.0	67.18		
	예비법전문가	(120)	1.7	8.3	10.0	33.3	47.5	9.2	56.7	0.0	100.0	63.54		

## ④ 참정권 보장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71.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법전문가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71.9%)은 일반국민(62.6%)보다 9.3%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도 법전문가(70.37점)가 일반국민(67.30점)보다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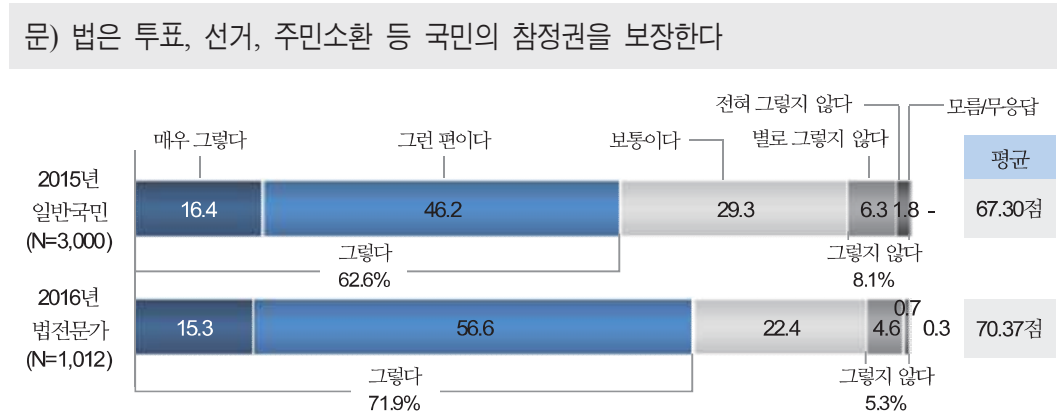
즉,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에서도 2015년의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정권 보장에 대한 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24조와 제25조, 제72조 내지 제130조 2항에 규정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고 것이라 하겠다. 다만,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것은, 차원2 [법에 대한 인식/정서]에서의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에 대한 지수가 42.09점에 그치고 있어서 참정권 보장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직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Rule of Law Index』 Factor 3 (Open Government) 3.3 국민참여(정부에 대한 접근권)에서는 2014년에는 0.65점, 2015년에는 0.7점, 2016년에는 0.61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나 국민법의식 지수의 참정권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sup>303)</sup>

303)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119.

[그림 78] 참정권 보장

(단위 : %)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법전문가의 비율은 45.5%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20.2%)보다 25.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법전문가 45.5%, 일반국민 44.4%)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법전문가 20.2%, 일반국민 17.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에도 법전문가 (57.78점)와 일반국민(57.22점)의 점수는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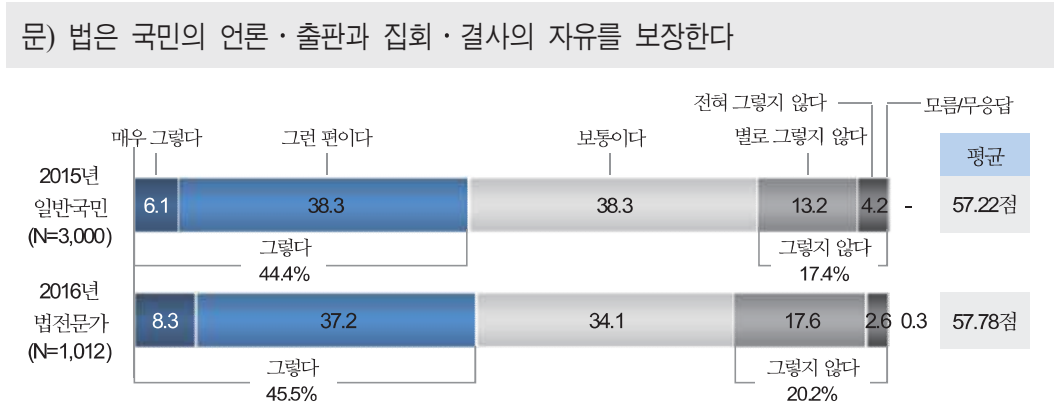
즉,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와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는 각각 57.22, 57.78로서 차원 내에서도 가장 하위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Rule of Law Index』 Factor 4 (Fundamental Rights) 4.4 표현의 자유와 4.7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수는 2014년 0.75점과 0.73점,

2015년 0.77점과 0.72점, 2016년 0.61점과 0.63점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sup>304)</sup>

[그림 7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단위 : %)



분야별로는 예비법전문가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28.3%)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7] 특성별 신체의 자유 보장

구 분	사례수	응답 범주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전 체	(1,012)	2.6	17.6	20.2	34.1	37.2	8.3	45.5	0.3	100.0	57.78	
분야별	입법	(151)	3.3	20.5	23.8	31.8	35.1	8.6	43.7	0.7	100.0	56.34
	행정	(212)	0.5	13.7	14.2	30.2	47.2	8.5	55.7	0.0	100.0	62.38
	사법	(90)	0.0	5.6	5.6	37.8	41.1	14.4	55.6	1.1	100.0	66.20
	학계	(208)	3.4	15.9	19.2	33.2	38.0	9.1	47.1	0.5	100.0	58.45
	민간	(231)	3.5	19.9	23.4	35.9	34.2	6.5	40.7	0.0	100.0	55.09
	예비법전문가	(120)	4.2	28.3	32.5	39.2	23.3	5.0	28.3	0.0	100.0	4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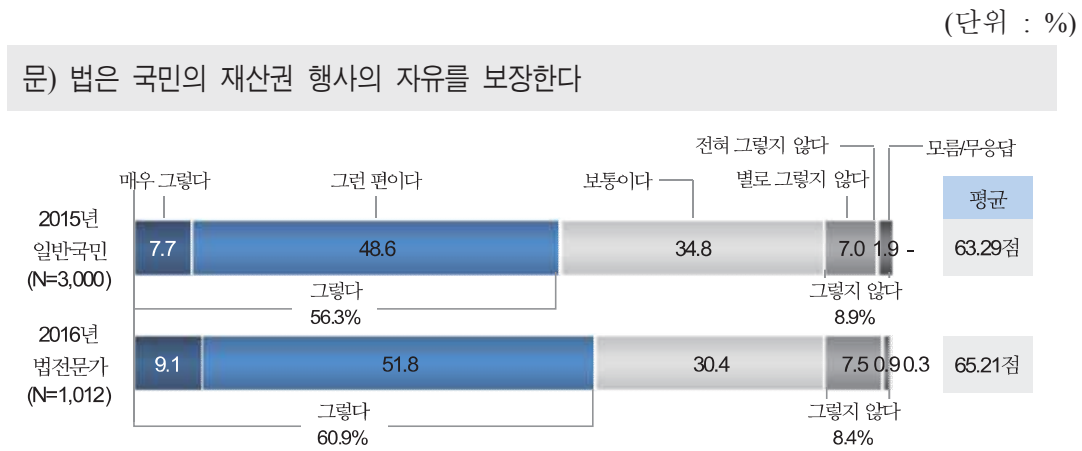
30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13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3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119.

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법전문가의 비율은 60.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4%)보다 52.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법전문가 60.9%, 일반국민 56.3%)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법전문가 8.4%, 일반국민 8.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법전문가(9.6%)가 일반국민(13.8%)보다 다소 낮았다.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에도 법전문가(65.21점)와 일반국민(63.29점)의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80]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6. 법의 실효성 보장

(1) 종합 분석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은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법은 이웃간의 분쟁을 줄인다’, ‘법은 우리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법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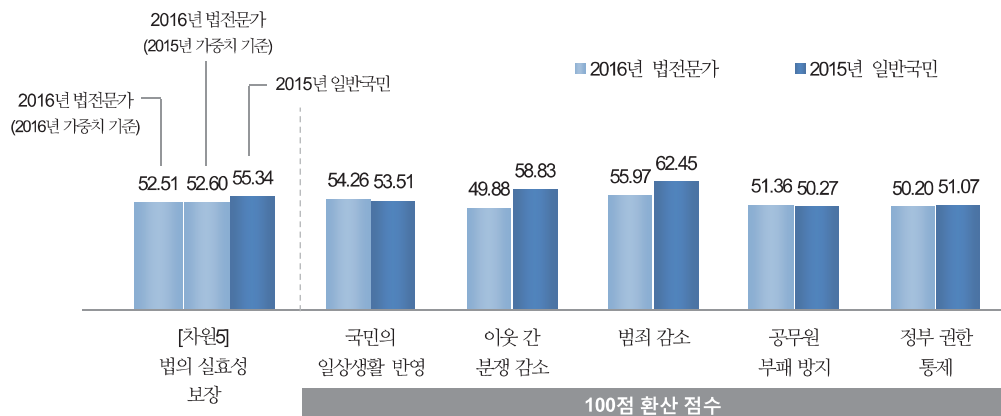
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의 지수는 52.51점으로 지표 항목별 차이는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표 항목별로 보면 ‘법은 우리사회의 범죄를 줄인다’가 55.97점(‘그렇다’ 43.8%, ‘보통이다’ 32.9%, ‘그렇지 않다’ 2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가 54.26점(‘그렇다’ 38.1%, ‘보통이다’ 36.0%, ‘그렇지 않다’ 25.6%),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가 51.36점(‘그렇다’ 37.5%, ‘보통이다’ 32.1%, ‘그렇지 않다’ 30.1%),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가 50.20점(‘그렇다’ 32.8%, ‘보통이다’ 37.5%, ‘그렇지 않다’ 29.3%), ‘법은 이웃간의 분쟁을 줄인다’가 49.88점(‘그렇다’ 29.4%, ‘보통이다’ 39.0%, ‘그렇지 않다’ 31.1%)의 순이었다.

2015년 일반국민(55.34점)의 지수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이웃간 분쟁 감소’(법 전문가 49.88점, 일반국민 58.83점), ‘범죄 감소’(법전문가 55.97점, 일반국민 62.45점), ‘공무원 부패 방지’(법전문가 51.36점, 일반국민 50.27점), ‘정부 권한 통제’(법전문가 50.20점, 일반국민 51.07점)의 지표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 81] 법의 실효성 보장



(2) 특성별 분석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은 전반적으로 예비 법전문가(법의식 지수 56.67점)의 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108] 특성별 법의 실효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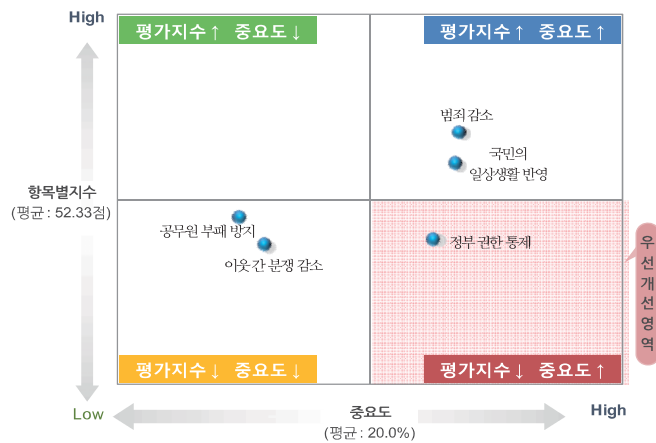
구 분	차원5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이웃 간 분쟁 감소	범죄 감소	공무원 부패 방지	정부 권한 통제	
전 체	52.51	54.26	49.88	55.97	51.36	50.20	
분야별	입법	53.49	54.52	50.62	57.18	53.00	51.38
	행정	50.01	53.60	47.99	52.91	47.21	47.20
	사법	49.36	49.31	45.52	54.31	46.55	49.66
	학계	50.44	52.29	46.49	54.25	49.18	48.86
	민간	52.35	54.57	49.37	55.29	52.95	49.02
	예비법전문가	56.67	58.40	56.28	59.51	55.67	53.08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에서는 ‘정부 권한 통제’ 지표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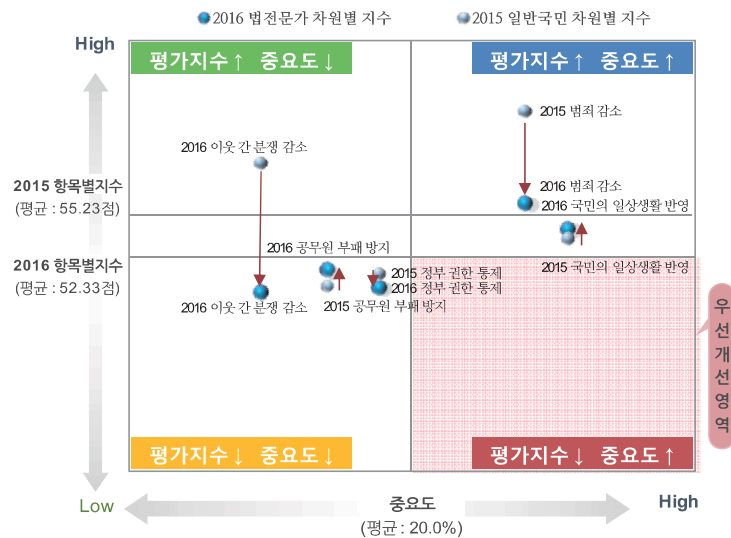
[그림 82] 법의 실효성 보장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2) 포트폴리오 분석Ⅱ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웃 간 분쟁 감소’(2016년 법전문가 49.88점, 2015년 58.83점)와 ‘범죄 감소’(2016년 법전문가 55.97점, 2015년 일반국민 62.45점)의 지표 항목이 2015년 일반국민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이웃 간 분쟁 감소’는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는 항목(평가지수 ↑, 중요도 ↓)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평가지수 ↓, 중요도 ↓)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83] 법의 실효성 보장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4) 세부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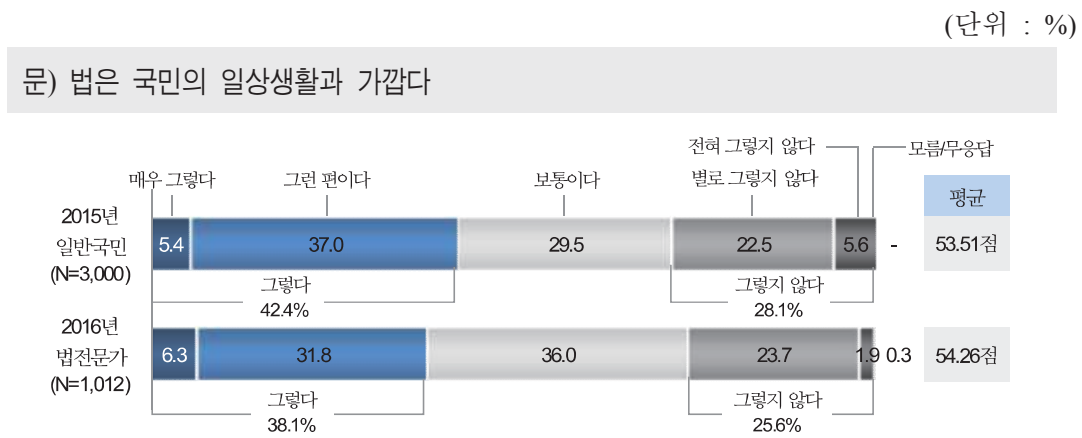
①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38.1%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5.6%)보다 12.5%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42.4%보다 3.3%p 더 낮은 결과이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도 일반국민(28.1%)보다 낮았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는 54.26점으로 2015년 일반국민(53.51점)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84] 국민의 일상 생활 반영



특성별로 보면, 법의 일상생활 반영 여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사법 분야에서 60.0%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9] 특성별 국민의 일상 생활 반영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전체	(1,012)	1.9	23.7	25.6	36.0	31.8	6.3	38.1	0.3	100.0	54.26				
분야별	입법	(151)	1.3	33.1	34.4	28.5	29.8	6.6	36.4	0.7	100.0	51.85			
	행정	(212)	1.4	23.1	24.5	36.8	33.0	5.7	38.7	0.0	100.0	54.60			
	사법	(90)	0.0	10.0	10.0	28.9	52.2	7.8	60.0	1.1	100.0	64.49			
	학계	(208)	3.8	20.7	24.5	39.4	27.9	7.7	35.6	0.5	100.0	53.75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민간	(231)	0.4	25.5	26.0	39.8	29.9	4.3	34.2	0.0	100.0	53.03
예비법전문가	(120)	4.2	25.0	29.2	35.8	27.5	7.5	35.0	0.0	100.0	52.29

② 이웃 간 분쟁 감소

법이 이웃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1.1%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의견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9.0%로 조사되었다.

이를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48.8%)보다 19.3%p 더 낮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18.0%)보다는 13.2%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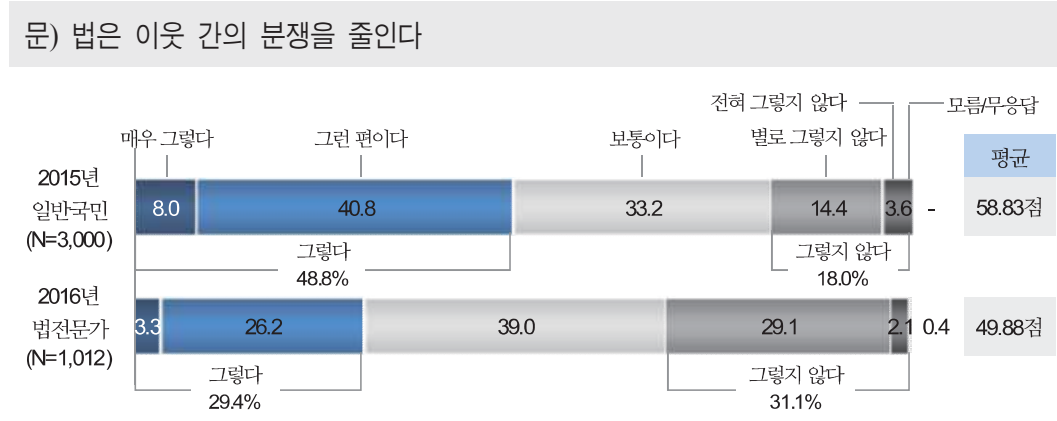
점수로 환산하면 법전문가는 49.88점으로 2015년 일반국민(58.83점)보다 낮게 나타나 법이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는 의견은 법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전문가적 판단에서 볼 때 사회가 발전하고 전문화·분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분쟁도 더욱 다양화되고 다툼의 내용도 세밀해질 수 밖에 없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에 대하여 대상자들 중 많은 수(1,770명 중에서 760명으로 42.9%를 차지)는 ‘법’을 가장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바,<sup>305)</sup> 이는 일상생활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305)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pp.69-71.

[그림 85] 이웃 간 분쟁 감소

(단위 : %)



특성별로 보면, 이웃 간 분쟁 감소에 대해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제주권에서 1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10] 특성별 이웃 간 분쟁 감소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④		⑤							
전 체	(1,012)	2.1	29.1	31.1	39.0	26.2	3.3	29.4	0.4	100.0	49.88		
지역별	수도권	(586)	2.4	31.4	33.8	38.1	24.7	2.7	27.5	0.7	100.0	48.51	
	중부권	(197)	2.5	24.9	27.4	36.0	32.5	4.1	36.5	0.0	100.0	52.66	
	전라권	(79)	1.3	26.6	27.8	44.3	22.8	5.1	27.8	0.0	100.0	50.95	
	경상권	(127)	0.8	29.1	29.9	42.5	25.2	2.4	27.6	0.0	100.0	49.80	
	제주권	(23)	0.0	13.0	13.0	52.2	26.1	8.7	34.8	0.0	100.0	57.61	

③ 범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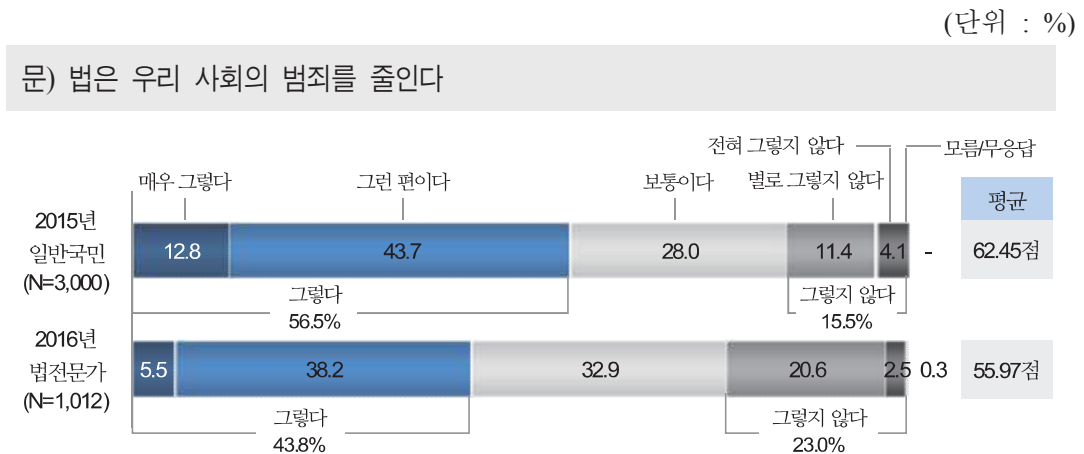
법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43.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3.0%)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에서는 절반 이상(56.5%)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6년 법전문가와 비교하였을 때 12.8%p 더 높은 결과이다.

이를 점수로 환산해 보면 2015년 일반국민은 62.45점이며 법전문가는 55.97점으로 법이 범죄 감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의 범죄억제력<sup>306)</sup>에 대하여 법전문가들이 좀 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6] 범죄 감소



306) 서준배, “범죄 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경찰대학, 2013.7, p.80.

특성별로 보면, 법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지에 대해 남자(46.0%)가 여자(38.1%)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제주권에서 4.3%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11] 특성별 범죄 감소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2.5	20.6	23.0	32.9	38.2	5.5	43.8	0.3	100.0	55.97	
성 별	남자	(726)	1.9	19.4	21.3	32.4	40.1	5.9	46.0	0.3	100.0	57.18
	여자	(286)	3.8	23.4	27.3	34.3	33.6	4.5	38.1	0.3	100.0	52.91
지 역 별	수도권	(586)	2.7	21.0	23.7	32.9	37.9	4.9	42.8	0.5	100.0	55.36
	중부권	(197)	2.5	19.8	22.3	29.4	41.1	7.1	48.2	0.0	100.0	57.61
	전라권	(79)	2.5	26.6	29.1	36.7	30.4	3.8	34.2	0.0	100.0	51.58
	경상권	(127)	1.6	18.9	20.5	29.9	44.1	5.5	49.6	0.0	100.0	58.27
	제주권	(23)	0.0	4.3	4.3	65.2	17.4	13.0	30.4	0.0	100.0	59.78

④ 공무원 부패 방지

법이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의 37.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0.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법의 공무원 부패 방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일반국민과 비교한 결과, ‘그렇다’(36.0%)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30.2%)는 응답 모두 법전문가의 응답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2015년 일반국민은 50.27점이며 법전문가는 51.36점으로 마찬가지로 법의 공무원 부패 방지에 대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5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에서 37위를 차지한 바 있다. OECD 회원국이 34개국이 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7)</sup>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실태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1,400명), 7개 분야(교수/변호사/국회보좌관/언론인/종교인/시민단체/문화예술인) 전문가(630명)와 일반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주한외국인(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부패하다’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가(55.2%)를 차지하였고 공무원(1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패인식점수가 일반국민이 3.27점(10점에 가까울수록 ‘거의 부패하지 않음’)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전문가가 3.60점을 나타냄으로 다소 부정적 수준으로 분석되어 공직자 부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sup>308)</sup>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약칭)』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있다.<sup>309)</sup> 또한,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으로 약칭)』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하였다.<sup>310)</sup>

307)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 지표보기 - 사회 - 통합 - 신뢰와 투명성 - 부패인식지수(CPI)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 2016.10.3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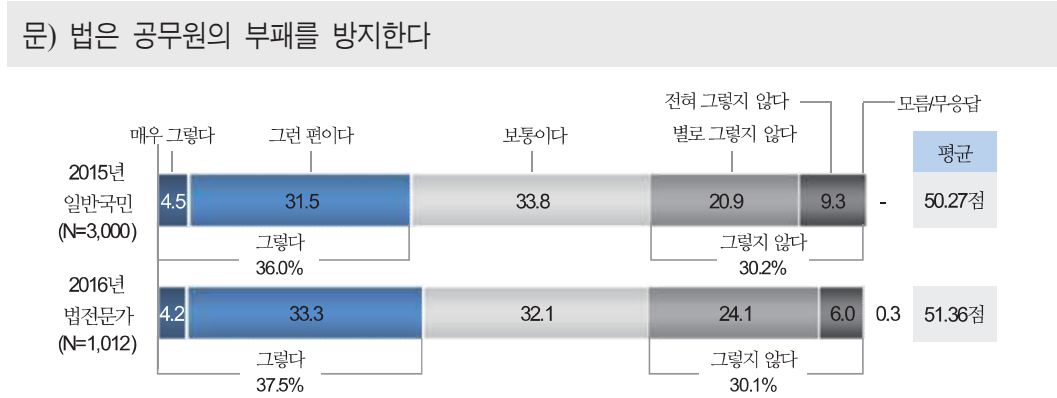
308)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5.12.

309)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공익신고 - 신고안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 2016.10.12. 최종 검색)

310)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15.3.

[그림 87] 공무원 부패 방지

(단위 : %)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제주권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사법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12] 특성별 공무원 부패 방지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012)	6.0	24.1	30.1	32.1	33.3	4.2	37.5	0.3	100.0	51.36	
지역별	수도권	(586)	7.7	27.3	35.0	31.9	29.4	3.2	32.6	0.5	100.0	48.30
	중부권	(197)	4.1	18.8	22.8	24.9	46.2	6.1	52.3	0.0	100.0	57.87
	전라권	(79)	1.3	26.6	27.8	38.0	29.1	5.1	34.2	0.0	100.0	52.53
	경상권	(127)	5.5	18.9	24.4	36.2	34.6	4.7	39.4	0.0	100.0	53.54
	제주권	(23)	0.0	8.7	8.7	56.5	30.4	4.3	34.8	0.0	100.0	57.61
분야별	입법	(151)	3.3	31.1	34.4	31.1	29.8	4.0	33.8	0.7	100.0	50.01
	행정	(212)	2.4	13.7	16.0	29.2	49.5	5.2	54.7	0.0	100.0	60.38
	사법	(90)	1.1	6.7	7.8	35.6	46.7	8.9	55.6	1.1	100.0	63.90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학계	(208)	6.7	28.8	35.6	32.7	29.3	1.9	31.3	0.5	100.0	47.72
민간	(231)	8.2	31.6	39.8	31.6	24.2	4.3	28.6	0.0	100.0	46.21
예비법전문가	(120)	14.2	24.2	38.3	35.8	23.3	2.5	25.8	0.0	100.0	43.96

⑤ 정부 권한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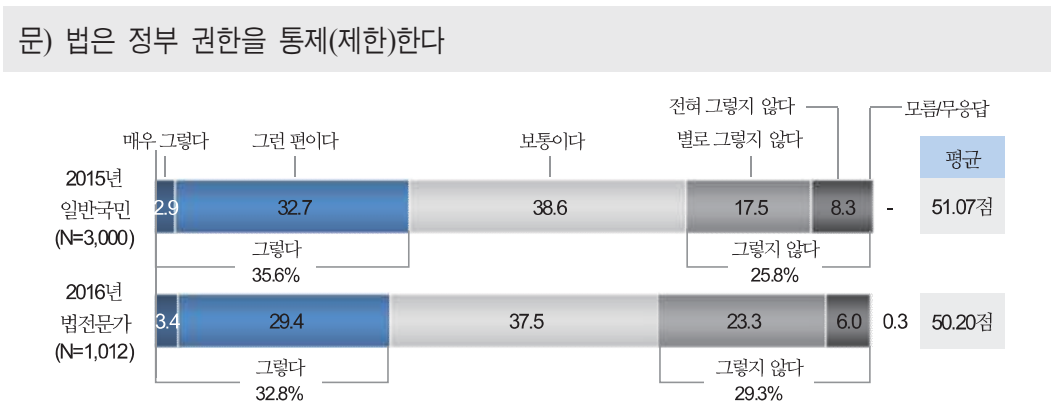
법이 정부 권한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법전문가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32.8%)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이 37.5%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의 ‘그렇다’(35.6%)는 응답보다 2.8%p 더 낮은 결과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국민(25.8%)보다 3.5%p 높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 해보면 2015년 일반국민은 51.07점, 2016년 법전문가는 50.20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8] 정부 권한 통제

(단위 : %, 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법 분야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정도(50.0%)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3] 특성별 공무원 권한 통제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6.0	23.3	29.3	37.5	29.4	3.4	32.8	0.3	100.0	50.20	
분야 별	입법	(151)	6.6	28.5	35.1	38.4	22.5	3.3	25.8	0.7	100.0	46.86
	행정	(212)	2.4	17.9	20.3	34.4	42.0	3.3	45.3	0.0	100.0	56.49
	사법	(90)	0.0	12.2	12.2	36.7	42.2	7.8	50.0	1.1	100.0	61.39
	학계	(208)	7.2	23.6	30.8	38.5	26.9	3.4	30.3	0.5	100.0	48.92
	민간	(231)	8.2	27.7	35.9	39.0	23.4	1.7	25.1	0.0	100.0	45.67
	예비법전문가	(120)	10.0	25.8	35.8	38.3	22.5	3.3	25.8	0.0	100.0	45.83

## 7. 법의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1) 종합 분석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차원은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의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차원의 지수는 37.83점으로 전체 법의식 지수보다 크게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 항목들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으며, 그런 점에서 지표 항목 지수의 편차도 적은 편이다. 법제정이나 집행에 있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

이 크다는 평가는 설문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응답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가 43.81점(‘그렇다’ 25.6%, ‘보통이다’ 29.7%, ‘그렇지 않다’ 4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가 37.64점(‘그렇다’ 13.6%, ‘보통이다’ 33.5%, ‘그렇지 않다’ 52.6%),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가 34.99점(‘그렇다’ 12.7%, ‘보통이다’ 28.8%, ‘그렇지 않다’ 58.2%),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가 32.09점(‘그렇다’ 8.6%, ‘보통이다’ 27.0%, ‘그렇지 않다’ 64.0%)의 순이었다.

국가기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입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온 다른 항목(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법치주의 실현정도 등)들과도 일관성이 있다.

2015년 일반국민 결과와 비교하면 ‘법원의 공정한 판결’(법전문가 43.81점, 일반국민 43.22점) 이외의 지표 항목에서 법전문가의 지수가 낮았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각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가 2013년 기준으로 지방자치정부 59.9%, 중앙정부 59.4%, 국회 31.0%, 대법원 73.2%, 청와대 67.4%를 보인 것과 순위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sup>3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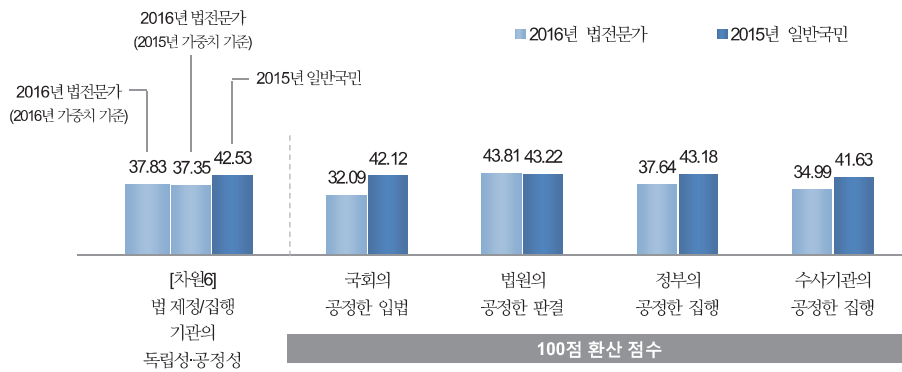
311) 주요 기관별 신뢰도 통계표 (단위 : %)

	대법원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국회	청와대
2011	75.7	56.2	56.1	31.0	61.0
2012	69.2	56.0	53.9	26.1	50.5
2013	73.2	59.9	59.4	31.0	67.4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표(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2016.10.6. 검색)

한편,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는 사법제도 국민 신뢰도가 2013년 기준으로 27%로서 OECD 평균치인 54%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sup>312)</sup> 특히,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각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므로,<sup>313)</sup> 향후 법 제정/집행/해석/적용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89]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 (2)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 분야에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 67.71점(‘그렇다’ 71.1%, ‘보통이다’ 16.7%, ‘그렇지 않다’ 11.1%)을 보이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312) 세계일보, “[대한민국 길을 묻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추락하는 사법신뢰”, 2016년 6월 8일자 기사(<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07/20160607003486.html?OutUrl=daum> 2016.10.31. 최종검색)

313)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8면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2016.10.31. 최종검색)

[표 114] 특성별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구 분	차원6	국회의 공정한 입법	법원의 공정한 판결	정부의 공정한 집행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전 체	37.83	32.09	43.81	37.64	34.99	
분야별	입법	37.09	41.48	38.54	37.17	31.03
	행정	38.84	30.90	40.68	45.40	37.15
	사법	53.05	37.30	67.71	46.81	53.17
	학계	35.82	30.44	43.00	34.32	32.26
	민간	34.89	28.35	42.32	32.14	33.23
	예비법전문가	34.72	28.54	42.29	33.96	3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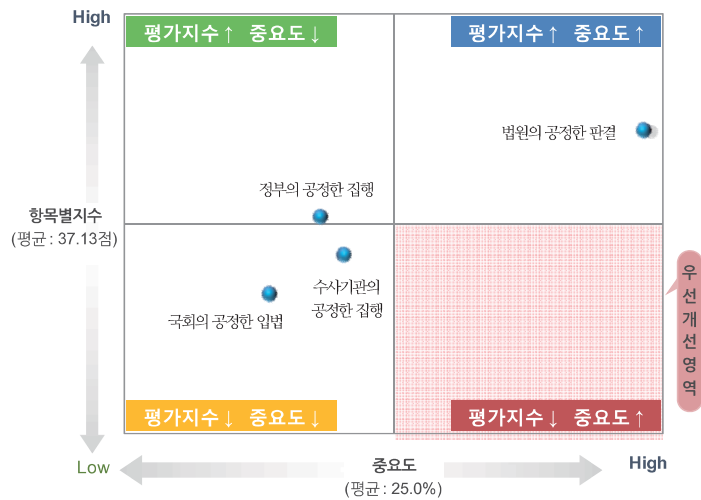
(3) 포트폴리오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I : 2016년 가중치 기준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차원에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 지표 항목은 법의식 지수 및 중요도도 높았다.

‘국회의 공정한 입법’,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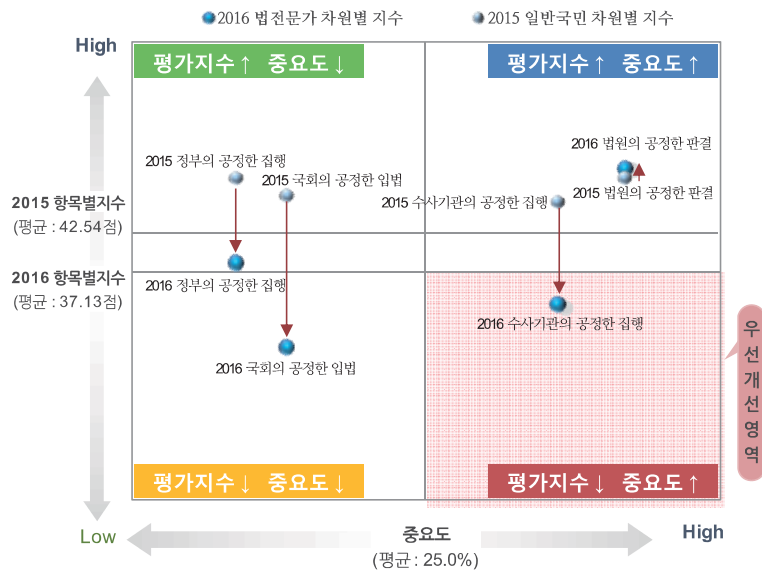
[그림 90]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2) 포트폴리오 분석Ⅱ : 2015년 일반국민 동일 가중치 적용

2015년 일반국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2016년 법전문가 43.81점, 2015년 일반국민 43.22점)을 제외하고 ‘정부의 공정한 집행’(2016년 법전문가 37.64점, 2015년 일반국민 43.18점), ‘국회의 공정한 입법’(2016년 법전문가 32.09점, 2015년 일반국민 42.12점),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2016년 법전문가 34.99점, 2015년 일반국민 41.63점) 지표 항목에서 2015년 일반국민 법의식 지수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국회의 공정한 입법’(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는 항목 →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향후 개선을 고려해봐야 하는 항목 →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은 영역이 이동되었다.

[그림 91] 법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 2015년 일반국민과의 비교





(4) 세부항목별 분석

① 국회의 공정한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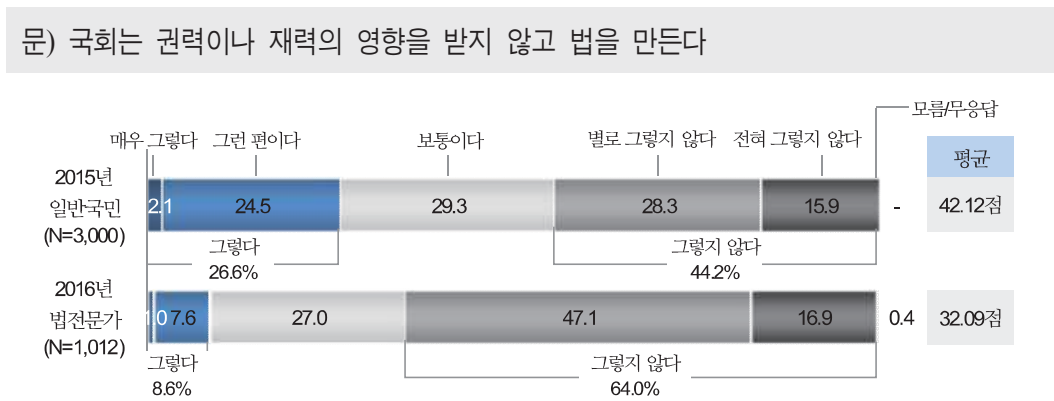
국회의 공정한 입법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4.0%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의견 8.6%보다 55.4%p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은 27.0%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일반국민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4.2%)보다 19.8%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26.6%)보다는 18.0%p 낮게 나타났다.

환산 점수로 비교해보면 법전문가는 32.09점으로 2015년 일반국민(42.12점)보다 더 낮아 국회의 공정한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법전문가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2] 국회의 공정한 입법

(단위 : %)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입법 분야와 사법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7.7%, 4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5] 특성별 국회의 공정한 입법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⑤	④+⑤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12)	16.9	47.1	64.0	27.0	7.6	1.0	8.6	0.4	100.0	32.09	
지 역 별	수도권	(586)	16.2	46.9	63.1	27.0	8.4	0.9	9.2	0.7	100.0	32.56
	중부권	(197)	18.8	48.2	67.0	25.9	6.1	1.0	7.1	0.0	100.0	30.58
	전라권	(79)	13.9	46.8	60.8	27.8	11.4	0.0	11.4	0.0	100.0	34.18
	경상권	(127)	18.9	50.4	69.3	24.4	3.9	2.4	6.3	0.0	100.0	30.12
	제주권	(23)	17.4	26.1	43.5	47.8	8.7	0.0	8.7	0.0	100.0	36.96
분 야 별	입법	(151)	7.9	39.7	47.7	31.8	15.9	3.3	19.2	1.3	100.0	41.48
	행정	(212)	18.4	49.1	67.5	24.1	7.5	0.9	8.5	0.0	100.0	30.90
	사법	(90)	7.8	38.9	46.7	47.8	4.4	0.0	4.4	1.1	100.0	37.30
	학계	(208)	16.3	51.9	68.3	25.5	4.8	1.0	5.8	0.5	100.0	30.44
	민간	(231)	21.6	50.6	72.3	20.8	6.5	0.4	6.9	0.0	100.0	28.35
	예비법전문가	(120)	24.2	44.2	68.3	25.0	6.7	0.0	6.7	0.0	100.0	28.54

② 법원의 공정한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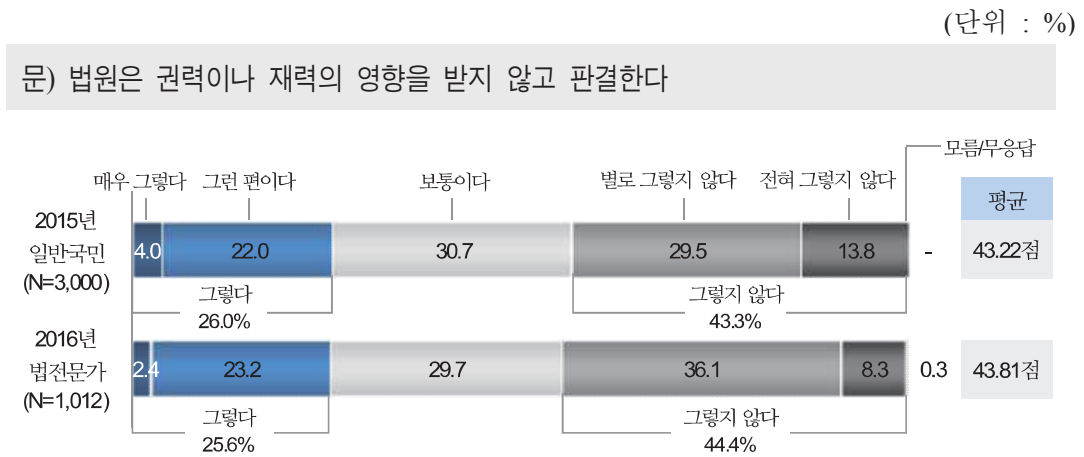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묻는 질문에 법전문가의 44.4%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2015년 일반국민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43.3%, ‘그렇다’는 26.0%로 응답하여 2016년 법전문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2015년 일반국민은 43.22점, 2016년 법전문가는 43.81점으로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Rule of Law Index 2016에 따르면 민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수는 0.81점으로 8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 0.80점으로 7위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2014년(0.74점, 10위) 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314)</sup> 다만, 형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지수는 2016년 0.71점으로 2014년, 2015년에 동일한 0.76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순위는 2015년 13위에서 17위로 밀려나게 되었다.<sup>315)</sup>

[그림 93] 법원의 공정한 판결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법 분야에서만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11.1%)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71.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31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26;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30,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32.

315)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2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3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p.33.

[표 116] 특성별 법원의 공정한 판결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전 체	(1,012)	8.3	36.1	44.4	29.7	23.2	2.4	25.6	0.3	100.0	43.81	
분야별	입법	(151)	9.3	47.7	57.0	23.8	16.6	2.0	18.5	0.7	100.0	38.54
	행정	(212)	6.6	42.5	49.1	33.5	16.5	0.9	17.5	0.0	100.0	40.68
	사법	(90)	0.0	11.1	11.1	16.7	60.0	11.1	71.1	1.1	100.0	67.71
	학계	(208)	5.8	39.9	45.7	31.3	21.6	1.0	22.6	0.5	100.0	43.00
	민간	(231)	10.8	32.9	43.7	34.6	19.5	2.2	21.6	0.0	100.0	42.32
	예비법전문가	(120)	15.8	28.3	44.2	28.3	25.8	1.7	27.5	0.0	100.0	42.29

## ③ 정부의 공정한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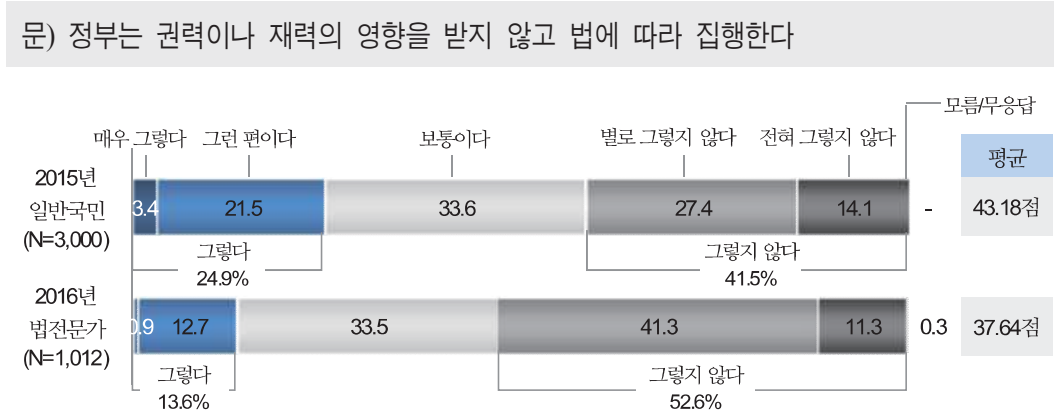
정부가 법에 따라 공정한 집행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6%)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의견(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1.5%)보다 11.1%p 더 높은 결과이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24.9%)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는 37.64점으로 2015년 일반국민(43.18점)보다 낮아 정부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인식은 법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94] 정부의 공정한 집행

(단위 : %)



특성별로 살펴보면, 행정 분야와 사법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8.7%, 30.0%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17] 특성별 정부의 공정한 집행

구 분	사례수	①			③	④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④+⑤				
전 체	(1,012)	11.3	41.3	52.6	33.5	12.7	0.9	13.6	0.3	100.0	37.64	
분야별	입법	(151)	9.3	47.0	56.3	29.8	11.9	1.3	13.2	0.7	100.0	37.17
	행정	(212)	4.2	34.4	38.7	37.7	22.6	0.9	23.6	0.0	100.0	45.40
	사법	(90)	4.4	25.6	30.0	47.8	20.0	1.1	21.1	1.1	100.0	46.81
	학계	(208)	13.5	43.8	57.2	34.1	8.2	0.0	8.2	0.5	100.0	34.32
	민간	(231)	16.0	48.5	64.5	27.7	6.5	1.3	7.8	0.0	100.0	32.14
	예비법전문가	(120)	18.3	40.0	58.3	30.0	10.8	0.8	11.7	0.0	100.0	3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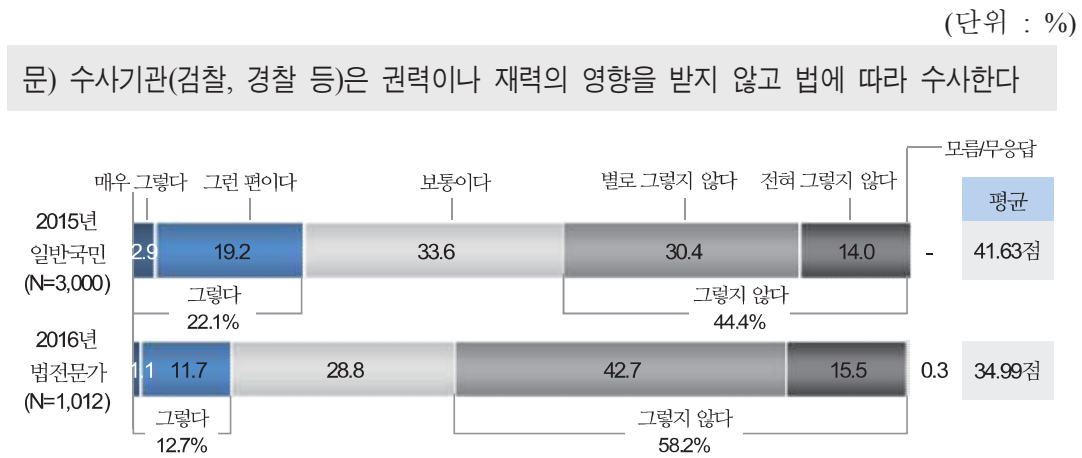
④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집행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8.2%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의견(1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은 28.8%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일반국민의 ‘그렇지 않다’는 의견(44.4%)보다 13.8%p 더 높은 결과이며, ‘그렇다’는 의견(22.1%)보다는 9.3%p 낮게 나타났다.

환산 점수로 비교해보면 2015년 일반국민은 41.63점, 2016년 법전문가는 34.99점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집행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법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5]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법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26.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국회공무원(8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사(6.7%)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118] 특성별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100점 평균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전 체	(1,012)	15.5	42.7	58.2	28.8	11.7	1.1	12.7	0.3	100.0	34.99	
분야별	입법	(151)	15.9	53.0	68.9	21.9	7.9	0.7	8.6	0.7	100.0	31.03
	행정	(212)	11.8	41.5	53.3	33.0	13.7	0.0	13.7	0.0	100.0	37.15
	사법	(90)	5.6	21.1	26.7	31.1	36.7	4.4	41.1	1.1	100.0	53.17
	학계	(208)	17.8	43.8	61.5	29.8	7.7	0.5	8.2	0.5	100.0	32.26
	민간	(231)	17.7	43.3	61.0	29.4	7.4	2.2	9.5	0.0	100.0	33.23
	예비법전문가	(120)	20.8	45.0	65.8	25.0	9.2	0.0	9.2	0.0	100.0	30.63
직업별	국회의원	(50)	16.0	50.0	66.0	22.0	10.0	2.0	12.0	0.0	100.0	33.00
	국회공무원	(50)	24.0	58.0	82.0	12.0	4.0	0.0	4.0	2.0	100.0	24.20
	지방의회의원	(51)	7.8	51.0	58.8	31.4	9.8	0.0	9.8	0.0	100.0	35.78
	국가 공무원	(112)	11.6	35.7	47.3	33.0	19.6	0.0	19.6	0.0	100.0	40.18
	지방 공무원	(100)	12.0	48.0	60.0	33.0	7.0	0.0	7.0	0.0	100.0	33.75
	판사	(30)	0.0	30.0	30.0	36.7	30.0	3.3	33.3	0.0	100.0	51.67
	검사	(30)	0.0	6.7	6.7	20.0	63.3	10.0	73.3	0.0	100.0	69.17
	법원 공무원	(30)	16.7	26.7	43.3	36.7	16.7	0.0	16.7	3.3	100.0	38.67
	로스쿨 교수	(69)	13.0	52.2	65.2	29.0	5.8	0.0	5.8	0.0	100.0	31.88
	법학과 교수	(70)	15.7	35.7	51.4	34.3	11.4	1.4	12.9	1.4	100.0	36.57
	연구원	(69)	24.6	43.5	68.1	26.1	5.8	0.0	5.8	0.0	100.0	28.26
	변호사	(110)	10.9	44.5	55.5	33.6	9.1	1.8	10.9	0.0	100.0	36.59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24.0	42.1	66.1	25.6	5.8	2.5	8.3	0.0	100.0	30.17
	로스쿨과정생	(60)	13.3	48.3	61.7	28.3	10.0	0.0	10.0	0.0	100.0	33.75
박사과정생	(60)	28.3	41.7	70.0	21.7	8.3	0.0	8.3	0.0	100.0	27.50	

## 8. 법의식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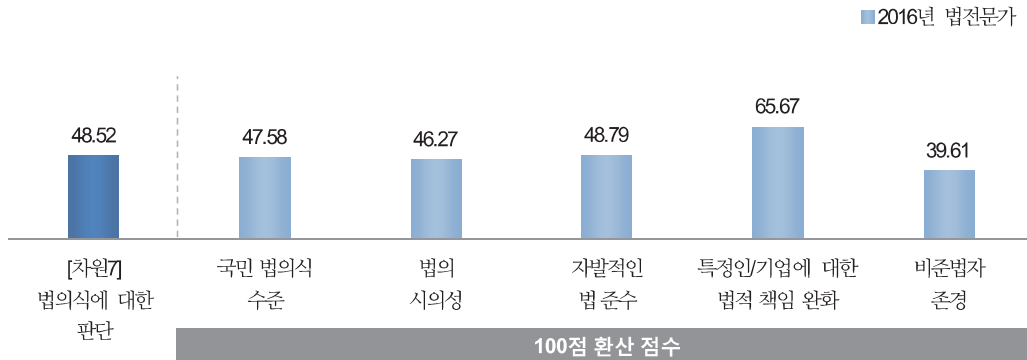
### (1) 종합 분석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은 2016년 새롭게 포함한 차원으로 법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법의식에 대한 판단하는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의 지수는 48.52점이며 지표 항목별로는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65.67점, 응답 비율 : ‘그렇다’ 12.7%, ‘보통이다’ 30.4%, ‘그렇지 않다’ 56.6%)가 가장 높았다.

[그림 96] 법의식에 대한 판단

(단위 : 점)





## (2) 특성별 분석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 중 ‘국민 법의식 수준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행정(51.53점)과 사법 분야(51.08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국가 공무원 51.34점, 지방 공무원 51.75점, 법원 공무원 54.92점)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법의 시의성’ 항목에서는 사법 분야가 54.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판사(58.33점) 직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119] 특성별 법의식에 대한 판단

구 분		차원7	국민 법의식 수준	법의 시의성	자별적인 법 준수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비준법자 존경
전 체		48.52	47.58	46.27	48.79	65.67	39.61
분야별	입법	47.03	46.19	43.05	48.51	64.07	38.74
	행정	50.02	51.53	49.29	50.47	61.44	40.09
	사법	52.62	51.08	54.68	51.65	59.62	47.94
	학계	49.16	46.88	46.88	49.76	67.38	40.75
	민간	46.38	45.35	42.21	46.32	68.72	36.69
	예비법전문가	47.66	45.21	45.42	47.08	70.83	37.29
직업별	국회의원	45.57	43.50	43.00	47.50	66.50	33.50
	국회공무원	48.66	45.00	42.00	52.00	71.00	41.00
	지방의회 의원	46.87	50.00	44.12	46.08	54.90	41.67
	국가 공무원	50.86	51.34	52.23	53.79	61.16	37.05
	지방 공무원	49.08	51.75	46.00	46.75	61.75	43.50
	판사	54.53	47.50	58.33	56.67	60.83	50.83
	검사	52.02	50.83	52.50	53.33	55.83	48.33
	법원 공무원	51.31	54.92	53.21	44.96	62.19	44.65
	로스쿨 교수	48.02	46.38	46.01	46.74	65.22	41.67
	법학과 교수	50.17	48.93	47.50	51.79	65.94	41.43
	연구원	49.28	45.29	47.10	50.72	71.01	39.13

구 분	차원7	국민 법의식 수준	법의 시의성	자발적인 법 준수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비준법자 존경
변호사	47.30	44.77	44.32	47.50	70.68	36.82
법률서비스 자격자	45.54	45.87	40.29	45.25	66.94	36.57
로스쿨과정생	48.32	42.92	48.33	47.92	73.33	37.08
박사과정생	47.00	47.50	42.50	46.25	68.33	37.50

### (3) 포트폴리오 분석(2016년 가중치 기준)

법의식에 대한 판단 차원에서는 ‘국민 법의식 수준’, ‘자발적인 법 준수’, ‘법의 시의성’ 지표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법의식 및 법준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이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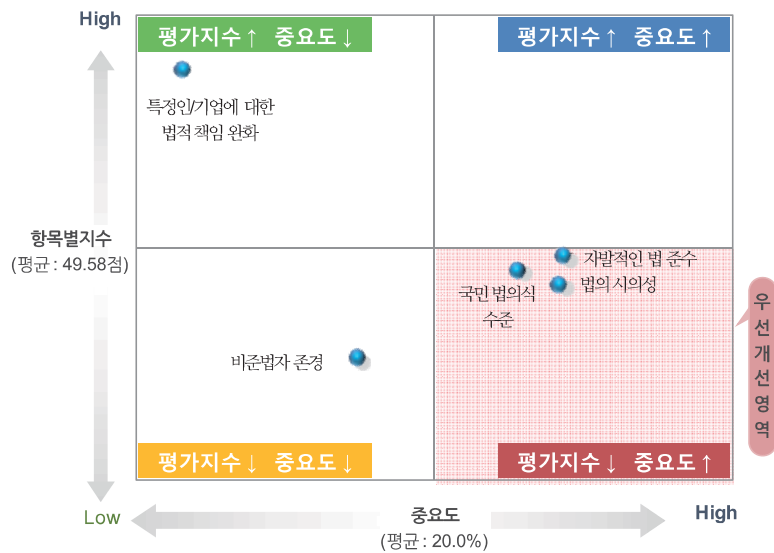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sup>316)</sup>에서는 사회 각 분야별(하위 정치, 경제, 공직선거, 치안, 교통질서, 기초생활질서, 노사, 집회 및 시위, 언론, 환경 분야의 10가지 분야)로 법질서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수준별 측정방식은 법질서 준수 수준을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1점)’-‘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7점)’)로 정하고 있다. 동 조사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법질서준수 점수가 평균 5점이 넘는 분야는 없었고 3-4점대의 점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사회분야 전반에 대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개 분야 중에서 치안, 교통질서, 기초생활분야, 노사, 언론, 환경의 6개 분야는 평균 4점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공직선거, 집회 및 시위 분야의 4개 분야는 평균 3점대의

316) 신의기 외 1인,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pp.81-82.

점수를 받았다. 법질서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계 사회분야는 ‘교통질서 분야’, ‘치안 분야’, ‘기초생활질서 분야’이다. 반면 법질서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계 분야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공직선거 분야’이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의식 수준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관련 방안을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림 97] 법의식에 대한 판단 중요도 X 법의식 지수



(4) 세부항목별 분석

① 국민 법의식 수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0.0%)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24.0%)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점수로 환산하면 47.58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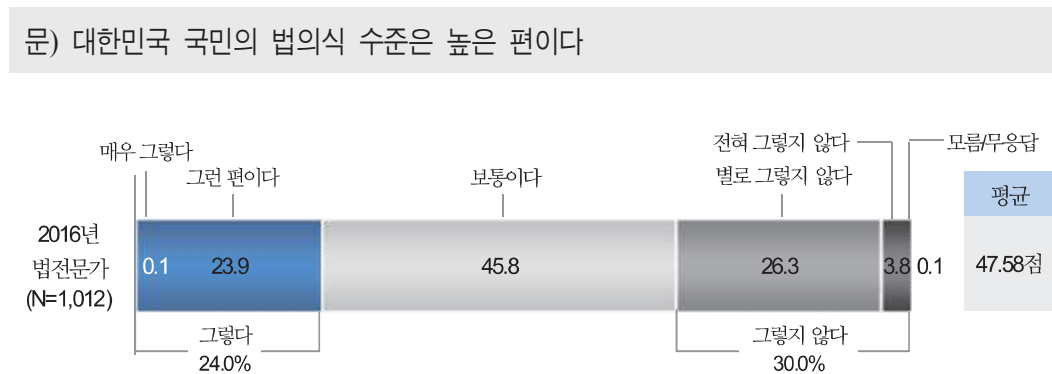
한편, 차원3 [법에 대한 준수]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30.0%)로 조사되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17.6%)은 차원7 [법의식에 대한 판단]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라는 24.0%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한편, 2015년 일반국민 결과에서는 법전문가 결과와는 반대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39.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19.6%)보다 높았으며,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가 46.32점으로 일반국민(55.16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 국민법의식 조사나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각각 49.5%와 42.3%로 나타난 결과보다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설문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항목이 없어서 긍정적인 쪽의 응답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설문 항목과, 차원3, 차원7의 설문 모두 긍정형으로 묻고 있어서 설문의 느낌에 따른 차이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98] 국민 법의식 수준

(단위 : %)



직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 법의식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 국회의원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42.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법원 공무원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6.7%)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9] 특성별 국민 법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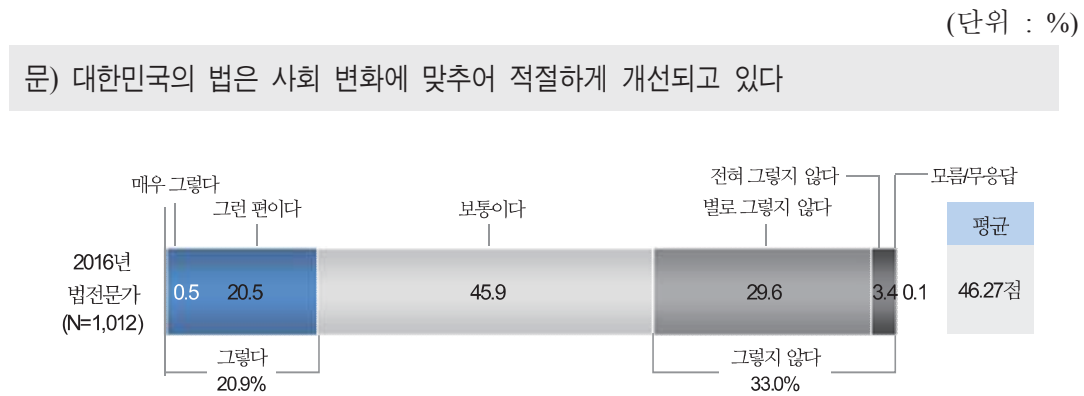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3.8	26.3	30.0	45.8	23.9	0.1	24.0	0.1	100.0	47.58	
직업 별	국회의원	(50)	2.0	40.0	42.0	40.0	18.0	0.0	18.0	0.0	100.0	43.50
	국회공무원	(50)	0.0	32.0	32.0	56.0	12.0	0.0	12.0	0.0	100.0	45.00
	지방의회의원	(51)	0.0	27.5	27.5	45.1	27.5	0.0	27.5	0.0	100.0	50.00
	국가 공무원	(112)	1.8	22.3	24.1	44.6	31.3	0.0	31.3	0.0	100.0	51.34
	지방 공무원	(100)	4.0	15.0	19.0	51.0	30.0	0.0	30.0	0.0	100.0	51.75
	판사	(30)	0.0	26.7	26.7	56.7	16.7	0.0	16.7	0.0	100.0	47.50
	검사	(30)	0.0	26.7	26.7	43.3	30.0	0.0	30.0	0.0	100.0	50.83
	법원 공무원	(30)	0.0	6.7	6.7	63.3	26.7	0.0	26.7	3.3	100.0	54.92
	로스쿨 교수	(69)	4.3	30.4	34.8	40.6	24.6	0.0	24.6	0.0	100.0	46.38
	법학과 교수	(70)	4.3	18.6	22.9	55.7	20.0	1.4	21.4	0.0	100.0	48.93
	연구원	(69)	4.3	31.9	36.2	42.0	21.7	0.0	21.7	0.0	100.0	45.29
	변호사	(110)	6.4	31.8	38.2	38.2	23.6	0.0	23.6	0.0	100.0	44.77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5.8	24.8	30.6	49.6	19.8	0.0	19.8	0.0	100.0	45.87
	로스쿨과정생	(60)	10.0	30.0	40.0	38.3	21.7	0.0	21.7	0.0	100.0	42.92
박사과정생	(60)	3.3	31.7	35.0	36.7	28.3	0.0	28.3	0.0	100.0	47.50	

② 법의 시의성

대한민국의 법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

다)는 응답이 33.0%,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20.9%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났으며 환산 점수는 46.27점으로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이 45.9%로 조사되었다.

[그림 99] 법의 시의성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의 시의성에 대해 판사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43.3%로 다른 분야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변화에 맞는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필요한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또한 신속하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설문항목에서의 간통죄 폐지에 따른 민사법적 개선방안이나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법제 개선 사항,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과 같은 설문 결과가 이러한 수요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20] 특성별 법의 시의성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3.4	29.6	33.0	45.9	20.5	0.5	20.9	0.1	100.0	46.27	
직 업 별	국회의원	(50)	2.0	36.0	38.0	50.0	12.0	0.0	12.0	0.0	100.0	43.00
	국회공무원	(50)	4.0	46.0	50.0	30.0	18.0	2.0	20.0	0.0	100.0	42.00
	지방의회의원	(51)	0.0	41.2	41.2	41.2	17.6	0.0	17.6	0.0	100.0	44.12
	국가 공무원	(112)	1.8	23.2	25.0	41.1	32.1	1.8	33.9	0.0	100.0	52.23
	지방 공무원	(100)	5.0	23.0	28.0	55.0	17.0	0.0	17.0	0.0	100.0	46.00
	판사	(30)	0.0	10.0	10.0	46.7	43.3	0.0	43.3	0.0	100.0	58.33
	검사	(30)	0.0	26.7	26.7	40.0	30.0	3.3	33.3	0.0	100.0	52.50
	법원 공무원	(30)	0.0	23.3	23.3	36.7	36.7	0.0	36.7	3.3	100.0	53.21
	로스쿨 교수	(69)	4.3	33.3	37.7	36.2	26.1	0.0	26.1	0.0	100.0	46.01
	법학과 교수	(70)	1.4	25.7	27.1	54.3	18.6	0.0	18.6	0.0	100.0	47.50
	연구원	(69)	5.8	23.2	29.0	47.8	23.2	0.0	23.2	0.0	100.0	47.10
	변호사	(110)	3.6	30.0	33.6	51.8	14.5	0.0	14.5	0.0	100.0	44.32
	법률서비스 자격자	(121)	5.8	38.0	43.8	45.5	10.7	0.0	10.7	0.0	100.0	40.29
	로스쿨과정생	(60)	3.3	23.3	26.7	51.7	20.0	1.7	21.7	0.0	100.0	48.33
박사과정생	(60)	5.0	35.0	40.0	45.0	15.0	0.0	15.0	0.0	100.0	42.50	

## ③ 자발적인 법 준수

법전문가에게 자발적인 법 준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8%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28.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면 48.79점으로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이 39.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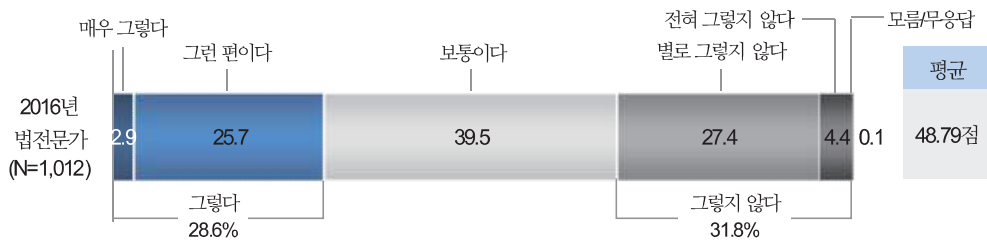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법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법전문가들의 28.6%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도 31.8%로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법전문가들의 고민은 결국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과 같은 법적 제재 강화 측면과 자신의 준법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법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개인 각각의 준법수준이 높아지면 법적 제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이에서 오는 의견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분석 문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서도 법적 책임 완화는 안 된다는 56.6%에 달하는 응답 결과가 그 고민의 원인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00] 자발적인 법 준수

(단위 : %)

문)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법 준수에 대해 지역별로는 제주권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8.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이 69.6%로 조사되었다.



[표 121] 특성별 자발적인 법 준수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4.4	27.4	31.8	39.5	25.7	2.9	28.6	0.1	100.0	48.79	
지 역 별	수도권	(586)	5.1	26.5	31.6	38.7	26.3	3.2	29.5	0.2	100.0	49.02
	중부권	(197)	5.1	28.4	33.5	35.5	27.9	3.0	31.0	0.0	100.0	48.86
	전라권	(79)	3.8	20.3	24.1	49.4	25.3	1.3	26.6	0.0	100.0	50.00
	경상권	(127)	1.6	37.8	39.4	37.8	21.3	1.6	22.8	0.0	100.0	45.87
	제주권	(23)	0.0	8.7	8.7	69.6	17.4	4.3	21.7	0.0	100.0	54.35

## ④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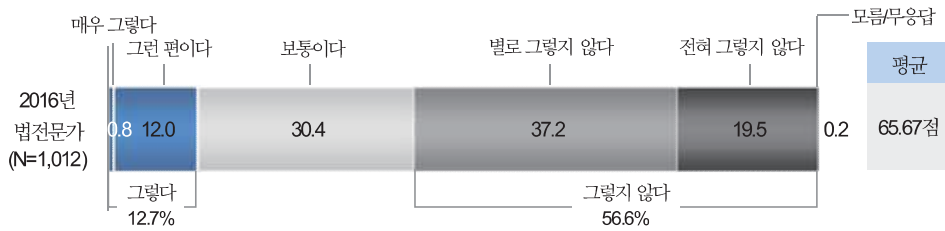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56.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면 65.67점으로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일반설문 문23)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 문25)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29)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설문에서 모두 기업이나 관련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결과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1]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단위 : %)

문)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남성(31.4%)보다 여성(65.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특성별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19.5	37.2	56.6	30.4	12.0	0.8	12.7	0.2	100.0	65.67	
성 별	남자	(726)	19.3	33.9	53.2	31.4	14.2	1.0	15.2	0.3	100.0	64.13
	여자	(286)	19.9	45.5	65.4	28.0	6.3	0.3	6.6	0.0	100.0	69.58
연 령 별	19 ~ 29세	(145)	28.3	40.7	69.0	20.7	9.0	1.4	10.3	0.0	100.0	71.38
	30대	(306)	20.9	41.2	62.1	27.8	9.8	0.3	10.1	0.0	100.0	68.14
	40대	(280)	20.4	35.4	55.7	30.7	12.9	0.7	13.6	0.0	100.0	65.45
	50대	(203)	12.8	34.5	47.3	37.4	14.3	1.0	15.3	0.0	100.0	60.96
	60세 이상	(78)	11.5	28.2	39.7	39.7	16.7	1.3	17.9	2.6	100.0	58.41

## ⑤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간의 관계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51.2%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7.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환산 점수는 39.61점으로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경우,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의 실현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행위와 판단 사이의 ‘이중성’이나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타인, 우리 사회 구성원’은 법을 잘 안지킨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법 앞에 ‘불공평’하다는 인식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특성별 분석에서 보듯이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에 대한 연관성에 대하여서도 평균보다 그 관련성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 종사자 특히, 판사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끊임없이 수범자들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괴리감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판사들은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본인의 준법수준 또한 높게 평가함으로써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의 관계 또한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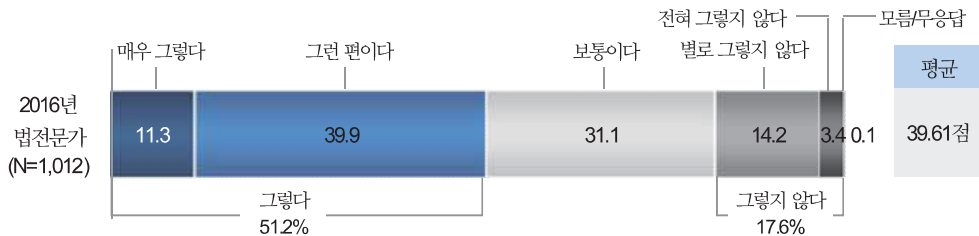
‘법의 지배’나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실현’에 관하여 논의를 펼치는 대부분의 서적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법을 제정·적용·집행·해

석하는 법전문가들이나 법의 수범자가 되는 일반국민 모두 동일한 기준과 법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7개 차원의 법의식 지표들과 앞의 일반설문항목들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은 현실세계의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변해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악법’으로 작용하더라도 이를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결국 ‘법치주의’에 다가가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현실에서 작용하는 법률이 가진 내재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수범자에게 괴리감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입법·사법·행정·학계·민간 각 분야 법전문가들 모두 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을 제정하여 수범 가능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법이 제정·적용·집행·판단·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02]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

(단위 : %)

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



분야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준법자 존경 여부에 대해 사법 분야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27.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3] 특성별 비준법자 존경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 체	(1,012)	3.4	14.2	17.6	31.1	39.9	11.3	51.2	0.1	100.0	39.61	
분야 별	입법	(151)	2.0	19.2	21.2	23.8	41.7	13.2	55.0	0.0	100.0	38.74
	행정	(212)	3.3	16.5	19.8	27.8	42.0	10.4	52.4	0.0	100.0	40.09
	사법	(90)	1.1	17.8	18.9	52.2	27.8	0.0	27.8	1.1	100.0	47.94
	학계	(208)	4.3	13.0	17.3	34.1	38.5	10.1	48.6	0.0	100.0	40.75
	민간	(231)	3.0	10.4	13.4	30.3	42.9	13.4	56.3	0.0	100.0	36.69
	예비법전문가	(120)	5.8	10.8	16.7	26.7	40.0	16.7	56.7	0.0	100.0	37.29

## 제 6 장 결 론

1. 본 연구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곧, ‘법의 지배’<sup>317)</sup>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이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전문가 법의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들을 통하여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법인식 변화와 함께 일반국민과 법전문가들 사이의 법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법전문가의 법인식에 근거하여 향후 입법·행정·사법기관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개발하고,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전문가의 법인식도 함께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8개 문항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2015년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와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5개의 대상 설문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각각의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채택하였던 설문항목 중에서 법전문가의 법인식 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의 경우에는 최근 현황에 맞게 변경·보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반 설문항목들의

---

317) 법의 지배에 대한 개념 및 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om Bingham (김기창 옮김),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 -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이음, 2013.1, pp.15-26; 김도현,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8, pp.277-290 등을 참고.

경우에도 이전의 설문항목들이 단순한 인식만을 묻거나 그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형태로 설계되어 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전문가 법의식 시계열 분석 대상 항목이나 국민법의식과의 비교 분석 대상 항목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경우 하위항목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선방안을 함께 설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식은 법제 관련 이슈 설문항목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던 국민법의식 지표를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 맞도록 보완하여 국민법의식 지표에 사용된 6개 차원별 항목에 더하여 법전문가로서의 법의식에 대한 판단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향후, 법의식 조사연구의 비교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분야에서는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① 법에 대한 느낌, ②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와 개선 사항, ③ 우리사회의 준법수준 진단 및 ④ 자가진단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⑤ 악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2009년의 결과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응답결과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사법 분야(판사, 검사, 법원공무원)의 조사결과가 다른 분야 법전문가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즉, 법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우리사회의 준법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고,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응답도 73.3%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령별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이하(20대 33.5%, 30대 34.1%, 평균은 28.1%)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50대 30.5%, 60세 이상 33.3%, 평균은 23.9%)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높았다.

2015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설계한 항목인 ① 법에 대한 느낌, ② 우리사회의 준법수준 진단 및 ④ 자가진단 ⑤ 불량품 구매시 대처방안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51.2%)나 2015년의 결과(49.5%) 보다 더 낮게(42.3%)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99.0)나 2015년의 결과(91.7%) 와 유사한 수준(97%)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75.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관련부처에 제안 및 건의(33.3%)하거나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28.1) 또는 인터넷/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을 게재(18.1%) 하겠다고 답하여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량품 구매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결과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i) 2015년 일반국민들의 응답은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41.4%), ii) 한 번 산것이니 어쩔 수 없다(41.2%)고 응답한 반면, 2016년의 법전문가들의 응답은 i)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78.9%), ii)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8.7%), iii) 한번 산것이니 어쩔 수 없다(8.2%), iv) 손해배상을 청구한다(1.7%) 순서로 대처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에 관한 ① 기관·분야별 법치주의, ② 헌법 개정, ③ 입법과정 개선 부문의 설문항목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정도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법부(36.1%)의 수행 정도를 입법부(12.7%)나 행정부(23.8%)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전문가의 종사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종사분야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2배 정도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 하였다.

다음으로 ① 국민의 권리보호, ② 경제 발전, ③ 사회 복지, ④ 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국민의 권리보호 25.4%, 경제발전 20.6%, 사회 복지 20.0%, 안전 관리 11.3%)를 보였고,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그치고 있어 향후 안전 관리 분야의 법제 개선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전문가의 종사 분야별로 볼 때,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하여서도 법정서 관련 항목과 마찬가지로 사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국민의 권리보호 43.3%, 사회 복지 28.9%, 안전 관리 20.0%)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법전문가의 분야별 특성으로 볼 때는 모든 분야에서 찬성한다(60% 이상)는 응답이 많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1순위 52.1%, 1+2순위 67.1%)하였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45.9%)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53.1%)는 의견이 그렇다(46.8%)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70.7%),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80.6%),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

화(76.4%),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81.4%)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57.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4. 최근의 사회 문제와 현행 법제에 대한 설문은 새롭게 개발된 문항과 시계열 분석 내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개발되거나 이전에 수행된 조사항목들을 변경·보완한 항목들은 제3장의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설문하였다. 2009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 내지 2015년의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와의 시계열 분석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문항으로는 ① 성매매 종사자 처벌 찬반, ②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와 이유, ③ 무의미한 연명 치료 등을 채택하였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 부문에서는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5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2016년 3월 31일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해 내려진 합헌 결정에 대하여, 2015년의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법전문가들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다소 많아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인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가 가장 많았으며,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20.8%)도 다른 사항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42.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62.7%)이 나와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와 대조된다. 그리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42.7%)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는 결국, 제도나 법이 완비되더라도 실생활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28.9%)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전문가의 44.5%가 국공립 교육 시설 확대를 응답하였다.

안전 관리 부문에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대부분(98.8%)이 찬성하였고, 64.8%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응답한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응답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33.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보공시 의무 대상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28.0%)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 법제 정비(26.8%)를 꼽았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35.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27.8%)과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26.9%)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직접 관련자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9%)와 과정생(25.0%)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해 주목할 만하다.

생명권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59.2%)는 의견이 많았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여전히 찬성한다(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 12.8%가 각각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내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찬성(48.7%)과 반대(51.3%) 의견이 팽팽히 대립고 있으나, 여성(59.1%)이 남성(44.6%)보다,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34.6% → 19~29세 65.5%)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아 동성혼의 합법화와 혜택 인정에 대한 태도는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분야에서는 52.98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53.58점으로 집계되어 국민법의식 지수(52.88)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차원별로 종합 분석하여 본 결과,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도가 높은 것에 비하여 평가 지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어 향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구성원(정부, 지자체, 법원, 기업, 국민)의 법에 대한 준수에 대하여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평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어, 향후 법 준수에 대한 사항도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5장 사회문제와 관련된 이슈 관련 설문항목에서 법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 법제의 개선 및 보완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외 보고서

- 박상철 외 2인, 『1991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 박상철 외 2인, 『1994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상철 · 김일환 · 최철영,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6.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행정입법 분석사례』, 1999.
- 김해성,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2007.11.
- 김해성,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8.
-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2008.
- 환경부, 『환경 30년사』, 2010.
- 오민수,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2011.
- 손명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 조윤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제10호, 2012, 10.
- 최효미 · 이상호 · 성재민 · 배기준, 『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 기법 연구 -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방법 -』, 한국노동연구원, 2012.
- 신의기 · 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참고문헌

- 안상훈, 『제5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2012.
- 이창훈 · 한상운 · 한미진 · 박시원 · 안윤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3.
- 박선영 · 송효진 · 구미영 · 김정혜 · 유혜경,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황지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홍완식,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법제처, 2013.
-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5.12.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15.3.
-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기준」, 2000.11.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2015.
- 박종원, 「환경법의 기본이해」, 녹색법률센터.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2015  
([http://world\\_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law-index-2015-report](http://world_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law-index-2015-report))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edition』, 2015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863#>)
-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2014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law-index-2014-report>)
-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2015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law-index-2015-report>)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6』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6>)
-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52호, 2015년 3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53호, 2015년 3월 2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56호, 2015년 4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 외국 저서 및 번역서

- Mike Mcconville · Wing Hong Chui 편저, 『Research Methods for Law』,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 툼 빙헴 지음 / 김기창 옮김,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 -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이음, 2013.1.
- Marx and Engels(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Die Deutsche Ideologie  
(The German Ideology))』(1846년), 1988.
- Marx and Engels(권혁 역),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8년), 2010.



## 국내 저서

-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 인식 구조 변화』, 나남출판, 2006.6.
- 김도현,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8.
- 양 건, 『법앞에 불평등한가? 왜? - 법철학·법사회학 산책』, 법문사, 2015.8.
- 하지철, 『마케팅조사 실무노트 I』, 이담출판사, 2010.
- 한근식, 『조사연구방법론』, 경문사, 2000.
- 배규한·이태림·이기재,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고려정보산업, 2000.
- Earl R. Babbie. 고성호 외 10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제11판』, 2007.
- 정우석·손일권, 『과학적 조사방법론』, 두양사, 2010.
- 강병서·조철호, 『연구조사방법론』, 무역경영사, 2006.
-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령용어사례집』, 2016.

## 국내 논문

- 조찬래,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國際文化研究』 Vol.17,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9.
- 박숙자,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제17권 제20호, 한국여성학회, 2001.
- 장종환, 『사회과 법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8.
- 김희재, “국민생활시간조사 실시시간 분석을 위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 6. No5, 2004.10.
- 문혜선 · 이정동, “국가종합과학기술지수의 도출과 적용: 종합지수를 통한 주요 선진국과의 국가과학기술활동 비교”, 『기술혁신 연구』 제13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6.
- 최성호 · 문혜선, “국가기술사업화지표 개발 방안 연구”, 『기술혁신 학회지』 제9권 제1호, 기술혁신학회, 2006.3.
- 김숙자, “한국 여성의 법적지위 변천 : 정부 수립 후 오늘까지 50년 간의 법적 지위”, 『여성 · 가족생활연구』 제10집,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6.
- 이현환, “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헌법학연구』 第14卷 第4號, 한국헌법학회, 2008.
- 정만희,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학연구』 第14卷 第4號, 한국헌법학회, 2008.
- 김대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제5호, 유럽헌법학회, 2009.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憲法學研究』 第15卷 第2號,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9.
-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法學研究』 第36輯, 한국법학회, 2009.
- 황승흠,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2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2.
-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 제30집, 2010.

- 김한나·김계현,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박광민·김웅선,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成均館法學』 第22卷 第3號,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정호·류춘호·정태영,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6권 3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9.
- 조성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2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 김기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과탄주의”, 『圓光法學』 Vol.26 No.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박정원,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統一과 法律』 Vol.-No.1,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 김현철,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저스티스』 121, 한국법학원, 2010.12.
-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2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한유경, 『고등학교 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자영, “교과의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방안 탐색”,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7권1호, 2012.

- 장소영,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統一과 法律』 Vol.- No.11,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 석인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Vol.16 No.3,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研究所, 2012.
-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法學論叢』 Vol.19 No.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정호, “사회과학에서 측정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제5권 제3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2.12.
- 이소현, “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 『국제법무』 제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 오봉근, 『위법한 행정입법의 유형별 분석과 국회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조규식 외 1명,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법과 정책 연구』 14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 오미영,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 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2014.
- 김태윤, “입법부와 규제개혁 -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23권 특집호, 2014.
- 김성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6권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 김해성, “‘비대칭적 정의감’의 의미와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 연구』 제47권 3호, 2015.9.
-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通卷146-2號, 한국법학원, 2015.
- 조한상,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토론제도를 중심으로”, 『法學研究』 第60輯, 2015.
-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 장영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제80호, 고려대학교, 2016.
-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Spring 2016』 제28호, 2016.
- 이근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측정 - 가중치 부여와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2005.
- 서준배, “범죄 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경찰대학, 2013.7.

## 관련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법제처 공식블로그(<http://moleg.tistory.com/277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index.do>)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nec.go.kr/portal/main.do>)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교육부(<http://www.moe.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http://terms.tta.or.kr/dictionary/>)  
녹색법률센터 (<http://www.oecd.org/sti/consumer/34023811.pdf>)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SBS뉴스(<http://news.sbs.co.kr>)  
폴리뉴스(<http://m.polinews.co.kr>)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

참 고 문 헌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YTN사이언스(<http://science.ytn.co.kr>)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  
연합뉴스TV(<http://news.naver.com>)  
스포츠동아(<http://sports.donga.com>)  
이투데이(<http://www.etoday.co.kr>)  
뉴스1(<http://news1.kr>)  
매일경제(<http://news.mk.co.kr>)  
비즈니스포스트(<http://www.businesspost.co.kr>)  
경향신문(<http://news.khan.co.kr>)  
MK 뉴스(<http://news.mk.co.kr>)  
MBC TV(<http://imnews.imbc.com>)  
MBN(<http://star.mbn.co.kr>)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동아일보(<http://news.donga.com>)  
프레스리안(<http://www.pressian.com>)  
the300(<http://the300.mt.co.kr>)  
머니투데이(<http://www.mt.co.kr>)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  
세계일보(<http://www.segye.com>)  
서울경제(<http://economy.hankooki.com>)  
YTN(<http://www.ytn.co.kr>)

비즈니스워치(<http://www.bizwatch.co.kr>)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  
이 데일리(<http://www.edaily.co.kr>)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뉴시스(<http://www.newsis.com>)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KBS TV(<http://news.kbs.co.kr>)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신동아(<http://shindonga.donga.com>)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JTBC(<http://news.jtbc.joins.com>)  
다음(<http://www.daum.net/>)  
법률소비자연맹(<http://www.goodlaw.org>)  
이행덕 블로그(<http://eargood.blog.me/40204048372>)  
법률저널(<http://www.lec.co.kr/>)  
한국방송공사(<http://news.kbs.co.kr/>)  
국민일보(<http://news.kmib.co.kr/>)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



## 부록 I. 교차집계표

## 《 응답자 특성 》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
전 체		1,012	100.0
성 별	남 자	726	71.7
	여 자	286	28.3
연 령 별	19 ~ 29 세	145	14.3
	30 대	306	30.2
	40 대	280	27.7
	50 대	203	20.1
	60 세 이상	78	7.7
지 역 별	수 도 권	586	57.9
	중 부 권	197	19.5
	전 라 권	79	7.8
	경 상 권 계 주 권	127 23	12.5 2.3
분 야 별	입 법	151	14.9
	행 정	212	20.9
	사 법	90	8.9
	학 계	208	20.6
	민 간	231	22.8
	예 비 법 전문 가	120	11.9
직 업 별	국 회 의 원	50	4.9
	국 회 공 무 원	50	4.9
	지 방 의 회 의 원	51	5.0
	국 가 공 무 원	112	11.1
	지 방 공 무 원	100	9.9
	관 사	30	3.0
	검 사	30	3.0
	법 원 공 무 원	30	3.0
	로 스쿨 교수	69	6.8
	법 학 과 교수	70	6.9
	연 구 원	69	6.8
	변 호 사	110	10.9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2.0
	로 스쿨 과정 생	60	5.9
박 사 과 정 생	60	5.9	
법률관련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21.8
	타 자 격 증	136	13.4
	없 음	658	65.0
법관연종사기간	1 ~ 5 년	444	43.9
	6 ~ 10 년	218	21.5
	11 ~ 15 년	89	8.8
	16 ~ 20 년	107	10.6
	21년 이상	128	12.6
	무 응 답	26	2.6

【부 록】

표 1. 법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공평하다	민주적이다	불공평하다	권위적이다	기타	계 (비율)	
전 체		1,012	34.4	12.5	12.3	30.9	10.0	100.0	
성별	남 자	726	37.1	12.1	13.2	28.5	9.1	100.0	
	여 자	286	27.6	13.3	9.8	37.1	12.2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33.1	18.6	9.7	27.6	11.0	100.0	
	30 대	306	35.0	10.5	10.5	33.3	10.8	100.0	
	40 대	280	32.5	11.1	13.2	32.1	11.1	100.0	
	50 대	203	35.0	9.9	14.8	32.0	8.4	100.0	
	60 세 이상	78	39.7	20.5	14.1	20.5	5.1	100.0	
지역별	수도 권	586	32.9	13.7	13.1	31.7	8.5	100.0	
	중부 권	197	34.5	9.1	9.1	33.0	14.2	100.0	
	전라 권	79	32.9	11.4	15.2	32.9	7.6	100.0	
	경상 권	127	41.7	11.8	11.0	22.8	12.6	100.0	
분야별	입법	151	18.5	16.6	16.6	40.4	7.9	100.0	
	행정	212	34.9	8.5	8.0	39.6	9.0	100.0	
	사법	90	58.9	18.9	3.3	12.2	6.7	100.0	
	학계	208	34.1	8.2	15.4	29.8	12.5	100.0	
	민간	231	35.5	13.9	15.6	24.2	10.8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33.3	14.2	9.2	32.5	10.8	100.0	
	국회의원	50	14.0	22.0	12.0	44.0	8.0	100.0	
	국회공무원	50	14.0	8.0	16.0	50.0	12.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7.5	19.6	21.6	27.5	3.9	100.0	
	국가공무원	112	38.4	6.3	6.3	37.5	11.6	100.0	
	지방공무원	100	31.0	11.0	10.0	42.0	6.0	100.0	
	판사	30	70.0	13.3	0.0	3.3	13.3	100.0	
	검사	30	60.0	23.3	0.0	16.7	0.0	100.0	
	법원공무원	30	46.7	20.0	10.0	16.7	6.7	100.0	
	로스쿨교수	69	39.1	5.8	14.5	30.4	10.1	100.0	
	법학과교수	70	38.6	12.9	15.7	24.3	8.6	100.0	
	연구원	69	24.6	5.8	15.9	34.8	18.8	100.0	
	변호사	110	40.9	10.9	9.1	22.7	16.4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0.6	16.5	21.5	25.6	5.8	100.0	
	로스쿨과정생	60	41.7	11.7	8.3	26.7	11.7	100.0	
	박사과정생	60	25.0	16.7	10.0	38.3	1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47.5	12.2	7.2	19.0	14.0	100.0	
	타자격증	136	32.4	16.9	19.9	24.3	6.6	100.0	
	없음	658	30.4	11.6	12.3	36.3	9.4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32.2	14.4	10.4	32.9	10.1	100.0
		6 ~ 10 년	218	32.1	10.1	13.8	32.6	11.5	100.0
		11 ~ 15 년	89	31.5	9.0	14.6	37.1	7.9	100.0
		16 ~ 20 년	107	40.2	12.1	12.1	25.2	10.3	100.0
21년 이상		128	43.0	12.5	12.5	24.2	7.8	100.0	
무응답	26	34.6	11.5	23.1	19.2	11.5	100.0		

표 2. 초·중·고 법 교육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잘되고 있다	대체로 잘되고 있다		별로 잘 못되고 있다	전혀 못 되고 있다			
전 체	1,012	0.7	24.5	25.2	62.1	12.7	74.8	100.0	
성별	남 자	726	0.4	24.4	24.8	62.7	12.5	75.2	100.0
	여 자	286	1.4	24.8	26.2	60.5	13.3	73.8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0.0	24.8	24.8	61.4	13.8	75.2	100.0
	30 대	306	1.0	25.2	26.1	56.5	17.3	73.9	100.0
	40 대	280	0.4	23.2	23.6	66.4	10.0	76.4	100.0
	50 대	203	1.0	24.6	25.6	63.5	10.8	74.4	100.0
	60세 이상	78	1.3	25.6	26.9	65.4	7.7	73.1	100.0
지역별	수도 권	586	0.7	23.7	24.4	60.9	14.7	75.6	100.0
	중부 권	197	1.5	23.4	24.9	63.5	11.7	75.1	100.0
	전라 권	79	0.0	29.1	29.1	64.6	6.3	70.9	100.0
	경상 권 제주 권	127 23	0.0 0.0	24.4 39.1	24.4 39.1	65.4 52.2	10.2 8.7	75.6 60.9	100.0 100.0
분야별	입법	151	0.7	18.5	19.2	67.5	13.2	80.8	100.0
	행정	212	0.9	29.7	30.7	59.9	9.4	69.3	100.0
	사법	90	0.0	33.3	33.3	62.2	4.4	66.7	100.0
	학계	208	0.0	23.6	23.6	63.0	13.5	76.4	100.0
	민간	231	1.7	22.1	23.8	62.8	13.4	76.2	100.0
	예비법전문가	120	0.0	22.5	22.5	55.8	21.7	77.5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0.0	18.0	18.0	66.0	16.0	82.0	100.0
	국회공무원	50	0.0	22.0	22.0	66.0	12.0	78.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0	15.7	17.6	70.6	11.8	82.4	100.0
	국가공무원	112	0.9	28.6	29.5	61.6	8.9	70.5	100.0
	지방공무원	100	1.0	31.0	32.0	58.0	10.0	68.0	100.0
	판사	30	0.0	30.0	30.0	66.7	3.3	70.0	100.0
	검사	30	0.0	33.3	33.3	60.0	6.7	66.7	100.0
	법원공무원	30	0.0	36.7	36.7	60.0	3.3	63.3	100.0
	로스쿨교수	69	0.0	23.2	23.2	66.7	10.1	76.8	100.0
	법학과교수	70	0.0	24.3	24.3	67.1	8.6	75.7	100.0
	연구원	69	0.0	23.2	23.2	55.1	21.7	76.8	100.0
	변호사	110	1.8	18.2	20.0	63.6	16.4	8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7	25.6	27.3	62.0	10.7	72.7	100.0
로스쿨과정생	60	0.0	20.0	20.0	56.7	23.3	80.0	100.0	
박사과정생	60	0.0	25.0	25.0	55.0	20.0	75.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9	25.3	26.2	61.5	12.2	73.8	100.0
	타자격증	136	1.5	25.0	26.5	60.3	13.2	73.5	100.0
	없음	658	0.5	24.0	24.5	62.5	13.1	75.5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0.2	23.9	24.1	61.0	14.9	75.9	100.0
	6 ~ 10년	218	2.3	20.6	22.9	63.3	13.8	77.1	100.0
	11 ~ 15년	89	0.0	24.7	24.7	65.2	10.1	75.3	100.0
	16 ~ 20년	107	0.9	32.7	33.6	59.8	6.5	66.4	100.0
	21년 이상	128	0.0	24.2	24.2	65.6	10.2	75.8	100.0
무응답	26	0.0	34.6	34.6	50.0	15.4	65.4	100.0	

【부 록】

표 2-1. 법 교육 개선 필요 사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법 교육 전문가 추가 양성	교육부와 법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비율)
전체	757	28.1	23.9	21.8	18.6	7.0	0.5	100.0
성별								
남자	546	27.7	24.7	20.5	19.0	7.5	0.5	100.0
여자	211	29.4	21.8	25.1	17.5	5.7	0.5	100.0
연령별								
19 ~ 29세	109	33.0	19.3	22.9	21.1	2.8	0.9	100.0
30대	226	34.1	18.6	23.0	18.1	5.8	0.4	100.0
40대	214	25.2	24.8	23.4	16.8	9.3	0.5	100.0
50대	151	21.9	30.5	18.5	20.5	7.9	0.7	100.0
60세 이상	57	22.8	33.3	17.5	17.5	8.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443	31.4	24.2	21.9	14.9	7.0	0.7	100.0
중부권	148	23.6	26.4	16.2	25.7	7.4	0.7	100.0
전라권	56	19.6	17.9	33.9	21.4	7.1	0.0	100.0
경상권	96	25.0	25.0	21.9	22.9	5.2	0.0	100.0
제주권	14	28.6	7.1	28.6	21.4	14.3	0.0	100.0
분야별								
입법	122	27.9	30.3	12.3	19.7	8.2	1.6	100.0
행정	147	23.8	27.2	20.4	22.4	6.1	0.0	100.0
사법	60	35.0	18.3	18.3	20.0	8.3	0.0	100.0
학계	159	25.2	27.7	24.5	15.1	7.5	0.0	100.0
민간	176	30.1	18.2	23.3	20.5	6.8	1.1	100.0
예비법전문가	93	32.3	18.3	31.2	12.9	5.4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41	36.6	26.8	12.2	24.4	0.0	0.0	100.0
국회공무원	39	28.2	28.2	12.8	10.3	17.9	2.6	100.0
지방의회 의원	42	19.0	35.7	11.9	23.8	7.1	2.4	100.0
국가공무원	79	24.1	27.8	19.0	22.8	6.3	0.0	100.0
지방공무원	68	23.5	26.5	22.1	22.1	5.9	0.0	100.0
관사	21	38.1	14.3	14.3	19.0	14.3	0.0	100.0
검사	20	45.0	20.0	10.0	20.0	5.0	0.0	100.0
법원 공무원	19	21.1	21.1	31.6	21.1	5.3	0.0	100.0
로스쿨 교수	53	24.5	28.3	24.5	17.0	5.7	0.0	100.0
법학과 교수	53	32.1	24.5	20.8	11.3	11.3	0.0	100.0
연구원	53	18.9	30.2	28.3	17.0	5.7	0.0	100.0
변호사	88	29.5	12.5	25.0	25.0	5.7	2.3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88	30.7	23.9	21.6	15.9	8.0	0.0	100.0
로스쿨과정생	48	33.3	18.8	25.0	16.7	6.3	0.0	100.0
박사과정생	45	31.1	17.8	37.8	8.9	4.4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163	32.5	17.2	23.9	19.0	6.7	0.6	100.0
타 자격증	100	30.0	26.0	21.0	15.0	7.0	1.0	100.0
없음	497	26.4	26.0	21.1	19.1	7.0	0.4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년	337	31.2	23.7	21.4	20.2	2.4	1.2	100.0
6 ~ 10년	168	25.6	22.0	22.6	16.7	13.1	0.0	100.0
11 ~ 15년	67	26.9	22.4	23.9	14.9	11.9	0.0	100.0
16 ~ 20년	71	21.1	26.8	21.1	23.9	7.0	0.0	100.0
21년 이상	97	24.7	26.8	22.7	16.5	9.3	0.0	100.0
무응답	17	47.1	23.5	11.8	11.8	5.9	0.0	100.0

표 3. 법 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잘 지켜지는 편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b>전 체</b>	<b>1,012</b>	<b>0.8</b>	<b>41.5</b>	<b>42.3</b>	<b>56.2</b>	<b>1.4</b>	<b>57.6</b>	<b>0.1</b>	<b>100.0</b>	
성별	남 자	726	0.8	39.9	40.8	57.6	1.5	59.1	0.1	100.0
	여 자	286	0.7	45.5	46.2	52.8	1.0	53.8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0.7	44.1	44.8	52.4	2.8	55.2	0.0	100.0
	30 대	306	1.0	41.2	42.2	56.2	1.6	57.8	0.0	100.0
	40 대	280	1.1	41.8	42.9	55.7	1.4	57.1	0.0	100.0
	50 대	203	0.0	38.4	38.4	61.1	0.0	61.1	0.5	100.0
	60세 이상	78	1.3	44.9	46.2	52.6	1.3	53.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0	42.0	43.0	54.9	1.9	56.8	0.2	100.0
	중부권	197	0.0	39.6	39.6	59.9	0.5	60.4	0.0	100.0
	전라권	79	0.0	43.0	43.0	54.4	2.5	57.0	0.0	100.0
	경상권	127	0.0	40.9	40.9	59.1	0.0	59.1	0.0	100.0
	제주권	23	8.7	43.5	52.2	47.8	0.0	47.8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2.0	38.4	40.4	58.3	0.7	58.9	0.7	100.0
	행정	212	0.5	45.3	45.8	54.2	0.0	54.2	0.0	100.0
	사법	90	2.2	54.4	56.7	43.3	0.0	43.3	0.0	100.0
	학계	208	0.5	35.6	36.1	62.0	1.9	63.9	0.0	100.0
	민간	231	0.4	38.5	39.0	59.3	1.7	61.0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0.0	45.0	45.0	50.8	4.2	55.0	0.0	100.0
	국회의원	50	6.0	48.0	54.0	44.0	2.0	46.0	0.0	100.0
	국회공무원	50	0.0	36.0	36.0	62.0	0.0	62.0	2.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1.4	31.4	68.6	0.0	68.6	0.0	100.0
	국가공무원	112	0.0	42.9	42.9	57.1	0.0	57.1	0.0	100.0
	지방공무원	100	1.0	48.0	49.0	51.0	0.0	51.0	0.0	100.0
	관사	30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검사	30	6.7	50.0	56.7	43.3	0.0	43.3	0.0	100.0
	법원공무원	30	0.0	63.3	63.3	36.7	0.0	36.7	0.0	100.0
	로스쿨교수	69	0.0	36.2	36.2	63.8	0.0	63.8	0.0	100.0
	법학과교수	70	1.4	32.9	34.3	62.9	2.9	65.7	0.0	100.0
	연구원	69	0.0	37.7	37.7	59.4	2.9	62.3	0.0	100.0
	변호사	110	0.0	35.5	35.5	62.7	1.8	64.5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41.3	42.1	56.2	1.7	57.9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0.0	45.0	45.0	50.0	5.0	55.0	0.0	100.0
박사과정생	60	0.0	45.0	45.0	51.7	3.3	55.0	0.0	100.0	
법률 관련 자격 증	변호사자격증	221	0.9	41.6	42.5	56.6	0.9	57.5	0.0	100.0
	타자격증	136	0.7	40.4	41.2	57.4	1.5	58.8	0.0	100.0
	없음	658	0.8	41.6	42.4	55.9	1.5	57.4	0.2	100.0
법 관 련 사 건 기간	1 ~ 5년	444	0.9	43.9	44.8	53.4	1.6	55.0	0.2	100.0
	6 ~ 10년	218	0.5	35.3	35.8	62.8	1.4	64.2	0.0	100.0
	11 ~ 15년	89	0.0	37.1	37.1	61.8	1.1	62.9	0.0	100.0
	16 ~ 20년	107	1.9	39.3	41.1	57.9	0.9	58.9	0.0	100.0
	21년 이상	128	0.8	49.2	50.0	50.0	0.0	50.0	0.0	100.0
	무응답	26	0.0	38.5	38.5	53.8	7.7	61.5	0.0	100.0

【부 록】

표 3-1. 법 비준수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기타	계 (비율)	
전체	583	11.3	13.9	30.4	5.5	20.4	12.9	5.7	100.0	
성별	남자	429	9.8	14.7	31.9	5.6	19.1	13.3	5.6	100.0
	여자	154	15.6	11.7	26.0	5.2	24.0	11.7	5.8	100.0
연령별	19 ~ 29세	80	8.8	17.5	33.8	7.5	18.8	11.3	2.5	100.0
	30대	177	14.1	12.4	26.6	6.2	23.7	11.9	5.1	100.0
	40대	160	10.0	16.9	30.0	4.4	18.1	13.8	6.9	100.0
	50대	124	10.5	12.1	36.3	4.0	19.4	10.5	7.3	100.0
	60세 이상	42	11.9	7.1	23.8	7.1	21.4	23.8	4.8	100.0
지역별	수도권	333	12.0	15.0	28.8	6.3	20.4	13.2	4.2	100.0
	중부권	119	7.6	14.3	29.4	6.7	19.3	12.6	10.1	100.0
	전라권	45	8.9	13.3	40.0	4.4	20.0	11.1	2.2	100.0
	경상주	75	14.7	9.3	30.7	1.3	21.3	14.7	8.0	100.0
분야별	입법	89	9.0	18.0	28.1	7.9	12.4	19.1	5.6	100.0
	행정	115	12.2	10.4	38.3	1.7	21.7	7.8	7.8	100.0
	사법	39	2.6	20.5	35.9	7.7	25.6	5.1	2.6	100.0
	학계	133	8.3	12.0	34.6	4.5	23.3	9.8	7.5	100.0
	민간	141	17.7	14.2	17.7	5.7	20.6	19.1	5.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66	10.6	13.6	34.8	9.1	19.7	10.6	1.5	100.0
	국회의원	23	4.3	13.0	17.4	13.0	8.7	39.1	4.3	100.0
	국회공무원	31	9.7	16.1	29.0	6.5	16.1	16.1	6.5	100.0
	지방의회 의원	35	11.4	22.9	34.3	5.7	11.4	8.6	5.7	100.0
	국가공무원	64	10.9	14.1	37.5	3.1	20.3	7.8	6.3	100.0
	지방공무원	51	13.7	5.9	39.2	0.0	23.5	7.8	9.8	100.0
	관사	15	6.7	26.7	33.3	6.7	20.0	6.7	0.0	100.0
	검사	13	0.0	15.4	23.1	0.0	53.8	7.7	0.0	100.0
	법원공무원	11	0.0	18.2	54.5	18.2	0.0	0.0	9.1	100.0
	로스쿨교수	44	6.8	18.2	27.3	2.3	27.3	11.4	6.8	100.0
	법학과교수	46	13.0	8.7	39.1	8.7	13.0	10.9	6.5	100.0
	연구원	43	4.7	9.3	37.2	2.3	30.2	7.0	9.3	100.0
	변호사	71	19.7	14.1	15.5	7.0	21.1	16.9	5.6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70	15.7	14.3	20.0	4.3	20.0	21.4	4.3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로스쿨과정생	33	18.2	15.2	33.3	15.2	9.1	9.1	0.0	100.0
	박사과정생	33	3.0	12.1	36.4	3.0	30.3	12.1	3.0	100.0
	변호사자격증	127	14.2	15.0	23.6	4.7	24.4	14.2	3.9	100.0
타자격증	80	16.3	15.0	20.0	3.8	22.5	17.5	5.0	100.0	
없음	378	9.5	13.2	34.7	6.1	18.8	11.4	6.3	100.0	
법관련 중사 기간	1 ~ 5년	244	12.7	15.6	29.1	6.6	16.4	15.6	4.1	100.0
	6 ~ 10년	140	11.4	12.1	24.3	5.0	30.7	9.3	7.1	100.0
	11 ~ 15년	56	8.9	16.1	41.1	5.4	16.1	7.1	5.4	100.0
	16 ~ 20년	63	7.9	11.1	34.9	4.8	15.9	19.0	6.3	100.0
	21년 이상	64	10.9	12.5	35.9	3.1	17.2	12.5	7.8	100.0
무응답	16	12.5	12.5	25.0	6.3	37.5	0.0	6.3	100.0	

표 4. 법준수 자가 진단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③+④	계 (비율)	
		매우 잘 지킨다	잘 지키는 편이다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b>전 체</b>	<b>1,012</b>	<b>18.2</b>	<b>78.9</b>	<b>97.0</b>	<b>3.0</b>	<b>3.0</b>	<b>100.0</b>	
성별	남 자	726	16.5	80.4	97.0	3.0	3.0	100.0
	여 자	286	22.4	74.8	97.2	2.8	2.8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3.8	82.1	95.9	4.1	4.1	100.0
	30 대	306	19.6	77.5	97.1	2.9	2.9	100.0
	40 대	280	20.0	77.5	97.5	2.5	2.5	100.0
	50 대	203	16.7	81.3	98.0	2.0	2.0	100.0
	60세 이상	78	17.9	76.9	94.9	5.1	5.1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8.6	78.0	96.6	3.4	3.4	100.0
	중부권	197	17.3	80.2	97.5	2.5	2.5	100.0
	전라권	79	10.1	88.6	98.7	1.3	1.3	100.0
	경상권	127	22.0	74.8	96.9	3.1	3.1	100.0
	제주권	23	21.7	78.3	100.0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17.2	78.8	96.0	4.0	4.0	100.0
	행정	212	17.9	80.2	98.1	1.9	1.9	100.0
	사법	90	33.3	63.3	96.7	3.3	3.3	100.0
	학계	208	19.7	79.8	99.5	0.5	0.5	100.0
	민간	231	13.9	81.0	94.8	5.2	5.2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4.2	82.5	96.7	3.3	3.3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24.0	68.0	92.0	8.0	8.0	100.0
	국회공무원	50	26.0	72.0	98.0	2.0	2.0	100.0
	지방법의의원	51	2.0	96.1	98.0	2.0	2.0	100.0
	국가공무원	112	17.9	81.3	99.1	0.9	0.9	100.0
	지방공무원	100	18.0	79.0	97.0	3.0	3.0	100.0
	관사	30	30.0	70.0	100.0	0.0	0.0	100.0
	검사	30	56.7	40.0	96.7	3.3	3.3	100.0
	법원공무원	30	13.3	80.0	93.3	6.7	6.7	100.0
	로스쿨교수	69	18.8	81.2	100.0	0.0	0.0	100.0
	법학과교수	70	15.7	82.9	98.6	1.4	1.4	100.0
	연구원	69	24.6	75.4	100.0	0.0	0.0	100.0
	변호사	110	19.1	79.1	98.2	1.8	1.8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9.1	82.6	91.7	8.3	8.3	100.0
	로스쿨과정생	60	15.0	85.0	100.0	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13.3	80.0	93.3	6.7	6.7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26.7	71.9	98.6	1.4	1.4	100.0
	타자격증	136	10.3	81.6	91.9	8.1	8.1	100.0
	없음	658	17.0	80.5	97.6	2.4	2.4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16.0	80.2	96.2	3.8	3.8	100.0
	6 ~ 10년	218	18.8	78.9	97.7	2.3	2.3	100.0
	11 ~ 15년	89	9.0	88.8	97.8	2.2	2.2	100.0
	16 ~ 20년	107	28.0	72.0	100.0	0.0	0.0	100.0
	21년 이상	128	22.7	74.2	96.9	3.1	3.1	100.0
	무응답	26	19.2	73.1	92.3	7.7	7.7	100.0



【부 록】

표 4-1.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기타	계 (비율)
전 체		30	16.7	23.3	30.0	10.0	3.3	13.3	3.3	100.0
성별	남 자	22	22.7	22.7	22.7	9.1	4.5	18.2	0.0	100.0
	여 자	8	0.0	25.0	50.0	12.5	0.0	0.0	12.5	100.0
연령별	19 ~ 29 세	6	0.0	0.0	83.3	16.7	0.0	0.0	0.0	100.0
	30 대	9	44.4	11.1	22.2	0.0	0.0	22.2	0.0	100.0
	40 대	7	0.0	42.9	0.0	14.3	14.3	28.6	0.0	100.0
	50 대	4	0.0	75.0	25.0	0.0	0.0	0.0	0.0	100.0
	60 세 이상	4	25.0	0.0	25.0	25.0	0.0	0.0	25.0	100.0
지역별	수도권	20	20.0	10.0	35.0	15.0	0.0	15.0	5.0	100.0
	중부권	5	20.0	60.0	0.0	0.0	0.0	20.0	0.0	100.0
	전라권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경상권	4	0.0	50.0	25.0	0.0	25.0	0.0	0.0	100.0
	제주	-	-	-	-	-	-	-	-	-
분야별	입법	6	0.0	16.7	16.7	0.0	0.0	50.0	16.7	100.0
	행정	4	0.0	25.0	25.0	50.0	0.0	0.0	0.0	100.0
	사법	3	33.3	33.3	33.3	0.0	0.0	0.0	0.0	100.0
	학계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민간	12	25.0	25.0	33.3	0.0	8.3	8.3	0.0	100.0
	예비전문가	4	25.0	0.0	50.0	25.0	0.0	0.0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4	0.0	0.0	25.0	0.0	0.0	75.0	0.0	100.0
	국회공무원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지방의회 의원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국가공무원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지방공무원	3	0.0	0.0	33.3	66.7	0.0	0.0	0.0	100.0
	판사	-	-	-	-	-	-	-	-	-
	검찰사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2	0.0	50.0	50.0	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	-	-	-	-	-	-	-	-
	법학과교수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연구원	-	-	-	-	-	-	-	-	-
	변호사	2	0.0	100.0	0.0	0.0	0.0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0	30.0	10.0	40.0	0.0	10.0	1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	-	-	-	-	-	-	-	-
박사과정생	4	25.0	0.0	50.0	25.0	0.0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3	33.3	66.7	0.0	0.0	0.0	0.0	0.0	100.0
	타자격증	11	27.3	18.2	36.4	0.0	9.1	9.1	0.0	100.0
	없음	16	6.3	18.8	31.3	18.8	0.0	18.8	6.3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17	23.5	17.6	35.3	0.0	0.0	17.6	5.9	100.0
	6 ~ 10 년	5	0.0	20.0	40.0	20.0	0.0	20.0	0.0	100.0
	11 ~ 15 년	2	0.0	50.0	0.0	0.0	50.0	0.0	0.0	100.0
	16 ~ 20 년	-	-	-	-	-	-	-	-	-
	21년 이상	4	25.0	50.0	0.0	25.0	0.0	0.0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0.0	100.0

표 5.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4.1</b>	<b>55.5</b>	<b>59.6</b>	<b>35.5</b>	<b>4.8</b>	<b>40.3</b>	<b>0.1</b>	<b>100.0</b>	
성별	남 자	726	4.1	55.5	59.6	34.7	5.5	40.2	0.1	100.0
	여 자	286	3.8	55.6	59.4	37.4	3.1	40.6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2.1	49.7	51.7	40.7	7.6	48.3	0.0	100.0
	30 대	306	4.6	57.5	62.1	34.3	3.6	37.9	0.0	100.0
	40 대	280	2.9	51.4	54.3	38.2	7.1	45.4	0.4	100.0
	50 대	203	4.9	58.1	63.1	33.5	3.4	36.9	0.0	100.0
	60 세 이상	78	7.7	66.7	74.4	25.6	0.0	25.6	0.0	100.0
지역별	수도 권	586	4.9	55.3	60.2	34.1	5.5	39.6	0.2	100.0
	중부 권	197	3.0	54.3	57.4	40.1	2.5	42.6	0.0	100.0
	전라 권	79	1.3	54.4	55.7	36.7	7.6	44.3	0.0	100.0
	경상 권	127	3.1	61.4	64.6	30.7	4.7	35.4	0.0	100.0
	제주 권	23	4.3	43.5	47.8	52.2	0.0	52.2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5.3	51.7	57.0	38.4	4.6	43.0	0.0	100.0
	행정	212	3.8	56.6	60.4	36.3	3.3	39.6	0.0	100.0
	사법	90	3.3	70.0	73.3	25.6	1.1	26.7	0.0	100.0
	학계	208	3.4	52.4	55.8	35.6	8.7	44.2	0.0	100.0
	민간	231	3.9	56.3	60.2	36.4	3.0	39.4	0.4	100.0
직업별	예비 법전문가	120	5.0	51.7	56.7	35.8	7.5	43.3	0.0	100.0
	국회 의원	50	2.0	50.0	52.0	40.0	8.0	48.0	0.0	100.0
	국회 공무원	50	2.0	50.0	52.0	44.0	4.0	48.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1.8	54.9	66.7	31.4	2.0	33.3	0.0	100.0
	국가 공무원	112	2.7	59.8	62.5	35.7	1.8	37.5	0.0	100.0
	지방 공무원	100	5.0	53.0	58.0	37.0	5.0	42.0	0.0	100.0
	판사	30	3.3	76.7	80.0	20.0	0.0	20.0	0.0	100.0
	검사	30	0.0	70.0	70.0	26.7	3.3	30.0	0.0	100.0
	법원 공무원	30	6.7	63.3	70.0	30.0	0.0	3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2.9	55.1	58.0	33.3	8.7	42.0	0.0	100.0
	법학과 교수	70	7.1	54.3	61.4	32.9	5.7	38.6	0.0	100.0
	연구원	69	0.0	47.8	47.8	40.6	11.6	52.2	0.0	100.0
	변호사	110	3.6	55.5	59.1	37.3	3.6	40.9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4.1	57.0	61.2	35.5	2.5	38.0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5.0	55.0	60.0	33.3	6.7	4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5.0	48.3	53.3	38.3	8.3	46.7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4.5	57.5	62.0	35.3	2.7	38.0	0.0	100.0
	타 자격증	136	3.7	58.1	61.8	35.3	2.2	37.5	0.7	100.0
	없음	658	4.0	54.6	58.5	35.4	6.1	41.5	0.0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3.6	55.4	59.0	36.3	4.7	41.0	0.0	100.0
	6 ~ 10 년	218	2.8	54.6	57.3	36.2	6.0	42.2	0.5	100.0
	11 ~ 15 년	89	2.2	53.9	56.2	37.1	6.7	43.8	0.0	100.0
	16 ~ 20 년	107	6.5	48.6	55.1	41.1	3.7	44.9	0.0	100.0
	21년 이상	128	6.3	65.6	71.9	24.2	3.9	28.1	0.0	100.0
무 응 답	26	7.7	50.0	57.7	42.3	0.0	42.3	0.0	100.0	

【부 록】

표 6.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의향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계 (비율)
전 체		1,012	75.7	24.3	100.0
성별	남 자	726	78.5	21.5	100.0
	여 자	286	68.5	31.5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73.8	26.2	100.0
	30 대	306	71.9	28.1	100.0
	40 대	280	77.9	22.1	100.0
	50 대	203	81.3	18.7	100.0
	60 세 이상	78	71.8	28.2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75.6	24.4	100.0
	중부권	197	72.6	27.4	100.0
	전라권	79	81.0	19.0	100.0
	경상권	127	78.7	21.3	100.0
분야별	제주권	23	69.6	30.4	100.0
	입법	151	88.7	11.3	100.0
	행정	212	65.6	34.4	100.0
	사법	90	62.2	37.8	100.0
	학계	208	90.4	9.6	100.0
직업별	민간	231	65.8	34.2	100.0
	예비법전문가	120	80.8	19.2	100.0
	국회의원	50	82.0	18.0	100.0
	국회공무원	50	94.0	6.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90.2	9.8	100.0
	국가공무원	112	69.6	30.4	100.0
	지방공무원	100	61.0	39.0	100.0
	판사	30	63.3	36.7	100.0
	검사	30	76.7	23.3	100.0
	법원공무원	30	46.7	53.3	100.0
	로스쿨교수	69	92.8	7.2	100.0
	법학과교수	70	88.6	11.4	100.0
	연구원	69	89.9	10.1	100.0
	변호사	110	77.3	22.7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55.4	44.6	100.0
	로스쿨과정생	60	81.7	18.3	100.0
	박사과정생	60	80.0	2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76.9	23.1	100.0
	타자격증	136	59.6	40.4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없음	658	78.6	21.4	100.0
	1 ~ 5 년	444	73.0	27.0	100.0
	6 ~ 10 년	218	78.0	22.0	100.0
	11 ~ 15 년	89	76.4	23.6	100.0
	16 ~ 20 년	107	80.4	19.6	100.0
	21년 이상	128	78.1	21.9	100.0
무응답	26	69.2	30.8	100.0	

표 6-1.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 게재	시민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법 개정의 필요성 논문을 칼럼 등에 게재	관련 부처에 제안 및 건의	입법 기관에 청원	헌법 소원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비율)	
전체	766	18.1	7.3	28.1	33.3	6.5	4.2	2.0	0.1	0.4	100.0	
성별	남자	570	16.5	6.1	30.0	32.8	7.4	4.2	2.3	0.2	0.5	100.0
	여자	196	23.0	10.7	22.4	34.7	4.1	4.1	1.0	0.0	0.0	100.0
연령별	19 ~ 29세	107	18.7	13.1	21.5	27.1	10.3	8.4	0.9	0.0	0.0	100.0
	30대	220	16.4	5.0	27.3	37.7	5.9	6.4	1.4	0.0	0.0	100.0
	40대	218	19.3	6.9	28.4	34.4	5.5	3.2	1.8	0.0	0.5	100.0
	50대	165	20.0	6.7	29.7	34.5	4.2	1.2	2.4	0.0	1.2	100.0
	60세 이상	56	14.3	8.9	37.5	19.6	12.5	0.0	5.4	1.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443	18.3	7.2	31.2	28.4	7.2	4.7	2.3	0.0	0.7	100.0
	중부권	143	21.0	5.6	25.2	41.3	2.8	1.4	2.1	0.7	0.0	100.0
	전라권	64	14.1	7.8	20.3	46.9	7.8	3.1	0.0	0.0	0.0	100.0
	경상권	100	19.0	6.0	27.0	36.0	4.0	7.0	1.0	0.0	0.0	100.0
	제주권	16	0.0	31.3	6.3	25.0	31.3	0.0	6.3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34	16.4	9.7	16.4	36.6	15.7	0.7	2.2	0.0	2.2	100.0
	사법	139	24.5	4.3	3.6	61.9	4.3	0.0	1.4	0.0	0.0	100.0
	학계	56	7.1	1.8	32.1	41.1	7.1	3.6	7.1	0.0	0.0	100.0
	민간	188	9.6	6.4	62.8	16.0	2.1	2.1	1.1	0.0	0.0	100.0
	예비전문가	152	27.6	5.3	17.8	30.9	7.2	9.2	1.3	0.7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97	19.6	16.5	25.8	20.6	4.1	11.3	2.1	0.0	0.0	100.0
	국회의원	41	29.3	2.4	2.4	41.5	22.0	0.0	0.0	0.0	2.4	100.0
	국회공무원	47	4.3	4.3	42.6	31.9	6.4	2.1	6.4	0.0	2.1	100.0
	지방의회 의원	46	17.4	21.7	2.2	37.0	19.6	0.0	0.0	0.0	2.2	100.0
	국가공무원	78	16.7	3.8	5.1	66.7	5.1	0.0	2.6	0.0	0.0	100.0
	지방공무원	61	34.4	4.9	1.6	55.7	3.3	0.0	0.0	0.0	0.0	100.0
	판사	19	0.0	0.0	52.6	15.8	5.3	10.5	15.8	0.0	0.0	100.0
	검사	23	0.0	0.0	30.4	60.9	8.7	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14	28.6	7.1	7.1	42.9	7.1	0.0	7.1	0.0	0.0	100.0
	로스쿨교수	64	3.1	7.8	67.2	20.3	0.0	0.0	1.6	0.0	0.0	100.0
	법학과교수	62	16.1	3.2	64.5	11.3	1.6	3.2	0.0	0.0	0.0	100.0
	연구원	62	9.7	8.1	56.5	16.1	4.8	3.2	1.6	0.0	0.0	100.0
	변호사	85	22.4	5.9	22.4	22.4	9.4	16.5	1.2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67	34.3	4.5	11.9	41.8	4.5	0.0	1.5	1.5	0.0	100.0
	로스쿨과정생	49	14.3	18.4	28.6	22.4	4.1	10.2	2.0	0.0	0.0	100.0
박사과정생	48	25.0	14.6	22.9	18.8	4.2	12.5	2.1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170	15.3	4.1	31.8	30.0	7.6	8.8	2.4	0.0	0.0	100.0
	타자격증	81	29.6	3.7	17.3	40.7	4.9	1.2	1.2	1.2	0.0	100.0
	없음	517	17.4	8.9	28.4	33.3	6.4	3.1	1.9	0.0	0.6	100.0
법관련 기간	1 ~ 5년	324	19.4	9.0	22.5	34.9	7.1	5.9	0.6	0.0	0.6	100.0
	6 ~ 10년	170	17.6	7.6	24.1	35.9	5.9	6.5	2.4	0.0	0.0	100.0
	11 ~ 15년	68	14.7	2.9	35.3	30.9	11.8	0.0	2.9	0.0	1.5	100.0
	16 ~ 20년	86	22.1	3.5	39.5	26.7	4.7	2.3	1.2	0.0	0.0	100.0
	21년 이상	100	14.0	8.0	39.0	31.0	3.0	0.0	4.0	1.0	0.0	100.0
	무응답	18	16.7	5.6	22.2	33.3	11.1	0.0	11.1	0.0	0.0	100.0

【부 록】

표 7. 불량품 구매시 대응 방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기타	모름/무응답	계(비율)
<b>전체</b>	<b>1,012</b>	<b>8.2</b>	<b>78.9</b>	<b>8.7</b>	<b>1.7</b>	<b>0.9</b>	<b>1.7</b>	<b>100.0</b>
성별	남자	726	8.5	78.5	8.5	1.8	0.8	100.0
	여자	286	7.3	79.7	9.1	1.4	1.0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10.3	72.4	13.1	0.7	2.1	100.0
	30대	306	7.8	80.1	9.2	2.6	0.3	100.0
	40대	280	7.9	79.6	7.1	1.8	1.1	100.0
	50대	203	6.9	80.3	7.4	1.0	1.0	100.0
	60세 이상	78	10.3	79.5	7.7	1.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8.5	77.5	8.5	2.0	1.0	100.0
	중부권	197	11.2	80.2	7.6	0.0	0.5	100.0
	전라권	79	6.3	73.4	16.5	2.5	0.0	100.0
	경상권	127	3.1	85.0	7.1	2.4	1.6	100.0
분야별	제조업	23	8.7	87.0	4.3	0.0	0.0	100.0
	입법	151	9.9	76.8	8.6	0.7	0.7	100.0
	행정	212	6.6	79.7	10.8	0.9	0.5	100.0
	사법	90	8.9	87.8	2.2	1.1	0.0	100.0
	학계	208	10.1	80.3	4.8	1.9	0.5	100.0
직업별	민간	231	7.8	76.6	11.3	2.6	0.9	100.0
	예비전문가	120	5.8	75.0	11.7	2.5	3.3	100.0
	국회의원	50	18.0	78.0	2.0	0.0	2.0	100.0
	국회공무원	50	2.0	80.0	12.0	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9.8	72.5	11.8	2.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7.1	79.5	8.9	0.9	0.9	100.0
	지방공무원	100	6.0	80.0	13.0	1.0	0.0	100.0
	관사	30	6.7	93.3	0.0	0.0	0.0	100.0
	검사	30	0.0	96.7	0.0	3.3	0.0	100.0
	법원공무원	30	20.0	73.3	6.7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7.2	84.1	1.4	1.4	1.4	100.0
	법학과교수	70	15.7	75.7	5.7	1.4	0.0	100.0
	연구원	69	7.2	81.2	7.2	2.9	0.0	100.0
	연번호사	110	6.4	76.4	15.5	0.9	0.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9.1	76.9	7.4	4.1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6.7	71.7	16.7	1.7	3.3	100.0	
박사과정생	60	5.0	78.3	6.7	3.3	3.3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6.8	81.4	9.0	0.9	0.5	100.0
	타자격증	136	9.6	75.7	8.1	3.7	1.5	100.0
	없음	658	8.4	78.6	8.8	1.5	0.9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10.1	75.7	10.8	1.4	0.9	100.0
	6 ~ 10년	218	6.9	81.2	8.3	2.3	0.9	100.0
	11 ~ 15년	89	4.5	83.1	7.9	3.4	0.0	100.0
	16 ~ 20년	107	8.4	77.6	6.5	0.9	1.9	100.0
	21년 이상	128	5.5	86.7	3.9	0.0	0.8	100.0
무응답	26	11.5	65.4	11.5	7.7	0.0	100.0	

표 8. 법률용어가 어렵다는 인식의 원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 조문의 의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쉬운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한 입법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신할 쉬운 용어가 없거나 부족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비율)
<b>전체</b>	<b>1,012</b>	<b>12.5</b>	<b>17.0</b>	<b>49.0</b>	<b>19.0</b>	<b>2.5</b>	<b>0.1</b>	<b>100.0</b>
성별	남자	726	10.9	16.8	49.6	20.1	2.6	100.0
	여성	286	16.4	17.5	47.6	16.1	2.1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7.9	22.1	37.9	18.6	3.4	100.0
	30 대	306	13.1	17.3	45.4	20.6	3.3	100.0
	40 대	280	8.2	13.9	59.3	16.1	2.5	100.0
	50 대	203	14.3	15.3	52.7	17.2	0.5	100.0
	60 세 이상	78	10.3	21.8	37.2	28.2	2.6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4.2	17.2	46.9	18.9	2.6	100.0
	중부권	197	9.6	17.8	49.2	20.8	2.5	100.0
	전라권	79	10.1	11.4	55.7	21.5	1.3	100.0
	경상권	127	8.7	19.7	53.5	15.7	2.4	100.0
	제주권	23	21.7	8.7	52.2	13.0	4.3	100.0
분야별	입법	151	17.2	11.3	55.6	13.2	2.6	100.0
	행정	212	13.2	14.2	56.1	14.2	2.4	100.0
	사법	90	1.1	26.7	33.3	36.7	1.1	100.0
	학계	208	9.1	16.3	51.0	20.7	2.9	100.0
	민간	231	13.0	19.5	47.2	18.2	2.2	100.0
직업별	예비전문가	120	18.3	18.3	40.0	20.0	3.3	100.0
	국회의원	50	14.0	14.0	56.0	12.0	4.0	100.0
	국회공무원	50	16.0	8.0	54.0	18.0	4.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1.6	11.8	56.9	9.8	0.0	100.0
	국가공무원	112	14.3	13.4	50.0	19.6	2.7	100.0
	지방공무원	100	12.0	15.0	63.0	8.0	2.0	100.0
	관사	30	0.0	26.7	36.7	33.3	3.3	100.0
	감사	30	0.0	23.3	20.0	53.3	0.0	100.0
	법원공무원	30	3.3	30.0	43.3	23.3	0.0	100.0
	로스쿨교수	69	7.2	15.9	42.0	31.9	2.9	100.0
	법학과교수	70	11.4	18.6	47.1	20.0	2.9	100.0
	연구원	69	8.7	14.5	63.8	10.1	2.9	100.0
	연호사	110	5.5	21.8	50.0	19.1	3.6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9.8	17.4	44.6	17.4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16.7	18.3	33.3	25.0	6.7	100.0
박사과정생	60	20.0	18.3	46.7	15.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4.1	24.0	43.9	23.5	4.1	100.0
	타자격증	136	16.9	19.1	44.9	18.4	0.7	100.0
	없음	658	14.3	14.3	51.5	17.6	2.3	100.0
법관련사 기간	1 ~ 5년	444	14.9	16.9	48.0	16.9	3.2	100.0
	6 ~ 10년	218	13.3	15.6	50.5	17.4	3.2	100.0
	11 ~ 15년	89	9.0	18.0	51.7	21.3	0.0	100.0
	16 ~ 20년	107	9.3	17.8	51.4	19.6	1.9	100.0
	21년 이상	128	5.5	19.5	46.1	27.3	1.6	100.0
	무응답	26	23.1	11.5	50.0	15.4	0.0	100.0

【부 록】

표 9.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 된다는 인식의 원인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때문에	법 집행자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연/지연/혈연 등 인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계 (비율)	
전 체		1,012	11.2	25.1	14.0	38.6	8.2	2.7	0.2	100.0	
성별	남자	726	9.9	27.1	13.8	37.9	8.4	2.8	0.1	100.0	
	여성	286	14.3	19.9	14.7	40.6	7.7	2.4	0.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7.2	17.9	17.2	39.3	4.8	3.4	0.0	100.0	
	30 대	306	14.4	22.2	15.0	34.6	8.8	4.9	0.0	100.0	
	40 대	280	8.9	28.2	10.7	42.5	8.2	1.1	0.4	100.0	
	50 대	203	6.9	28.6	12.3	41.9	8.4	1.5	0.5	100.0	
	60 세 이상	78	6.4	29.5	20.5	30.8	11.5	1.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2.1	25.6	12.6	39.4	8.2	2.0	0.0	100.0	
	중부권	197	9.6	26.4	13.7	39.6	6.6	3.6	0.5	100.0	
	전라권	79	2.5	26.6	17.7	35.4	12.7	3.8	1.3	100.0	
	경상권	127	13.4	22.8	17.3	37.0	6.3	3.1	0.0	100.0	
분야별	제 주	23	17.4	8.7	21.7	30.4	17.4	4.3	0.0	100.0	
	입법	151	9.9	27.8	7.3	48.3	4.6	2.0	0.0	100.0	
	행정	212	6.1	21.7	19.8	42.0	9.0	1.4	0.0	100.0	
	사법	90	21.1	20.0	16.7	24.4	6.7	10.0	1.1	100.0	
	학계	208	8.2	34.6	9.6	34.6	11.1	1.9	0.0	100.0	
직업별	민간	231	15.6	22.5	14.3	36.8	8.2	2.2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0.8	20.0	17.5	41.7	7.5	2.5	0.0	100.0	
	국회의원	50	12.0	20.0	2.0	54.0	8.0	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0.0	36.0	8.0	42.0	2.0	2.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7.8	27.5	11.8	49.0	3.9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8.9	25.9	18.8	37.5	8.0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3.0	17.0	21.0	47.0	10.0	2.0	0.0	100.0	
	관사	30	30.0	20.0	10.0	16.7	3.3	20.0	0.0	100.0	
	검사	30	13.3	16.7	36.7	23.3	3.3	3.3	3.3	100.0	
	법원공무원	30	20.0	23.3	3.3	33.3	13.3	6.7	0.0	100.0	
	로스쿨교수	69	2.9	44.9	10.1	29.0	11.6	1.4	0.0	100.0	
	법학과교수	70	8.6	31.4	12.9	31.4	14.3	1.4	0.0	100.0	
	연변호사	69	13.0	27.5	5.8	43.5	7.2	2.9	0.0	100.0	
	연변호사	110	17.3	21.8	17.3	30.9	7.3	4.5	0.9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4.0	23.1	11.6	42.1	9.1	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13.3	20.0	20.0	33.3	8.3	5.0	0.0	100.0	
	박사과정생	60	8.3	20.0	15.0	50.0	6.7	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15.8	24.4	19.0	27.1	6.3	6.3	0.9	100.0	
	타자격증	136	14.7	25.0	10.3	39.7	8.8	1.5	0.0	100.0	
	없음	658	8.8	25.2	13.1	42.4	8.7	1.8	0.0	100.0	
	법 관련사건 기간	1 ~ 5 년	444	14.0	20.5	14.6	39.6	7.7	3.6	0.0	100.0
		6 ~ 10 년	218	9.2	26.1	14.7	39.0	7.3	3.2	0.5	100.0
		11 ~ 15 년	89	6.7	32.6	9.0	39.3	11.2	1.1	0.0	100.0
		16 ~ 20 년	107	10.3	29.9	13.1	38.3	7.5	0.0	0.9	100.0
21년 이상		128	7.0	31.3	14.1	35.2	10.9	1.6	0.0	100.0	
무응답		26	19.2	19.2	19.2	34.6	3.8	3.8	0.0	100.0	

표 10-1.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부의 기능 수행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④	⑤	④+⑤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b>전체</b>	<b>1,012</b>	<b>0.5</b>	<b>12.3</b>	<b>12.7</b>	<b>38.0</b>	<b>41.7</b>	<b>7.5</b>	<b>49.2</b>	<b>100.0</b>	<b>2.57</b>	<b>39.13</b>	
성별	남자	726	0.4	12.3	12.7	36.9	43.0	7.4	50.4	100.0	2.55	38.81
	여성	286	0.7	12.2	12.9	40.9	38.5	7.7	46.2	100.0	2.60	39.95
연령별	19 ~ 29세	145	0.7	12.4	13.1	39.3	39.3	8.3	47.6	100.0	2.58	39.48
	30대	306	0.3	14.4	14.7	35.0	43.1	7.2	50.3	100.0	2.58	39.38
	40대	280	0.7	10.0	10.7	37.9	44.3	7.1	51.4	100.0	2.53	38.21
	50대	203	0.5	9.9	10.3	40.4	41.9	7.4	49.3	100.0	2.54	38.55
	60세 이상	78	0.0	17.9	17.9	42.3	30.8	9.0	39.7	100.0	2.69	42.31
지역별	수도권	586	0.9	13.8	14.7	38.2	40.3	6.8	47.1	100.0	2.62	40.40
	중부권	197	0.0	7.1	7.1	38.1	45.2	9.6	54.8	100.0	2.43	35.66
	전라권	79	0.0	15.2	15.2	32.9	43.0	8.9	51.9	100.0	2.54	38.61
	경상권	127	0.0	10.2	10.2	37.8	44.1	7.9	52.0	100.0	2.50	37.60
분야별	입법	151	1.3	27.2	28.5	50.3	20.5	0.7	21.2	100.0	3.08	51.99
	행정	212	0.5	9.4	9.9	35.8	44.3	9.9	54.2	100.0	2.46	36.56
	사법	90	0.0	11.1	11.1	40.0	42.2	6.7	48.9	100.0	2.56	38.89
	학계	208	0.0	8.7	8.7	38.0	44.7	8.7	53.4	100.0	2.47	36.66
	민간	231	0.4	9.5	10.0	33.3	48.9	7.8	56.7	100.0	2.46	36.47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0.8	10.8	11.7	34.2	44.2	10.0	54.2	100.0	2.48	37.08
	국회의원	50	2.0	32.0	34.0	44.0	20.0	2.0	22.0	100.0	3.12	53.00
	국회공무원	50	2.0	32.0	34.0	56.0	10.0	0.0	10.0	100.0	3.26	56.50
	지방의회의원	51	0.0	17.6	17.6	51.0	31.4	0.0	31.4	100.0	2.86	46.57
	국가공무원	112	0.9	6.3	7.1	31.3	50.0	11.6	61.6	100.0	2.35	33.71
	지방공무원	100	0.0	13.0	13.0	41.0	38.0	8.0	46.0	100.0	2.59	39.75
	관사	30	0.0	10.0	10.0	50.0	40.0	0.0	40.0	100.0	2.70	42.50
	검사	30	0.0	6.7	6.7	36.7	46.7	10.0	56.7	100.0	2.40	35.00
	법원공무원	30	0.0	16.7	16.7	33.3	40.0	10.0	50.0	100.0	2.57	39.17
	로스쿨교수	69	0.0	4.3	4.3	29.0	55.1	11.6	66.7	100.0	2.26	31.52
	법학과교수	70	0.0	15.7	15.7	40.0	37.1	7.1	44.3	100.0	2.64	41.07
	연구원	69	0.0	5.8	5.8	44.9	42.0	7.2	49.3	100.0	2.49	37.32
	변호사	110	0.0	11.8	11.8	30.9	52.7	4.5	57.3	100.0	2.50	37.5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7.4	8.3	35.5	45.5	10.7	56.2	100.0	2.42	35.54
로스쿨과정생	60	0.0	13.3	13.3	33.3	48.3	5.0	53.3	100.0	2.55	38.75	
박사과정생	60	1.7	8.3	10.0	35.0	40.0	15.0	55.0	100.0	2.42	35.42	
법률 관련 자격 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10.9	10.9	37.6	46.2	5.4	51.6	100.0	2.54	38.46
	타자격증	136	0.7	7.4	8.1	34.6	46.3	11.0	57.4	100.0	2.40	35.11
	없음	658	0.6	13.7	14.3	38.8	39.5	7.4	47.0	100.0	2.60	40.12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0.9	12.6	13.5	39.6	40.1	6.8	46.8	100.0	2.61	40.20
	6 ~ 10년	218	0.5	15.1	15.6	38.5	39.0	6.9	45.9	100.0	2.63	40.83
	11 ~ 15년	89	0.0	12.4	12.4	30.3	48.3	9.0	57.3	100.0	2.46	36.52
	16 ~ 20년	107	0.0	8.4	8.4	29.0	50.5	12.1	62.6	100.0	2.34	33.41
	21년 이상	128	0.0	9.4	9.4	43.8	41.4	5.5	46.9	100.0	2.57	39.26
	무응답	26	0.0	11.5	11.5	42.3	34.6	11.5	46.2	100.0	2.54	38.46



【부 록】

표 10-2.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기능 수행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9	22.9	23.8	47.1	25.6	3.4	29.0	0.1	100.0	2.92	48.10	
성별	남 자	726	0.7	23.6	24.2	45.7	26.0	3.9	29.9	0.1	100.0	2.91	47.79
	여 자	286	1.4	21.3	22.7	50.7	24.5	2.1	26.6	0.0	100.0	2.95	48.86
연령별	19 ~ 29 세	145	0.7	17.2	17.9	45.5	29.0	7.6	36.6	0.0	100.0	2.74	43.62
	30 대	306	0.7	27.5	28.1	43.1	25.2	3.6	28.8	0.0	100.0	2.96	49.10
	40 대	280	1.4	20.4	21.8	50.0	25.7	2.5	28.2	0.0	100.0	2.93	48.13
	50 대	203	1.0	23.2	24.1	48.3	26.1	1.0	27.1	0.5	100.0	2.97	49.26
	60 세 이상	78	0.0	24.4	24.4	52.6	19.2	3.8	23.1	0.0	100.0	2.97	49.36
지역별	수 도 권	586	0.9	18.8	19.6	48.3	27.6	4.3	31.9	0.2	100.0	2.84	46.07
	중 부 권	197	1.0	36.5	37.6	43.7	17.8	1.0	18.8	0.0	100.0	3.19	54.70
	전 라 권	79	1.3	16.5	17.7	45.6	29.1	7.6	36.7	0.0	100.0	2.75	43.67
	경 상 권	127	0.8	24.4	25.2	47.2	26.8	0.8	27.6	0.0	100.0	2.98	49.41
	체 주 권	23	0.0	26.1	26.1	52.2	21.7	0.0	21.7	0.0	100.0	3.04	51.09
분야별	입 법	151	0.7	18.5	19.2	56.3	21.9	2.6	24.5	0.0	100.0	2.93	48.18
	행 정	212	2.8	42.9	45.8	42.9	10.4	0.9	11.3	0.0	100.0	3.36	59.08
	사 법	90	0.0	34.4	34.4	50.0	14.4	1.1	15.6	0.0	100.0	3.18	54.44
	학 계	208	0.5	11.1	11.5	48.1	38.0	2.4	40.4	0.0	100.0	2.69	42.31
	민 간	231	0.0	16.0	16.0	42.9	35.1	5.6	40.7	0.4	100.0	2.70	42.39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0.8	18.3	19.2	47.5	25.8	7.5	33.3	0.0	100.0	2.79	44.79
	국 회 의 원	50	2.0	16.0	18.0	52.0	24.0	6.0	30.0	0.0	100.0	2.84	46.00
	국 회 공 무 원	50	0.0	24.0	24.0	50.0	26.0	0.0	26.0	0.0	100.0	2.98	49.50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15.7	15.7	66.7	15.7	2.0	17.6	0.0	100.0	2.96	49.02
	국 가 공 무 원	112	3.6	54.5	58.0	31.3	8.9	1.8	10.7	0.0	100.0	3.49	62.28
	지 방 공 무 원	100	2.0	30.0	32.0	56.0	12.0	0.0	12.0	0.0	100.0	3.22	55.50
	관 사	30	0.0	36.7	36.7	46.7	16.7	0.0	16.7	0.0	100.0	3.20	55.00
	검 사	30	0.0	43.3	43.3	50.0	6.7	0.0	6.7	0.0	100.0	3.37	59.17
	법 원 공 무 원	30	0.0	23.3	23.3	53.3	20.0	3.3	23.3	0.0	100.0	2.97	49.17
	로 스 쿨 교 수	69	1.4	11.6	13.0	43.5	42.0	1.4	43.5	0.0	100.0	2.70	42.39
	법 학 과 교 수	70	0.0	10.0	10.0	54.3	34.3	1.4	35.7	0.0	100.0	2.73	43.21
	연 구 원	69	0.0	11.6	11.6	46.4	37.7	4.3	42.0	0.0	100.0	2.65	41.30
	변 호 사	110	0.0	18.2	18.2	39.1	36.4	6.4	42.7	0.0	100.0	2.69	42.27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0.0	14.0	14.0	46.3	33.9	5.0	38.8	0.8	100.0	2.70	42.50
	로 스 쿨 과 정 생	60	0.0	21.7	21.7	50.0	23.3	5.0	28.3	0.0	100.0	2.88	47.08
박 사 과 정 생	60	1.7	15.0	16.7	45.0	28.3	10.0	38.3	0.0	100.0	2.70	42.50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0	25.8	25.8	44.3	26.7	3.2	29.9	0.0	100.0	2.93	48.19
	타 자 격 증	136	0.0	16.2	16.2	44.9	31.6	6.6	38.2	0.7	100.0	2.71	42.78
	없 음	658	1.4	23.3	24.6	48.3	24.0	3.0	27.1	0.0	100.0	2.96	48.97
법 관 련 중 사 기간	1 ~ 5 년	444	0.9	21.6	22.5	50.2	23.2	3.8	27.0	0.2	100.0	2.93	48.14
	6 ~ 10 년	218	0.5	28.4	28.9	40.4	26.6	4.1	30.7	0.0	100.0	2.94	48.62
	11 ~ 15 년	89	1.1	15.7	16.9	48.3	33.7	1.1	34.8	0.0	100.0	2.82	45.51
	16 ~ 20 년	107	1.9	15.9	17.8	49.5	29.9	2.8	32.7	0.0	100.0	2.84	46.03
	21년 이상	128	0.8	30.5	31.3	43.0	24.2	1.6	25.8	0.0	100.0	3.05	51.17
무 응 답	26	0.0	15.4	15.4	57.7	19.2	7.7	26.9	0.0	100.0	2.81	45.19	

표 10-3.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기능 수행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전체	1,012	1.9	34.2	36.1	40.8	20.0	3.1	23.0	0.1	100.0	3.12	52.97	
성별	남자	726	2.5	37.2	39.7	38.0	19.0	3.2	22.2	0.1	100.0	3.17	54.21
	여자	286	0.3	26.6	26.9	47.9	22.4	2.8	25.2	0.0	100.0	2.99	49.83
연령별	19 ~ 29세	145	1.4	33.8	35.2	41.4	20.0	3.4	23.4	0.0	100.0	3.10	52.41
	30대	306	1.3	35.9	37.3	39.9	20.6	2.3	22.9	0.0	100.0	3.13	53.35
	40대	280	1.1	32.9	33.9	42.9	19.6	3.6	23.2	0.0	100.0	3.08	52.05
	50대	203	3.9	30.5	34.5	40.4	21.7	3.0	24.6	0.5	100.0	3.11	52.72
	60세 이상	78	2.6	42.3	44.9	37.2	14.1	3.8	17.9	0.0	100.0	3.26	56.41
지역별	수도권	586	1.4	31.4	32.8	42.7	21.5	2.9	24.4	0.2	100.0	3.07	51.71
	중부권	197	3.6	37.6	41.1	37.1	18.3	3.6	21.8	0.0	100.0	3.19	54.82
	전라권	79	2.5	32.9	35.4	45.6	11.4	7.6	19.0	0.0	100.0	3.11	52.85
	경상권	127	1.6	42.5	44.1	34.6	20.5	0.8	21.3	0.0	100.0	3.24	55.91
	제주권	23	0.0	34.8	34.8	43.5	21.7	0.0	21.7	0.0	100.0	3.13	53.26
분야별	입법	151	1.3	19.9	21.2	53.6	22.5	2.6	25.2	0.0	100.0	2.95	48.68
	행정	212	1.4	32.1	33.5	40.1	22.6	3.8	26.4	0.0	100.0	3.05	51.18
	사법	90	6.7	64.4	71.1	23.3	5.6	0.0	5.6	0.0	100.0	3.72	68.06
	학계	208	1.0	32.2	33.2	44.7	19.7	2.4	22.1	0.0	100.0	3.10	52.40
	민간	231	1.3	33.3	34.6	42.0	18.2	4.8	22.9	0.4	100.0	3.08	52.07
직업별	예비전문가	120	2.5	38.3	40.8	30.0	26.7	2.5	29.2	0.0	100.0	3.12	52.92
	국회의원	50	4.0	22.0	26.0	48.0	22.0	4.0	26.0	0.0	100.0	3.00	50.00
	국회공무원	50	0.0	26.0	26.0	52.0	18.0	4.0	22.0	0.0	100.0	3.00	50.00
	지방의회의원	51	0.0	11.8	11.8	60.8	27.5	0.0	27.5	0.0	100.0	2.84	46.08
	국가공무원	112	2.7	37.5	40.2	36.6	19.6	3.6	23.2	0.0	100.0	3.16	54.02
	지방공무원	100	0.0	26.0	26.0	44.0	26.0	4.0	30.0	0.0	100.0	2.92	48.00
	검사	30	3.3	80.0	83.3	16.7	0.0	0.0	0.0	0.0	100.0	3.87	71.67
	판사	30	6.7	56.7	63.3	33.3	3.3	0.0	3.3	0.0	100.0	3.67	66.67
	법원공무원	30	10.0	56.7	66.7	20.0	13.3	0.0	13.3	0.0	100.0	3.63	65.83
	로스쿨교수	69	1.4	44.9	46.4	46.4	5.8	1.4	7.2	0.0	100.0	3.39	59.78
	법학과교수	70	1.4	34.3	35.7	44.3	20.0	0.0	20.0	0.0	100.0	3.17	54.29
	연구원	69	0.0	17.4	17.4	43.5	33.3	5.8	39.1	0.0	100.0	2.72	43.12
	변호사	110	1.8	45.5	47.3	38.2	12.7	1.8	14.5	0.0	100.0	3.33	58.1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22.3	23.1	45.5	23.1	7.4	30.6	0.8	100.0	2.86	46.46
	로스쿨과정생	60	3.3	46.7	50.0	25.0	23.3	1.7	25.0	0.0	100.0	3.27	56.67
박사과정생	60	1.7	30.0	31.7	35.0	30.0	3.3	33.3	0.0	100.0	2.97	49.1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3.2	53.4	56.6	33.9	8.6	0.9	9.5	0.0	100.0	3.49	62.33
	타자격증	136	2.2	26.5	28.7	41.2	22.8	6.6	29.4	0.7	100.0	2.95	48.70
	없음	658	1.4	29.3	30.7	43.0	23.3	3.0	26.3	0.0	100.0	3.03	50.68
법 관 련 종 사 기 간	1 ~ 5년	444	1.4	32.7	34.0	43.5	19.6	2.7	22.3	0.2	100.0	3.10	52.60
	6 ~ 10년	218	0.5	34.9	35.3	37.6	22.5	4.6	27.1	0.0	100.0	3.04	51.03
	11 ~ 15년	89	3.4	30.3	33.7	42.7	21.3	2.2	23.6	0.0	100.0	3.11	52.81
	16 ~ 20년	107	1.9	34.6	36.4	40.2	20.6	2.8	23.4	0.0	100.0	3.12	53.04
	21년 이상	128	4.7	41.4	46.1	37.5	14.8	1.6	16.4	0.0	100.0	3.33	58.20
무응답	26	3.8	30.8	34.6	34.6	23.1	7.7	30.8	0.0	100.0	3.00	50.00	

【부 록】

표 11-1.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행되고 있다	잘 실행되고 있는 편이다			보통	잘 실행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6	24.8	25.4	43.7	27.8	3.2	30.9	100.0	2.92	47.97	
성별	남 자	726	0.6	27.4	28.0	42.4	26.9	2.8	29.6	100.0	2.96	49.04
	여 자	286	0.7	18.2	18.9	46.9	30.1	4.2	34.3	100.0	2.81	45.28
연령별	19 ~ 29 세	145	1.4	23.4	24.8	37.9	31.0	6.2	37.2	100.0	2.83	45.69
	30 대	306	0.7	22.2	22.9	45.4	28.4	3.3	31.7	100.0	2.89	47.14
	40 대	280	0.4	21.1	21.4	45.4	30.7	2.5	33.2	100.0	2.86	46.52
	50 대	203	0.0	28.1	28.1	45.8	24.6	1.5	26.1	100.0	3.00	50.12
	60 세 이상	78	1.3	42.3	43.6	35.9	16.7	3.8	20.5	100.0	3.21	55.13
지역별	수도권	586	0.7	23.5	24.2	40.6	31.1	4.1	35.2	100.0	2.86	46.42
	중부권	197	1.0	28.4	29.4	47.2	20.8	2.5	23.4	100.0	3.05	51.14
	전라권	79	0.0	25.3	25.3	50.6	21.5	2.5	24.1	100.0	2.99	49.68
	경상권	127	0.0	23.6	23.6	49.6	26.0	0.8	26.8	100.0	2.96	49.02
	제주권	23	0.0	30.4	30.4	34.8	34.8	0.0	34.8	100.0	2.96	48.91
분야별	입법	151	1.3	21.9	23.2	39.7	32.5	4.6	37.1	100.0	2.83	45.70
	행정	212	0.5	28.8	29.2	48.1	20.8	1.9	22.6	100.0	3.05	51.30
	사법	90	2.2	41.1	43.3	38.9	17.8	0.0	17.8	100.0	3.28	56.94
	학계	208	0.0	20.2	20.2	48.1	28.8	2.9	31.7	100.0	2.86	46.39
	민간	231	0.4	20.8	21.2	43.3	33.8	1.7	35.5	100.0	2.84	46.10
	예비전문가	120	0.0	25.0	25.0	37.5	28.3	9.2	37.5	100.0	2.78	44.58
직업별	국회의원	50	2.0	24.0	26.0	34.0	30.0	10.0	40.0	100.0	2.78	44.50
	국회공무원	50	0.0	18.0	18.0	50.0	32.0	0.0	32.0	100.0	2.86	46.50
	지방의회의원	51	2.0	23.5	25.5	35.3	35.3	3.9	39.2	100.0	2.84	46.08
	국가공무원	112	0.9	33.0	33.9	48.2	16.1	1.8	17.9	100.0	3.15	53.79
	지방공무원	100	0.0	24.0	24.0	48.0	26.0	2.0	28.0	100.0	2.94	48.50
	관사	30	0.0	46.7	46.7	50.0	3.3	0.0	3.3	100.0	3.43	60.83
	검사	30	6.7	33.3	40.0	33.3	26.7	0.0	26.7	100.0	3.20	55.00
	법원공무원	30	0.0	43.3	43.3	33.3	23.3	0.0	23.3	100.0	3.20	55.00
	로스쿨교수	69	0.0	29.0	29.0	52.2	18.8	0.0	18.8	100.0	3.10	52.54
	법학과교수	70	0.0	17.1	17.1	54.3	27.1	1.4	28.6	100.0	2.87	46.79
	연구원	69	0.0	14.5	14.5	37.7	40.6	7.2	47.8	100.0	2.59	39.86
	변호사	110	0.9	27.3	28.2	44.5	26.4	0.9	27.3	100.0	3.01	50.23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4.9	14.9	42.1	40.5	2.5	43.0	100.0	2.69	42.36
	로스쿨과정생	60	0.0	20.0	20.0	45.0	25.0	10.0	35.0	100.0	2.75	43.75
	박사과정생	60	0.0	30.0	30.0	30.0	31.7	8.3	40.0	100.0	2.82	45.42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4	33.9	35.3	43.4	20.8	0.5	21.3	100.0	3.15	53.73
	타자격증	136	0.0	16.9	16.9	40.4	39.7	2.9	42.6	100.0	2.71	42.83
	없음	658	0.5	23.3	23.7	44.5	27.7	4.1	31.8	100.0	2.88	47.07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0.9	22.3	23.2	42.8	29.3	4.7	34.0	100.0	2.85	46.34
	6 ~ 10 년	218	0.9	22.0	22.9	45.0	28.9	3.2	32.1	100.0	2.89	47.13
	11 ~ 15 년	89	0.0	21.3	21.3	46.1	32.6	0.0	32.6	100.0	2.89	47.19
	16 ~ 20 년	107	0.0	27.1	27.1	41.1	29.9	1.9	31.8	100.0	2.93	48.36
	21년 이상	128	0.0	35.2	35.2	46.9	18.0	0.0	18.0	100.0	3.17	54.30
무 응 답	26	0.0	42.3	42.3	34.6	15.4	7.7	23.1	100.0	3.12	52.88	

표 11-2. 경제 발전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보통	④	⑤	④+⑤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b>전 체</b>	<b>1,012</b>	<b>0.4</b>	<b>20.2</b>	<b>20.6</b>	<b>45.8</b>	<b>29.2</b>	<b>4.5</b>	<b>33.7</b>	<b>100.0</b>	<b>2.83</b>	<b>45.68</b>	
성별	남 자	726	0.3	22.5	22.7	45.3	28.2	3.7	32.0	100.0	2.87	46.83
	여 자	286	0.7	14.3	15.0	46.9	31.5	6.6	38.1	100.0	2.71	42.74
연령별	19 ~ 29 세	145	0.7	16.6	17.2	40.7	31.7	10.3	42.1	100.0	2.66	41.38
	30 대	306	0.3	20.9	21.2	42.8	31.4	4.6	35.9	100.0	2.81	45.26
	40 대	280	0.7	18.9	19.6	46.1	30.7	3.6	34.3	100.0	2.83	45.63
	50 대	203	0.0	22.2	22.2	50.7	25.1	2.0	27.1	100.0	2.93	48.28
	60 세 이상	78	0.0	23.1	23.1	52.6	20.5	3.8	24.4	100.0	2.95	48.72
지역별	수도 권	586	0.3	21.2	21.5	43.5	29.7	5.3	35.0	100.0	2.82	45.39
	중부 권	197	0.0	18.8	18.8	48.7	28.4	4.1	32.5	100.0	2.82	45.56
	전라 권	79	0.0	20.3	20.3	45.6	29.1	5.1	34.2	100.0	2.81	45.25
	경상 권	127	1.6	17.3	18.9	51.2	28.3	1.6	29.9	100.0	2.89	47.24
분야별	경제 주 권	23	0.0	21.7	21.7	47.8	26.1	4.3	30.4	100.0	2.87	46.74
	입법	151	0.7	20.5	21.2	42.4	29.8	6.6	36.4	100.0	2.79	44.70
	행정	212	0.5	22.6	23.1	50.5	24.1	2.4	26.4	100.0	2.95	48.70
	사법	90	1.1	21.1	22.2	55.6	22.2	0.0	22.2	100.0	3.01	50.28
직업별	학 계	208	0.0	15.9	15.9	48.1	33.2	2.9	36.1	100.0	2.77	44.23
	민 간	231	0.4	20.3	20.8	40.7	33.8	4.8	38.5	100.0	2.78	44.48
	예비 법전문가	120	0.0	21.7	21.7	40.0	26.7	11.7	38.3	100.0	2.72	42.92
	국회의원	50	0.0	10.0	10.0	46.0	28.0	16.0	44.0	100.0	2.50	37.50
	국회공무원	50	2.0	30.0	32.0	42.0	24.0	2.0	26.0	100.0	3.06	51.50
	지방의회의원	51	0.0	21.6	21.6	39.2	37.3	2.0	39.2	100.0	2.80	45.10
	국가공무원	112	0.0	23.2	23.2	47.3	25.9	3.6	29.5	100.0	2.90	47.54
	지방공무원	100	1.0	22.0	23.0	54.0	22.0	1.0	23.0	100.0	3.00	50.00
	검사	30	0.0	23.3	23.3	66.7	10.0	0.0	10.0	100.0	3.13	53.33
	판사	30	0.0	30.0	30.0	43.3	26.7	0.0	26.7	100.0	3.03	50.83
	법원공무원	30	3.3	10.0	13.3	56.7	30.0	0.0	30.0	100.0	2.87	46.67
	로스쿨교수	69	0.0	21.7	21.7	55.1	21.7	1.4	23.2	100.0	2.97	49.28
	법학과교수	70	0.0	15.7	15.7	55.7	28.6	0.0	28.6	100.0	2.87	46.79
	연구원	69	0.0	10.1	10.1	33.3	49.3	7.2	56.5	100.0	2.46	36.59
	변호사	110	0.9	22.7	23.6	33.6	37.3	5.5	42.7	100.0	2.76	44.09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8.2	18.2	47.1	30.6	4.1	34.7	100.0	2.79	44.83
법률 관련 자격증	로스쿨과정생	60	0.0	26.7	26.7	43.3	21.7	8.3	30.0	100.0	2.88	47.08
	박사과정생	60	0.0	16.7	16.7	36.7	31.7	15.0	46.7	100.0	2.55	38.75
	변호사자격증	221	0.5	23.5	24.0	43.0	30.3	2.7	33.0	100.0	2.89	47.17
법 관 련 종 사 기 간	타 자 격 증 음	136	0.0	18.4	18.4	48.5	29.4	3.7	33.1	100.0	2.82	45.40
	없 음	658	0.5	19.5	19.9	45.9	28.9	5.3	34.2	100.0	2.81	45.21
	1 ~ 5 년	444	0.5	18.7	19.1	45.0	28.8	7.0	35.8	100.0	2.77	44.20
	6 ~ 10 년	218	0.9	22.5	23.4	41.7	31.7	3.2	34.9	100.0	2.86	46.56
	11 ~ 15 년	89	0.0	20.2	20.2	40.4	37.1	2.2	39.3	100.0	2.79	44.66
	16 ~ 20 년	107	0.0	19.6	19.6	47.7	30.8	1.9	32.7	100.0	2.85	46.26
21년 이상	128	0.0	21.1	21.1	57.0	21.1	0.8	21.9	100.0	2.98	49.61	
무 응 답	26	0.0	23.1	23.1	46.2	19.2	11.5	30.8	100.0	2.81	45.19	

【부 록】

표 11-3. 사회 복지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되고 있지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0.9	19.1	20.0	44.3	31.9	3.9	35.8	100.0	2.81	45.31	
성별	남 자	726	1.0	21.8	22.7	43.7	30.0	3.6	33.6	100.0	2.87	46.63
	여 자	286	0.7	12.2	12.9	45.8	36.7	4.5	41.3	100.0	2.68	41.96
연령별	19 ~ 29 세	145	0.0	10.3	10.3	40.7	40.0	9.0	49.0	100.0	2.52	38.10
	30 대	306	1.0	17.3	18.3	43.8	33.7	4.2	37.9	100.0	2.77	44.28
	40 대	280	0.4	20.7	21.1	41.4	33.9	3.6	37.5	100.0	2.80	45.09
	50 대	203	1.5	21.2	22.7	52.7	24.1	0.5	24.6	100.0	2.99	49.75
	60 세 이상	78	2.6	30.8	33.3	41.0	23.1	2.6	25.6	100.0	3.08	51.92
지역별	수도 권	586	1.0	15.7	16.7	45.1	33.4	4.8	38.2	100.0	2.75	43.69
	중부 권	197	0.5	22.8	23.4	45.7	26.9	4.1	31.0	100.0	2.89	47.21
	전라 권	79	0.0	21.5	21.5	44.3	31.6	2.5	34.2	100.0	2.85	46.20
	경상 권	127	1.6	26.8	28.3	39.4	31.5	0.8	32.3	100.0	2.97	49.21
	제주 권	23	0.0	21.7	21.7	39.1	39.1	0.0	39.1	100.0	2.83	45.65
분야별	입법	151	2.6	14.6	17.2	46.4	32.5	4.0	36.4	100.0	2.79	44.87
	행정	212	0.0	26.4	26.4	50.0	21.2	2.4	23.6	100.0	3.00	50.12
	사법	90	1.1	27.8	28.9	45.6	25.6	0.0	25.6	100.0	3.04	51.11
	학계	208	1.0	15.9	16.8	42.3	36.5	4.3	40.9	100.0	2.73	43.15
	민간	231	0.4	18.6	19.0	43.3	33.3	4.3	37.7	100.0	2.77	44.37
직업별	예비 법전문가	120	0.8	11.7	12.5	35.8	44.2	7.5	51.7	100.0	2.54	38.54
	국회의원	50	2.0	14.0	16.0	40.0	34.0	10.0	44.0	100.0	2.64	41.00
	국회공무원	50	0.0	10.0	10.0	48.0	42.0	0.0	42.0	100.0	2.68	42.00
	지방의회 의원	51	5.9	19.6	25.5	51.0	21.6	2.0	23.5	100.0	3.06	51.47
	국가공무원	112	0.0	25.0	25.0	52.7	19.6	2.7	22.3	100.0	3.00	50.00
	지방공무원	100	0.0	28.0	28.0	47.0	23.0	2.0	25.0	100.0	3.01	50.25
	관사	30	0.0	23.3	23.3	63.3	13.3	0.0	13.3	100.0	3.10	52.50
	검사	30	0.0	36.7	36.7	33.3	30.0	0.0	30.0	100.0	3.07	51.67
	법원공무원	30	3.3	23.3	26.7	40.0	33.3	0.0	33.3	100.0	2.97	49.17
	로스쿨교수	69	2.9	17.4	20.3	39.1	40.6	0.0	40.6	100.0	2.83	45.65
	법학과교수	70	0.0	17.1	17.1	45.7	34.3	2.9	37.1	100.0	2.77	44.29
	연구원	69	0.0	13.0	13.0	42.0	34.8	10.1	44.9	100.0	2.58	39.49
	변호사	110	0.0	20.0	20.0	40.9	34.5	4.5	39.1	100.0	2.76	44.09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17.4	18.2	45.5	32.2	4.1	36.4	100.0	2.79	44.63
	로스쿨과정생	60	0.0	11.7	11.7	41.7	41.7	5.0	46.7	100.0	2.60	40.00
박사과정생	60	1.7	11.7	13.3	30.0	46.7	10.0	56.7	100.0	2.48	37.08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5	22.2	22.6	44.8	30.3	2.3	32.6	100.0	2.88	47.06
	타자격증	136	1.5	19.1	20.6	43.4	31.6	4.4	36.0	100.0	2.82	45.40
	없음	658	0.9	18.1	19.0	44.2	32.5	4.3	36.8	100.0	2.79	44.72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0.9	16.4	17.3	43.5	34.0	5.2	39.2	100.0	2.74	43.47
	6 ~ 10 년	218	0.9	17.0	17.9	46.3	30.7	5.0	35.8	100.0	2.78	44.50
	11 ~ 15 년	89	0.0	19.1	19.1	37.1	42.7	1.1	43.8	100.0	2.74	43.54
	16 ~ 20 년	107	0.9	16.8	17.8	49.5	30.8	1.9	32.7	100.0	2.84	46.03
	21년 이상	128	0.8	32.8	33.6	43.8	22.7	0.0	22.7	100.0	3.12	52.93
무응답	26	3.8	23.1	26.9	46.2	19.2	7.7	26.9	100.0	2.96	49.04	

표 11-4. 안전 관리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잘 실현되고 있지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b>전 체</b>	<b>1,012</b>	<b>0.6</b>	<b>10.7</b>	<b>11.3</b>	<b>35.8</b>	<b>44.0</b>	<b>9.0</b>	<b>53.0</b>	<b>100.0</b>	<b>2.50</b>	<b>37.48</b>	
성별	남 자	726	0.7	12.4	13.1	37.2	42.3	7.4	49.7	100.0	2.57	39.15
	여 자	286	0.3	6.3	6.6	32.2	48.3	12.9	61.2	100.0	2.33	33.22
연령별	19 ~ 29 세	145	1.4	9.0	10.3	31.0	44.1	14.5	58.6	100.0	2.39	34.66
	30 대	306	0.7	9.2	9.8	33.7	47.7	8.8	56.5	100.0	2.45	36.27
	40 대	280	0.4	10.0	10.4	37.1	43.2	9.3	52.5	100.0	2.49	37.23
	50 대	203	0.0	11.8	11.8	42.4	39.9	5.9	45.8	100.0	2.60	40.02
	60 세 이상	78	1.3	19.2	20.5	30.8	42.3	6.4	48.7	100.0	2.67	41.67
지역별	수도권	586	0.9	8.9	9.7	33.4	46.2	10.6	56.8	100.0	2.43	35.79
	중부권	197	0.0	11.7	11.7	41.6	40.1	6.6	46.7	100.0	2.58	39.59
	전라권	79	0.0	13.9	13.9	34.2	44.3	7.6	51.9	100.0	2.54	38.61
	경상권	127	0.8	13.4	14.2	37.0	42.5	6.3	48.8	100.0	2.60	39.96
	제주권	23	0.0	21.7	21.7	43.5	26.1	8.7	34.8	100.0	2.78	44.57
분야별	입법	151	0.7	7.3	7.9	34.4	48.3	9.3	57.6	100.0	2.42	35.43
	행정	212	0.5	14.6	15.1	47.6	31.6	5.7	37.3	100.0	2.73	43.16
	사법	90	2.2	17.8	20.0	41.1	38.9	0.0	38.9	100.0	2.83	45.83
	학계	208	0.5	4.8	5.3	27.9	55.3	11.5	66.8	100.0	2.27	31.85
	민간	231	0.4	12.1	12.6	34.2	45.0	8.2	53.2	100.0	2.52	37.88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0.0	10.0	10.0	29.2	42.5	18.3	60.8	100.0	2.31	32.71
	국회의원	50	0.0	6.0	6.0	34.0	52.0	8.0	60.0	100.0	2.38	34.50
	국회공무원	50	0.0	2.0	2.0	32.0	54.0	12.0	66.0	100.0	2.24	31.00
	지방의회 의원	51	2.0	13.7	15.7	37.3	39.2	7.8	47.1	100.0	2.63	40.69
	국가공무원	112	0.9	14.3	15.2	49.1	31.3	4.5	35.7	100.0	2.76	43.97
	지방공무원	100	0.0	15.0	15.0	46.0	32.0	7.0	39.0	100.0	2.69	42.25
	사관	30	3.3	13.3	16.7	36.7	46.7	0.0	46.7	100.0	2.73	43.33
	검사	30	3.3	26.7	30.0	43.3	26.7	0.0	26.7	100.0	3.07	51.67
	법원 공무원	30	0.0	13.3	13.3	43.3	43.3	0.0	43.3	100.0	2.70	42.50
	로스쿨 교수	69	0.0	7.2	7.2	24.6	63.8	4.3	68.1	100.0	2.35	33.70
	법학과 교수	70	0.0	5.7	5.7	34.3	50.0	10.0	60.0	100.0	2.36	33.93
	연구원	69	1.4	1.4	2.9	24.6	52.2	20.3	72.5	100.0	2.12	27.90
	변호사	110	0.9	13.6	14.5	30.9	46.4	8.2	54.5	100.0	2.53	38.1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0.7	10.7	37.2	43.8	8.3	52.1	100.0	2.50	37.60
	로스쿨과정생	60	0.0	11.7	11.7	26.7	43.3	18.3	61.7	100.0	2.32	32.92
박사과정생	60	0.0	8.3	8.3	31.7	41.7	18.3	60.0	100.0	2.30	32.5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1.4	15.4	16.7	31.7	46.2	5.4	51.6	100.0	2.61	40.27
	타 자격증	136	0.0	11.8	11.8	34.6	44.9	8.8	53.7	100.0	2.49	37.32
	없음	658	0.5	8.8	9.3	37.2	43.2	10.3	53.5	100.0	2.46	36.47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 년	444	0.7	9.7	10.4	36.0	42.3	11.3	53.6	100.0	2.46	36.54
	6 ~ 10 년	218	0.5	8.7	9.2	33.9	47.7	9.2	56.9	100.0	2.44	35.89
	11 ~ 15 년	89	1.1	11.2	12.4	28.1	52.8	6.7	59.6	100.0	2.47	36.80
	16 ~ 20 년	107	0.0	13.1	13.1	38.3	42.1	6.5	48.6	100.0	2.58	39.49
	21년 이상	128	0.8	14.8	15.6	39.8	40.6	3.9	44.5	100.0	2.68	41.99
무 응 답	26	0.0	11.5	11.5	42.3	34.6	11.5	46.2	100.0	2.54	38.46	

【부 록】

표 12.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12	13.4	54.8	68.3	30.1	1.6	31.7	100.0	
성별	남 자	726	16.4	55.4	71.8	26.6	1.7	28.2	100.0
	여 자	286	5.9	53.5	59.4	39.2	1.4	40.6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1.7	49.0	60.7	39.3	0.0	39.3	100.0
	30 대	306	8.8	56.9	65.7	32.4	2.0	34.3	100.0
	40 대	280	16.4	52.9	69.3	29.6	1.1	30.7	100.0
	50 대	203	16.3	60.6	76.8	20.2	3.0	23.2	100.0
	60 세 이상	78	16.7	50.0	66.7	32.1	1.3	33.3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4.2	51.4	65.5	32.3	2.2	34.5	100.0
	중부권	197	13.2	59.4	72.6	26.9	0.5	27.4	100.0
	전라권	79	15.2	60.8	75.9	24.1	0.0	24.1	100.0
	경상권	127	11.0	58.3	69.3	29.9	0.8	30.7	100.0
	제주권	23	4.3	65.2	69.6	26.1	4.3	30.4	100.0
분야별	입법	151	19.9	66.2	86.1	13.9	0.0	13.9	100.0
	행정	212	14.6	53.8	68.4	30.2	1.4	31.6	100.0
	사법	90	3.3	63.3	66.7	31.1	2.2	33.3	100.0
	학계	208	13.9	49.0	63.0	33.2	3.8	37.0	100.0
	민간	231	12.6	52.8	65.4	33.8	0.9	34.6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1.7	50.0	61.7	37.5	0.8	38.3	100.0
	국회의원	50	26.0	62.0	88.0	12.0	0.0	12.0	100.0
	국공무원	50	12.0	62.0	74.0	26.0	0.0	26.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1.6	74.5	96.1	3.9	0.0	3.9	100.0
	국가공무원	112	15.2	51.8	67.0	31.3	1.8	33.0	100.0
	지방공무원	100	14.0	56.0	70.0	29.0	1.0	30.0	100.0
	판사	30	3.3	76.7	80.0	20.0	0.0	20.0	100.0
	검사	30	0.0	43.3	43.3	50.0	6.7	56.7	100.0
	법원 공무원	30	6.7	70.0	76.7	23.3	0.0	23.3	100.0
	로스쿨 교수	69	13.0	42.0	55.1	37.7	7.2	44.9	100.0
	법학과 교수	70	20.0	51.4	71.4	28.6	0.0	28.6	100.0
	연구원	69	8.7	53.6	62.3	33.3	4.3	37.7	100.0
	변호사	110	14.5	55.5	70.0	30.0	0.0	3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0.7	50.4	61.2	37.2	1.7	38.8	100.0
	로스쿨 과정생	60	6.7	53.3	60.0	38.3	1.7	40.0	100.0
박사 과정생	60	16.7	46.7	63.3	36.7	0.0	36.7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10.0	55.2	65.2	33.0	1.8	34.8	100.0
	타 자격증	136	11.8	50.7	62.5	36.0	1.5	37.5	100.0
	없음	658	14.9	55.6	70.5	28.0	1.5	29.5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11.7	56.1	67.8	31.3	0.9	32.2	100.0
	6 ~ 10 년	218	12.8	55.0	67.9	30.3	1.8	32.1	100.0
	11 ~ 15 년	89	15.7	53.9	69.7	30.3	0.0	30.3	100.0
	16 ~ 20 년	107	15.9	56.1	72.0	24.3	3.7	28.0	100.0
	21년 이상	128	16.4	53.9	70.3	27.3	2.3	29.7	100.0
무 응 답	26	15.4	34.6	50.0	46.2	3.8	50.0	100.0	

표 12-1-1. 헌법 개정 필요 사항(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본권	대통령 단임제	정부형태	법원과 헌법 재판소 관련 조항	통일 관련 조항	경제 민주화	기타	모름/ 무응답	계 (비율)	
<b>전체</b>	<b>691</b>	<b>20.3</b>	<b>52.1</b>	<b>12.2</b>	<b>3.3</b>	<b>2.3</b>	<b>8.2</b>	<b>1.4</b>	<b>0.1</b>	<b>100.0</b>	
성별	남자	521	16.1	56.6	13.8	2.5	1.9	7.7	1.3	0.0	100.0
	여자	170	32.9	38.2	7.1	5.9	3.5	10.0	1.8	0.6	100.0
연령별	19 ~ 29세	88	34.1	40.9	13.6	1.1	0.0	9.1	1.1	0.0	100.0
	30대	201	23.9	47.3	10.9	6.0	1.5	9.0	1.0	0.5	100.0
	40대	194	17.0	57.7	9.8	2.1	2.1	10.3	1.0	0.0	100.0
	50대	156	14.7	55.8	12.8	1.9	5.8	5.8	3.2	0.0	100.0
	60세 이상	52	11.5	57.7	21.2	5.8	0.0	3.8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84	24.7	45.8	13.0	2.9	2.6	9.6	1.3	0.0	100.0
	중부권	143	15.4	59.4	12.6	2.8	2.1	5.6	1.4	0.7	100.0
	전라권	60	16.7	58.3	8.3	3.3	1.7	10.0	1.7	0.0	100.0
	경상권	88	12.5	62.5	10.2	4.5	2.3	5.7	2.3	0.0	100.0
	제주권	16	12.5	56.3	12.5	12.5	0.0	6.3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30	22.3	50.8	13.1	2.3	3.8	6.9	0.8	0.0	100.0
	행정	145	20.7	55.9	11.0	2.8	0.7	5.5	2.8	0.7	100.0
	사법	60	13.3	68.3	6.7	6.7	1.7	3.3	0.0	0.0	100.0
	학계	131	16.8	45.0	11.5	5.3	3.1	15.3	3.1	0.0	100.0
	민간	151	19.2	53.0	14.6	2.0	3.3	7.9	0.0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74	29.7	44.6	13.5	2.7	0.0	8.1	1.4	0.0	100.0
	국회의원	44	25.0	45.5	20.5	0.0	4.5	4.5	0.0	0.0	100.0
	국회공무원	37	21.6	51.4	16.2	0.0	2.7	5.4	2.7	0.0	100.0
	지방의회 의원	49	20.4	55.1	4.1	6.1	4.1	10.2	0.0	0.0	100.0
	국가공무원	75	16.0	69.3	5.3	0.0	0.0	2.7	5.3	1.3	100.0
	지방공무원	70	25.7	41.4	17.1	5.7	1.4	8.6	0.0	0.0	100.0
	판사	24	12.5	75.0	0.0	12.5	0.0	0.0	0.0	0.0	100.0
	검사	13	0.0	84.6	7.7	0.0	0.0	7.7	0.0	0.0	100.0
	법원공무원	23	21.7	52.2	13.0	4.3	4.3	4.3	0.0	0.0	100.0
	로스쿨교수	38	5.3	50.0	15.8	7.9	5.3	10.5	5.3	0.0	100.0
	법학과교수	50	20.0	48.0	10.0	2.0	2.0	14.0	4.0	0.0	100.0
	연구원	43	23.3	37.2	9.3	7.0	2.3	20.9	0.0	0.0	100.0
	변호사	77	16.9	59.7	13.0	2.6	2.6	5.2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74	21.6	45.9	16.2	1.4	4.1	10.8	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36	25.0	41.7	16.7	2.8	0.0	11.1	2.8	0.0	100.0
박사과정생	38	34.2	47.4	10.5	2.6	0.0	5.3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144	15.3	62.5	10.4	4.9	1.4	4.9	0.7	0.0	100.0
	타자격증	85	23.5	45.9	15.3	1.2	3.5	10.6	0.0	0.0	100.0
	없음	464	21.3	50.0	12.1	3.2	2.4	8.8	1.9	0.2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년	301	26.2	44.9	13.3	2.0	2.7	9.6	1.0	0.3	100.0
	6 ~ 10년	148	18.9	54.7	8.8	6.8	2.7	6.8	1.4	0.0	100.0
	11 ~ 15년	62	14.5	61.3	4.8	3.2	3.2	11.3	1.6	0.0	100.0
	16 ~ 20년	77	13.0	61.0	11.7	1.3	0.0	9.1	3.9	0.0	100.0
	21년 이상	90	12.2	58.9	16.7	4.4	2.2	4.4	1.1	0.0	100.0
무응답	13	23.1	46.2	30.8	0.0	0.0	0.0	0.0	0.0	100.0	



【부 록】

표 12-1-2. 헌법 개정 필요 사항(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본권	대통령 단임제	정부형태	법원과 헌법 재판소 관련 조항	통일 관련 조항	경제 민주화	기타	계 (비율)	
<b>전체</b>	<b>691</b>	<b>8.7</b>	<b>16.7</b>	<b>22.5</b>	<b>15.1</b>	<b>7.9</b>	<b>26.6</b>	<b>2.6</b>	<b>100.0</b>	
성별	남자	521	8.9	15.4	21.3	14.6	8.6	28.5	2.7	100.0
	여자	170	8.1	20.8	26.2	16.8	5.4	20.8	2.0	100.0
연령별	19 ~ 29세	88	8.4	20.5	24.1	18.1	9.6	16.9	2.4	100.0
	30대	201	8.0	20.7	17.8	18.4	7.5	24.7	2.9	100.0
	40대	194	9.3	14.5	25.6	11.0	9.3	26.2	4.1	100.0
	50대	156	8.8	12.9	23.1	14.3	5.4	34.0	1.4	100.0
	60세 이상	52	8.5	14.9	23.4	14.9	8.5	29.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84	8.8	18.8	22.2	16.5	6.6	23.6	3.4	100.0
	중부권	143	4.8	15.1	25.4	10.3	12.7	29.4	2.4	100.0
	전라권	60	12.7	14.5	20.0	14.5	3.6	34.5	0.0	100.0
	경상권 제주권	88 16	10.1 16.7	12.7 8.3	21.5 16.7	17.7 8.3	10.1 0.0	26.6 50.0	1.3 0.0	100.0 100.0
분야별	입법	130	9.0	16.4	26.2	11.5	5.7	28.7	2.5	100.0
	행정	145	5.7	13.8	25.2	11.4	10.6	29.3	4.1	100.0
	사법	60	7.7	13.5	25.0	21.2	5.8	25.0	1.9	100.0
	학계	131	9.2	20.2	24.4	16.0	6.7	21.0	2.5	100.0
	민간	151	10.9	13.1	13.9	18.2	10.9	30.7	2.2	100.0
	예비법전문가	74	8.6	25.7	22.9	15.7	4.3	21.4	1.4	100.0
직업별	국회의원	44	2.3	11.4	34.1	6.8	11.4	31.8	2.3	100.0
	국회공무원	37	18.2	21.2	24.2	12.1	0.0	21.2	3.0	100.0
	지방의회 의원	49	8.9	17.8	20.0	15.6	4.4	31.1	2.2	100.0
	국가공무원	75	4.7	9.4	31.3	12.5	7.8	28.1	6.3	100.0
	지방공무원	70	6.8	18.6	18.6	10.2	13.6	30.5	1.7	100.0
	관사	24	0.0	23.5	17.6	35.3	5.9	11.8	5.9	100.0
	검사	13	15.4	7.7	23.1	15.4	0.0	38.5	0.0	100.0
	법원공무원	23	9.1	9.1	31.8	13.6	9.1	27.3	0.0	100.0
	로스쿨교수	38	11.4	22.9	22.9	14.3	0.0	25.7	2.9	100.0
	법학과교수	50	8.5	19.1	34.0	14.9	6.4	17.0	0.0	100.0
	연구원	43	8.1	18.9	13.5	18.9	13.5	21.6	5.4	100.0
	변호사	77	8.7	14.5	13.0	23.2	13.0	24.6	2.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74	13.2	11.8	14.7	13.2	8.8	36.8	1.5	100.0
	로스쿨과정생	36	8.3	25.0	19.4	13.9	8.3	22.2	2.8	100.0
박사과정생	38	8.8	26.5	26.5	17.6	0.0	20.6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144	7.1	16.5	18.1	22.8	9.4	23.6	2.4	100.0
	타자격증	85	10.3	11.5	15.4	15.4	9.0	35.9	2.6	100.0
	없음	464	8.8	17.6	25.0	12.9	7.1	25.7	2.9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301	6.3	19.2	19.6	15.1	10.7	26.6	2.6	100.0
	6 ~ 10년	148	8.5	18.6	23.3	16.3	3.9	25.6	3.9	100.0
	11 ~ 15년	62	12.7	9.1	30.9	16.4	7.3	21.8	1.8	100.0
	16 ~ 20년	77	15.3	16.7	26.4	16.7	2.8	20.8	1.4	100.0
	21년 이상	90	9.5	11.9	21.4	9.5	9.5	35.7	2.4	100.0
	무응답	13	0.0	8.3	25.0	25.0	8.3	33.3	0.0	100.0

표 12-1-3. 헌법 개정 필요 사항(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본권	대통령 단임제	정부형태	법원과 헌법 재판소 관련 조항	통일 관련 조항	경제 민주화	기타	모름/ 무응답	
<b>전체</b>	<b>691</b>	<b>28.1</b>	<b>67.1</b>	<b>32.4</b>	<b>16.9</b>	<b>9.4</b>	<b>32.3</b>	<b>3.8</b>	<b>0.1</b>	
성별	남자	521	24.2	70.6	33.2	15.7	9.8	33.6	3.8	0.0
	여자	170	40.0	56.5	30.0	20.6	8.2	28.2	3.5	0.6
연령별	19 ~ 29세	88	42.0	60.2	36.4	18.2	9.1	25.0	3.4	0.0
	30대	201	30.8	65.2	26.4	21.9	8.0	30.3	3.5	0.5
	40대	194	25.3	70.6	32.5	11.9	10.3	33.5	4.6	0.0
	50대	156	23.1	67.9	34.6	15.4	10.9	37.8	4.5	0.0
	60세 이상	52	19.2	71.2	42.3	19.2	7.7	30.8	0.0	0.0
지역별	수도권	384	32.8	63.0	33.3	18.0	8.6	31.3	4.4	0.0
	중부권	143	19.6	72.7	35.0	11.9	13.3	31.5	3.5	0.7
	전라권	60	28.3	71.7	26.7	16.7	5.0	41.7	1.7	0.0
	경상권	88	21.6	73.9	29.5	20.5	11.4	29.5	3.4	0.0
	제주권	16	25.0	62.5	25.0	18.8	0.0	43.8	0.0	0.0
분야별	입법	130	30.8	66.2	37.7	13.1	9.2	33.8	3.1	0.0
	행정	145	25.5	67.6	32.4	12.4	9.7	30.3	6.2	0.7
	사법	60	20.0	80.0	28.3	25.0	6.7	25.0	1.7	0.0
	학계	131	25.2	63.4	33.6	19.8	9.2	34.4	5.3	0.0
	민간	151	29.1	64.9	27.2	18.5	13.2	35.8	2.0	0.0
	예비법전문가	74	37.8	68.9	35.1	17.6	4.1	28.4	2.7	0.0
직업별	국회의원	44	27.3	56.8	54.5	6.8	15.9	36.4	2.3	0.0
	국회공무원	37	37.8	70.3	37.8	10.8	2.7	24.3	5.4	0.0
	지방의회 의원	49	28.6	71.4	22.4	20.4	8.2	38.8	2.0	0.0
	국가공무원	75	20.0	77.3	32.0	10.7	6.7	26.7	10.7	1.3
	지방공무원	70	31.4	57.1	32.9	14.3	12.9	34.3	1.4	0.0
	관사	24	12.5	91.7	12.5	37.5	4.2	8.3	4.2	0.0
	검사	13	15.4	92.3	30.8	15.4	0.0	46.2	0.0	0.0
	법원 공무원	23	30.4	60.9	43.5	17.4	13.0	30.4	0.0	0.0
	로스쿨 교수	38	15.8	71.1	36.8	21.1	5.3	34.2	7.9	0.0
	법학과 교수	50	28.0	66.0	42.0	16.0	8.0	30.0	4.0	0.0
	연구원	43	30.2	53.5	20.9	23.3	14.0	39.5	4.7	0.0
	변호사	77	24.7	72.7	24.7	23.4	14.3	27.3	2.6	0.0
	법률서비스자격자	74	33.8	56.8	29.7	13.5	12.2	44.6	1.4	0.0
	로스쿨과정생	36	33.3	66.7	36.1	16.7	8.3	33.3	5.6	0.0
박사과정생	38	42.1	71.1	34.2	18.4	0.0	23.7	0.0	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144	14.0	50.2	17.2	16.3	6.3	16.7	1.8	0.0
	타자격증	85	20.6	35.3	18.4	9.6	7.4	27.2	1.5	0.0
	없음	464	20.7	46.5	24.5	10.5	6.2	22.6	3.2	0.2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301	31.9	62.1	30.9	15.6	12.3	33.6	3.3	0.3
	6 ~ 10년	148	26.4	70.9	29.1	20.9	6.1	29.1	4.7	0.0
	11 ~ 15년	62	25.8	69.4	32.3	17.7	9.7	30.6	3.2	0.0
	16 ~ 20년	77	27.3	76.6	36.4	16.9	2.6	28.6	5.2	0.0
	21년 이상	90	21.1	70.0	36.7	13.3	11.1	37.8	3.3	0.0
	무응답	13	23.1	53.8	53.8	23.1	7.7	30.8	0.0	0.0

【부 록】

표 13.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청원제도	입법예고 제도	공청회 제도 및 청문회 제도	회의공개 제도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비율)	
<b>전 체</b>	<b>1,012</b>	<b>20.5</b>	<b>9.7</b>	<b>45.9</b>	<b>20.2</b>	<b>2.9</b>	<b>0.3</b>	<b>0.6</b>	<b>100.0</b>	
성별	남 자	726	20.2	9.5	47.5	18.9	3.2	0.3	0.4	100.0
	여 자	286	21.0	10.1	42.0	23.4	2.1	0.3	1.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24.8	11.0	36.6	22.8	4.8	0.0	0.0	100.0
	30 대	306	19.3	11.4	46.4	19.9	2.0	0.3	0.7	100.0
	40 대	280	19.6	7.1	45.4	22.5	3.2	0.7	1.4	100.0
	50 대	203	18.7	9.9	51.7	16.7	3.0	0.0	0.0	100.0
	60 세 이상	78	24.4	9.0	48.7	16.7	1.3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9.6	9.7	45.7	20.6	3.6	0.0	0.7	100.0
	중부권	197	21.8	10.7	45.2	20.3	1.5	0.5	0.0	100.0
	전라권	79	22.8	12.7	44.3	15.2	2.5	1.3	1.3	100.0
	경상권	127	20.5	5.5	48.8	22.0	2.4	0.8	0.0	100.0
분야별	제 주 권	23	21.7	13.0	47.8	13.0	0.0	0.0	4.3	100.0
	입 법	151	27.2	8.6	45.7	12.6	4.0	0.0	2.0	100.0
	행 정	212	21.2	11.3	42.9	21.7	1.9	0.9	0.0	100.0
	사 법	90	11.1	15.6	58.9	12.2	1.1	0.0	1.1	100.0
	학 계	208	18.3	9.1	45.2	24.0	2.9	0.0	0.5	100.0
직업별	민 간	231	19.5	7.8	48.9	19.9	3.0	0.4	0.4	100.0
	예 비 법 전 문 가	120	23.3	8.3	37.5	26.7	4.2	0.0	0.0	100.0
	국 회 의 원	50	30.0	4.0	46.0	14.0	4.0	0.0	2.0	100.0
	국 회 공 무 원	50	20.0	14.0	44.0	14.0	6.0	0.0	2.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31.4	7.8	47.1	9.8	2.0	0.0	2.0	100.0
	국 가 공 무 원	112	22.3	11.6	33.9	28.6	2.7	0.9	0.0	100.0
	지 방 공 무 원	100	20.0	11.0	53.0	14.0	1.0	1.0	0.0	100.0
	관 사	30	6.7	13.3	56.7	20.0	0.0	0.0	3.3	100.0
	검 사	30	10.0	23.3	60.0	3.3	3.3	0.0	0.0	100.0
	법 원 공 무 원	30	16.7	10.0	60.0	13.3	0.0	0.0	0.0	100.0
	로 스 쿨 교 수	69	14.5	7.2	44.9	27.5	5.8	0.0	0.0	100.0
	법 학 과 교 수	70	22.9	15.7	37.1	22.9	0.0	0.0	1.4	100.0
	연 구 원	69	17.4	4.3	53.6	21.7	2.9	0.0	0.0	100.0
	연 번 호 사	110	26.4	5.5	43.6	20.0	2.7	0.9	0.9	100.0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13.2	9.9	53.7	19.8	3.3	0.0	0.0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60	30.0	6.7	35.0	25.0	3.3	0.0	0.0	100.0	
박 사 과 정 생	60	16.7	10.0	40.0	28.3	5.0	0.0	0.0	100.0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19.9	10.9	47.1	17.2	2.7	0.9	1.4	100.0
	타 자 격 증	136	12.5	8.8	54.4	20.6	3.7	0.0	0.0	100.0
	없 음	658	22.3	9.4	43.8	21.0	2.9	0.2	0.5	100.0
법 률 관 련 종 사 기 간	1 ~ 5 년	444	26.4	11.7	41.9	17.1	2.5	0.2	0.2	100.0
	6 ~ 10 년	218	13.8	8.7	45.9	24.8	5.0	0.9	0.9	100.0
	11 ~ 15 년	89	24.7	4.5	47.2	22.5	0.0	0.0	1.1	100.0
	16 ~ 20 년	107	10.3	7.5	48.6	29.0	3.7	0.0	0.9	100.0
	21년 이상	128	14.8	10.9	58.6	13.3	2.3	0.0	0.0	100.0
	무 응 답	26	30.8	3.8	38.5	23.1	0.0	0.0	3.8	100.0

표 14.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1,012	5.9	40.9	46.8	52.4	0.7	53.1	0.1	100.0	
성별	남 자	726	6.6	40.1	46.7	52.6	0.6	53.2	0.1	100.0
	여 자	286	4.2	43.0	47.2	51.7	1.0	52.8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4.1	42.1	46.2	53.1	0.7	53.8	0.0	100.0
	30 대	306	3.9	39.2	43.1	56.2	0.7	56.9	0.0	100.0
	40 대	280	7.5	40.4	47.9	52.1	0.0	52.1	0.0	100.0
	50 대	203	8.9	41.4	50.2	47.8	1.5	49.3	0.5	100.0
	60세 이상	78	3.8	46.2	50.0	48.7	1.3	5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6.0	42.8	48.8	50.5	0.7	51.2	0.0	100.0
	중부권	197	6.1	33.5	39.6	59.4	1.0	60.4	0.0	100.0
	전라권	79	7.6	46.8	54.4	45.6	0.0	45.6	0.0	100.0
	경상권	127	4.7	39.4	44.1	54.3	0.8	55.1	0.8	100.0
분야별	입법	151	11.9	42.4	54.3	45.7	0.0	45.7	0.0	100.0
	행정	212	1.9	27.4	29.2	68.4	2.4	70.8	0.0	100.0
	사법	90	2.2	28.9	31.1	67.8	0.0	67.8	1.1	100.0
	학계	208	8.2	54.8	63.0	37.0	0.0	37.0	0.0	100.0
	민간	231	6.5	42.9	49.4	50.2	0.4	50.6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3.3	44.2	47.5	51.7	0.8	52.5	0.0	100.0
	국회의원	50	12.0	28.0	40.0	60.0	0.0	6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8.0	50.0	58.0	42.0	0.0	42.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5.7	49.0	64.7	35.3	0.0	35.3	0.0	100.0
	국가공무원	112	0.9	23.2	24.1	73.2	2.7	75.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3.0	32.0	35.0	63.0	2.0	65.0	0.0	100.0
	관사	30	0.0	30.0	30.0	70.0	0.0	70.0	0.0	100.0
	검사	30	0.0	20.0	20.0	80.0	0.0	8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6.7	36.7	43.3	53.3	0.0	53.3	3.3	100.0
	로스쿨교수	69	10.1	53.6	63.8	36.2	0.0	36.2	0.0	100.0
	법학과교수	70	11.4	64.3	75.7	24.3	0.0	24.3	0.0	100.0
	연구원	69	2.9	46.4	49.3	50.7	0.0	50.7	0.0	100.0
	변호사	110	6.4	43.6	50.0	50.0	0.0	5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6.6	42.1	48.8	50.4	0.8	51.2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6.7	35.0	41.7	58.3	0.0	58.3	0.0	100.0
박사과정생	60	0.0	53.3	53.3	45.0	1.7	46.7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4.1	40.3	44.3	55.2	0.5	55.7	0.0	100.0
	타자격증	136	6.6	41.9	48.5	50.0	0.7	50.7	0.7	100.0
	없음	658	6.4	41.0	47.4	51.8	0.8	52.6	0.0	100.0
법 관련 사 기간	1 ~ 5년	444	5.0	37.6	42.6	56.8	0.7	57.4	0.0	100.0
	6 ~ 10년	218	6.0	45.4	51.4	48.2	0.5	48.6	0.0	100.0
	11 ~ 15년	89	7.9	50.6	58.4	41.6	0.0	41.6	0.0	100.0
	16 ~ 20년	107	8.4	43.9	52.3	47.7	0.0	47.7	0.0	100.0
	21년 이상	128	5.5	36.7	42.2	55.5	1.6	57.0	0.8	100.0
	무응답	26	7.7	34.6	42.3	53.8	3.8	57.7	0.0	100.0

【부 록】

표 14.1.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474</b>	<b>21.7</b>	<b>48.9</b>	<b>70.7</b>	<b>25.1</b>	<b>4.0</b>	<b>29.1</b>	<b>0.2</b>	<b>100.0</b>	
성별	남 자	339	25.1	49.3	74.3	21.5	3.8	25.4	0.3	100.0
	여 자	135	13.3	48.1	61.5	34.1	4.4	38.5	0.0	100.0
연령별	19 ~ 29세	67	10.4	49.3	59.7	37.3	3.0	40.3	0.0	100.0
	30대	132	18.9	43.9	62.9	29.5	6.8	36.4	0.8	100.0
	40대	134	24.6	47.0	71.6	23.9	4.5	28.4	0.0	100.0
	50대	102	26.5	55.9	82.4	15.7	2.0	17.6	0.0	100.0
	60세 이상	39	28.2	53.8	82.1	17.9	0.0	17.9	0.0	100.0
지역별	수도권	286	25.2	46.5	71.7	24.8	3.1	28.0	0.3	100.0
	중부권	78	17.9	42.3	60.3	32.1	7.7	39.7	0.0	100.0
	전라권	43	25.6	58.1	83.7	16.3	0.0	16.3	0.0	100.0
	경상권	56	7.1	62.5	69.6	23.2	7.1	30.4	0.0	100.0
	제주권	11	18.2	54.5	72.7	27.3	0.0	27.3	0.0	100.0
분야별	입법	82	39.0	52.4	91.5	7.3	1.2	8.5	0.0	100.0
	행정	62	14.5	35.5	50.0	45.2	4.8	50.0	0.0	100.0
	사법	28	0.0	67.9	67.9	28.6	3.6	32.1	0.0	100.0
	학계	131	25.2	48.1	73.3	23.7	3.1	26.7	0.0	100.0
	민간	114	18.4	49.1	67.5	25.4	6.1	31.6	0.9	100.0
	예비법전문가	57	14.0	50.9	64.9	29.8	5.3	35.1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20	40.0	45.0	85.0	15.0	0.0	15.0	0.0	100.0
	국회공무원	29	55.2	44.8	100.0	0.0	0.0	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33	24.2	63.6	87.9	9.1	3.0	12.1	0.0	100.0
	국가공무원	27	11.1	25.9	37.0	51.9	11.1	63.0	0.0	100.0
	지방공무원	35	17.1	42.9	60.0	40.0	0.0	40.0	0.0	100.0
	관사	9	0.0	88.9	88.9	11.1	0.0	11.1	0.0	100.0
	검사	6	0.0	83.3	83.3	0.0	16.7	16.7	0.0	100.0
	법원공무원	13	0.0	46.2	46.2	53.8	0.0	53.8	0.0	100.0
	로스쿨교수	44	25.0	52.3	77.3	20.5	2.3	22.7	0.0	100.0
	법학과교수	53	28.3	49.1	77.4	22.6	0.0	22.6	0.0	100.0
	연구원	34	20.6	41.2	61.8	29.4	8.8	38.2	0.0	100.0
	변호사	55	16.4	52.7	69.1	27.3	3.6	30.9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59	20.3	45.8	66.1	23.7	8.5	32.2	1.7	100.0
	로스쿨과정생	25	12.0	56.0	68.0	32.0	0.0	32.0	0.0	100.0
	박사과정생	32	15.6	46.9	62.5	28.1	9.4	37.5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98	5.0	24.0	29.0	14.0	1.4	15.4	0.0	44.3
	타자격증	66	10.3	21.3	31.6	13.2	2.9	16.2	0.7	48.5
	없음	312	11.9	22.8	34.7	10.9	1.8	12.8	0.0	47.4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년	189	16.9	48.1	65.1	32.3	2.1	34.4	0.5	100.0
	6 ~ 10년	112	25.9	47.3	73.2	20.5	6.3	26.8	0.0	100.0
	11 ~ 15년	52	13.5	53.8	67.3	23.1	9.6	32.7	0.0	100.0
	16 ~ 20년	56	23.2	50.0	73.2	21.4	5.4	26.8	0.0	100.0
	21년 이상	54	37.0	46.3	83.3	16.7	0.0	16.7	0.0	100.0
	무응답	11	18.2	63.6	81.8	18.2	0.0	18.2	0.0	100.0

표 14-2.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474</b>	<b>21.5</b>	<b>59.1</b>	<b>80.6</b>	<b>17.5</b>	<b>1.7</b>	<b>19.2</b>	<b>0.2</b>	<b>100.0</b>	
성별	남 자	339	23.6	61.7	85.3	13.6	0.9	14.5	0.3	100.0
	여 자	135	16.3	52.6	68.9	27.4	3.7	31.1	0.0	100.0
연령별	19 ~ 29세	67	16.4	56.7	73.1	25.4	1.5	26.9	0.0	100.0
	30 대	132	20.5	56.1	76.5	20.5	2.3	22.7	0.8	100.0
	40 대	134	19.4	57.5	76.9	20.1	3.0	23.1	0.0	100.0
	50 대	102	32.4	57.8	90.2	9.8	0.0	9.8	0.0	100.0
	60세 이상	39	12.8	82.1	94.9	5.1	0.0	5.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286	21.7	59.1	80.8	17.8	1.0	18.9	0.3	100.0
	중부권	78	19.2	51.3	70.5	24.4	5.1	29.5	0.0	100.0
	진라권	43	23.3	67.4	90.7	9.3	0.0	9.3	0.0	100.0
	경상권	56	23.2	64.3	87.5	10.7	1.8	12.5	0.0	100.0
	제주권	11	18.2	54.5	72.7	27.3	0.0	27.3	0.0	100.0
분야별	입법	82	23.2	56.1	79.3	17.1	3.7	20.7	0.0	100.0
	행정	62	14.5	46.8	61.3	33.9	4.8	38.7	0.0	100.0
	사법	28	21.4	60.7	82.1	17.9	0.0	17.9	0.0	100.0
	학계	131	29.8	57.3	87.0	11.5	1.5	13.0	0.0	100.0
	민간	114	16.7	68.4	85.1	14.0	0.0	14.0	0.9	100.0
	예비법전문가	57	17.5	61.4	78.9	21.1	0.0	21.1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20	15.0	45.0	60.0	35.0	5.0	40.0	0.0	100.0
	국회공무원	29	20.7	58.6	79.3	17.2	3.4	20.7	0.0	100.0
	지방의회 의원	33	30.3	60.6	90.9	6.1	3.0	9.1	0.0	100.0
	국가공무원	27	14.8	40.7	55.6	33.3	11.1	44.4	0.0	100.0
	지방공무원	35	14.3	51.4	65.7	34.3	0.0	34.3	0.0	100.0
	관사	9	44.4	55.6	100.0	0.0	0.0	0.0	0.0	100.0
	검사	6	16.7	50.0	66.7	33.3	0.0	33.3	0.0	100.0
	법원공무원	13	7.7	69.2	76.9	23.1	0.0	23.1	0.0	100.0
	로스쿨교수	44	29.5	63.6	93.2	6.8	0.0	6.8	0.0	100.0
	법학과교수	53	22.6	67.9	90.6	9.4	0.0	9.4	0.0	100.0
	연구원	34	41.2	32.4	73.5	20.6	5.9	26.5	0.0	100.0
	변호사	55	20.0	67.3	87.3	12.7	0.0	12.7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59	13.6	69.5	83.1	15.3	0.0	15.3	1.7	100.0
	로스쿨과정생	25	12.0	64.0	76.0	24.0	0.0	24.0	0.0	100.0
	박사과정생	32	21.9	59.4	81.3	18.8	0.0	18.8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98	9.0	29.4	38.5	5.9	0.0	5.9	0.0	44.3
	타자격증	66	7.4	33.1	40.4	7.4	0.0	7.4	0.7	48.5
	없음	312	10.9	26.1	37.1	9.1	1.2	10.3	0.0	47.4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189	19.6	58.7	78.3	20.6	0.5	21.2	0.5	100.0
	6 ~ 10년	112	25.0	54.5	79.5	16.1	4.5	20.5	0.0	100.0
	11 ~ 15년	52	11.5	63.5	75.0	23.1	1.9	25.0	0.0	100.0
	16 ~ 20년	56	17.9	67.9	85.7	12.5	1.8	14.3	0.0	100.0
	21년 이상	54	35.2	59.3	94.4	5.6	0.0	5.6	0.0	100.0
	무응답	11	18.2	45.5	63.6	36.4	0.0	36.4	0.0	100.0

【부 록】

표 14.3.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474</b>	<b>22.6</b>	<b>53.8</b>	<b>76.4</b>	<b>19.2</b>	<b>4.2</b>	<b>23.4</b>	<b>0.2</b>	<b>100.0</b>	
성별	남 자	339	23.6	53.7	77.3	18.3	4.1	22.4	0.3	100.0
	여 자	135	20.0	54.1	74.1	21.5	4.4	25.9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67	19.4	46.3	65.7	29.9	4.5	34.3	0.0	100.0
	30 대	132	21.2	54.5	75.8	17.4	6.1	23.5	0.8	100.0
	40 대	134	21.6	53.7	75.4	21.6	3.0	24.6	0.0	100.0
	50 대	102	25.5	56.9	82.4	14.7	2.9	17.6	0.0	100.0
	60 세 이상	39	28.2	56.4	84.6	10.3	5.1	15.4	0.0	100.0
지역별	수 도 권	286	19.6	56.3	75.9	18.9	4.9	23.8	0.3	100.0
	중 부 권	78	29.5	44.9	74.4	23.1	2.6	25.6	0.0	100.0
	전 라 권	43	25.6	53.5	79.1	16.3	4.7	20.9	0.0	100.0
	경 상 권	56	26.8	51.8	78.6	17.9	3.6	21.4	0.0	100.0
분야별	입 법	82	15.9	56.1	72.0	24.4	3.7	28.0	0.0	100.0
	행 정	62	19.4	54.8	74.2	21.0	4.8	25.8	0.0	100.0
	사 법	28	17.9	60.7	78.6	21.4	0.0	21.4	0.0	100.0
	학 계	131	30.5	48.9	79.4	17.6	3.1	20.6	0.0	100.0
	민 간	114	21.9	52.6	74.6	17.5	7.0	24.6	0.9	100.0
	예 비 법 전 문 가	57	21.1	59.6	80.7	15.8	3.5	19.3	0.0	100.0
직업별	국 회 의 원	20	10.0	50.0	60.0	30.0	10.0	40.0	0.0	100.0
	국 회 공 무 원	29	10.3	62.1	72.4	24.1	3.4	27.6	0.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33	24.2	54.5	78.8	21.2	0.0	21.2	0.0	100.0
	국 가 공 무 원	27	22.2	44.4	66.7	29.6	3.7	33.3	0.0	100.0
	지 방 공 무 원	35	17.1	62.9	80.0	14.3	5.7	20.0	0.0	100.0
	관 사	9	22.2	77.8	100.0	0.0	0.0	0.0	0.0	100.0
	검 사	6	16.7	50.0	66.7	33.3	0.0	33.3	0.0	100.0
	법 원 공 무 원	13	15.4	53.8	69.2	30.8	0.0	30.8	0.0	100.0
	로 스 쿨 교 수	44	22.7	56.8	79.5	18.2	2.3	20.5	0.0	100.0
	법 학 과 교 수	53	32.1	52.8	84.9	11.3	3.8	15.1	0.0	100.0
	연 구 원	34	38.2	32.4	70.6	26.5	2.9	29.4	0.0	100.0
	연 번 호 사	55	21.8	54.5	76.4	18.2	5.5	23.6	0.0	100.0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59	22.0	50.8	72.9	16.9	8.5	25.4	1.7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25	20.0	64.0	84.0	12.0	4.0	16.0	0.0	100.0
박 사 과 정 생	32	21.9	56.3	78.1	18.8	3.1	21.9	0.0	100.0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98	10.4	25.8	36.2	6.8	1.4	8.1	0.0	44.3
	타 자 격 증	66	10.3	25.7	36.0	8.1	3.7	11.8	0.7	48.5
	없 음	312	10.8	24.9	35.7	9.9	1.8	11.7	0.0	47.4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189	18.0	51.9	69.8	23.8	5.8	29.6	0.5	100.0
	6 ~ 10 년	112	21.4	55.4	76.8	20.5	2.7	23.2	0.0	100.0
	11 ~ 15 년	52	28.8	53.8	82.7	17.3	0.0	17.3	0.0	100.0
	16 ~ 20 년	56	26.8	55.4	82.1	10.7	7.1	17.9	0.0	100.0
	21 년 이상	54	33.3	50.0	83.3	14.8	1.9	16.7	0.0	100.0
	무 응 답	11	9.1	81.8	90.9	0.0	9.1	9.1	0.0	100.0

표 14.4. 상위법과 행정입법간의 충돌 해결 -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474</b>	<b>33.3</b>	<b>48.1</b>	<b>81.4</b>	<b>15.8</b>	<b>2.7</b>	<b>18.6</b>	<b>100.0</b>	
성별	남 자	339	33.6	49.0	82.6	14.7	2.7	17.4	100.0
	여 자	135	32.6	45.9	78.5	18.5	3.0	21.5	100.0
연령별	19 ~ 29 세	67	32.8	40.3	73.1	25.4	1.5	26.9	100.0
	30 대	132	35.6	50.8	86.4	12.9	0.8	13.6	100.0
	40 대	134	27.6	49.3	76.9	19.4	3.7	23.1	100.0
	50 대	102	41.2	44.1	85.3	9.8	4.9	14.7	100.0
	60세 이상	39	25.6	59.0	84.6	12.8	2.6	15.4	100.0
지역별	수도 권	286	30.4	50.3	80.8	16.4	2.8	19.2	100.0
	중 부 권	78	32.1	43.6	75.6	20.5	3.8	24.4	100.0
	전 라 권	43	41.9	39.5	81.4	16.3	2.3	18.6	100.0
	경 상 권	56	44.6	48.2	92.9	5.4	1.8	7.1	100.0
	제주 권	11	27.3	54.5	81.8	18.2	0.0	18.2	100.0
분야별	입 법	82	35.4	52.4	87.8	12.2	0.0	12.2	100.0
	행 정	62	22.6	48.4	71.0	22.6	6.5	29.0	100.0
	사 법	28	14.3	67.9	82.1	14.3	3.6	17.9	100.0
	학 계	131	36.6	46.6	83.2	13.7	3.1	16.8	100.0
	민 간	114	35.1	44.7	79.8	17.5	2.6	20.2	100.0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57	40.4	42.1	82.5	15.8	1.8	17.5	100.0
	국 회 의 원	20	25.0	65.0	90.0	10.0	0.0	10.0	100.0
	국 회 공 무 원	29	41.4	48.3	89.7	10.3	0.0	10.3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33	36.4	48.5	84.8	15.2	0.0	15.2	100.0
	국 가 공 무 원	27	22.2	44.4	66.7	29.6	3.7	33.3	100.0
	지 방 공 무 원	35	22.9	51.4	74.3	17.1	8.6	25.7	100.0
	판 사	9	11.1	66.7	77.8	11.1	11.1	22.2	100.0
	검 사	6	33.3	50.0	83.3	16.7	0.0	16.7	100.0
	법 원 공 무 원	13	7.7	76.9	84.6	15.4	0.0	15.4	100.0
	로 스 쿨 교 수	44	31.8	52.3	84.1	11.4	4.5	15.9	100.0
	법 학 과 교 수	53	34.0	49.1	83.0	13.2	3.8	17.0	100.0
	연 구 원	34	47.1	35.3	82.4	17.6	0.0	17.6	100.0
	변 호 사	55	27.3	47.3	74.5	21.8	3.6	25.5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59	42.4	42.4	84.7	13.6	1.7	15.3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25	36.0	48.0	84.0	16.0	0.0	16.0	100.0
박 사 과 정 생	32	43.8	37.5	81.3	15.6	3.1	18.8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98	10.9	23.1	33.9	9.0	1.4	10.4	44.3
	타 자 격 증	66	20.6	21.3	41.9	5.9	0.7	6.6	48.5
	없 음	312	16.4	22.5	38.9	7.1	1.4	8.5	47.4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189	32.8	46.6	79.4	18.5	2.1	20.6	100.0
	6 ~ 10 년	112	31.3	48.2	79.5	18.8	1.8	20.5	100.0
	11 ~ 15 년	52	34.6	50.0	84.6	13.5	1.9	15.4	100.0
	16 ~ 20 년	56	33.9	46.4	80.4	12.5	7.1	19.6	100.0
	21년 이상	54	38.9	53.7	92.6	5.6	1.9	7.4	100.0
무 응 답	11	27.3	45.5	72.7	18.2	9.1	27.3	100.0	



【부 록】

표 15.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6.2</b>	<b>51.0</b>	<b>57.2</b>	<b>38.1</b>	<b>4.1</b>	<b>42.2</b>	<b>0.6</b>	<b>100.0</b>	
성별	남 자	726	7.2	51.4	58.5	36.8	4.3	41.0	0.4	100.0
	여 자	286	3.8	50.0	53.8	41.6	3.5	45.1	1.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2.8	51.7	54.5	40.7	4.1	44.8	0.7	100.0
	30 대	306	4.9	48.4	53.3	42.5	3.6	46.1	0.7	100.0
	40 대	280	4.3	50.4	54.6	40.4	4.3	44.6	0.7	100.0
	50 대	203	10.8	53.7	64.5	31.5	3.4	35.0	0.5	100.0
	60세 이상	78	12.8	55.1	67.9	25.6	6.4	32.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5.6	50.7	56.3	38.7	4.1	42.8	0.9	100.0
	중부권	197	8.6	47.2	55.8	39.6	4.6	44.2	0.0	100.0
	전라권	79	3.8	53.2	57.0	39.2	2.5	41.8	1.3	100.0
	경상권	127	7.1	54.3	61.4	34.6	3.9	38.6	0.0	100.0
	제주권	23	4.3	65.2	69.6	26.1	4.3	30.4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9.3	49.7	58.9	34.4	6.0	40.4	0.7	100.0
	행정	212	7.5	52.4	59.9	34.9	4.2	39.2	0.9	100.0
	사법	90	3.3	58.9	62.2	37.8	0.0	37.8	0.0	100.0
	학계	208	6.7	47.1	53.8	40.9	5.3	46.2	0.0	100.0
	민간	231	5.2	51.5	56.7	40.3	2.2	42.4	0.9	100.0
	예비법전문가	120	3.3	50.0	53.3	40.0	5.8	45.8	0.8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0.0	56.0	66.0	30.0	4.0	3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0	34.0	38.0	52.0	10.0	62.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3.7	58.8	72.5	21.6	3.9	25.5	2.0	100.0
	국가공무원	112	8.9	45.5	54.5	43.8	1.8	45.5	0.0	100.0
	지방공무원	100	6.0	60.0	66.0	25.0	7.0	32.0	2.0	100.0
	판사	30	3.3	56.7	60.0	40.0	0.0	40.0	0.0	100.0
	검사	30	0.0	53.3	53.3	46.7	0.0	46.7	0.0	100.0
	법원 공무원	30	6.7	66.7	73.3	26.7	0.0	26.7	0.0	100.0
	로스쿨 교수	69	8.7	52.2	60.9	31.9	7.2	39.1	0.0	100.0
	법학과 교수	70	4.3	48.6	52.9	42.9	4.3	47.1	0.0	100.0
	연구원	69	7.2	40.6	47.8	47.8	4.3	52.2	0.0	100.0
	변호사	110	2.7	47.3	50.0	44.5	4.5	49.1	0.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7.4	55.4	62.8	36.4	0.0	36.4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5.0	53.3	58.3	35.0	5.0	40.0	1.7	100.0
박사과정생	60	1.7	46.7	48.3	45.0	6.7	51.7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3.2	48.4	51.6	43.4	4.5	48.0	0.5	100.0
	타 자격증	136	6.6	55.1	61.8	37.5	0.0	37.5	0.7	100.0
	없음	658	7.1	51.1	58.2	36.5	4.7	41.2	0.6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4.7	50.7	55.4	39.9	3.6	43.5	1.1	100.0
	6 ~ 10 년	218	6.0	48.2	54.1	41.7	4.1	45.9	0.0	100.0
	11 ~ 15 년	89	3.4	55.1	58.4	39.3	2.2	41.6	0.0	100.0
	16 ~ 20 년	107	8.4	50.5	58.9	35.5	4.7	40.2	0.9	100.0
	21년 이상	128	10.9	57.8	68.8	26.6	4.7	31.3	0.0	100.0
무 응 답	26	11.5	34.6	46.2	42.3	11.5	53.8	0.0	100.0	

표 16. 간통에 대한 민사적 해결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법제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유책주의 이혼 원인에서 순수 파탄 주의로 전환	제한적 파탄 주의에서 간통한 자의 이혼청구 범위 확대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	유책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제한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b>전체</b>	<b>1,012</b>	<b>16.1</b>	<b>16.4</b>	<b>51.7</b>	<b>13.8</b>	<b>0.7</b>	<b>0.3</b>	<b>1.0</b>	<b>100.0</b>	
성별	남자	726	17.6	17.2	49.2	13.9	0.7	0.4	1.0	100.0
	여자	286	12.2	14.3	58.0	13.6	0.7	0.0	1.0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14.5	17.9	55.2	12.4	0.0	0.0	0.0	100.0
	30대	306	12.4	14.1	59.8	12.7	0.7	0.0	0.3	100.0
	40대	280	16.4	13.9	53.9	11.8	1.4	0.4	2.1	100.0
	50대	203	23.6	17.2	37.4	19.7	0.0	0.5	1.5	100.0
	60세 이상	78	12.8	29.5	42.3	12.8	1.3	1.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6.0	17.1	52.0	12.8	0.7	0.2	1.2	100.0
	중부권	197	17.8	14.2	48.2	17.3	0.5	0.5	1.5	100.0
	전라권	79	11.4	15.2	54.4	17.7	1.3	0.0	0.0	100.0
	경상권	127	15.0	16.5	56.7	10.2	0.8	0.8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15.9	21.9	41.7	16.6	0.0	0.0	4.0	100.0
	행정	212	15.6	17.9	44.8	19.8	0.5	0.5	0.9	100.0
	사법	90	15.6	12.2	65.6	5.6	1.1	0.0	0.0	100.0
	학계	208	20.2	13.5	51.0	12.5	1.0	1.0	1.0	100.0
	민간	231	15.6	16.0	57.1	10.8	0.4	0.0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1.7	15.8	56.7	14.2	1.7	0.0	0.0	100.0
	국회의원	50	12.0	20.0	46.0	18.0	0.0	0.0	4.0	100.0
	국회공무원	50	22.0	12.0	54.0	8.0	0.0	0.0	4.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3.7	33.3	25.5	23.5	0.0	0.0	3.9	100.0
	국가공무원	112	15.2	14.3	53.6	13.4	0.9	0.9	1.8	100.0
	지방공무원	100	16.0	22.0	35.0	27.0	0.0	0.0	0.0	100.0
	판사	30	16.7	3.3	66.7	10.0	3.3	0.0	0.0	100.0
	검사	30	13.3	6.7	73.3	6.7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6.7	26.7	56.7	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17.4	17.4	55.1	7.2	0.0	1.4	1.4	100.0
	법학과교수	70	25.7	12.9	45.7	12.9	2.9	0.0	0.0	100.0
	연구원	69	17.4	10.1	52.2	17.4	0.0	1.4	1.4	100.0
	변호사	110	20.9	8.2	69.1	1.8	0.0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0.7	23.1	46.3	19.0	0.8	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13.3	11.7	61.7	13.3	0.0	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10.0	20.0	51.7	15.0	3.3	0.0	0.0	100.0
법률관련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6.7	10.0	67.4	5.4	0.5	0.0	0.0	100.0
	타자격증	136	12.5	22.1	47.8	16.9	0.7	0.0	0.0	100.0
	없음	658	16.7	17.3	47.1	16.1	0.8	0.5	1.5	100.0
법관련종사기간	1 ~ 5년	444	14.9	17.3	54.1	12.8	0.0	0.0	0.9	100.0
	6 ~ 10년	218	14.7	13.3	54.1	15.1	0.9	0.0	1.8	100.0
	11 ~ 15년	89	14.6	16.9	52.8	13.5	1.1	1.1	0.0	100.0
	16 ~ 20년	107	22.4	11.2	45.8	16.8	2.8	0.9	0.0	100.0
	21년 이상	128	18.8	19.5	46.9	12.5	0.8	0.0	1.6	100.0
무응답	26	15.4	30.8	34.6	15.4	0.0	3.8	0.0	100.0	

【부 록】

표 17.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7.5</b>	<b>38.4</b>	<b>45.9</b>	<b>46.6</b>	<b>7.3</b>	<b>54.0</b>	<b>0.1</b>	<b>100.0</b>	
성별	남 자	726	5.6	35.3	40.9	50.7	8.3	59.0	0.1	100.0
	여 자	286	12.2	46.5	58.7	36.4	4.9	41.3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1.7	40.7	52.4	37.9	9.7	47.6	0.0	100.0
	30 대	306	8.2	39.2	47.4	45.4	7.2	52.6	0.0	100.0
	40 대	280	4.6	36.1	40.7	50.7	8.6	59.3	0.0	100.0
	50 대	203	6.4	39.9	46.3	47.8	5.4	53.2	0.5	100.0
	60 세 이상	78	10.3	35.9	46.2	50.0	3.8	53.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8.0	39.1	47.1	43.9	8.9	52.7	0.2	100.0
	중부권	197	7.1	37.1	44.2	50.3	5.6	55.8	0.0	100.0
	전라권	79	5.1	38.0	43.0	53.2	3.8	57.0	0.0	100.0
	경상권	127	7.1	37.8	44.9	50.4	4.7	55.1	0.0	100.0
분야별	제주권	23	8.7	39.1	47.8	43.5	8.7	52.2	0.0	100.0
	입법	151	8.6	41.7	50.3	45.7	3.3	49.0	0.7	100.0
	행정	212	8.0	42.9	50.9	43.9	5.2	49.1	0.0	100.0
	사법	90	6.7	42.2	48.9	46.7	4.4	51.1	0.0	100.0
	학계	208	2.9	34.6	37.5	51.0	11.5	62.5	0.0	100.0
직업별	민간	231	8.7	38.1	46.8	45.5	7.8	53.2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1.7	30.8	42.5	47.5	10.0	57.5	0.0	100.0
	국회의원	50	6.0	38.0	44.0	52.0	4.0	56.0	0.0	100.0
	국회공무원	50	2.0	46.0	48.0	46.0	6.0	52.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17.6	41.2	58.8	39.2	0.0	39.2	2.0	100.0
	국가공무원	112	6.3	44.6	50.9	41.1	8.0	49.1	0.0	100.0
	지방공무원	100	10.0	41.0	51.0	47.0	2.0	49.0	0.0	100.0
	판사	30	6.7	53.3	60.0	36.7	3.3	40.0	0.0	100.0
	검사	30	3.3	36.7	40.0	50.0	10.0	6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0.0	36.7	46.7	53.3	0.0	53.3	0.0	100.0
	로스쿨교수	69	2.9	26.1	29.0	55.1	15.9	71.0	0.0	100.0
	법학과교수	70	2.9	42.9	45.7	48.6	5.7	54.3	0.0	100.0
	연구원	69	2.9	34.8	37.7	49.3	13.0	62.3	0.0	100.0
	변호사	110	2.7	38.2	40.9	49.1	10.0	59.1	0.0	100.0
법률관련자격증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4.0	38.0	52.1	42.1	5.8	47.9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6.7	28.3	35.0	51.7	13.3	65.0	0.0	100.0
	박사과정생	60	16.7	33.3	50.0	43.3	6.7	5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3.2	42.1	45.2	45.2	9.5	54.8	0.0	100.0
	타자격증	136	12.5	36.8	49.3	44.9	5.9	50.7	0.0	100.0
법관련종사기간	없음	658	7.9	37.7	45.6	47.3	7.0	54.3	0.2	100.0
	1 ~ 5년	444	9.9	39.2	49.1	44.4	6.3	50.7	0.2	100.0
	6 ~ 10년	218	5.5	38.5	44.0	46.3	9.6	56.0	0.0	100.0
	11 ~ 15년	89	3.4	34.8	38.2	57.3	4.5	61.8	0.0	100.0
	16 ~ 20년	107	6.5	35.5	42.1	48.6	9.3	57.9	0.0	100.0
	21년 이상	128	6.3	42.2	48.4	43.8	7.8	51.6	0.0	100.0
무응답	26	7.7	30.8	38.5	57.7	3.8	61.5	0.0	100.0	

표 18.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실근로 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b>전체</b>	<b>1,012</b>	<b>20.8</b>	<b>17.7</b>	<b>7.8</b>	<b>24.3</b>	<b>26.7</b>	<b>2.4</b>	<b>0.2</b>	<b>0.1</b>	<b>100.0</b>	
성별	남자	726	19.6	19.3	6.5	24.5	27.4	2.3	0.3	0.1	100.0
	여성	286	24.1	13.6	11.2	23.8	24.8	2.4	0.0	0.0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26.2	19.3	11.0	21.4	20.7	1.4	0.0	0.0	100.0
	30대	306	28.4	13.1	6.9	27.1	21.9	2.6	0.0	0.0	100.0
	40대	280	17.1	18.6	4.6	23.6	33.2	2.5	0.4	0.0	100.0
	50대	203	15.8	20.7	8.9	26.1	25.6	2.0	0.5	0.5	100.0
	60세 이상	78	7.7	21.8	14.1	16.7	35.9	3.8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22.5	16.9	7.8	24.4	25.8	2.4	0.0	0.2	100.0
	중부권	197	21.8	19.3	10.7	25.9	19.8	2.0	0.5	0.0	100.0
	전라권	79	8.9	17.7	1.3	20.3	48.1	3.8	0.0	0.0	100.0
	경상권	127	18.9	19.7	7.1	21.3	30.7	1.6	0.8	0.0	100.0
	제주권	23	21.7	13.0	8.7	39.1	13.0	4.3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17.2	18.5	7.9	22.5	29.8	3.3	0.0	0.7	100.0
	행정	212	24.5	20.8	8.5	24.5	20.3	0.9	0.5	0.0	100.0
	사법	90	31.1	16.7	8.9	14.4	27.8	1.1	0.0	0.0	100.0
	학계	208	10.6	19.7	5.8	28.8	32.2	2.9	0.0	0.0	100.0
	민간	231	23.8	14.3	8.7	23.4	26.0	3.5	0.4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23.3	15.0	7.5	27.5	25.0	1.7	0.0	0.0	100.0
	국회의원	50	24.0	18.0	2.0	20.0	26.0	10.0	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8.0	8.0	12.0	20.0	42.0	0.0	0.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9.8	29.4	9.8	27.5	21.6	0.0	0.0	2.0	100.0
	국가공무원	112	25.0	20.5	10.7	25.0	16.1	1.8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24.0	21.0	6.0	24.0	25.0	0.0	0.0	0.0	100.0
	판사	30	40.0	20.0	3.3	3.3	30.0	3.3	0.0	0.0	100.0
	검사	30	43.3	0.0	6.7	16.7	33.3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0.0	30.0	16.7	23.3	2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11.6	10.1	8.7	30.4	34.8	4.3	0.0	0.0	100.0
	법학과교수	70	7.1	27.1	4.3	24.3	37.1	0.0	0.0	0.0	100.0
	연구원	69	13.0	21.7	4.3	31.9	24.6	4.3	0.0	0.0	100.0
	변호사	110	23.6	10.0	7.3	28.2	27.3	2.7	0.9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4.0	18.2	9.9	19.0	24.8	4.1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로스쿨과정생	60	33.3	13.3	5.0	23.3	21.7	3.3	0.0	0.0
박사과정생		60	13.3	16.7	10.0	31.7	28.3	0.0	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24.4	9.0	7.7	24.0	32.1	2.3	0.5	0.0	100.0
타자격증		136	20.6	19.1	11.0	21.3	23.5	4.4	0.0	0.0	100.0
없음		658	19.6	20.2	7.1	25.4	25.4	2.0	0.2	0.2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23.6	17.1	9.2	24.3	23.6	2.0	0.0	0.0	100.0
	6 ~ 10년	218	23.9	16.5	5.0	22.9	28.9	2.3	0.0	0.5	100.0
	11 ~ 15년	89	21.3	19.1	5.6	20.2	31.5	1.1	1.1	0.0	100.0
	16 ~ 20년	107	12.1	15.9	9.3	29.9	29.0	3.7	0.0	0.0	100.0
	21년 이상	128	14.8	19.5	7.0	25.8	28.9	3.1	0.8	0.0	100.0
무응답	26	11.5	30.8	11.5	19.2	23.1	3.8	0.0	0.0	100.0	

【부 록】

표 19.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 확대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국민참여 재판의 피고인 신청주의 개선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개선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전 체	1,012	17.5	42.7	6.1	21.5	10.1	1.6	0.3	0.2	100.0	
성별	남 자	726	17.8	40.8	6.5	22.3	10.2	1.9	0.4	0.1	100.0
	여 자	286	16.8	47.6	5.2	19.6	9.8	0.7	0.0	0.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7.9	43.4	2.8	24.1	10.3	1.4	0.0	0.0	100.0
	30 대	306	19.0	44.4	7.2	20.9	6.2	2.3	0.0	0.0	100.0
	40 대	280	17.1	39.3	7.1	22.9	11.1	1.4	0.7	0.4	100.0
	50 대	203	16.3	43.8	6.4	20.7	10.8	1.5	0.0	0.5	100.0
	60세 이상	78	15.4	43.6	3.8	16.7	19.2	0.0	1.3	0.0	100.0
지역별	수 도 권	586	19.5	42.7	5.5	21.5	9.4	1.4	0.0	0.2	100.0
	중 부 권	197	15.2	48.2	6.6	18.8	7.6	2.0	1.0	0.5	100.0
	전 라 권	79	15.2	32.9	6.3	29.1	13.9	1.3	1.3	0.0	100.0
	경 상 권	127	14.2	40.2	7.9	22.0	13.4	2.4	0.0	0.0	100.0
	체 주 권	23	13.0	43.5	8.7	17.4	17.4	0.0	0.0	0.0	100.0
분야별	입 법	151	21.9	45.0	6.0	13.2	12.6	0.7	0.0	0.7	100.0
	행 정	212	15.1	51.9	5.7	17.0	8.0	0.9	0.9	0.5	100.0
	사 법	90	6.7	51.1	13.3	14.4	10.0	4.4	0.0	0.0	100.0
	학 계	208	19.2	34.1	6.3	27.4	11.1	1.9	0.0	0.0	100.0
	민 간	231	19.9	40.3	3.9	26.0	9.5	0.0	0.4	0.0	100.0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16.7	36.7	5.8	26.7	10.0	4.2	0.0	0.0	100.0
	국 회 의 원	50	20.0	44.0	6.0	18.0	10.0	0.0	0.0	2.0	100.0
	국 회 공 무 원	50	22.0	46.0	4.0	14.0	12.0	2.0	0.0	0.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23.5	45.1	7.8	7.8	15.7	0.0	0.0	0.0	100.0
	국 가 공 무 원	112	12.5	58.0	5.4	15.2	6.3	0.0	1.8	0.9	100.0
	지 방 공 무 원	100	18.0	45.0	6.0	19.0	10.0	2.0	0.0	0.0	100.0
	관 사	30	3.3	46.7	26.7	3.3	16.7	3.3	0.0	0.0	100.0
	검 사	30	0.0	60.0	6.7	23.3	3.3	6.7	0.0	0.0	100.0
	법 원 공 무 원	30	16.7	46.7	6.7	16.7	10.0	3.3	0.0	0.0	100.0
	로 스 쿨 교 수	69	17.4	36.2	5.8	27.5	8.7	4.3	0.0	0.0	100.0
	법 학 과 교 수	70	21.4	35.7	8.6	21.4	12.9	0.0	0.0	0.0	100.0
	연 구 원	69	18.8	30.4	4.3	33.3	11.6	1.4	0.0	0.0	100.0
	변 호 사	110	16.4	37.3	5.5	31.8	9.1	0.0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3.1	43.0	2.5	20.7	9.9	0.0	0.8	0.0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60	16.7	40.0	0.0	28.3	11.7	3.3	0.0	0.0	100.0	
박 사 과 정 생	60	16.7	33.3	11.7	25.0	8.3	5.0	0.0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10.9	43.0	10.0	25.3	9.5	1.4	0.0	0.0	100.0
	타 자 격 증	136	23.5	45.6	1.5	18.4	10.3	0.0	0.7	0.0	100.0
	없 음	658	18.5	42.1	5.8	20.8	10.2	2.0	0.3	0.3	100.0
법 관 연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19.8	44.6	3.8	22.5	8.1	0.9	0.0	0.2	100.0
	6 ~ 10 년	218	13.8	39.9	9.2	21.6	13.3	2.3	0.0	0.0	100.0
	11 ~ 15 년	89	19.1	42.7	9.0	15.7	9.0	3.4	1.1	0.0	100.0
	16 ~ 20 년	107	15.9	43.0	8.4	21.5	8.4	1.9	0.9	0.0	100.0
	21년 이상	128	16.4	42.2	4.7	21.9	11.7	1.6	0.8	0.8	100.0
무 응 답	26	15.4	34.6	7.7	23.1	19.2	0.0	0.0	0.0	100.0	

표 20.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전 체	1,012	5.6	57.1	62.7	34.1	3.2	37.3	100.0	
성별	남 자	726	3.4	50.3	53.7	42.1	4.1	46.3	100.0
	여 자	286	11.2	74.5	85.7	13.6	0.7	14.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0.3	56.6	66.9	29.0	4.1	33.1	100.0
	30 대	306	5.9	59.8	65.7	30.7	3.6	34.3	100.0
	40 대	280	5.4	54.3	59.6	38.6	1.8	40.4	100.0
	50 대	203	4.4	56.7	61.1	35.5	3.4	38.9	100.0
	60 세 이상	78	0.0	59.0	59.0	37.2	3.8	41.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6.0	59.6	65.5	31.4	3.1	34.5	100.0
	중부권	197	5.6	52.8	58.4	39.1	2.5	41.6	100.0
	전라권	79	5.1	60.8	65.8	31.6	2.5	34.2	100.0
	경상권	127	4.7	49.6	54.3	40.2	5.5	45.7	100.0
분야별	제 주 권	23	4.3	60.9	65.2	34.8	0.0	34.8	100.0
	입법	151	6.6	58.3	64.9	33.1	2.0	35.1	100.0
	행정	212	4.7	43.4	48.1	48.1	3.8	51.9	100.0
	사법	90	2.2	50.0	52.2	44.4	3.3	47.8	100.0
	학계	208	6.3	71.2	77.4	21.2	1.4	22.6	100.0
직업별	민간	231	4.8	55.4	60.2	35.1	4.8	39.8	100.0
	예비전문가	120	9.2	64.2	73.3	23.3	3.3	26.7	100.0
	국회의원	50	10.0	58.0	68.0	30.0	2.0	32.0	100.0
	국회공무원	50	4.0	68.0	72.0	28.0	0.0	28.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5.9	49.0	54.9	41.2	3.9	45.1	100.0
	국가공무원	112	4.5	38.4	42.9	51.8	5.4	57.1	100.0
	지방공무원	100	5.0	49.0	54.0	44.0	2.0	46.0	100.0
	관사	30	0.0	70.0	70.0	30.0	0.0	30.0	100.0
	검사	30	6.7	43.3	50.0	46.7	3.3	50.0	100.0
	법원공무원	30	0.0	36.7	36.7	56.7	6.7	63.3	100.0
	로스쿨교수	69	5.8	69.6	75.4	23.2	1.4	24.6	100.0
	법학과교수	70	5.7	74.3	80.0	17.1	2.9	20.0	100.0
	연구원	69	7.2	69.6	76.8	23.2	0.0	23.2	100.0
	변호사	110	7.3	59.1	66.4	30.9	2.7	33.6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5	52.1	54.5	38.8	6.6	45.5	100.0	
로스쿨과정생	60	10.0	68.3	78.3	18.3	3.3	21.7	100.0	
박사과정생	60	8.3	60.0	68.3	28.3	3.3	31.7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5.4	63.3	68.8	29.0	2.3	31.2	100.0
	타자격증	136	3.7	50.7	54.4	39.7	5.9	45.6	100.0
	없음	658	6.1	56.2	62.3	34.8	2.9	37.7	100.0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6.8	57.7	64.4	32.2	3.4	35.6	100.0
	6 ~ 10 년	218	4.6	55.5	60.1	37.6	2.3	39.9	100.0
	11 ~ 15 년	89	4.5	66.3	70.8	28.1	1.1	29.2	100.0
	16 ~ 20 년	107	6.5	51.4	57.9	39.3	2.8	42.1	100.0
	21년 이상	128	4.7	53.9	58.6	35.9	5.5	41.4	100.0
무응답	26	0.0	69.2	69.2	26.9	3.8	30.8	100.0	

【부 록】

표 20-1.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	기타	계 (비율)	
<b>전 체</b>	<b>635</b>	<b>7.4</b>	<b>6.9</b>	<b>42.7</b>	<b>16.1</b>	<b>25.4</b>	<b>1.6</b>	<b>100.0</b>	
성별	남 자	390	7.4	6.7	40.0	15.1	29.0	1.8	100.0
	여 자	245	7.3	7.3	46.9	17.6	19.6	1.2	100.0
연령별	19 ~ 29 세	97	6.2	11.3	44.3	13.4	22.7	2.1	100.0
	30 ~ 39 세	201	7.5	5.5	40.8	16.4	26.9	3.0	100.0
	40 ~ 49 세	167	6.0	6.6	47.9	15.6	24.0	0.0	100.0
	50 ~ 59 세	124	8.9	5.6	41.1	16.1	26.6	1.6	100.0
	60 세 이상	46	10.9	8.7	32.6	21.7	26.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84	9.4	7.3	42.2	15.1	24.0	2.1	100.0
	중부권	115	4.3	7.8	48.7	15.7	22.6	0.9	100.0
	전라권	52	3.8	9.6	38.5	15.4	30.8	1.9	100.0
	경상권	69	5.8	1.4	36.2	26.1	30.4	0.0	100.0
분야별	입법	98	8.2	4.1	43.9	12.2	31.6	0.0	100.0
	행정	102	5.9	9.8	48.0	15.7	20.6	0.0	100.0
	사법	47	6.4	6.4	46.8	14.9	25.5	0.0	100.0
	학계	161	8.7	6.8	42.2	18.6	22.4	1.2	100.0
	민간	139	7.2	5.8	42.4	15.8	28.1	0.7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88	6.8	9.1	34.1	17.0	25.0	8.0	100.0
	국회의원	34	11.8	8.8	29.4	11.8	38.2	0.0	100.0
	국공무원	36	5.6	0.0	69.4	11.1	13.9	0.0	100.0
	지방의회 의원	28	7.1	3.6	28.6	14.3	46.4	0.0	100.0
	국가공무원	48	4.2	14.6	58.3	4.2	18.8	0.0	100.0
	지방공무원	54	7.4	5.6	38.9	25.9	22.2	0.0	100.0
	판사	21	0.0	4.8	61.9	14.3	19.0	0.0	100.0
	검사	15	13.3	0.0	33.3	6.7	46.7	0.0	100.0
	법원 공무원	11	9.1	18.2	36.4	27.3	9.1	0.0	100.0
	로스쿨 교수	52	9.6	3.8	36.5	23.1	25.0	1.9	100.0
	법학과 교수	56	10.7	10.7	44.6	16.1	17.9	0.0	100.0
	연구원	53	5.7	5.7	45.3	17.0	24.5	1.9	100.0
	변호사	73	6.8	1.4	49.3	12.3	28.8	1.4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66	7.6	10.6	34.8	19.7	27.3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로스쿨과정생	47	6.4	6.4	38.3	19.1	21.3	8.5	100.0
	박사과정생	41	7.3	12.2	29.3	14.6	29.3	7.3	100.0
	변호사자격증	152	7.9	3.3	46.1	13.8	27.6	1.3	100.0
	타자격증	74	6.8	10.8	36.5	21.6	24.3	0.0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없음	410	7.3	7.8	42.4	15.9	24.6	2.0	100.0
	1 ~ 5년	286	8.0	7.0	42.0	14.7	26.6	1.7	100.0
	6 ~ 10년	131	5.3	7.6	47.3	14.5	23.7	1.5	100.0
	11 ~ 15년	63	14.3	4.8	33.3	17.5	30.2	0.0	100.0
	16 ~ 20년	62	4.8	8.1	45.2	19.4	19.4	3.2	100.0
	21년 이상	75	4.0	6.7	45.3	17.3	25.3	1.3	100.0
무응답	18	11.1	5.6	33.3	27.8	22.2	0.0	100.0	

표 21.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사후관리 강화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비율)	
<b>전체</b>	<b>1,012</b>	<b>20.0</b>	<b>28.9</b>	<b>21.3</b>	<b>12.5</b>	<b>16.3</b>	<b>1.0</b>	<b>0.1</b>	<b>100.0</b>	
성별	남자	726	22.7	28.2	20.4	11.6	15.7	1.2	0.1	100.0
	여자	286	12.9	30.4	23.8	14.7	17.8	0.3	0.0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9.7	30.3	29.0	15.9	15.2	0.0	0.0	100.0
	30대	306	14.1	28.4	22.5	15.7	19.0	0.3	0.0	100.0
	40대	280	22.9	28.2	20.7	11.8	15.0	1.4	0.0	100.0
	50대	203	31.0	29.6	13.8	8.4	14.8	2.0	0.5	100.0
	60세 이상	78	23.1	28.2	24.4	6.4	16.7	1.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9.6	27.6	22.7	11.1	17.6	1.2	0.2	100.0
	중부권	197	18.3	28.9	18.8	14.7	18.8	0.5	0.0	100.0
	전라권	79	22.8	32.9	17.7	15.2	11.4	0.0	0.0	100.0
	경상권	127	24.4	29.1	21.3	11.8	11.8	1.6	0.0	100.0
	제주권	23	8.7	43.5	21.7	21.7	4.3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24.5	23.8	21.2	6.6	22.5	1.3	0.0	100.0
	행정	212	22.2	26.9	19.3	9.9	20.3	1.4	0.0	100.0
	사법	90	21.1	25.6	27.8	22.2	3.3	0.0	0.0	100.0
	학계	208	22.6	30.8	16.3	13.5	15.4	1.4	0.0	100.0
	민간	231	13.9	33.3	24.7	12.1	15.2	0.4	0.4	100.0
	예비전문가	120	16.7	29.2	22.5	15.8	15.0	0.8	0.0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4.0	22.0	18.0	12.0	32.0	2.0	0.0	100.0
	국회공무원	50	22.0	28.0	30.0	6.0	12.0	2.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37.3	21.6	15.7	2.0	23.5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27.7	25.0	17.9	10.7	17.9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16.0	29.0	21.0	9.0	23.0	2.0	0.0	100.0
	판사	30	30.0	20.0	23.3	26.7	0.0	0.0	0.0	100.0
	검사	30	20.0	30.0	26.7	23.3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3.3	26.7	33.3	16.7	1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26.1	27.5	17.4	11.6	14.5	2.9	0.0	100.0
	법학과교수	70	25.7	25.7	20.0	11.4	15.7	1.4	0.0	100.0
	연구원	69	15.9	39.1	11.6	17.4	15.9	0.0	0.0	100.0
	변호사	110	15.5	35.5	23.6	11.8	12.7	0.9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2.4	31.4	25.6	12.4	17.4	0.0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31.7	21.7	18.3	6.7	1.7	0.0	100.0
박사과정생	60	13.3	26.7	23.3	13.3	23.3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8.6	33.0	22.2	18.1	7.7	0.5	0.0	100.0
	타자격증	136	13.2	32.4	23.5	11.8	18.4	0.0	0.7	100.0
	없음	658	21.7	26.7	20.5	10.9	18.7	1.4	0.0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15.8	27.0	25.2	13.7	18.0	0.2	0.0	100.0
	6 ~ 10년	218	19.3	28.0	22.0	14.2	15.6	0.9	0.0	100.0
	11 ~ 15년	89	30.3	30.3	10.1	9.0	19.1	1.1	0.0	100.0
	16 ~ 20년	107	16.8	35.5	20.6	10.3	13.1	2.8	0.9	100.0
	21년 이상	128	31.3	28.9	14.8	9.4	14.1	1.6	0.0	100.0
	무응답	26	19.2	34.6	23.1	11.5	7.7	3.8	0.0	100.0



【부 록】

표 22.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국공립 교육 시설 확대	교사의 처우 개선	교사의 자질 향상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b>전 체</b>	<b>1,012</b>	<b>44.5</b>	<b>18.1</b>	<b>16.3</b>	<b>16.4</b>	<b>3.7</b>	<b>0.8</b>	<b>0.2</b>	<b>0.1</b>	<b>100.0</b>
성별	남 자	726	46.4	17.2	14.6	16.8	3.9	0.8	0.3	100.0
	여 자	286	39.5	20.3	20.6	15.4	3.1	0.7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31.7	18.6	22.1	23.4	3.4	0.0	0.7	100.0
	30 대	306	44.8	23.2	15.0	13.4	3.3	0.3	0.0	100.0
	40 대	280	45.4	15.7	17.1	17.1	2.9	1.4	0.0	100.0
	50 대	203	49.8	12.8	13.8	16.7	5.4	1.0	0.5	100.0
	60세 이상	78	50.0	19.2	14.1	11.5	3.8	1.3	0.0	100.0
지역별	수 도 권	586	41.5	19.1	17.9	17.9	3.1	0.3	0.0	100.0
	중 부 권	197	52.3	15.2	14.2	11.2	4.1	2.0	1.0	100.0
	전 라 권	79	43.0	16.5	11.4	22.8	5.1	1.3	0.0	100.0
	경 상 주 권	127	47.2	19.7	14.2	13.4	4.7	0.8	0.0	100.0
분야별	입 법	151	36.4	19.2	17.9	20.5	3.3	2.0	0.0	100.0
	행 정	212	43.4	19.8	13.7	14.2	8.0	0.9	0.0	100.0
	사 법	90	51.1	23.3	10.0	12.2	2.2	0.0	1.1	100.0
	학 계	208	51.4	14.4	14.9	16.3	2.4	0.5	0.0	100.0
	민 간	231	48.5	17.7	15.2	15.6	1.7	0.9	0.4	100.0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31.7	16.7	28.3	20.0	3.3	0.0	0.0	100.0
	국 회 의 원	50	24.0	28.0	18.0	22.0	4.0	4.0	0.0	100.0
	국 회 공 무 원	50	46.0	22.0	14.0	12.0	2.0	2.0	0.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39.2	7.8	21.6	27.5	3.9	0.0	0.0	100.0
	국 가 공 무 원	112	49.1	17.0	13.4	13.4	5.4	1.8	0.0	100.0
	지 방 공 무 원	100	37.0	23.0	14.0	15.0	11.0	0.0	0.0	100.0
	관 사	30	56.7	20.0	13.3	10.0	0.0	0.0	0.0	100.0
	검 사	30	46.7	33.3	6.7	13.3	0.0	0.0	0.0	100.0
	법 원 공 무 원	30	50.0	16.7	10.0	13.3	6.7	0.0	3.3	100.0
	로 스 쿨 교 수	69	59.4	4.3	10.1	24.6	1.4	0.0	0.0	100.0
	법 학 과 교 수	70	41.4	21.4	18.6	15.7	2.9	0.0	0.0	100.0
	연 구 원	69	53.6	17.4	15.9	8.7	2.9	1.4	0.0	100.0
	변 호 사	110	48.2	18.2	13.6	16.4	0.9	1.8	0.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48.8	17.4	16.5	14.9	2.5	0.0	0.0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60	36.7	15.0	25.0	21.7	1.7	0.0	0.0	100.0	
박 사 과 정 생	60	26.7	18.3	31.7	18.3	5.0	0.0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48.0	22.2	11.8	15.8	0.5	1.4	0.5	100.0
	타 자 격 증	136	50.0	16.9	14.7	14.7	2.9	0.0	0.7	100.0
	없 음	658	42.2	16.9	18.1	17.0	4.9	0.8	0.2	100.0
법 관 관 사 기 간	1 ~ 5 년	444	37.4	22.3	18.5	17.8	3.4	0.5	0.2	100.0
	6 ~ 10 년	218	48.6	17.0	16.1	12.4	4.1	1.4	0.0	100.0
	11 ~ 15 년	89	57.3	11.2	11.2	16.9	3.4	0.0	0.0	100.0
	16 ~ 20 년	107	44.9	13.1	15.0	18.7	5.6	2.8	0.0	100.0
	21년 이상	128	53.9	12.5	14.8	15.6	2.3	0.0	0.8	100.0
무 응 답	26	38.5	26.9	11.5	19.2	3.8	0.0	0.0	100.0	

표 23.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1,012	62.8	36.0	98.8	1.1	0.1	1.2	100.0	
성별	남 자	726	62.9	35.5	98.5	1.4	0.1	1.5	100.0
	여 자	286	62.6	37.1	99.7	0.3	0.0	0.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58.6	40.0	98.6	1.4	0.0	1.4	100.0
	30 대	306	63.4	35.0	98.4	1.3	0.3	1.6	100.0
	40 대	280	67.9	32.1	100.0	0.0	0.0	0.0	100.0
	50 대	203	62.1	36.9	99.0	1.0	0.0	1.0	100.0
	60세 이상	78	52.6	43.6	96.2	3.8	0.0	3.8	100.0
지역별	수도 권	586	61.6	37.2	98.8	1.2	0.0	1.2	100.0
	중부 권	197	65.0	32.5	97.5	2.0	0.5	2.5	100.0
	전라 권	79	59.5	40.5	100.0	0.0	0.0	0.0	100.0
	경상 권	127	67.7	32.3	100.0	0.0	0.0	0.0	100.0
	제주 권	23	60.9	39.1	100.0	0.0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64.9	33.8	98.7	1.3	0.0	1.3	100.0
	행정	212	64.2	34.4	98.6	0.9	0.5	1.4	100.0
	사법	90	46.7	53.3	100.0	0.0	0.0	0.0	100.0
	학계	208	60.1	39.9	100.0	0.0	0.0	0.0	100.0
	민간	231	69.7	28.1	97.8	2.2	0.0	2.2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61.7	36.7	98.3	1.7	0.0	1.7	100.0
	국회의원	50	72.0	26.0	98.0	2.0	0.0	2.0	100.0
	국회공무원	50	64.0	36.0	100.0	0.0	0.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58.8	39.2	98.0	2.0	0.0	2.0	100.0
	국가공무원	112	65.2	33.9	99.1	0.0	0.9	0.9	100.0
	지방공무원	100	63.0	35.0	98.0	2.0	0.0	2.0	100.0
	판사	30	46.7	53.3	100.0	0.0	0.0	0.0	100.0
	검사	30	40.0	60.0	10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53.3	46.7	10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60.9	39.1	100.0	0.0	0.0	0.0	100.0
	법학과교수	70	57.1	42.9	100.0	0.0	0.0	0.0	100.0
	연구원	69	62.3	37.7	100.0	0.0	0.0	0.0	100.0
	변호사	110	68.2	28.2	96.4	3.6	0.0	3.6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71.1	28.1	99.2	0.8	0.0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63.3	35.0	98.3	1.7	0.0	1.7	100.0
박사과정생	60	60.0	38.3	98.3	1.7	0.0	1.7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55.2	43.0	98.2	1.8	0.0	1.8	100.0
	타자격증	136	71.3	27.9	99.3	0.7	0.0	0.7	100.0
	없음	658	63.7	35.3	98.9	0.9	0.2	1.1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63.1	35.6	98.6	1.1	0.2	1.4	100.0
	6 ~ 10년	218	60.1	38.5	98.6	1.4	0.0	1.4	100.0
	11 ~ 15년	89	68.5	31.5	100.0	0.0	0.0	0.0	100.0
	16 ~ 20년	107	71.0	28.0	99.1	0.9	0.0	0.9	100.0
	21년 이상	128	56.3	42.2	98.4	1.6	0.0	1.6	100.0
무 응 답	26	61.5	38.5	100.0	0.0	0.0	0.0	100.0	

【부 록】

표 23-1.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형사 처벌화	과징금 적용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집단 소송제도 확대	기타	계 (비율)	
전 체	1,000	18.9	6.2	64.6	9.5	0.8	100.0	
성별	남 자	715	17.6	5.9	65.9	10.1	0.6	100.0
	여 자	285	22.1	7.0	61.4	8.1	1.4	100.0
연령별	19 ~ 29 세	143	16.1	14.0	60.1	9.8	0.0	100.0
	30 대	301	14.6	6.6	69.1	7.6	2.0	100.0
	40 대	280	15.7	5.0	67.5	11.4	0.4	100.0
	50 대	201	27.9	2.5	58.7	10.9	0.0	100.0
	60세 이상	75	29.3	4.0	60.0	5.3	1.3	100.0
지역별	수도 권	579	18.3	8.3	62.2	10.2	1.0	100.0
	중부 권	192	19.3	3.1	67.2	9.4	1.0	100.0
	전라 권	79	19.0	5.1	67.1	8.9	0.0	100.0
	경상 권	127	16.5	2.4	72.4	8.7	0.0	100.0
	제주 권	23	43.5	4.3	52.2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49	26.8	7.4	53.7	11.4	0.7	100.0
	행정	209	23.0	3.8	65.6	6.7	1.0	100.0
	사법	90	17.8	8.9	65.6	6.7	1.1	100.0
	학계	208	12.5	5.8	67.8	13.0	1.0	100.0
	민간	226	18.6	5.3	65.9	9.7	0.4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18	14.4	9.3	67.8	7.6	0.8	100.0
	국회의원	49	24.5	14.3	59.2	2.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4.0	8.0	58.0	18.0	2.0	100.0
	지방의회의원	50	42.0	0.0	44.0	14.0	0.0	100.0
	국가공무원	111	18.0	2.7	68.5	9.0	1.8	100.0
	지방공무원	98	28.6	5.1	62.2	4.1	0.0	100.0
	판사	30	6.7	0.0	83.3	6.7	3.3	100.0
	검사	30	23.3	13.3	60.0	3.3	0.0	100.0
	법원공무원	30	23.3	13.3	53.3	1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18.8	2.9	62.3	15.9	0.0	100.0
	법학과교수	70	7.1	10.0	70.0	11.4	1.4	100.0
	연구원	69	11.6	4.3	71.0	11.6	1.4	100.0
	변호사	106	10.4	5.7	77.4	6.6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0	25.8	5.0	55.8	12.5	0.8	100.0
로스쿨과정생	59	11.9	11.9	72.9	1.7	1.7	100.0	
박사과정생	59	16.9	6.8	62.7	13.6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17	11.1	6.5	73.7	7.8	0.9	100.0
	타자격증	135	24.4	4.4	57.0	13.3	0.7	100.0
	없음	651	20.3	6.5	63.3	9.2	0.8	100.0
법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38	18.0	9.4	64.4	8.0	0.2	100.0
	6 ~ 10년	215	16.7	6.0	66.5	8.8	1.9	100.0
	11 ~ 15년	89	12.4	2.2	66.3	18.0	1.1	100.0
	16 ~ 20년	106	26.4	0.9	59.4	12.3	0.9	100.0
	21년 이상	126	24.6	3.2	64.3	7.9	0.0	100.0
무응답	26	15.4	3.8	69.2	7.7	3.8	100.0	

표 24.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개선 사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불안정한 인공지능 상용화 규제	인공지능 문제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	기술 개발에 대한 절차 규제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 제한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비율)	
<b>전체</b>	<b>1,012</b>	<b>23.0</b>	<b>20.8</b>	<b>5.5</b>	<b>33.8</b>	<b>15.3</b>	<b>0.8</b>	<b>0.2</b>	<b>0.5</b>	<b>100.0</b>	
성별	남자	726	20.4	22.6	5.8	35.1	14.7	0.7	0.3	0.4	100.0
	여자	286	29.7	16.4	4.9	30.4	16.8	1.0	0.0	0.7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22.8	19.3	4.8	28.3	23.4	1.4	0.0	0.0	100.0
	30대	306	22.9	22.5	6.2	33.0	14.7	0.7	0.0	0.0	100.0
	40대	280	22.1	23.2	5.4	36.4	10.4	1.1	0.4	1.1	100.0
	50대	203	23.2	19.2	3.9	39.4	12.8	0.0	0.5	1.0	100.0
	60세 이상	78	26.9	12.8	9.0	23.1	26.9	1.3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22.4	22.2	6.1	32.8	14.8	0.9	0.2	0.7	100.0
	중부권	197	25.9	20.8	5.1	32.5	14.2	1.5	0.0	0.0	100.0
	전라권	79	30.4	13.9	5.1	27.8	21.5	0.0	0.0	1.3	100.0
	경상권	127	15.0	21.3	3.9	42.5	16.5	0.0	0.8	0.0	100.0
분야별	제주권	23	34.8	8.7	4.3	43.5	8.7	0.0	0.0	0.0	100.0
	입법	151	27.8	16.6	3.3	32.5	17.2	2.0	0.0	0.7	100.0
	행정	212	24.1	20.3	4.7	34.9	14.2	0.9	0.5	0.5	100.0
	사법	90	21.1	21.1	3.3	40.0	14.4	0.0	0.0	0.0	100.0
직업별	학계	208	23.6	27.4	6.7	30.8	10.1	0.5	0.5	0.5	100.0
	민간	231	20.8	18.6	6.9	34.2	17.7	0.9	0.0	0.9	100.0
	예비전문가	120	20.0	20.0	6.7	33.3	20.0	0.0	0.0	0.0	100.0
	국회의원	50	20.0	14.0	2.0	38.0	20.0	4.0	0.0	2.0	100.0
	국회공무원	50	28.0	24.0	6.0	28.0	12.0	2.0	0.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35.3	11.8	2.0	31.4	19.6	0.0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20.5	25.0	2.7	36.6	13.4	0.9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28.0	15.0	7.0	33.0	15.0	1.0	0.0	1.0	100.0
	검사	30	26.7	23.3	3.3	33.3	13.3	0.0	0.0	0.0	100.0
	감사	30	26.7	16.7	3.3	43.3	1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0.0	23.3	3.3	43.3	2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26.1	27.5	8.7	26.1	10.1	0.0	1.4	0.0	100.0
	법학과교수	70	20.0	22.9	8.6	35.7	11.4	1.4	0.0	0.0	100.0
법률관련자격증	연구원	69	24.6	31.9	2.9	30.4	8.7	0.0	0.0	1.4	100.0
	변호사	110	21.8	20.0	5.5	37.3	14.5	0.9	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121	19.8	17.4	8.3	31.4	20.7	0.8	0.0	1.7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18.3	3.3	35.0	23.3	0.0	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20.0	21.7	10.0	31.7	16.7	0.0	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23.5	20.8	4.5	36.7	13.6	0.5	0.0	0.5	100.0
	타자격증	136	19.1	19.9	7.4	30.9	20.6	0.7	0.0	1.5	100.0
법관련종사기간	없음	658	23.6	21.3	5.5	33.3	14.7	0.9	0.3	0.5	100.0
	1 ~ 5년	444	24.3	19.1	4.7	32.9	17.8	0.7	0.0	0.5	100.0
	6 ~ 10년	218	22.9	24.8	6.9	31.2	12.8	1.4	0.0	0.0	100.0
	11 ~ 15년	89	21.3	23.6	6.7	31.5	14.6	0.0	0.0	2.2	100.0
	16 ~ 20년	107	20.6	20.6	6.5	41.1	9.3	0.0	0.9	0.9	100.0
	21년 이상	128	20.3	19.5	3.9	39.8	14.8	1.6	0.0	0.0	100.0
무응답	26	30.8	15.4	7.7	19.2	23.1	0.0	3.8	0.0	100.0	

【부 록】

표 25.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	사고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민/관의 역할 분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시스템 마련	사회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국가의 우선 보상 제도 확대	기타	없다	계 (비율)
전 체		1,012	41.3	29.0	12.8	13.7	2.2	0.9	0.1	100.0
성별	남 자	726	40.1	29.5	14.0	12.5	2.6	1.1	0.1	100.0
	여 자	286	44.4	27.6	9.8	16.8	1.0	0.3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47.6	33.8	8.3	9.0	1.4	0.0	0.0	100.0
	30 대	306	39.5	27.8	14.7	13.4	3.3	1.3	0.0	100.0
	40 대	280	40.0	27.5	15.4	14.6	1.8	0.4	0.4	100.0
	50 대	203	43.8	26.1	11.3	15.8	1.0	2.0	0.0	100.0
	60 세 이상	78	34.6	37.2	9.0	15.4	3.8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43.5	26.5	13.7	13.8	2.0	0.5	0.0	100.0
	중부권	197	40.1	30.5	8.6	13.7	4.1	2.5	0.5	100.0
	전라권	79	44.3	30.4	12.7	11.4	1.3	0.0	0.0	100.0
	경상권	127	32.3	37.8	15.0	13.4	0.8	0.8	0.0	100.0
분야별	제주권	23	34.8	26.1	17.4	21.7	0.0	0.0	0.0	100.0
	입법	151	43.7	20.5	17.9	17.2	0.7	0.0	0.0	100.0
	행정	212	36.3	31.6	9.0	18.9	3.3	0.5	0.5	100.0
	사법	90	44.4	35.6	5.6	13.3	1.1	0.0	0.0	100.0
	학계	208	42.8	29.8	13.0	9.6	2.4	2.4	0.0	100.0
직업별	민간	231	45.5	28.1	12.1	11.7	1.7	0.9	0.0	100.0
	예비법전문가	120	34.2	30.0	20.0	11.7	3.3	0.8	0.0	100.0
	국회의원	50	38.0	22.0	14.0	26.0	0.0	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6.0	22.0	20.0	10.0	2.0	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47.1	17.6	19.6	15.7	0.0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42.9	25.9	6.3	19.6	3.6	0.9	0.9	100.0
	지방공무원	100	29.0	38.0	12.0	18.0	3.0	0.0	0.0	100.0
	관사	30	40.0	36.7	6.7	13.3	3.3	0.0	0.0	100.0
	검사	30	36.7	36.7	3.3	23.3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56.7	33.3	6.7	3.3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44.9	34.8	11.6	5.8	0.0	2.9	0.0	100.0
	법학과교수	70	41.4	30.0	8.6	17.1	2.9	0.0	0.0	100.0
	연구원	69	42.0	24.6	18.8	5.8	4.3	4.3	0.0	100.0
	변호사	110	43.6	32.7	11.8	8.2	1.8	1.8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47.1	24.0	12.4	14.9	1.7	0.0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38.3	31.7	18.3	10.0	0.0	1.7	0.0	100.0
박사과정생	60	30.0	28.3	21.7	13.3	6.7	0.0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39.4	33.0	10.4	13.1	2.3	1.8	0.0	100.0
	타자격증	136	43.4	27.9	12.5	13.2	2.2	0.7	0.0	100.0
	없음	658	41.5	27.8	13.7	14.0	2.1	0.8	0.2	100.0
법관련 기간	1 ~ 5년	444	43.2	28.2	13.7	11.7	2.3	0.9	0.0	100.0
	6 ~ 10년	218	40.8	29.8	13.3	13.8	1.8	0.5	0.0	100.0
	11 ~ 15년	89	30.3	34.8	15.7	15.7	2.2	0.0	1.1	100.0
	16 ~ 20년	107	47.7	17.8	14.0	15.9	1.9	2.8	0.0	100.0
	21년 이상	128	39.1	35.2	4.7	17.2	3.1	0.8	0.0	100.0
무응답	26	34.6	30.8	19.2	15.4	0.0	0.0	0.0	100.0	

표 26. 통일에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독일 등 통일 사례 연구	남북 교류 협력 법제 정비	북한 사태 대비 법제 정비	급변 대비 법제 정비	북한 법제 연구 및 통일 준비	통일 적응적 헌법 개정	통일법제 준비를 위한 법정 조직 구성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b>전체</b>	<b>1,012</b>	<b>15.9</b>	<b>28.0</b>	<b>26.8</b>	<b>11.9</b>	<b>5.0</b>	<b>11.4</b>	<b>0.6</b>	<b>0.2</b>	<b>0.3</b>	<b>100.0</b>	
성별	남자	726	15.8	28.1	25.9	12.4	5.1	11.3	0.8	0.3	0.3	100.0
	여자	286	16.1	27.6	29.0	10.5	4.9	11.5	0.0	0.0	0.3	100.0
연령별	19 ~ 29세	145	11.0	26.2	35.9	11.0	4.1	11.7	0.0	0.0	0.0	100.0
	30대	306	18.6	22.2	30.1	11.8	4.2	11.8	0.7	0.0	0.7	100.0
	40대	280	15.4	31.1	23.9	12.1	5.0	10.4	1.1	0.7	0.4	100.0
	50대	203	16.3	33.0	18.7	12.8	7.4	11.3	0.5	0.0	0.0	100.0
	60세 이상	78	15.4	29.5	28.2	10.3	3.8	12.8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5.7	26.6	29.4	10.8	5.1	11.4	0.5	0.0	0.5	100.0
	중부권	197	16.8	24.9	26.9	14.7	4.6	11.2	0.5	0.5	0.0	100.0
	전라권	79	12.7	46.8	16.5	11.4	3.8	7.6	1.3	0.0	0.0	100.0
	경상권	127	16.5	26.0	23.6	14.2	4.7	13.4	0.8	0.8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11.9	31.8	24.5	7.9	6.0	17.9	0.0	0.0	0.0	100.0
	행정	212	17.5	18.4	28.8	15.6	8.0	11.3	0.0	0.5	0.0	100.0
	사법	90	27.8	23.3	20.0	16.7	0.0	12.2	0.0	0.0	0.0	100.0
	학계	208	15.4	33.2	22.1	11.5	6.7	10.1	1.0	0.0	0.0	100.0
	민간	231	15.6	33.3	26.4	9.1	3.9	9.1	0.9	0.4	1.3	100.0
직업별	예비전문가	120	10.8	24.2	40.0	12.5	1.7	9.2	1.7	0.0	0.0	100.0
	국회의원	50	6.0	32.0	32.0	6.0	8.0	16.0	0.0	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8.0	30.0	20.0	14.0	8.0	20.0	0.0	0.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1.6	33.3	21.6	3.9	2.0	17.6	0.0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16.1	15.2	38.4	14.3	4.5	10.7	0.0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19.0	22.0	18.0	17.0	12.0	12.0	0.0	0.0	0.0	100.0
	판사	30	40.0	23.3	10.0	10.0	0.0	16.7	0.0	0.0	0.0	100.0
	검사	30	20.0	20.0	20.0	30.0	0.0	1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23.3	26.7	30.0	10.0	0.0	10.0	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17.4	33.3	24.6	15.9	2.9	5.8	0.0	0.0	0.0	100.0
	법학과교수	70	12.9	28.6	24.3	10.0	5.7	17.1	1.4	0.0	0.0	100.0
	연구원	69	15.9	37.7	17.4	8.7	11.6	7.2	1.4	0.0	0.0	100.0
	변호사	110	10.9	27.3	34.5	13.6	5.5	8.2	0.0	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9.8	38.8	19.0	5.0	2.5	9.9	1.7	0.8	2.5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로스쿨과정생	60	6.7	28.3	45.0	10.0	0.0	8.3	1.7	0.0	0.0	100.0
	박사과정생	60	15.0	20.0	35.0	15.0	3.3	10.0	1.7	0.0	0.0	100.0
	변호사자격증	221	15.4	24.9	30.3	16.3	3.2	10.0	0.0	0.0	0.0	100.0
	타자격증	136	18.4	38.2	20.6	4.4	2.2	12.5	1.5	0.0	2.2	100.0
없음	658	15.5	26.9	27.1	11.9	6.2	11.6	0.6	0.3	0.0	100.0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14.4	26.6	30.0	12.2	5.6	10.6	0.2	0.0	0.5	100.0
	6 ~ 10년	218	22.0	25.7	22.5	10.1	4.6	14.2	0.9	0.0	0.0	100.0
	11 ~ 15년	89	11.2	24.7	27.0	19.1	4.5	11.2	0.0	2.2	0.0	100.0
	16 ~ 20년	107	15.0	38.3	22.4	8.4	4.7	8.4	1.9	0.0	0.9	100.0
	21년 이상	128	14.8	32.0	25.8	10.9	3.9	12.5	0.0	0.0	0.0	100.0
무응답	26	15.4	19.2	30.8	15.4	7.7	7.7	3.8	0.0	0.0	100.0	

【부 록】

표 26-1. 통일에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독일 등 통일사례 법제 연구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	북한법제 연구 및 통일법제 준비	통일 적응적 헌법 개정	통일법제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조직 구성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b>전 체</b>	<b>1,012</b>	<b>26.5</b>	<b>41.3</b>	<b>43.8</b>	<b>29.1</b>	<b>16.4</b>	<b>30.4</b>	<b>1.1</b>	<b>0.2</b>	<b>0.3</b>	
성별	남 자	726	26.6	42.0	42.3	29.6	16.3	30.7	1.5	0.3	0.3
	여 자	286	26.2	39.5	47.6	27.6	16.8	29.7	0.0	0.0	0.3
연령별	19 ~ 29세	145	17.9	39.3	53.8	25.5	20.7	31.7	0.7	0.0	0.0
	30대	306	31.4	39.5	43.5	30.7	15.0	28.4	0.7	0.0	0.7
	40대	280	26.4	42.5	41.1	30.0	16.8	29.6	1.1	0.7	0.4
	50대	203	24.6	45.3	39.4	29.1	15.3	31.0	2.5	0.0	0.0
	60세 이상	78	28.2	37.2	47.4	25.6	15.4	37.2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586	26.1	40.6	46.4	28.2	17.1	28.2	1.0	0.0	0.5
	중부권	197	29.4	36.5	44.2	31.5	15.7	32.0	1.0	0.5	0.0
	전라권	79	20.3	58.2	31.6	26.6	13.9	32.9	2.5	0.0	0.0
	경상권	127	26.8	40.9	38.6	30.7	15.7	39.4	0.8	0.8	0.0
	제주권	23	30.4	43.5	43.5	30.4	17.4	17.4	0.0	0.0	0.0
분야별	입법	151	17.2	41.7	48.3	21.9	21.9	32.5	0.7	0.0	0.0
	행정	212	28.3	28.3	42.9	31.1	22.2	38.7	0.5	0.5	0.0
	사법	90	37.8	37.8	41.1	32.2	7.8	32.2	0.0	0.0	0.0
	학계	208	23.1	49.5	39.9	32.2	13.0	26.4	2.4	0.0	0.0
	민간	231	29.4	49.4	42.4	26.0	14.7	26.4	0.9	0.4	1.3
	예비법전문가	120	26.7	36.7	50.8	32.5	15.0	26.7	1.7	0.0	0.0
직업별	국회의원	50	10.0	48.0	48.0	20.0	34.0	30.0	0.0	0.0	0.0
	국회공무원	50	14.0	44.0	46.0	34.0	12.0	26.0	0.0	0.0	0.0
	지방의회의원	51	27.5	33.3	51.0	11.8	19.6	41.2	2.0	0.0	0.0
	국가공무원	112	28.6	17.9	51.8	33.9	17.0	40.2	0.9	0.9	0.0
	지방공무원	100	28.0	40.0	33.0	28.0	28.0	37.0	0.0	0.0	0.0
	판사	30	46.7	40.0	30.0	36.7	6.7	23.3	0.0	0.0	0.0
	검사	30	30.0	30.0	50.0	40.0	3.3	33.3	0.0	0.0	0.0
	법원공무원	30	36.7	43.3	43.3	20.0	13.3	40.0	0.0	0.0	0.0
	로스쿨교수	69	29.0	46.4	42.0	39.1	7.2	21.7	2.9	0.0	0.0
	법학과교수	70	21.4	50.0	40.0	32.9	11.4	30.0	1.4	0.0	0.0
	연구원	69	18.8	52.2	37.7	24.6	20.3	27.5	2.9	0.0	0.0
	변호사	110	26.4	45.5	48.2	32.7	14.5	22.7	0.0	0.0	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2.2	52.9	37.2	19.8	14.9	29.8	1.7	0.8	2.5
	로스쿨과정생	60	25.0	43.3	53.3	31.7	16.7	23.3	1.7	0.0	0.0
박사과정생	60	28.3	30.0	48.3	33.3	13.3	30.0	1.7	0.0	0.0	
법률관련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29.4	41.2	47.1	34.4	10.4	26.2	0.0	0.0	0.0
	타자격증	136	30.1	54.4	38.2	19.9	13.2	31.6	1.5	0.0	2.2
	없음	658	24.6	38.8	43.9	29.0	19.0	31.6	1.4	0.3	0.0
법관련종사기간	1 ~ 5년	444	25.9	41.0	43.7	28.2	19.6	29.7	0.7	0.0	0.5
	6 ~ 10년	218	32.1	40.8	44.0	27.1	14.7	29.8	0.9	0.0	0.0
	11 ~ 15년	89	16.9	36.0	51.7	34.8	14.6	30.3	0.0	2.2	0.0
	16 ~ 20년	107	24.3	45.8	43.9	31.8	13.1	26.2	3.7	0.0	0.9
	21년 이상	128	25.8	47.7	39.1	28.9	9.4	37.5	0.8	0.0	0.0
무응답	26	34.6	19.2	38.5	30.8	30.8	30.8	3.8	0.0	0.0	

표 27.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 서비스 이용료 경쟁력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계 (비율)
전 체		1,012	35.3	26.9	27.8	9.3	0.6	0.2	100.0
성별	남 자	726	35.5	26.0	27.7	9.9	0.7	0.1	100.0
	여 자	286	34.6	29.0	28.0	7.7	0.3	0.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31.7	33.1	25.5	9.7	0.0	0.0	100.0
	30 대	306	35.9	26.5	25.8	10.5	1.0	0.3	100.0
	40 대	280	35.0	21.8	32.1	10.0	0.7	0.4	100.0
	50 대	203	37.9	26.1	28.1	7.4	0.5	0.0	100.0
	60 세 이상	78	33.3	37.2	23.1	6.4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33.3	26.1	29.7	10.1	0.5	0.3	100.0
	중부권	197	40.1	28.9	21.8	8.1	1.0	0.0	100.0
	전라권	79	40.5	22.8	30.4	6.3	0.0	0.0	100.0
	경상권	127	32.3	29.9	26.8	10.2	0.8	0.0	100.0
	제주권	23	43.5	26.1	26.1	4.3	0.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39.1	17.9	35.8	6.6	0.0	0.7	100.0
	행정	212	35.8	22.6	25.9	15.1	0.5	0.0	100.0
	사법	90	43.3	45.6	5.6	5.6	0.0	0.0	100.0
	학계	208	33.7	24.5	32.7	8.7	0.5	0.0	100.0
	민간	231	34.2	31.2	27.7	5.6	1.3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28.3	27.5	29.2	13.3	0.8	0.8	100.0
	국회의원	50	32.0	18.0	42.0	6.0	0.0	2.0	100.0
	국회공무원	50	40.0	14.0	36.0	10.0	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45.1	21.6	29.4	3.9	0.0	0.0	100.0
	국가공무원	112	40.2	20.5	23.2	15.2	0.9	0.0	100.0
	지방공무원	100	31.0	25.0	29.0	15.0	0.0	0.0	100.0
	판사	30	46.7	43.3	3.3	6.7	0.0	0.0	100.0
	검사	30	50.0	46.7	3.3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33.3	46.7	10.0	10.0	0.0	0.0	100.0
	로스쿨교수	69	33.3	34.8	26.1	5.8	0.0	0.0	100.0
	법학과교수	70	32.9	24.3	34.3	8.6	0.0	0.0	100.0
	연구원	69	34.8	14.5	37.7	11.6	1.4	0.0	100.0
	변호사	110	33.6	39.1	20.9	4.5	1.8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4.7	24.0	33.9	6.6	0.8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36.7	26.7	23.3	11.7	0.0	1.7	100.0
박사과정생	60	20.0	28.3	35.0	15.0	1.7	0.0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36.7	43.0	15.4	4.1	0.9	0.0	100.0
	타자격증	136	35.3	27.2	30.9	5.9	0.7	0.0	100.0
	없음	658	34.8	21.6	31.2	11.7	0.5	0.3	100.0
법률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34.2	29.1	28.6	7.2	0.5	0.5	100.0
	6 ~ 10 년	218	35.8	21.6	28.4	13.3	0.9	0.0	100.0
	11 ~ 15 년	89	37.1	22.5	31.5	9.0	0.0	0.0	100.0
	16 ~ 20 년	107	34.6	23.4	29.9	10.3	1.9	0.0	100.0
	21년 이상	128	39.1	33.6	19.5	7.8	0.0	0.0	100.0
무응답	26	26.9	30.8	26.9	15.4	0.0	0.0	100.0	



【부 록】

표 28. 로스쿨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로스쿨 학비 체계 개선	합격을 상향 조정	교육의 질 제고	기타	계 (비율)
전 체		1,012	37.0	15.2	12.7	9.1	21.4	4.5	100.0
성별	남 자	726	35.7	15.6	12.9	9.9	20.4	5.5	100.0
	여 자	286	40.2	14.3	12.2	7.0	24.1	2.1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30.3	20.0	21.4	8.3	16.6	3.4	100.0
	30 대	306	37.3	15.0	11.8	9.2	21.9	4.9	100.0
	40 대	280	38.9	17.1	10.4	9.6	21.4	2.5	100.0
	50 대	203	37.9	9.4	12.3	9.4	25.1	5.9	100.0
	60세 이상	78	38.5	15.4	10.3	7.7	19.2	9.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37.2	15.4	13.7	8.7	20.3	4.8	100.0
	중부권	197	38.1	11.7	11.2	5.6	27.9	5.6	100.0
	전라권	79	36.7	10.1	16.5	11.4	22.8	2.5	100.0
	경상권	127	35.4	20.5	7.9	15.0	17.3	3.9	100.0
	제주권	23	30.4	30.4	17.4	8.7	13.0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38.4	7.9	18.5	3.3	29.1	2.6	100.0
	행정	212	51.4	10.8	14.6	3.8	16.0	3.3	100.0
	사법	90	31.1	14.4	12.2	7.8	31.1	3.3	100.0
	학계	208	28.4	24.5	6.7	17.3	16.3	6.7	100.0
	민간	231	36.4	12.1	13.9	8.2	24.2	5.2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30.0	22.5	10.8	14.2	17.5	5.0	100.0
	국회의원	50	34.0	10.0	32.0	0.0	2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2.0	8.0	8.0	4.0	36.0	2.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39.2	5.9	15.7	5.9	27.5	5.9	100.0
	국가공무원	112	47.3	6.3	20.5	1.8	18.8	5.4	100.0
	지방공무원	100	56.0	16.0	8.0	6.0	13.0	1.0	100.0
	판사	30	36.7	13.3	10.0	0.0	33.3	6.7	100.0
	검사	30	13.3	16.7	6.7	20.0	40.0	3.3	100.0
	법원 공무원	30	43.3	13.3	20.0	3.3	20.0	0.0	100.0
	로스쿨 교수	69	11.6	23.2	4.3	31.9	21.7	7.2	100.0
	법학과 교수	70	35.7	25.7	8.6	11.4	12.9	5.7	100.0
	연구원	69	37.7	24.6	7.2	8.7	14.5	7.2	100.0
	변호사	110	27.3	12.7	12.7	13.6	28.2	5.5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44.6	11.6	14.9	3.3	20.7	5.0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20.0	11.7	25.0	20.0	3.3	100.0	
박사과정생	60	40.0	25.0	10.0	3.3	15.0	6.7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27.6	13.6	10.9	12.7	30.3	5.0	100.0
	타 자격증	136	43.4	11.0	14.0	4.4	22.1	5.1	100.0
	없음	658	38.8	16.7	13.1	8.8	18.2	4.4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37.2	15.5	15.3	9.2	19.1	3.6	100.0
	6 ~ 10년	218	38.1	13.3	11.5	7.3	26.6	3.2	100.0
	11 ~ 15년	89	39.3	20.2	7.9	13.5	14.6	4.5	100.0
	16 ~ 20년	107	34.6	18.7	8.4	7.5	23.4	7.5	100.0
	21년 이상	128	29.7	10.9	14.1	11.7	26.6	7.0	100.0
무응답	26	61.5	15.4	7.7	0.0	7.7	7.7	100.0	

표 29.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	기타	계 (비율)
전 체		1,012	8.6	13.2	3.7	30.3	43.7	0.5	100.0
성별	남 자	726	8.7	13.6	3.9	29.9	43.5	0.4	100.0
	여 자	286	8.4	12.2	3.1	31.5	44.1	0.7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7.6	17.2	4.1	24.1	46.2	0.7	100.0
	30 대	306	10.1	11.8	5.6	28.1	44.1	0.3	100.0
	40 대	280	6.1	11.4	3.2	33.9	45.0	0.4	100.0
	50 대	203	9.4	13.3	1.5	33.5	41.9	0.5	100.0
	60 세 이상	78	11.5	17.9	2.6	29.5	37.2	1.3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8.0	14.7	5.8	29.0	42.2	0.3	100.0
	중부권	197	11.7	12.2	0.5	30.5	44.2	1.0	100.0
	전라권	79	8.9	12.7	1.3	29.1	46.8	1.3	100.0
	경상권	127	7.1	8.7	0.8	38.6	44.9	0.0	100.0
	제주권	23	4.3	13.0	0.0	21.7	60.9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14.6	15.9	4.0	23.8	41.7	0.0	100.0
	행정	212	9.9	11.3	2.4	27.4	48.6	0.5	100.0
	사법	90	7.8	16.7	0.0	35.6	40.0	0.0	100.0
	학계	208	6.3	12.5	4.3	36.1	39.9	1.0	100.0
	민간	231	7.4	12.6	3.5	30.7	45.5	0.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5.8	13.3	7.5	29.2	43.3	0.8	1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8.0	18.0	10.0	20.0	44.0	0.0	100.0
	국회공무원	50	12.0	14.0	2.0	24.0	48.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3.5	15.7	0.0	27.5	33.3	0.0	100.0
	국가공무원	112	9.8	12.5	4.5	20.5	51.8	0.9	100.0
	지방공무원	100	10.0	10.0	0.0	35.0	45.0	0.0	100.0
	판사	30	3.3	23.3	0.0	36.7	36.7	0.0	100.0
	검사	30	6.7	3.3	0.0	50.0	40.0	0.0	100.0
	법원 공무원	30	13.3	23.3	0.0	20.0	43.3	0.0	100.0
	로스쿨 교수	69	2.9	15.9	2.9	27.5	50.7	0.0	100.0
	법학과 교수	70	8.6	10.0	7.1	40.0	32.9	1.4	100.0
	연구원	69	7.2	11.6	2.9	40.6	36.2	1.4	100.0
	변호사	110	6.4	11.8	2.7	29.1	49.1	0.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8.3	13.2	4.1	32.2	42.1	0.0	100.0
	로스쿨 과정생	60	8.3	11.7	3.3	23.3	51.7	1.7	100.0
	박사 과정생	60	3.3	15.0	11.7	35.0	35.0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5.4	13.1	3.6	35.7	41.6	0.5	100.0
	타 자격증	136	8.1	13.2	4.4	30.1	43.4	0.7	100.0
	없음	658	9.7	13.4	3.5	28.4	44.4	0.6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10.6	13.5	4.3	28.4	42.8	0.5	100.0
	6 ~ 10 년	218	7.8	11.9	4.1	27.1	49.1	0.0	100.0
	11 ~ 15 년	89	5.6	10.1	4.5	42.7	37.1	0.0	100.0
	16 ~ 20 년	107	0.9	13.1	2.8	29.9	51.4	1.9	100.0
	21년 이상	128	11.7	17.2	1.6	34.4	35.2	0.0	100.0
무 응 답	26	7.7	11.5	0.0	30.8	46.2	3.8	100.0	

【부 록】

표 30.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계 (비율)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③+④	
전 체		1,012	6.9	41.8	48.7	33.5	17.8	51.3	100.0
성별	남 자	726	6.2	38.4	44.6	36.8	18.6	55.4	100.0
	여 자	286	8.7	50.3	59.1	25.2	15.7	40.9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5.9	49.7	65.5	24.1	10.3	34.5	100.0
	30 대	306	8.2	46.4	54.6	29.7	15.7	45.4	100.0
	40 대	280	5.7	41.8	47.5	32.5	20.0	52.5	100.0
	50 대	203	2.5	32.5	35.0	44.8	20.2	65.0	100.0
	60 세 이상	78	1.3	33.3	34.6	39.7	25.6	65.4	100.0
지역별	수 도 권	586	8.4	43.3	51.7	29.5	18.8	48.3	100.0
	중 부 권	197	4.1	38.1	42.1	38.6	19.3	57.9	100.0
	전 라 권	79	6.3	39.2	45.6	43.0	11.4	54.4	100.0
	경 상 권	127	4.7	38.6	43.3	40.2	16.5	56.7	100.0
	체 주 권	23	8.7	60.9	69.6	21.7	8.7	30.4	100.0
분야별	입 법	151	6.6	41.7	48.3	30.5	21.2	51.7	100.0
	행 정	212	4.2	34.0	38.2	39.6	22.2	61.8	100.0
	사 법	90	3.3	42.2	45.6	43.3	11.1	54.4	100.0
	하 계	208	7.7	42.3	50.0	31.7	18.3	50.0	100.0
	민 간	231	6.9	40.7	47.6	34.2	18.2	52.4	100.0
	예 비 법 전문 가	120	13.3	56.7	70.0	20.8	9.2	30.0	100.0
직업별	국 회 의 원	50	8.0	50.0	58.0	22.0	20.0	42.0	100.0
	국 회 공 무 원	50	10.0	46.0	56.0	34.0	10.0	44.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2.0	29.4	31.4	35.3	33.3	68.6	100.0
	국 가 공 무 원	112	7.1	33.0	40.2	34.8	25.0	59.8	100.0
	지 방 공 무 원	100	1.0	35.0	36.0	45.0	19.0	64.0	100.0
	관 사	30	0.0	50.0	50.0	50.0	0.0	50.0	100.0
	검 사	30	6.7	33.3	40.0	46.7	13.3	60.0	100.0
	법 원 공 무 원	30	3.3	43.3	46.7	33.3	20.0	53.3	100.0
	로 스 쿨 교 수	69	7.2	43.5	50.7	37.7	11.6	49.3	100.0
	법 학 과 교 수	70	1.4	38.6	40.0	37.1	22.9	60.0	100.0
	연 구 원	69	14.5	44.9	59.4	20.3	20.3	40.6	100.0
	변 호 사	110	10.9	39.1	50.0	32.7	17.3	5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3	42.1	45.5	35.5	19.0	54.5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60	18.3	58.3	76.7	15.0	8.3	23.3	100.0
박 사 과 정 생	60	8.3	55.0	63.3	26.7	10.0	36.7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8.6	42.1	50.7	34.8	14.5	49.3	100.0
	타 자 격 증	136	3.7	41.2	44.9	35.3	19.9	55.1	100.0
	없 음	658	7.0	41.9	48.9	32.5	18.5	51.1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7.9	47.1	55.0	30.0	15.1	45.0	100.0
	6 ~ 10 년	218	10.1	38.5	48.6	32.1	19.3	51.4	100.0
	11 ~ 15 년	89	3.4	39.3	42.7	44.9	12.4	57.3	100.0
	16 ~ 20 년	107	5.6	38.3	43.9	30.8	25.2	56.1	100.0
	21년 이상	128	2.3	29.7	32.0	45.3	22.7	68.0	100.0
무 응 답	26	3.8	61.5	65.4	19.2	15.4	34.6	100.0	

표 30-1.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 인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7.5</b>	<b>50.5</b>	<b>58.0</b>	<b>27.7</b>	<b>14.2</b>	<b>41.9</b>	<b>0.1</b>	<b>100.0</b>	
성별	남 자	726	6.3	47.7	54.0	31.3	14.6	45.9	0.1	100.0
	여 자	286	10.5	57.7	68.2	18.5	13.3	31.8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3.8	54.5	68.3	22.1	9.7	31.7	0.0	100.0
	30 대	306	9.5	54.6	64.1	21.9	13.7	35.6	0.3	100.0
	40 대	280	5.7	50.4	56.1	30.7	13.2	43.9	0.0	100.0
	50 대	203	4.4	42.9	47.3	35.5	17.2	52.7	0.0	100.0
	60세 이상	78	2.6	47.4	50.0	29.5	20.5	5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9.4	50.3	59.7	24.6	15.5	40.1	0.2	100.0
	중부권	197	3.6	50.3	53.8	30.5	15.7	46.2	0.0	100.0
	전라권	79	6.3	53.2	59.5	34.2	6.3	40.5	0.0	100.0
	경상권	127	4.7	48.0	52.8	35.4	11.8	47.2	0.0	100.0
	제주권	23	13.0	60.9	73.9	17.4	8.7	26.1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4.6	54.3	58.9	23.8	17.2	41.1	0.0	100.0
	행정	212	6.1	43.4	49.5	32.1	18.4	50.5	0.0	100.0
	사법	90	1.1	48.9	50.0	42.2	7.8	50.0	0.0	100.0
	학계	208	9.6	51.0	60.6	25.5	13.9	39.4	0.0	100.0
	민간	231	7.8	50.6	58.4	26.4	14.7	41.1	0.4	100.0
직업별	예비전문가	120	14.2	58.3	72.5	20.0	7.5	27.5	0.0	100.0
	국회의원	50	6.0	64.0	70.0	12.0	18.0	3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8.0	62.0	70.0	24.0	6.0	30.0	0.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7.3	37.3	35.3	27.5	62.7	0.0	100.0
	국가공무원	112	8.9	44.6	53.6	25.0	21.4	46.4	0.0	100.0
	지방공무원	100	3.0	42.0	45.0	40.0	15.0	55.0	0.0	100.0
	판사	30	0.0	53.3	53.3	46.7	0.0	46.7	0.0	100.0
	검사	30	3.3	36.7	40.0	53.3	6.7	6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0.0	56.7	56.7	26.7	16.7	43.3	0.0	100.0
	로스쿨교수	69	10.1	53.6	63.8	29.0	7.2	36.2	0.0	100.0
	법학과교수	70	1.4	51.4	52.9	28.6	18.6	47.1	0.0	100.0
	연구원	69	17.4	47.8	65.2	18.8	15.9	34.8	0.0	100.0
	변호사	110	12.7	47.3	60.0	26.4	13.6	40.0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3	53.7	57.0	26.4	15.7	42.1	0.8	100.0
	로스쿨과정생	60	20.0	58.3	78.3	15.0	6.7	21.7	0.0	100.0
박사과정생	60	8.3	58.3	66.7	25.0	8.3	33.3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9.0	50.7	59.7	30.8	9.5	40.3	0.0	100.0
	타자격증	136	3.7	51.5	55.1	27.9	16.2	44.1	0.7	100.0
	없음	658	7.8	50.3	58.1	26.4	15.5	41.9	0.0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8.8	54.1	62.8	23.0	14.0	36.9	0.2	100.0
	6 ~ 10년	218	8.7	47.7	56.4	30.3	13.3	43.6	0.0	100.0
	11 ~ 15년	89	5.6	52.8	58.4	34.8	6.7	41.6	0.0	100.0
	16 ~ 20년	107	6.5	47.7	54.2	27.1	18.7	45.8	0.0	100.0
	21년 이상	128	3.1	40.6	43.8	36.7	19.5	56.3	0.0	100.0
무 응 답	26	7.7	65.4	73.1	19.2	7.7	26.9	0.0	100.0	

【부 록】

표 31-1. 사형집행 허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15.3</b>	<b>43.9</b>	<b>59.2</b>	<b>30.6</b>	<b>10.2</b>	<b>40.8</b>	<b>100.0</b>	
성별	남 자	726	14.7	44.6	59.4	29.9	10.7	40.6	100.0
	여 자	286	16.8	42.0	58.7	32.5	8.7	41.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1.0	52.4	63.4	24.8	11.7	36.6	100.0
	30 ~ 39 세	306	18.0	45.4	63.4	27.8	8.8	36.6	100.0
	40 ~ 49 세	280	15.4	38.6	53.9	34.3	11.8	46.1	100.0
	50 ~ 59 세	203	13.3	42.4	55.7	33.0	11.3	44.3	100.0
	60 세 이상	78	17.9	44.9	62.8	33.3	3.8	37.2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16.0	43.2	59.2	29.0	11.8	40.8	100.0
	중부권	197	13.2	47.7	60.9	31.0	8.1	39.1	100.0
	전라권	79	15.2	31.6	46.8	45.6	7.6	53.2	100.0
	경상권	127	17.3	49.6	66.9	26.8	6.3	33.1	100.0
분야별	제주권	23	4.3	39.1	43.5	39.1	17.4	56.5	100.0
	입법	151	17.2	42.4	59.6	29.8	10.6	40.4	100.0
	행정	212	17.5	43.9	61.3	30.2	8.5	38.7	100.0
	사법	90	13.3	53.3	66.7	31.1	2.2	33.3	100.0
	학계	208	11.5	37.5	49.0	32.7	18.3	51.0	100.0
직업별	민간	231	16.5	44.2	60.6	32.0	7.4	39.4	100.0
	예비법전문가	120	15.0	49.2	64.2	25.8	10.0	35.8	100.0
	국회의원	50	14.0	46.0	60.0	30.0	10.0	40.0	100.0
	국공무원	50	16.0	36.0	52.0	36.0	12.0	48.0	100.0
	지방의회 의원	51	21.6	45.1	66.7	23.5	9.8	33.3	100.0
	국가공무원	112	14.3	49.1	63.4	25.9	10.7	36.6	100.0
	지방공무원	100	21.0	38.0	59.0	35.0	6.0	41.0	100.0
	판사	30	0.0	46.7	46.7	50.0	3.3	53.3	100.0
	검사	30	20.0	56.7	76.7	23.3	0.0	23.3	100.0
	법원공무원	30	20.0	56.7	76.7	20.0	3.3	23.3	100.0
	로스쿨교수	69	10.1	36.2	46.4	34.8	18.8	53.6	100.0
	법학과교수	70	11.4	41.4	52.9	37.1	10.0	47.1	100.0
	연구원	69	13.0	34.8	47.8	26.1	26.1	52.2	100.0
	변호사	110	8.2	42.7	50.9	37.3	11.8	49.1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4.0	45.5	69.4	27.3	3.3	30.6	100.0
	로스쿨과정생	60	10.0	45.0	55.0	30.0	15.0	45.0	100.0
박사과정생	60	20.0	53.3	73.3	21.7	5.0	26.7	100.0	
법률관련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7.7	46.2	53.8	34.8	11.3	46.2	100.0
	타자격증	136	22.8	46.3	69.1	26.5	4.4	30.9	100.0
	없음	658	16.3	42.6	58.8	30.1	11.1	41.2	100.0
법관련종사기간	1 ~ 5년	444	13.1	47.7	60.8	29.1	10.1	39.2	100.0
	6 ~ 10년	218	22.0	36.7	58.7	30.7	10.6	41.3	100.0
	11 ~ 15년	89	15.7	39.3	55.1	37.1	7.9	44.9	100.0
	16 ~ 20년	107	16.8	42.1	58.9	30.8	10.3	41.1	100.0
	21년 이상	128	7.8	48.4	56.3	32.0	11.7	43.8	100.0
무응답	26	26.9	38.5	65.4	26.9	7.7	34.6	100.0	

표 31-2. 존엄사 허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비율)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b>전 체</b>	<b>1,012</b>	<b>23.2</b>	<b>63.5</b>	<b>86.8</b>	<b>12.1</b>	<b>1.0</b>	<b>13.0</b>	<b>0.2</b>	<b>100.0</b>	
성별	남 자	726	23.1	66.0	89.1	9.8	0.8	10.6	0.3	100.0
	여 자	286	23.4	57.3	80.8	17.8	1.4	19.2	0.0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19.3	60.7	80.0	20.0	0.0	20.0	0.0	100.0
	30 대	306	22.5	65.7	88.2	10.5	1.3	11.8	0.0	100.0
	40 대	280	25.4	63.9	89.3	10.0	0.7	10.7	0.0	100.0
	50 대	203	24.1	63.5	87.7	10.3	1.0	11.3	1.0	100.0
	60세 이상	78	23.1	59.0	82.1	15.4	2.6	17.9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86	23.7	61.1	84.8	13.5	1.4	14.8	0.3	100.0
	중부권	197	24.9	65.0	89.8	9.6	0.5	10.2	0.0	100.0
	전라권	79	21.5	68.4	89.9	10.1	0.0	10.1	0.0	100.0
	경상권	127	20.5	66.9	87.4	11.8	0.8	12.6	0.0	100.0
	제주권	23	17.4	78.3	95.7	4.3	0.0	4.3	0.0	100.0
분야별	입법	151	30.5	50.3	80.8	15.2	2.6	17.9	1.3	100.0
	행정	212	25.5	63.2	88.7	10.4	0.9	11.3	0.0	100.0
	사법	90	7.8	87.8	95.6	4.4	0.0	4.4	0.0	100.0
	학계	208	19.7	63.9	83.7	15.4	1.0	16.3	0.0	100.0
	민간	231	25.1	64.5	89.6	10.0	0.4	10.4	0.0	100.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24.2	60.0	84.2	15.0	0.8	15.8	0.0	100.0
	국회의원	50	28.0	52.0	80.0	18.0	2.0	20.0	0.0	100.0
	국회공무원	50	40.0	48.0	88.0	12.0	0.0	12.0	0.0	100.0
	지방의회의원	51	23.5	51.0	74.5	15.7	5.9	21.6	3.9	100.0
	국가공무원	112	25.0	68.8	93.8	6.3	0.0	6.3	0.0	100.0
	지방공무원	100	26.0	57.0	83.0	15.0	2.0	17.0	0.0	100.0
	판사	30	3.3	90.0	93.3	6.7	0.0	6.7	0.0	100.0
	검사	30	10.0	90.0	100.0	0.0	0.0	0.0	0.0	100.0
	법원공무원	30	10.0	83.3	93.3	6.7	0.0	6.7	0.0	100.0
	로스쿨교수	69	23.2	65.2	88.4	11.6	0.0	11.6	0.0	100.0
	법학과교수	70	21.4	61.4	82.9	17.1	0.0	17.1	0.0	100.0
	연구원	69	14.5	65.2	79.7	17.4	2.9	20.3	0.0	100.0
	변호사	110	23.6	64.5	88.2	10.9	0.9	11.8	0.0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6.4	64.5	90.9	9.1	0.0	9.1	0.0	100.0
	로스쿨과정생	60	21.7	61.7	83.3	16.7	0.0	16.7	0.0	100.0
박사과정생	60	26.7	58.3	85.0	13.3	1.7	15.0	0.0	1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8.1	72.4	90.5	9.0	0.5	9.5	0.0	100.0
	타자격증	136	24.3	67.6	91.9	8.1	0.0	8.1	0.0	100.0
	없음	658	24.6	59.7	84.3	14.0	1.4	15.3	0.3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22.3	60.8	83.1	15.3	1.6	16.9	0.0	100.0
	6 ~ 10년	218	25.7	63.8	89.4	10.6	0.0	10.6	0.0	100.0
	11 ~ 15년	89	24.7	62.9	87.6	10.1	1.1	11.2	1.1	100.0
	16 ~ 20년	107	23.4	70.1	93.5	6.5	0.0	6.5	0.0	100.0
	21년 이상	128	21.1	68.8	89.8	9.4	0.8	10.2	0.0	100.0
무 응 답	26	23.1	57.7	80.8	11.5	3.8	15.4	3.8	100.0	

【부 록】

표 32.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의학적/사회 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다	태아 생명권 보호/생명경시 풍조 근절 위해 허용범위 확대 반대	기타	계 (비율)
전 체		1,012	35.8	50.9	12.8	0.5	100.0
성별	남 자	726	34.2	52.2	13.1	0.6	100.0
	여 자	286	39.9	47.6	12.2	0.3	100.0
연령별	19 ~ 29 세	145	40.0	44.1	15.9	0.0	100.0
	30 대	306	37.9	53.9	7.8	0.3	100.0
	40 대	280	38.2	48.2	12.5	1.1	100.0
	50 대	203	28.1	55.2	16.3	0.5	100.0
	60 세 이상	78	30.8	50.0	19.2	0.0	100.0
지역별	수 도 권	586	39.9	48.0	11.6	0.5	100.0
	중 부 권	197	28.4	55.3	15.7	0.5	100.0
	전 라 권	79	36.7	49.4	13.9	0.0	100.0
	경 상 권	127	26.8	59.8	12.6	0.8	100.0
	체 주 권	23	39.1	43.5	17.4	0.0	100.0
분야별	입 법	151	41.7	43.7	13.9	0.7	100.0
	행 정	212	31.6	53.3	14.6	0.5	100.0
	사 법	90	43.3	48.9	7.8	0.0	100.0
	하 계	208	33.2	54.3	12.0	0.5	100.0
	민 간	231	35.5	50.2	13.9	0.4	100.0
직업별	예 비 법 전문 가	120	35.0	52.5	11.7	0.8	100.0
	국 회 의 원	50	38.0	54.0	8.0	0.0	100.0
	국 회 공 무 원	50	46.0	42.0	12.0	0.0	10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41.2	35.3	21.6	2.0	100.0
	국 가 공 무 원	112	29.5	56.3	13.4	0.9	100.0
	지 방 공 무 원	100	34.0	50.0	16.0	0.0	100.0
	관 사	30	33.3	60.0	6.7	0.0	100.0
	검 사	30	60.0	30.0	10.0	0.0	100.0
	법 원 공 무 원	30	36.7	56.7	6.7	0.0	100.0
	로 스 쿨 교 수	69	29.0	58.0	13.0	0.0	100.0
	법 학 과 교 수	70	25.7	60.0	12.9	1.4	100.0
	연 구 원	69	44.9	44.9	10.1	0.0	100.0
	변 호 사	110	34.5	51.8	12.7	0.9	100.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6.4	48.8	14.9	0.0	100.0
	로 스 쿨 과 정 생	60	41.7	48.3	10.0	0.0	100.0
박 사 과 정 생	60	28.3	56.7	13.3	1.7	1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40.7	48.4	10.0	0.9	100.0
	타 자 격 증	136	34.6	50.0	15.4	0.0	100.0
	없 음	658	34.2	52.0	13.4	0.5	100.0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44	37.8	48.4	13.5	0.2	100.0
	6 ~ 10 년	218	41.3	49.1	9.6	0.0	100.0
	11 ~ 15 년	89	34.8	55.1	9.0	1.1	100.0
	16 ~ 20 년	107	29.0	53.3	15.9	1.9	100.0
	21년 이상	128	25.8	57.0	16.4	0.8	100.0
무 응 답	26	34.6	53.8	11.5	0.0	100.0	

표 33.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6</b>	<b>4.2</b>	<b>4.8</b>	<b>17.6</b>	<b>56.7</b>	<b>20.8</b>	<b>77.5</b>	<b>0.1</b>	<b>100.0</b>	<b>3.93</b>	<b>73.22</b>	
성별	남 자	726	0.8	3.9	4.7	15.3	56.3	23.6	79.9	0.1	100.0	3.98	74.52
	여 자	286	0.0	5.2	5.2	23.4	57.7	13.6	71.3	0.0	100.0	3.80	69.93
연령별	19 ~ 29 세	145	0.7	4.8	5.5	22.1	60.7	11.7	72.4	0.0	100.0	3.78	69.48
	30 대	306	0.7	4.6	5.2	14.7	61.4	18.6	80.1	0.0	100.0	3.93	73.20
	40 대	280	0.4	4.3	4.6	18.9	53.2	23.2	76.4	0.0	100.0	3.95	73.66
	50 대	203	0.0	2.5	2.5	15.8	53.7	28.1	81.8	0.0	100.0	4.07	76.85
	60세 이상	78	2.6	6.4	9.0	20.5	51.3	17.9	69.2	1.3	100.0	3.77	69.21
지역별	수도 권	586	0.3	4.3	4.6	17.2	56.8	21.2	78.0	0.2	100.0	3.94	73.59
	중 부 권	197	1.0	5.6	6.6	17.8	60.4	15.2	75.6	0.0	100.0	3.83	70.81
	전 라 권	79	0.0	3.8	3.8	20.3	50.6	25.3	75.9	0.0	100.0	3.97	74.37
	경 상 권	127	1.6	2.4	3.9	15.0	56.7	24.4	81.1	0.0	100.0	4.00	75.00
	제주 권	23	0.0	4.3	4.3	30.4	43.5	21.7	65.2	0.0	100.0	3.83	70.65
분야별	입 법	151	0.0	6.0	6.0	25.2	55.6	13.2	68.9	0.0	100.0	3.76	69.04
	행 정	212	0.0	5.7	5.7	22.6	56.1	15.6	71.7	0.0	100.0	3.82	70.40
	사 법	90	0.0	2.2	2.2	6.7	60.0	30.0	90.0	1.1	100.0	4.19	79.70
	학 계	208	0.0	2.9	2.9	7.7	55.3	34.1	89.4	0.0	100.0	4.21	80.17
	민 간	231	1.7	3.9	5.6	21.6	52.8	19.9	72.7	0.0	100.0	3.85	71.32
직업별	예 비 법 전문 가	120	1.7	4.2	5.8	16.7	66.7	10.8	77.5	0.0	100.0	3.81	70.21
	국 회 의 원	50	0.0	12.0	12.0	16.0	60.0	12.0	72.0	0.0	100.0	3.72	68.00
	국 회 공 무 원	50	0.0	2.0	2.0	26.0	54.0	18.0	72.0	0.0	100.0	3.88	72.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3.9	3.9	33.3	52.9	9.8	62.7	0.0	100.0	3.69	67.16
	국 가 공 무 원	112	0.0	5.4	5.4	18.8	56.3	19.6	75.9	0.0	100.0	3.90	72.54
	지 방 공 무 원	100	0.0	6.0	6.0	27.0	56.0	11.0	67.0	0.0	100.0	3.72	68.00
	판 사	30	0.0	0.0	0.0	3.3	60.0	36.7	96.7	0.0	100.0	4.33	83.33
	검 사	30	0.0	3.3	3.3	0.0	60.0	36.7	96.7	0.0	100.0	4.30	82.50
	법 원 공 무 원	30	0.0	3.3	3.3	16.7	60.0	16.7	76.7	3.3	100.0	3.93	73.27
	로 스 쿨 교 수	69	0.0	1.4	1.4	5.8	55.1	37.7	92.8	0.0	100.0	4.29	82.25
	법 학 과 교 수	70	0.0	4.3	4.3	10.0	48.6	37.1	85.7	0.0	100.0	4.19	79.64
	연 구 원	69	0.0	2.9	2.9	7.2	62.3	27.5	89.9	0.0	100.0	4.14	78.62
	변 호 사	110	0.9	0.0	0.9	7.3	66.4	25.5	91.8	0.0	100.0	4.15	78.86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5	7.4	9.9	34.7	40.5	14.9	55.4	0.0	100.0	3.58	64.46
	로 스 쿨 과 정 생	60	3.3	3.3	6.7	16.7	68.3	8.3	76.7	0.0	100.0	3.75	68.75
박 사 과 정 생	60	0.0	5.0	5.0	16.7	65.0	13.3	78.3	0.0	100.0	3.87	71.67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5	0.0	0.5	8.1	62.4	29.0	91.4	0.0	100.0	4.19	79.86
	타 자 격 증	136	1.5	6.6	8.1	30.9	42.6	18.4	61.0	0.0	100.0	3.70	67.46
	없 음	658	0.5	5.2	5.6	17.9	57.8	18.5	76.3	0.2	100.0	3.89	72.22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 년	444	0.7	6.8	7.4	18.9	61.5	12.2	73.6	0.0	100.0	3.78	69.43
	6 ~ 10 년	218	0.0	1.4	1.4	18.8	54.6	25.2	79.8	0.0	100.0	4.04	75.92
	11 ~ 15 년	89	0.0	1.1	1.1	14.6	51.7	32.6	84.3	0.0	100.0	4.16	78.93
	16 ~ 20 년	107	0.9	3.7	4.7	15.9	47.7	31.8	79.4	0.0	100.0	4.06	76.40
	21년 이상	128	1.6	2.3	3.9	11.7	57.8	26.6	84.4	0.0	100.0	4.05	76.37
무 응 답	26	0.0	7.7	7.7	30.8	42.3	15.4	57.7	3.8	100.0	3.69	67.24	



【부 록】

표 34.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전 체			1,012	0.9	9.5	10.4	31.4	45.5	12.6	58.1	0.1	100.0	3.60	64.89
성별	남	자	726	1.1	8.5	9.6	27.8	47.8	14.6	62.4	0.1	100.0	3.66	66.58
	여	자	286	0.3	11.9	12.2	40.6	39.5	7.7	47.2	0.0	100.0	3.42	60.58
연령별	19 ~ 29세		145	0.7	15.9	16.6	42.8	34.5	6.2	40.7	0.0	100.0	3.30	57.41
	30대		306	0.3	9.2	9.5	33.0	47.4	10.1	57.5	0.0	100.0	3.58	64.46
	40대		280	1.4	10.4	11.8	28.9	47.5	11.8	59.3	0.0	100.0	3.58	64.46
	50대		203	0.5	3.4	3.9	28.6	47.8	19.7	67.5	0.0	100.0	3.83	70.69
	60세 이상		78	2.6	11.5	14.1	20.5	44.9	19.2	64.1	1.3	100.0	3.67	66.86
지역별	수도권		586	1.0	8.4	9.4	32.4	46.9	11.1	58.0	0.2	100.0	3.59	64.70
	중부권		197	0.5	13.2	13.7	35.0	40.1	11.2	51.3	0.0	100.0	3.48	62.06
	전라권		79	0.0	8.9	8.9	19.0	54.4	17.7	72.2	0.0	100.0	3.81	70.25
	경상권		127	1.6	10.2	11.8	27.6	41.7	18.9	60.6	0.0	100.0	3.66	66.54
	제주		23	0.0	4.3	4.3	39.1	43.5	13.0	56.5	0.0	100.0	3.65	66.30
분야별	입법		151	0.7	9.3	9.9	31.8	46.4	11.9	58.3	0.0	100.0	3.60	64.90
	행정		212	0.5	15.1	15.6	38.2	40.6	5.7	46.2	0.0	100.0	3.36	58.96
	사법		90	0.0	3.3	3.3	28.9	48.9	17.8	66.7	1.1	100.0	3.82	70.44
	학계		208	1.9	2.9	4.8	22.1	48.1	25.0	73.1	0.0	100.0	3.91	72.84
	민간		231	0.9	11.3	12.1	30.7	47.2	10.0	57.1	0.0	100.0	3.54	63.53
	예비법전문가		120	0.8	12.5	13.3	38.3	42.5	5.8	48.3	0.0	100.0	3.40	60.00
직업별	국회의원		50	0.0	18.0	18.0	44.0	28.0	10.0	38.0	0.0	100.0	3.30	57.50
	국회공무원		50	2.0	2.0	4.0	24.0	66.0	6.0	72.0	0.0	100.0	3.72	68.00
	지방의회의원		51	0.0	7.8	7.8	27.5	45.1	19.6	64.7	0.0	100.0	3.76	69.12
	국가공무원		112	0.9	15.2	16.1	33.0	45.5	5.4	50.9	0.0	100.0	3.39	59.82
	지방공무원		100	0.0	15.0	15.0	44.0	35.0	6.0	41.0	0.0	100.0	3.32	58.00
	관사		30	0.0	0.0	0.0	30.0	53.3	16.7	70.0	0.0	100.0	3.87	71.67
	검사		30	0.0	6.7	6.7	13.3	56.7	23.3	80.0	0.0	100.0	3.97	74.17
	법원공무원		30	0.0	3.3	3.3	43.3	36.7	13.3	50.0	3.3	100.0	3.62	65.50
	로스쿨교수		69	1.4	1.4	2.9	17.4	50.7	29.0	79.7	0.0	100.0	4.04	76.09
	법학과교수		70	2.9	2.9	5.7	21.4	42.9	30.0	72.9	0.0	100.0	3.94	73.57
	연구원		69	1.4	4.3	5.8	27.5	50.7	15.9	66.7	0.0	100.0	3.75	68.84
	변호사		110	0.0	7.3	7.3	27.3	54.5	10.9	65.5	0.0	100.0	3.69	67.27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7	14.9	16.5	33.9	40.5	9.1	49.6	0.0	100.0	3.40	60.12
	로스쿨과정생		60	1.7	15.0	16.7	36.7	41.7	5.0	46.7	0.0	100.0	3.33	58.33
	박사과정생		60	0.0	10.0	10.0	40.0	43.3	6.7	50.0	0.0	100.0	3.47	61.6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6.3	6.3	25.8	52.0	15.8	67.9	0.0	100.0	3.77	69.34
	타자격증		136	0.7	12.5	13.2	33.1	41.2	12.5	53.7	0.0	100.0	3.52	63.05
	없음		658	1.2	9.9	11.1	32.8	44.2	11.7	55.9	0.2	100.0	3.55	63.85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년		444	0.7	12.8	13.5	38.1	39.9	8.6	48.4	0.0	100.0	3.43	60.70
	6 ~ 10년		218	0.5	7.3	7.8	31.2	48.6	12.4	61.0	0.0	100.0	3.65	66.28
	11 ~ 15년		89	0.0	5.6	5.6	22.5	53.9	18.0	71.9	0.0	100.0	3.84	71.07
	16 ~ 20년		107	2.8	4.7	7.5	21.5	52.3	18.7	71.0	0.0	100.0	3.79	69.86
	21년 이상		128	0.8	6.3	7.0	22.7	50.8	19.5	70.3	0.0	100.0	3.82	70.51
	무응답		26	3.8	19.2	23.1	34.6	30.8	7.7	38.5	3.8	100.0	3.22	55.38

표 35.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0.8</b>	<b>3.5</b>	<b>4.2</b>	<b>13.9</b>	<b>57.1</b>	<b>24.6</b>	<b>81.7</b>	<b>0.1</b>	<b>100.0</b>	<b>4.01</b>	<b>75.35</b>	
성별	남자	726	0.8	3.4	4.3	12.4	57.4	25.8	83.2	0.1	100.0	4.04	76.00
	여자	286	0.7	3.5	4.2	17.8	56.3	21.7	78.0	0.0	100.0	3.95	73.69
연령별	19 ~ 29세	145	1.4	2.8	4.1	14.5	57.9	23.4	81.4	0.0	100.0	3.99	74.83
	30대	306	1.3	3.6	4.9	12.7	55.6	26.8	82.4	0.0	100.0	4.03	75.74
	40대	280	0.4	2.5	2.9	16.8	56.8	23.6	80.4	0.0	100.0	4.01	75.18
	50대	203	0.5	4.4	4.9	11.3	58.1	25.6	83.7	0.0	100.0	4.04	75.99
	60세 이상	78	0.0	5.1	5.1	14.1	60.3	19.2	79.5	1.3	100.0	3.95	73.72
지역별	수도권	586	1.0	3.8	4.8	13.5	56.7	24.9	81.6	0.2	100.0	4.01	75.21
	중부권	197	0.5	3.0	3.6	15.2	58.9	22.3	81.2	0.0	100.0	3.99	74.87
	전라권	79	0.0	3.8	3.8	15.2	62.0	19.0	81.0	0.0	100.0	3.96	74.05
	경상권	127	0.8	2.4	3.1	12.6	56.7	27.6	84.3	0.0	100.0	4.08	76.97
	제주	23	0.0	4.3	4.3	17.4	39.1	39.1	78.3	0.0	100.0	4.13	78.26
분야별	입법	151	0.7	4.0	4.6	15.2	57.6	22.5	80.1	0.0	100.0	3.97	74.34
	행정	212	0.5	3.8	4.2	15.1	59.4	21.2	80.7	0.0	100.0	3.97	74.29
	사법	90	0.0	2.2	2.2	11.1	60.0	25.6	85.6	1.1	100.0	4.10	77.50
	학계	208	0.5	2.4	2.9	14.4	53.8	28.8	82.7	0.0	100.0	4.08	77.04
	민간	231	1.3	3.5	4.8	11.3	57.1	26.8	84.0	0.0	100.0	4.05	76.19
	예비전문가	120	1.7	5.0	6.7	16.7	55.8	20.8	76.7	0.0	100.0	3.89	72.29
직업별	국회의원	50	2.0	4.0	6.0	20.0	58.0	16.0	74.0	0.0	100.0	3.82	70.50
	국회공무원	50	0.0	4.0	4.0	10.0	64.0	22.0	86.0	0.0	100.0	4.04	76.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9	3.9	15.7	51.0	29.4	80.4	0.0	100.0	4.06	76.47
	국가공무원	112	0.9	4.5	5.4	14.3	58.9	21.4	80.4	0.0	100.0	3.96	73.88
	지방공무원	100	0.0	3.0	3.0	16.0	60.0	21.0	81.0	0.0	100.0	3.99	74.75
	관사	30	0.0	0.0	0.0	6.7	66.7	26.7	93.3	0.0	100.0	4.20	80.00
	검사	30	0.0	0.0	0.0	10.0	50.0	40.0	90.0	0.0	100.0	4.30	82.50
	법원공무원	30	0.0	6.7	6.7	16.7	63.3	10.0	73.3	3.3	100.0	3.80	70.01
	로스쿨교수	69	1.4	1.4	2.9	7.2	59.4	30.4	89.9	0.0	100.0	4.16	78.99
	법학과교수	70	0.0	5.7	5.7	17.1	47.1	30.0	77.1	0.0	100.0	4.01	75.36
	연구원	69	0.0	0.0	0.0	18.8	55.1	26.1	81.2	0.0	100.0	4.07	76.81
	연변호사	110	0.0	0.0	0.0	9.1	58.2	32.7	90.9	0.0	100.0	4.24	80.91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5	6.6	9.1	13.2	56.2	21.5	77.7	0.0	100.0	3.88	71.90
	로스쿨과정생	60	3.3	5.0	8.3	8.3	56.7	26.7	83.3	0.0	100.0	3.98	74.58
박사과정생	60	0.0	5.0	5.0	25.0	55.0	15.0	70.0	0.0	100.0	3.80	7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0.5	0.5	10.0	56.6	33.0	89.6	0.0	100.0	4.22	80.54
	타자격증	136	2.2	5.1	7.4	12.5	56.6	23.5	80.1	0.0	100.0	3.94	73.53
	없음	658	0.8	4.1	4.9	15.5	57.3	22.2	79.5	0.2	100.0	3.96	74.05
법 관 중 사 기 간	1 ~ 5년	444	1.4	3.4	4.7	13.3	57.0	25.0	82.0	0.0	100.0	4.01	75.23
	6 ~ 10년	218	0.0	3.2	3.2	11.9	59.6	25.2	84.9	0.0	100.0	4.07	76.72
	11 ~ 15년	89	0.0	3.4	3.4	20.2	48.3	28.1	76.4	0.0	100.0	4.01	75.28
	16 ~ 20년	107	1.9	2.8	4.7	22.4	46.7	26.2	72.9	0.0	100.0	3.93	73.13
	21년 이상	128	0.0	3.9	3.9	7.0	68.8	20.3	89.1	0.0	100.0	4.05	76.37
	무응답	26	0.0	7.7	7.7	19.2	53.8	15.4	69.2	3.8	100.0	3.81	70.21

【부 록】

표 36.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12	1.2	7.1	8.3	38.5	43.9	9.1	53.0	0.2	100.0	3.53	63.17
성별	남	자	726	1.1	5.1	6.2	35.4	47.2	10.9	58.1	0.3	100.0	3.62	65.46
	여	자	286	1.4	12.2	13.6	46.5	35.3	4.5	39.9	0.0	100.0	3.29	57.34
연령별	19 ~ 29세		145	0.7	12.4	13.1	44.1	38.6	4.1	42.8	0.0	100.0	3.33	58.28
	30대		306	2.0	7.5	9.5	38.9	40.8	10.8	51.6	0.0	100.0	3.51	62.75
	40대		280	0.4	6.4	6.8	40.0	46.4	6.8	53.2	0.0	100.0	3.53	63.21
	50대		203	0.5	3.4	3.9	35.5	47.3	13.3	60.6	0.0	100.0	3.69	67.36
	60세 이상		78	3.8	7.7	11.5	29.5	47.4	9.0	56.4	2.6	100.0	3.51	62.84
지역별	수도권		586	1.0	7.8	8.9	38.9	43.9	8.0	51.9	0.3	100.0	3.50	62.54
	중부권		197	2.5	5.6	8.1	41.6	40.6	9.6	50.3	0.0	100.0	3.49	62.31
	전라권		79	1.3	3.8	5.1	38.0	45.6	11.4	57.0	0.0	100.0	3.62	65.51
	경상권		127	0.0	7.9	7.9	34.6	45.7	11.8	57.5	0.0	100.0	3.61	65.35
	제주		23	0.0	8.7	8.7	26.1	56.5	8.7	65.2	0.0	100.0	3.65	66.30
분야별	입법		151	2.0	7.3	9.3	62.9	25.2	2.0	27.2	0.7	100.0	3.18	54.56
	행정		212	1.9	10.4	12.3	49.1	34.4	4.2	38.7	0.0	100.0	3.29	57.19
	사법		90	0.0	2.2	2.2	11.1	67.8	17.8	85.6	1.1	100.0	4.02	75.42
	학계		208	1.9	3.4	5.3	25.0	53.4	16.3	69.7	0.0	100.0	3.79	69.71
	민간		231	0.4	7.8	8.2	32.5	47.6	11.7	59.3	0.0	100.0	3.62	65.58
	예비법전문가		120	0.0	10.0	10.0	45.0	42.5	2.5	45.0	0.0	100.0	3.38	59.38
직업별	국회의원		50	6.0	12.0	18.0	70.0	12.0	0.0	12.0	0.0	100.0	2.88	47.00
	국회공무원		50	0.0	2.0	2.0	54.0	42.0	2.0	44.0	0.0	100.0	3.44	61.00
	지방의회의원		51	0.0	7.8	7.8	64.7	21.6	3.9	25.5	2.0	100.0	3.23	55.65
	국가공무원		112	2.7	6.3	8.9	48.2	39.3	3.6	42.9	0.0	100.0	3.35	58.71
	지방공무원		100	1.0	15.0	16.0	50.0	29.0	5.0	34.0	0.0	100.0	3.22	55.50
	관사		30	0.0	0.0	0.0	10.0	73.3	16.7	90.0	0.0	100.0	4.07	76.67
	검사		30	0.0	0.0	0.0	6.7	60.0	33.3	93.3	0.0	100.0	4.27	81.67
	법원공무원		30	0.0	6.7	6.7	16.7	70.0	3.3	73.3	3.3	100.0	3.72	67.94
	로스쿨교수		69	1.4	1.4	2.9	11.6	63.8	21.7	85.5	0.0	100.0	4.03	75.72
	법학과교수		70	1.4	1.4	2.9	22.9	57.1	17.1	74.3	0.0	100.0	3.87	71.79
	연구원		69	2.9	7.2	10.1	40.6	39.1	10.1	49.3	0.0	100.0	3.46	61.59
	변호사		110	0.0	1.8	1.8	19.1	58.2	20.9	79.1	0.0	100.0	3.98	74.55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13.2	14.0	44.6	38.0	3.3	41.3	0.0	100.0	3.30	57.44
	로스쿨과정생		60	0.0	10.0	10.0	48.3	41.7	0.0	41.7	0.0	100.0	3.32	57.92
	박사과정생		60	0.0	10.0	10.0	41.7	43.3	5.0	48.3	0.0	100.0	3.43	60.8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5	0.9	1.4	14.5	61.5	22.6	84.2	0.0	100.0	4.05	76.24
	타자격증		136	0.7	11.0	11.8	42.6	40.4	5.1	45.6	0.0	100.0	3.38	59.56
	없음		658	1.5	8.4	9.9	45.9	38.4	5.5	43.9	0.3	100.0	3.38	59.54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년		444	1.6	10.8	12.4	47.1	34.0	6.5	40.5	0.0	100.0	3.33	58.28
	6 ~ 10년		218	0.9	4.1	5.0	33.9	51.8	8.7	60.6	0.5	100.0	3.64	65.89
	11 ~ 15년		89	0.0	5.6	5.6	33.7	53.9	6.7	60.7	0.0	100.0	3.62	65.45
	16 ~ 20년		107	0.9	4.7	5.6	27.1	47.7	19.6	67.3	0.0	100.0	3.80	70.09
	21년 이상		128	0.8	3.1	3.9	28.9	54.7	12.5	67.2	0.0	100.0	3.75	68.75
	무응답		26	3.8	3.8	7.7	42.3	42.3	3.8	46.2	3.8	100.0	3.40	60.12

표 37. 법 관련 용어/내용의 이해 용이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11.4</b>	<b>52.8</b>	<b>64.1</b>	<b>28.6</b>	<b>6.5</b>	<b>0.7</b>	<b>7.2</b>	<b>0.1</b>	<b>100.0</b>	<b>2.32</b>	<b>33.09</b>	
성별	남자	726	10.2	51.2	61.4	30.2	7.9	0.4	8.3	0.1	100.0	2.37	34.24
	여자	286	14.3	56.6	71.0	24.5	3.1	1.4	4.5	0.0	100.0	2.21	30.16
연령별	19 ~ 29세	145	17.2	51.0	68.3	24.8	6.9	0.0	6.9	0.0	100.0	2.21	30.34
	30대	306	11.1	55.6	66.7	28.1	4.9	0.3	5.2	0.0	100.0	2.28	31.94
	40대	280	11.4	54.6	66.1	28.9	5.0	0.0	5.0	0.0	100.0	2.28	31.88
	50대	203	8.4	47.3	55.7	33.0	8.9	2.5	11.3	0.0	100.0	2.50	37.44
	60세 이상	78	9.0	52.6	61.5	24.4	11.5	1.3	12.8	1.3	100.0	2.43	35.68
지역별	수도권	586	13.8	50.9	64.7	28.7	5.6	0.9	6.5	0.2	100.0	2.29	32.18
	중부권	197	9.1	52.3	61.4	29.4	8.1	1.0	9.1	0.0	100.0	2.40	34.90
	진라권	79	7.6	50.6	58.2	30.4	11.4	0.0	11.4	0.0	100.0	2.46	36.39
	경상권	127	4.7	62.2	66.9	26.8	6.3	0.0	6.3	0.0	100.0	2.35	33.66
	제주권	23	17.4	60.9	78.3	21.7	0.0	0.0	0.0	0.0	100.0	2.04	26.09
분야별	입법	151	13.2	57.0	70.2	20.5	5.3	4.0	9.3	0.0	100.0	2.30	32.45
	행정	212	11.3	51.9	63.2	30.7	6.1	0.0	6.1	0.0	100.0	2.32	32.90
	사법	90	1.1	43.3	44.4	46.7	7.8	0.0	7.8	1.1	100.0	2.61	40.37
	학계	208	9.1	51.4	60.6	31.7	7.7	0.0	7.7	0.0	100.0	2.38	34.50
	민간	231	12.6	57.1	69.7	24.2	6.1	0.0	6.1	0.0	100.0	2.24	30.95
	예비전문가	120	18.3	50.0	68.3	24.2	6.7	0.8	7.5	0.0	100.0	2.22	30.42
직업별	국회의원	50	18.0	56.0	74.0	22.0	4.0	0.0	4.0	0.0	100.0	2.12	28.00
	국회공무원	50	12.0	64.0	76.0	20.0	4.0	0.0	4.0	0.0	100.0	2.16	29.00
	지방의회 의원	51	9.8	51.0	60.8	19.6	7.8	11.8	19.6	0.0	100.0	2.61	40.20
	국가공무원	112	9.8	50.0	59.8	33.9	6.3	0.0	6.3	0.0	100.0	2.37	34.15
	지방공무원	100	13.0	54.0	67.0	27.0	6.0	0.0	6.0	0.0	100.0	2.26	31.50
	관사	30	0.0	56.7	56.7	36.7	6.7	0.0	6.7	0.0	100.0	2.50	37.50
	검사	30	0.0	40.0	40.0	56.7	3.3	0.0	3.3	0.0	100.0	2.63	40.83
	법원공무원	30	3.3	33.3	36.7	46.7	13.3	0.0	13.3	3.3	100.0	2.71	42.77
	로스쿨교수	69	4.3	52.2	56.5	33.3	10.1	0.0	10.1	0.0	100.0	2.49	37.32
	법학과교수	70	8.6	47.1	55.7	34.3	10.0	0.0	10.0	0.0	100.0	2.46	36.43
	연구원	69	14.5	55.1	69.6	27.5	2.9	0.0	2.9	0.0	100.0	2.19	29.71
	변호사	110	8.2	58.2	66.4	26.4	7.3	0.0	7.3	0.0	100.0	2.33	33.1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6.5	56.2	72.7	22.3	5.0	0.0	5.0	0.0	100.0	2.16	28.93
	로스쿨과정생	60	21.7	50.0	71.7	20.0	8.3	0.0	8.3	0.0	100.0	2.15	28.75
	박사과정생	60	15.0	50.0	65.0	28.3	5.0	1.7	6.7	0.0	100.0	2.28	32.08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5.4	52.5	57.9	34.8	7.2	0.0	7.2	0.0	100.0	2.44	35.97
	타자격증	136	15.4	52.2	67.6	25.7	6.6	0.0	6.6	0.0	100.0	2.24	30.88
	없음	658	12.6	52.9	65.5	27.1	6.2	1.1	7.3	0.2	100.0	2.30	32.54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14.2	55.4	69.6	23.4	5.6	1.4	7.0	0.0	100.0	2.25	31.14
	6 ~ 10년	218	10.6	52.3	62.8	31.2	5.5	0.5	6.0	0.0	100.0	2.33	33.26
	11 ~ 15년	89	9.0	60.7	69.7	23.6	6.7	0.0	6.7	0.0	100.0	2.28	32.02
	16 ~ 20년	107	8.4	46.7	55.1	35.5	9.3	0.0	9.3	0.0	100.0	2.46	36.45
	21년 이상	128	6.3	43.8	50.0	39.8	10.2	0.0	10.2	0.0	100.0	2.54	38.48
	무응답	26	15.4	53.8	69.2	26.9	0.0	0.0	0.0	3.8	100.0	2.13	28.20

【부 록】

표 38.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전 체			1,012	4.9	38.2	43.2	41.0	14.9	0.8	15.7	0.1	100.0	2.68	42.09
성별	남	자	726	4.4	37.5	41.9	39.3	18.0	0.7	18.7	0.1	100.0	2.73	43.27
	여	자	286	6.3	40.2	46.5	45.5	7.0	1.0	8.0	0.0	100.0	2.56	39.07
연령별	19 ~ 29	세	145	7.6	36.6	44.1	37.2	17.9	0.7	18.6	0.0	100.0	2.68	41.90
	30	대	306	6.2	38.9	45.1	43.8	10.8	0.3	11.1	0.0	100.0	2.60	40.03
	40	대	280	3.9	42.1	46.1	41.1	11.8	1.1	12.9	0.0	100.0	2.64	40.98
	50	대	203	2.0	33.5	35.5	40.4	23.6	0.5	24.1	0.0	100.0	2.87	46.80
	60세	이상	78	6.4	37.2	43.6	38.5	14.1	2.6	16.7	1.3	100.0	2.69	42.21
지역별	수도	권	586	6.0	38.6	44.5	41.5	12.8	1.0	13.8	0.2	100.0	2.64	41.07
	중부	권	197	4.6	38.6	43.1	40.1	16.2	0.5	16.8	0.0	100.0	2.70	42.39
	전라	권	79	5.1	31.6	36.7	39.2	22.8	1.3	24.1	0.0	100.0	2.84	45.89
	경상	권	127	0.8	40.9	41.7	40.9	17.3	0.0	17.3	0.0	100.0	2.75	43.70
	제주	권	23	4.3	34.8	39.1	43.5	17.4	0.0	17.4	0.0	100.0	2.74	43.48
분야별	입법		151	2.6	41.1	43.7	39.7	13.9	2.6	16.6	0.0	100.0	2.73	43.21
	행정		212	5.7	34.9	40.6	44.3	14.6	0.5	15.1	0.0	100.0	2.69	42.33
	사법		90	0.0	17.8	17.8	46.7	34.4	0.0	34.4	1.1	100.0	3.16	54.08
	학계		208	4.3	39.4	43.8	42.3	13.5	0.5	13.9	0.0	100.0	2.66	41.59
	민간		231	6.1	44.2	50.2	38.5	11.3	0.0	11.3	0.0	100.0	2.55	38.74
	예비법	전문가	120	9.2	42.5	51.7	35.0	11.7	1.7	13.3	0.0	100.0	2.54	38.54
직업별	국회의원		50	4.0	30.0	34.0	52.0	10.0	4.0	14.0	0.0	100.0	2.80	45.00
	국회공무원		50	2.0	54.0	56.0	34.0	10.0	0.0	10.0	0.0	100.0	2.52	38.00
	지방의회 의원		51	2.0	39.2	41.2	33.3	21.6	3.9	25.5	0.0	100.0	2.86	46.57
	국가공무원		112	7.1	29.5	36.6	44.6	17.9	0.9	18.8	0.0	100.0	2.76	43.97
	지방공무원		100	4.0	41.0	45.0	44.0	11.0	0.0	11.0	0.0	100.0	2.62	40.50
	관사		30	0.0	13.3	13.3	36.7	50.0	0.0	50.0	0.0	100.0	3.37	59.17
	검사		30	0.0	20.0	20.0	53.3	26.7	0.0	26.7	0.0	100.0	3.07	51.67
	법원공무원		30	0.0	20.0	20.0	50.0	26.7	0.0	26.7	3.3	100.0	3.06	51.40
	로스쿨교수		69	0.0	42.0	42.0	42.0	15.9	0.0	15.9	0.0	100.0	2.74	43.48
	법학과교수		70	4.3	34.3	38.6	47.1	14.3	0.0	14.3	0.0	100.0	2.71	42.86
	연구원		69	8.7	42.0	50.7	37.7	10.1	1.4	11.6	0.0	100.0	2.54	38.41
	변호사		110	0.9	40.0	40.9	43.6	15.5	0.0	15.5	0.0	100.0	2.74	43.41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0.7	47.9	58.7	33.9	7.4	0.0	7.4	0.0	100.0	2.38	34.50
	로스쿨과정생		60	11.7	38.3	50.0	35.0	13.3	1.7	15.0	0.0	100.0	2.55	38.75
	박사과정생		60	6.7	46.7	53.3	35.0	10.0	1.7	11.7	0.0	100.0	2.53	38.3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5	31.2	31.7	47.1	21.3	0.0	21.3	0.0	100.0	2.89	47.29
	타자격증		136	10.3	46.3	56.6	32.4	10.3	0.7	11.0	0.0	100.0	2.45	36.21
	없음		658	5.3	39.1	44.4	40.6	13.8	1.1	14.9	0.2	100.0	2.66	41.55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	년	444	5.2	40.3	45.5	40.5	12.8	1.1	14.0	0.0	100.0	2.64	41.10
	6 ~ 10	년	218	5.5	38.1	43.6	42.7	12.8	0.9	13.8	0.0	100.0	2.66	41.40
	11 ~ 15	년	89	5.6	42.7	48.3	40.4	10.1	1.1	11.2	0.0	100.0	2.58	39.61
	16 ~ 20	년	107	0.9	32.7	33.6	44.9	21.5	0.0	21.5	0.0	100.0	2.87	46.73
	21년	이상	128	3.9	34.4	38.3	38.3	23.4	0.0	23.4	0.0	100.0	2.81	45.31
	무	응	26	15.4	30.8	46.2	34.6	15.4	0.0	15.4	3.8	100.0	2.53	38.16

표 39.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12	1.5	23.7	25.2	47.9	25.9	0.8	26.7	0.2	100.0	3.01	50.20
성별	남 자	726	1.1	23.0	24.1	47.0	27.8	0.8	28.7	0.3	100.0	3.04	51.07
	여 자	286	2.4	25.5	28.0	50.3	21.0	0.7	21.7	0.0	100.0	2.92	47.99
연령별	19 ~ 29세	145	2.1	25.5	27.6	48.3	23.4	0.0	23.4	0.7	100.0	2.94	48.45
	30대	306	1.6	23.9	25.5	51.6	22.5	0.3	22.9	0.0	100.0	2.96	49.02
	40대	280	1.4	25.0	26.4	47.1	25.7	0.7	26.4	0.0	100.0	2.99	49.82
	50대	203	0.5	21.2	21.7	43.8	34.0	0.5	34.5	0.0	100.0	3.13	53.20
	60세 이상	78	2.6	21.8	24.4	46.2	23.1	5.1	28.2	1.3	100.0	3.06	51.61
지역별	수도권	586	1.5	24.6	26.1	48.8	23.5	1.2	24.7	0.3	100.0	2.98	49.57
	중부권	197	1.0	22.3	23.4	46.2	30.5	0.0	30.5	0.0	100.0	3.06	51.52
	전라권	79	2.5	26.6	29.1	39.2	30.4	1.3	31.6	0.0	100.0	3.01	50.32
	경상권	127	1.6	18.1	19.7	54.3	26.0	0.0	26.0	0.0	100.0	3.05	51.18
	제주권	23	0.0	34.8	34.8	34.8	30.4	0.0	30.4	0.0	100.0	2.96	48.91
분야별	입법	151	0.7	31.1	31.8	45.7	19.9	2.6	22.5	0.0	100.0	2.93	48.18
	행정	212	1.4	22.6	24.1	53.3	22.6	0.0	22.6	0.0	100.0	2.97	49.29
	사법	90	0.0	5.6	5.6	40.0	52.2	1.1	53.3	1.1	100.0	3.49	62.22
	학계	208	1.0	22.6	23.6	46.2	29.3	1.0	30.3	0.0	100.0	3.07	51.68
	민간	231	3.0	26.4	29.4	48.9	21.2	0.4	21.6	0.0	100.0	2.90	47.40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7	26.7	28.3	48.3	22.5	0.0	22.5	0.8	100.0	2.93	48.13
	국회의원	50	2.0	26.0	28.0	42.0	26.0	4.0	30.0	0.0	100.0	3.04	51.00
	국회공무원	50	0.0	36.0	36.0	52.0	12.0	0.0	12.0	0.0	100.0	2.76	44.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1.4	31.4	43.1	21.6	3.9	25.5	0.0	100.0	2.98	49.51
	국가공무원	112	0.9	19.6	20.5	56.3	23.2	0.0	23.2	0.0	100.0	3.02	50.45
	지방공무원	100	2.0	26.0	28.0	50.0	22.0	0.0	22.0	0.0	100.0	2.92	48.00
	관사	30	0.0	6.7	6.7	26.7	66.7	0.0	66.7	0.0	100.0	3.60	65.00
	검사	30	0.0	0.0	0.0	53.3	43.3	3.3	46.7	0.0	100.0	3.50	62.50
	법원 공무원	30	0.0	10.0	10.0	40.0	46.7	0.0	46.7	3.3	100.0	3.37	59.17
	로스쿨 교수	69	1.4	15.9	17.4	46.4	36.2	0.0	36.2	0.0	100.0	3.17	54.35
	법학과 교수	70	0.0	20.0	20.0	50.0	28.6	1.4	30.0	0.0	100.0	3.11	52.86
	연구원	69	1.4	31.9	33.3	42.0	23.2	1.4	24.6	0.0	100.0	2.91	47.83
	변호사	110	0.9	17.3	18.2	52.7	29.1	0.0	29.1	0.0	100.0	3.10	52.5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5.0	34.7	39.7	45.5	14.0	0.8	14.9	0.0	100.0	2.71	42.77
	로스쿨 과정생	60	0.0	26.7	26.7	46.7	26.7	0.0	26.7	0.0	100.0	3.00	50.00
박사 과정생	60	3.3	26.7	30.0	50.0	18.3	0.0	18.3	1.7	100.0	2.85	46.25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21	0.5	13.1	13.6	48.9	36.7	0.9	37.6	0.0	100.0	3.24	56.11
	타 자격증	136	4.4	31.6	36.0	46.3	16.9	0.7	17.6	0.0	100.0	2.78	44.49
	없음	658	1.2	25.7	26.9	47.9	24.2	0.8	24.9	0.3	100.0	2.98	49.39
법률관련 종사 기간	1 ~ 5년	444	1.6	24.5	26.1	50.0	23.2	0.7	23.9	0.0	100.0	2.97	49.21
	6 ~ 10년	218	1.8	26.6	28.4	47.2	22.5	1.4	23.9	0.5	100.0	2.95	48.74
	11 ~ 15년	89	1.1	21.3	22.5	49.4	28.1	0.0	28.1	0.0	100.0	3.04	51.12
	16 ~ 20년	107	0.9	24.3	25.2	43.9	30.8	0.0	30.8	0.0	100.0	3.05	51.17
	21년 이상	128	0.8	17.2	18.0	43.0	37.5	1.6	39.1	0.0	100.0	3.22	55.47
무응답	26	3.8	23.1	26.9	53.8	15.4	0.0	15.4	3.8	100.0	2.85	46.16	

【부 록】

표 40. 법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전 체			1,012	9.8	39.2	49.0	32.8	17.0	1.1	18.1	0.1	100.0	2.60	40.08
성별	남	자	726	8.5	39.3	47.8	32.9	18.0	1.1	19.1	0.1	100.0	2.64	40.96
	여	자	286	12.9	39.2	52.1	32.5	14.3	1.0	15.4	0.0	100.0	2.51	37.85
연령별	19 ~ 29세		145	8.3	35.2	43.4	35.9	19.3	1.4	20.7	0.0	100.0	2.70	42.59
	30대		306	10.8	41.5	52.3	31.7	15.4	0.7	16.0	0.0	100.0	2.54	38.40
	40대		280	11.4	41.8	53.2	31.1	15.0	0.7	15.7	0.0	100.0	2.52	37.95
	50대		203	7.4	36.9	44.3	33.0	21.7	1.0	22.7	0.0	100.0	2.72	42.98
	60세 이상		78	9.0	34.6	43.6	37.2	14.1	3.8	17.9	1.3	100.0	2.69	42.18
지역별	수도권		586	9.0	41.8	50.9	31.6	15.7	1.7	17.4	0.2	100.0	2.59	39.79
	중부권		197	12.7	37.1	49.7	33.0	17.3	0.0	17.3	0.0	100.0	2.55	38.71
	전라권		79	8.9	35.4	44.3	32.9	22.8	0.0	22.8	0.0	100.0	2.70	42.41
	경상권		127	9.4	32.3	41.7	40.2	17.3	0.8	18.1	0.0	100.0	2.68	41.93
	제주		23	8.7	43.5	52.2	21.7	26.1	0.0	26.1	0.0	100.0	2.65	41.30
분야별	입법		151	9.3	46.4	55.6	29.1	11.9	3.3	15.2	0.0	100.0	2.54	38.41
	행정		212	10.8	42.5	53.3	32.5	14.2	0.0	14.2	0.0	100.0	2.50	37.50
	사법		90	0.0	15.6	15.6	33.3	46.7	3.3	50.0	1.1	100.0	3.37	59.33
	학계		208	10.6	37.0	47.6	35.6	15.9	1.0	16.8	0.0	100.0	2.60	39.90
	민간		231	12.6	41.6	54.1	33.3	12.1	0.4	12.6	0.0	100.0	2.46	36.58
	예비법전문가		120	9.2	41.7	50.8	31.7	17.5	0.0	17.5	0.0	100.0	2.58	39.38
직업별	국회의원		50	6.0	50.0	56.0	28.0	10.0	6.0	16.0	0.0	100.0	2.60	40.00
	국회공무원		50	16.0	48.0	64.0	26.0	10.0	0.0	10.0	0.0	100.0	2.30	32.50
	지방의회의원		51	5.9	41.2	47.1	33.3	15.7	3.9	19.6	0.0	100.0	2.71	42.65
	국가공무원		112	9.8	39.3	49.1	33.0	17.9	0.0	17.9	0.0	100.0	2.59	39.73
	지방공무원		100	12.0	46.0	58.0	32.0	10.0	0.0	10.0	0.0	100.0	2.40	35.00
	관사		30	0.0	16.7	16.7	26.7	53.3	3.3	56.7	0.0	100.0	3.43	60.83
	검사		30	0.0	16.7	16.7	40.0	36.7	6.7	43.3	0.0	100.0	3.33	58.33
	법원공무원		30	0.0	13.3	13.3	33.3	50.0	0.0	50.0	3.3	100.0	3.35	58.84
	로스쿨교수		69	7.2	37.7	44.9	36.2	18.8	0.0	18.8	0.0	100.0	2.67	41.67
	법학과교수		70	5.7	34.3	40.0	42.9	14.3	2.9	17.1	0.0	100.0	2.74	43.57
	연구원		69	18.8	39.1	58.0	27.5	14.5	0.0	14.5	0.0	100.0	2.38	34.42
	변호사		110	7.3	31.8	39.1	42.7	18.2	0.0	18.2	0.0	100.0	2.72	42.95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7.4	50.4	67.8	24.8	6.6	0.8	7.4	0.0	100.0	2.23	30.79
	로스쿨과정생		60	3.3	40.0	43.3	33.3	23.3	0.0	23.3	0.0	100.0	2.77	44.17
	박사과정생		60	15.0	43.3	58.3	30.0	11.7	0.0	11.7	0.0	100.0	2.38	34.58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4.5	29.0	33.5	38.5	26.2	1.8	28.1	0.0	100.0	2.92	47.96
	타자격증		136	15.4	48.5	64.0	25.0	10.3	0.7	11.0	0.0	100.0	2.32	33.09
	없음		658	10.3	40.9	51.2	32.4	15.3	0.9	16.3	0.2	100.0	2.56	38.89
법 관련 중사 기간	1 ~ 5년		444	10.8	39.6	50.5	33.3	14.9	1.4	16.2	0.0	100.0	2.56	39.08
	6 ~ 10년		218	11.9	43.6	55.5	26.1	17.0	1.4	18.3	0.0	100.0	2.52	38.07
	11 ~ 15년		89	7.9	46.1	53.9	33.7	12.4	0.0	12.4	0.0	100.0	2.51	37.64
	16 ~ 20년		107	10.3	31.8	42.1	37.4	20.6	0.0	20.6	0.0	100.0	2.68	42.06
	21년 이상		128	1.6	34.4	35.9	35.9	26.6	1.6	28.1	0.0	100.0	2.92	48.05
	무응답		26	19.2	26.9	46.2	42.3	7.7	0.0	7.7	3.8	100.0	2.41	35.20

표 41.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0.4</b>	<b>3.5</b>	<b>3.9</b>	<b>24.3</b>	<b>57.5</b>	<b>14.2</b>	<b>71.7</b>	<b>0.1</b>	<b>100.0</b>	<b>3.82</b>	<b>70.45</b>	
성별	남자	726	0.6	3.6	4.1	22.0	59.2	14.5	73.7	0.1	100.0	3.84	70.90
	여자	286	0.0	3.1	3.1	30.1	53.1	13.6	66.8	0.0	100.0	3.77	69.32
연령별	19 ~ 29세	145	0.7	1.4	2.1	33.8	50.3	13.8	64.1	0.0	100.0	3.75	68.79
	30대	306	1.0	2.9	3.9	25.8	55.2	15.0	70.3	0.0	100.0	3.80	70.10
	40대	280	0.0	4.6	4.6	25.4	59.6	10.4	70.0	0.0	100.0	3.76	68.93
	50대	203	0.0	3.0	3.0	15.8	64.5	16.7	81.3	0.0	100.0	3.95	73.77
	60세 이상	78	0.0	6.4	6.4	19.2	53.8	19.2	73.1	1.3	100.0	3.87	71.74
지역별	수도권	586	0.5	3.9	4.4	24.4	56.5	14.5	71.0	0.2	100.0	3.81	70.17
	중부권	197	0.5	2.0	2.5	25.9	57.4	14.2	71.6	0.0	100.0	3.83	70.69
	전라권	79	0.0	5.1	5.1	24.1	55.7	15.2	70.9	0.0	100.0	3.81	70.25
	경상권	127	0.0	2.4	2.4	19.7	64.6	13.4	78.0	0.0	100.0	3.89	72.24
	제주권	23	0.0	4.3	4.3	34.8	52.2	8.7	60.9	0.0	100.0	3.65	66.30
분야별	입법	151	0.7	5.3	6.0	25.2	57.0	11.9	68.9	0.0	100.0	3.74	68.54
	행정	212	0.5	3.3	3.8	22.6	60.8	12.7	73.6	0.0	100.0	3.82	70.52
	사법	90	0.0	1.1	1.1	17.8	58.9	21.1	80.0	1.1	100.0	4.01	75.23
	학계	208	0.5	3.8	4.3	20.7	58.7	16.3	75.0	0.0	100.0	3.87	71.63
	민간	231	0.4	3.5	3.9	25.1	56.3	14.7	71.0	0.0	100.0	3.81	70.35
	예비법전문가	120	0.0	2.5	2.5	35.8	51.7	10.0	61.7	0.0	100.0	3.69	67.29
직업별	국회의원	50	2.0	8.0	10.0	28.0	48.0	14.0	62.0	0.0	100.0	3.64	66.00
	국회공무원	50	0.0	4.0	4.0	26.0	64.0	6.0	70.0	0.0	100.0	3.72	68.00
	지방의회 의원	51	0.0	3.9	3.9	21.6	58.8	15.7	74.5	0.0	100.0	3.86	71.57
	국가공무원	112	0.9	1.8	2.7	21.4	60.7	15.2	75.9	0.0	100.0	3.88	71.88
	지방공무원	100	0.0	5.0	5.0	24.0	61.0	10.0	71.0	0.0	100.0	3.76	69.00
	관사	30	0.0	0.0	0.0	6.7	70.0	23.3	93.3	0.0	100.0	4.17	79.17
	검사	30	0.0	3.3	3.3	23.3	53.3	20.0	73.3	0.0	100.0	3.90	72.50
	법원공무원	30	0.0	0.0	0.0	23.3	53.3	20.0	73.3	3.3	100.0	3.96	74.02
	로스쿨교수	69	0.0	2.9	2.9	13.0	60.9	23.2	84.1	0.0	100.0	4.04	76.09
	법학과교수	70	0.0	5.7	5.7	18.6	60.0	15.7	75.7	0.0	100.0	3.86	71.43
	연구원	69	1.4	2.9	4.3	30.4	55.1	10.1	65.2	0.0	100.0	3.70	67.39
	변호사	110	0.0	2.7	2.7	20.9	60.0	16.4	76.4	0.0	100.0	3.90	72.5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4.1	5.0	28.9	52.9	13.2	66.1	0.0	100.0	3.74	68.39
	로스쿨과정생	60	0.0	1.7	1.7	28.3	58.3	11.7	70.0	0.0	100.0	3.80	70.00
	박사과정생	60	0.0	3.3	3.3	43.3	45.0	8.3	53.3	0.0	100.0	3.58	64.58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2.3	2.3	19.0	60.6	18.1	78.7	0.0	100.0	3.95	73.64
	타자격증	136	0.7	4.4	5.1	27.2	54.4	13.2	67.6	0.0	100.0	3.75	68.75
	없음	658	0.5	3.6	4.1	25.4	57.3	13.1	70.4	0.2	100.0	3.79	69.75
법 관련 사 기간	1 ~ 5년	444	0.7	2.3	2.9	29.7	53.6	13.7	67.3	0.0	100.0	3.77	69.37
	6 ~ 10년	218	0.5	4.6	5.0	21.1	61.5	12.4	73.9	0.0	100.0	3.81	70.18
	11 ~ 15년	89	0.0	4.5	4.5	21.3	60.7	13.5	74.2	0.0	100.0	3.83	70.79
	16 ~ 20년	107	0.0	4.7	4.7	26.2	55.1	14.0	69.2	0.0	100.0	3.79	69.63
	21년 이상	128	0.0	3.9	3.9	11.7	64.1	20.3	84.4	0.0	100.0	4.01	75.20
	무응답	26	0.0	3.8	3.8	23.1	57.7	11.5	69.2	3.8	100.0	3.80	70.02



【부 록】

표 42.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2</b>	<b>3.5</b>	<b>3.7</b>	<b>17.9</b>	<b>53.3</b>	<b>25.1</b>	<b>78.4</b>	<b>0.1</b>	<b>100.0</b>	<b>4.00</b>	<b>74.93</b>	
성별	남 자	726	0.3	3.7	4.0	16.4	55.9	23.6	79.5	0.1	100.0	3.99	74.72
	여 자	286	0.0	2.8	2.8	21.7	46.5	29.0	75.5	0.0	100.0	4.02	75.44
연령별	19 ~ 29세	145	0.7	3.4	4.1	17.9	44.1	33.8	77.9	0.0	100.0	4.07	76.72
	30 대	306	0.3	4.6	4.9	16.7	51.0	27.5	78.4	0.0	100.0	4.01	75.16
	40 대	280	0.0	2.5	2.5	22.1	55.0	20.4	75.4	0.0	100.0	3.93	73.30
	50 대	203	0.0	3.0	3.0	12.8	60.1	24.1	84.2	0.0	100.0	4.05	76.35
	60세 이상	78	0.0	3.8	3.8	20.5	55.1	19.2	74.4	1.3	100.0	3.91	72.76
지역별	수도권	586	0.2	3.1	3.2	18.3	49.5	28.8	78.3	0.2	100.0	4.04	75.98
	중부권	197	0.5	3.6	4.1	18.8	59.4	17.8	77.2	0.0	100.0	3.90	72.59
	전라권	79	0.0	6.3	6.3	20.3	46.8	26.6	73.4	0.0	100.0	3.94	73.42
	경상권	127	0.0	2.4	2.4	14.2	62.2	21.3	83.5	0.0	100.0	4.02	75.59
	제주권	23	0.0	8.7	8.7	13.0	69.6	8.7	78.3	0.0	100.0	3.78	69.57
분야별	입법	151	0.7	2.6	3.3	13.2	52.3	31.1	83.4	0.0	100.0	4.11	77.65
	행정	212	0.5	3.8	4.2	21.2	49.5	25.0	74.5	0.0	100.0	3.95	73.70
	사법	90	0.0	1.1	1.1	16.7	55.6	25.6	81.1	1.1	100.0	4.07	76.67
	학계	208	0.0	4.8	4.8	15.4	57.2	22.6	79.8	0.0	100.0	3.98	74.40
	민간	231	0.0	3.5	3.5	20.3	54.1	22.1	76.2	0.0	100.0	3.95	73.70
	예비전문가	120	0.0	3.3	3.3	18.3	50.8	27.5	78.3	0.0	100.0	4.03	75.63
직업별	국회의원	50	2.0	4.0	6.0	2.0	58.0	34.0	92.0	0.0	100.0	4.18	79.50
	국회공무원	50	0.0	2.0	2.0	18.0	46.0	34.0	80.0	0.0	100.0	4.12	78.00
	지방의회 의원	51	0.0	2.0	2.0	19.6	52.9	25.5	78.4	0.0	100.0	4.02	75.49
	국가공무원	112	0.9	1.8	2.7	21.4	50.0	25.9	75.9	0.0	100.0	3.98	74.55
	지방공무원	100	0.0	6.0	6.0	21.0	49.0	24.0	73.0	0.0	100.0	3.91	72.75
	관사	30	0.0	3.3	3.3	13.3	60.0	23.3	83.3	0.0	100.0	4.03	75.83
	검사	30	0.0	0.0	0.0	10.0	53.3	36.7	90.0	0.0	100.0	4.27	81.67
	법원공무원	30	0.0	0.0	0.0	26.7	53.3	16.7	70.0	3.3	100.0	3.90	72.50
	로스쿨교수	69	0.0	7.2	7.2	13.0	65.2	14.5	79.7	0.0	100.0	3.87	71.74
	법학과교수	70	0.0	5.7	5.7	15.7	55.7	22.9	78.6	0.0	100.0	3.96	73.93
	연구원	69	0.0	1.4	1.4	17.4	50.7	30.4	81.2	0.0	100.0	4.10	77.54
	변호사	110	0.0	5.5	5.5	19.1	52.7	22.7	75.5	0.0	100.0	3.93	73.1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7	1.7	21.5	55.4	21.5	76.9	0.0	100.0	3.97	74.17
로스쿨과정생	60	0.0	5.0	5.0	13.3	56.7	25.0	81.7	0.0	100.0	4.02	75.42	
박사과정생	60	0.0	1.7	1.7	23.3	45.0	30.0	75.0	0.0	100.0	4.03	75.8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4.1	4.1	17.6	56.1	22.2	78.3	0.0	100.0	3.96	74.10
	타자격증	136	0.0	1.5	1.5	19.1	57.4	22.1	79.4	0.0	100.0	4.00	75.00
	없음	658	0.3	3.6	4.0	17.6	51.5	26.7	78.3	0.2	100.0	4.01	75.23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0.5	3.4	3.8	18.0	48.2	30.0	78.2	0.0	100.0	4.04	75.96
	6 ~ 10년	218	0.0	3.7	3.7	18.8	55.0	22.5	77.5	0.0	100.0	3.96	74.08
	11 ~ 15년	89	0.0	4.5	4.5	15.7	59.6	20.2	79.8	0.0	100.0	3.96	73.88
	16 ~ 20년	107	0.0	3.7	3.7	15.9	62.6	17.8	80.4	0.0	100.0	3.94	73.60
	21년 이상	128	0.0	2.3	2.3	17.2	56.3	24.2	80.5	0.0	100.0	4.02	75.59
부 응 답	26	0.0	3.8	3.8	26.9	50.0	15.4	65.4	3.8	100.0	3.81	70.19	

표 43. 정부의 법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5.2</b>	<b>23.5</b>	<b>28.8</b>	<b>37.4</b>	<b>32.0</b>	<b>1.8</b>	<b>33.8</b>	<b>0.1</b>	<b>100.0</b>	<b>3.02</b>	<b>50.40</b>	
성별	남 자	726	5.1	24.1	29.2	34.6	33.7	2.3	36.1	0.1	100.0	3.04	51.03
	여 자	286	5.6	22.0	27.6	44.4	27.6	0.3	28.0	0.0	100.0	2.95	48.78
연령별	19 ~ 29 세	145	9.0	22.8	31.7	38.6	29.0	0.7	29.7	0.0	100.0	2.90	47.41
	30 대	306	7.2	20.3	27.5	38.2	33.3	1.0	34.3	0.0	100.0	3.01	50.16
	40 대	280	2.9	27.5	30.4	32.9	33.9	2.9	36.8	0.0	100.0	3.06	51.61
	50 대	203	3.0	25.6	28.6	37.9	31.0	2.5	33.5	0.0	100.0	3.04	51.11
	60 세 이상	78	5.1	17.9	23.1	46.2	28.2	1.3	29.5	1.3	100.0	3.03	50.65
지역별	수 도 권	586	6.3	23.5	29.9	41.8	27.5	0.7	28.2	0.2	100.0	2.93	48.17
	중 부 권	197	4.6	14.2	18.8	31.0	45.7	4.6	50.3	0.0	100.0	3.31	57.87
	전 라 권	79	3.8	38.0	41.8	26.6	30.4	1.3	31.6	0.0	100.0	2.87	46.84
	경 상 권	127	3.1	26.8	29.9	31.5	35.4	3.1	38.6	0.0	100.0	3.09	52.17
	제 주 권	23	0.0	34.8	34.8	47.8	17.4	0.0	17.4	0.0	100.0	2.83	45.65
분야별	입 법	151	5.3	33.8	39.1	31.8	27.8	1.3	29.1	0.0	100.0	2.86	46.52
	행 정	212	2.4	12.7	15.1	29.2	50.0	5.7	55.7	0.0	100.0	3.44	60.97
	사 법	90	0.0	8.9	8.9	36.7	51.1	2.2	53.3	1.1	100.0	3.47	61.67
	학 계	208	4.3	27.4	31.7	43.3	24.0	1.0	25.0	0.0	100.0	2.90	47.48
	민 간	231	8.7	27.3	35.9	41.1	22.9	0.0	22.9	0.0	100.0	2.78	44.59
	예 비 법 전 문 가	120	9.2	26.7	35.8	41.7	22.5	0.0	22.5	0.0	100.0	2.78	44.38
직업별	국 회 의 원	50	10.0	26.0	36.0	28.0	36.0	0.0	36.0	0.0	100.0	2.90	47.50
	국 회 공 무 원	50	2.0	38.0	40.0	32.0	26.0	2.0	28.0	0.0	100.0	2.88	47.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3.9	37.3	41.2	35.3	21.6	2.0	23.5	0.0	100.0	2.80	45.10
	국 가 공 무 원	112	0.9	7.1	8.0	18.8	64.3	8.9	73.2	0.0	100.0	3.73	68.30
	지 방 공 무 원	100	4.0	19.0	23.0	41.0	34.0	2.0	36.0	0.0	100.0	3.11	52.75
	관 사	30	0.0	3.3	3.3	36.7	60.0	0.0	60.0	0.0	100.0	3.57	64.17
	검 사	30	0.0	10.0	10.0	36.7	50.0	3.3	53.3	0.0	100.0	3.47	61.67
	법 원 공 무 원	30	0.0	13.3	13.3	36.7	43.3	3.3	46.7	3.3	100.0	3.37	59.18
	로 스 쿨 교 수	69	2.9	33.3	36.2	36.2	24.6	2.9	27.5	0.0	100.0	2.91	47.83
	법 학 과 교 수	70	0.0	28.6	28.6	45.7	25.7	0.0	25.7	0.0	100.0	2.97	49.29
	연 구 원	69	10.1	20.3	30.4	47.8	21.7	0.0	21.7	0.0	100.0	2.81	45.29
	연 보 호 사	110	6.4	20.0	26.4	40.9	32.7	0.0	32.7	0.0	100.0	3.00	50.00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10.7	33.9	44.6	41.3	14.0	0.0	14.0	0.0	100.0	2.59	39.67
	로 스 쿨 과 정 생	60	5.0	21.7	26.7	43.3	30.0	0.0	30.0	0.0	100.0	2.98	49.58
박 사 과 정 생	60	13.3	31.7	45.0	40.0	15.0	0.0	15.0	0.0	100.0	2.57	39.17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3.2	14.0	17.2	39.4	42.1	1.4	43.4	0.0	100.0	3.24	56.11
	타 자 격 증	136	10.3	33.1	43.4	38.2	18.4	0.0	18.4	0.0	100.0	2.65	41.18
	없 음	658	5.0	24.8	29.8	36.5	31.3	2.3	33.6	0.2	100.0	3.01	50.27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7.2	23.6	30.9	37.2	30.4	1.6	32.0	0.0	100.0	2.95	48.87
	6 ~ 10 년	218	6.0	21.6	27.5	37.6	33.0	1.8	34.9	0.0	100.0	3.03	50.80
	11 ~ 15 년	89	1.1	24.7	25.8	37.1	36.0	1.1	37.1	0.0	100.0	3.11	52.81
	16 ~ 20 년	107	0.9	33.6	34.6	29.9	31.8	3.7	35.5	0.0	100.0	3.04	50.93
	21년 이상	128	2.3	18.0	20.3	40.6	37.5	1.6	39.1	0.0	100.0	3.18	54.49
	무 응 답	26	11.5	19.2	30.8	53.8	11.5	0.0	11.5	3.8	100.0	2.69	42.32

【부 록】

표 44.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4.3</b>	<b>23.4</b>	<b>27.8</b>	<b>43.5</b>	<b>27.4</b>	<b>1.3</b>	<b>28.7</b>	<b>0.1</b>	<b>100.0</b>	<b>2.98</b>	<b>49.46</b>	
성별	남 자	726	4.3	23.4	27.7	43.4	27.3	1.5	28.8	0.1	100.0	2.98	49.59
	여 자	286	4.5	23.4	28.0	43.7	27.6	0.7	28.3	0.0	100.0	2.97	49.13
연령별	19 ~ 29세	145	9.0	24.8	33.8	43.4	22.1	0.7	22.8	0.0	100.0	2.81	45.17
	30 대	306	6.5	24.2	30.7	42.8	25.5	1.0	26.5	0.0	100.0	2.90	47.55
	40 대	280	1.8	25.4	27.1	38.6	32.9	1.4	34.3	0.0	100.0	3.07	51.70
	50 대	203	1.0	20.2	21.2	47.3	29.6	2.0	31.5	0.0	100.0	3.11	52.83
	60세 이상	78	5.1	19.2	24.4	53.8	19.2	1.3	20.5	1.3	100.0	2.92	48.07
지역별	수 도 권	586	5.5	25.3	30.7	46.1	22.7	0.3	23.0	0.2	100.0	2.87	46.80
	중 부 권	197	3.6	15.2	18.8	40.1	38.1	3.0	41.1	0.0	100.0	3.22	55.46
	전 라 권	79	2.5	31.6	34.2	36.7	27.8	1.3	29.1	0.0	100.0	2.94	48.42
	경 상 권	127	2.4	22.8	25.2	40.2	31.5	3.1	34.6	0.0	100.0	3.10	52.56
	체 주 권	23	0.0	21.7	21.7	47.8	30.4	0.0	30.4	0.0	100.0	3.09	52.17
분야별	입 법	151	3.3	27.8	31.1	40.4	26.5	2.0	28.5	0.0	100.0	2.96	49.01
	행 정	212	1.4	11.8	13.2	36.8	46.7	3.3	50.0	0.0	100.0	3.39	59.67
	사 법	90	0.0	13.3	13.3	44.4	38.9	2.2	41.1	1.1	100.0	3.30	57.49
	학 계	208	4.8	27.4	32.2	48.1	19.2	0.5	19.7	0.0	100.0	2.83	45.79
	민 간	231	7.4	29.4	36.8	45.9	17.3	0.0	17.3	0.0	100.0	2.73	43.29
	예 비 법 전 문 가	120	7.5	27.5	35.0	45.8	19.2	0.0	19.2	0.0	100.0	2.77	44.17
직업별	국 회 의 원	50	8.0	28.0	36.0	38.0	26.0	0.0	26.0	0.0	100.0	2.82	45.50
	국 회 공 무 원	50	2.0	38.0	40.0	32.0	26.0	2.0	28.0	0.0	100.0	2.88	47.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17.6	17.6	51.0	27.5	3.9	31.4	0.0	100.0	3.18	54.41
	국 가 공 무 원	112	1.8	8.9	10.7	38.4	46.4	4.5	50.9	0.0	100.0	3.43	60.71
	지 방 공 무 원	100	1.0	15.0	16.0	35.0	47.0	2.0	49.0	0.0	100.0	3.34	58.50
	관 사	30	0.0	6.7	6.7	46.7	46.7	0.0	46.7	0.0	100.0	3.40	60.00
	검 사	30	0.0	13.3	13.3	46.7	36.7	3.3	40.0	0.0	100.0	3.30	57.50
	법 원 공 무 원	30	0.0	20.0	20.0	40.0	33.3	3.3	36.7	3.3	100.0	3.20	54.98
	로 스 쿨 교 수	69	4.3	30.4	34.8	43.5	20.3	1.4	21.7	0.0	100.0	2.84	46.01
	법 학 과 교 수	70	1.4	27.1	28.6	51.4	20.0	0.0	20.0	0.0	100.0	2.90	47.50
	연 구 원	69	8.7	24.6	33.3	49.3	17.4	0.0	17.4	0.0	100.0	2.75	43.84
	연 호 사	110	5.5	21.8	27.3	48.2	24.5	0.0	24.5	0.0	100.0	2.92	47.95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9.1	36.4	45.5	43.8	10.7	0.0	10.7	0.0	100.0	2.56	39.05
	로 스 쿨 과 정 생	60	3.3	21.7	25.0	48.3	26.7	0.0	26.7	0.0	100.0	2.98	49.58
박 사 과 정 생	60	11.7	33.3	45.0	43.3	11.7	0.0	11.7	0.0	100.0	2.55	38.75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3.2	17.6	20.8	47.5	30.8	0.9	31.7	0.0	100.0	3.09	52.15
	타 자 격 증	136	8.8	36.0	44.9	42.6	12.5	0.0	12.5	0.0	100.0	2.59	39.71
	없 음	658	4.0	22.8	26.7	42.2	29.2	1.7	30.9	0.2	100.0	3.02	50.46
법 관 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6.5	23.2	29.7	43.2	25.9	1.1	27.0	0.0	100.0	2.92	47.97
	6 ~ 10년	218	3.2	23.9	27.1	40.8	30.3	1.8	32.1	0.0	100.0	3.04	50.92
	11 ~ 15년	89	2.2	22.5	24.7	47.2	27.0	1.1	28.1	0.0	100.0	3.02	50.56
	16 ~ 20년	107	1.9	32.7	34.6	34.6	29.0	1.9	30.8	0.0	100.0	2.96	49.07
	21년 이상	128	0.8	18.0	18.8	51.6	28.9	0.8	29.7	0.0	100.0	3.11	52.73
부 응 답	26	11.5	15.4	26.9	53.8	15.4	0.0	15.4	3.8	100.0	2.77	44.21	

표 45.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1.7</b>	<b>13.5</b>	<b>15.2</b>	<b>31.9</b>	<b>43.1</b>	<b>9.7</b>	<b>52.8</b>	<b>0.1</b>	<b>100.0</b>	<b>3.46</b>	<b>61.40</b>	
성별	남자	726	1.4	14.0	15.4	29.5	44.2	10.7	55.0	0.1	100.0	3.49	62.24
	여자	286	2.4	12.2	14.7	38.1	40.2	7.0	47.2	0.0	100.0	3.37	59.27
연령별	19 ~ 29세	145	4.1	10.3	14.5	26.9	47.6	11.0	58.6	0.0	100.0	3.51	62.76
	30대	306	2.6	12.1	14.7	28.8	46.1	10.5	56.5	0.0	100.0	3.50	62.42
	40대	280	0.4	12.9	13.2	41.1	40.0	5.7	45.7	0.0	100.0	3.38	59.46
	50대	203	1.0	15.8	16.7	29.6	41.9	11.8	53.7	0.0	100.0	3.48	61.95
	60세 이상	78	0.0	21.8	21.8	26.9	37.2	12.8	50.0	1.3	100.0	3.42	60.40
지역별	수도권	586	1.7	13.7	15.4	34.8	42.7	7.0	49.7	0.2	100.0	3.40	59.92
	중부권	197	3.0	12.7	15.7	29.4	39.1	15.7	54.8	0.0	100.0	3.52	62.94
	전라권	79	1.3	13.9	15.2	31.6	46.8	6.3	53.2	0.0	100.0	3.43	60.76
	경상권	127	0.0	14.2	14.2	21.3	49.6	15.0	64.6	0.0	100.0	3.65	66.34
	제주	23	0.0	13.0	13.0	39.1	39.1	8.7	47.8	0.0	100.0	3.43	60.87
분야별	입법	151	2.6	19.9	22.5	42.4	29.1	6.0	35.1	0.0	100.0	3.16	53.97
	행정	212	1.9	14.6	16.5	31.1	49.1	3.3	52.4	0.0	100.0	3.37	59.32
	사법	90	0.0	2.2	2.2	14.4	40.0	42.2	82.2	1.1	100.0	4.23	80.68
	학계	208	1.4	13.0	14.4	36.1	42.3	7.2	49.5	0.0	100.0	3.41	60.22
	민간	231	1.7	16.0	17.7	28.6	45.0	8.7	53.7	0.0	100.0	3.43	60.71
	예비법전문가	120	1.7	8.3	10.0	32.5	50.0	7.5	57.5	0.0	100.0	3.53	63.33
직업별	국회의원	50	6.0	12.0	18.0	42.0	30.0	10.0	40.0	0.0	100.0	3.26	56.50
	국회공무원	50	2.0	18.0	20.0	50.0	26.0	4.0	30.0	0.0	100.0	3.12	53.00
	지방의회 의원	51	0.0	29.4	29.4	35.3	31.4	3.9	35.3	0.0	100.0	3.10	52.45
	국가공무원	112	0.9	14.3	15.2	26.8	53.6	4.5	58.0	0.0	100.0	3.46	61.61
	지방공무원	100	3.0	15.0	18.0	36.0	44.0	2.0	46.0	0.0	100.0	3.27	56.75
	관사	30	0.0	0.0	0.0	6.7	30.0	63.3	93.3	0.0	100.0	4.57	89.17
	검사	30	0.0	0.0	0.0	26.7	56.7	16.7	73.3	0.0	100.0	3.90	72.50
	법원공무원	30	0.0	6.7	6.7	10.0	33.3	46.7	80.0	3.3	100.0	4.22	80.38
	로스쿨교수	69	0.0	7.2	7.2	34.8	47.8	10.1	58.0	0.0	100.0	3.61	65.22
	법학과교수	70	0.0	12.9	12.9	37.1	44.3	5.7	50.0	0.0	100.0	3.43	60.71
	연구원	69	4.3	18.8	23.2	36.2	34.8	5.8	40.6	0.0	100.0	3.19	54.71
	연변호사	110	0.0	3.6	3.6	21.8	61.8	12.7	74.5	0.0	100.0	3.84	70.91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3	27.3	30.6	34.7	29.8	5.0	34.7	0.0	100.0	3.06	51.45
	로스쿨과정생	60	1.7	3.3	5.0	18.3	68.3	8.3	76.7	0.0	100.0	3.78	69.58
	박사과정생	60	1.7	13.3	15.0	46.7	31.7	6.7	38.3	0.0	100.0	3.28	57.08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1.8	1.8	20.4	57.0	20.8	77.8	0.0	100.0	3.97	74.21
	타자격증	136	2.9	25.7	28.7	29.4	33.8	8.1	41.9	0.0	100.0	3.18	54.60
	없음	658	2.0	14.9	16.9	36.2	40.6	6.2	46.8	0.2	100.0	3.34	58.57
법 관련 사 기간	1 ~ 5년	444	3.2	11.9	15.1	29.5	46.8	8.6	55.4	0.0	100.0	3.46	61.43
	6 ~ 10년	218	0.5	17.0	17.4	35.8	37.6	9.2	46.8	0.0	100.0	3.38	59.52
	11 ~ 15년	89	2.2	12.4	14.6	36.0	43.8	5.6	49.4	0.0	100.0	3.38	59.55
	16 ~ 20년	107	0.0	13.1	13.1	39.3	37.4	10.3	47.7	0.0	100.0	3.45	61.21
	21년 이상	128	0.0	12.5	12.5	24.2	45.3	18.0	63.3	0.0	100.0	3.69	67.19
	무응답	26	0.0	23.1	23.1	34.6	34.6	3.8	38.5	3.8	100.0	3.21	55.25

【부 록】

표 46. 기업의 법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17.7</b>	<b>47.2</b>	<b>64.9</b>	<b>28.7</b>	<b>6.1</b>	<b>0.2</b>	<b>6.3</b>	<b>0.1</b>	<b>100.0</b>	<b>2.24</b>	<b>30.96</b>	
성별	남 자	726	17.4	47.5	64.9	28.4	6.3	0.3	6.6	0.1	100.0	2.25	31.14
	여 자	286	18.5	46.5	65.0	29.4	5.6	0.0	5.6	0.0	100.0	2.22	30.51
연령별	19 ~ 29세	145	26.2	40.7	66.9	26.2	6.2	0.7	6.9	0.0	100.0	2.14	28.62
	30 대	306	19.3	43.8	63.1	29.4	7.5	0.0	7.5	0.0	100.0	2.25	31.29
	40 대	280	16.1	53.2	69.3	25.7	5.0	0.0	5.0	0.0	100.0	2.20	29.91
	50 대	203	12.8	52.2	65.0	28.6	6.4	0.0	6.4	0.0	100.0	2.29	32.14
	60세 이상	78	14.1	38.5	52.6	41.0	3.8	1.3	5.1	1.3	100.0	2.39	34.69
지역별	수도권	586	18.3	46.1	64.3	28.8	6.3	0.3	6.7	0.2	100.0	2.24	31.07
	중부권	197	15.2	49.2	64.5	28.9	6.6	0.0	6.6	0.0	100.0	2.27	31.73
	전라권	79	22.8	43.0	65.8	31.6	2.5	0.0	2.5	0.0	100.0	2.14	28.48
	경상권	127	15.0	52.0	66.9	26.8	6.3	0.0	6.3	0.0	100.0	2.24	31.10
	제주	23	21.7	47.8	69.6	21.7	8.7	0.0	8.7	0.0	100.0	2.17	29.35
분야별	입법	151	16.6	55.6	72.2	20.5	6.0	1.3	7.3	0.0	100.0	2.20	29.97
	행정	212	14.2	44.3	58.5	35.4	6.1	0.0	6.1	0.0	100.0	2.33	33.37
	사법	90	3.3	46.7	50.0	37.8	11.1	0.0	11.1	1.1	100.0	2.57	39.23
	학계	208	20.2	45.7	65.9	28.4	5.8	0.0	5.8	0.0	100.0	2.20	29.93
	민간	231	18.6	49.4	68.0	27.3	4.8	0.0	4.8	0.0	100.0	2.18	29.55
	예비법전문가	120	30.0	40.8	70.8	23.3	5.8	0.0	5.8	0.0	100.0	2.05	26.25
직업별	국회의원	50	22.0	54.0	76.0	18.0	4.0	2.0	6.0	0.0	100.0	2.10	27.50
	국회공무원	50	12.0	66.0	78.0	16.0	6.0	0.0	6.0	0.0	100.0	2.16	29.00
	지방의회 의원	51	15.7	47.1	62.7	27.5	7.8	2.0	9.8	0.0	100.0	2.33	33.33
	국가공무원	112	9.8	48.2	58.0	33.9	8.0	0.0	8.0	0.0	100.0	2.40	35.04
	지방공무원	100	19.0	40.0	59.0	37.0	4.0	0.0	4.0	0.0	100.0	2.26	31.50
	관사	30	3.3	53.3	56.7	36.7	6.7	0.0	6.7	0.0	100.0	2.47	36.67
	검사	30	0.0	46.7	46.7	43.3	10.0	0.0	10.0	0.0	100.0	2.63	40.83
	법원공무원	30	6.7	40.0	46.7	33.3	16.7	0.0	16.7	3.3	100.0	2.61	40.20
	로스쿨교수	69	20.3	50.7	71.0	26.1	2.9	0.0	2.9	0.0	100.0	2.12	27.90
	법학과교수	70	14.3	40.0	54.3	38.6	7.1	0.0	7.1	0.0	100.0	2.39	34.64
	연구원	69	26.1	46.4	72.5	20.3	7.2	0.0	7.2	0.0	100.0	2.09	27.17
	연번호사	110	11.8	50.9	62.7	30.0	7.3	0.0	7.3	0.0	100.0	2.33	33.1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4.8	47.9	72.7	24.8	2.5	0.0	2.5	0.0	100.0	2.05	26.24
	로스쿨과정생	60	25.0	45.0	70.0	23.3	6.7	0.0	6.7	0.0	100.0	2.12	27.92
	박사과정생	60	35.0	36.7	71.7	23.3	5.0	0.0	5.0	0.0	100.0	1.98	24.58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9.0	49.3	58.4	34.4	7.2	0.0	7.2	0.0	100.0	2.40	34.95
	타자격증	136	22.8	49.3	72.1	25.7	2.2	0.0	2.2	0.0	100.0	2.07	26.84
	없음	658	19.5	46.2	65.7	27.4	6.5	0.3	6.8	0.2	100.0	2.22	30.48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20.0	44.8	64.9	28.2	6.8	0.2	7.0	0.0	100.0	2.22	30.57
	6 ~ 10년	218	17.4	50.5	67.9	24.8	6.9	0.5	7.3	0.0	100.0	2.22	30.62
	11 ~ 15년	89	12.4	56.2	68.5	24.7	6.7	0.0	6.7	0.0	100.0	2.26	31.46
	16 ~ 20년	107	18.7	50.5	69.2	26.2	4.7	0.0	4.7	0.0	100.0	2.17	29.21
	21년 이상	128	11.7	44.5	56.3	40.6	3.1	0.0	3.1	0.0	100.0	2.35	33.79
부응답	26	23.1	30.8	53.8	34.6	7.7	0.0	7.7	3.8	100.0	2.28	31.96	

표 47. 국민의 법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2.6</b>	<b>27.5</b>	<b>30.0</b>	<b>52.3</b>	<b>17.3</b>	<b>0.3</b>	<b>17.6</b>	<b>0.1</b>	<b>100.0</b>	<b>2.85</b>	<b>46.32</b>	
성별	남자	726	2.9	27.8	30.7	51.7	17.1	0.4	17.5	0.1	100.0	2.84	46.07
	여자	286	1.7	26.6	28.3	53.8	17.8	0.0	17.8	0.0	100.0	2.88	46.94
연령별	19 ~ 29세	145	7.6	27.6	35.2	43.4	21.4	0.0	21.4	0.0	100.0	2.79	44.66
	30대	306	3.3	26.5	29.7	52.0	17.6	0.7	18.3	0.0	100.0	2.86	46.49
	40대	280	0.7	28.6	29.3	53.2	17.1	0.4	17.5	0.0	100.0	2.88	46.96
	50대	203	0.5	26.6	27.1	57.1	15.8	0.0	15.8	0.0	100.0	2.88	47.04
	60세 이상	78	2.6	29.5	32.1	53.8	12.8	0.0	12.8	1.3	100.0	2.78	44.50
지역별	수도권	586	3.1	27.1	30.2	51.7	17.9	0.0	17.9	0.2	100.0	2.85	46.15
	중부권	197	2.0	25.9	27.9	53.3	18.3	0.5	18.8	0.0	100.0	2.89	47.34
	전라권	79	2.5	26.6	29.1	51.9	17.7	1.3	19.0	0.0	100.0	2.89	47.15
	경상권	127	1.6	32.3	33.9	51.2	14.2	0.8	15.0	0.0	100.0	2.80	45.08
	제주	23	0.0	26.1	26.1	65.2	8.7	0.0	8.7	0.0	100.0	2.83	45.65
분야별	입법	151	0.7	27.2	27.8	52.3	19.9	0.0	19.9	0.0	100.0	2.91	47.85
	행정	212	1.9	25.0	26.9	53.8	18.9	0.5	19.3	0.0	100.0	2.91	47.76
	사법	90	0.0	20.0	20.0	60.0	17.8	1.1	18.9	1.1	100.0	3.00	49.96
	학계	208	1.9	28.8	30.8	53.8	15.4	0.0	15.4	0.0	100.0	2.83	45.67
	민간	231	5.2	29.9	35.1	51.1	13.4	0.4	13.9	0.0	100.0	2.74	43.51
직업별	예비전문가	120	4.2	30.8	35.0	43.3	21.7	0.0	21.7	0.0	100.0	2.83	45.63
	국회의원	50	2.0	20.0	22.0	56.0	22.0	0.0	22.0	0.0	100.0	2.98	49.50
	국회공무원	50	0.0	28.0	28.0	50.0	22.0	0.0	22.0	0.0	100.0	2.94	48.50
	지방의회 의원	51	0.0	33.3	33.3	51.0	15.7	0.0	15.7	0.0	100.0	2.82	45.59
	국가공무원	112	0.0	27.7	27.7	50.0	21.4	0.9	22.3	0.0	100.0	2.96	48.88
	지방공무원	100	4.0	22.0	26.0	58.0	16.0	0.0	16.0	0.0	100.0	2.86	46.50
	관사	30	0.0	30.0	30.0	56.7	13.3	0.0	13.3	0.0	100.0	2.83	45.83
	검사	30	0.0	13.3	13.3	66.7	16.7	3.3	20.0	0.0	100.0	3.10	52.50
	법원공무원	30	0.0	16.7	16.7	56.7	23.3	0.0	23.3	3.3	100.0	3.06	51.54
	로스쿨교수	69	0.0	43.5	43.5	43.5	13.0	0.0	13.0	0.0	100.0	2.70	42.39
	법학과교수	70	2.9	17.1	20.0	62.9	17.1	0.0	17.1	0.0	100.0	2.94	48.57
	연구원	69	2.9	26.1	29.0	55.1	15.9	0.0	15.9	0.0	100.0	2.84	46.01
	연변호사	110	5.5	30.9	36.4	48.2	14.5	0.9	15.5	0.0	100.0	2.75	43.64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5.0	28.9	33.9	53.7	12.4	0.0	12.4	0.0	100.0	2.74	43.39
	로스쿨과정생	60	6.7	28.3	35.0	43.3	21.7	0.0	21.7	0.0	100.0	2.80	45.00
박사과정생	60	1.7	33.3	35.0	43.3	21.7	0.0	21.7	0.0	100.0	2.85	46.25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2.7	29.4	32.1	51.1	15.8	0.9	16.7	0.0	100.0	2.83	45.70
	타자격증	136	5.1	27.9	33.1	52.9	14.0	0.0	14.0	0.0	100.0	2.76	43.93
	없음	658	2.0	26.7	28.7	52.4	18.5	0.2	18.7	0.2	100.0	2.88	47.03
법 관 중 사 기 간	1 ~ 5년	444	4.3	25.5	29.7	52.0	17.8	0.5	18.2	0.0	100.0	2.85	46.17
	6 ~ 10년	218	2.3	28.0	30.3	50.0	19.3	0.5	19.7	0.0	100.0	2.88	46.90
	11 ~ 15년	89	1.1	40.4	41.6	40.4	18.0	0.0	18.0	0.0	100.0	2.75	43.82
	16 ~ 20년	107	0.0	29.0	29.0	57.0	14.0	0.0	14.0	0.0	100.0	2.85	46.26
	21년 이상	128	0.0	24.2	24.2	61.7	14.1	0.0	14.1	0.0	100.0	2.90	47.46
무응답	26	3.8	23.1	26.9	50.0	19.2	0.0	19.2	3.8	100.0	2.88	46.97	

【부 록】

표 48. 신체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4</b>	<b>9.2</b>	<b>9.6</b>	<b>30.1</b>	<b>53.4</b>	<b>6.5</b>	<b>59.9</b>	<b>0.4</b>	<b>100.0</b>	<b>3.57</b>	<b>64.16</b>	
성별	남 자	726	0.4	8.3	8.7	28.9	54.8	7.2	62.0	0.4	100.0	3.60	65.07
	여 자	286	0.3	11.5	11.9	33.2	49.7	4.9	54.5	0.3	100.0	3.47	61.85
연령별	19 ~ 29세	145	1.4	6.9	8.3	32.4	51.7	7.6	59.3	0.0	100.0	3.57	64.31
	30 대	306	0.7	7.8	8.5	32.0	53.3	6.2	59.5	0.0	100.0	3.57	64.13
	40 대	280	0.0	11.4	11.4	28.2	56.1	3.9	60.0	0.4	100.0	3.53	63.18
	50 대	203	0.0	8.4	8.4	29.6	52.7	8.9	61.6	0.5	100.0	3.62	65.59
	60세 이상	78	0.0	12.8	12.8	26.9	48.7	9.0	57.7	2.6	100.0	3.55	63.82
지역별	수도권	586	0.3	9.2	9.6	32.3	51.7	5.8	57.5	0.7	100.0	3.54	63.45
	중부권	197	0.5	8.6	9.1	22.3	59.9	8.6	68.5	0.0	100.0	3.68	66.88
	전라권	79	0.0	13.9	13.9	25.3	55.7	5.1	60.8	0.0	100.0	3.52	62.97
	경상권	127	0.0	7.9	7.9	31.5	52.8	7.9	60.6	0.0	100.0	3.61	65.16
	제주권	23	4.3	4.3	8.7	52.2	34.8	4.3	39.1	0.0	100.0	3.30	57.61
분야별	입법	151	0.0	17.2	17.2	29.8	45.7	6.6	52.3	0.7	100.0	3.42	60.52
	행정	212	0.9	6.6	7.5	25.9	60.4	6.1	66.5	0.0	100.0	3.64	66.04
	사법	90	0.0	1.1	1.1	22.2	62.2	13.3	75.6	1.1	100.0	3.88	72.10
	학계	208	0.5	9.6	10.1	31.7	49.5	7.7	57.2	1.0	100.0	3.55	63.72
	민간	231	0.0	8.7	8.7	33.8	53.2	4.3	57.6	0.0	100.0	3.53	63.31
	예비법전문가	120	0.8	10.0	10.8	34.2	50.8	4.2	55.0	0.0	100.0	3.48	61.88
직업별	국회의원	50	0.0	14.0	14.0	32.0	48.0	6.0	54.0	0.0	100.0	3.46	61.50
	국회공무원	50	0.0	20.0	20.0	24.0	48.0	6.0	54.0	2.0	100.0	3.41	60.28
	지방의회 의원	51	0.0	17.6	17.6	33.3	41.2	7.8	49.0	0.0	100.0	3.39	59.80
	국가공무원	112	0.0	8.0	8.0	17.9	64.3	9.8	74.1	0.0	100.0	3.76	68.97
	지방공무원	100	2.0	5.0	7.0	35.0	56.0	2.0	58.0	0.0	100.0	3.51	62.75
	관사	30	0.0	0.0	0.0	20.0	70.0	10.0	80.0	0.0	100.0	3.90	72.50
	검사	30	0.0	0.0	0.0	23.3	56.7	20.0	76.7	0.0	100.0	3.97	74.17
	법원공무원	30	0.0	3.3	3.3	23.3	60.0	10.0	70.0	3.3	100.0	3.79	69.64
	로스쿨교수	69	0.0	8.7	8.7	24.6	59.4	7.2	66.7	0.0	100.0	3.65	66.30
	법학과교수	70	0.0	8.6	8.6	32.9	47.1	8.6	55.7	2.9	100.0	3.57	64.33
	연구원	69	1.4	11.6	13.0	37.7	42.0	7.2	49.3	0.0	100.0	3.42	60.51
	변호사	110	0.0	2.7	2.7	23.6	67.3	6.4	73.6	0.0	100.0	3.77	69.32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4.0	14.0	43.0	40.5	2.5	43.0	0.0	100.0	3.31	57.85
	로스쿨과정생	60	1.7	1.7	3.3	33.3	55.0	8.3	63.3	0.0	100.0	3.67	66.67
	박사과정생	60	0.0	18.3	18.3	35.0	46.7	0.0	46.7	0.0	100.0	3.28	57.08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5	3.6	4.1	21.3	64.3	10.0	74.2	0.5	100.0	3.80	69.97
	타자격증	136	0.0	13.2	13.2	39.7	42.6	4.4	47.1	0.0	100.0	3.38	59.56
	없음	658	0.5	10.3	10.8	31.0	52.0	5.8	57.8	0.5	100.0	3.53	63.13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0.9	7.4	8.3	32.9	52.7	6.1	58.8	0.0	100.0	3.56	63.91
	6 ~ 10년	218	0.0	11.5	11.5	28.9	54.1	5.0	59.2	0.5	100.0	3.53	63.25
	11 ~ 15년	89	0.0	9.0	9.0	25.8	62.9	2.2	65.2	0.0	100.0	3.58	64.61
	16 ~ 20년	107	0.0	11.2	11.2	29.0	46.7	13.1	59.8	0.0	100.0	3.62	65.42
	21년 이상	128	0.0	7.8	7.8	25.0	57.8	8.6	66.4	0.8	100.0	3.68	66.91
부 응 답	26	0.0	19.2	19.2	38.5	30.8	3.8	34.6	7.7	100.0	3.24	55.90	

표 49.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6</b>	<b>12.8</b>	<b>13.4</b>	<b>34.5</b>	<b>45.9</b>	<b>5.8</b>	<b>51.8</b>	<b>0.3</b>	<b>100.0</b>	<b>3.44</b>	<b>60.93</b>	
성별	남 자	726	0.8	12.1	12.9	33.6	46.8	6.3	53.2	0.3	100.0	3.46	61.46
	여 자	286	0.0	14.7	14.7	36.7	43.7	4.5	48.3	0.3	100.0	3.38	59.57
연령별	19 ~ 29 세	145	1.4	13.8	15.2	39.3	40.0	5.5	45.5	0.0	100.0	3.34	58.62
	30 대	306	1.0	11.8	12.7	34.0	48.4	4.9	53.3	0.0	100.0	3.44	61.11
	40 대	280	0.4	12.9	13.2	33.9	47.5	5.0	52.5	0.4	100.0	3.44	61.02
	50 대	203	0.0	13.3	13.3	33.5	44.8	7.9	52.7	0.5	100.0	3.48	61.88
	60 세 이상	78	0.0	14.1	14.1	32.1	44.9	7.7	52.6	1.3	100.0	3.47	61.68
지역별	수 도 권	586	0.7	14.8	15.5	36.2	42.8	4.9	47.8	0.5	100.0	3.37	59.19
	중 부 권	197	1.0	8.6	9.6	28.4	54.3	7.6	61.9	0.0	100.0	3.59	64.72
	전 라 권	79	0.0	10.1	10.1	38.0	46.8	5.1	51.9	0.0	100.0	3.47	61.71
	경 상 권	127	0.0	12.6	12.6	31.5	48.0	7.9	55.9	0.0	100.0	3.51	62.80
분야별	제 주 권	23	0.0	8.7	8.7	47.8	39.1	4.3	43.5	0.0	100.0	3.39	59.78
	입 법	151	0.7	21.2	21.9	36.4	35.1	6.0	41.1	0.7	100.0	3.25	56.20
	행 정	212	0.9	7.5	8.5	27.8	56.6	7.1	63.7	0.0	100.0	3.61	65.33
	사 법	90	0.0	2.2	2.2	30.0	54.4	12.2	66.7	1.1	100.0	3.77	69.29
	학 계	208	0.5	13.0	13.5	33.2	45.7	7.2	52.9	0.5	100.0	3.46	61.59
	민 간	231	0.0	15.6	15.6	39.0	42.0	3.5	45.5	0.0	100.0	3.33	58.33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1.7	14.2	15.8	40.8	42.5	0.8	43.3	0.0	100.0	3.27	56.67
	국 회 의 원	50	0.0	20.0	20.0	30.0	40.0	10.0	50.0	0.0	100.0	3.40	60.00
	국 회 공 무 원	50	2.0	20.0	22.0	42.0	30.0	4.0	34.0	2.0	100.0	3.15	53.72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23.5	23.5	37.3	35.3	3.9	39.2	0.0	100.0	3.20	54.90
	국 가 공 무 원	112	0.9	4.5	5.4	22.3	59.8	12.5	72.3	0.0	100.0	3.79	69.64
	지 방 공 무 원	100	1.0	11.0	12.0	34.0	53.0	1.0	54.0	0.0	100.0	3.42	60.50
	관 사	30	0.0	0.0	0.0	30.0	60.0	10.0	70.0	0.0	100.0	3.80	70.00
	검 사	30	0.0	0.0	0.0	26.7	53.3	20.0	73.3	0.0	100.0	3.93	73.33
	법 원 공 무 원	30	0.0	6.7	6.7	33.3	50.0	6.7	56.7	3.3	100.0	3.58	64.53
	로 스쿨 교 수	69	0.0	8.7	8.7	36.2	44.9	10.1	55.1	0.0	100.0	3.57	64.13
	법 학 과 교 수	70	0.0	12.9	12.9	34.3	44.3	7.1	51.4	1.4	100.0	3.46	61.58
	연 구 원	69	1.4	17.4	18.8	29.0	47.8	4.3	52.2	0.0	100.0	3.36	59.06
	연 보 호 사	110	0.0	11.8	11.8	27.3	55.5	5.5	60.9	0.0	100.0	3.55	63.64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9.0	19.0	49.6	29.8	1.7	31.4	0.0	100.0	3.14	53.51
	로 스쿨 과정 생	60	3.3	8.3	11.7	41.7	45.0	1.7	46.7	0.0	100.0	3.33	58.33
박 사 과 정 생	60	0.0	20.0	20.0	40.0	40.0	0.0	40.0	0.0	100.0	3.20	55.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0	7.2	7.2	30.3	53.4	8.6	62.0	0.5	100.0	3.64	65.89
	타 자 격 증	136	0.0	18.4	18.4	45.6	33.1	2.9	36.0	0.0	100.0	3.21	55.15
	없 음	658	0.9	13.5	14.4	33.6	46.2	5.5	51.7	0.3	100.0	3.42	60.48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1.1	13.3	14.4	38.1	43.5	4.1	47.5	0.0	100.0	3.36	59.01
	6 ~ 10 년	218	0.5	14.7	15.1	31.2	47.2	6.0	53.2	0.5	100.0	3.44	60.94
	11 ~ 15 년	89	0.0	6.7	6.7	34.8	52.8	5.6	58.4	0.0	100.0	3.57	64.33
	16 ~ 20 년	107	0.0	13.1	13.1	26.2	48.6	12.1	60.7	0.0	100.0	3.60	64.95
	21년 이상	128	0.0	10.2	10.2	33.6	48.4	7.0	55.5	0.8	100.0	3.53	63.17
무 응 답	26	0.0	23.1	23.1	38.5	30.8	3.8	34.6	3.8	100.0	3.17	54.27	



【부 록】

표 50.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7</b>	<b>7.7</b>	<b>8.4</b>	<b>25.2</b>	<b>53.2</b>	<b>12.7</b>	<b>65.9</b>	<b>0.5</b>	<b>100.0</b>	<b>3.70</b>	<b>67.48</b>	
성별	남 자	726	0.6	7.7	8.3	24.0	53.9	13.4	67.2	0.6	100.0	3.72	68.04
	여 자	286	1.0	7.7	8.7	28.3	51.4	11.2	62.6	0.3	100.0	3.64	66.06
연령별	19 ~ 29 세	145	2.1	7.6	9.7	26.2	51.7	12.4	64.1	0.0	100.0	3.65	66.21
	30 대	306	0.7	5.6	6.2	28.4	52.3	13.1	65.4	0.0	100.0	3.72	67.89
	40 대	280	0.7	10.7	11.4	24.6	53.9	9.6	63.6	0.4	100.0	3.61	65.33
	50 대	203	0.0	7.4	7.4	20.7	54.7	15.8	70.4	1.5	100.0	3.80	69.96
	60 세 이상	78	0.0	6.4	6.4	24.4	52.6	15.4	67.9	1.3	100.0	3.78	69.45
지역별	수도권	586	1.0	8.0	9.0	25.8	52.7	11.6	64.3	0.9	100.0	3.66	66.62
	중부권	197	0.5	7.6	8.1	17.3	58.4	16.2	74.6	0.0	100.0	3.82	70.56
	전라권	79	0.0	8.9	8.9	31.6	51.9	7.6	59.5	0.0	100.0	3.58	64.56
	경상권	127	0.0	6.3	6.3	27.6	49.6	16.5	66.1	0.0	100.0	3.76	69.09
분야별	제주	23	0.0	4.3	4.3	43.5	43.5	8.7	52.2	0.0	100.0	3.57	64.13
	입법	151	1.3	11.3	12.6	28.5	45.7	11.9	57.6	1.3	100.0	3.57	64.14
	행정	212	0.5	7.1	7.5	17.0	59.9	15.6	75.5	0.0	100.0	3.83	70.75
	사법	90	0.0	1.1	1.1	28.9	50.0	18.9	68.9	1.1	100.0	3.87	71.86
	학계	208	1.0	7.7	8.7	24.5	54.3	12.0	66.3	0.5	100.0	3.69	67.27
	민간	231	0.0	8.2	8.2	25.5	55.0	10.8	65.8	0.4	100.0	3.69	67.18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7	8.3	10.0	33.3	47.5	9.2	56.7	0.0	100.0	3.54	63.54
	국회의원	50	4.0	10.0	14.0	18.0	54.0	14.0	68.0	0.0	100.0	3.64	66.00
	국회공무원	50	0.0	10.0	10.0	38.0	44.0	6.0	50.0	2.0	100.0	3.47	61.85
	지방의회 의원	51	0.0	13.7	13.7	29.4	39.2	15.7	54.9	2.0	100.0	3.58	64.56
	국가공무원	112	0.0	7.1	7.1	11.6	58.9	22.3	81.3	0.0	100.0	3.96	74.11
	지방공무원	100	1.0	7.0	8.0	23.0	61.0	8.0	69.0	0.0	100.0	3.68	67.00
	관사	30	0.0	0.0	0.0	26.7	56.7	16.7	73.3	0.0	100.0	3.90	72.50
	검사	30	0.0	0.0	0.0	26.7	43.3	30.0	73.3	0.0	100.0	4.03	75.83
	법원공무원	30	0.0	3.3	3.3	33.3	50.0	10.0	60.0	3.3	100.0	3.69	67.25
	로스쿨교수	69	0.0	10.1	10.1	21.7	55.1	13.0	68.1	0.0	100.0	3.71	67.75
	법학과교수	70	0.0	4.3	4.3	27.1	58.6	8.6	67.1	1.4	100.0	3.72	68.11
	연구원	69	2.9	8.7	11.6	24.6	49.3	14.5	63.8	0.0	100.0	3.64	65.94
	변호사	110	0.0	3.6	3.6	21.8	58.2	16.4	74.5	0.0	100.0	3.87	71.82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12.4	12.4	28.9	52.1	5.8	57.9	0.8	100.0	3.52	62.95
	로스쿨과정생	60	1.7	6.7	8.3	31.7	48.3	11.7	60.0	0.0	100.0	3.62	65.42
박사과정생	60	1.7	10.0	11.7	35.0	46.7	6.7	53.3	0.0	100.0	3.47	61.6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3.2	3.2	23.5	55.7	17.2	72.9	0.5	100.0	3.87	71.80
	타자격증	136	0.0	11.8	11.8	29.4	50.0	8.1	58.1	0.7	100.0	3.55	63.73
	없음	658	1.1	8.4	9.4	25.1	52.9	12.2	65.0	0.5	100.0	3.67	66.76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0.9	6.8	7.7	26.8	52.7	12.6	65.3	0.2	100.0	3.70	67.38
	6 ~ 10 년	218	0.5	9.2	9.6	26.6	50.9	12.4	63.3	0.5	100.0	3.66	66.48
	11 ~ 15 년	89	1.1	11.2	12.4	21.3	58.4	7.9	66.3	0.0	100.0	3.61	65.17
	16 ~ 20 년	107	0.9	7.5	8.4	20.6	52.3	18.7	71.0	0.0	100.0	3.80	70.09
	21년 이상	128	0.0	6.3	6.3	21.9	58.6	12.5	71.1	0.8	100.0	3.78	69.47
부 응 답	26	0.0	7.7	7.7	34.6	38.5	11.5	50.0	7.7	100.0	3.59	64.81	

표 51. 참정권 보장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0.7</b>	<b>4.6</b>	<b>5.3</b>	<b>22.4</b>	<b>56.6</b>	<b>15.3</b>	<b>71.9</b>	<b>0.3</b>	<b>100.0</b>	<b>3.81</b>	<b>70.37</b>	
성별	남 자	726	0.8	4.7	5.5	21.9	56.2	16.1	72.3	0.3	100.0	3.82	70.58
	여 자	286	0.3	4.5	4.9	23.8	57.7	13.3	71.0	0.3	100.0	3.79	69.83
연령별	19 ~ 29 세	145	2.1	2.8	4.8	20.7	57.9	16.6	74.5	0.0	100.0	3.84	71.03
	30 대	306	0.7	5.6	6.2	21.2	59.5	13.1	72.5	0.0	100.0	3.79	69.69
	40 대	280	0.4	3.6	3.9	24.6	60.0	11.1	71.1	0.4	100.0	3.78	69.54
	50 대	203	0.5	5.9	6.4	23.2	49.3	20.7	70.0	0.5	100.0	3.84	71.04
	60 세 이상	78	0.0	5.1	5.1	20.5	50.0	23.1	73.1	1.3	100.0	3.92	73.02
지역별	수 도 권	586	0.9	5.5	6.3	23.4	56.7	13.1	69.8	0.5	100.0	3.76	69.05
	중 부 권	197	1.0	4.6	5.6	14.7	59.9	19.8	79.7	0.0	100.0	3.93	73.22
	전 라 권	79	0.0	5.1	5.1	30.4	48.1	16.5	64.6	0.0	100.0	3.76	68.99
	경 상 권	127	0.0	0.8	0.8	22.8	57.5	18.9	76.4	0.0	100.0	3.94	73.62
	체 주 권	23	0.0	4.3	4.3	34.8	52.2	8.7	60.9	0.0	100.0	3.65	66.30
분야별	입 법	151	2.6	6.0	8.6	25.2	49.0	16.6	65.6	0.7	100.0	3.71	67.85
	행 정	212	0.9	2.8	3.8	16.0	61.3	18.9	80.2	0.0	100.0	3.94	73.58
	사 법	90	0.0	2.2	2.2	18.9	54.4	23.3	77.8	1.1	100.0	4.00	74.95
	학 계	208	0.0	7.7	7.7	25.0	51.9	14.9	66.8	0.5	100.0	3.74	68.61
	민 간	231	0.0	3.5	3.5	24.2	60.2	12.1	72.3	0.0	100.0	3.81	70.24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0.8	5.0	5.8	25.0	60.8	8.3	69.2	0.0	100.0	3.71	67.71
	국 회 의 원	50	4.0	2.0	6.0	22.0	50.0	22.0	72.0	0.0	100.0	3.84	71.00
	국 회 공 무 원	50	2.0	10.0	12.0	20.0	56.0	10.0	66.0	2.0	100.0	3.64	65.91
	지 방 의 회 의 원	51	2.0	5.9	7.8	33.3	41.2	17.6	58.8	0.0	100.0	3.67	66.67
	국 가 공 무 원	112	0.9	3.6	4.5	11.6	57.1	26.8	83.9	0.0	100.0	4.05	76.34
	지 방 공 무 원	100	1.0	2.0	3.0	21.0	66.0	10.0	76.0	0.0	100.0	3.82	70.50
	관 사	30	0.0	0.0	0.0	13.3	66.7	20.0	86.7	0.0	100.0	4.07	76.67
	검 사	30	0.0	0.0	0.0	26.7	46.7	26.7	73.3	0.0	100.0	4.00	75.00
	법 원 공 무 원	30	0.0	6.7	6.7	16.7	50.0	23.3	73.3	3.3	100.0	3.93	73.18
	로 스 쿨 교 수	69	0.0	7.2	7.2	23.2	53.6	15.9	69.6	0.0	100.0	3.78	69.57
	법 학 과 교 수	70	0.0	5.7	5.7	28.6	45.7	18.6	64.3	1.4	100.0	3.78	69.58
	연 구 원	69	0.0	10.1	10.1	23.2	56.5	10.1	66.7	0.0	100.0	3.67	66.67
	변 호 사	110	0.0	1.8	1.8	17.3	65.5	15.5	80.9	0.0	100.0	3.95	73.64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0	5.0	5.0	30.6	55.4	9.1	64.5	0.0	100.0	3.69	67.15
	로 스 쿨 과 정 생	60	1.7	3.3	5.0	25.0	56.7	13.3	70.0	0.0	100.0	3.77	69.17
박 사 과 정 생	60	0.0	6.7	6.7	25.0	65.0	3.3	68.3	0.0	100.0	3.65	66.25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0	1.4	1.4	18.6	62.0	17.6	79.6	0.5	100.0	3.96	74.07
	타 자 격 증	136	0.0	4.4	4.4	30.1	54.4	11.0	65.4	0.0	100.0	3.72	68.01
	없 음	658	1.1	5.8	6.8	22.3	55.2	15.3	70.5	0.3	100.0	3.78	69.55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1.1	4.7	5.9	22.1	57.9	14.2	72.1	0.0	100.0	3.79	69.82
	6 ~ 10 년	218	0.5	4.6	5.0	23.9	56.9	13.8	70.6	0.5	100.0	3.79	69.82
	11 ~ 15 년	89	0.0	4.5	4.5	22.5	59.6	13.5	73.0	0.0	100.0	3.82	70.51
	16 ~ 20 년	107	0.0	6.5	6.5	22.4	47.7	23.4	71.0	0.0	100.0	3.88	71.96
	21년 이상	128	0.0	2.3	2.3	21.1	58.6	17.2	75.8	0.8	100.0	3.91	72.82
	무 응 답	26	3.8	7.7	11.5	23.1	50.0	11.5	61.5	3.8	100.0	3.61	65.21

【부 록】

표 5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2.6</b>	<b>17.6</b>	<b>20.2</b>	<b>34.1</b>	<b>37.2</b>	<b>8.3</b>	<b>45.5</b>	<b>0.3</b>	<b>100.0</b>	<b>3.31</b>	<b>57.78</b>	
성별	남 자	726	2.2	16.3	18.5	34.2	38.7	8.4	47.1	0.3	100.0	3.35	58.73
	여 자	286	3.5	21.0	24.5	33.9	33.2	8.0	41.3	0.3	100.0	3.21	55.36
연령별	19 ~ 29 세	145	4.8	22.8	27.6	35.2	31.0	6.2	37.2	0.0	100.0	3.11	52.76
	30 대	306	2.6	20.6	23.2	34.0	35.0	7.8	42.8	0.0	100.0	3.25	56.21
	40 대	280	1.4	17.1	18.6	36.4	37.5	7.1	44.6	0.4	100.0	3.32	57.97
	50 대	203	3.0	12.3	15.3	29.1	44.3	10.8	55.2	0.5	100.0	3.48	61.98
	60 세 이상	78	1.3	11.5	12.8	37.2	37.2	11.5	48.7	1.3	100.0	3.47	61.64
지역별	수 도 권	586	3.2	18.6	21.8	34.8	35.2	7.7	42.8	0.5	100.0	3.26	56.40
	중 부 권	197	2.5	14.7	17.3	30.5	43.1	9.1	52.3	0.0	100.0	3.42	60.41
	전 라 권	79	2.5	21.5	24.1	30.4	39.2	6.3	45.6	0.0	100.0	3.25	56.33
	경 상 권	127	0.0	15.0	15.0	33.9	39.4	11.8	51.2	0.0	100.0	3.48	62.01
	체 주 권	23	0.0	17.4	17.4	60.9	17.4	4.3	21.7	0.0	100.0	3.09	52.17
분야별	입 법	151	3.3	20.5	23.8	31.8	35.1	8.6	43.7	0.7	100.0	3.25	56.34
	행 정	212	0.5	13.7	14.2	30.2	47.2	8.5	55.7	0.0	100.0	3.50	62.38
	사 법	90	0.0	5.6	5.6	37.8	41.1	14.4	55.6	1.1	100.0	3.65	66.20
	학 계	208	3.4	15.9	19.2	33.2	38.0	9.1	47.1	0.5	100.0	3.34	58.45
	민 간	231	3.5	19.9	23.4	35.9	34.2	6.5	40.7	0.0	100.0	3.20	55.09
	예 비 법 전 문 가	120	4.2	28.3	32.5	39.2	23.3	5.0	28.3	0.0	100.0	2.97	49.17
직업별	국 회 의 원	50	6.0	22.0	28.0	20.0	34.0	18.0	52.0	0.0	100.0	3.36	59.00
	국 회 공 무 원	50	2.0	24.0	26.0	38.0	32.0	2.0	34.0	2.0	100.0	3.09	52.16
	지 방 의 회 의 원	51	2.0	15.7	17.6	37.3	39.2	5.9	45.1	0.0	100.0	3.31	57.84
	국 가 공 무 원	112	0.0	14.3	14.3	25.0	48.2	12.5	60.7	0.0	100.0	3.59	64.73
	지 방 공 무 원	100	1.0	13.0	14.0	36.0	46.0	4.0	50.0	0.0	100.0	3.39	59.75
	관 사	30	0.0	3.3	3.3	36.7	46.7	13.3	60.0	0.0	100.0	3.70	67.50
	검 사	30	0.0	6.7	6.7	36.7	30.0	26.7	56.7	0.0	100.0	3.77	69.17
	법 원 공 무 원	30	0.0	6.7	6.7	40.0	46.7	3.3	50.0	3.3	100.0	3.48	61.93
	로 스 쿨 교 수	69	1.4	11.6	13.0	33.3	39.1	14.5	53.6	0.0	100.0	3.54	63.41
	법 학 과 교 수	70	1.4	12.9	14.3	40.0	35.7	8.6	44.3	1.4	100.0	3.38	59.40
	연 구 원	69	7.2	23.2	30.4	26.1	39.1	4.3	43.5	0.0	100.0	3.10	52.54
	연 호	110	2.7	10.0	12.7	35.5	41.8	10.0	51.8	0.0	100.0	3.46	61.59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4.1	28.9	33.1	36.4	27.3	3.3	30.6	0.0	100.0	2.97	49.17
	로 스 쿨 과 정 생	60	1.7	28.3	30.0	40.0	23.3	6.7	30.0	0.0	100.0	3.05	51.25
박 사 과 정 생	60	6.7	28.3	35.0	38.3	23.3	3.3	26.7	0.0	100.0	2.88	47.08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1.4	10.4	11.8	33.5	42.1	12.2	54.3	0.5	100.0	3.54	63.38
	타 자 격 증	136	3.7	26.5	30.1	36.8	28.7	4.4	33.1	0.0	100.0	3.04	50.92
	없 음	658	2.7	18.2	21.0	33.7	37.2	7.8	45.0	0.3	100.0	3.29	57.28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3.2	20.0	23.2	34.2	35.1	7.4	42.6	0.0	100.0	3.24	55.91
	6 ~ 10 년	218	1.4	17.9	19.3	36.2	35.8	8.3	44.0	0.5	100.0	3.32	57.95
	11 ~ 15 년	89	2.2	18.0	20.2	33.7	40.4	5.6	46.1	0.0	100.0	3.29	57.30
	16 ~ 20 년	107	2.8	15.9	18.7	33.6	31.8	15.9	47.7	0.0	100.0	3.42	60.51
	21 년 이상	128	1.6	9.4	10.9	28.9	50.8	8.6	59.4	0.8	100.0	3.56	63.93
부 응 답	26	7.7	19.2	26.9	42.3	26.9	0.0	26.9	3.8	100.0	2.94	48.38	

표 53.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12	0.9	7.5	8.4	30.4	51.8	9.1	60.9	0.3	100.0	3.61	65.21	
성별	남자	726	1.0	6.9	7.9	30.0	52.1	9.8	61.8	0.3	100.0	3.63	65.74
	여자	286	0.7	9.1	9.8	31.5	51.0	7.3	58.4	0.3	100.0	3.55	63.86
연령별	19 ~ 29세	145	2.1	7.6	9.7	36.6	43.4	10.3	53.8	0.0	100.0	3.52	63.10
	30대	306	1.0	6.9	7.8	30.7	54.9	6.5	61.4	0.0	100.0	3.59	64.79
	40대	280	0.4	8.2	8.6	30.7	52.5	7.9	60.4	0.4	100.0	3.60	64.88
	50대	203	1.0	6.4	7.4	26.1	52.7	13.3	66.0	0.5	100.0	3.71	67.81
	60세 이상	78	0.0	10.3	10.3	28.2	50.0	10.3	60.3	1.3	100.0	3.61	65.26
지역별	수도권	586	1.0	7.7	8.7	32.8	49.5	8.5	58.0	0.5	100.0	3.57	64.28
	중부권	197	1.5	5.1	6.6	24.4	58.9	10.2	69.0	0.0	100.0	3.71	67.77
	전라권	79	0.0	13.9	13.9	34.2	45.6	6.3	51.9	0.0	100.0	3.44	61.08
	경상권	127	0.0	7.9	7.9	25.2	54.3	12.6	66.9	0.0	100.0	3.72	67.91
	제주	23	0.0	0.0	0.0	39.1	56.5	4.3	60.9	0.0	100.0	3.65	66.30
분야별	입법	151	2.6	9.9	12.6	35.8	40.4	10.6	51.0	0.7	100.0	3.47	61.69
	행정	212	0.9	6.1	7.1	24.1	58.5	10.4	68.9	0.0	100.0	3.71	67.81
	사법	90	0.0	2.2	2.2	27.8	57.8	11.1	68.9	1.1	100.0	3.78	69.61
	학계	208	0.5	7.2	7.7	29.3	53.4	9.1	62.5	0.5	100.0	3.64	65.94
	민간	231	0.4	7.8	8.2	32.0	53.2	6.5	59.7	0.0	100.0	3.58	64.39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0.8	10.8	11.7	35.8	44.2	8.3	52.5	0.0	100.0	3.48	62.08
	국회의원	50	4.0	8.0	12.0	32.0	38.0	18.0	56.0	0.0	100.0	3.58	64.50
	국회공무원	50	0.0	12.0	12.0	34.0	46.0	6.0	52.0	2.0	100.0	3.47	61.80
	지방의회 의원	51	3.9	9.8	13.7	41.2	37.3	7.8	45.1	0.0	100.0	3.35	58.82
	국가공무원	112	0.9	3.6	4.5	25.0	56.3	14.3	70.5	0.0	100.0	3.79	69.87
	지방공무원	100	1.0	9.0	10.0	23.0	61.0	6.0	67.0	0.0	100.0	3.62	65.50
	관사	30	0.0	3.3	3.3	23.3	60.0	13.3	73.3	0.0	100.0	3.83	70.83
	검사	30	0.0	0.0	0.0	26.7	56.7	16.7	73.3	0.0	100.0	3.90	72.50
	법원공무원	30	0.0	3.3	3.3	33.3	56.7	3.3	60.0	3.3	100.0	3.62	65.51
	로스쿨교수	69	0.0	11.6	11.6	15.9	59.4	13.0	72.5	0.0	100.0	3.74	68.48
	법학과교수	70	0.0	5.7	5.7	38.6	45.7	8.6	54.3	1.4	100.0	3.58	64.50
	연구원	69	1.4	4.3	5.8	33.3	55.1	5.8	60.9	0.0	100.0	3.59	64.86
	연변호사	110	0.0	2.7	2.7	29.1	58.2	10.0	68.2	0.0	100.0	3.75	68.86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12.4	13.2	34.7	48.8	3.3	52.1	0.0	100.0	3.41	60.33
	로스쿨과정생	60	1.7	10.0	11.7	30.0	43.3	15.0	58.3	0.0	100.0	3.60	65.00
박사과정생	60	0.0	11.7	11.7	41.7	45.0	1.7	46.7	0.0	100.0	3.37	59.17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0	3.2	3.2	26.2	59.3	10.9	70.1	0.5	100.0	3.78	69.53
	타자격증	136	0.7	10.3	11.0	37.5	47.8	3.7	51.5	0.0	100.0	3.43	60.85
	없음	658	1.2	8.4	9.6	30.4	50.2	9.6	59.7	0.3	100.0	3.59	64.67
법 관 련 사 기 간	1 ~ 5년	444	1.6	6.8	8.3	34.9	48.9	7.9	56.8	0.0	100.0	3.55	63.68
	6 ~ 10년	218	0.0	8.3	8.3	29.4	51.4	10.6	61.9	0.5	100.0	3.64	66.12
	11 ~ 15년	89	1.1	9.0	10.1	25.8	59.6	4.5	64.0	0.0	100.0	3.57	64.33
	16 ~ 20년	107	0.0	6.5	6.5	25.2	55.1	13.1	68.2	0.0	100.0	3.75	68.69
	21년 이상	128	0.0	6.3	6.3	23.4	57.0	12.5	69.5	0.8	100.0	3.76	69.06
무응답	26	3.8	19.2	23.1	34.6	38.5	0.0	38.5	3.8	100.0	3.14	53.47	

【부 록】

표 54.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1.9</b>	<b>23.7</b>	<b>25.6</b>	<b>36.0</b>	<b>31.8</b>	<b>6.3</b>	<b>38.1</b>	<b>0.3</b>	<b>100.0</b>	<b>3.17</b>	<b>54.26</b>	
성별	남 자	726	1.5	24.0	25.5	35.3	32.9	6.1	39.0	0.3	100.0	3.18	54.52
	여 자	286	2.8	23.1	25.9	37.8	29.0	7.0	36.0	0.3	100.0	3.14	53.60
연령별	19 ~ 29 세	145	4.1	29.0	33.1	35.9	27.6	3.4	31.0	0.0	100.0	2.97	49.31
	30 대	306	2.0	28.1	30.1	34.6	29.4	5.9	35.3	0.0	100.0	3.09	52.29
	40 대	280	2.1	22.9	25.0	36.1	31.8	6.8	38.6	0.4	100.0	3.18	54.57
	50 대	203	0.5	15.8	16.3	40.9	34.5	7.9	42.4	0.5	100.0	3.34	58.40
	60 세 이상	78	0.0	20.5	20.5	28.2	42.3	7.7	50.0	1.3	100.0	3.37	59.35
지역별	수 도 권	586	2.2	24.4	26.6	36.5	29.9	6.5	36.3	0.5	100.0	3.14	53.52
	중 부 권	197	2.0	21.3	23.4	36.0	34.0	6.6	40.6	0.0	100.0	3.22	55.46
	전 라 권	79	2.5	21.5	24.1	38.0	29.1	8.9	38.0	0.0	100.0	3.20	55.06
	경 상 권	127	0.0	25.2	25.2	30.7	40.2	3.9	44.1	0.0	100.0	3.23	55.71
	체 주 권	23	0.0	26.1	26.1	43.5	26.1	4.3	30.4	0.0	100.0	3.09	52.17
분야별	입 법	151	1.3	33.1	34.4	28.5	29.8	6.6	36.4	0.7	100.0	3.07	51.85
	행 정	212	1.4	23.1	24.5	36.8	33.0	5.7	38.7	0.0	100.0	3.18	54.60
	사 법	90	0.0	10.0	10.0	28.9	52.2	7.8	60.0	1.1	100.0	3.58	64.49
	학 계	208	3.8	20.7	24.5	39.4	27.9	7.7	35.6	0.5	100.0	3.15	53.75
	민 간	231	0.4	25.5	26.0	39.8	29.9	4.3	34.2	0.0	100.0	3.12	53.03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4.2	25.0	29.2	35.8	27.5	7.5	35.0	0.0	100.0	3.09	52.29
	국 회 의 원	50	0.0	40.0	40.0	28.0	26.0	6.0	32.0	0.0	100.0	2.98	49.50
	국 회 공 무 원	50	4.0	32.0	36.0	28.0	30.0	4.0	34.0	2.0	100.0	2.98	49.59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27.5	27.5	29.4	33.3	9.8	43.1	0.0	100.0	3.25	56.37
	국 가 공 무 원	112	0.9	25.9	26.8	33.9	32.1	7.1	39.3	0.0	100.0	3.19	54.69
	지 방 공 무 원	100	2.0	20.0	22.0	40.0	34.0	4.0	38.0	0.0	100.0	3.18	54.50
	관 사	30	0.0	16.7	16.7	26.7	50.0	6.7	56.7	0.0	100.0	3.47	61.67
	검 사	30	0.0	3.3	3.3	33.3	53.3	10.0	63.3	0.0	100.0	3.70	67.50
	법 원 공 무 원	30	0.0	10.0	10.0	26.7	53.3	6.7	60.0	3.3	100.0	3.57	64.31
	로 스 쿨 교 수	69	2.9	20.3	23.2	36.2	34.8	5.8	40.6	0.0	100.0	3.20	55.07
	법 학 과 교 수	70	0.0	12.9	12.9	44.3	27.1	14.3	41.4	1.4	100.0	3.43	60.78
	연 구 원	69	8.7	29.0	37.7	37.7	21.7	2.9	24.6	0.0	100.0	2.81	45.29
	변 호	110	0.0	21.8	21.8	40.0	33.6	4.5	38.2	0.0	100.0	3.21	55.23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0.8	28.9	29.8	39.7	26.4	4.1	30.6	0.0	100.0	3.04	51.03
	로 스 쿨 과 정 생	60	5.0	20.0	25.0	35.0	33.3	6.7	40.0	0.0	100.0	3.17	54.17
박 사 과 정 생	60	3.3	30.0	33.3	36.7	21.7	8.3	30.0	0.0	100.0	3.02	50.42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0	17.6	17.6	38.9	36.7	6.3	43.0	0.5	100.0	3.32	57.94
	타 자 격 증	136	0.7	25.0	25.7	40.4	28.7	5.1	33.8	0.0	100.0	3.13	53.13
	없 음	658	2.7	25.4	28.1	34.2	30.7	6.7	37.4	0.3	100.0	3.13	53.32
법 관 련 사 건 기간	1 ~ 5 년	444	2.5	24.5	27.0	36.9	29.7	6.3	36.0	0.0	100.0	3.13	53.21
	6 ~ 10 년	218	1.4	27.1	28.4	34.4	30.7	6.0	36.7	0.5	100.0	3.13	53.23
	11 ~ 15 년	89	0.0	32.6	32.6	32.6	29.2	5.6	34.8	0.0	100.0	3.08	51.97
	16 ~ 20 년	107	2.8	16.8	19.6	36.4	39.3	4.7	43.9	0.0	100.0	3.26	56.54
	21년 이상	128	0.8	11.7	12.5	38.3	39.1	9.4	48.4	0.8	100.0	3.45	61.17
부 응 답	26	3.8	38.5	42.3	30.8	19.2	3.8	23.1	3.8	100.0	2.81	45.36	

표 55. 이웃 간 분쟁 감소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④ 다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2.1</b>	<b>29.1</b>	<b>31.1</b>	<b>39.0</b>	<b>26.2</b>	<b>3.3</b>	<b>29.4</b>	<b>0.4</b>	<b>100.0</b>	<b>3.00</b>	<b>49.88</b>	
성별	남 자	726	1.5	28.7	30.2	38.8	27.3	3.4	30.7	0.3	100.0	3.02	50.62
	여 자	286	3.5	30.1	33.6	39.5	23.4	2.8	26.2	0.7	100.0	2.92	47.99
연령별	19 ~ 29 세	145	2.8	35.2	37.9	40.0	20.0	1.4	21.4	0.7	100.0	2.82	45.52
	30 대	306	3.3	33.3	36.6	39.9	21.2	2.3	23.5	0.0	100.0	2.86	46.49
	40 대	280	2.1	29.6	31.8	40.4	23.6	3.9	27.5	0.4	100.0	2.97	49.37
	50 대	203	0.0	20.7	20.7	37.4	36.9	4.4	41.4	0.5	100.0	3.25	56.28
	60 세 이상	78	1.3	20.5	21.8	33.3	38.5	5.1	43.6	1.3	100.0	3.26	56.41
지역별	수 도 권	586	2.4	31.4	33.8	38.1	24.7	2.7	27.5	0.7	100.0	2.94	48.51
	중 부 권	197	2.5	24.9	27.4	36.0	32.5	4.1	36.5	0.0	100.0	3.11	52.66
	전 라 권	79	1.3	26.6	27.8	44.3	22.8	5.1	27.8	0.0	100.0	3.04	50.95
	경 상 권	127	0.8	29.1	29.9	42.5	25.2	2.4	27.6	0.0	100.0	2.99	49.80
	제 주 권	23	0.0	13.0	13.0	52.2	26.1	8.7	34.8	0.0	100.0	3.30	57.61
분야별	입 법	151	2.0	31.8	33.8	35.1	27.2	3.3	30.5	0.7	100.0	2.98	49.50
	행 정	212	0.9	28.3	29.2	41.0	25.5	4.2	29.7	0.0	100.0	3.04	50.94
	사 법	90	0.0	20.0	20.0	38.9	32.2	7.8	40.0	1.1	100.0	3.28	56.94
	학 계	208	3.4	26.4	29.8	40.4	26.0	3.4	29.3	0.5	100.0	3.00	49.88
	민 간	231	1.3	33.3	34.6	39.4	24.7	1.3	26.0	0.0	100.0	2.91	47.84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5.0	30.0	35.0	37.5	25.0	1.7	26.7	0.8	100.0	2.88	47.08
	국 회 의 원	50	2.0	36.0	38.0	32.0	24.0	6.0	30.0	0.0	100.0	2.96	49.00
	국 회 공 무 원	50	4.0	38.0	42.0	36.0	20.0	0.0	20.0	2.0	100.0	2.74	43.50
	지 방 회 의 원	51	0.0	21.6	21.6	37.3	37.3	3.9	41.2	0.0	100.0	3.24	55.88
	국 가 공 무 원	112	1.8	30.4	32.1	34.8	28.6	4.5	33.0	0.0	100.0	3.04	50.89
	지 방 공 무 원	100	0.0	26.0	26.0	48.0	22.0	4.0	26.0	0.0	100.0	3.04	51.00
	관 사	30	0.0	10.0	10.0	53.3	33.3	3.3	36.7	0.0	100.0	3.30	57.50
	검 사	30	0.0	16.7	16.7	36.7	33.3	13.3	46.7	0.0	100.0	3.43	60.83
	법 원 공 무 원	30	0.0	33.3	33.3	26.7	30.0	6.7	36.7	3.3	100.0	3.10	52.50
	로 스 쿨 교 수	69	1.4	23.2	24.6	31.9	36.2	7.2	43.5	0.0	100.0	3.25	56.16
	법 학 과 교 수	70	1.4	18.6	20.0	52.9	24.3	1.4	25.7	1.4	100.0	3.06	51.43
	법 구 원	69	7.2	37.7	44.9	36.2	17.4	1.4	18.8	0.0	100.0	2.68	42.03
	변 호 사	110	0.9	36.4	37.3	39.1	21.8	1.8	23.6	0.0	100.0	2.87	46.82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7	30.6	32.2	39.7	27.3	0.8	28.1	0.0	100.0	2.95	48.76
	로 스 쿨 과 정 생	60	1.7	25.0	26.7	41.7	31.7	0.0	31.7	0.0	100.0	3.03	50.83
박 사 과 정 생	60	8.3	35.0	43.3	33.3	18.3	3.3	21.7	1.7	100.0	2.73	43.33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9	29.0	29.9	39.4	27.1	3.2	30.3	0.5	100.0	3.03	50.68
	타 자 격 증	136	1.5	28.7	30.1	39.7	28.7	1.5	30.1	0.0	100.0	3.00	50.00
	없 음	658	2.6	29.0	31.6	39.1	25.2	3.6	28.9	0.5	100.0	2.98	49.58
법 관 관련 기간	1 ~ 5 년	444	2.7	30.9	33.6	41.2	23.0	2.0	25.0	0.2	100.0	2.91	47.69
	6 ~ 10 년	218	1.8	32.1	33.9	40.8	20.2	4.6	24.8	0.5	100.0	2.94	48.39
	11 ~ 15 년	89	1.1	41.6	42.7	34.8	20.2	2.2	22.5	0.0	100.0	2.81	45.22
	16 ~ 20 년	107	1.9	19.6	21.5	32.7	40.2	5.6	45.8	0.0	100.0	3.28	57.01
	21년 이상	128	0.0	18.8	18.8	35.2	40.6	4.7	45.3	0.8	100.0	3.31	57.81
	무 응 답	26	7.7	19.2	26.9	46.2	23.1	0.0	23.1	3.8	100.0	2.88	47.11

【부 록】

표 56. 범죄 감소 효과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2.5</b>	<b>20.6</b>	<b>23.0</b>	<b>32.9</b>	<b>38.2</b>	<b>5.5</b>	<b>43.8</b>	<b>0.3</b>	<b>100.0</b>	<b>3.24</b>	<b>55.97</b>	
성별	남 자	726	1.9	19.4	21.3	32.4	40.1	5.9	46.0	0.3	100.0	3.29	57.18
	여 자	286	3.8	23.4	27.3	34.3	33.6	4.5	38.1	0.3	100.0	3.12	52.91
연령별	19 ~ 29세	145	4.8	20.0	24.8	31.7	40.0	3.4	43.4	0.0	100.0	3.17	54.31
	30 대	306	2.6	22.2	24.8	35.0	35.9	4.2	40.2	0.0	100.0	3.17	54.25
	40 대	280	2.1	21.1	23.2	35.4	35.7	5.4	41.1	0.4	100.0	3.21	55.29
	50 대	203	1.0	17.2	18.2	30.5	44.3	6.4	50.7	0.5	100.0	3.38	59.51
	60세 이상	78	2.6	21.8	24.4	24.4	37.2	12.8	50.0	1.3	100.0	3.36	59.05
지역별	수도권	586	2.7	21.0	23.7	32.9	37.9	4.9	42.8	0.5	100.0	3.21	55.36
	중부권	197	2.5	19.8	22.3	29.4	41.1	7.1	48.2	0.0	100.0	3.30	57.61
	전라권	79	2.5	26.6	29.1	36.7	30.4	3.8	34.2	0.0	100.0	3.06	51.58
	경상권	127	1.6	18.9	20.5	29.9	44.1	5.5	49.6	0.0	100.0	3.33	58.27
	제주권	23	0.0	4.3	4.3	65.2	17.4	13.0	30.4	0.0	100.0	3.39	59.78
분야별	입법	151	2.6	25.8	28.5	31.1	34.4	5.3	39.7	0.7	100.0	3.14	53.52
	행정	212	2.4	15.6	17.9	34.9	42.5	4.7	47.2	0.0	100.0	3.32	57.90
	사법	90	0.0	13.3	13.3	27.8	46.7	11.1	57.8	1.1	100.0	3.56	63.96
	학계	208	2.4	21.2	23.6	35.1	35.1	5.8	40.9	0.5	100.0	3.21	55.20
	민간	231	2.2	19.9	22.1	35.5	38.1	4.3	42.4	0.0	100.0	3.23	55.63
	예비법전문가	120	5.0	28.3	33.3	26.7	35.0	5.0	40.0	0.0	100.0	3.07	51.67
직업별	국회의원	50	6.0	24.0	30.0	22.0	46.0	2.0	48.0	0.0	100.0	3.14	53.50
	국회공무원	50	2.0	26.0	28.0	40.0	28.0	2.0	30.0	2.0	100.0	3.02	50.62
	지방의회 의원	51	0.0	27.5	27.5	31.4	29.4	11.8	41.2	0.0	100.0	3.25	56.37
	국가공무원	112	1.8	13.4	15.2	33.0	45.5	6.3	51.8	0.0	100.0	3.41	60.27
	지방공무원	100	3.0	18.0	21.0	37.0	39.0	3.0	42.0	0.0	100.0	3.21	55.25
	관사	30	0.0	0.0	0.0	43.3	50.0	6.7	56.7	0.0	100.0	3.63	65.83
	검사	30	0.0	20.0	20.0	20.0	40.0	20.0	60.0	0.0	100.0	3.60	65.00
	법원공무원	30	0.0	20.0	20.0	20.0	50.0	6.7	56.7	3.3	100.0	3.44	61.03
	로스쿨교수	69	1.4	14.5	15.9	33.3	43.5	7.2	50.7	0.0	100.0	3.41	60.14
	법학과교수	70	0.0	18.6	18.6	37.1	35.7	7.1	42.9	1.4	100.0	3.32	57.94
	연구원	69	5.8	30.4	36.2	34.8	26.1	2.9	29.0	0.0	100.0	2.90	47.46
	연번호사	110	0.9	19.1	20.0	33.6	43.6	2.7	46.4	0.0	100.0	3.28	57.05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3.3	20.7	24.0	37.2	33.1	5.8	38.8	0.0	100.0	3.17	54.34
	로스쿨과정생	60	5.0	26.7	31.7	23.3	40.0	5.0	45.0	0.0	100.0	3.13	53.33
	박사과정생	60	5.0	30.0	35.0	30.0	30.0	5.0	35.0	0.0	100.0	3.00	5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0.9	15.8	16.7	34.4	41.6	6.8	48.4	0.5	100.0	3.38	59.42
	타자격증	136	2.9	19.9	22.8	38.2	33.1	5.9	39.0	0.0	100.0	3.19	54.78
	없음	658	2.9	22.2	25.1	31.6	38.0	5.0	43.0	0.3	100.0	3.20	55.03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3.4	21.2	24.5	33.1	38.1	4.3	42.3	0.0	100.0	3.19	54.67
	6 ~ 10년	218	3.2	22.0	25.2	35.3	32.6	6.4	39.0	0.5	100.0	3.17	54.27
	11 ~ 15년	89	1.1	27.0	28.1	24.7	44.9	2.2	47.2	0.0	100.0	3.20	55.06
	16 ~ 20년	107	0.9	17.8	18.7	32.7	40.2	8.4	48.6	0.0	100.0	3.37	59.35
	21년 이상	128	0.0	13.3	13.3	32.8	43.8	9.4	53.1	0.8	100.0	3.49	62.35
	부응답	26	3.8	23.1	26.9	38.5	30.8	0.0	30.8	3.8	100.0	3.01	50.23

표 57. 공무원 부패 방지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6.0</b>	<b>24.1</b>	<b>30.1</b>	<b>32.1</b>	<b>33.3</b>	<b>4.2</b>	<b>37.5</b>	<b>0.3</b>	<b>100.0</b>	<b>3.05</b>	<b>51.36</b>	
성별	남자	726	5.4	22.9	28.2	30.6	36.2	4.7	40.9	0.3	100.0	3.12	53.00
	여자	286	7.7	27.3	35.0	36.0	25.9	2.8	28.7	0.3	100.0	2.89	47.21
연령별	19 ~ 29세	145	11.0	26.9	37.9	31.0	26.9	4.1	31.0	0.0	100.0	2.86	46.55
	30대	306	8.5	23.2	31.7	35.0	29.7	3.6	33.3	0.0	100.0	2.97	49.18
	40대	280	4.3	23.6	27.9	31.1	37.5	3.2	40.7	0.4	100.0	3.12	52.95
	50대	203	1.5	23.2	24.6	30.5	39.9	4.4	44.3	0.5	100.0	3.23	55.67
	60세 이상	78	5.1	26.9	32.1	30.8	26.9	9.0	35.9	1.3	100.0	3.08	51.94
지역별	수도권	586	7.7	27.3	35.0	31.9	29.4	3.2	32.6	0.5	100.0	2.93	48.30
	중부권	197	4.1	18.8	22.8	24.9	46.2	6.1	52.3	0.0	100.0	3.31	57.87
	전라권	79	1.3	26.6	27.8	38.0	29.1	5.1	34.2	0.0	100.0	3.10	52.53
	경상권	127	5.5	18.9	24.4	36.2	34.6	4.7	39.4	0.0	100.0	3.14	53.54
	제주	23	0.0	8.7	8.7	56.5	30.4	4.3	34.8	0.0	100.0	3.30	57.61
분야별	입법	151	3.3	31.1	34.4	31.1	29.8	4.0	33.8	0.7	100.0	3.00	50.01
	행정	212	2.4	13.7	16.0	29.2	49.5	5.2	54.7	0.0	100.0	3.42	60.38
	사법	90	1.1	6.7	7.8	35.6	46.7	8.9	55.6	1.1	100.0	3.56	63.90
	학계	208	6.7	28.8	35.6	32.7	29.3	1.9	31.3	0.5	100.0	2.91	47.72
	민간	231	8.2	31.6	39.8	31.6	24.2	4.3	28.6	0.0	100.0	2.85	46.21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4.2	24.2	38.3	35.8	23.3	2.5	25.8	0.0	100.0	2.76	43.96
	국회의원	50	6.0	24.0	30.0	36.0	30.0	4.0	34.0	0.0	100.0	3.02	50.50
	국회공무원	50	4.0	30.0	34.0	36.0	26.0	2.0	28.0	2.0	100.0	2.92	48.03
	지방의회 의원	51	0.0	39.2	39.2	21.6	33.3	5.9	39.2	0.0	100.0	3.06	51.47
	국가공무원	112	3.6	13.4	17.0	26.8	48.2	8.0	56.3	0.0	100.0	3.44	60.94
	지방공무원	100	1.0	14.0	15.0	32.0	51.0	2.0	53.0	0.0	100.0	3.39	59.75
	관사	30	0.0	0.0	0.0	40.0	53.3	6.7	60.0	0.0	100.0	3.67	66.67
	검사	30	0.0	13.3	13.3	43.3	30.0	13.3	43.3	0.0	100.0	3.43	60.83
	법원공무원	30	3.3	6.7	10.0	23.3	56.7	6.7	63.3	3.3	100.0	3.57	64.21
	로스쿨교수	69	7.2	27.5	34.8	27.5	33.3	4.3	37.7	0.0	100.0	3.00	50.00
	법학과교수	70	1.4	22.9	24.3	40.0	32.9	1.4	34.3	1.4	100.0	3.10	52.52
	연구원	69	11.6	36.2	47.8	30.4	21.7	0.0	21.7	0.0	100.0	2.62	40.58
	연변호사	110	3.6	23.6	27.3	38.2	30.9	3.6	34.5	0.0	100.0	3.07	51.82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2.4	38.8	51.2	25.6	18.2	5.0	23.1	0.0	100.0	2.64	41.12
	로스쿨과정생	60	6.7	23.3	30.0	36.7	30.0	3.3	33.3	0.0	100.0	3.00	50.00
박사과정생	60	21.7	25.0	46.7	35.0	16.7	1.7	18.3	0.0	100.0	2.52	37.92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2.7	19.9	22.6	37.6	34.4	5.0	39.4	0.5	100.0	3.19	54.76
	타자격증	136	10.3	36.0	46.3	28.7	20.6	4.4	25.0	0.0	100.0	2.73	43.20
	없음	658	6.2	23.1	29.3	31.2	35.4	3.8	39.2	0.3	100.0	3.07	51.87
법 관련 기간	1 ~ 5년	444	7.0	25.5	32.4	32.2	31.8	3.6	35.4	0.0	100.0	3.00	49.89
	6 ~ 10년	218	6.0	22.5	28.4	33.0	34.4	3.7	38.1	0.5	100.0	3.07	51.84
	11 ~ 15년	89	9.0	29.2	38.2	29.2	28.1	4.5	32.6	0.0	100.0	2.90	47.47
	16 ~ 20년	107	2.8	24.3	27.1	28.0	41.1	3.7	44.9	0.0	100.0	3.19	54.67
	21년 이상	128	0.8	18.0	18.8	35.2	37.5	7.8	45.3	0.8	100.0	3.34	58.41
무응답	26	19.2	26.9	46.2	34.6	15.4	0.0	15.4	3.8	100.0	2.50	37.55	



【부 록】

표 58. 정부 권한 통제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6.0</b>	<b>23.3</b>	<b>29.3</b>	<b>37.5</b>	<b>29.4</b>	<b>3.4</b>	<b>32.8</b>	<b>0.3</b>	<b>100.0</b>	<b>3.01</b>	<b>50.20</b>	
성별	남 자	726	5.2	22.3	27.5	37.5	31.1	3.6	34.7	0.3	100.0	3.06	51.38
	여 자	286	8.0	25.9	33.9	37.8	25.2	2.8	28.0	0.3	100.0	2.89	47.20
연령별	19 ~ 29세	145	7.6	22.8	30.3	38.6	25.5	5.5	31.0	0.0	100.0	2.99	49.66
	30 대	306	6.5	22.5	29.1	42.2	26.5	2.3	28.8	0.0	100.0	2.95	48.86
	40 대	280	7.1	25.4	32.5	34.6	29.3	3.2	32.5	0.4	100.0	2.96	49.02
	50 대	203	3.0	22.7	25.6	35.5	36.0	2.5	38.4	0.5	100.0	3.12	53.08
	60세 이상	78	5.1	21.8	26.9	33.3	32.1	6.4	38.5	1.3	100.0	3.13	53.21
지역별	수도권	586	7.5	24.2	31.7	38.6	26.3	2.9	29.2	0.5	100.0	2.93	48.21
	중부권	197	4.6	15.7	20.3	34.0	42.1	3.6	45.7	0.0	100.0	3.24	56.09
	전라권	79	5.1	25.3	30.4	38.0	30.4	1.3	31.6	0.0	100.0	2.97	49.37
	경상권	127	2.4	29.1	31.5	37.0	26.0	5.5	31.5	0.0	100.0	3.03	50.79
분야별	제주	23	4.3	26.1	30.4	43.5	17.4	8.7	26.1	0.0	100.0	3.00	50.00
	입법	151	6.6	28.5	35.1	38.4	22.5	3.3	25.8	0.7	100.0	2.87	46.86
	행정	212	2.4	17.9	20.3	34.4	42.0	3.3	45.3	0.0	100.0	3.26	56.49
	사법	90	0.0	12.2	12.2	36.7	42.2	7.8	50.0	1.1	100.0	3.46	61.39
	학계	208	7.2	23.6	30.8	38.5	26.9	3.4	30.3	0.5	100.0	2.96	48.92
직업별	민간	231	8.2	27.7	35.9	39.0	23.4	1.7	25.1	0.0	100.0	2.83	45.67
	예비법전문가	120	10.0	25.8	35.8	38.3	22.5	3.3	25.8	0.0	100.0	2.83	45.83
	국회의원	50	8.0	26.0	34.0	42.0	22.0	2.0	24.0	0.0	100.0	2.84	46.00
	국회공무원	50	10.0	26.0	36.0	34.0	26.0	2.0	28.0	2.0	100.0	2.84	46.00
	지방의회 의원	51	2.0	33.3	35.3	39.2	19.6	5.9	25.5	0.0	100.0	2.94	48.53
	국가공무원	112	0.0	15.2	15.2	30.4	50.9	3.6	54.5	0.0	100.0	3.43	60.71
	지방공무원	100	5.0	21.0	26.0	39.0	32.0	3.0	35.0	0.0	100.0	3.07	51.75
	관사	30	0.0	10.0	10.0	33.3	53.3	3.3	56.7	0.0	100.0	3.50	62.50
	검사	30	0.0	13.3	13.3	36.7	36.7	13.3	50.0	0.0	100.0	3.50	62.50
	법원공무원	30	0.0	13.3	13.3	40.0	36.7	6.7	43.3	3.3	100.0	3.37	59.17
	로스쿨교수	69	8.7	23.2	31.9	34.8	30.4	2.9	33.3	0.0	100.0	2.96	48.91
	법학과교수	70	1.4	20.0	21.4	42.9	27.1	7.1	34.3	1.4	100.0	3.19	54.65
	연변호사	69	11.6	27.5	39.1	37.7	23.2	0.0	23.2	0.0	100.0	2.72	43.12
	변호사	110	2.7	24.5	27.3	42.7	26.4	3.6	30.0	0.0	100.0	3.04	50.91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3.2	30.6	43.8	35.5	20.7	0.0	20.7	0.0	100.0	2.64	40.91
	로스쿨과정생	60	5.0	20.0	25.0	43.3	26.7	5.0	31.7	0.0	100.0	3.07	51.67
박사과정생	60	15.0	31.7	46.7	33.3	18.3	1.7	20.0	0.0	100.0	2.60	40.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8	21.3	23.1	39.8	32.1	4.5	36.7	0.5	100.0	3.16	54.07
	타자격증	136	11.8	29.4	41.2	36.0	22.8	0.0	22.8	0.0	100.0	2.70	42.46
	없음	658	6.2	22.8	29.0	37.2	29.8	3.6	33.4	0.3	100.0	3.02	50.46
법 관련사 기간	1 ~ 5년	444	6.8	23.2	30.0	40.5	26.6	2.9	29.5	0.0	100.0	2.96	48.93
	6 ~ 10년	218	6.4	22.9	29.4	39.9	27.1	3.2	30.3	0.5	100.0	2.98	49.43
	11 ~ 15년	89	5.6	30.3	36.0	27.0	32.6	4.5	37.1	0.0	100.0	3.00	50.00
	16 ~ 20년	107	4.7	24.3	29.0	31.8	37.4	1.9	39.3	0.0	100.0	3.07	51.87
	21년 이상	128	2.3	18.0	20.3	35.9	37.5	5.5	43.0	0.8	100.0	3.26	56.45
무 응 답	26	15.4	26.9	42.3	34.6	15.4	3.8	19.2	3.8	100.0	2.65	41.35	

표 59. 국회의 독립되고 공정한 입법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16.9</b>	<b>47.1</b>	<b>64.0</b>	<b>27.0</b>	<b>7.6</b>	<b>1.0</b>	<b>8.6</b>	<b>0.4</b>	<b>100.0</b>	<b>2.28</b>	<b>32.09</b>	
성별	남 자	726	16.1	47.1	63.2	27.0	8.0	1.4	9.4	0.4	100.0	2.31	32.78
	여 자	286	18.9	47.2	66.1	26.9	6.6	0.0	6.6	0.3	100.0	2.21	30.36
연령별	19 ~ 29 세	145	18.6	49.0	67.6	24.1	8.3	0.0	8.3	0.0	100.0	2.22	30.52
	30 대	306	22.2	40.5	62.7	28.4	8.5	0.3	8.8	0.0	100.0	2.24	31.05
	40 대	280	15.4	54.3	69.6	23.6	6.1	0.4	6.4	0.4	100.0	2.22	30.38
	50 대	203	10.8	48.8	59.6	29.6	7.9	2.5	10.3	0.5	100.0	2.42	35.50
	60 세 이상	78	14.1	39.7	53.8	32.1	7.7	3.8	11.5	2.6	100.0	2.46	36.40
지역별	수 도 권	586	16.2	46.9	63.1	27.0	8.4	0.9	9.2	0.7	100.0	2.30	32.56
	중 부 권	197	18.8	48.2	67.0	25.9	6.1	1.0	7.1	0.0	100.0	2.22	30.58
	전 라 권	79	13.9	46.8	60.8	27.8	11.4	0.0	11.4	0.0	100.0	2.37	34.18
	경 상 권	127	18.9	50.4	69.3	24.4	3.9	2.4	6.3	0.0	100.0	2.20	30.12
분야별	제 주 권	23	17.4	26.1	43.5	47.8	8.7	0.0	8.7	0.0	100.0	2.48	36.96
	입 법	151	7.9	39.7	47.7	31.8	15.9	3.3	19.2	1.3	100.0	2.66	41.48
	행 정	212	18.4	49.1	67.5	24.1	7.5	0.9	8.5	0.0	100.0	2.24	30.90
	사 법	90	7.8	38.9	46.7	47.8	4.4	0.0	4.4	1.1	100.0	2.49	37.30
	학 계	208	16.3	51.9	68.3	25.5	4.8	1.0	5.8	0.5	100.0	2.22	30.44
직업별	민 간	231	21.6	50.6	72.3	20.8	6.5	0.4	6.9	0.0	100.0	2.13	28.35
	예 비 법 전 문 가	120	24.2	44.2	68.3	25.0	6.7	0.0	6.7	0.0	100.0	2.14	28.54
	국 회 의 원	50	8.0	30.0	38.0	30.0	30.0	2.0	32.0	0.0	100.0	2.88	47.00
	국 회 공 무 원	50	4.0	56.0	60.0	34.0	4.0	0.0	4.0	2.0	100.0	2.39	34.64
	지 방 의 회 의 원	51	11.8	33.3	45.1	31.4	13.7	7.8	21.6	2.0	100.0	2.71	42.79
	국 가 공 무 원	112	19.6	52.7	72.3	17.9	8.0	1.8	9.8	0.0	100.0	2.20	29.91
	지 방 공 무 원	100	17.0	45.0	62.0	31.0	7.0	0.0	7.0	0.0	100.0	2.28	32.00
	관 사	30	0.0	36.7	36.7	56.7	6.7	0.0	6.7	0.0	100.0	2.70	42.50
	검 사	30	13.3	33.3	46.7	50.0	3.3	0.0	3.3	0.0	100.0	2.43	35.83
	법 원 공 무 원	30	10.0	46.7	56.7	36.7	3.3	0.0	3.3	3.3	100.0	2.34	33.57
	로 스 쿨 교 수	69	17.4	56.5	73.9	23.2	1.4	1.4	2.9	0.0	100.0	2.13	28.26
	법 학 과 교 수	70	11.4	45.7	57.1	30.0	10.0	1.4	11.4	1.4	100.0	2.43	35.82
	연 구 원	69	20.3	53.6	73.9	23.2	2.9	0.0	2.9	0.0	100.0	2.09	27.17
	연 번 호 사	110	17.3	49.1	66.4	25.5	7.3	0.9	8.2	0.0	100.0	2.25	31.36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25.6	52.1	77.7	16.5	5.8	0.0	5.8	0.0	100.0	2.02	25.62
로 스 쿨 과 정 생	60	18.3	48.3	66.7	23.3	10.0	0.0	10.0	0.0	100.0	2.25	31.25	
박 사 과 정 생	60	30.0	40.0	70.0	26.7	3.3	0.0	3.3	0.0	100.0	2.03	25.83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13.6	46.2	59.7	32.1	7.2	0.5	7.7	0.5	100.0	2.35	33.63
	타 자 격 증	136	25.7	50.7	76.5	18.4	5.1	0.0	5.1	0.0	100.0	2.03	25.74
	없 음	658	16.4	46.5	62.9	27.1	8.2	1.4	9.6	0.5	100.0	2.31	32.82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19.1	44.1	63.3	27.3	8.6	0.9	9.5	0.0	100.0	2.28	31.98
	6 ~ 10 년	218	15.1	49.5	64.7	28.0	6.4	0.0	6.4	0.9	100.0	2.26	31.49
	11 ~ 15 년	89	23.6	50.6	74.2	18.0	6.7	1.1	7.9	0.0	100.0	2.11	27.81
	16 ~ 20 년	107	14.0	53.3	67.3	25.2	5.6	1.9	7.5	0.0	100.0	2.28	32.01
	21년 이상	128	9.4	45.3	54.7	33.6	9.4	1.6	10.9	0.8	100.0	2.48	36.97
무 응 답	26	19.2	50.0	69.2	19.2	3.8	3.8	7.7	3.8	100.0	2.20	30.08	

【부 록】

표 60. 법원의 독립되고 공정한 판결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8.3</b>	<b>36.1</b>	<b>44.4</b>	<b>29.7</b>	<b>23.2</b>	<b>2.4</b>	<b>25.6</b>	<b>0.3</b>	<b>100.0</b>	<b>2.75</b>	<b>43.81</b>	
성별	남 자	726	7.6	34.4	42.0	29.3	25.3	3.0	28.4	0.3	100.0	2.82	45.44
	여 자	286	10.1	40.2	50.3	30.8	17.8	0.7	18.5	0.3	100.0	2.59	39.66
연령별	19 ~ 29세	145	14.5	35.2	49.7	22.1	26.9	1.4	28.3	0.0	100.0	2.66	41.38
	30 대	306	8.8	32.4	41.2	30.7	26.1	2.0	28.1	0.0	100.0	2.80	45.02
	40 대	280	7.5	41.8	49.3	29.6	18.2	2.5	20.7	0.4	100.0	2.66	41.59
	50 대	203	5.4	36.0	41.4	32.5	23.2	2.5	25.6	0.5	100.0	2.81	45.29
	60세 이상	78	5.1	32.1	37.2	33.3	23.1	5.1	28.2	1.3	100.0	2.91	47.68
지역별	수도권	586	9.6	37.7	47.3	28.2	22.4	1.7	24.1	0.5	100.0	2.69	42.20
	중부권	197	10.2	34.5	44.7	27.9	23.4	4.1	27.4	0.0	100.0	2.77	44.16
	전라권	79	3.8	29.1	32.9	39.2	26.6	1.3	27.8	0.0	100.0	2.92	48.10
	경상권	127	3.9	35.4	39.4	32.3	24.4	3.9	28.3	0.0	100.0	2.89	47.24
	제주권	23	0.0	34.8	34.8	39.1	26.1	0.0	26.1	0.0	100.0	2.91	47.83
분야별	입법	151	9.3	47.7	57.0	23.8	16.6	2.0	18.5	0.7	100.0	2.54	38.54
	행정	212	6.6	42.5	49.1	33.5	16.5	0.9	17.5	0.0	100.0	2.63	40.68
	사법	90	0.0	11.1	11.1	16.7	60.0	11.1	71.1	1.1	100.0	3.71	67.71
	학계	208	5.8	39.9	45.7	31.3	21.6	1.0	22.6	0.5	100.0	2.72	43.00
	민간	231	10.8	32.9	43.7	34.6	19.5	2.2	21.6	0.0	100.0	2.69	42.32
	예비법전문가	120	15.8	28.3	44.2	28.3	25.8	1.7	27.5	0.0	100.0	2.69	42.29
직업별	국회의원	50	12.0	38.0	50.0	20.0	28.0	2.0	30.0	0.0	100.0	2.70	42.50
	국회공무원	50	12.0	52.0	64.0	24.0	8.0	2.0	10.0	2.0	100.0	2.36	33.88
	지방의회 의원	51	3.9	52.9	56.9	27.5	13.7	2.0	15.7	0.0	100.0	2.57	39.22
	국가공무원	112	5.4	47.3	52.7	26.8	18.8	1.8	20.5	0.0	100.0	2.64	41.07
	지방공무원	100	8.0	37.0	45.0	41.0	14.0	0.0	14.0	0.0	100.0	2.61	40.25
	관사	30	0.0	6.7	6.7	6.7	56.7	30.0	86.7	0.0	100.0	4.10	77.50
	검사	30	0.0	16.7	16.7	16.7	66.7	0.0	66.7	0.0	100.0	3.50	62.50
	법원공무원	30	0.0	10.0	10.0	26.7	56.7	3.3	60.0	3.3	100.0	3.53	63.13
	로스쿨교수	69	1.4	31.9	33.3	39.1	26.1	1.4	27.5	0.0	100.0	2.94	48.55
	법학과교수	70	7.1	30.0	37.1	32.9	27.1	1.4	28.6	1.4	100.0	2.85	46.34
	연구원	69	8.7	58.0	66.7	21.7	11.6	0.0	11.6	0.0	100.0	2.36	34.06
	변호사	110	2.7	23.6	26.4	38.2	31.8	3.6	35.5	0.0	100.0	3.10	52.50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8.2	41.3	59.5	31.4	8.3	0.8	9.1	0.0	100.0	2.32	33.06
	로스쿨과정생	60	8.3	28.3	36.7	28.3	33.3	1.7	35.0	0.0	100.0	2.92	47.92
박사과정생	60	23.3	28.3	51.7	28.3	18.3	1.7	20.0	0.0	100.0	2.47	36.6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4	19.9	21.3	30.8	41.6	5.9	47.5	0.5	100.0	3.31	57.66
	타자격증	136	16.2	39.0	55.1	31.6	11.8	1.5	13.2	0.0	100.0	2.43	35.85
	없음	658	9.0	40.7	49.7	29.2	19.5	1.4	20.8	0.3	100.0	2.63	40.86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10.1	35.1	45.3	27.9	25.2	1.6	26.8	0.0	100.0	2.73	43.24
	6 ~ 10년	218	8.3	41.3	49.5	28.4	19.7	1.8	21.6	0.5	100.0	2.65	41.37
	11 ~ 15년	89	11.2	38.2	49.4	28.1	20.2	2.2	22.5	0.0	100.0	2.64	41.01
	16 ~ 20년	107	5.6	39.3	44.9	31.8	19.6	3.7	23.4	0.0	100.0	2.77	44.16
	21년 이상	128	1.6	25.0	26.6	36.7	30.5	5.5	35.9	0.8	100.0	3.13	53.27
부 응 답	26	11.5	42.3	53.8	34.6	7.7	0.0	7.7	3.8	100.0	2.41	35.34	

표 61. 정부의 독립되고 공정한 집행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체</b>	<b>1,012</b>	<b>11.3</b>	<b>41.3</b>	<b>52.6</b>	<b>33.5</b>	<b>12.7</b>	<b>0.9</b>	<b>13.6</b>	<b>0.3</b>	<b>100.0</b>	<b>2.51</b>	<b>37.64</b>	
성별	남자	726	11.2	41.7	52.9	32.5	13.2	1.1	14.3	0.3	100.0	2.51	37.81
	여자	286	11.5	40.2	51.7	36.0	11.5	0.3	11.9	0.3	100.0	2.49	37.19
연령별	19 ~ 29세	145	13.1	44.1	57.2	31.0	11.0	0.7	11.7	0.0	100.0	2.42	35.52
	30대	306	14.7	36.9	51.6	34.6	12.7	1.0	13.7	0.0	100.0	2.48	37.09
	40대	280	11.4	43.9	55.4	30.0	14.3	0.0	14.3	0.4	100.0	2.47	36.83
	50대	203	5.9	43.3	49.3	36.5	12.8	1.0	13.8	0.5	100.0	2.59	39.84
	60세 이상	78	7.7	38.5	46.2	38.5	10.3	3.8	14.1	1.3	100.0	2.63	40.87
지역별	수도권	586	12.6	43.2	55.8	32.6	10.8	0.3	11.1	0.5	100.0	2.43	35.69
	중부권	197	12.2	29.9	42.1	35.0	21.3	1.5	22.8	0.0	100.0	2.70	42.51
	전라권	79	8.9	43.0	51.9	35.4	11.4	1.3	12.7	0.0	100.0	2.53	38.29
	경상권	127	6.3	48.8	55.1	31.5	11.0	2.4	13.4	0.0	100.0	2.54	38.58
	제주	23	4.3	43.5	47.8	47.8	4.3	0.0	4.3	0.0	100.0	2.52	38.04
분야별	입법	151	9.3	47.0	56.3	29.8	11.9	1.3	13.2	0.7	100.0	2.49	37.17
	행정	212	4.2	34.4	38.7	37.7	22.6	0.9	23.6	0.0	100.0	2.82	45.40
	사법	90	4.4	25.6	30.0	47.8	20.0	1.1	21.1	1.1	100.0	2.87	46.81
	학계	208	13.5	43.8	57.2	34.1	8.2	0.0	8.2	0.5	100.0	2.37	34.32
	민간	231	16.0	48.5	64.5	27.7	6.5	1.3	7.8	0.0	100.0	2.29	32.14
직업별	예비법전문가	120	18.3	40.0	58.3	30.0	10.8	0.8	11.7	0.0	100.0	2.36	33.96
	국회의원	50	10.0	36.0	46.0	36.0	16.0	2.0	18.0	0.0	100.0	2.64	41.00
	국회공무원	50	14.0	56.0	70.0	22.0	6.0	0.0	6.0	2.0	100.0	2.21	30.25
	지방의회 의원	51	3.9	49.0	52.9	31.4	13.7	2.0	15.7	0.0	100.0	2.61	40.20
	국가공무원	112	2.7	28.6	31.3	36.6	31.3	0.9	32.1	0.0	100.0	2.99	49.78
	지방공무원	100	6.0	41.0	47.0	39.0	13.0	1.0	14.0	0.0	100.0	2.62	40.50
	관사	30	0.0	30.0	30.0	36.7	30.0	3.3	33.3	0.0	100.0	3.07	51.67
	검사	30	0.0	20.0	20.0	63.3	16.7	0.0	16.7	0.0	100.0	2.97	49.17
	법원공무원	30	13.3	26.7	40.0	43.3	13.3	0.0	13.3	3.3	100.0	2.58	39.59
	로스쿨교수	69	8.7	52.2	60.9	33.3	5.8	0.0	5.8	0.0	100.0	2.36	34.06
	법학과교수	70	10.0	35.7	45.7	40.0	12.9	0.0	12.9	1.4	100.0	2.56	39.11
	연구원	69	21.7	43.5	65.2	29.0	5.8	0.0	5.8	0.0	100.0	2.19	29.71
	연변호사	110	11.8	48.2	60.0	28.2	10.0	1.8	11.8	0.0	100.0	2.42	35.45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19.8	48.8	68.6	27.3	3.3	0.8	4.1	0.0	100.0	2.17	29.13
	로스쿨과정생	60	11.7	43.3	55.0	33.3	10.0	1.7	11.7	0.0	100.0	2.47	36.67
박사과정생	60	25.0	36.7	61.7	26.7	11.7	0.0	11.7	0.0	100.0	2.25	31.25	
법률 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6.8	38.5	45.2	38.0	14.9	1.4	16.3	0.5	100.0	2.65	41.35
	타자격증	136	20.6	47.8	68.4	27.2	3.7	0.7	4.4	0.0	100.0	2.16	29.04
	없음	658	11.1	40.7	51.8	33.3	13.8	0.8	14.6	0.3	100.0	2.52	38.07
법 관련 사 기간	1 ~ 5년	444	14.0	39.9	53.8	33.6	11.7	0.9	12.6	0.0	100.0	2.46	36.43
	6 ~ 10년	218	10.1	41.3	51.4	33.0	15.1	0.0	15.1	0.5	100.0	2.53	38.36
	11 ~ 15년	89	13.5	48.3	61.8	23.6	14.6	0.0	14.6	0.0	100.0	2.39	34.83
	16 ~ 20년	107	7.5	45.8	53.3	34.6	10.3	1.9	12.1	0.0	100.0	2.53	38.32
	21년 이상	128	5.5	36.7	42.2	40.6	14.1	2.3	16.4	0.8	100.0	2.71	42.68
무응답	26	11.5	46.2	57.7	30.8	7.7	0.0	7.7	3.8	100.0	2.37	34.14	

【부 록】

표 62. 수사기관의 독립되고 공정한 집행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15.5</b>	<b>42.7</b>	<b>58.2</b>	<b>28.8</b>	<b>11.7</b>	<b>1.1</b>	<b>12.7</b>	<b>0.3</b>	<b>100.0</b>	<b>2.40</b>	<b>34.99</b>	
성별	남 자	726	15.4	41.5	56.9	28.9	12.7	1.2	13.9	0.3	100.0	2.43	35.67
	여 자	286	15.7	45.8	61.5	28.3	9.1	0.7	9.8	0.3	100.0	2.33	33.25
연령별	19 ~ 29 세	145	17.2	40.7	57.9	31.0	10.3	0.7	11.0	0.0	100.0	2.37	34.14
	30 대	306	17.3	38.6	55.9	29.1	13.1	2.0	15.0	0.0	100.0	2.44	35.95
	40 대	280	16.8	44.6	61.4	27.1	10.7	0.4	11.1	0.4	100.0	2.33	33.25
	50 대	203	12.3	47.8	60.1	26.6	12.8	0.0	12.8	0.5	100.0	2.40	35.02
	60 세 이상	78	9.0	42.3	51.3	34.6	9.0	3.8	12.8	1.3	100.0	2.56	38.91
지역별	수 도 권	586	16.0	43.5	59.6	27.1	11.9	0.9	12.8	0.5	100.0	2.38	34.44
	중 부 권	197	18.3	36.5	54.8	31.5	12.7	1.0	13.7	0.0	100.0	2.42	35.41
	전 라 권	79	12.7	46.8	59.5	29.1	8.9	2.5	11.4	0.0	100.0	2.42	35.44
	경 상 권	127	12.6	44.9	57.5	31.5	10.2	0.8	11.0	0.0	100.0	2.42	35.43
분야별	체 주 권	23	4.3	47.8	52.2	30.4	13.0	4.3	17.4	0.0	100.0	2.65	41.30
	입 법	151	15.9	53.0	68.9	21.9	7.9	0.7	8.6	0.7	100.0	2.24	31.03
	행 정	212	11.8	41.5	53.3	33.0	13.7	0.0	13.7	0.0	100.0	2.49	37.15
	사 법	90	5.6	21.1	26.7	31.1	36.7	4.4	41.1	1.1	100.0	3.13	53.17
	학 계	208	17.8	43.8	61.5	29.8	7.7	0.5	8.2	0.5	100.0	2.29	32.26
직업별	민 간	231	17.7	43.3	61.0	29.4	7.4	2.2	9.5	0.0	100.0	2.33	33.23
	예 비 법 전 문 가	120	20.8	45.0	65.8	25.0	9.2	0.0	9.2	0.0	100.0	2.23	30.63
	국 회 의 원	50	16.0	50.0	66.0	22.0	10.0	2.0	12.0	0.0	100.0	2.32	33.00
	국 회 공 무 원	50	24.0	58.0	82.0	12.0	4.0	0.0	4.0	2.0	100.0	1.97	24.20
	지 방 의 회 의 원	51	7.8	51.0	58.8	31.4	9.8	0.0	9.8	0.0	100.0	2.43	35.78
	국 가 공 무 원	112	11.6	35.7	47.3	33.0	19.6	0.0	19.6	0.0	100.0	2.61	40.18
	지 방 공 무 원	100	12.0	48.0	60.0	33.0	7.0	0.0	7.0	0.0	100.0	2.35	33.75
	관 사	30	0.0	30.0	30.0	36.7	30.0	3.3	33.3	0.0	100.0	3.07	51.67
	검 사	30	0.0	6.7	6.7	20.0	63.3	10.0	73.3	0.0	100.0	3.77	69.17
	법 원 공 무 원	30	16.7	26.7	43.3	36.7	16.7	0.0	16.7	3.3	100.0	2.55	38.67
	로 스 쿨 교 수	69	13.0	52.2	65.2	29.0	5.8	0.0	5.8	0.0	100.0	2.28	31.88
	법 학 과 교 수	70	15.7	35.7	51.4	34.3	11.4	1.4	12.9	1.4	100.0	2.46	36.57
	연 구 원	69	24.6	43.5	68.1	26.1	5.8	0.0	5.8	0.0	100.0	2.13	28.26
연 호	110	10.9	44.5	55.5	33.6	9.1	1.8	10.9	0.0	100.0	2.46	36.59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24.0	42.1	66.1	25.6	5.8	2.5	8.3	0.0	100.0	2.21	30.17	
로 스 쿨 과 정 생	60	13.3	48.3	61.7	28.3	10.0	0.0	10.0	0.0	100.0	2.35	33.75	
박 사 과 정 생	60	28.3	41.7	70.0	21.7	8.3	0.0	8.3	0.0	100.0	2.10	27.50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7.7	36.2	43.9	32.6	19.9	3.2	23.1	0.5	100.0	2.74	43.60
	타 자 격 증	136	24.3	42.6	66.9	24.3	6.6	2.2	8.8	0.0	100.0	2.20	29.96
	없 음	658	16.4	44.8	61.2	28.4	9.9	0.2	10.0	0.3	100.0	2.32	33.09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16.2	43.9	60.1	28.4	10.4	1.1	11.5	0.0	100.0	2.36	34.07
	6 ~ 10 년	218	18.3	39.9	58.3	27.5	12.8	0.9	13.8	0.5	100.0	2.38	34.45
	11 ~ 15 년	89	11.2	48.3	59.6	25.8	14.6	0.0	14.6	0.0	100.0	2.44	35.96
	16 ~ 20 년	107	15.9	41.1	57.0	29.9	12.1	0.9	13.1	0.0	100.0	2.41	35.28
	21 년 이상	128	10.9	39.8	50.8	34.4	11.7	2.3	14.1	0.8	100.0	2.54	38.55
부 응 답	26	15.4	46.2	61.5	23.1	11.5	0.0	11.5	3.8	100.0	2.32	33.08	

표 63. 국민 법준수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3.8</b>	<b>26.3</b>	<b>30.0</b>	<b>45.8</b>	<b>23.9</b>	<b>0.1</b>	<b>24.0</b>	<b>0.1</b>	<b>100.0</b>	<b>2.90</b>	<b>47.58</b>	
성별	남 자	726	4.3	26.2	30.4	43.4	25.9	0.1	26.0	0.1	100.0	2.91	47.86
	여 자	286	2.4	26.6	29.0	52.1	18.9	0.0	18.9	0.0	100.0	2.87	46.85
연령별	19 ~ 29 세	145	5.5	35.9	41.4	42.8	15.9	0.0	15.9	0.0	100.0	2.69	42.24
	30 대	306	4.9	27.5	32.4	43.5	24.2	0.0	24.2	0.0	100.0	2.87	46.73
	40 대	280	3.2	23.6	26.8	50.0	23.2	0.0	23.2	0.0	100.0	2.93	48.30
	50 대	203	2.0	20.2	22.2	46.3	31.0	0.5	31.5	0.0	100.0	3.08	51.97
	60 세 이상	78	2.6	29.5	32.1	44.9	21.8	0.0	21.8	1.3	100.0	2.87	46.76
지역별	수 도 권	586	4.4	28.8	33.3	43.0	23.5	0.0	23.5	0.2	100.0	2.86	46.45
	중 부 권	197	3.0	19.8	22.8	50.3	26.4	0.5	26.9	0.0	100.0	3.02	50.38
	전 라 권	79	3.8	24.1	27.8	48.1	24.1	0.0	24.1	0.0	100.0	2.92	48.10
	경 상 권	127	2.4	27.6	29.9	50.4	19.7	0.0	19.7	0.0	100.0	2.87	46.85
	제 주 권	23	0.0	17.4	17.4	47.8	34.8	0.0	34.8	0.0	100.0	3.17	54.35
분야별	입 법	151	0.7	33.1	33.8	47.0	19.2	0.0	19.2	0.0	100.0	2.85	46.19
	행 정	212	2.8	18.9	21.7	47.6	30.7	0.0	30.7	0.0	100.0	3.06	51.53
	사 법	90	0.0	20.0	20.0	54.4	24.4	0.0	24.4	1.1	100.0	3.04	51.08
	학 계	208	4.3	26.9	31.3	46.2	22.1	0.5	22.6	0.0	100.0	2.88	46.88
	민 간	231	6.1	28.1	34.2	44.2	21.6	0.0	21.6	0.0	100.0	2.81	45.35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6.7	30.8	37.5	37.5	25.0	0.0	25.0	0.0	100.0	2.81	45.21
	국 회 의 원	50	2.0	40.0	42.0	40.0	18.0	0.0	18.0	0.0	100.0	2.74	43.50
	국 회 공 무 원	50	0.0	32.0	32.0	56.0	12.0	0.0	12.0	0.0	100.0	2.80	45.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27.5	27.5	45.1	27.5	0.0	27.5	0.0	100.0	3.00	50.00
	국 가 공 무 원	112	1.8	22.3	24.1	44.6	31.3	0.0	31.3	0.0	100.0	3.05	51.34
	지 방 공 무 원	100	4.0	15.0	19.0	51.0	30.0	0.0	30.0	0.0	100.0	3.07	51.75
	관 사	30	0.0	26.7	26.7	56.7	16.7	0.0	16.7	0.0	100.0	2.90	47.50
	검 사	30	0.0	26.7	26.7	43.3	30.0	0.0	30.0	0.0	100.0	3.03	50.83
	법 원 공 무 원	30	0.0	6.7	6.7	63.3	26.7	0.0	26.7	3.3	100.0	3.20	54.92
	로 스쿨 교 수	69	4.3	30.4	34.8	40.6	24.6	0.0	24.6	0.0	100.0	2.86	46.38
	법 학 과 교 수	70	4.3	18.6	22.9	55.7	20.0	1.4	21.4	0.0	100.0	2.96	48.93
	법 구 원	69	4.3	31.9	36.2	42.0	21.7	0.0	21.7	0.0	100.0	2.81	45.29
	변 호 사	110	6.4	31.8	38.2	38.2	23.6	0.0	23.6	0.0	100.0	2.79	44.77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5.8	24.8	30.6	49.6	19.8	0.0	19.8	0.0	100.0	2.83	45.87
	로 스쿨 과정 생	60	10.0	30.0	40.0	38.3	21.7	0.0	21.7	0.0	100.0	2.72	42.92
박 사 과 정 생	60	3.3	31.7	35.0	36.7	28.3	0.0	28.3	0.0	100.0	2.90	47.5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3.2	31.7	34.8	40.7	24.4	0.0	24.4	0.0	100.0	2.86	46.61
	타 자 격 증	136	6.6	24.3	30.9	49.3	19.9	0.0	19.9	0.0	100.0	2.82	45.59
	없 음	658	3.5	24.9	28.4	46.8	24.5	0.2	24.6	0.2	100.0	2.93	48.21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444	5.6	30.4	36.0	42.8	21.2	0.0	21.2	0.0	100.0	2.80	44.88
	6 ~ 10 년	218	1.8	24.8	26.6	49.5	23.9	0.0	23.9	0.0	100.0	2.95	48.85
	11 ~ 15 년	89	4.5	27.0	31.5	46.1	21.3	1.1	22.5	0.0	100.0	2.88	46.91
	16 ~ 20 년	107	1.9	20.6	22.4	40.2	37.4	0.0	37.4	0.0	100.0	3.13	53.27
	21년 이상	128	1.6	18.8	20.3	53.9	25.8	0.0	25.8	0.0	100.0	3.04	50.98
	무 응 답	26	3.8	26.9	30.8	50.0	15.4	0.0	15.4	3.8	100.0	2.80	45.10

【부 록】

표 64. 법의 현실 반영 정도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12	3.4	29.6	33.0	45.9	20.5	0.5	20.9	0.1	100.0	2.85	46.27	
성별	남 자	726	3.0	28.4	31.4	46.4	21.3	0.7	22.0	0.1	100.0	2.88	47.07
	여 자	286	4.2	32.9	37.1	44.8	18.2	0.0	18.2	0.0	100.0	2.77	44.23
연령별	19 ~ 29세	145	4.1	27.6	31.7	51.0	16.6	0.7	17.2	0.0	100.0	2.82	45.52
	30 대	306	3.9	29.1	33.0	47.4	19.3	0.3	19.6	0.0	100.0	2.83	45.75
	40 대	280	3.2	31.4	34.6	44.6	20.4	0.4	20.7	0.0	100.0	2.83	45.80
	50 대	203	1.5	33.0	34.5	39.9	24.6	1.0	25.6	0.0	100.0	2.91	47.66
	60세 이상	78	5.1	20.5	25.6	51.3	21.8	0.0	21.8	1.3	100.0	2.91	47.71
지역별	수도권	586	3.8	31.4	35.2	45.6	18.3	0.9	19.1	0.2	100.0	2.81	45.26
	중부권	197	2.5	24.4	26.9	46.2	26.9	0.0	26.9	0.0	100.0	2.97	49.37
	전라권	79	5.1	27.8	32.9	46.8	20.3	0.0	20.3	0.0	100.0	2.82	45.57
	경상권	127	2.4	33.1	35.4	43.3	21.3	0.0	21.3	0.0	100.0	2.83	45.87
	제주	23	0.0	17.4	17.4	65.2	17.4	0.0	17.4	0.0	100.0	3.00	50.00
분야별	입법	151	2.0	41.1	43.0	40.4	15.9	0.7	16.6	0.0	100.0	2.72	43.05
	행정	212	3.3	23.1	26.4	47.6	25.0	0.9	25.9	0.0	100.0	2.97	49.29
	사법	90	0.0	20.0	20.0	41.1	36.7	1.1	37.8	1.1	100.0	3.19	54.68
	학계	208	3.8	27.4	31.3	46.2	22.6	0.0	22.6	0.0	100.0	2.88	46.88
	민간	231	4.8	34.2	39.0	48.5	12.6	0.0	12.6	0.0	100.0	2.69	42.21
	예비법전문가	120	4.2	29.2	33.3	48.3	17.5	0.8	18.3	0.0	100.0	2.82	45.42
직업별	국회의원	50	2.0	36.0	38.0	50.0	12.0	0.0	12.0	0.0	100.0	2.72	43.00
	국회공무원	50	4.0	46.0	50.0	30.0	18.0	2.0	20.0	0.0	100.0	2.68	42.00
	지방의회 의원	51	0.0	41.2	41.2	41.2	17.6	0.0	17.6	0.0	100.0	2.76	44.12
	국가공무원	112	1.8	23.2	25.0	41.1	32.1	1.8	33.9	0.0	100.0	3.09	52.23
	지방공무원	100	5.0	23.0	28.0	55.0	17.0	0.0	17.0	0.0	100.0	2.84	46.00
	관사	30	0.0	10.0	10.0	46.7	43.3	0.0	43.3	0.0	100.0	3.33	58.33
	검사	30	0.0	26.7	26.7	40.0	30.0	3.3	33.3	0.0	100.0	3.10	52.50
	법원공무원	30	0.0	23.3	23.3	36.7	36.7	0.0	36.7	3.3	100.0	3.13	53.21
	로스쿨교수	69	4.3	33.3	37.7	36.2	26.1	0.0	26.1	0.0	100.0	2.84	46.01
	법학과교수	70	1.4	25.7	27.1	54.3	18.6	0.0	18.6	0.0	100.0	2.90	47.50
	연구원	69	5.8	23.2	29.0	47.8	23.2	0.0	23.2	0.0	100.0	2.88	47.10
	변호사	110	3.6	30.0	33.6	51.8	14.5	0.0	14.5	0.0	100.0	2.77	44.32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5.8	38.0	43.8	45.5	10.7	0.0	10.7	0.0	100.0	2.61	40.29
	로스쿨과정생	60	3.3	23.3	26.7	51.7	20.0	1.7	21.7	0.0	100.0	2.93	48.33
박사과정생	60	5.0	35.0	40.0	45.0	15.0	0.0	15.0	0.0	100.0	2.70	42.5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2.7	25.8	28.5	49.3	21.7	0.5	22.2	0.0	100.0	2.91	47.85
	타자격증	136	5.9	36.8	42.6	44.1	13.2	0.0	13.2	0.0	100.0	2.65	41.18
	없음	658	3.2	29.5	32.7	45.1	21.4	0.6	22.0	0.2	100.0	2.87	46.69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3.8	32.0	35.8	48.4	15.3	0.5	15.8	0.0	100.0	2.77	44.14
	6 ~ 10년	218	1.8	26.6	28.4	44.5	27.1	0.0	27.1	0.0	100.0	2.97	49.20
	11 ~ 15년	89	3.4	32.6	36.0	42.7	21.3	0.0	21.3	0.0	100.0	2.82	45.51
	16 ~ 20년	107	4.7	32.7	37.4	36.4	25.2	0.9	26.2	0.0	100.0	2.85	46.26
	21년 이상	128	2.3	21.1	23.4	50.0	25.0	1.6	26.6	0.0	100.0	3.02	50.59
부 응 답	26	7.7	34.6	42.3	46.2	7.7	0.0	7.7	3.8	100.0	2.57	39.28	

표 65. 자발적인 법 준수의 가능성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12	4.4	27.4	31.8	39.5	25.7	2.9	28.6	0.1	100.0	2.95	48.79	
성별	남 자	726	4.4	26.7	31.1	39.4	26.3	3.0	29.3	0.1	100.0	2.97	49.21
	여 자	286	4.5	29.0	33.6	39.9	24.1	2.4	26.6	0.0	100.0	2.91	47.73
연령별	19 ~ 29 세	145	10.3	28.3	38.6	37.2	18.6	5.5	24.1	0.0	100.0	2.81	45.17
	30 대	306	5.2	28.4	33.7	37.3	26.8	2.3	29.1	0.0	100.0	2.92	48.12
	40 대	280	1.8	26.1	27.9	39.6	28.9	3.6	32.5	0.0	100.0	3.06	51.61
	50 대	203	1.5	28.6	30.0	42.9	25.6	1.5	27.1	0.0	100.0	2.97	49.26
	60 세 이상	78	7.7	23.1	30.8	43.6	23.1	1.3	24.4	1.3	100.0	2.87	46.78
지역별	수 도 권	586	5.1	26.5	31.6	38.7	26.3	3.2	29.5	0.2	100.0	2.96	49.02
	중 부 권	197	5.1	28.4	33.5	35.5	27.9	3.0	31.0	0.0	100.0	2.95	48.86
	전 라 권	79	3.8	20.3	24.1	49.4	25.3	1.3	26.6	0.0	100.0	3.00	50.00
	경 상 권	127	1.6	37.8	39.4	37.8	21.3	1.6	22.8	0.0	100.0	2.83	45.87
	제 주 권	23	0.0	8.7	8.7	69.6	17.4	4.3	21.7	0.0	100.0	3.17	54.35
분야별	입 법	151	3.3	30.5	33.8	38.4	24.5	3.3	27.8	0.0	100.0	2.94	48.51
	행 정	212	2.4	25.9	28.3	42.9	25.0	3.8	28.8	0.0	100.0	3.02	50.47
	사 법	90	2.2	18.9	21.1	51.1	23.3	3.3	26.7	1.1	100.0	3.07	51.65
	학 계	208	3.8	27.4	31.3	36.5	30.3	1.9	32.2	0.0	100.0	2.99	49.76
	민 간	231	6.9	30.3	37.2	35.5	25.1	2.2	27.3	0.0	100.0	2.85	46.32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7.5	26.7	34.2	39.2	23.3	3.3	26.7	0.0	100.0	2.88	47.08
	국 회 의 원	50	4.0	28.0	32.0	44.0	22.0	2.0	24.0	0.0	100.0	2.90	47.50
	국 회 공 무 원	50	4.0	34.0	38.0	20.0	34.0	8.0	42.0	0.0	100.0	3.08	52.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2.0	29.4	31.4	51.0	17.6	0.0	17.6	0.0	100.0	2.84	46.08
	국 가 공 무 원	112	1.8	21.4	23.2	41.1	31.3	4.5	35.7	0.0	100.0	3.15	53.79
	지 방 공 무 원	100	3.0	31.0	34.0	45.0	18.0	3.0	21.0	0.0	100.0	2.87	46.75
	관 사	30	0.0	13.3	13.3	50.0	33.3	3.3	36.7	0.0	100.0	3.27	56.67
	검 사	30	0.0	13.3	13.3	66.7	13.3	6.7	20.0	0.0	100.0	3.13	53.33
	법 원 공 무 원	30	6.7	30.0	36.7	36.7	23.3	0.0	23.3	3.3	100.0	2.80	44.96
	로 스 쿨 교 수	69	2.9	34.8	37.7	36.2	24.6	1.4	26.1	0.0	100.0	2.87	46.74
	법 학 과 교 수	70	2.9	24.3	27.1	37.1	34.3	1.4	35.7	0.0	100.0	3.07	51.79
	연 구 원	69	5.8	23.2	29.0	36.2	31.9	2.9	34.8	0.0	100.0	3.03	50.72
	연 변 호 사	110	8.2	28.2	36.4	32.7	27.3	3.6	30.9	0.0	100.0	2.90	47.50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5.8	32.2	38.0	38.0	23.1	0.8	24.0	0.0	100.0	2.81	45.25
	로 스 쿨 과 정 생	60	6.7	26.7	33.3	36.7	28.3	1.7	30.0	0.0	100.0	2.92	47.92
박 사 과 정 생	60	8.3	26.7	35.0	41.7	18.3	5.0	23.3	0.0	100.0	2.85	46.25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4.1	24.9	29.0	41.2	26.2	3.6	29.9	0.0	100.0	3.00	50.11
	타 자 격 증	136	6.6	32.4	39.0	36.8	23.5	0.7	24.3	0.0	100.0	2.79	44.85
	없 음	658	4.3	27.2	31.5	39.5	25.8	3.0	28.9	0.2	100.0	2.96	49.05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6.5	26.4	32.9	41.4	22.5	3.2	25.7	0.0	100.0	2.89	47.35
	6 ~ 10 년	218	2.8	30.7	33.5	35.8	28.0	2.8	30.7	0.0	100.0	2.97	49.31
	11 ~ 15 년	89	1.1	29.2	30.3	39.3	25.8	4.5	30.3	0.0	100.0	3.03	50.84
	16 ~ 20 년	107	4.7	26.2	30.8	34.6	32.7	1.9	34.6	0.0	100.0	3.01	50.23
	21년 이상	128	1.6	24.2	25.8	46.9	25.0	2.3	27.3	0.0	100.0	3.02	50.59
	무 응 답	26	7.7	30.8	38.5	23.1	34.6	0.0	34.6	3.8	100.0	2.88	47.07



【부 록】

표 66.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가능성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19.5</b>	<b>37.2</b>	<b>56.6</b>	<b>30.4</b>	<b>12.0</b>	<b>0.8</b>	<b>12.7</b>	<b>0.2</b>	<b>100.0</b>	<b>3.63</b>	<b>65.67</b>	
성별	남 자	726	19.3	33.9	53.2	31.4	14.2	1.0	15.2	0.3	100.0	3.57	64.13
	여 자	286	19.9	45.5	65.4	28.0	6.3	0.3	6.6	0.0	100.0	3.78	69.58
연령별	19 ~ 29세	145	28.3	40.7	69.0	20.7	9.0	1.4	10.3	0.0	100.0	3.86	71.38
	30 대	306	20.9	41.2	62.1	27.8	9.8	0.3	10.1	0.0	100.0	3.73	68.14
	40 대	280	20.4	35.4	55.7	30.7	12.9	0.7	13.6	0.0	100.0	3.62	65.45
	50 대	203	12.8	34.5	47.3	37.4	14.3	1.0	15.3	0.0	100.0	3.44	60.96
	60세 이상	78	11.5	28.2	39.7	39.7	16.7	1.3	17.9	2.6	100.0	3.34	58.41
지역별	수도권	586	22.7	36.3	59.0	27.8	12.1	0.9	13.0	0.2	100.0	3.68	67.01
	중부권	197	13.2	45.2	58.4	31.5	9.6	0.5	10.2	0.0	100.0	3.61	65.23
	전라권	79	12.7	35.4	48.1	35.4	13.9	1.3	15.2	1.3	100.0	3.45	61.27
	경상권	127	18.9	32.3	51.2	34.6	13.4	0.8	14.2	0.0	100.0	3.55	63.78
	제주	23	17.4	21.7	39.1	47.8	13.0	0.0	13.0	0.0	100.0	3.43	60.87
분야별	입법	151	13.9	40.4	54.3	33.8	11.9	0.0	11.9	0.0	100.0	3.56	64.07
	행정	212	13.2	35.8	49.1	34.9	15.6	0.5	16.0	0.0	100.0	3.46	61.44
	사법	90	5.6	45.6	51.1	30.0	16.7	1.1	17.8	1.1	100.0	3.38	59.62
	학계	208	23.1	35.6	58.7	29.8	9.6	1.4	11.1	0.5	100.0	3.70	67.38
	민간	231	26.4	34.2	60.6	27.7	11.3	0.4	11.7	0.0	100.0	3.75	68.72
	예비전문가	120	28.3	37.5	65.8	25.0	7.5	1.7	9.2	0.0	100.0	3.83	70.83
직업별	국회의원	50	16.0	40.0	56.0	38.0	6.0	0.0	6.0	0.0	100.0	3.66	66.50
	국회공무원	50	20.0	54.0	74.0	16.0	10.0	0.0	10.0	0.0	100.0	3.84	71.00
	지방의회 의원	51	5.9	27.5	33.3	47.1	19.6	0.0	19.6	0.0	100.0	3.20	54.90
	국가공무원	112	14.3	37.5	51.8	26.8	21.4	0.0	21.4	0.0	100.0	3.45	61.16
	지방공무원	100	12.0	34.0	46.0	44.0	9.0	1.0	10.0	0.0	100.0	3.47	61.75
	관사	30	6.7	40.0	46.7	43.3	10.0	0.0	10.0	0.0	100.0	3.43	60.83
	검사	30	0.0	53.3	53.3	16.7	30.0	0.0	30.0	0.0	100.0	3.23	55.83
	법원공무원	30	10.0	43.3	53.3	30.0	10.0	3.3	13.3	3.3	100.0	3.49	62.19
	로스쿨교수	69	27.5	21.7	49.3	34.8	15.9	0.0	15.9	0.0	100.0	3.61	65.22
	법학과교수	70	17.1	40.0	57.1	30.0	11.4	0.0	11.4	1.4	100.0	3.64	65.94
	연구원	69	24.6	44.9	69.6	24.6	1.4	4.3	5.8	0.0	100.0	3.84	71.01
	변호사	110	27.3	38.2	65.5	24.5	10.0	0.0	10.0	0.0	100.0	3.83	70.68
	법률서비스자격자	121	25.6	30.6	56.2	30.6	12.4	0.8	13.2	0.0	100.0	3.68	66.94
	로스쿨과정생	60	30.0	43.3	73.3	18.3	6.7	1.7	8.3	0.0	100.0	3.93	73.33
박사과정생	60	26.7	31.7	58.3	31.7	8.3	1.7	10.0	0.0	100.0	3.73	68.3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221	19.5	40.7	60.2	25.8	14.0	0.0	14.0	0.0	100.0	3.66	66.40
	타자격증	136	25.0	34.6	59.6	27.9	11.0	1.5	12.5	0.0	100.0	3.71	67.65
	없음	658	18.4	36.6	55.0	32.4	11.4	0.9	12.3	0.3	100.0	3.60	65.09
법 관련 중 사 기 간	1 ~ 5년	444	21.6	39.0	60.6	28.4	9.9	1.1	11.0	0.0	100.0	3.70	67.51
	6 ~ 10년	218	17.9	41.3	59.2	28.0	11.9	0.9	12.8	0.0	100.0	3.63	65.83
	11 ~ 15년	89	15.7	43.8	59.6	30.3	10.1	0.0	10.1	0.0	100.0	3.65	66.29
	16 ~ 20년	107	20.6	26.2	46.7	36.4	16.8	0.0	16.8	0.0	100.0	3.50	62.62
	21년 이상	128	12.5	31.3	43.8	36.7	18.0	0.8	18.8	0.8	100.0	3.37	59.30
	부응답	26	38.5	23.1	61.5	30.8	3.8	0.0	3.8	3.8	100.0	3.99	74.64

표 67.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도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 점)

구 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비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전 체</b>	<b>1,012</b>	<b>3.4</b>	<b>14.2</b>	<b>17.6</b>	<b>31.1</b>	<b>39.9</b>	<b>11.3</b>	<b>51.2</b>	<b>0.1</b>	<b>100.0</b>	<b>2.58</b>	<b>39.61</b>	
성별	남 자	726	3.3	14.2	17.5	31.8	39.7	10.9	50.6	0.1	100.0	2.59	39.83
	여 자	286	3.5	14.3	17.8	29.4	40.6	12.2	52.8	0.0	100.0	2.56	39.07
연령별	19 ~ 29 세	145	2.8	10.3	13.1	26.9	44.8	15.2	60.0	0.0	100.0	2.41	35.17
	30 대	306	2.9	12.1	15.0	33.7	39.2	12.1	51.3	0.0	100.0	2.55	38.64
	40 대	280	2.9	12.5	15.4	30.7	41.1	12.9	53.9	0.0	100.0	2.51	37.86
	50 대	203	4.9	21.7	26.6	29.1	38.4	5.9	44.3	0.0	100.0	2.81	45.32
	60 세 이상	78	3.8	16.7	20.5	35.9	33.3	9.0	42.3	1.3	100.0	2.73	43.14
지역별	수 도 권	586	4.3	12.8	17.1	28.8	41.3	12.6	53.9	0.2	100.0	2.55	38.68
	중 부 권	197	3.0	14.2	17.3	35.0	40.1	7.6	47.7	0.0	100.0	2.65	41.24
	전 라 권	79	0.0	20.3	20.3	32.9	32.9	13.9	46.8	0.0	100.0	2.59	39.87
	경 상 권	127	2.4	16.5	18.9	33.1	37.8	10.2	48.0	0.0	100.0	2.63	40.75
	제 주 권	23	0.0	17.4	17.4	39.1	39.1	4.3	43.5	0.0	100.0	2.70	42.39
분야별	입 법	151	2.0	19.2	21.2	23.8	41.7	13.2	55.0	0.0	100.0	2.55	38.74
	행 정	212	3.3	16.5	19.8	27.8	42.0	10.4	52.4	0.0	100.0	2.60	40.09
	사 법	90	1.1	17.8	18.9	52.2	27.8	0.0	27.8	1.1	100.0	2.92	47.94
	학 계	208	4.3	13.0	17.3	34.1	38.5	10.1	48.6	0.0	100.0	2.63	40.75
	민 간	231	3.0	10.4	13.4	30.3	42.9	13.4	56.3	0.0	100.0	2.47	36.69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120	5.8	10.8	16.7	26.7	40.0	16.7	56.7	0.0	100.0	2.49	37.29
	국 회 의 원	50	0.0	14.0	14.0	22.0	48.0	16.0	64.0	0.0	100.0	2.34	33.50
	국 회 공 무 원	50	6.0	16.0	22.0	22.0	48.0	8.0	56.0	0.0	100.0	2.64	41.00
	지 방 의 회 의 원	51	0.0	27.5	27.5	27.5	29.4	15.7	45.1	0.0	100.0	2.67	41.67
	국 가 공 무 원	112	1.8	13.4	15.2	27.7	45.5	11.6	57.1	0.0	100.0	2.48	37.05
	지 방 공 무 원	100	5.0	20.0	25.0	28.0	38.0	9.0	47.0	0.0	100.0	2.74	43.50
	관 사	30	0.0	16.7	16.7	70.0	13.3	0.0	13.3	0.0	100.0	3.03	50.83
	검 사	30	0.0	20.0	20.0	53.3	26.7	0.0	26.7	0.0	100.0	2.93	48.33
	법 원 공 무 원	30	3.3	16.7	20.0	33.3	43.3	0.0	43.3	3.3	100.0	2.79	44.65
	로 스 쿨 교 수	69	7.2	11.6	18.8	33.3	36.2	11.6	47.8	0.0	100.0	2.67	41.67
	법 학 과 교 수	70	1.4	17.1	18.6	35.7	37.1	8.6	45.7	0.0	100.0	2.66	41.43
	연 구 원	69	4.3	10.1	14.5	33.3	42.0	10.1	52.2	0.0	100.0	2.57	39.13
	연 호 사	110	0.0	9.1	9.1	38.2	43.6	9.1	52.7	0.0	100.0	2.47	36.82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121	5.8	11.6	17.4	23.1	42.1	17.4	59.5	0.0	100.0	2.46	36.57
	로 스 쿨 과 정 생	60	1.7	13.3	15.0	30.0	41.7	13.3	55.0	0.0	100.0	2.48	37.08
박 사 과 정 생	60	10.0	8.3	18.3	23.3	38.3	20.0	58.3	0.0	100.0	2.50	37.50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221	0.5	14.5	14.9	43.9	35.3	5.9	41.2	0.0	100.0	2.68	42.08
	타 자 격 증	136	5.1	10.3	15.4	25.0	44.9	14.7	59.6	0.0	100.0	2.46	36.58
	없 음	658	4.0	14.9	18.8	28.0	40.7	12.3	53.0	0.2	100.0	2.57	39.35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444	2.9	14.2	17.1	30.2	39.9	12.8	52.7	0.0	100.0	2.55	38.63
	6 ~ 10 년	218	2.8	13.3	16.1	33.5	39.9	10.6	50.5	0.0	100.0	2.58	39.45
	11 ~ 15 년	89	3.4	7.9	11.2	29.2	43.8	15.7	59.6	0.0	100.0	2.39	34.83
	16 ~ 20 년	107	3.7	15.0	18.7	32.7	41.1	7.5	48.6	0.0	100.0	2.66	41.59
	21년 이상	128	5.5	20.3	25.8	30.5	38.3	5.5	43.8	0.0	100.0	2.82	45.51
무 응 답	26	3.8	11.5	15.4	30.8	30.8	19.2	50.0	3.8	100.0	2.48	37.10	

【부 록】

표 68.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에 대한 관심 점수

(단위 : 점)

구 분		차원1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인지
전 체		69.53	73.22	64.89	75.35	63.17
성별	남 자	70.97	74.52	66.58	76.00	65.46
	여 자	65.86	69.93	60.58	73.69	57.34
연령별	19 ~ 29 세	65.35	69.48	57.41	74.83	58.28
	30 대	69.42	73.20	64.46	75.74	62.75
	40 대	69.51	73.66	64.46	75.18	63.21
	50 대	73.13	76.85	70.69	75.99	67.36
	60 세 이상	68.42	69.21	66.86	73.72	62.84
지역별	수 도 권	69.43	73.59	64.70	75.21	62.54
	중 부 권	67.78	70.81	62.06	74.87	62.31
	전 라 권	71.45	74.37	70.25	74.05	65.51
	경 상 권	71.32	75.00	66.54	76.97	65.35
	체 주 권	70.48	70.65	66.30	78.26	66.30
분야별	입 법	66.36	69.04	64.90	74.34	54.56
	행 정	65.69	70.40	58.96	74.29	57.19
	사 법	75.86	79.70	70.44	77.50	75.42
	학 계	75.39	80.17	72.84	77.04	69.71
	민 간	69.29	71.32	63.53	76.19	65.58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65.85	70.21	60.00	72.29	59.38
	국 회 의 원	61.66	68.00	57.50	70.50	47.00
	국 회 공 무 원	69.73	72.00	68.00	76.00	61.00
	지 방 의 회 의 원	67.67	67.16	69.12	76.47	55.65
	국 가 공 무 원	66.75	72.54	59.82	73.88	58.71
	지 방 공 무 원	64.50	68.00	58.00	74.75	55.50
	관 사	78.10	83.33	71.67	80.00	76.67
	검 사	80.11	82.50	74.17	82.50	81.67
	법 원 공 무 원	69.36	73.27	65.50	70.01	67.94
	로 스 쿨 교 수	78.53	82.25	76.09	78.99	75.72
	법 학 과 교 수	75.44	79.64	73.57	75.36	71.79
	연 구 원	72.22	78.62	68.84	76.81	61.59
	변 호 사	75.41	78.86	67.27	80.91	74.55
	법률서비스자격자	63.72	64.46	60.12	71.90	57.44
	로 스 쿨 과 정 생	65.25	68.75	58.33	74.58	57.92
박 사 과 정 생	66.46	71.67	61.67	70.00	60.83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76.51	79.86	69.34	80.54	76.24
	타 자 격 증	66.20	67.46	63.05	73.53	59.56
	없 음	67.93	72.22	63.85	74.05	59.54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66.30	69.43	60.70	75.23	58.28
	6 ~ 10 년	71.56	75.92	66.28	76.72	65.89
	11 ~ 15 년	73.29	78.93	71.07	75.28	65.45
	16 ~ 20 년	72.62	76.40	69.86	73.13	70.09
	21년 이상	73.30	76.37	70.51	76.37	68.75
	무 응 답	63.39	67.24	55.38	70.21	60.12

표 69.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에 대한 인식/정서

(단위 : 점)

구 분		차원2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평등, 차별없이 작용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전 체			51.04	33.09	42.09	50.20	40.08	70.45	74.93
성별	남 자		51.80	34.24	43.27	51.07	40.96	70.90	74.72
	여 자		49.11	30.16	39.07	47.99	37.85	69.32	75.44
연령별	19 ~ 29 세		50.65	30.34	41.90	48.45	42.59	68.79	76.72
	30 대		49.94	31.94	40.03	49.02	38.40	70.10	75.16
	40 대		49.74	31.88	40.98	49.82	37.95	68.93	73.30
	50 대		54.38	37.44	46.80	53.20	42.98	73.77	76.35
	60 세 이상		52.09	35.68	42.21	51.61	42.18	71.74	72.76
지역별	수도 권		50.63	32.18	41.07	49.57	39.79	70.17	75.98
	중부 권		51.13	34.90	42.39	51.52	38.71	70.69	72.59
	전라 권		52.40	36.39	45.89	50.32	42.41	70.25	73.42
	경상 권		52.34	33.66	43.70	51.18	41.93	72.24	75.59
	제주		48.85	26.09	43.48	48.91	41.30	66.30	69.57
분야별	입법		50.39	32.45	43.21	48.18	38.41	68.54	77.65
	행정		50.25	32.90	42.33	49.29	37.50	70.52	73.70
	사법		61.21	40.37	54.08	62.22	59.33	75.23	76.67
	학계		51.58	34.50	41.59	51.68	39.90	71.63	74.40
	민간		48.79	30.95	38.74	47.40	36.58	70.35	73.70
	예비법전문가		49.03	30.42	38.54	48.13	39.38	67.29	75.63
직업별	국회의원		50.67	28.00	45.00	51.00	40.00	66.00	79.50
	국회공무원		47.01	29.00	38.00	44.00	32.50	68.00	78.00
	지방의회의원		53.43	40.20	46.57	49.51	42.65	71.57	75.49
	국가공무원		51.71	34.15	43.97	50.45	39.73	71.88	74.55
	지방공무원		48.63	31.50	40.50	48.00	35.00	69.00	72.75
	검사		63.10	37.50	59.17	65.00	60.83	79.17	75.83
	판사		60.84	40.83	51.67	62.50	58.33	72.50	81.67
	법원공무원		59.70	42.77	51.40	59.17	58.84	74.02	72.50
	로스쿨교수		53.66	37.32	43.48	54.35	41.67	76.09	71.74
	법학과교수		52.91	36.43	42.86	52.86	43.57	71.43	73.93
	연구원		48.15	29.71	38.41	47.83	34.42	67.39	77.54
	변호사		52.45	33.18	43.41	52.50	42.95	72.50	73.18
	법률서비스자격자		45.47	28.93	34.50	42.77	30.79	68.39	74.17
로스쿨과정생		50.57	28.75	38.75	50.00	44.17	70.00	75.42	
박사과정생		47.49	32.08	38.33	46.25	34.58	64.58	75.8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55.48	35.97	47.29	56.11	47.96	73.64	74.10
	타자격증		46.98	30.88	36.21	44.49	33.09	68.75	75.00
	없음		50.40	32.54	41.55	49.39	38.89	69.75	75.23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50.13	31.14	41.10	49.21	39.08	69.37	75.96
	6 ~ 10 년		50.13	33.26	41.40	48.74	38.07	70.18	74.08
	11 ~ 15 년		50.14	32.02	39.61	51.12	37.64	70.79	73.88
	16 ~ 20 년		52.56	36.45	46.73	51.17	42.06	69.63	73.60
	21년 이상		55.86	38.48	45.31	55.47	48.05	75.20	75.59
	무응답		47.31	28.20	38.16	46.16	35.20	70.02	70.19

【부 록】

표 70.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에 대한 준수

(단위 : 점)

구 분		차원3	정부의 법준수 정도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기업의 법준수 정도	국민의 법준수 정도
전 체		50.34	50.40	49.46	61.40	30.96	46.32
성별	남 자	50.74	51.03	49.59	62.24	31.14	46.07
	여 자	49.34	48.78	49.13	59.27	30.51	46.94
연령별	19 ~ 29 세	48.82	47.41	45.17	62.76	28.62	44.66
	30 대	50.37	50.16	47.55	62.42	31.29	46.49
	40 대	50.33	51.61	51.70	59.46	29.91	46.96
	50 대	51.51	51.11	52.83	61.95	32.14	47.04
	60 세 이상	50.04	50.65	48.07	60.40	34.69	44.50
지역별	수 도 권	48.96	48.17	46.80	59.92	31.07	46.15
	중 부 권	53.65	57.87	55.46	62.94	31.73	47.34
	전 라 권	49.05	46.84	48.42	60.76	28.48	47.15
	경 상 권	52.57	52.17	52.56	66.34	31.10	45.08
	체 주 권	49.32	45.65	52.17	60.87	29.35	45.65
분야별	입 법	47.29	46.52	49.01	53.97	29.97	47.85
	행 정	54.15	60.97	59.67	59.32	33.37	47.76
	사 법	61.82	61.67	57.49	80.68	39.23	49.96
	학 계	48.50	47.48	45.79	60.22	29.93	45.67
	민 간	47.21	44.59	43.29	60.71	29.55	43.51
	예 비 법 전문 가	48.06	44.38	44.17	63.33	26.25	45.63
직업별	국 회 의 원	47.65	47.50	45.50	56.50	27.50	49.50
	국 회 공 무 원	46.73	47.00	47.00	53.00	29.00	48.50
	지 방 의 회 의 원	47.48	45.10	54.41	52.45	33.33	45.59
	국 가 공 무 원	56.98	68.30	60.71	61.61	35.04	48.88
	지 방 공 무 원	50.99	52.75	58.50	56.75	31.50	46.50
	관 사	64.31	64.17	60.00	89.17	36.67	45.83
	검 사	59.93	61.67	57.50	72.50	40.83	52.50
	법 원 공 무 원	61.21	59.18	54.98	80.38	40.20	51.54
	로 스 쿨 교 수	49.31	47.83	46.01	65.22	27.90	42.39
	법 학 과 교 수	50.48	49.29	47.50	60.71	34.64	48.57
	연 구 원	45.69	45.29	43.84	54.71	27.17	46.01
	변 호 사	52.81	50.00	47.95	70.91	33.18	43.64
	법률서비스자격자	42.12	39.67	39.05	51.45	26.24	43.39
	로 스 쿨 과 정 생	52.10	49.58	49.58	69.58	27.92	45.00
	박 사 과 정 생	44.01	39.17	38.75	57.08	24.58	46.25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56.41	56.11	52.15	74.21	34.95	45.70
	타 자 격 증	43.70	41.18	39.71	54.60	26.84	43.93
	없 음	49.66	50.27	50.46	58.57	30.48	47.03
법 관 중 사 기 간	1 ~ 5 년	49.71	48.87	47.97	61.43	30.57	46.17
	6 ~ 10 년	50.14	50.80	50.92	59.52	30.62	46.90
	11 ~ 15 년	50.06	52.81	50.56	59.55	31.46	43.82
	16 ~ 20 년	50.08	50.93	49.07	61.21	29.21	46.26
	21년 이상	54.13	54.49	52.73	67.19	33.79	47.46
	무 응 답	46.14	42.32	44.21	55.25	31.96	46.97

표 71.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단위 : 점)

구 분	차원4	신체의 자유 보장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b>전 체</b>	<b>64.37</b>	<b>64.16</b>	<b>60.93</b>	<b>67.48</b>	<b>70.37</b>	<b>57.78</b>	<b>65.21</b>	
성별	남 자	65.00	65.07	61.46	68.04	70.58	58.73	65.74
	여 자	62.77	61.85	59.57	66.06	69.83	55.36	63.86
연령별	19 ~ 29 세	62.77	64.31	58.62	66.21	71.03	52.76	63.10
	30 대	64.02	64.13	61.11	67.89	69.69	56.21	64.79
	40 대	63.69	63.18	61.02	65.33	69.54	57.97	64.88
	50 대	66.43	65.59	61.88	69.96	71.04	61.98	67.81
	60 세 이상	65.82	63.82	61.68	69.45	73.02	61.64	65.26
지역별	수도 권	63.23	63.45	59.19	66.62	69.05	56.40	64.28
	중부 권	67.30	66.88	64.72	70.56	73.22	60.41	67.77
	전라 권	62.66	62.97	61.71	64.56	68.99	56.33	61.08
	경상 권	66.78	65.16	62.80	69.09	73.62	62.01	67.91
	제주 권	60.95	57.61	59.78	64.13	66.30	52.17	66.30
분야별	입법	61.18	60.52	56.20	64.14	67.85	56.34	61.69
	행정	67.65	66.04	65.33	70.75	73.58	62.38	67.81
	사법	70.78	72.10	69.29	71.86	74.95	66.20	69.61
	학계	64.30	63.72	61.59	67.27	68.61	58.45	65.94
	민간	63.15	63.31	58.33	67.18	70.24	55.09	64.39
	예비법전문가	60.26	61.88	56.67	63.54	67.71	49.17	62.08
직업별	국회의원	63.66	61.50	60.00	66.00	71.00	59.00	64.50
	국회공무원	59.38	60.28	53.72	61.85	65.91	52.16	61.80
	지방회의원	60.50	59.80	54.90	64.56	66.67	57.84	58.82
	국가공무원	70.60	68.97	69.64	74.11	76.34	64.73	69.87
	지방공무원	64.35	62.75	60.50	67.00	70.50	59.75	65.50
	관사	71.76	72.50	70.00	72.50	76.67	67.50	70.83
	검사	73.42	74.17	73.33	75.83	75.00	69.17	72.50
	법원공무원	67.15	69.64	64.53	67.25	73.18	61.93	65.51
	로스쿨교수	66.66	66.30	64.13	67.75	69.57	63.41	68.48
	법학과교수	64.64	64.33	61.58	68.11	69.58	59.40	64.50
	법학연구원	61.59	60.51	59.06	65.94	66.67	52.54	64.86
	연호사	68.25	69.32	63.64	71.82	73.64	61.59	68.86
	법률서비스자격자	58.52	57.85	53.51	62.95	67.15	49.17	60.33
	로스쿨과정생	62.81	66.67	58.33	65.42	69.17	51.25	65.00
박사과정생	57.71	57.08	55.00	61.67	66.25	47.08	59.1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69.20	69.97	65.89	71.80	74.07	63.38	69.53
	타자격증	59.74	59.56	55.15	63.73	68.01	50.92	60.85
	없음	63.68	63.13	60.48	66.76	69.55	57.28	64.67
법관련 기간	1 ~ 5 년	63.36	63.91	59.01	67.38	69.82	55.91	63.68
	6 ~ 10 년	64.12	63.25	60.94	66.48	69.82	57.95	66.12
	11 ~ 15 년	64.40	64.61	64.33	65.17	70.51	57.30	64.33
	16 ~ 20 년	66.93	65.42	64.95	70.09	71.96	60.51	68.69
	21년 이상	67.62	66.91	63.17	69.47	72.82	63.93	69.06
	무응답	57.01	55.90	54.27	64.81	65.21	48.38	53.47

【부 록】

표 72.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의 실효성 보장

(단위 : 점)

구 분		차원5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이웃 간 분쟁 감소	범죄 감소	공무원 부패 방지	정부 권한 통제
전 체		52.51	54.26	49.88	55.97	51.36	50.20
성별	남 자	53.49	54.52	50.62	57.18	53.00	51.38
	여 자	50.01	53.60	47.99	52.91	47.21	47.20
연령별	19 ~ 29 세	49.36	49.31	45.52	54.31	46.55	49.66
	30 대	50.44	52.29	46.49	54.25	49.18	48.86
	40 대	52.35	54.57	49.37	55.29	52.95	49.02
	50 대	56.67	58.40	56.28	59.51	55.67	53.08
	60 세 이상	56.20	59.35	56.41	59.05	51.94	53.21
지역별	수 도 권	51.03	53.52	48.51	55.36	48.30	48.21
	중 부 권	55.99	55.46	52.66	57.61	57.87	56.09
	전 라 권	51.92	55.06	50.95	51.58	52.53	49.37
	경 상 권	53.82	55.71	49.80	58.27	53.54	50.79
	체 주 권	55.26	52.17	57.61	59.78	57.61	50.00
분야별	입 법	50.42	51.85	49.50	53.52	50.01	46.86
	행 정	56.07	54.60	50.94	57.90	60.38	56.49
	사 법	62.29	64.49	56.94	63.96	63.90	61.39
	학 계	51.33	53.75	49.88	55.20	47.72	48.92
	민 간	49.96	53.03	47.84	55.63	46.21	45.67
직업별	예 비 법 전문 가	48.45	52.29	47.08	51.67	43.96	45.83
	국 회 의 원	49.71	49.50	49.00	53.50	50.50	46.00
	국 회 공 무 원	47.72	49.59	43.50	50.62	48.03	46.00
	지 방 의 회 의 원	53.77	56.37	55.88	56.37	51.47	48.53
	국 가 공 무 원	57.61	54.69	50.89	60.27	60.94	60.71
	지 방 공 무 원	54.35	54.50	51.00	55.25	59.75	51.75
	관 사	62.88	61.67	57.50	65.83	66.67	62.50
	검 사	63.58	67.50	60.83	65.00	60.83	62.50
	법 원 공 무 원	60.40	64.31	52.50	61.03	64.21	59.17
	로 스 쿨 교 수	54.20	55.07	56.16	60.14	50.00	48.91
	법 학 과 교 수	55.80	60.78	51.43	57.94	52.52	54.65
	연 구 원	43.94	45.29	42.03	47.46	40.58	43.12
	변 호 사	52.65	55.23	46.82	57.05	51.82	50.91
	법률서비스자격자	47.51	51.03	48.76	54.34	41.12	40.91
	로 스 쿨 과 정 생	52.16	54.17	50.83	53.33	50.00	51.67
박 사 과 정 생	44.73	50.42	43.33	50.00	37.92	4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55.63	57.94	50.68	59.42	54.76	54.07
	타 자 격 증	48.97	53.13	50.00	54.78	43.20	42.46
	없 음	52.18	53.32	49.58	55.03	51.87	50.46
법 관련 기간	1 ~ 5 년	51.09	53.21	47.69	54.67	49.89	48.93
	6 ~ 10 년	51.56	53.23	48.39	54.27	51.84	49.43
	11 ~ 15 년	50.29	51.97	45.22	55.06	47.47	50.00
	16 ~ 20 년	55.92	56.54	57.01	59.35	54.67	51.87
	21년 이상	59.36	61.17	57.81	62.35	58.41	56.45
	무 응 답	44.56	45.36	47.11	50.23	37.55	41.35

표 73.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법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단위 : 점)

구 분		차원6	국회의 공정한 입법	법원의 공정한 판결	정부의 공정한 집행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전 체		37.83	32.09	43.81	37.64	34.99
성별	남 자	38.71	32.78	45.44	37.81	35.67
	여 자	35.61	30.36	39.66	37.19	33.25
연령별	19 ~ 29 세	36.03	30.52	41.38	35.52	34.14
	30 대	38.10	31.05	45.02	37.09	35.95
	40 대	36.16	30.38	41.59	36.83	33.25
	50 대	39.55	35.50	45.29	39.84	35.02
	60 세 이상	41.66	36.40	47.68	40.87	38.91
지역별	수도 권	36.84	32.56	42.20	35.69	34.44
	중부 권	38.84	30.58	44.16	42.51	35.41
	전라 권	39.92	34.18	48.10	38.29	35.44
	경상 권	38.85	30.12	47.24	38.58	35.43
	제주 권	41.75	36.96	47.83	38.04	41.30
분야별	입법	37.09	41.48	38.54	37.17	31.03
	행정	38.84	30.90	40.68	45.40	37.15
	사법	53.05	37.30	67.71	46.81	53.17
	학계	35.82	30.44	43.00	34.32	32.26
	민간	34.89	28.35	42.32	32.14	33.23
직업별	예비 법전문가	34.72	28.54	42.29	33.96	30.63
	국회의원	40.88	47.00	42.50	41.00	33.00
	국회공무원	30.94	34.64	33.88	30.25	24.20
	지방의회 의원	39.39	42.79	39.22	40.20	35.78
	국가공무원	40.47	29.91	41.07	49.78	40.18
	지방공무원	37.02	32.00	40.25	40.50	33.75
	관사	58.08	42.50	77.50	51.67	51.67
	검사	55.35	35.83	62.50	49.17	69.17
	법원공무원	45.72	33.57	63.13	39.59	38.67
	로스쿨교수	37.01	28.26	48.55	34.06	31.88
	법학과교수	40.15	35.82	46.34	39.11	36.57
	연구원	30.24	27.17	34.06	29.71	28.26
	변호사	40.37	31.36	52.50	35.45	36.59
	법률서비스자격자	29.90	25.62	33.06	29.13	30.17
	로스쿨과정생	38.47	31.25	47.92	36.67	33.75
박사과정생	30.97	25.83	36.67	31.25	27.5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45.52	33.63	57.66	41.35	43.60
	타자격증	30.76	25.74	35.85	29.04	29.96
	없음	36.69	32.82	40.86	38.07	33.09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37.13	31.98	43.24	36.43	34.07
	6 ~ 10 년	36.95	31.49	41.37	38.36	34.45
	11 ~ 15 년	35.60	27.81	41.01	34.83	35.96
	16 ~ 20 년	38.15	32.01	44.16	38.32	35.28
	21년 이상	43.93	36.97	53.27	42.68	38.55
	무응답	33.41	30.08	35.34	34.14	33.08



【부 록】

표 74. 법의식 점수 \_ 2016년 기준 - 법의식에 대한 판단

(단위 : 점)

구 분		차원7	국민 법의식 수준	법의 시의성	자발적인 법 준수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비준법자 존경
전 체		48.52	47.58	46.27	48.79	65.67	39.61
성별	남 자	48.70	47.86	47.07	49.21	64.13	39.83
	여 자	48.05	46.85	44.23	47.73	69.58	39.07
연령별	19 ~ 29 세	46.27	42.24	45.52	45.17	71.38	35.17
	30 대	48.21	46.73	45.75	48.12	68.14	38.64
	40 대	48.89	48.30	45.80	51.61	65.45	37.86
	50 대	50.33	51.97	47.66	49.26	60.96	45.32
	60 세 이상	47.88	46.76	47.71	46.78	58.41	43.14
지역별	수 도 권	48.10	46.45	45.26	49.02	67.01	38.68
	중 부 권	50.11	50.38	49.37	48.86	65.23	41.24
	전 라 권	48.22	48.10	45.57	50.00	61.27	39.87
	경 상 권	47.53	46.85	45.87	45.87	63.78	40.75
	체 주 권	52.06	54.35	50.00	54.35	60.87	42.39
분야별	입 법	47.03	46.19	43.05	48.51	64.07	38.74
	행 정	50.02	51.53	49.29	50.47	61.44	40.09
	사 법	52.62	51.08	54.68	51.65	59.62	47.94
	학 계	49.16	46.88	46.88	49.76	67.38	40.75
	민 간	46.38	45.35	42.21	46.32	68.72	36.69
직업별	예 비 법 전문 가	47.66	45.21	45.42	47.08	70.83	37.29
	국 회 의 원	45.57	43.50	43.00	47.50	66.50	33.50
	국 회 공 무 원	48.66	45.00	42.00	52.00	71.00	41.00
	지 방 의 회 의 원	46.87	50.00	44.12	46.08	54.90	41.67
	국 가 공 무 원	50.86	51.34	52.23	53.79	61.16	37.05
	지 방 공 무 원	49.08	51.75	46.00	46.75	61.75	43.50
	관 사	54.53	47.50	58.33	56.67	60.83	50.83
	검 사	52.02	50.83	52.50	53.33	55.83	48.33
	법 원 공 무 원	51.31	54.92	53.21	44.96	62.19	44.65
	로 스 쿨 교 수	48.02	46.38	46.01	46.74	65.22	41.67
	법 학 과 교 수	50.17	48.93	47.50	51.79	65.94	41.43
	연 구 원	49.28	45.29	47.10	50.72	71.01	39.13
	변 호 사	47.30	44.77	44.32	47.50	70.68	36.82
	법률서비스자격자	45.54	45.87	40.29	45.25	66.94	36.57
	로 스 쿨 과 정 생	48.32	42.92	48.33	47.92	73.33	37.08
박 사 과 정 생	47.00	47.50	42.50	46.25	68.33	37.5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49.52	46.61	47.85	50.11	66.40	42.08
	타 자 격 증	45.69	45.59	41.18	44.85	67.65	36.58
	없 음	48.69	48.21	46.69	49.05	65.09	39.35
법 관 중 사 간	1 ~ 5 년	47.15	44.88	44.14	47.35	67.51	38.63
	6 ~ 10 년	49.60	48.85	49.20	49.31	65.83	39.45
	11 ~ 15 년	47.90	46.91	45.51	50.84	66.29	34.83
	16 ~ 20 년	50.07	53.27	46.26	50.23	62.62	41.59
	21년 이상	50.91	50.98	50.59	50.59	59.30	45.51
	무 응 답	46.67	45.10	39.28	47.07	74.64	37.10

표75. 법의식 점수\_2016년 기준 - 전체 법의식 점수

(단위 : 점)

구 분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 체		52.98	69.53	51.04	50.34	64.37	52.51	37.83	48.52
성별	남 자	53.73	70.97	51.80	50.74	65.00	53.49	38.71	48.70
	여 자	51.07	65.86	49.11	49.34	62.77	50.01	35.61	48.05
연령별	19 ~ 29 세	50.91	65.35	50.65	48.82	62.77	49.36	36.03	46.27
	30 대	52.49	69.42	49.94	50.37	64.02	50.44	38.10	48.21
	40 대	52.40	69.51	49.74	50.33	63.69	52.35	36.16	48.89
	50 대	55.44	73.13	54.38	51.51	66.43	56.67	39.55	50.33
	60 세 이상	54.40	68.42	52.09	50.04	65.82	56.20	41.66	47.88
지역별	수도 권	52.06	69.43	50.63	48.96	63.23	51.03	36.84	48.10
	중부 권	54.70	67.78	51.13	53.65	67.30	55.99	38.84	50.11
	전라 권	53.10	71.45	52.40	49.05	62.66	51.92	39.92	48.22
	경상 권	54.38	71.32	52.34	52.57	66.78	53.82	38.85	47.53
	제주 권	53.54	70.48	48.85	49.32	60.95	55.26	41.75	52.06
분야별	입법	50.90	66.36	50.39	47.29	61.18	50.42	37.09	47.03
	행정	54.52	65.69	50.25	54.15	67.65	56.07	38.84	50.02
	사법	62.44	75.86	61.21	61.82	70.78	62.29	53.05	52.62
	학계	52.92	75.39	51.58	48.50	64.30	51.33	35.82	49.16
	민간	50.86	69.29	48.79	47.21	63.15	49.96	34.89	46.38
	예비법전문가	49.96	65.85	49.03	48.06	60.26	48.45	34.72	47.66
직업별	국회의원	51.40	61.66	50.67	47.65	63.66	49.71	40.88	45.57
	국회공무원	49.08	69.73	47.01	46.73	59.38	47.72	30.94	48.66
	지방의회의원	52.20	67.67	53.43	47.48	60.50	53.77	39.39	46.87
	국가공무원	56.40	66.75	51.71	56.98	70.60	57.61	40.47	50.86
	지방공무원	52.42	64.50	48.63	50.99	64.35	54.35	37.02	49.08
	관사	64.68	78.10	63.10	64.31	71.76	62.88	58.08	54.53
	감사	63.65	80.11	60.84	59.93	73.42	63.58	55.35	52.02
	법원공무원	58.99	69.36	59.70	61.21	67.15	60.40	45.72	51.31
	로스쿨교수	54.59	78.53	53.66	49.31	66.66	54.20	37.01	48.02
	법학과교수	55.00	75.44	52.91	50.48	64.64	55.80	40.15	50.17
	연구원	49.13	72.22	48.15	45.69	61.59	43.94	30.24	49.28
	변호사	55.25	75.41	52.45	52.81	68.25	52.65	40.37	47.30
	법률서비스자격자	46.86	63.72	45.47	42.12	58.52	47.51	29.90	45.54
	로스쿨과정생	52.46	65.25	50.57	52.10	62.81	52.16	38.47	48.32
	박사과정생	47.46	66.46	47.49	44.01	57.71	44.73	30.97	47.0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58.05	76.51	55.48	56.41	69.20	55.63	45.52	49.52
	타자격증	48.16	66.20	46.98	43.70	59.74	48.97	30.76	45.69
	없음	52.26	67.93	50.40	49.66	63.68	52.18	36.69	48.69
법관련사 기간	1 ~ 5년	51.76	66.30	50.13	49.71	63.36	51.09	37.13	47.15
	6 ~ 10년	52.83	71.56	50.13	50.14	64.12	51.56	36.95	49.60
	11 ~ 15년	52.44	73.29	50.14	50.06	64.40	50.29	35.60	47.90
	16 ~ 20년	54.67	72.62	52.56	50.08	66.93	55.92	38.15	50.07
	21년 이상	57.51	73.30	55.86	54.13	67.62	59.36	43.93	50.91
	무응답	47.67	63.39	47.31	46.14	57.01	44.56	33.41	46.67

【부 록】

표 76.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에 대한 관심 점수

(단위 : 점)

구 분		차원1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인지
전 체		69.38	73.22	64.89	75.35	63.17
성별	남 자	70.86	74.52	66.58	76.00	65.46
	여 자	65.61	69.93	60.58	73.69	57.34
연령별	19 ~ 29 세	65.32	69.48	57.41	74.83	58.28
	30 대	69.26	73.20	64.46	75.74	62.75
	40 대	69.39	73.66	64.46	75.18	63.21
	50 대	72.90	76.85	70.69	75.99	67.36
	60 세 이상	68.15	69.21	66.86	73.72	62.84
지역별	수 도 권	69.25	73.59	64.70	75.21	62.54
	중 부 권	67.74	70.81	62.06	74.87	62.31
	전 라 권	71.14	74.37	70.25	74.05	65.51
	경 상 권	71.20	75.00	66.54	76.97	65.35
	체 주 권	70.42	70.65	66.30	78.26	66.30
분야별	입 법	65.70	69.04	64.90	74.34	54.56
	행 정	65.51	70.40	58.96	74.29	57.19
	사 법	76.12	79.70	70.44	77.50	75.42
	학 계	75.18	80.17	72.84	77.04	69.71
	민 간	69.35	71.32	63.53	76.19	65.58
직업별	예 비 법 전 문 가	65.76	70.21	60.00	72.29	59.38
	국 회 의 원	60.97	68.00	57.50	70.50	47.00
	국 회 공 무 원	69.28	72.00	68.00	76.00	61.00
	지 방 의 회 의 원	66.83	67.16	69.12	76.47	55.65
	국 가 공 무 원	66.61	72.54	59.82	73.88	58.71
	지 방 공 무 원	64.27	68.00	58.00	74.75	55.50
	관 사	78.35	83.33	71.67	80.00	76.67
	검 사	80.52	82.50	74.17	82.50	81.67
	법 원 공 무 원	69.48	73.27	65.50	70.01	67.94
	로 스 쿨 교 수	78.49	82.25	76.09	78.99	75.72
	법 학 과 교 수	75.32	79.64	73.57	75.36	71.79
	연 구 원	71.74	78.62	68.84	76.81	61.59
	변 호 사	75.78	78.86	67.27	80.91	74.55
	법률서비스자격자	63.51	64.46	60.12	71.90	57.44
	로 스 쿨 과 정 생	65.15	68.75	58.33	74.58	57.92
박 사 과 정 생	66.37	71.67	61.67	70.00	60.83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76.87	79.86	69.34	80.54	76.24
	타 자 격 증	65.94	67.46	63.05	73.53	59.56
	없 음	67.62	72.22	63.85	74.05	59.54
법 관 관 사 기 간	1 ~ 5 년	66.09	69.43	60.70	75.23	58.28
	6 ~ 10 년	71.49	75.92	66.28	76.72	65.89
	11 ~ 15 년	72.93	78.93	71.07	75.28	65.45
	16 ~ 20 년	72.62	76.40	69.86	73.13	70.09
	21년 이상	73.17	76.37	70.51	76.37	68.75
	무 응 답	63.60	67.24	55.38	70.21	60.12

표 77.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에 대한 인식/정서

(단위 : 점)

구 분		차원2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평등, 차별없이 작용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전 체			51.99	33.09	42.09	50.20	40.08	70.45	74.93
성별	남 자	52.72	34.24	43.27	51.07	40.96	70.90	74.72	
	여 자	50.12	30.16	39.07	47.99	37.85	69.32	75.44	
연령별	19 ~ 29 세	51.63	30.34	41.90	48.45	42.59	68.79	76.72	
	30 대	50.93	31.94	40.03	49.02	38.40	70.10	75.16	
	40 대	50.65	31.88	40.98	49.82	37.95	68.93	73.30	
	50 대	55.31	37.44	46.80	53.20	42.98	73.77	76.35	
	60 세 이상	52.96	35.68	42.21	51.61	42.18	71.74	72.76	
지역별	수도 권	51.61	32.18	41.07	49.57	39.79	70.17	75.98	
	중부 권	52.00	34.90	42.39	51.52	38.71	70.69	72.59	
	전라 권	53.31	36.39	45.89	50.32	42.41	70.25	73.42	
	경상 권	53.30	33.66	43.70	51.18	41.93	72.24	75.59	
	제주 권	49.68	26.09	43.48	48.91	41.30	66.30	69.57	
분야별	입법	51.43	32.45	43.21	48.18	38.41	68.54	77.65	
	행정	51.23	32.90	42.33	49.29	37.50	70.52	73.70	
	사법	61.79	40.37	54.08	62.22	59.33	75.23	76.67	
	학계	52.49	34.50	41.59	51.68	39.90	71.63	74.40	
	민간	49.82	30.95	38.74	47.40	36.58	70.35	73.70	
	예비법전문가	49.97	30.42	38.54	48.13	39.38	67.29	75.63	
직업별	국회의원	51.60	28.00	45.00	51.00	40.00	66.00	79.50	
	국회공무원	48.21	29.00	38.00	44.00	32.50	68.00	78.00	
	지방의회의원	54.41	40.20	46.57	49.51	42.65	71.57	75.49	
	국가공무원	52.68	34.15	43.97	50.45	39.73	71.88	74.55	
	지방공무원	49.62	31.50	40.50	48.00	35.00	69.00	72.75	
	관사	63.69	37.50	59.17	65.00	60.83	79.17	75.83	
	검사	61.42	40.83	51.67	62.50	58.33	72.50	81.67	
	법원공무원	60.25	42.77	51.40	59.17	58.84	74.02	72.50	
	로스쿨교수	54.53	37.32	43.48	54.35	41.67	76.09	71.74	
	법학과교수	53.73	36.43	42.86	52.86	43.57	71.43	73.93	
	법학연구원	49.18	29.71	38.41	47.83	34.42	67.39	77.54	
	연호사	53.32	33.18	43.41	52.50	42.95	72.50	73.18	
	법률서비스자격자	46.64	28.93	34.50	42.77	30.79	68.39	74.17	
	로스쿨과정생	51.47	28.75	38.75	50.00	44.17	70.00	75.42	
박사과정생	48.47	32.08	38.33	46.25	34.58	64.58	75.83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56.25	35.97	47.29	56.11	47.96	73.64	74.10	
	타자격증	48.10	30.88	36.21	44.49	33.09	68.75	75.00	
	없음	51.36	32.54	41.55	49.39	38.89	69.75	75.23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51.11	31.14	41.10	49.21	39.08	69.37	75.96	
	6 ~ 10 년	51.12	33.26	41.40	48.74	38.07	70.18	74.08	
	11 ~ 15 년	51.05	32.02	39.61	51.12	37.64	70.79	73.88	
	16 ~ 20 년	53.44	36.45	46.73	51.17	42.06	69.63	73.60	
	21년 이상	56.68	38.48	45.31	55.47	48.05	75.20	75.59	
	무응답	48.33	28.20	38.16	46.16	35.20	70.02	70.19	

【부 록】

표 78.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에 대한 준수

(단위 : 점)

구 분		차원3	정부의 법준수 정도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기업의 법준수 정도	국민의 법준수 정도
전 체		48.88	50.40	49.46	61.40	30.96	46.32
성별	남 자	49.21	51.03	49.59	62.24	31.14	46.07
	여 자	48.05	48.78	49.13	59.27	30.51	46.94
연령별	19 ~ 29 세	47.22	47.41	45.17	62.76	28.62	44.66
	30 대	48.90	50.16	47.55	62.42	31.29	46.49
	40 대	48.94	51.61	51.70	59.46	29.91	46.96
	50 대	50.05	51.11	52.83	61.95	32.14	47.04
	60 세 이상	48.65	50.65	48.07	60.40	34.69	44.50
지역별	수 도 권	47.65	48.17	46.80	59.92	31.07	46.15
	중 부 권	51.98	57.87	55.46	62.94	31.73	47.34
	전 라 권	47.68	46.84	48.42	60.76	28.48	47.15
	경 상 권	50.70	52.17	52.56	66.34	31.10	45.08
	체 주 권	47.87	45.65	52.17	60.87	29.35	45.65
분야별	입 법	46.38	46.52	49.01	53.97	29.97	47.85
	행 정	52.67	60.97	59.67	59.32	33.37	47.76
	사 법	59.42	61.67	57.49	80.68	39.23	49.96
	학 계	47.14	47.48	45.79	60.22	29.93	45.67
	민 간	45.76	44.59	43.29	60.71	29.55	43.51
직업별	예 비 법 전문 가	46.48	44.38	44.17	63.33	26.25	45.63
	국 회 의 원	46.64	47.50	45.50	56.50	27.50	49.50
	국 회 공 무 원	45.90	47.00	47.00	53.00	29.00	48.50
	지 방 의 회 의 원	46.60	45.10	54.41	52.45	33.33	45.59
	국 가 공 무 원	55.33	68.30	60.71	61.61	35.04	48.88
	지 방 공 무 원	49.69	52.75	58.50	56.75	31.50	46.50
	관 사	61.06	64.17	60.00	89.17	36.67	45.83
	검 사	58.18	61.67	57.50	72.50	40.83	52.50
	법 원 공 무 원	59.01	59.18	54.98	80.38	40.20	51.54
	로 스 쿨 교 수	47.41	47.83	46.01	65.22	27.90	42.39
	법 학 과 교 수	49.33	49.29	47.50	60.71	34.64	48.57
	연 구 원	44.64	45.29	43.84	54.71	27.17	46.01
	변 호 사	50.75	50.00	47.95	70.91	33.18	43.64
	법률서비스자격자	41.23	39.67	39.05	51.45	26.24	43.39
	로 스 쿨 과 정 생	50.03	49.58	49.58	69.58	27.92	45.00
박 사 과 정 생	42.92	39.17	38.75	57.08	24.58	46.25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54.17	56.11	52.15	74.21	34.95	45.70
	타 자 격 증	42.65	41.18	39.71	54.60	26.84	43.93
	없 음	48.38	50.27	50.46	58.57	30.48	47.03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 년	48.28	48.87	47.97	61.43	30.57	46.17
	6 ~ 10 년	48.79	50.80	50.92	59.52	30.62	46.90
	11 ~ 15 년	48.53	52.81	50.56	59.55	31.46	43.82
	16 ~ 20 년	48.57	50.93	49.07	61.21	29.21	46.26
	21년 이상	52.38	54.49	52.73	67.19	33.79	47.46
	무 응 답	45.30	42.32	44.21	55.25	31.96	46.97

표 79.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단위 : 점)

구분	차원4	신체의 자유 보장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b>전체</b>		<b>64.07</b>	<b>64.16</b>	<b>60.93</b>	<b>67.48</b>	<b>70.37</b>	<b>57.78</b>	<b>65.21</b>
성별	남자	64.71	65.07	61.46	68.04	70.58	58.73	65.74
	여자	62.44	61.85	59.57	66.06	69.83	55.36	63.86
연령별	19 ~ 29 세	62.30	64.31	58.62	66.21	71.03	52.76	63.10
	30 대	63.67	64.13	61.11	67.89	69.69	56.21	64.79
	40 대	63.41	63.18	61.02	65.33	69.54	57.97	64.88
	50 대	66.22	65.59	61.88	69.96	71.04	61.98	67.81
	60 세 이상	65.61	63.82	61.68	69.45	73.02	61.64	65.26
지역별	수도권	62.92	63.45	59.19	66.62	69.05	56.40	64.28
	중부권	66.98	66.88	64.72	70.56	73.22	60.41	67.77
	전라권	62.32	62.97	61.71	64.56	68.99	56.33	61.08
	경상권	66.55	65.16	62.80	69.09	73.62	62.01	67.91
	제주	60.65	57.61	59.78	64.13	66.30	52.17	66.30
분야별	입법	60.94	60.52	56.20	64.14	67.85	56.34	61.69
	행정	67.40	66.04	65.33	70.75	73.58	62.38	67.81
	사법	70.50	72.10	69.29	71.86	74.95	66.20	69.61
	학계	64.04	63.72	61.59	67.27	68.61	58.45	65.94
	민간	62.80	63.31	58.33	67.18	70.24	55.09	64.39
	예비법전문가	59.77	61.88	56.67	63.54	67.71	49.17	62.08
직업별	국회의원	63.44	61.50	60.00	66.00	71.00	59.00	64.50
	국회공무원	59.05	60.28	53.72	61.85	65.91	52.16	61.80
	지방의회의원	60.34	59.80	54.90	64.56	66.67	57.84	58.82
	국가공무원	70.33	68.97	69.64	74.11	76.34	64.73	69.87
	지방공무원	64.13	62.75	60.50	67.00	70.50	59.75	65.50
	관사	71.49	72.50	70.00	72.50	76.67	67.50	70.83
	검사	73.18	74.17	73.33	75.83	75.00	69.17	72.50
	법원공무원	66.82	69.64	64.53	67.25	73.18	61.93	65.51
	로스쿨교수	66.49	66.30	64.13	67.75	69.57	63.41	68.48
	법학과교수	64.38	64.33	61.58	68.11	69.58	59.40	64.50
	법학연구원	61.24	60.51	59.06	65.94	66.67	52.54	64.86
	연호사	67.93	69.32	63.64	71.82	73.64	61.59	68.86
	법률서비스자격자	58.13	57.85	53.51	62.95	67.15	49.17	60.33
	로스쿨과정생	62.28	66.67	58.33	65.42	69.17	51.25	65.00
박사과정생	57.26	57.08	55.00	61.67	66.25	47.08	59.17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68.90	69.97	65.89	71.80	74.07	63.38	69.53
	타자격증	59.36	59.56	55.15	63.73	68.01	50.92	60.85
	없음	63.39	63.13	60.48	66.76	69.55	57.28	64.67
법관련 기간	1 ~ 5 년	63.02	63.91	59.01	67.38	69.82	55.91	63.68
	6 ~ 10 년	63.85	63.25	60.94	66.48	69.82	57.95	66.12
	11 ~ 15 년	64.05	64.61	64.33	65.17	70.51	57.30	64.33
	16 ~ 20 년	66.66	65.42	64.95	70.09	71.96	60.51	68.69
	21년 이상	67.43	66.91	63.17	69.47	72.82	63.93	69.06
	무응답	56.63	55.90	54.27	64.81	65.21	48.38	53.47

【부 록】

표 80.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의 실효성 보장

(단위 : 점)

구 분		차원5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이웃 간 분쟁 감소	범죄 감소	공무원 부패 방지	정부 권한 통제
전 체		52.60	54.26	49.88	55.97	51.36	50.20
성별	남 자	53.58	54.52	50.62	57.18	53.00	51.38
	여 자	50.10	53.60	47.99	52.91	47.21	47.20
연령별	19 ~ 29 세	49.36	49.31	45.52	54.31	46.55	49.66
	30 대	50.52	52.29	46.49	54.25	49.18	48.86
	40 대	52.49	54.57	49.37	55.29	52.95	49.02
	50 대	56.77	58.40	56.28	59.51	55.67	53.08
	60 세 이상	56.25	59.35	56.41	59.05	51.94	53.21
지역별	수 도 권	51.12	53.52	48.51	55.36	48.30	48.21
	중 부 권	56.03	55.46	52.66	57.61	57.87	56.09
	전 라 권	52.03	55.06	50.95	51.58	52.53	49.37
	경 상 권	53.95	55.71	49.80	58.27	53.54	50.79
	체 주 권	55.36	52.17	57.61	59.78	57.61	50.00
분야별	입 법	50.53	51.85	49.50	53.52	50.01	46.86
	행 정	56.14	54.60	50.94	57.90	60.38	56.49
	사 법	62.40	64.49	56.94	63.96	63.90	61.39
	학 계	51.39	53.75	49.88	55.20	47.72	48.92
	민 간	50.08	53.03	47.84	55.63	46.21	45.67
	예 비 법 전문 가	48.51	52.29	47.08	51.67	43.96	45.83
직업별	국 회 의 원	49.82	49.50	49.00	53.50	50.50	46.00
	국 회 공 무 원	47.82	49.59	43.50	50.62	48.03	46.00
	지 방 의 회 의 원	53.88	56.37	55.88	56.37	51.47	48.53
	국 가 공 무 원	57.60	54.69	50.89	60.27	60.94	60.71
	지 방 공 무 원	54.50	54.50	51.00	55.25	59.75	51.75
	관 사	62.97	61.67	57.50	65.83	66.67	62.50
	검 사	63.64	67.50	60.83	65.00	60.83	62.50
	법 원 공 무 원	60.58	64.31	52.50	61.03	64.21	59.17
	로 스 쿨 교 수	54.28	55.07	56.16	60.14	50.00	48.91
	법 학 과 교 수	55.88	60.78	51.43	57.94	52.52	54.65
	연 구 원	43.95	45.29	42.03	47.46	40.58	43.12
	변 호 사	52.77	55.23	46.82	57.05	51.82	50.91
	법률서비스자격자	47.63	51.03	48.76	54.34	41.12	40.91
	로 스 쿨 과 정 생	52.18	54.17	50.83	53.33	50.00	51.67
박 사 과 정 생	44.85	50.42	43.33	50.00	37.92	40.00	
법률 관련 자격증	변 호 사 자 격 증	55.72	57.94	50.68	59.42	54.76	54.07
	타 자 격 증	49.11	53.13	50.00	54.78	43.20	42.46
	없 음	52.26	53.32	49.58	55.03	51.87	50.46
법 관련 기간	1 ~ 5 년	51.18	53.21	47.69	54.67	49.89	48.93
	6 ~ 10 년	51.66	53.23	48.39	54.27	51.84	49.43
	11 ~ 15 년	50.33	51.97	45.22	55.06	47.47	50.00
	16 ~ 20 년	56.01	56.54	57.01	59.35	54.67	51.87
	21년 이상	59.46	61.17	57.81	62.35	58.41	56.45
	무 응 답	44.55	45.36	47.11	50.23	37.55	41.35

표 81.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법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단위 : 점)

구 분		차원6	국회의 공정한 입법	법원의 공정한 판결	정부의 공정한 집행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전 체		37.35	32.09	43.81	37.64	34.99
성별	남 자	38.19	32.78	45.44	37.81	35.67
	여 자	35.24	30.36	39.66	37.19	33.25
연령별	19 ~ 29 세	35.62	30.52	41.38	35.52	34.14
	30 대	37.58	31.05	45.02	37.09	35.95
	40 대	35.70	30.38	41.59	36.83	33.25
	50 대	39.06	35.50	45.29	39.84	35.02
	60 세 이상	41.20	36.40	47.68	40.87	38.91
지역별	수도 권	36.43	32.56	42.20	35.69	34.44
	중부 권	38.31	30.58	44.16	42.51	35.41
	전라 권	39.29	34.18	48.10	38.29	35.44
	경상 권	38.18	30.12	47.24	38.58	35.43
	제주 권	41.38	36.96	47.83	38.04	41.30
분야별	입법	36.90	41.48	38.54	37.17	31.03
	행정	38.53	30.90	40.68	45.40	37.15
	사법	52.11	37.30	67.71	46.81	53.17
	학계	35.28	30.44	43.00	34.32	32.26
	민간	34.38	28.35	42.32	32.14	33.23
직업별	예비 법전문가	34.12	28.54	42.29	33.96	30.63
	국회의원	40.66	47.00	42.50	41.00	33.00
	국회공무원	30.65	34.64	33.88	30.25	24.20
	지방의회 의원	39.34	42.79	39.22	40.20	35.78
	국가공무원	40.20	29.91	41.07	49.78	40.18
	지방공무원	36.66	32.00	40.25	40.50	33.75
	관사	56.71	42.50	77.50	51.67	51.67
	검사	55.14	35.83	62.50	49.17	69.17
	법원공무원	44.47	33.57	63.13	39.59	38.67
	로스쿨교수	36.15	28.26	48.55	34.06	31.88
	법학과교수	39.67	35.82	46.34	39.11	36.57
	연구원	29.94	27.17	34.06	29.71	28.26
	변호사	39.54	31.36	52.50	35.45	36.59
	법률서비스자격자	29.69	25.62	33.06	29.13	30.17
	로스쿨과정생	37.75	31.25	47.92	36.67	33.75
박사과정생	30.49	25.83	36.67	31.25	27.50	
법률관련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44.69	33.63	57.66	41.35	43.60
	타자격증	30.41	25.74	35.85	29.04	29.96
	없음	36.30	32.82	40.86	38.07	33.09
법 관련 종사 기간	1 ~ 5년	36.66	31.98	43.24	36.43	34.07
	6 ~ 10년	36.56	31.49	41.37	38.36	34.45
	11 ~ 15년	35.22	27.81	41.01	34.83	35.96
	16 ~ 20년	37.66	32.01	44.16	38.32	35.28
	21년 이상	43.19	36.97	53.27	42.68	38.55
	무응답	33.25	30.08	35.34	34.14	33.08



【부 록】

표 82. 법의식 점수\_2015년 기준 - 전체 법의식 점수

(단위 : 점)

구 분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전 체		53.58	69.38	51.99	48.88	64.07	52.60	37.35
성별	남 자	54.39	70.86	52.72	49.21	64.71	53.58	38.19
	여 자	51.53	65.61	50.12	48.05	62.44	50.10	35.24
연령별	19 ~ 29 세	51.48	65.32	51.63	47.22	62.30	49.36	35.62
	30 대	53.04	69.26	50.93	48.90	63.67	50.52	37.58
	40 대	52.96	69.39	50.65	48.94	63.41	52.49	35.70
	50 대	56.17	72.90	55.31	50.05	66.22	56.77	39.06
	60 세 이상	55.03	68.15	52.96	48.65	65.61	56.25	41.20
지역별	수 도 권	52.67	69.25	51.61	47.65	62.92	51.12	36.43
	중 부 권	55.15	67.74	52.00	51.98	66.98	56.03	38.31
	전 라 권	53.76	71.14	53.31	47.68	62.32	52.03	39.29
	경 상 권	55.18	71.20	53.30	50.70	66.55	53.95	38.18
	체 주 권	53.73	70.42	49.68	47.87	60.65	55.36	41.38
분야별	입 법	51.53	65.70	51.43	46.38	60.94	50.53	36.90
	행 정	54.97	65.51	51.23	52.67	67.40	56.14	38.53
	사 법	63.35	76.12	61.79	59.42	70.50	62.40	52.11
	학 계	53.61	75.18	52.49	47.14	64.04	51.39	35.28
	민 간	51.50	69.35	49.82	45.76	62.80	50.08	34.38
	예 비 법 전 문 가	50.32	65.76	49.97	46.48	59.77	48.51	34.12
직업별	국 회 의 원	51.88	60.97	51.60	46.64	63.44	49.82	40.66
	국 회 공 무 원	49.60	69.28	48.21	45.90	59.05	47.82	30.65
	지 방 의 회 의 원	53.06	66.83	54.41	46.60	60.34	53.88	39.34
	국 가 공 무 원	56.89	66.61	52.68	55.33	70.33	57.60	40.20
	지 방 공 무 원	52.81	64.27	49.62	49.69	64.13	54.50	36.66
	관 사	65.35	78.35	63.69	61.06	71.49	62.97	56.71
	검 사	64.89	80.52	61.42	58.18	73.18	63.64	55.14
	법 원 공 무 원	59.81	69.48	60.25	59.01	66.82	60.58	44.47
	로 스 쿨 교 수	55.51	78.49	54.53	47.41	66.49	54.28	36.15
	법 학 과 교 수	55.79	75.32	53.73	49.33	64.38	55.88	39.67
	연 구 원	49.51	71.74	49.18	44.64	61.24	43.95	29.94
	변 호 사	56.15	75.78	53.32	50.75	67.93	52.77	39.54
	법 률 서 비 스 자 격 자	47.27	63.51	46.64	41.23	58.13	47.63	29.69
	로 스 쿨 과 정 생	52.79	65.15	51.47	50.03	62.28	52.18	37.75
박 사 과 정 생	47.84	66.37	48.47	42.92	57.26	44.85	30.49	
법 률 관 련 자 격 증	변 호 사 자 격 증	58.96	76.87	56.25	54.17	68.90	55.72	44.69
	타 자 격 증	48.70	65.94	48.10	42.65	59.36	49.11	30.41
	없 음	52.77	67.62	51.36	48.38	63.39	52.26	36.30
법 률 관 련 사 기간	1 ~ 5 년	52.32	66.09	51.11	48.28	63.02	51.18	36.66
	6 ~ 10 년	53.41	71.49	51.12	48.79	63.85	51.66	36.56
	11 ~ 15 년	53.15	72.93	51.05	48.53	64.05	50.33	35.22
	16 ~ 20 년	55.27	72.62	53.44	48.57	66.66	56.01	37.66
	21년 이상	58.23	73.17	56.68	52.38	67.43	59.46	43.19
	무 응 답	48.19	63.60	48.33	45.30	56.63	44.55	33.25

## 부록 Ⅱ. 최종설문지

IDI-4

--	--	--	--

##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전문가들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입법방향 및 법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원 장 이 원  
 연구책임자 김 명 아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  
 전 화 번 호 0 4 4 - 8 6 1 - 0 4 4 5

<b>■ 지 역</b>	
01. 서울	02. 부산
07. 울산	08. 세종
13. 전북	14. 전남
03. 대구	09. 경기
15. 경북	10. 강원
04. 인천	11. 충북
05. 광주	12. 충남
06. 대전	17. 제주
<b>■ 직 업</b>	
01. 국회의원	02. 국회의원 보좌관
04. 지방의회 의원	05. 국가 공무원
07. 판사	08. 검사
1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법학과 교수
13. 변호사	14. 법률서비스자격자(변호사 제외)
15. 로스쿨과정생	16. 박사과정생
03. 국회공무원	06. 지방 공무원
<b>■ 성 별</b>	
1. 남자	2. 여자
<b>■ 변호사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b>	
1. 있음(변호사 자격증)	2. 있음(관련 자격증 종류 : _____)
3.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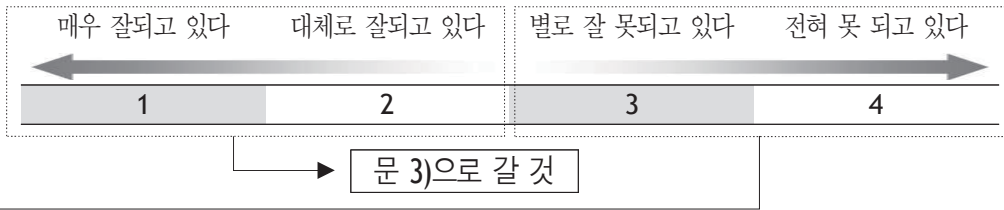
**응답 시 유의사항**

1.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고,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겉 표지를 포함해 1~15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보기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법전문가의 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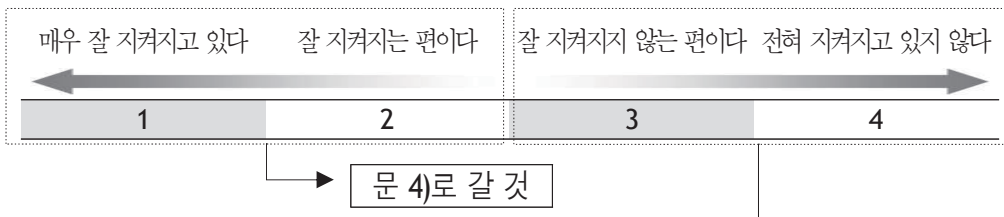
-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1. 공평하다  
2. 민주적이다  
3. 불공평하다  
4. 권위적이다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 문2)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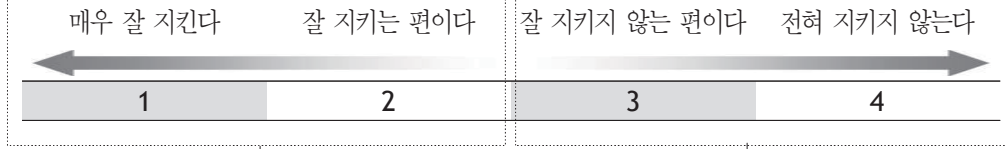
- 문2-1) (문2)에서 ‘3번’ 또는 ‘4번’ 응답자만  
그럼, 법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  
2.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  
3. 초·중·고등학교 법 교육 전문가 추가 양성  
4. 교육부와 법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 문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3-1) (문3)에서 ‘3번’ 또는 ‘4번’ 응답자만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4)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로 갈 것

문4-1) (문4)에서 '3번' 또는 '4번' 응답자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5) 귀하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문6) 귀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7)로 갈 것

문6-1) (문6)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

1.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의견 게재
2. 시민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3.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문·칼럼 등에 게재
4. 관련부처에 제안 및 건의
5. 입법 기관에 청원
6. 헌법 소원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부 록】

- 문7) 귀하는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한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4.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 문8) 우리나라 법률 중에 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용어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2. 법 조문의 의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3.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입법 관련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4.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 문9)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때문에  
 2. 법 집행자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3.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4.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 학연·지연·혈연 등 인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법제 발전방향**

문10) 귀하는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1	2	3	4	5
㉠ 입법부	1	2	3	4	5
㉡ 행정부	1	2	3	4	5
㉢ 사법부	1	2	3	4	5

문11) 귀하는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 국민의 권리 보호	1	2	3	4	5
㉡ 경제 발전	1	2	3	4	5
㉢ 사회 복지	1	2	3	4	5
㉣ 안전 관리	1	2	3	4	5

문12)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문 13)으로 갈 것

문12-1) (문12)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그럼, 다음 중 어느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기본권
2. 대통령 단임제
3. 정부형태
4.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
5. 통일 관련 조항
6. 경제민주화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2-2) (문12-1)에서 '1순위', '2순위' 응답자만)

그럼, 선택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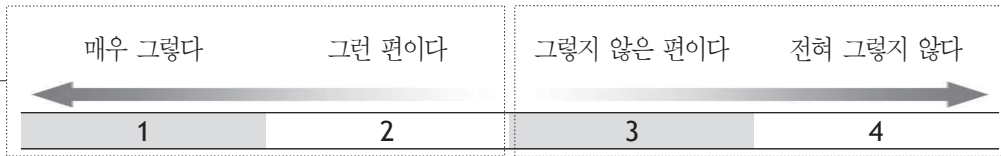
1순위(구체적 개정 필요 내용)	
2순위(구체적 개정 필요 내용)	

【부 록】

문13) 귀하는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원제도
2. 입법예고제도
3.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4. 회의공개제도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4) 귀하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4-1) (문14)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그럼,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문 15)로 갈 것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1	2	3	4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1	2	3	4
㉢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1	2	3	4
㉣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1	2	3	4

문15) 2012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국회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b>이슈가 된 규정</b>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위하여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사회문제와 법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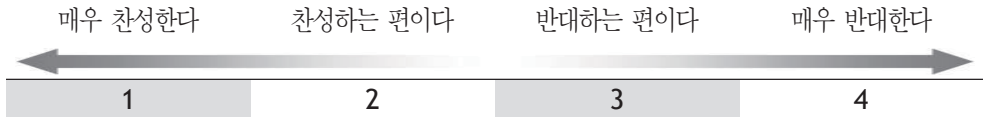
문16)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간통 행위를 민사법으로 해결한다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위헌 결정 근거</b>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	--------------------------

1. 유책주의 이혼원인에서 순수 파탄주의로 전환
2. 제한적 파탄주의에서 간통한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범위 확대
3. 유책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
4. 유책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제한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7)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문18) 귀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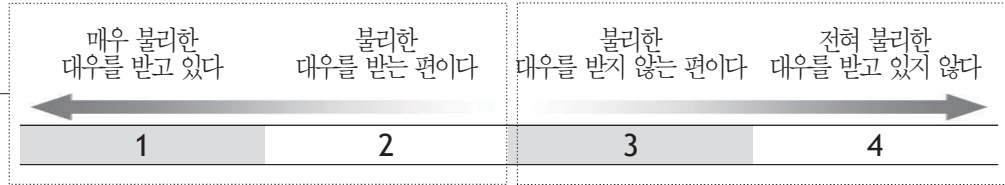
1.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
2.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3.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 정비
4.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5.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9)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확대
2.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 신청주의 개선
4.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개선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부 록】

문20)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0-1) (문20)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그럼,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범생활의 불철저
3.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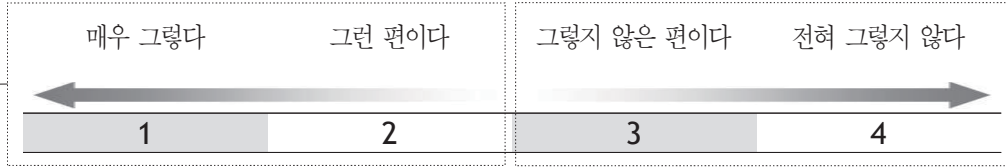
문21) 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2.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
3.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위험성 제거·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
4.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5.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22) 귀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공립 교육 시설 확대
2. 교사의 처우 개선
3. 교사의 자질 향상
4.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5.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23) 최근 가습기 살균제, 밀가루 식품파동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3-1) (문23)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그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형사처벌 강화
2. 과징금 적용 확대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4. 집단소송제도 확대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24)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하는 인공지능(알파고/자율주행/로보어드바이저/로봇의사 등)의 산업기술 응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불안정한 인공지능의 상용화 규제
2. 인공지능 문제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
3. 기술 개발에 대한 절차 규제
4.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
5.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 제한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25) 최근 항공기·선박사고, 일본의 지진 등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이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
2. 사고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관의 역할 분배
3.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시스템 마련
4. 사회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5. 국가의 우선 보상 제도 확대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부 록】

문26) 통일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독일 등 통일사례 법제 연구
2. 남북교류협력법제 정비
3.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
4. 북한법제 연구 및 통일법제 준비
5. 통일 적응적 헌법 개정
6. 통일법제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조직 구성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27) 2007년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시장이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방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2.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3.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4. 변호사 수입료 등 법률 서비스 이용료 경쟁력 강화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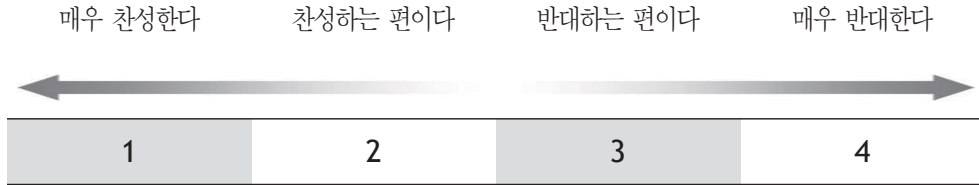
문28)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
2.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3. 로스쿨 학비 체계 개선
4. 합격률 상향 조정
5. 교육의 질 제고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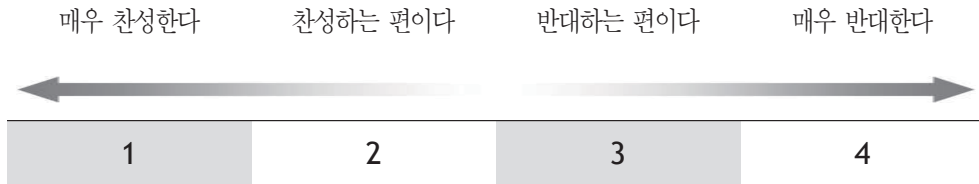
문29) 귀하는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항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2.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확대
3. 국제 협력 강화
4.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
5.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30)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법률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문30-1) 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혼 유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문31) 귀하는 ‘사형 집행’,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의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 사형 집행	1	2	3	4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1	2	3	4

문32) 현행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2.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다
3. 태아생명권의 보호와 생명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허용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안 된다
4.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부 록】

지금부터 제시되는 서술문별로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 법에 대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3)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1	2	3	4	5
문34)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1	2	3	4	5
문35)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1	2	3	4	5
문36)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법에 대한 인식 / 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7)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	1	2	3	4	5
문38)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1	2	3	4	5
문39)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1	2	3	4	5
문40)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1	2	3	4	5
문41)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1	2	3	4	5
문42)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1	2	3	4	5

**3** 법에 대한 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3)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1	2	3	4	5
문4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1	2	3	4	5
문45)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1	2	3	4	5
문46)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1	2	3	4	5
문47)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1	2	3	4	5

**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8)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1	2	3	4	5
문49) 법은 국민이 이익을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1	2	3	4	5
문50)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1	2	3	4	5
문51)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1	2	3	4	5
문52)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1	2	3	4	5
문53)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1	2	3	4	5

**5 법의 실효성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54)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1	2	3	4	5
문55)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1	2	3	4	5
문56)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1	2	3	4	5
문57)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1	2	3	4	5
문58)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1	2	3	4	5

**6 법 제정 / 집행 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59)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1	2	3	4	5
문60)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1	2	3	4	5
문61)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1	2	3	4	5
문62)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1	2	3	4	5

【부 록】

**7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63)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1	2	3	4	5
문64)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	1	2	3	4	5
문65)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1	2	3	4	5
문66)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1	2	3	4	5
문67)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	1	2	3	4	5

**자료 분류용 질문**

D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DQ2) 귀하가 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년

DQ3)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만)

☞ 지금까지 장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면접 후 기록

조 사 일 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____ 분간)	
소 속 기 관		
응답자 성명		
응답자 이메일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세부 사항		
특 이 사 항		
조사원 성명		ID

검 증 원	실사 연구원

부록 Ⅲ.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 개별 심층면접 질문지

개별 심층면접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째, 면접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 항목, 둘째, 면접 질문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개별 심층면접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lt;기초조사&gt;

- 1) 개별인터뷰 번호
- 2) 직업 :
- 3) 성별 :
- 4) 나이 :
- 5) 학력 :
- 6) 학부전공 :
- 7) (법조)경력 :
- 8) 전관여부 :
- 9) 개업형태 :
- 10) 개업지/근무지 :
- 11) 전문분야/전공분야 :

1. (문1) 귀하가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10개만 말해 주십시오. (말하는 순서에 따라 10개의 단어를 적을 것)
  - 1-1. (문5)(문54~58) 귀하는 어떠한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 (문37~41)(문48~53)(문54~58)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2. (문3)(문42) 귀하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운 택시기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 2-1. (문4) 귀하는 규정을 준수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도 법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2. (문3)(문4)(문33~36)(문37~42)(문47)(문63~67) 귀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 록】

- 2-3. (문3)(문4)(문43~47)(문63~67) 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 (문9)(문40)(문59~62) 귀하는 스스로 겪은 일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일 중에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4. (문10)(문43~47) 우리나라에서 법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각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1. (문11)(문18)(문23)(문25)(문27)(문39)(문48~53)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의 법제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각각 응답을 받기 바람)
- 4-2. (문23)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고에 대해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는 검찰과 법원과 같은 사법당국이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문12)(문37~38) 수년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1. 법전문가와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2.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문13~15) 귀하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갖추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아래의 예시는 질문의 이해도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인터뷰대상자에게 이를 나열하지 말 것.)

예시	국회의원의 자질향상 및 법전문가의 국회진출
	국회의원비서관 및 입법조사처 등 보좌기구의 강화
	청원제도, 입법예고제도, 공청회제도, 청문회제도, 회의공개제도의 개선
	입법·사법·행정기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심사권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7. (문16)(문17)(문30) 최근에 간통죄는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성풍속에 대하여 법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7-1. (문30) 동성혼 인정 요구 문제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법적 개입이나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8. (문19) 귀하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의 배심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등)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9. (문24) 다른 나라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귀하는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범위와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문28) 최근에 논란이 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를 자유로이 말씀해 주세요.

【부 록】

□ FGI 질문지

FGI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문 1.** 법전문가의 절반 이상(57.6%)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3).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는 긍정 의견이 30% 내외로 부정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은 절반 정도(52.8%)가 ‘잘 지킨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3~45). 귀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2.** 설문에 응답한 법전문가의 97.0%는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결과인 42.3%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 법전문가의 49.0%는 ‘법적용의 차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40). 그 원인으로는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38.6%)가 가장 많았습니다(정량조사 문9). 한편, 국회, 법원, 정부, 수사기관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른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4% 이상이었습니다(문59~62). 법전문가들이 법의 차별 없는 적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한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또한 흥미로운 것은 법 관련 종사경력이 길면 길수록 차별적인 법적용의 이유로 ‘당사자의 권력이나 재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1~5년 39.6% ⇒ 21년 이상 35.2%)이라 응답하는 비율이 종사경력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정량조사 문9).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법전문가들은 입법부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9.2%로 응답하여 행정부(29.0%)와 사법부(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이렇게 응답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의견은 입법부 12.7%(100점 환산 39.13점), 행정부 23.8%(100점 환산 48.10점), 사법부 36.1%(100점 환산 52.97점)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0). 귀하는 이러한 결과가 귀하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 것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 5.**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발전,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비율(10~20%대)보다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30% 이상)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귀하는 이렇게 응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또한 흥미로운 응답 결과로는, 안전 관리는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3.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1). 다른 분야에 비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6.**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26.7%)와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24.3%),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20.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18). 그런데 응답자의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라 보았는데 비해 40대 이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이 우선 과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7.**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62.7%)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남성의 53.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85.7%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 20). 성별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응답자의 남녀의 성비는 3:1 정도이었습니다.

【부 록】

**<추가질문>**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25.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16.1%)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7.4%)은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량조사 문20-1). 이는 법전문가들이 여성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전문가들이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로 법제도 보다는 법제도 아닌 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이 여성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은 아니라 본다고 이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8.**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안전관리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41.3%)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량조사 문25, 문29). 또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98.8%가 동의하였습니다(정량조사 문23). 이와 같이 관련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9.**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 작업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28.0%가 ‘남북교류법제 정비’를, 26.8%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과제 정비’가 꼽혔습니다(정량조사 문26). 남북교류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같은 정치적 과제가 통일에 관한 법제도나 법제시스템 준비에 관한 과제보다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 10.** 법전문가들은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정량조사 문37),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정량조사 문38), ‘대한민국 법이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 정도’(정량조사 문39)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법의 작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는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